통일부 30년사

평화 · 화해 · 협력의 발자취, 1969~1999

통 일 부

국토통일원의 창설

1969. 3. 1

평화·화해·협력의 발자취

1천만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남북적십자 제1차 본회담이 개최되었다. (1972. 8. 30,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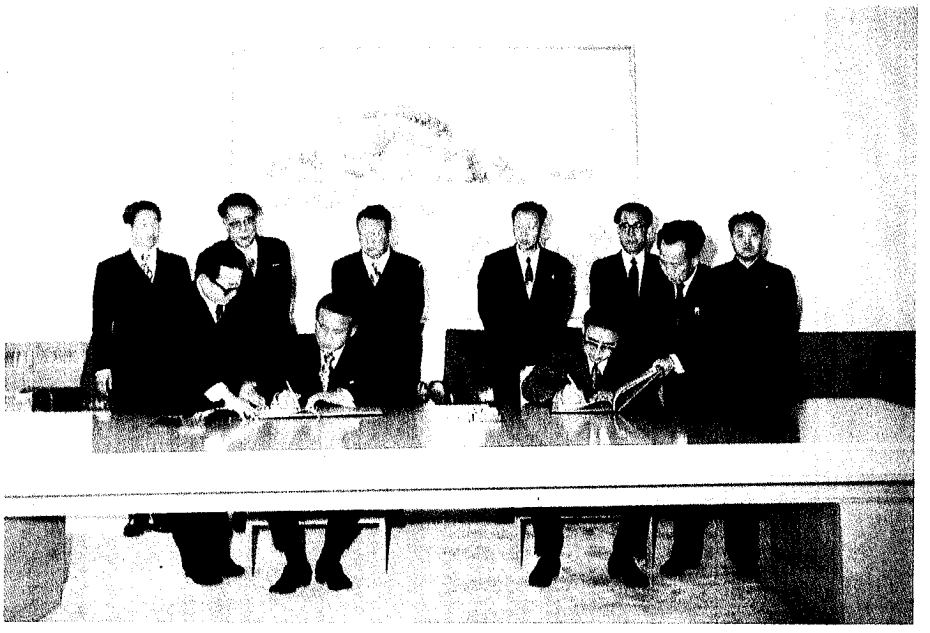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1972. 11. 4, 평양)

손자손 국토통일원장관이 민족화합을 위한 「20개 시범실천사업」을 제의하고 있다. (1982. 2. 1)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이 성사되어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였다. (1985. 9. 21～22, 평양)

남북통일축구대회에서 남북축구선수단이 손을 잡고 입장하고 있다.
(1990. 10. 11,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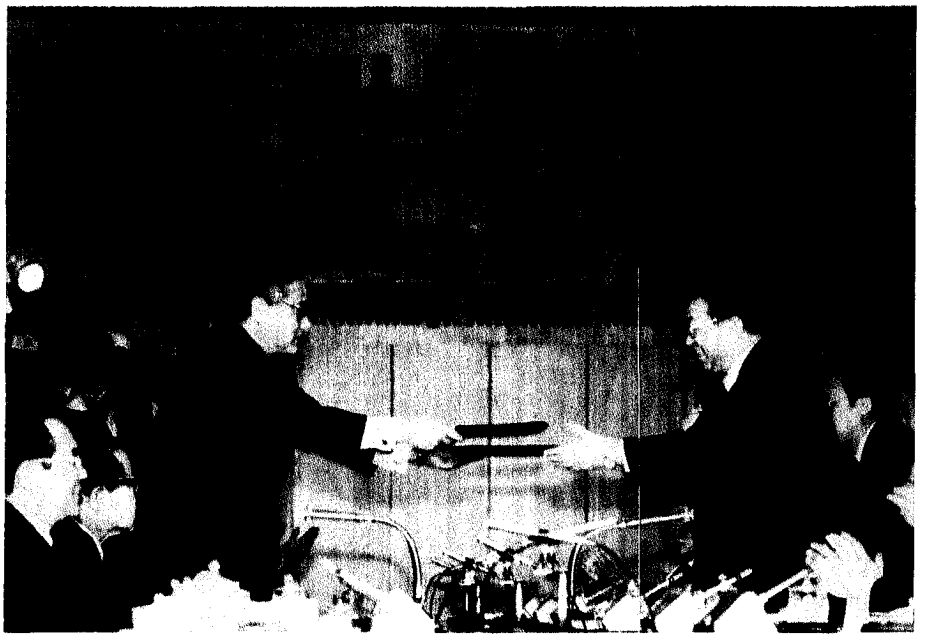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서명·발효 시켰다.
(1992. 2. 19, 평양)

대북 경수로건설 지원을 위한 부지정지공사 착공식을 거행하고 있다.
(1997. 8. 19, 신포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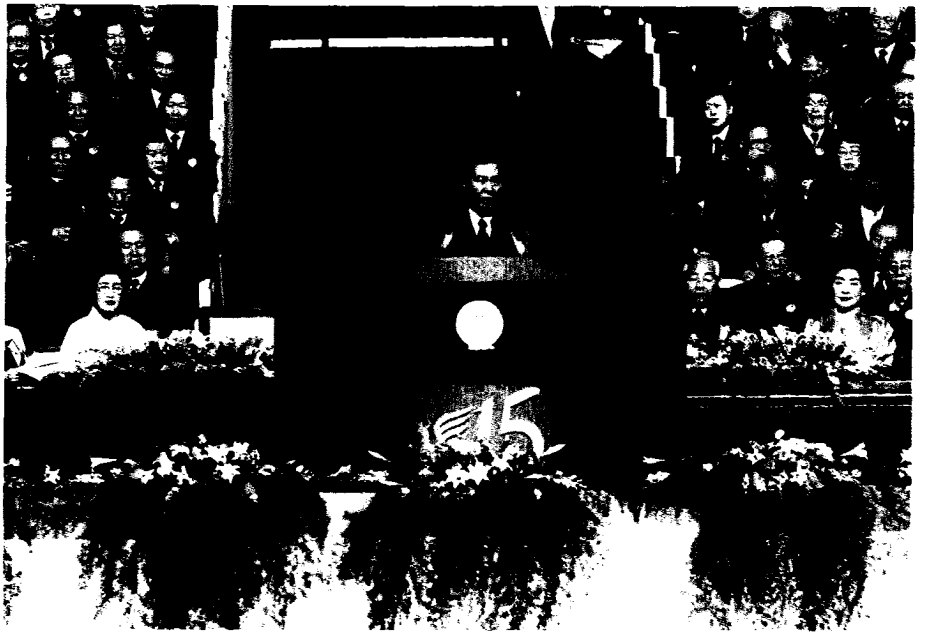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1998. 2. 25)

정세현 통일부차관과 전금철 정무원 책임참사가 남북당국대표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1998. 4. 11～17, 북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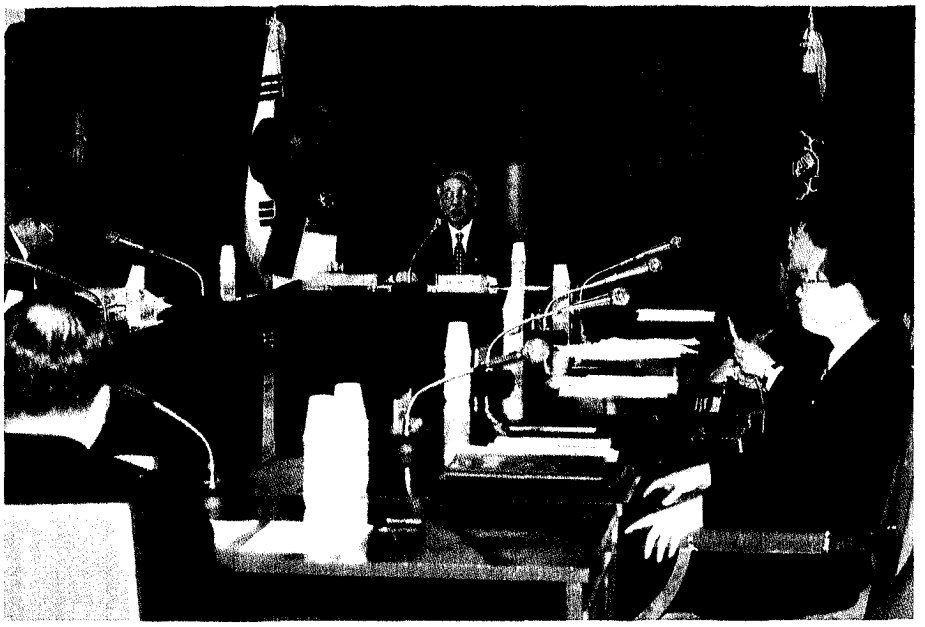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경협활성화 조치를 의결하였다.
(1998. 4. 30)

정부는 이산가족의 만남을 지원하기 위한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였다.
(1998. 9.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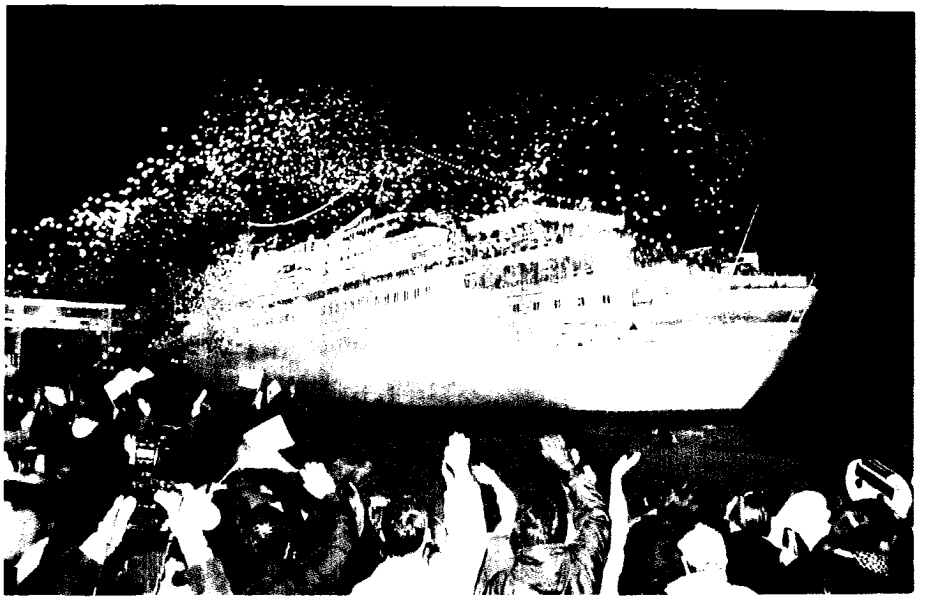

826명의 관광객을 태운 현대금강호가 금강산 관광을 위한 첫 항해에 나서고 있다.
(1998. 11. 18, 동해)

통일부는 '98 민원행정 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1998. 12. 22, 청와대)

발 간 사

올해는 통일부가 창설된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1969년 3월 1일 평화적인 통일실현을 앞당긴다는 사명을 띠고「국토통일원」으로 창설되어, 초기에는 통일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업무에 주력하였습니다. 그후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남북대화, 교류협력, 인도지원 등 관련 정책수립과 집행을 중심으로 업무영역을 넓혀오면서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을 이끌어오게 되었습니다.

특히「국민의 정부」출범이후 조직과 운영을 보다 효율화한 통일부는 평화·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통일의 큰 길을 열어간다는 정책목표 아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3대원칙으로 하여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북관계에는 화해와 협력보다는 긴장과 갈등, 그리고 대결과 불신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980년대말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 함께 한반도에도 변화의 환경이 마련되었으나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외면한 북한의 태도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관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부가 겪어온 지난날의 경험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역사의 눈으로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조망하면서 통일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의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통일부 30년사』 편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부 30년사』의 발간은 일차적으로 통일부 창설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만, 어려운 여건속에도 남다른 사명감으로 대북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는 통일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려는 데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아울러 동서고금의 예에서 보듯이 정부가 주요정책을 결정한 데 대하여 그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사료로 편찬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서 『통일부 30년사』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작은 노력의 실천적 결실인 것입니다.

통일부가 걸어온 발자취와 정부의 통일정책사를 함께 집약한 이 책자가 정책실무자에게는 미래에 대한 예지를 키우는 도구로, 전문가에게는 유용한 참고자료로,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통일정책을 이해하는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이 책을 편찬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여러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의 뜻을 전합니다.

1999년 3월 1일

통일부장관 강인덕

일 러 두 기

1. 통일부 30년사는 부내 자료와 관계기관의 자료를 널리 참조하여, 「평화·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2. 이 책은 통일부의 발전사와 함께 정부 통일정책의 전개를 동시에 서술하였다.

3. 이 책의 시간적 수록범위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였다.

4. 이 책의 본문은 분야별 편년체로 서술하였고, 관련자료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5. 이 책은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6. 본문의 전개는 「장·절·1·가」의 순으로 하고 그 이하는 (1), (가), 1), 가), ① 등으로 구분하였다.

7. 통일부는 약칭통일원으로 창설된 이후 통일원, 통일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명칭의 기술은 당시 명칭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통으로 사용할 때는 통일부로 기술하였다.

8. 인명은 북한인의 경우 북한의 철자법을 따르고 일본인은 일본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괄호속에 한자로 표기하였다. 중국인은 그를 고유한자로 표기하였으며, 서양인은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속에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우리에게 익숙한 인명의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하였다.

9. 북한의 기관·단체·지명 등 고유명칭과 용어는 북한의 철자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였다.

10. 우리나라는 한국으로, 북한은 북한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지역적 의미가 강한 경우와 북한이 우리를 칭할 경우에는 남한으로 표기하였다.

11. 정부명칭은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국민의 정부」로 하였다.

12. 본문상 연월일인 표시는 완전한 형태로 하였다.(예 : 1998년 10월 15일)

13. 문장부호는 인용문은 " "로, 단행본·VTR·음반명은 『 』로, 강조사항·논문·제의·법률안·협정·신문 등은 「 」로 표시하였다.

목 차

제1장 남북 분단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3

제1절 분단의 국제적 배경 4

1. 제2차 대전중 연합국의 한국문제 논의 4
2. 미·소의 분할점령과 초기 군정정책 8
3. 모스크바 3상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 13

제2절 민족내부의 상황 16

1. 남한의 정치상황 16
2. 북한의 소비에트화 과정 19

제3절 대한민국 정부 수립 21

1.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의 결의 21
2. 남북협상의 실패 23
3. 대한민국 정부 수립 24
4. 북한 공산정권의 성립 26

제2장 통일정책의 전개 29

제1절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29

1.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 29
2. 장면 정부의 통일정책 38
3.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44
4. 전두환 정부의 통일정책 56

5.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65
6.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73

제2절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 81
1. 대북포용정책 천명 82
2. 제2의 건국을 향한 통일비전 제시 88
3. 북한의 대남정책 90

제3장 남북대화의 추진 95

제1절 1970년대 이전의 남북대화 96
1. 실향민 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 96
2. 동경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97

제2절 1970년대의 남북대화 99
1. 남북적십자회담 99
2. 남북조절위원회회의 108
3. 남측「조절위」와 북측「조국전선」간 대표접촉 114
4. 남북탁구협회회의 115

제3절 1980년대의 남북대화 117
1.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117
2. 남북체육회담 119
3. 로잔느체육회담 122
4. 남북적십자회담 127
5. 남북경제회담 136
6.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139
7.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142

제4절 1990년대의 남북대화 148
1. 남북고위급회담 148
2. 남북체육회담 175
3.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184
4.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191
5.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 195
6. 남북간 북경회담 198
7. 4자회담 202
8.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218
9.. 남북당국대표회담 224

제4장 남북교류협력의 진전 231

제1절 남북교류협력의 제도화 233
1.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운영 233
2.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의 제정 및 보완·발전 234

제2절 남북인적교류 239
1. 남북왕래 239
2. 북한주민접촉 243

제3절 남북경제교류협력 249
1. 교역 249
2. 경제협력 255
3. 교통·통신협력 266

제4절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274
1. 학술 274
2. 문화·예술 284

3. 종교 288
4. 체육 291
5. 언론·방송·출판 296
6. 관광 299

제5절 대북 경수로 지원 305
1.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추진경위 305
2. 경수로 지원사업 추진체계 308
3. 부지준비공사 324

제6절 남북협력기금 326
1.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326
2. 남북협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326

제5장 대북지원 및 인도적문제 해결 노력 333

제1절 대북지원 334
1. 정부차원의 지원 334
2. 민간차원의 지원 336

제2절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 344
1. 1970년대 이전 344
2. 1970~1990년대 중반 345
3. 1990년대 후반 351

제3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356
1.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356
2. 보호·정착지원체계 정비 359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365

제4절 북한인권 개선문제 370
1. 북한의 인권실태 370
2.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373

제6장 통일부의 창설과 통일업무의 발전 379

제1절 통일부의 창설과 조직의 변천 379
1. 통일부의 창설 379
2. 조직 및 기능의 변천 383
3. 예산의 변천 415

제2절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와 대책개발 417
1. 북한실태 분석 417
2. 통일문제 연구 및 대책 수립 431
3. 여론조사 및 활용 438
4. 국제협력의 강화 441
5. 민족통일연구원을 통한 연구기반 확대 472

제3절 통일정책 추진체계의 발전 479
1. 통일관계장관회의 설치·운영 477
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설치·운영 480
3.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설치·운영 484

제4절 통일교육·홍보기능 강화 488
1. 통일교육 488
2. 통일홍보 512

제5절 자문기구 및 민간통일운동의 지원 530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 및 지원 530
2. 자문기구의 운영 541
3. 민간단체의 지원 562

부 록 567

Ⅰ. 역대 장관·차관 575
Ⅱ. 역대 간부 577
Ⅲ. 서훈포상자 586
Ⅳ. 남북관계 주요일지 596
Ⅴ. 남북간 주요 합의문건 637
Ⅵ. 통일부 허가법인 674
Ⅶ. 통일동우회·상조회 681
Ⅷ. 기관연혁 686
Ⅸ. 청사연혁 688
Ⅹ. 찾아보기 690

제 1 장

남북 분단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분단은 미·소에 의해 북위 38도선에 따라 경계선이 획정되고 남북한지역에서 각기 다른 정권이 수립되면서 형성되었으며 6·25전쟁과 냉전질서의 구조화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고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미국과 소련이 전후처리 과정에서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군대를 진주시킴에 따라 분단의 길을 걷게 되었다.

남한지역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합작과 분열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승만 중심의 우익세력이 주도권을 잡게 되었으며 북한지역에서는 소련군의 소비에트화 계획하에 김일성 세력이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권력을 장악해갔다. 그 결과 1948년 8월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9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무력에 의한 한반도통일을 시도하였다. 3년여에 걸친 한국전쟁은 치유되기 힘든 민족적 상처를 남겼으며 이후 남북한이 이념 및 체제 차원에서 극단적 대결과 경쟁을 하는 민족분단구조가 고착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남북한은 각각 체제생존과 상대편에 대한 우위확보를 위해 남북한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무대에서 소모적인 경쟁을 전개하였다. 남북한의 대결과 체제경쟁은 국제적 냉전질서를 배경으로 하면서 더욱 구조적인 형태로 굳어졌다.

이러한 분단과정에는 국제적 요인과 민족내부 요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였다. 38도선의 획정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미·소의 세력확장 경쟁이라는 국제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두 개의 정부수립에 이르는 기간에는 미·소의 대립과 함께 민족내부에서 벌어진 정치세력간 분열과 갈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한국전쟁과 그 이후 냉전질서의 구조화과정은 세계적 냉전질서와 남북한의 체제경쟁에 의해 심화되었던 것이다.

제1절 분단의 국제적 배경

1. 제2차 대전중 연합국의 한국문제 논의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1943년 경부터 연합국사이에서는 1941년 8월에 제시된 대서양헌장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전후의 평화와 안전보장기구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연합국, 특히 미국은 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의 점령하에 있던 식민지 지역의 전후처리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장래문제가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독립문제가 연합국사이에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루즈벨트(Flanklin D. Roosevelt) 미국대통령과 헐(Corell Hull) 미국무장관이 방미중인 이든(Anthony Eden) 영국 외상과 1943년 3월 워싱턴에서 가진 회담에서였다. 이 회담에서 일본에 의해 점령되어 있던 만주, 대만, 한국, 인도차이나반도 등의 전후처리문제가 논의되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만주와 대만은 중국에 반환하고, 한국과 인도차이나반도는 신탁통지하에 두되 그 탁치국(託治國)으로는 미국, 중국, 소련을 거명하고 영국의 동의를 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전후처리를 위한 연합국의 주요 회담가운데 한국문제와 관련이 있는 회담은 ① 1943년 11월 미·영·중의 카이로회담 ② 1943년 11월 미·영·소의 테헤란회담 ③ 1945년 2월 미·영·소의 얄타회담 ④ 1945년 7월 미·영·소의 포츠담회담 등을 들 수 있다.

가. 카이로회담

제2차 세계대전중 한국문제가 연합국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또 한국의 자유와 독립이 구체적으로 보장되게 된 것은 카이로회담에서였다. 루즈벨트 미국대통령, 처칠 영국수상, 蔣介石 중국총통은 1943년 12월 1일 카이로선언을 발표하고 그 속에서 “한국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독립시키기로 결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적당한 시기에」 또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in due course)라는 내용이다.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의 특별보좌

관인 홉킨스(Harry Hopkins)는 회담이 진행 중이던 11월 24일 카이로선언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홉킨스가 작성한 초안에는 「적당한 시기에」(in due course)가 아니라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에」(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은 이 부분을 「적절한 시점에」(at the proper moment)로 바꾸었다. 처칠 영국수상은 다시 이 부분을 「적당한 시기에」(in due course)로 수정하였다.

결국 「적당한 시기에」(in due course)라는 표현은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소련과 중국이라는 대륙세력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 때문이었다. 미국은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후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가진 중국과 소련의 영향권 안에 다시 포함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더라도 당분간 중국과 소련 등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나 관련기구에 의한 신탁통치를 구상하고 있었다. 루즈벨트의 이러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구상은 앞에서 언급한 1943년 3월의 워싱턴회담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나. 테헤란회담

1943년 11월 28일 루즈벨트 미국대통령, 처칠 영국수상, 스탈린 소련수상이 참석한 3국 수뇌회담이 테헤란에서 열렸다.

전후 한국의 처리문제와 관련, 테헤란회담은 두 가지 의미를 지녔다. 첫째, 카이로 회담까지만 해도 한국의 처리문제는 미·영·중 3국간에만 양해사항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테헤란회담을 계기로 소련과도 논의하게 되었다. 둘째는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기간이 거론되었다는 점이다. 테헤란회담에서 루즈벨트는 '한국이 완전한 독립을 하기에는 얼마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그것은 40년간쯤이 적당하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스탈린은 그대로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탁통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역사상 그 선례가 없으나, 루즈벨트가 '40년쯤이 적당하다'고 한 것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경험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 얄타회담

1944년 후반 이후 독일과 일본의 항복이 확실해짐에 따라 전후처리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루즈벨트 미국대통령, 처칠 영국수상, 스탈린 소련수상 등 3국 수뇌는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얄타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의 주요의제는 전후처리문제와 소련의 대일참전 문제로서 이에 대한 3국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했다.

당시 스탈린은 소련의 대일참전과 관련하여 중국 및 일본으로부터의 이권회복, 한국의 공산화를 통한 소련의 지배체제 확립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탈린은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면 2~3개월 안에 대일참전을 한다는 입장이었다. 스탈린은 이러한 입장을 1944년 12월 해리만 주소련 미대사에게 전달하였었다. 미·영·소 3국 수뇌는 얄타협정에서 독일의 전후처리문제는 독일을 해체·분할하는 것으로, 그리고 소련의 대일참전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이 항복하고 또 유럽전선이 종결된 후 2개월 또는 3개월 이내에 대일전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이 발표한 얄타회담의 기록이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문제는 회담이 진행중이던 2월 8일 루즈벨트와 스탈린 사이에 토의되었다. 루즈벨트가 한국 신탁통치안을 다시 제기하자 스탈린은 '한국인들이 그 자신의 만족할 만한 정부를 세울 수 있다면 왜 신탁통치가 필요한가'라고 루즈벨트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루즈벨트는 미국이 직접 경험한 필리핀을 예로 들어 필리핀이 자치정부를 준비하는 데 약 50년이 소요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의 경우는 그 기간이 20~30년이 될 수 있다'고 대답하자, 스탈린은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탈린이 '한국에 외국군대가 주둔할 것인가'를 물은 데 대해, 루즈벨트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스탈린도 이에 동의했다.

이러한 토의내용으로 보아 얄타회담에서 한국의 장래 지위에 관한 문제는 ① 다수국에 의한 한국 신탁통치의 실시 ② 외국군대의 한국 불주둔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비공식적으로 구두양해되었을 뿐이다. 흔히 남북 분단이 얄타회담에서 밀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이 회담의 공식문서에는 분단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 점이 얄타회담에서 미·영·불·소의 4개국에 의한 분할통치가 확정된 전후 독일의 분단과 다르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미국이 구상한 한국문제 처리는 ① 연합국에 의한 군사점령 → ② 단일행정기구에 의한 군정 → ③ 과도적 국제관리 또는 신탁통치 → ④ 완전한 독립이라는 단계적 과정을 상정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1945년 모스크바 3상회의 때까지 견지된 미국의 한국문제 처리의 기본입장이었다.

라. 포츠담회담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17일간 트루만 미국대통령, 처칠 영국수상(7월의 총선에서 보수당의 패배로 후반에는 노동당의 클리멘트 애틀리 수상이 참석), 스탈린 소련수상은 독일의 항복에 따른 전후 유럽문제의 해결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소련의 대일참전에 따르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포츠담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중 연합국의 마지막 회담이었다.

7월 26일에 발표된 포츠담선언은 그 8항에서 '한국이 적당한 시기에 자유·독립되어야 한다' 는 카이로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한국문제가 수뇌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이 회담에 참가한 미·소 군사대표들의 회담에서는 한반도 지역의 군사작전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소 양군의 수뇌들은 7월 26일의 회담에서 소련이 태평양전쟁에 참전할 경우 태평양전쟁지역에서의 미·소 양군 관할권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진행하였다. 즉 일본의 북부와 한반도의 북단을 잇는 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군이 담당하고 남쪽은 미군이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해공(海空)작전에 한하는 것이고, 지상작전의 한계선과 군사점령지역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때만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미군이나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련은 포츠담회담결과에 따라 대일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로 볼 때 전시 연합국은 전후 한국을 자유·독립하게 하되, 완전독립에 앞서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것이 일반적 양해사항이었다. 그러나 이에대한 세부적인 절차의 합의가 없는 가운데 일본이 예기했던 것보다는 빨리 항복을 하였고, 소련의 급속한 한반도 진격으로 말미암아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미·소양군에 의하여 점령되었던 것이다.

2. 미·소의 분할점령과 초기 군정정책

가.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

포츠담회담이 끝난지 4일째인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였다. 소련은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에 이어 8월 9일부터 만주와 한반도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은 같은 날 일본의 나가사키에 두 번째로 원자탄을 투하하였다.

2차에 걸친 미국의 원자탄 투하와 소련의 대일참전으로 일본은 서둘러 항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마침내 일본은 8월 9일 밤 포츠담선언의 수락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은 8월 10일 트루만 대통령의 주재 하에 번즈 국무장관, 스팀슨 전쟁장관, 포레스탈 해군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일본의 항복조건에 관해 토의했다. 일본의 항복의사 표명으로 미국이 일본 본토 상륙작전을 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소련군의 한반도 진격에 대응한 미군의 한반도 투입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어 미국은 「일반명령 제1호」의 초안을 작성하여 영국, 소련, 중국 등의 연합국에 전달하였고, 이의가 없자 8월 15일에 맥아더 태평양지구 연합군최고사령관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는 동안 소련군은 북한의 웅기와 나진, 원산항에 이어 8월 24일에는 평양에 진입하여 8월말까지 북위 38도선 이북의 거의 전역에 진주했다. 평양에 진격한 소련군은 “소련군의 관할구역은 북위 38도선 이북으로 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38도선에 의한 남북분단은 소련에 의해 이미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다.

항복문서가 조인된 9월 2일 맥아더 사령관은 일반명령 제1호를 공포하였다. 그것은 소련군의 더 이상의 남하를 저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지역의 일본군은 미군에게 항복, 무장해제되고,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선으로 하여 그 이북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그 이남은 미군이 진주하게 되었다.

38도선에 의한 한반도의 남북분단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첫째, 38도선 분할은 얄타회담에서 비밀리에 결정되었다는 설이다. 이는 얄타회담의 회의록이 나중에 공표됨으로써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둘째, 38도선 분할은 포츠담회담에서 결정되었다는 설이다. 이러한 주장

은 당시 미국무성의 한국과장이었던 죠지 맥큔(George M. McCune)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러나 당시 미 육군작전국장이며 군사대표단의 일원인 헐(Jhon E. Hull)은 미·소대표가 포츠담회담에서 한반도의 분할선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포츠담회담의 공식기록에도 그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셋째, 38도선 분할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의사가 제의됨에 따라 미국 3성(국무, 전쟁, 해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맥아더 사령부가 발표한 일반명령 제1호에서 결정되었다는 설이다. 미 국무성은 후일 이에 대한 공식발표로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후에 주한 일본군의 항복을 연합군이 접수하기 위하여 미국정부가 소련에 38도선을 제의하게 되고 소련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하면서 이 제의는 소련의 한반도전체 점령 저지에 그 우선적 목적이 있었음을 해명했다.

당시 일반명령 초안 작성에 직접 참가했던 당시 전쟁성 일반참모부의 러스크 대령이 회고록에서 밝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항복의사 표명에 따라 8월 10일부터 열린 미 3성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성은 미군이 될 수 있는대로 북상해서 항복을 접수케 하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군은 즉시로 동원가능한 병력이 부족하였고 소련이 진입하기 전에 북상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으로 어렵다는 문제에 부딪혔다. 군부의 견해는 만일 우리의 군사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범위의 항복접수를 제안한다면 소련이 그것을 수락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매클로이 전쟁성 차관보는 본스틸 대령과 나에게 되도록 군을 북상시켜 일본의 항복을 접수하고자 하는 정치적 희망과 미군의 제한된 한국진격능력이 합치되는 절충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우리는 만일 소련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 미군이 진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책임지역 속에 수도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8도선을 기안했다. 38도선은 육군이 국무성에 제의한 안이었으며 그 뒤 국제적으로 합의를 얻었다. 당시의 미군과 소련군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소련은 훨씬 남쪽을 주장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소련이 38도선을 수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맥큔(Shannon McCune)은 그의 저서 「Korea's Heritage」에서 38도선 획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이 원자탄 세례를 받아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갑자기 전쟁이 종결될 가능성이 보이게 되자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소련군이 대일선전을 포고하여 한반도로 남하하였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국무성의 계획참모들은 극동 및 태평양지구의 일본군 항복을 접수하기 위한 연합국간의 책임분담구역 설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그 초안은 당일 국무, 전쟁 및 해군 3성의 합동위원회가 승인하게 되고, 12일부터 14일에 함동참모본부는 이 안을 채택하고, 트루만 대통령은 또한 이를 최종 결재하였다. 이것을 곧 소련정부에 통고하여 스탈린의 동의를 얻고 8월 17일에는 연합군최고사령부가 맥아더 일반명령 제1호로 준비완료하고 9월 2일에 이를 포고한 것이다."

이상의 공식발표나 기록들을 볼 때 38도선의 획정은 소련군이 한반도로 진격하기 시작한 이후에 논의되어 8월 11일~15일 사이에 결정되었다.

38도선은 당초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고 무장을 해제하기 위한 잠정조치로서 설정된 미·소간의 군사적 분계선이었다. 그러나 그 후 소련의 세력팽창정책으로 인한 냉전사태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38도선은 정치적 경계선으로 고착되어 국제적 성격을 띤 분단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나. 미·소의 초기 군정정책

(1) 소련의 소비에트화 정책

소련군 제25군이 평양에 들어온 것은 8월24일이었다. 바로 그날 소련군은 「북조선주둔 소련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소련군의 관할구역은 북위 38도선으로 한다"는 첫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는 직접통치대신 간접통치방식을 통해 형식적으로는 한국인에 의한 행정체제를 인정하면서 기존의 건국준비위원회의 각 지부를 하나씩 해체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인민위원회로 개편하고 이 인민위원회로 하여금 일본의 구지배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행정권을 인수케하였다.

이 때의 인민위원회는 중앙이 없는 순전한 지방조직이었으므로 소련군은 북한 전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구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1945년 10월 8일 북한 국가조직의 모태가 된 「북조선5도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소련군은 이 조직을 10월 28일 「북조선 5도행정국」으로 개편하였다.

한편 소련군은 친소적 인물을 정치적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뒤에서 정치적

후견역할을 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9월 초순 소련 극동군 총사령부는 소련의 의도대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로 극동군 산하 88특별여단 소속 김일성 대위를 선정하였고 이후 소련군은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 김일성의 입북과 정치적 입지확보를 위한 후견역할을 수행하였다. 김일성은 9월 19일 빨치산 동료들과 함께 소련 함정을 타고 원산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소련군은 중앙행정기구 수립을 위한 조치와 함께, 당 차원에서도 북한 단독 기구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이 서울에 중앙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에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것은 레닌의 1국 1당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따라서 소련은 1945년 10월 8일 박헌영을 개성 부근의 38도선 경비사령부로 불러들여 평양에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두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평양에서는 10월 10일 「조선공산당 서북 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가 열리고, 이어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설치되었다.

행정 및 당 조직의 기초를 마련한 소련군은 1945년 10월 14일 소련군과 김일성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김일성은 조만식을 비롯한 각계의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자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군중들 사이에서 김일성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가 「가짜 김일성」이라는 소요가 발생하였다.

1945년 12월 17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김일성은 책임비서로 선출되었고, 김일성이 「당노선과 조직에 관한 보고」를 통해 북한을 「민주기지」로 건설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이미 북한에서부터 남북분단이 진행되었고, 또 이때부터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라는 북한의 대남 기본전략이 설정되었다.

이와같이 소련은 북한에 진주한 직후부터 북한의 소비에트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시켰고 통일독립국가의 수립보다는 북한지역만이라도 소비에트화하고 이를 발판으로 한 적화통일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2) 미국의 초기 점령정책

미군이 남한지역에 처음으로 진주한 것은 해방된지 20여일이 지난 9월초였다. 한국진주와 함께 모든 행정권을 조선총독부로부터 직접 인수하려 한

미군은 건국준비위원회가 선포한 조선인민공화국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해방직후 유력한 정치적 결집세력이었던 건준의 세력도 약화되었으며, 임시정부의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도 개인자격으로 입국할 수 밖에 없었다.

9월 8일 공포된 맥아더사령관의 포고 제1호는 북위 38도선 이남의 지역 및 동지역 주민에 대한 군정을 실시할 것을 천명하는 동시에 모든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계속적인 업무수행도 지시했다. 맥아더 포고 제1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1조) : 38도선 이남의 최고통치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된다.
(제2조) : 정부·공공단체 및 그 밖의 명예직, 고용직, 고용원 전원 및 모든 공공 사업기관에 종사하는 직원 및 고용인은 별도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 직무에 종사하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보존한다.
(제3조) : 점령군에 대한 반란행위, 공공의 안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엄벌에 처한다.
(제4조) : 주민들의 재산권은 존중된다.
(제5조) :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
(제6조) : 모든 포고, 법령, 규약, 지시 및 조례는 본관의 권한하에 발표된다.

미군이 진주한 뒤에도 총독이하 일본고관들이 유임되자 한국인들이 크게 반발하였고 이에 미군은 아베(阿部)총독 등을 사임케 하였다. 이렇게해서 9월 20일 주한미군정청이 발족되었는데, 미군정청은 그 발족 포고문에서 미군 점령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미군정청은 인민의,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민주정부를 건설하기 까지의 과도기간에 38도선 이남의 한국지역을 통치, 지도, 지배하는 연합군총사령관 아래 미군에 의하여 설립된 잠정적 정부이다. 군정청은 남한에 있어서의 유일한 정부이며, 군정청 본부의 도·부·군(道·府·郡)을 통하여 기존의 각 기관(일본의 지배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군정청의 유일한 임무는 한국민의 복리상 건실한 정부 및 건전한 경제의 기초를 확립함에 있다."

10월 17일 미국의 3성조정위원회가 맥아더 사령관에게 보낸 미군정의 「초기기본지침」에 의하면 미군정의 목적은 한국이 "국제연합의 책임있는 성원으로서 충분히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건을 조장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미군정은 해방후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를 통제하는 한편, 한국민주당 등 일부의 정치세력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출해갔다.

이와같은 미·소의 점령정책으로 남북의 분단이 점차 분명해지자, 38선을 철폐하고 한반도를 분단이전으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민족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정치·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그 뒤 한반도에 신탁통치가 실시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38선 철폐와 즉시 독립운동은 가열되었다.

그러는 동안 38선은 점점 분단선으로 굳어져 갔다. 소련군은 1945년 8월 말에서 9월초에 걸쳐 남한과의 철도, 전신, 전화, 우편교류를 일체 단절시켰다. 미군은 소련군에 의한 단전 조치와 38선 장벽으로 인한 남북간의 부자연한 사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북한주둔 소련군사령관과의 직접교섭을 여러번 시도하였다. 그러나 소련군은 이를 권한 밖의 일이라 하여 거절하였다. 이에 하지 군정 사령관은 38선의 철폐를 포함한 한국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정부가 국제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합동참모본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3. 모스크바 3상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

가. 모스크바 3상회의

한반도에 있어서 미·소의 초기 점령정책에 따라 분단이 고정화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은 전시중 연합국 사이에 논의된 한국문제의 처리방안에 대해 국제회의에서 소련과 어떤 결말을 짓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5년 12월 16일부터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국의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미·소간의 타협을 거쳐 12월 27일 발표된 「한국문제에 관한 모스크바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임시정부 수립: 한국의 독립과 민주적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고 장구한 일본통치로 인한 비참한 결과를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청산하기 위하여 한국의 공업, 수송 및 농업과 한국민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게 될 한국임시민주정부를 수

립하여야 한다.

②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한국임시정부의 결성을 돕고 적절한 수단의 예비적 구상을 위하여 남한의 미군사령부와 북한의 소련군사령부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들의 제안을 준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는 한국의 민주주의적인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5년 이내의 신탁통치 실시: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한국임시민주정부와 한국의 민주주의적 단체의 참여하에 한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민주적인 자주정부의 발전 및 한국의 민족적 독립확립의 지원협조(신탁통치) 방법을 작성하는데 있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한국임시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최대한 5년 기간의 한국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에 관한 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소·영 및 중국 정부가 공동심의하도록 제출되어야 한다.

④ 미·소군사령부 대표자회의 개최: 남북한 양측에 영향을 미칠 긴급한 문제를 심의하고 또한 남한의 미군사령부와 북한의 소련군사령부의 행정적, 경제적 사항에 관한 당사자적인 조정을 이룩하는 방법을 구상하기 위하여 양측 대표자회의가 2주일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한국신탁통치 계획안은 처음부터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였다. 첫째, 신탁통치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민족적 모욕으로서 이를 반대하는 거족적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둘째, 소련은 이미 북한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주기지」를 토대로 임시정부의 수립과정을 통해 소련 지지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었다. 셋째, 미·소 양국간에는 주로 동유럽문제를 둘러싸고 불화가 고조되어 전후의 협조관계에 금이 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 미·소공동위원회

한국민들의 신탁통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문제에 관한 모스크바협정 제2항과 1946년 1월 16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미·소양군의 대표자회의의 합의에 따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 20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목적은 한국임시정부 수립에 협조하기 위한 기본적 문제를 합의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회의는 벽두부터 두 가지 문제로 난관에 부닥쳤다. 하나는 미·소공동위원회의 협의대상에 참가할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

의 자격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남북한의 행정과 경제의 통일이 우선이냐, 임시정부의 수립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였다.

소련대표 스티코프는 '조선에는 민주주의제도를 건립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려는 반동적·반민주적 당파와 일부 분자의 맹렬한 반항으로 초래된 중대한 난관이 있다. 앞으로 수립될 민주임시정부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민주적 제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한 대중단결의 토대 위에 창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한국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모스크바협정의 모든 조항을 지지하는 정당 및 사회단체만을 협의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즉 한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탁우익세력을 임시정부 수립에서 배제하고, 그 대신 소수파인 공산주의자들만을 우월적 지위에 올려 놓자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어야 하며 … 미국대표단이 의도하는 바는 비록 아무리 잘 조직되어 있고 아무리 정력적으로 정치활동을 할지라도 소수파에 의한 한국 지배를 저지하는데 있다'고 반박함으로써 소련의 주장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적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것은 반탁우익진영에도 임시정부수립에 관한 발표권을 주어야 하며, 좌익세력에 의한 한국지배는 방지되어야 한다는 미국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협의대상의 자격이 문제가 되자 미국측은 이 문제를 뒤로 미루고 남북 양점령지역 간의 행정적·경제적 통일에 의한 38도선의 철폐문제를 먼저 토의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소련측은 '미·소공동위원회는 남북 양지역의 행정과 경제의 통합문제를 토의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것은 장차 설립될 한국통일정부가 스스로 토의할 문제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미국이 현실적 접근을 한데 대해 소련은 정치우선적 접근을 취한 것이다.

이같은 양측의 대립으로 회의가 진척되지 않던 중 마침 소련대표 스티코프가 평양으로 소환됨으로써 미·소공동위원회는 1946년 5월 8일 휴회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1년 뒤 서울에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한때는 미·소공동위원회와 협의하고자 하는 정당 및 단체들의 신청서가 서울과 평양에

서 접수되기도 했으나, 협의대상 명부작성과정에서 우익세력을 제외시키려는 소련측의 태도로 말미암아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에 미국은 한국문제를 미·영·중·소의 4개국 외상회의에 회부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소련이 이를 거절하자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제2절 민족내부의 상황

1. 남한의 정치상황

가. 해방과 정치세력간 갈등

국내 해방정국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정치세력은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였다. 여운형은 8월 16일 치안유지와 국가건설을 위한 전국적 「건준」지부 결성을 주장한 데 이어, 8월 25일에는 완전독립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립, 대중생활의 확보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언과 강령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8월 31일에는 대부분의 도·군(道·郡)과 상당수의 면(面)단위까지 전국에 145개의 지부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좌익의 적극적 개입으로 우익 민족주의자들이 탈퇴하자 건준은 미군이 진주하기 이전에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서둘러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약칭 인공)을 선포하였다.

외형상 인공에는 좌익, 우익, 중도파가 참여한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박헌영이 이끄는 공산당계열이 인공의 하부조직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다. 이에 다른 정치지도자들은 인공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지하면서 민족진영을 규합하여 9월 7일 「국민대회준비회」를 조직·결성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청의 아놀드 군정장관은 10월 10일 성명을 통해 미군정청만이 한국에서 유일한 정부이며 모든 정치조직의 정치적 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인공은 물론 중경 임시정부까지 부인하였다.

정부수립운동이 난항을 겪고 있는 동안 남한에서는 수많은 정치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1945년 11월 1일 미군정청에 등록된 정당과 정치단체 수는 무려 250개에 이를 정도였다. 대표적 정당으로는 우익의 한민당, 좌익의 공산당이 있었고 그 외에 안재홍이 주도한 국민당, 여운형의 조선인

민당 등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 해외의 독립운동가들이 속속 귀국함에 따라 국내 정치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승만은 정당을 결성하지 않고,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세력이 결집할 것을 주장하면서 11월 2일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독립촉성중앙협의회(약칭 독촉)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독촉」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 정치기반을 마련하는데 실패하였다. 친일파 제거 문제를 둘러싸고 박헌영의 공산당과 마찰을 빚자 이승만은 인공의 주석 취임을 거부하게 되었고, 공산당은 독촉 불참을 결정하였으며 이승만은 한민당과 연합, 이를 정치기반으로 삼아 정국 장악을 시도하였다.

한편 임시정부 지도자들 중 제1진으로 귀국한 김구와 김규식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정국을 이끌어 나가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처럼 해방 직후 남한내 정국은 김구의 임정계열, 이승만의 독촉, 여운형의 인민당, 김성수의 한민당,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등 5대 정치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 정치세력은 이념대립을 바탕으로 친일파 청산, 토지개혁, 정부수립 등 건국의 3대 과제를 놓고 노선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게 되었다.

나. 신탁통치를 둘러싼 좌우익의 대결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가 미국 워싱턴발 외신을 받아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을 신탁통치 아래 두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자 국내에서는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발표된 「한국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협정」의 내용은 한국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신탁통치 문제를 한국 임시정부와 협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랜 일제 식민지체제하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독립을 열망했던 국민들은 식민지체제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신탁통치의 논의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12월 29일 우익진영에서는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위원장:김구)를 결성하고 12월 31일에 서울시민 반탁결의대회를 열어 신탁통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헌영의 공산당도 처음에는 신탁통치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박헌영의 입장은 1945년 12월 28일부터 다음해

1월 2일까지 평양에 다녀온 후 찬탁으로 바뀌었다. 박헌영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은 강대국이 한국의 통일정부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강대국의 후견(신탁통치)을 받지 않고서는 독립을 이룰 수 없다는 김일성과 소련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박헌영과 공산당의 찬탁 움직임은 국민들 사이에서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었다. 남한내에서 찬탁은 당시 국민정서에 어긋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련의 주장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싼 이같은 갈등은 결국 좌우대립으로 발전하였다. 1946년 2월 1일부터 2일까지 우익세력은 「비상국민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의 자주적, 민주적 과도정부의 수립과 기타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고정무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강력한 제동으로 이 조직은 2월 14일 하지 사령관의 자문기관이며 우익세력의 결집체인 남조선대한민국대표민주의원(의장 : 이승만, 부의장 : 김구, 김규식)으로 바뀌었다. 한편 좌익세력은 인민당 등 29개 단체의 대표가 모여 좌익 통일전선체로서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하고 찬탁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다. 좌우합작의 실패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던 미·소공동위원회의 장래마저 불투명해진 상황 속에서 좌우의 대결은 심화되었고, 분단은 기정사실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1946년 6월 3일 정읍발언을 통해 남한만의 단독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한 이후 독촉을 중심으로 단독정부(약칭 : 단정) 수립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갔다.

한편, 1946년 5월 위조지폐사건을 계기로 미군정은 공산당 간부들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는 등 공산당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여기에 한민당도 공산당 해체를 주장하면서 가세하였다.

이런 가운데 일어난 좌우합작운동은 미군정의 지원아래 중도 좌우익을 결집하여 남북한 단일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이었다. 북한은 김일성이 장악하고 남한에서도 단독정부 수립운동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여운형과 김규식은 좌우합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북한 단일정부 구성이 힘들게 될 뿐만 아

니라 내란적 상황마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미군정은 중도파를 강화함으로써 좌우익의 대립을 완화시키고 정치적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좌우합작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박헌영의 공산당과 같은 극좌세력을 좌우합작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중도우익 및 중도좌익 세력도 입장을 함께 하였다.

민주의원의 김규식과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여운형과의 회담으로 1946년 7월 하순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물론 여기에 이승만과 김구는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기부터 좌익과 우익은 토지개혁, 친일파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합작위원회는 10월 4일 중도정부를 지향하는 다음과 같은 7원칙을 발표하였다. ①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임시정부 수립 ② 미·소공동위원회 속개 ③ 토지개혁(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등에 의한 무상분배)과 중요산업 국유화 ④ 입법기구에서의 친일파 처리 ⑤ 검거된 남북의 정치인 석방 ⑥ 입법기구의 구성과 운영 ⑦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교통, 투표 등의 자유 보장 등이었다.

미군정은 1946년 12월 12일 좌우합작위원회와 한민당계열을 주축으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장 : 김규식)을 구성한데 이어 1947년 2월 5일 민정장관에 안재홍을 임명하고 5월 17일에는 남조선과도정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좌우합작운동은 당시 정치적 중심세력이었던 좌익과 우익이 빠진 상태에서 대중적 기반을 지니지 못한 채, 10월 대구폭동,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미군정과 공산당의 정면대결, 이승만의 단정 수립운동 등으로 명맥만 유지하다가 1947년 7월 19일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사실상 막을 내리고 말았다.

2. 북한의 소비에트화 과정

소련군이 진주하기전 1945년 8월 17일 북한의 민족주의세력들은 조만식의 영도아래 평남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본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아 실질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소련군이 김일성의 세력확장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1945년 11월 조만식의 조선민주당은 지방에 지부를 세우면서 세력이 확대되어 당원수가 50만에 이르렀다.

한편 중국공산당의 지지아래 구성된 화북조선독립동맹 산하 조선의용군이

귀국후 김일성과 소련군의 도전세력으로 등장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소련군은 조선의용군을 일단 신의주로 입국시킨 뒤 무장해제시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반소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11월 23일 소련군과 공산당에 항거하는 신의주학생의거의 원인이 되었다. 이같은 정치적 갈등속에 12월 13일 화북조선독립동맹의 주석 김두봉, 동맹 산하의 조선의용군 사령관 무정 등 연안파 지도자들이 귀국하였지만 정치적 중심세력을 형성할 수 없었다.

조선의용군의 무장해제는 김일성 일파의 무력독점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김일성 일파는 군대와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의 모든 직위를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김일성이 군부 다음으로 많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기관은 행정기구였다. 물론 그의 영향력 확대는 소련군의 지원에 크게 힘입었다. 먼저 소련군은 조만식과 민족주의 진영에 대한 억압을 통해 김일성이 행정기구를 장악하는 것을 도왔다. 조만식은 초기에 북조선5도행정국의 위원장직을 맡았다. 그러나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안이 국내에 알려져 조만식과 그의 추종세력이 반탁을 주장하자, 소련군은 1946년 1월 5일 조만식 일행을 고려호텔에 감금하고 정치활동을 완전히 중단시켰다. 북한지역내에서 가장 대중적 지지가 높았던 조만식의 감금으로 김일성의 활동영역은 상대적으로 넓어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김일성은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될 때 위원장직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하였고 8월에는 주요산업을 국유화 하는 등 공산정권의 기반을 굳히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로인해 민족진영 인사를 포함한 우익세력은 몰락하였고 토지를 상실한 많은 지주들이 월남함에 따라 북한지역에서 비공산계열 세력의 공동화가 초래되었다. 이후 김일성의 권력기반구축 과정은 조직적 저항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바탕위에 공산당은 1946년 8월 연안파의 김두봉이 주축이 된 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이것은 당체제에 있어서도 서울의 조선공산당을 당중앙으로 인정하는 「서울중앙」이론을 배격하고 북한 단독의 공산당체제를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11월 3일에는 북한전역에 걸쳐 도·시·군 인민위원회의 인민위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1947년 2월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및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에서 대의원 237명을 선출하여 최고입법기관으로서 「북조선인민회의」를 구성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조직, 발족되었다. 북한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제3절 대한민국 정부 수립

1.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의 결의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한국문제에 관한 모스크바협정을 실현시키려고 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데다 미·영·중·소 4개국회의에 의해 한국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려 한 제안마저 소련에 의해 거부당하자, 미국은 유엔에 의한 한국문제의 해결이 최종적인 방안이라 생각하고 이를 1947년 9월 17일 소련측에 통보함과 동시에 당일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다.

9월 21일 유엔운영위원회(일반위원회)는 찬성 12, 반대 2로 한국문제를 유엔총회의 의제로 채택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어 9월 23일에 개최된 총회는 찬성 41, 반대 6, 기권 7로 한국문제를 정치위원회(제1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결의하였다.

정치위원회는 10월 28일부터 한국문제를 토의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서도 한국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놓고 미·소간에 심한 대립을 보였다. 미국은 먼저 중앙정부를 수립하고 다음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대의 철수를 주장한 반면, 소련은 외국군대가 철수하고 난 다음에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표결결과 소련안은 찬성 6, 반대 35, 기권 10으로 부결되고, 미국안이 찬성 41, 반대 0, 기권 7(공산권은 불참)로 가결되어 총회에 이송되었다. 미국안은 수정을 거쳐 11월 14일 유엔총회에서 찬성 43, 반대 9, 기권 6으로 가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유엔한국임시위원회의 설치와 한국의 총선거에 관한 결의」라는 한국문제에 관한 최초의 결의가 유

엔총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정부의 탄생을 가져왔다. 그 결의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민 자체의 문제이며 그 자유와 독립에 관련된 문제로서, 이 문제는 그 지역 주민대표의 참석없이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1) ①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한국국민의 대표들을 본 문제심의에 참여토록 초청하며
② 공정한 선거를 감시할 목적으로 한국 전역을 통해 감시·협의할 권한이 부여되는 9개국(호주,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으로 구성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을 설치하고

(2) ①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한국에서 이 위원단의 감시아래 인구비례에 따라 보통선거와 비밀투표원칙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고
② 선거뒤 가급적 빨리 국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수립하며
③ 정부는 남북한의 군정당국으로부터 정부의 모든 기능을 이양받고, 자체의 국방군을 조직하며, 가급적 빨리 가능하면 90일안에 점령군이 철수토록 조치한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는 9개 국가 중 우크라이나는 유엔총회의 결의에 항의하고 한국문제에 유엔이 간섭하는 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 위원단에의 참가를 거부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소련도 유엔이 한국에 위원단을 파견한다 하더라도 그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구성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장 인도대표 K.P.S. Menon)은 1948년 1월 8일 서울에 도착하여 1월 12일 첫모임을 갖고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북한지역에 위원단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다.

북한지역에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위원단은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관하여 유엔중간위원회(소총회)와 협의하였다. 2월 19일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중간위원회는 선거실시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결국 2월 26일 위원단이 한국내의 가능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 결의(A/583)를 찬성 31, 반대 2, 기권 11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1948년 5월 10일내에 선거가능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남북협상의 실패

소련의 거부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이 38선 이북지역에는 미치지 못하자 반탁과 찬탁으로 좌우대립의 양상을 보여 왔던 남한내 제정치세력은 다시 단독선거 및 남한 단독정부 수립 문제로 분열양상을 보였다.

이승만의 독촉(獨促), 김성수의 한민당, 월남인사로 구성된 조선민주당은 유엔 소총회의 결의대로 남한 지역내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 단독선거 및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다.

1948년 2월 10일 김구는 「3천만 동포에게 읍고(泣告)함」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남북을 합하여 완전한 독립의 실현이 유일한 숙원이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어 2월 16일 김규식과 함께 북한의 김일성·김두봉에게 남북한 지도자회담을 제의하는 서신을 보냈으며,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게도 남북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김구와 김규식은 3월 12일 단독선거·단독정부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3월 26일 평양방송을 통해 김구 등의 제의를 수락하면서 북조선노동당을 비롯한 9개 정당·사회단체의 이름으로 남한의 모든 정당·사회단체에 남한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4월 14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김구와 김규식 등이 북한행을 결심하자 이 문제를 둘러싸고 큰 혼선이 일어났다. 김구는 4월 19일 서울을 떠나 다음날 평양에 도착했는데, 회의는 4월 19일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회의에는 남북한의 52개 정당·사회단체 695명의 대표가(남한측 240명 포함) 참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회의는 북한이 미리 준비한 각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질문이나 토론도 허용되지 않았다. 4월 30일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의 4자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① 외국군대는 즉각 동시에 철수할 것
② 전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민주주의적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③ 총 선거를 통해 입법기관을 선출한 다음 헌법을 제정하고 통일민주정부를 수립할 것
④ 남한의 단독선거를 단연 반대할 것

북한의 전략은 ① 미·소 양군의 즉시 동시 철수 → ② 전조선인민의 정치회의 개최 → ③ 임시정부 수립 → ④ 총선거에 의한 입법기관 구성 → ⑤ 공산주의적 통일정부 수립의 도식이었다.

5월 5일 김구와 김규식은 서울로 돌아와서 '회의는 자주적·민주적 통일조국을 재건하기 위하여 남한만의 단선·단정을 반대하며 미·소 양군의 철퇴를 요구하는데 의견이 일치하였다'는 요지의 공동성명과 함께 북한이 약속하였다는 ① 남한에 대한 송전 계속 ② 연백 저수지 개발 ③ 조만식의 월남 허용 등 3가지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양 지도자가 오랫동안 희망을 걸어 온 한국인의 자결에 의한 통일독립국가 건설의 꿈은 사실상 남북협상에 대한 북한의 사전 계획된 전략으로 말미암아 무산되었다. 그 후 북한은 남한에서 선거가 실시되자 그들이 소련의 지원하에 추진되고 있던 공산정권 수립의 공식화를 서두르는 한편, 제2차 남북정치협상회의를 1948년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해주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구와 김규식이 이를 거부했다.

3. 대한민국 정부 수립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결정에 따라 한국정치사상 최초의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실시되었다. 공산계열의 선거방해와 일부 단독선거·단독정부를 반대하는 측의 선거 불참도 있었다. 선거에는 7,840,871명의 등록된 유권자 중 7,487,649명, 즉 전체등록 유권자의 95%가 투표에 참가하여 198명의 제헌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국회의원 대부분이 무소속이었고 정당으로서는 한국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5월 31일 제헌국회가 소집되었으며, 초대의장에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제헌국회는 앞으로 북한에서 선출될 의원들을 위해 인구에 비례한 의석수의 3분의 1인 100여석을 공석으로 남겨 두었다.

그리고 제헌국회는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7월 17일 이를 공포하였다. 이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제4조)고 선언하였다. 이어 제헌국회는 7월 20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8월 15일에는 역사적인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이 내외에 선포되었다. 이로써 35년동안의 국권상실과 3년간의 군정을 청산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10월 8일 유엔총회에 제출할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정부의 기능은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엔 전회원국의 돈독한 협조 아래 한국의 독립과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12월 6일 제3차 유엔총회 정치위원회는 위원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대한민국 대표의 참석을 초청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총회에 처음으로 대표단(단장 장면)을 파견하였다. 이어 유엔총회는 한국임시위원단의 상기 보고서를 상정, 논의하고 12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다는 결의를 찬성 48, 반대 6, 기권 1로 채택하였다. 결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할 수 있었고 또한 대부분의 한국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유효한 지배와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 정부(a lawful government)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하며, 이 정부는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정부(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임을 승인한다."(2항)

"점령국들이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으로부터 그들의 점령군을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3항)

"1947년 11월 14일 총회결의에 설정된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호주,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로 구성되는 한국위원단(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UNCOK)을 설치하여 임시위원단의 업무를 계승하고 본 결의에 명시된 한국정부의 지위에 유의하여 본 결의의 제조항을 수행토록 할 것을 결의한다."(4항)

유엔총회가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데 이어 1949년 1월 6일 미국을 시작으로 자유우방 각국이 대한민국 정부를 잇따라 승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게 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은 1949년 1월 19일 유엔가입을 신청하여 4월 8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찬성 9, 반대 2의 지지를 받았으나,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헌장 제4조 제2항에 의한 총회에의 가입권고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후 11월 22일에도 총회가 재심을 요청했으나 역시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다.

4. 북한 공산정권의 성립

해방과 함께 남한에 앞서 이미 단독정권의 성격을 갖는 소비에트식 정치체제를 구축해 왔던 북한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설치와 남북한 총선거 실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게 되자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서둘렀다. 북조선인민회의는 1947년 11월 1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초안 작성을 결정하고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위원회는 12월 20일 헌법초안을 확정하였다.

사실상 이 때 북한에서는 북한만의 단독정권 수립을 위한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에 있었다. 이미 공산주의식 통치체제에 따라 북조선노동당과 북조선인민회의를 조직·발족하였고, 헌법초안의 작성과 함께 1948년 2월 8일에는 인민군을 창설하였다. 1948년 4월에 개최된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초안」이 승인되었다. 이어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의 구성을 위한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212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단일후보자에 대한 흑백함식의 찬반투표였다. 북한은 선거에 등록된 총유권자 4,526,065명가운데 99.97%인 4,524,932명이 참가하였고, 이 중 98.49%인 4,456,621명이 찬성투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북한은 이 선거에 남한의 유권자 총 8,681,746명의 77.5%인 6,762,407명이 비밀지하투표에 참가하여 1,080명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중 1,002명이 38선 이북지역인 해주에서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를 열고 남한을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60명을 선출하였다는 근거없는 내용을 발표했다.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이 채택(9.8)된데 이어 내각을 비롯한 정권기관이 구성되었으며 9월 9일에는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다.

10월 2일 소련이 최초로 북한정권을 승인한데 이어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북한을 승인하였다. 1949년 2월 북한이 유엔가입을 신청했으나, 유엔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한 1948년 12월 12일의 유엔결의에 의거하여 북한의 유엔가입신청을 거부했다.

제 2 장

통일정책의 전개

제1절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1.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공산정권을 38선 이북의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있는 소련군 통제하의 괴뢰정부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반국가 불법단체로 규정·취급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통일정책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1948년 12월 12일 유엔 제3차 총회결의에서 출발한다.

제1공화국 초기의 통일정책은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유엔 감시하에 북한지역만의 선거를 실시하여 선출된 북한의 대표를 대한민국 국회에 참여케 함으로써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남북한 총선거는 대한민국 정부를 북한의 정권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남북한 총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북한의 기습공격에 의한 6·25전쟁을 계기로 통일론은 북진통일론으로 전환되었다. 이승만대통령은 대한민국 주권하에 북한지역에 이르기까지의 통일정부를 세우는 북진통일론을 주장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되고 1954년 6월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유엔감시하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제기함으로써 북진통일론은 남북한 총선론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 동수의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함으로써 제네바 정치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북진통일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가. 북한에서만의 자유총선론

제1공화국 초기의 통일정책은 유엔결의에 의한 북한에서만의 총선론이었다. 즉 유엔감시하에 북한에서만의 총선거를 통해 공석으로 남아 있는 국회의석을 채우는 것이 건국초기의 통일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수립 과정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국회의 결의와 정부의 입장천명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정에서 공식적인 대북제의가 처음 나온 것은 1948년 6월 12일 제헌국회에서였다. 제헌국회는 후일 북한에서 선출될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인구수에 비례한 의석수의 3분의 1인 100여석을 공석으로 남겨두고 6월 12일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이 결의문 내용은 북한동포는 우리와 같이 유엔결의에 의하여 자유분위기 속에서 속히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진정한 민중대표를 선출하여 국회로 보내주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공포식에서 행한 이승만 국회의장의 기념사에서도 되풀이 되었다. 이승만 의장은 기념사에서 “북한동포에게 100여석의 의석이 그들의 대표를 위해 공석으로 보류”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 “북한도 유엔결의에 순응하여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선출된 대표를 국회에 보내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을 내외에 선포함과 동시에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을 천명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전 한반도에 대한 주권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② 선거가 보류된 북한에서 조속히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여 북한동포를 위하여 국회에 공석으로 남겨둔 100석의 의석을 채워야 한다.
③ 북한수복은 북한동포들의 자발적 의사가 계속적으로 봉쇄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무력에 의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권한이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유엔결의에 따라 북한이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 국회에 합류하라는 공식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리고 만일 북한이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통일을 위해서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된다는 것이었다.

제1공화국 초기의 이러한 입장은 대유엔관계 등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1949년 9월 제4차 유엔총회 개최를 앞두고 국회는 「한국통일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그것을 유엔에 전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엔한국위원단의 계속적 활동과 증강을 보장할 것
② 유엔의 모든 가맹국가들은 한국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
③ 대한민국의 유엔가입을 승인할 것

정부수립과 더불어 많은 정당이 출현하였으나 이들 정당들도 특별한 정책이나 통일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대체로 북한만의 선거론 또는 무력행사 불사론의 통일정책을 지지하거나 때로는 오히려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나. 북한의 무력통일 준비와 6·25전쟁 발발

제1공화국 시기에 북한은 초기에는 남북한 총선론을 주장하다가 6·25전쟁 직전에는 남북국회의 통합을 제의하는 등 위장 평화통일 공세를 전개했다.

북한이 통일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처음 밝힌 것은 1948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김일성이 발표한 「정강」의 첫머리였는데, 그 내용은 북한 정권이 유일한 중앙정부라는 것과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하여 미·소 양군은 동시에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1949년에 들어오면서 군사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대남전략 수행을 위한 체제정비에도 힘을 기울였다. 특히 김일성은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조소(朝蘇)간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조인했다. 이 군사원조비밀협정에 의해 실제로 소련이 북한에게 1949년부터 6·25발발 때까지 군사장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북한은 1949년 중순에 들어와서 대남전략의 효율적 수행과 적극공세를 위해 통일전선기구를 정비·강화했다. 6월 25일 평양에서 71개 정당·사회단체대표들의 참석하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발족되었는데 그 행동강령은 ① 미군의 즉각철수 및 유엔한국위원단의 축출 ②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전인민의 동원 ③ 남한에서의 인민위원회 설립과 합법화를 포함한 사회주의 개혁을 위한 투쟁 등을 규정하고 있다.

6월 28일에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평화적 통일방책 선언서」를 발표하여 마치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처럼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했다. 그 선언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통일사업은 조선인민 자신의 힘으로 필히 실천
② 미군의 즉각 철수
③ 유엔한국위원단의 즉각 철수
④ 남북조선의 통일과 통일적 입법기관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
⑤ 제정당·사회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선거지도위원회의 지도하에 선거실시
⑥ 1949년 9월 입법기관 선거 실시
⑦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대책의 강구
⑧ 선거지도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남북 조선에 현존하는 경찰기관은 선거지도위원회의 직접 관할하에 둠
⑨ 선거에 의해 수립된 입법기관은 조선공화국의 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의해 정부를 구성

이것은 북한이 제안한 최초의 구체적 통일방안이다. 북한은 이와 함께 6월 말에는 북로당과 남로당을 「조선로동당」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대남전략추진체제를 갖추었다.

1950년에 들어오면서 국내외적 상황변화는 북한의 계획된 남침의욕을 부추겼다. 1949년 6월말까지 주한미군 철수완료, 1949년 10월 중국 공산정권의 등장, 1월 12일의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애치슨(Dean Acheson) 미 국무장관의 공식선언 등은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통일의 호기를 느끼게끔 하는 대외적 사건들이었다. 이와 관련 1950년 1월 26일 최용건 민족보위상은 "비행기, 탱크, 전함과 현대무기로 무장된 인민군은 어떤 전투임무도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고… 조국의 통일과 독립의 적을 위해 언제나 전투할 태세가 되어 있다"고 호언했다.

일련의 평화통일공세를 전개하던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기습공격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전면남침을 감행했다. 이로써 우리민족은 3년여에 걸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게 되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요청으로 그날로 긴급소집되어 북한의 남침을 「평화의 파괴」라고 규정하고 적대행위의 중지와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를 찬성 9, 반대 0, 기권 1, 결석1(소련)로 채택했다.

북한이 이 결의를 무시하고 남침을 계속하자,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27일 유엔회원국이 북한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를 찬성 7, 반대 1, 기권 2, 결석 1(소련)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가 채택되자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침략행위의 저지가 바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북한군의 격퇴를 위한 유엔의 결의들이 채택되고 있는 동안에 전세는 북한공산군들의 군사계획대로 전개되어 개전 3일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1주일만에 수원, 원주, 2주일만에 천안, 3주일만에 남한의 절반이 점령되었으며, 8월~9월 사이에는 경남북의 일부만 남긴 채 남한의 거의 전체가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대구와 부산을 근거지로 반격전을 벌이던 유엔군은 9월 15일 인천상륙을 계기로 전세를 일시에 만회하여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고 10월 1일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했다.

전황이 이렇게 되자 제5차 유엔총회는 10월 7일 「유엔한국통일위원단」의 설치와 이 위원단으로 하여금 한국의 안전보장과 한국에서의 통일독립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에 의거하여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설치되고,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고 북한지역으로 진격하게 됨에 따라 10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수복될 북한지역에 대한 행정권은 대한민국이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동지구에 행정관을 파견할 예정임을 천명했다.

한편 1951년 6월 3일 말리크 유엔 소련대표의 휴전교섭 제의를 유엔군측이 받아들임으로써 7월 8일 예비회담을 거쳐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개최되었다. 쌍방이 합의한 의제는 다음과 같다.

① 적대행위의 중지조건하에서 비무장지대의 설정을 위한 군사분계선 설정

② 휴전을 위한 구체적 조치
③ 전쟁포로에 대한 조치
④ 관계당국에의 권고

휴전회담은 1953년 5월 5일 휴전회담 한국측 대표의 철수, 6월 9일 통일없는 휴전반대와 북진통일 국민운동의 전국적 전개,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2만 7천여명의 반공포로 석방, 휴전협정 조인반대 등 우리 정부와 국민의 거국적 반대에 따른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이 휴전협정은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며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었지만, 이 휴전협정에 의해 획정된 군사분계선인 휴전선은 남북분단을 고착화시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다. 휴전과 제네바회담

휴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련국간 정치회담이 필요하게 되었다. 휴전협정은 제4조 제60항에서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휴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내에…정치회담을 소집하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유엔 총회는 1953년 8월 28일 한국휴전협정 체결을 시인하고,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 개최를 환영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에서 유엔회원국으로서 한국에 군대를 파견한 16개 국가와 한국이 이 회담의 일방당사자로서 참가할 것과, 미국정부는 이들 국가와 협의한 후 쌍방이 만족하는 장소와 시일에 하되 1953년 10월 28일 이내로 이 회담이 개최되도록 다른 일방당사자와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아울러 다른 일방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소련도 이 회담에 참가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미국은 정치회담 개최에 관한 제반 절차문제를 협의할 목적으로 1953년 10월 26일부터 판문점에서 중국 및 북한 대표들과 준비회담을 가졌으나, 공산측이 부당한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준비회담은 아

무런 성과 없이 12월 12일 중단되었다.

그 후 1954년 1월 개최된 독일 및 오스트리아 문제에 관한 미·영·불·소 4개국 외상 베를린회의에서 현안인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토의하기 위해 4월 26일부터 제네바에서 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였는데, 연합국측에서는 한국·미국을 비롯한 15개국(남아연방 불참)이, 공산측에서는 북한·중국·소련이 각각 참가하였다.

제네바회담 개막후 한국의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4월 27일 제1차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유엔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수립되었으며,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북한에서만의 자유선거를 실시하되, 선거실시 전에 중공군의 철수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일 북한외상은 같은 날 「전조선위원회」의 구성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통일조선정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남한 국회에서 각각 선출된 대표로서 「전조선위원회」를 조직하여 동 위원회에서 선거법 초안을 준비하며, 6개월 이내에 외국군대를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었다.

한국대표는 유엔측 각국 대표들과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북한만의 단독선거안 대신에 유엔결의에 의거하여 유엔감시하에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동시 자유선거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제시한 「14개 통일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통일독립민주의 한국을 확립할 목적으로 이에 관한 종전의 유엔결의에 의거하여 유엔감시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② 자유선거는 이러한 선거가 종래 가능하지 못했던 북한과 남한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절차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③ 선거는 이 제안이 채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④ 선거실시 전후와 선거기간중 선거감시에 종사하는 유엔감시위원은 선거지역에서 자유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감시하고 필요한 행동 및 언론 등의 자유를 전적으로 향유한다. 그 지역 소관의 행정당국은 모든 가능한 편의를 제공한다.
⑤ 선거실시 전후와 선거기간중 입후보자 및 그 운동원과 가족 등은 행동 및 언론 등의 자유와 기타 민주국가에서 인정되고 보장되는 인권의 자유를 향유한다.
⑥ 선거는 비밀투표와 일반적인 선거권의 기초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⑦ 전한국의회의 대표수는 전국인구의 정비례에 의한다.

⑧ 선거지역의 인구에 대한 정확한 비율에 의한 대표수를 배정하기 위하여 유엔 감시하에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⑨ 전한국의회는 선거직후 서울에서 개최한다.
⑩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는 전한국의회의 입법사항으로 위임할 것.
  ㉮ 통일한국의 대통령을 새로이 선출하느냐의 여부
  ㉯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문제
  ㉰ 군대의 해체문제
⑪ 현존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전한국의회에서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⑫ 「중공」군은 선거일 1개월 전에 한국으로부터의 철수를 완료한다.
⑬ 한국으로부터의 유엔군 철수는 선거전에 시작할 수 있으나, 전한국에 대한 완전한 통제가 통일한국정부에 의해 실현되고 또 이 사실을 유엔이 증명하기 전에는 완전히 철수해서는 안된다.
⑭ 통일독립 민주한국의 영토적 통합성과 독립성, 독자성은 유엔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6월 15일에 남일 북한외상은 4월 27일의 제1차 제안을 수정해서 최종일인 6월 15일 다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1차 제안 때와 입장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쌍방간 대립으로 회담에 진전이 없을 뿐 아니라, 공산측은 회담을 정치적 선전도구로 이용하려했기 때문에 결국 6월 15일 연합국측은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회담을 종결지었다.

① 유엔은 그 헌장에 의거하여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취하고,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한국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정당한 모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② 통일독립된 민주한국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한국 토착인구의 직접비례에 따라 국회의원을 선출할 진정한 자유선거가 유엔의 감시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네바회담 이후에도 제1공화국 정부는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른 통일의 실현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었다.

라. 북한의 대남정책

북한은 제네바 정치회담이 결렬된 후 1954년부터 시작한 전후복구 3개년

계획(1954~1956)의 완수에 주력하는 한편, 제네바 회담이 결렬된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또다시 평화통일공세를 취하였다.

1956년 4월 28일 노동당 제3차 대회를 계기로 북한은 평화통일공세를 더욱 강화하였다. 김일성은 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혁명적 민주기지」의 건설과 관련, "조국의 통일은…조국의 평화통일의 견고한 담보인 사회주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의해서만, 그리고 생산을 증가시키고 인민의 질적·문화적 생활수준을 더욱 개선시키며, 민주기지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공고화함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평화통일선언문」을 제시했다.

① 전체 조선인민의 총선에 의한 통일정부의 수립
② 정전의 성과를 평화에로 전환
③ 남북접촉과 협상
④ 반미 공동투쟁의 강화
⑤ 평화유지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정의 체결, 이를 위한 국제회의의 소집
⑥ 전쟁도발 및 평화위협행동 발생의 방지 보장

북한은 1956년부터 통일문제를 거론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외세 또는 외군의 철수를 특히 강조하였는데 1958년 중공군이 철수한 때부터는 이 외군철수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게 되었고, 이 때부터 미군철수가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북한은 제네바회담 이후 그들이 제의해 왔던 통일방안들을 종합하여 1959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6차회의에서 남일 부수상이 남북한 상설위원회의 조직을 주요골자로 하는 「7개항의 통일방안」을 제시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조선으로부터 일체의 외국군대 철수
② 단기간내 남북조선의 군대를 10만 이하로 감축
③ 남북조선은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
④ 외국군의 철수이후에 전조선의 자유선거 실시
⑤ 자유선거를 포함한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정당·정부·국회 또는 정당·사회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상설위원회의 구성

⑥ 남북조선간의 상호왕래, 서신거래, 경제·문화·예술·체육 등의 상호교류 실시
⑦ 남북조선 경제대표로 구성되는 남북조선 경제발전 및 교류 상설위원회의 우선 조직

남일의 7개항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한 대남평화공세는 한국에서의 4·19 혁명후의 일시적 혼란기에 더욱 고조되었다.

2. 장면 정부의 통일정책

제1공화국 정부가 1960년 4·19혁명으로 무너지고,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를 거쳐 내각책임제 헌법에 기초하여 7·29 총선거를 실시한 결과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보수·혁신의 많은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정치활동에 나서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다양한 통일방안이 대두되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장면 정부는 제1공화국 정부의 「유엔감시하의 북한만의 자유선거」 또는 「북진통일론」 대신에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혁신계와 일부 학생들은 남북교류·협상론, 중립화통일론 등 백화제방식 통일논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제2공화국은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통일문제의 논의에 있어서는 가장 활발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

이 기간동안 북한은 한국내부의 격렬한 통일논의와 그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불안을 이용하여 다양한 대남제의 공세를 전개하였고 남북연방제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가. 4·19혁명과 남북한 자유총선론

4·19 혁명후 통일논의가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을 때 허정 과도정부수반은 취임 직후인 1960년 5월 3일 「국가정책에 대한 근본방침을 천명하는 성명」에서 반공정책과 관련, "과거보다도 일층 더 견실하고도 확고하게 반공산주의의 정책을 전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허장성세하는 반공의 물질적·정신적 낭비를 없애고 이것을 유효하고 구체적인 대공방위태세를 확립하는데로 돌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그후 여러 성명을 통해 감정적인 결정과 북진통일 등의 구호에 신중해야 하며, “유엔결의에 정하여진 원칙에 따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실현한다.”는 기본방침을 천명하였다.

4·19혁명후 실시된 7·29 총선을 며칠 앞둔 7월 26일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① 유엔감시하에 남북한을 통한 완전한 자유선거로써 평화통일을 도모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거감시위원단의 구성원은 유엔결의로서 선임하되, 각자 진정한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회원국가로 할 것이다.
③ 선거 이전에 남북연합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안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고 한 유엔결의와 배치되므로 이를 반대한다.
④ 통일전 남북교류문제는 공산파괴공작이 진정하게 정지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다.
⑤ 통일된 한국은 민주주의와 민권자유를 보유하는 국가가 되어야 하며, 적색독재나 백색독재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7·29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민주당이 제시한 통일방안이 바로 제2공화국의 통일정책으로 추진되었는데 민주당의 통일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였다.

1960년 8월 23일 구성된 장면 내각은 “유엔결의를 존중한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선거에 의한 통일의 실현”이라는 통일원칙을 제시했다. 통일문제에 관한 장면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처음 밝혀진 것은 초대 내각이 구성된 다음 날인 8월 24일 정일형 외무부장관의 「7개 외교정책성명」에서이다. 제1항에서 정일형 외무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진통일같은 무모하고 무계획적인 슬로건을 버리고 국제연합의 결의를 존중하여 국제연합감시하에 남북한을 통한 자유선거에 의한 통한정책을 수행한다.”

뒤이어 장면 국무총리도 8월 27일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을 통해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선거를 재확인하였다.

“9월 유엔총회가 개최되겠으므로 정부는 유능한 대표진을 파견하여 한국통일안과 한국의 유엔가입에 관하여 국제여론을 환기하겠으며, 통일안에 있어서는 구정권의

태도와는 달리 유엔 자유국가들의 노선과 일치하도록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을 통한 자유선거에 의하여 통일을 달성한다는 주장을 강조하는 바이다."

정일형 외무부장관은 1960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통일방안에 관한 국회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서 종래의 「유엔결의에 의하여」를 「유엔결의를 존중하여」로 바꾼 이유로 "제15차 유엔총회에서 15개 내외의 亞·阿 신생국가가 가입하게 되면 유엔회원국 수가 근 100개가 되므로 당초 5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세워진 통일방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만일 유엔총회에서 용공적 결의가 채택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변경시키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 통일에 관하여 유엔의 어떤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절차는 무시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남북총선거 감시단 구성에 있어서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나 기타 유엔에서 별도로 파견한 위원단은 받아들이되, 중립국이나 공산국가가 절대다수를 차지할 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부의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중립화통일론이 제기되고 이에 동조하는 일부학생들의 움직임까지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미국 맨스필드(Mike Mansfield)상원의원, 크리슈나 메논 유엔 인도수석대표 및 일본, 미국 등지의 일부 교포들의 주장이 국내에도 전해지자 혁신계는 물론 보수야당 일각에서까지도 남북교류 또는 중립화통일론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정부는 10월 8일 정일형 외무부장관의 담화와 11월 1일 장면 국무총리의 「한국중립화에 대하여」라는 성명을 통해 "제네바회담에서 유엔측 16개국이 이미 선언한 바 있고 그 이후 매년 유엔총회의 통한에 관한 결의에 의하여 재확인된 원칙대로 유엔감시하에 남북한을 통한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민주통일을 성취하고자 한다"고 통일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강조하면서 오스트리아식 중립화통일론을 배격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회도 11월 2일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에 관한 결의」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같이 민주당 정부와 국회의 통일방안은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거 유엔감시하의 인구비례에 따라 남북한 자유선거를 실시한다는 제네바 정치

회담의 통일방안에 기초하고 있다.

혁신계와 신민당 소속의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장면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으나, 장면 정부는 외무부에 통일문제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통일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태세를 취했다.

그러나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확고한 입장 천명과 경고, 그리고 사회 일각에서의 경계론에도 불구하고 1961년초에 들어서서 주로 혁신계, 학생층 및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 중립화통일론 및 남북교류론은 더욱 확대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장면 국무총리는 1961년 1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정치인들이 내세운 남북교류문제의 논의는 국민을 오도할 염려가 크며…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어 정일형 외무부장관도 1월 7일 "정부의 통일방안은 유엔감시하에 남북총선거란 원칙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하고 일부소수 정치인이 남북한 서신왕래 등 교류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과 동조하는 결과가 되므로 반공통일의 국기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1월 8일에는 민주당도 중립화통일, 남북협상론, 남북인사교류론, 남북서신왕래론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신민당 의원총회도 1월 14일 남북교류, 중립화통일을 배격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회도 3월 13일 유엔감시하의 총선거에 의한 통일방안을 재확인하였으며, 정부는 3월 19일 통한각서를 발표하였다.

1961년 5월 10일에도 장면 국무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민주당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정부는 빠른 시일안에 통일문제연구소를 설치하여 여야가 협력해서 통일문제를 다루게 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남북회담 주장을 절대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나. 혁신계와 학생들의 통일논의

혁신계는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한국의 국력신장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정부의 「선 건설·후 통일론」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통일우선론, 중립화통일론 등을 주장하였다.

7·29선거에서의 패배로 약화된 이들 혁신세력들은 나름대로의 구심점을 찾고자 1960년 9월 15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결성했다. 이 협의회에

는 사회대중당, 혁신당, 사회당 등 3개 정당과 천도교, 유교회 등 종교단체, 민주민족청년동맹 등 청년단체, 기타 구국동지회, 민주건양회, 4월혁명학생연합회 등의 여러 단체가 가입하고 있었다. 이 협의회는 「자주, 평화, 민주」라는 통일 3대원칙을 제시하고 9월 30일 성명을 발표, 다음과 같이 그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즉각적인 남북정치협상을 실현한다.
② 남북 민족대표들에 의한 민족통일건국최고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외세를 배격한다.
④ 남북한 대표회담에서 통일을 협의한다.
⑤ 오스트리아식 중립 또는 영세중립을 택할 것이냐 또는 다른 형태를 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통일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에서 이탈한 통일사회당, 혁신당, 삼민당, 광복동지회 등은 1961년 2월 21일 「중립화조국통일운동총연맹」을 조직하였다. 그들의 이탈이유는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의 「자주, 평화, 민주」란 통일원칙이 너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또 통일의 기본방향이 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중립화조국통일운동연맹의 통일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사회를 통한 국제적 보장하에 영세중립통일을 기하여야 하며,
② 영세중립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나 중립화조국통일운동총연맹이나 모두 중립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그래도 전자는 오스트리아식 중립을 택할 것이냐 영세중립을 택할 것이냐 또는 다른 형태를 택할 것이냐는 통일후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그 기구의 명칭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중립화통일이 확고한 기본방향이었고 더 구체적으로는 영세중립화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민주당정부의 확고한 남북교류·협상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혁신세력에 의한 통일론은 확대되었으며, 이들이 주도한 통일운동은 대학가에까지 번졌다.

1960년 9월 2일, 24~25일 서울대, 고려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통일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 대체적인 토론요지는 다음

과 같으며, 중립화통일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① 무력통일론은 비현실적이다.
② 적극외교로써 국제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③ 통일문제는 전국민적 숙제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④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꾀한다.
⑤ 동시에 이념적인 통일을 하여 사상전에 임할 태세를 완벽히 하여야 한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5월 4일에 "조국의 마지막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남북학생들의 뭉친 힘뿐이다"고 주장하면서, 「학생회담, 학생기자교류, 학술토론회, 모든 예술·학문·창작의 교류, 학생친선체육대회 등을 단시일내에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는 남북학생회담 제의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5월 5일에는 17개 대학이 참가한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 3일자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의 남북학생회담 제의를 전면적으로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실천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① 북한 및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환영한다.
② 남북학생회담 장소는 판문점으로 한다.
③ 회담일시는 5월 이내로 하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에 발표한다.
④ 정부는 우리의 학생회담을 위해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
⑤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은 지역별로 대표를 선정하여 회담준비를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춘다.

정부는 이러한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만약 학생들이 판문점에 가는 일이 있으면 전원 체포하며 학생회담을 저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은 5월 14일 「남북학생회담 및 통일축제 개최에 관한 원칙 및 우리의 요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학생회담을 5월 20일에 결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북한의 대남정책

4·19혁명으로 한국내 무분별한 통일논의가 활발해지자 북한은 1960년 4월 21일 「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미군철수, 남북조선 제

정당·사회단체의 연석회의 개최, 외국의 간섭없는 남북조선선거 실시 등을 주장하였다.

이어 5월 15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일련의 대남제의 공세를 통해 한국의 혁신계 정당과 일부 사회단체 및 학생들의 통일논의를 부추기는 등 자주적 평화통일을 특히 강조하였다.

한국에서 7·29선거가 끝난 후 장면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8월 15일 김일성은 8·15 해방 15주년 경축대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남북연방제」를 제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는 민주주의적 기반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② 아직 남한 당국이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의 연방제를 제의한다.
③ 만일 상기 제안 등을 남조선 정부당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실업계 대표로 구성되는 순전한 경제위원회라도 조직하자.
④ 남북조선 문화사절 왕래와 과학·문화·예술·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를 다시 한번 제의한다.
⑤ 남한에서의 미군의 즉시 철퇴를 요구하며, 남북 대표들이 평양이나 서울 또는 판문점에서 만날 것을 남한당국과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에게 제의한다.

1961년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평양방송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성명 등을 통하여 남북교류와 남북협상을 선동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1월 18일 “남북간의 접촉과 협상을 실현하는데 긍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면 남조선의 정당 및 사회단체 또는 개별적 인사들의 어떠한 제의에도 기꺼이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가까운 시일내에 판문점이나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조선사람끼리 모여앉아 상론하면 해결못할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5월 13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결성하고, 이후 남한내의 통일논의를 더 혼란시키고 혁신계의 입장을 고무하기 위해 대남전략기구를 정비강화하였다.

3.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은 유신헌법 이전의 제3공화국의 통일정책과 이후

의 제4공화국의 통일정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제3공화국은 1961년부터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8·15 선언」 직전까지의 전기와 이후부터 1972년 말까지의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전기는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의 구축기로서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국내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반공의식을 재강화하며, 무분별한 통일논의를 극복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선건설 후통일」 정책으로 요약된다.

이 시기 북한은 제2공화국 시대에 보여주었던 일련의 평화공세를 지양하고 대남무력도발 자세로 전환하였다. 1968년 청와대기습사건, 푸에블로호사건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제3공화국 후기는 평화통일정책의 본격적 추진기로서 1970년 「8·15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정상화를 위한 남북대화는 남북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인도적 차원의 남북적십자회담과 정치적 차원의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북한의 일방적 대화중단으로 남북관계는 다시금 비정상적인 관계에 들어갔다.

제4공화국에 들어와서도 정부는 제3공화국의 연속선상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들을 취하였다. 1973년 「6·23선언」을 발표하였고, 1974년 1월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한데 이어 8월에는 「평화통일 3대원칙」을 천명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6·23선언」에 대한 대응으로 「조국통일 5대강령」을 발표하였으나, 8월에는 이른바 「김영주 선언」을 통해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평화와 적대의 이중적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한국에 대해 제의했던 평화협정을 1974년부터는 미국과 체결하자고 주장함으로써 미국과의 직접교섭을 기도하고 남북한 당국간의 접촉대화보다도 「대민족회의 소집」 등의 정치협상회의를 주장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국론분열에 주력하였다. 특히 김일성이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에 고무되어 대남적화전략을 강화함에 따라 1970년대 중반의 남북관계는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가. 제3공화국의 통일정책

(1) 반공태세 강화와 통일을 위한 실력배양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는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였는데 제1항에서 “반공을 국시의 제1의(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고 하였으며, 제5항에서는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기울인다.”고 함으로써 「반공태세의 재정비 강화」와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본입장에 입각하여 1961년 6월 24일 김홍일 외무부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무력에 의한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며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통일의 접근방향은 이후 연두교서, 성명, 유엔총회에 제출한 각서 등에서 되풀이되었는데 이는 현재의 내외여건하에서는 먼저 실력을 배양한 다음에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입장은 제3공화국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 선거를 거쳐 12일 17일 제3공화국이 출범하였다. 1964년 1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박정희 정부의 통일방안은 유엔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통일, 실지회복에 의한 국토통일임을 밝히고, 통일을 위한 제반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태세도 갖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국회도 1964년 11월 29일 통일방안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재확인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토착인구비례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국토를 통일한다.
② 선거감시단은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유엔 회원국가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③ 통일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통일방안은 일체 배제한다.

1965년 1월 16일 국회에 보낸 연두교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토통일에 대하여는 종래의 기본방침에 추호도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다.”고 천명하였

으며, 1월 27일 민주공화당의 국회 기조연설에서도 통일문제와 관련 “우리의 공약사항의 하나인 국토통일 연구기구의 설치를 연내로 완료하고 승공통일을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후 1965년 대학생의 한일회담 반대시위와 사회 일각에서 무분별한 통일논의가 있게 되자, 정부는 통일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선건설 후통일」의 정책방향을 분명히 천명하였다.

1966년 1월 18일 국회에 보낸 연두교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의 지상명제는 바로 조국의 통일”이라고 단언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조국 근대화야말로 남북통일을 위한 대전제요, 중간목표이다. 통일의 길이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이 경제자립에 있는 것이라면 자립은 통일의 첫 단계가 된다.”고 함으로써 「선건설 후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또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착된 다음에 북한과의 통일노력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수립을 위해 1969년 3월 1일 「국토통일원」이 창설되었다.

1969년 10월 11일 최규하 외무부장관은 「통한각서」를 통해 제3공화국 정부의 통일방안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이어야 하며,
② 토착인구비례에 따라 대표가 선출되는 전 한반도를 통한 자유선거이어야 하며,
③ 자유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의 감시가 있어야 하고, 평화와 안전을 위한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새로운 침략을 막기 위하여 유엔군이 주둔해야 한다.

(2)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과 「7·4 남북공동성명」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제정세의 조류는 1969년 7월 닉슨독트린의 발표, 미·중, 일·중의 접촉, 미·소·일·중 4국간 새로운 세력균형의 형성 등으로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기운이 급진전하게 되었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1960년대 「선건설 후통일」에 입각한 내적 실력배양을 바탕으로 해서 제3공화국 후반기 통일정책이 신축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1970년 1월 9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가 1970년대에 추진해 나갈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70년대말에 가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위 조국근대화 작업은 일단 매듭을 짓게 됩니다. …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통일에 대한 고지를 우리가 먼저 전부 점령해 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통일문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 통일에 대한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 70년대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고 전망입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제25주년 경축사에서 남북한간의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는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긴장상태의 완화없이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에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② 북한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 전복기도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③ 남북한간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④ 북한이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한다면 북한의 유엔참석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였으며,
⑤ 남북한의 어느 체제가 더 잘 살 수 있는가의 개발과 건설의 선의의 경쟁을 다짐한 점이다.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최두선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971년 8월 12일 북한적십자회에 대해 1천만 이산가족찾기운동을 제의하였다.

북한적십자회가 8월 14일 평양방송을 통해 이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분단 26년만에 남북대화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남북대화가 열리게 될 무렵인 1971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광복절 제26주년 경축사에서 한반도문제의 해결은 구체적 노력과 자주적 결단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우리의 평화통일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의 광장은 언제나 마련할 수 있음을 재천명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북한이 무모하게 또다시 6·25전쟁과 같은 남침을 감행해 온다면 이를 즉각 또한 철저히 분쇄할 것이다.
② 한반도의 장래에 관한 문제는 열강이나 국제조류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노력과 자주적인 결단에 있다.
③ 북한이 종전의 호전적 정책과 교조문화적 작풍을 깨끗이 버리고 국제적인 새 물결 속에 혼연히 뛰어들어 올 수 있다면 이는 세계평화를 구축하는 일대전기가 될 것은 물론이요, 한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일대 서광이 될 것이다.
④ 북한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우리의 평화통일 제의를 하루 속히 수락하고 무력과 폭력을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평화통일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길임을 다시 한번 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⑤ 북한이 무력과 폭력을 포기하고 진지한 자세로 나온다면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의 광장은 언제든지 마련될 수 있을 것임을 확언해 둔다.

이어 8월 31일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① 인도적 문제의 해결 ② 비정치적 문제의 해결 ③ 정치적 문제의 해결 등 남북한문제 해결의 3단계론을 제시했다.

인도적 차원의 남북적십자회담의 진행과 아울러 11월 20일부터 남북 양측의 실무자(남측 : 정홍진, 북측 : 김덕현)간의 비밀접촉이 시작되었고, 1972년 4월 19일 북측 실무자 김덕현이 서울을 방문하였으며, 이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박성철 북한 부수상이 방문교환한 끝에 7월 4일 10시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한간의 공식문서라 할 수있는 「남북공동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 서울에서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에서는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대리하여 박성철 부수상이 각기 발표한 「남북공동성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합의
② 상호 비방·중상중지 및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③ 남북간 다방면적 교류실시
④ 남북적십자회담 성사 적극협조
⑤ 서울-평양간 상설 직통전화 설치
⑥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운영
⑦ 제반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

「7·4남북공동성명」의 합의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회의가 진행됨으로써 남북간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의 진행과 더불어 두개의 대화통로가 이루어 지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남북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제4공화국이 탄생되었다.

(3) 북한의 대남정책

김일성은 1961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6월 7일 「조소(朝蘇)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였고, 7월 11일 중국을 방문하여 「조중(朝中)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였다.

1961년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라는 제하의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세가지 통일원칙을 내세우면서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 봉건세력에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짓고, 반제·반봉건투쟁의 성공을 위한 「노동자·농민의 독자적 당」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는 「국방력 강화에 관한 문제」를 토의, 「전민의 무장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라는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북한을 군사기지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1964년에 이르러 북한은 혁명역량강화를 통한 통일전략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64년 2월 27일 개최된 노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회의에서 김일성은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는 제하의 연설에서 3대혁명역량 강화와 3단계 혁명론을 제시했다. 3대혁명역량은 ① 북한의 혁명역량 ② 남한의 혁명역량 ③ 국제혁명역량을 말하며, 3단계혁명론은 ① 인민민주주의혁명 ② 인민민주주의혁명정권의 공산화 ③ 공산화된 정부와 북한정권의 통합을 말한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1966년 이전에는 민족해방의 명분하에 「반미구국투쟁」을 위한 통일전선의 형성에 주력했으나, 이후부터는 반미구국투쟁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전복기도를 위한 폭력적인 강경노선으로 전환되었다. 1968년 1월 21일의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 1월 23일의 미해군 정보함 푸

에블로호사건, 11월 울진삼척지구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1969년 4월 15일의 미정찰기 EC-121 피격사건, 12월 11일의 KAL기 피랍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에 대한 대내외의 지지가 높아지자, 197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현 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라는 허담 외교부장의 보고를 통해 「조국통일 8개항 방안」을 내놓았다.

①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
② 미군철수 및 남북 군대의 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감군
③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일조약을 비롯하여 남조선이 민족의 이익에 배치되게 체결한 모든 조약과 협정의 폐기와 무효 선포
④ 미군철수후 외부세력의 간섭없이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 기초위에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된 중앙정부 수립
⑤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위해 남북 전지역에서의 정치활동의 완전한 자유보장과 남한에서 체포·투옥된 정치범의 무조건 석방
⑥ 완전한 통일에 앞서 필요하다면 현재와 같은 남북의 각이한 사회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를 실시
⑦ 남북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위원회를 조직, 경제적 교류와 협조부터 시작, 남북간의 통상과 경제적 협조, 과학·문화·예술·체육 등 여러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편지교류와 인사왕래의 실현
⑧ 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각 정당·사회단체들과 전체인민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서 남북 정치협상회의를 진행

그후 8월 6일 캄보디아의 노르돔 시아누크 민족통일전선위원장 환영 평양시군중대회에서 김일성은 허담의 「8개항 통일방안」을 재확인하면서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제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들과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나. 제4공화국의 통일정책

(1)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1972년에 들어서 남북대화과정에서 환경조건의 개선, 군사문제의 우선해결

등 비핵심적인 북한의 주장으로 남북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한국정부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문제 해결의 기본좌표와 접근방식을 종합적으로 명시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6월 23일 다음과 같은 7개항으로 된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발표하였다.

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민족의 지상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②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④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⑤ 유엔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않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유엔가입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⑥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⑦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이 선언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또한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나라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공존정책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6·23선언」이 두개의 한국을 획책하여 민족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같은날 「조국통일 5대강령」을 발표하였고 8월 28일에 이르러 남북대화마저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김영주 성명을 발표했다.

이같은 북한의 돌연한 남북대화 중단선언과 10월 서해 5도에 대한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1974년 1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1973년 3월 남북조절위원회회의에서 제기한 「남북한 평화협정안」에 대한 대안으로서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북한이 서로 절대로 무력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약속한다.
②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③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현행 휴전협정은 그 효력이 존속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억제하고 평화정착을 이룩하는 것이 평화 통일에의 필수적 과정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3월 25일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함으로써 한국의 「남북한 불가침협정」체결 제의를 거부하였다.

(2) 평화통일 3대원칙

1974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1970년 8·15선언 이후 일관되게 추구한 평화통일 정책의지를 체계화·종합화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평화통일 3대원칙」을 밝혔다.

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 상호 불가침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남북간에 상호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이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이 평화통일 3대원칙은 「선평화 후통일」의 정책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것으로 종래의 정책에서 선회한 점이 있다면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 대신에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의」 총선거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1975년 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을 재차 촉구하고 "휴전협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면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역시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전협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경우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은 1974년 「평화통일 3대원칙」에서 「유엔 감시하」의 표현이 빠진 것과 함께 중요한 정책변화를 의미한다.

즉 이것은 한국의 통일문제나 안보문제를 유엔체제에 입각하여 해결하겠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통일문제의 당사자들인 남북한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자주적 입장에서 해결하겠다는 정책의지의 표현이다.

1977년 1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서 또다시 휴전협정이 계속 유효할 것을 전제로 남북한 불가침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철수도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이를 위한 회담개최를 제의하였다. 동시에 정치문제를 떠난 순수한 인도적 입장에서 언제든지 대북한 식량원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6·23선언」발표 5주년기념 특별담화에서 남북쌍방의 민간경제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남북간 경제협력추진협의기구를 구성하며, 필요시 관계각료회의도 개최하여 남북한간 교역·기술·자본협력 등 광범한 경제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의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일련의 대화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1979년 1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한 당국간의 무조건 대화를 재차 제의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월 23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남북한의 제정당·사회단체 및 해외교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대회」를 소집할 것을 제의하고 우리측 인사들에게 2백26통의 편지를 발송했다. 우리측의 「1·19제의」를 계기로 남북한간에는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대표와 남북조절위원회 대표간의 회담이 1979년 2월 17일부터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1979년 7월 1일 카터 대통령의 서울 방문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은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고위당국대표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나 7월 10일 북한은 이를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직접 회담을 되풀이 주장했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12월 21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최규하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북한에 대해 남북조절위원회 본회의, 남북적십자 회담, 책임있는 남북당국간회담 등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은 1980년 1월 12일 이종옥 정무원 총리의 명의로 신현확 국무총리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남북대화의 재개를 촉구하는 제안을 해왔다. 북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이에 신현확 국무총리는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2월 6일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고, 이로써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이 8월 20일 부터 6개월동안 10차례 진행되었다.

(3) 북한의 대남정책

이 시기에 있어서 북한의 통일전략의 기본방향은 대미 직접접촉의 기도에 있었다.

1973년 3월 14일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박성철 부수상은 「남북한 평화협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다.

① 남북간 무력증강 및 군비경쟁을 중지할 것
② 남북의 병력을 상호 10만 또는 그 이하로 감축할 것
③ 남조선 외국군을 철수시킬 것
④ 외국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하지 말 것
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이어 김일성은 4월16일 캄보디아의 노르돔 시아누크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와는 별도로 정치협상회의의 개최를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1973년 6월 23일 체코슬로바키아 당정대표단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밝힌 「조국통일 5대강령」의 모태가 되었다.

「조국통일 5대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② 남북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③ 남북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
④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국호의 남북연방제 실시
⑤ 고려연방공화국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1974년 1월 18일 우리의 「남북불가침 협정체결」 제의에 대해 북한은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허담 외교부장의 보고를 통해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했다. 북한은 이 제안에서 “현 군사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확실히 담보할만한 실권을 가진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온당하다. 조선과 미합중국은 조선정전협정의 체결 쌍방이며 실제상의 당사자이다."라고 하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한반도문제는 남북한 사이에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다. 북한이 계속 미국에 대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직접협상의 개최를 촉구하자 미국은 1975년 9월 22일 유엔총회연설에서 남북한·미국·중국의 「4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함으로써 북한의 제의를 거부했다.

4. 전두환 정부의 통일정책

1981년 3월 3일 전두환 대통령이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제5공화국 정부는 「통일되고 독립된 근대적 민족국가의 건설」이라는 평화통일을 향한 통일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평화통일노력은 첫째, 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 상호방문과 직접 회담의 개최 제의, 둘째, 통일문제와 남북한 관계정상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천명, 셋째, 민족적 화해와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20개 시범실천사업」의 제시로 구체화되었다.

우선 제5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권수립 이후 줄곧 견지해온 평화통일정책을 종합·체계화한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일헌법의 제정으로부터 총선거를 통한 통일민주공화국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제시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그것이다.

이와함께 제5공화국 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입각해 북한에 대하여 민족화합을 위해 20개항에 걸친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이산가족 우편교류 및 상봉실현 등을 포함한 20개 시범사업에 대해 북한은 그 실현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였다.

한편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1960년 이래 줄곧 주장해온 연방제를 종합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고려연방제안은 그 전제조건으로서 주한미군 철수, 남한내의 연공정부 수립 등

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한반도 공산화 의도를 그대로 나타냈다.

가.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제의

1981년 1월 12일 전두환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김일성에게 “아무런 부담이나 조건없이 서울을 방문하라.”고 초청하고, 그 자신도 같은 조건으로 초청된다면 “언제라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12제의」로부터 1주일 후인 1981년 1월 19일 부주석 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위원장 김일 명의의 성명을 통해 「1·12제의」는 “평화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첫 출발부터 흐지부지 시간이나 끌면서 2개의 조선을 조작하려는 분열책동”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남북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① 현 한국정부의 퇴진과 용공정권의 등장 ② 정치범 석방 ③ 반공관계 법령 폐지 및 반공기관·단체해체 ④ 「6·23선언」의 철회 ⑤ 주한미군 철수 등 5개 항목을 나열하면서 한국의 정부당국과는 대화할 생각이 없음을 명백히 했다.

이에 대해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6월 5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남북한 당국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를 구체화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직접 회담」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언제 어디서든지 김일성과 직접 회담을 가지고 상호방문 문제를 비롯, 그 동안 남북한 당국이 제의했던 통일방안을 포함한 모든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것을 제의하고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희망을 함께 밝혔다.

또한 남북한 당국자회담 뿐만 아니라 통일문제의 결정권자인 온겨레앞에 남북한 사회의 전면적인 상호개방을 촉구하고 북한이 즉각적으로 사회의 완전개방을 할 수 없을 경우, 경제·문화·학문·우편·체육교류부터라도 시작해서 차차 완전교류, 완전개방을 이루는 단계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81년 6월 10일 「로동신문」과 방송논설을 통해 「6·5제의」는 “통일문제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순한 목적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김일성은 1981년 7월 1일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결성 25주년 기념식에 보낸 축하문에서 “현 남조선 정부와는 어떤 형태의 대화나 접촉도 할 수 없다.” 면서 「6·5제의」를 거부했다.

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천명

전두환 대통령은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을 통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내외에 천명하여 통일민주공화국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1) 통일헌법 마련을 위한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의 자유의사가 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로서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이 헌법에 따라 통일된 단일주권국가를 완성시킨다는 것이다.

①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한 대표들로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여
② 이 협의기구에서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위한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하고
③ 이 헌법안을 남북한 전역에 걸친 민주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확정·공포하며
④ 확정된 통일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일을 완성한다.

그리고 통일조국의 국호·정치이념·국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정부형태와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과 시기·절차 등은 「민족통일협의회의」가 구성되어 여기에서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가운데 토의·합의될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2)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체결

통일헌법 제정작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간에 신뢰를 조성하고 민족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일까지의 과도적 조치로 다음과 같은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제의하였다.

남북한이 합의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쌍방은 통일국가가 수립될 때까지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② 쌍방은 분쟁문제 해결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지양하고, 모든 문제를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③ 쌍방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현존하는 상이한 정치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 인정하며, 서로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일체 간섭하지 아니한다.
④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하여 현존 휴전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비경쟁의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조치를 협의한다.
⑤ 쌍방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며, 민족적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개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쌍방은 이산가족의 인도적 재회문제를 포함해서 남북한의 자유로운 인적왕래와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역·교통·우편·통신·체육·학술·교육·문화·보도·보건·기술·환경보존 등 제분야에서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다.
⑥ 쌍방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상·이념·제도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전세계 모든 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모든 쌍무적 및 다자간 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한다.
⑦ 쌍방은 각료급 전권대표를 임명하여 각기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 쌍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락대표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자기측 관할영역에 주재하는 상대편 연락대표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한다.

이상의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이 최고책임자회담 실현에 필요한 절차마련을 위해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쌍방 고위대표간의 예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다.「20개 시범실천사업」제의

전두환 정부는 1982년 2월 1일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하여 민족화합을 위해 20개항에 걸친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이 성명은 민족화합을 실현하여 민족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온 겨레의

염원에 부응하고자 하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실천정신에 입각한 민족화합 촉진조치의 일환으로 북한당국에 대해 우선 당장에라도 실천에 옮길 수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개 시범실천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북간에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하나의 조치로서 서울·평양간 도로를 연결·개통한다.
② 남북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우선 그들간에 우편교류 및 상봉을 실현한다.
③ 설악산 이북과 금강산 이남지역을 관광·휴양지로 설정하여 자유관광 공동지역으로 개방한다.
④ 해외동포들의 조국방문을 공동으로 주관하고 판문점을 통과하여 쌍방지역을 자유로이 방문하도록 한다.
⑤ 남북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항과 진남포항을 우선적으로 개방한다.
⑥ 남북간에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모략방송 장치와 방송청취 통제조치를 제거하여 쌍방 정규방송을 자유로이 청취하도록 한다.
⑦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 및 1988년 올림픽대회에 북한선수단이 판문점을 통과하여 참가하도록 한다.
⑧ 남북을 방문하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판문점을 통과하여 쌍방 지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⑨ 남북 어부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유로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
⑩ 남북간의 관계개선 및 신뢰증진을 위하여 정치인, 경제인, 청년학생, 노동자, 문예인, 체육인 등 각계인사간의 상호 친선방문을 실시한다.
⑪ 남북사회의 실상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쌍방 기자들의 상대방 지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⑫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민족사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⑬ 남북간에 각 종목별 체육친선교류경기를 개최하며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한다.
⑭ 쌍방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용생산품의 교역을 실시한다.
⑮ 민족경제의 번영을 위하여 남북간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을 실현한다.
⑯ 남북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일 제조업체간의 기술자 교류 및 생산품 전시회를 교환·개최한다.

⑰ 비무장지대내에 공동경기장 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남북간에 친선경기에 이용한다.
⑱ 비무장지대에의 동식물 자연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공동학술조사를 실시한다.
⑲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내의 군사시설을 완전히 철거한다.
⑳ 남북간에 군비통제 조치를 협의하며 쌍방 군사책임자간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용한다.

북한은 2월 1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이 제의를 거부하는 한편 「남북정치인 100인 연합회의」개최를 제의하면서 한국측 참석자 50명을 일방적으로 지명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1982년 2월 25일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 성명을 통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 개최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을 제의했으며, 북한은 1982년 3월 30일 「로동신문」을 통해 역시 거부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1983년 1월 18일 제115회 임시국회 본회의의 국정연설을 통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필요성을 재강조하고, 이 회담에서 협의·해결해야할 「4개항의 당면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실현되면 거기에서 ①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며 ②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함으로써 통일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고 ③ 국제무대에서 남북한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민족역량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강구하고 ④ 나아가서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여건을 조성하는데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3년 1월 18일 평양방송을 통해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를 주장하면서 "미군을 그대로 두고 통일하자는 것은 사실상 통일을 않겠다는 것이며, 이른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며, 남북대화 정상회담 운운 또한 그런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비롯한 일련의 대북제의를 전면 거부하였다.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은 1983년 2월 1일 대북성명을 통해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하는 문제와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이에 대해서도 북한이 「로동신문」 논평 등을 통해 거부하자 1984년 8월 20일 전두환 대통령은 하계기자회견에서 "북한측이 동의한다면 북한동포들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도 있다."고 하면서 "남북한이 같은 민족으로서 화합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할 것"을 제의했다.

이같은 전두환 대통령의 남북한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제의와 1984년 9월 8일 북한적십자회의 수재물자 제공제의로 남북한간에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대화가 재개되었다. 1984년 11월 15일 남북경제회담이 시작되고 이어서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열리게 되어 1986년초까지 진행되었다.

남북대화의 재개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이 예상되던 1985년 1월 9일 전두환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김일성과의 회담실현을 촉구하면서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관계를 개선하여 다각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1986년 10월 21일 북한은 이른바 「대자연 개조」라는 이름아래 강원도 이북지역 일원에 금강산발전소 건설을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두환 정부는 금강산댐 건설이 강원도 이남지역에 미치게될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강산 발전소 건설계획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였다. 이어서 1986년 11월 28일 이규효 건설부장관 명의의 서한을 북한 정무원 전력공업위원장 앞으로 보내고, 「남북수자원당국회담」을 열어 공동하천의 합리적 개발·이용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1987년 3월 17일 노신영 국무총리와 이기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 정무원총리와 인민무력부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고 「남북총리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4월 24일 정무원 대변인 성명을 발표, 「남북총리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를 전면 거부하였다.

라. 북한의 대남정책

1980년 10월 10일에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의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북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남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고, 그 밑에 남북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는 각각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한다.

②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은 남과 북의 같은 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로 하며, 그 임무로서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 남과 북의 각기 지역정부를 지도하고 동시에 연방정부의 전반적 사업을 관할하도록 한다.

③ 연방정부의 기능으로서 연방정부는 정치문제, 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와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이익과 관련되는 공동문제를 토의·결정하며 국가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모든 분야에서 남북간의 단결·합작을 실현하는 문제를 다루도록 규정한다.

④ 연방정부하의 지역정부의 기능은 전민족의 근본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남북간의 차이해소와 민족의 통일발전을 도모한다.

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어떤 정치 군사적 동맹이나 무력에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1960년이래 북한이 주장해 온 연방제를 북한의 통일방안으로 재확인한 셈이다. 다만 한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과거 연방제를 통일을 향한 잠정적 조치라고 주장한데 비하여 1980년 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통일의 완결형태로 보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고려연방제 실현을 위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세가지 전제조건 즉 ① 현 정부 퇴진과 민주정권으로의 대체 ② 반공정책과 국가보안법의 철폐 ③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한간의 평화협정 체결 등은 연방제 이전에 한국의 공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둘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10대 시정방침」도 그 시행시기, 방법, 내용 등

을 검토해보면 허구적 요소가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연방제로 통일된 뒤에 실시하겠다는 정책방향의 나열은 통일이전에는 남북간의 어떠한 교류대화나 협력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고려민주연방제안」은 남북관계의 현실상황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내용의 제안이다. 오늘날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연방구성국에 정치이념이 같고 사회체제가 같거나 비슷하며, 평화가 정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방을 형성하고 있다.

북한은 이 방안의 실현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협상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한국이 대화재개를 제의할 때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건으로 하여 「민족통일촉진대회」 혹은 「남북정치인 100인 연합회의」 등을 주장하였다.

이같이 당국간의 남북대화를 거부해 오던 북한은 1984년 1월 10일 남북한 및 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을 개최하여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불가침선언의 채택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1984년에 들어서는 전두환 대통령의 남북한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제의와 북한적십자회의 수재물자 제공 제의로 일련의 남북대화가 재개되면서 1985년까지 제2의 남북대화 시대를 맞이하였으나, 1986년 1월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남북대화를 다시 거부하였다.

팀스피리트훈련을 이유로한 북한의 대화거부로 남북대화가 단절상태에 있던 1986년 6월 17일 북한은 남북한·미국의 「3군사당국자회담」을 제시하였고, 그후 북한은 중단된 적십자회담 등 제반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3군사당국자회담」의 실현을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6년 12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일성은 「남북고위급정치·군사회담」개최를 제의하면서 상호 비방·중지, 남북사이의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 무력축소, 군비경쟁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대규모 군사연습 중지, 중립국감독위원회 구성원으로 중립국 감시군을 조직하는 문제 등을 토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1987년 1월 11일 이근모 정무원 총리와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대남서한을 통해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하는 회담을 1월 27일 판문점에서 열 것을 제의한데 이어 북한은 또다시 7월 23일 정부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에서의 단계

적 군축실현을 위한 다국적 군축협상」을 제의하였다.

5.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이 제13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제6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6공화국 출범을 전후하여 한반도 통일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다.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추세가 급속히 진전되는 등 세계적으로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1988년 6월 2일 「통일논의 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7·7 특별선언」을 천명하였다. 1988년 7월 7일 발표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족내부적 노력과 국제적 노력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한편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9월 11일 제147회 정기국회에서의 특별연설을 통해 통일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7·7선언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기초하여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하여 여러 갈래의 남북대화를 추진하였으며,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이를 법적으로 보장·지원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하기도 하였다.

특히 8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 당국간의 공식적 합의문서인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발효시킴으로써 남북관계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이 기간동안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대미·대일관계의 발전에 주력함으로써 경색된 대외환경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고립주의와 경제난의 심화 등으로 야기된 체제위기를 「우리식 사회주의」로써 모면하기 위한 정책을 취하였다.

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특별선언」 천명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정부가 추진해 나갈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7·7선언은 내외상황의 변화에 부응하여 북한의 국제적 고립탈피를 지원하고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오랜 반목과 대결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천명된 것이다.

(1) 정책선언 6개항

첫째,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둘째,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에 생사·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지원한다.

셋째,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

넷째,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다섯째,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 대결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여섯째,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우리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2) 7·7특별선언의 실천조치

노태우 정부는 7·7특별선언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이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실천조치들을 강구하였다.

① 남북적십자 실무회담 개최

1988년 7월 13일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손성필 위원장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의 조

속한 재개를 거듭 촉구하면서, 그 이전이라도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고향방문단 교환실현 등 실무협의만으로도 가능한 사업들을 우선 추진하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8월 11일에는 「1천만 이산가족찾기운동」제의 17주년을 맞아 북한 적십자회측에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 재개와 북녘 땅에 있는 이산가족들의 생사와 주소확인을 위한 「이산가족찾기 신청서접수」사업을 8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3개월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② 남북교육당국회담 제의

1988년 7월 15일 김영식 문교부장관은 북한 정무원 교육위원회 변영립 위원장에게 보내는 대북서한을 통해 남북교육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이 제안에서는 남북한 학생간의 조국순례대행진 추진문제와 친선체육경기 교환개최문제, 그밖에 학생교류추진과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③ 전향적 대북 외교시책 시행

1988년 7월 16일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7·7선언의 후속조치로 미·일 등과 북한과의 비군사적 물자교역을 반대하지 않고, 북한과 소모적 경쟁·대결외교를 지양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교시책을 발표하였다. 이어 7월 19일에는 해외동포들의 남북한 자유왕래를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전세계에 살고 있는 450여만명의 해외거주 동포들의 모국방문이 완전히 개방되었고 북한측의 상응한 조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④ 북한 및 공산권 자료개방

1988년 9월 3일 정한모 문공부장관도 7·7선언에 따른 대북 문호개방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북한 및 공산권 자료를 대폭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⑤대북 비난방송 중지

노태우 정부는 7·7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1988년 7월 19일 0시를 기해 전방지역에서의 대북 비난방송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KBS 사회교육방송을 통한 대북방송시에도 북한측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양하기로 하는 조

치를 단행하였다.

⑥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

1988년 10월 7일에는 나웅배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경제부문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교역허용,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중계허용, 북한 원산지 표시·상표 부착허용, 직·간접 교역물자 관세 면제, 남북경제인 상호접촉·방문 허용, 북한선적 상용선박 입항 허용, 남북경제교류 관련 법제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7·7선언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던 일련의 실천조치들은 1989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북방외교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그리고 남북고위급회담 추진 등을 통해 더욱 발전되었다.

제6공화국 출범으로 본격화된 북방외교는 1988년 9월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가져왔으며, 정부는 이를 발판으로 1989년 2월 헝가리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소련을 비롯한 전 동구국가 및 몽골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어 1992년 4월 베트남과 연락대표부를 교환 설치하고, 8월 24일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가져왔다.

이같은 북방외교의 성과를 토대로 1991년 9월 17일 남북이 유엔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유엔의 테두리내에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가 정립되었다.

한편 1990년 9월 4일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된 이래 남북한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8차례 회담을 진행, 1991년 12월 31일 제5차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를 채택·서명하였으며, 1992년 2월 19일 제6차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함께 공식 발효시켰다.

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천명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은 통일환경의 변화와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제147회 정기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통일방안으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하였다.

(1) 원 칙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추진시의 원칙으로서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제시하였다.

「자주」란 통일은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남북한의 당사자끼리 서로 협의하여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란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해 민족의 희생을 강요하는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되며,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민주」란 통일을 이룩하는 모든 과정이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통일을 실현한 뒤에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인간답게 살 자유와 권리가 함께 보장되는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2) 통일의 과정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남과 북이 연합(남북연합)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단일 민족사회를 형성한 다음 하나의 완전한 민족국가(통일민주공화국)를 세워 통일을 실현한다는 점진적인 통일에의 접근과정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은 첫째, 이제까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관계로 전환하며, 둘째, 법적으로 정전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평화상태로 전환시켜 공존공영의 터전을 마련하며, 셋째, 남북연합을 구성하여 남북간의 개방과 교류협력을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 나가며, 넷째,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이 헌법에 기초하여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정부 등 국가기관을 구성함으로써 통일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3) 남북연합체제 구축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같은 완전한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에서 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갈 과도적인 통일체제로서 「남북연합」의 발족을 제안하고 있다.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다

같이 번영해 나갈수 있는 공존공영의 관계를 형성함과 아울러 서로 달라진 민족사회를 하나로 만들고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터전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갈 과도적 체제를 말한다.

「남북연합」이 발족되면, 남과 북은 민족공동체라는 하나의 지붕아래 연합의 형태로 서로 손을 잡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게 되는데 이때 남북한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라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 연합 아래서, 안으로는 남북 상호간에 생기게 되는 이해관계를 비롯한 주요 문제들이 협의·조절되고, 밖으로는 국제무대에서 남북한이 서로를 헐뜯고 쓸데없이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되는 등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4) 남북연합 기구

「남북연합」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남북의 수뇌가 만나 상의하는 「남북정상회의」가 있고, 쌍방 정부의 대표로 구성하는 「남북각료회의」와 남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가 설치된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한 쌍방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고 각기 10명 안팎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각료회의」 안에는 이산가족 재회와 같은 인도적인 문제를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비롯하여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게 된다. 각 상임위원회는 이산가족들의 재결합문제, 정치적 대결상황 완화문제, 국제사회에서의 민족역량 낭비방지 및 해외동포의 권익신장문제, 남북사회 개방과 다각적인 교류·교역·협력 추진문제, 민족문화의 창달문제,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권 형성문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문제, 현 휴전협정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대체문제 등과 같은 남북간에 해결되어야 할 모든 문제들과 민족 고유문화의 계승발전 방안과 같은 민족공동의 과제들을 협의·조정하고 그 실행을 확실히 다져나가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남북평의회」는 양측의 국회의원 중에서 같은 수를 뽑아 총 10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남북평의회」는 남북각료회의가 요구하는 자문에 응하면서 앞으로 세워질 통일조국의 기본설계도라 할 수 있는 통일국가

의 헌법안을 만드는 일 외에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과 절차를 서로 의논하여 마련하는 일을 맡게 된다.

이 밖에도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이들이 합의 결정한 사항을 실행하는 등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실무기구로서 「공동사무처」를 두며, 서울과 평양에는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하여 각기 중앙정부와의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연락토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연합」에 두는 모든 기구와 시설을 현재의 비무장지대 내에 적합한 지역을 골라 이를 하나의 「평화구역」으로 지정한 다음, 여기에 설치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이 「평화구역」은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 교류와 협력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남북 이산가족들의 「만남의 광장」, 「민족문화회관」 등과 같은 남북 쌍방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시설물들을 건설하여 한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시범지역으로 키워 나가자는 것이다.

(5) 통일국가 수립 절차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를 지나 통일의 여건이 조성되면, 통일국가는 다음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선 「남북평의회」에서 남북 쌍방의 대표들이 의논하여 통일헌법의 초안을 마련한다. 이것을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헌법으로 확정 공포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한 전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통일된 민족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국가의 국회는 양원제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과 주민을 대표하는 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함으로써 전체지역간의 균형과 모든 민족구성원의 참여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6)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당면 조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간에 화해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의 최고당국자가 하루속히 만나 남북협력과 통일의 새 시대를 열

「민족공동체헌장」을 의논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남북한의 정상이 의논하여 결정할 이 헌장은 단순한 통일의 원칙문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서로의 합의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놓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통일국가를 건설할 때까지 남북관계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질서와 방향을 정하는 기본규약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헌장에는 남북한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과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약속을 비롯하여 「남북연합」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쌍방간의 합의내용이 명문화 될 것이다.

다. 북한의 대남정책

이 기간동안 북한은 소련 및 동구의 사회주의체제 붕괴, 독일 통일, 한국의 중국·러시아와의 수교 등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심화와 내부적 경제난 악화 등으로 체제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체제유지를 위한 방어적인 대남정책 전개에 주력하였다.

김일성은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에서 주한미군 철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 단일의석 유엔가입,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 당국·비당국간 대화 병진 등 「조국통일 5개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어 1991년 신년사에서는 기존의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의 내용중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함으로써 종전의 완성형 연방제의 실시를 유보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는 북한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테두리에서 외교·군사·입법권을 지역정부에 부여하는 등 연방제의 성격을 변형시킨 것으로 이당시 국내외 정세변화에 조응하려는 수세적 자세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은 "전군을 주체사상화할 데 대한 군건설노선"을 제시하고 북한의 군대를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내세우며 통일혁명무력과 사회주의체제 보호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서는 전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등 4대군사노선을 명문화 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헌법에서는 종전에 주석이 갖는 군통수권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전시키고 국방위원회가 전반적인 국방건설사업 지도, 군간부 임명·해임권, 동원령 등의 결정 및 명령권을 확보하게 되어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일로 하여금 합법적인 군통수를 뒷받침하게 함으로써 김정일의 권력승계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대내적 조치로서 군사분야의 기반을 강화해 나감과 아울러 1992년 4월 상업법, 10월 외국인투자법(22개조), 합작법(21개조), 기업법(31개조) 등을 채택하는 등 경제분야에서의 부분적 개방조치를 채택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함께 UN에 동시에 가입하고 대미·일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정치·경제적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6.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이 제14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문민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냉전체제의 해체 등으로 자유화·복지화·개방화의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창의가 존중되고 국제적으로는 국가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호협력이 더욱 실질화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론 실리추구와 경제력이 국제사회의 역학관계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기존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발전시키면서 전반적인 통일환경의 변화상황을 반영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이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하게 되었다.

이어 1996년 제5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의 방향」을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과 성취를 위한 실천적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199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평화정착을 위한 4대원칙」을 제시하여 평화의 참뜻을 분명히 하고 이의 실천을 촉구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4자회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경수로 지원사업,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남북 특사

교환과 정상회담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 악화된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1994년 김일성의 사망을 계기로 군부중심의 과도적 위기관리 체제를 강화하였다.

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천명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은 제14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상적인 통일지상주의가 아니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임을 강조하였다.

1993년 7월 6일 개최된 제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개회사를 통해서는 자유와 번영이 있는 통일을 위해 “통일된 조국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복지와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통일로 가는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통일의 길은 바로 민족번영의 길이 되어야 한다.” 면서 「3단계 통일구도」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1989년 9월에 천명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틀을 계승하면서 1992년 2월 19일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된 상황을 반영하여 「화해·협력단계」를 통일과정의 첫단계로 설정한 것이다.

「3단계 통일구도」 천명 이후 사회 일각에서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의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통일철학과 원칙·미래상 그리고 통일방안의 명칭을 분명히 정돈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틀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8월15일 제49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하였다.

(1) 통일의 기본철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추진의 기본철학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구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나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가치는 자유와 민주가 핵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에의 접근시각으로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민족통일을 통하여 국가통일로 나가자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통일은 권력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계급이나 집단중심의 이념보다도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통일의 원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으로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고 있다.

「자주」란 통일이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평화」란 통일이 전쟁이나 상대방을 전복하려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민주」란 통일이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합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통일의 과정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기조에서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제1단계인 「화해·협력단계」는 남북이 적대와 불신·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속에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함으로써 평화공존을 추구해 나가는 단계이다.

즉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단계라 할 것이다. 이러한 1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면서 본격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이 연합하여 단일 민족공동체 형성을 지향, 궁극적으로 단일 민족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남북간의 공존을 제도화하는 중간과정으로서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의 구성·운영을

제2단계로 구상하였다.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제도적 장치가 체계화되어 남북연합 기구들이 창설·운영되게 된다.

「남북연합」에 어떤 기구를 두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회의가 상설화되고 남북한의 의회대표들이 함께 모여 통일에 따르는 법절차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제3단계인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정치공동체를 실현하여 남북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는 것으로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단일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즉 남북 의회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1민족 1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4) 통일의 미래상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정치적·경제적 자유의 보장, 복지와 인권존중이 설정되고 있는 바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복지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존엄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즉, 민족전체의 복리가 구현되는 통일된 조국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남북정상회담 제의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취임사 및 1994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일성과 만날 용의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한편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이후 증폭되어온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해 미국은 유엔을 통한 제재조치 등 강력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하고, 이에 대해 북한이 “전쟁불사” 발언으로 대응하는

등 남북관계를 최악의 위기국면으로까지 몰아감으로써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긴장상황에서 1994년 6월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김영삼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의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조건없이 빠른 시일내에 만나고 싶다."는 대답을 전해왔다.

이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겠다."고 응함으로써 남북간에는 정상회담 준비가 진행되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게 되었다. 이어 북한은 7월 11일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북측단장 김용순 명의의 편지를 통해 "우리측의 유고로 예정된 북남 최고위급회담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위임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은 무기한 연기되게 되었다.

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방안 모색

(1)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방향 선언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제5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첫째, 평화통일을 분단으로 귀결된 「미완의 광복」을 극복하여 「진정한 광복」을 완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족적 최대과제로 설정하였다.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를 우리 손으로 창조하자는 민족적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천명하였다. 북한의 불안정이 아니라 안정을, 북한의 고립이 아니라 국제사회 참여 지원을, 일방적 통일이 아니라 점진적인 합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셋째, 남북기본합의서의 조기 이행을 촉구하였다. 기본합의서 및 각종 합의문건을 통해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서로 교류·협력해 나가기로 세계와 민족앞에 약속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넷째, 남북간 평화와 협력정신을 실천에 옮기는 4자회담의 실천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4자회담에서는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함께 군사적 신뢰문제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또한 긴장완화 차원에서 남북경제협력 문제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태세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감상적 통일론이나 일방적 시혜론은 남북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실질적 대비노력이 필요함을 밝혔다.

(2)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 제시 및 4자회담 제의

1994년 5월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등 정전체제의 무실화를 기도하자 김영삼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5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원칙」을 천명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반드시 남북 당사자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간의 합의사항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관련 국가들의 협조와 뒷받침이 있을 때 그 실효성이 더욱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구상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의 실천을 위해 남북한과 정전협정 서명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의하였다.

1996년 4월 16일 제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동으로 「4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양국은 4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와 신뢰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함으로써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확보하였다.

이어 1997년에는 남북한 및 미·중이 참가하는 「4자회담」 예비회담이 8월부터 11월까지 세차례 개최되어 4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문제」를 의제로 합의하였고 제1차 「4자회담」 본회담을 1997년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였다.

이와함께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종래의 평화체제 구

축 3원칙을 더욱 구체화하여 「평화정착을 위한 4대원칙」을 제시하여 평화의 참뜻을 분명히 하였다.

첫째, 평화는 무력포기를 의미한다. 북한은 민족적 범죄행위인 무력도발은 물론 대남 무력 적화노선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둘째, 평화는 상호존중을 전제로 한다. 남과 북은 상호 실체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진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

셋째, 평화는 신뢰구축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합의사항이 이행되어야 하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상황에 맞는 합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평화는 상호협력위에서 이루어진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동족인 우리뿐이라는 것을 북한 당국은 받아들여야 한다.

(3) 남북협력 4원칙 제시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정착 4원칙과 함께 1996년의 남북간 협력의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남북협력 4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 우리는 북한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돕는 길을 찾아내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의 식량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협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구호사업으로만 땜질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 정부가 그동안 준비해온 민족발전 공동계획을 남북대화를 통해 협의·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공동발전계획은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는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셋째, 북한이 우리의 우방과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기구에도 참여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자세변화가 앞서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북한 당국은 변화를 통해 스스로를 돕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

이는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북한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 볼 수 있다.

라. 북한의 대남정책

김영삼 정부 기간동안에도 북한은 경제난·에너지난의 심화와 김일성 사

망 이후의 과도적 위기관리 체제로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내부적으로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체제를 형성하고 사상교육을 통해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난 해결과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대남면에 있어서도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태세하에 대화와 대결을 병행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1993년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이른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채택하면서도 ① 외세의존정책의 포기, ② 미군철수의지 표명, ③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의 영구중지, ④ 미국의 핵우산 탈피 등 4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은 김일성사망 이전까지 대화와 대결정책을 병행하다가 이후부터는 남북관계를 단절시킨 채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배한통미(排韓通美) 전략을 취하였다. 북한이 김영삼 정부의 조문불허방침을 구실로 남북대화를 단절시킨 이면에는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켜 이를 주민통제에 이용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우리 당국을 배제시킨채 미·일과의 직접 협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93년 북한의 NPT 탈퇴를 계기로 불거진 핵개발 위협이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은 NPT 탈퇴선언 이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유도해내고 1994년에는 핵동결을 유지하는 대가로 경수로 지원 및 미·북관계 개선에 합의하는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미국과의 직접대화의 길을 열었다.

이후 북한은 정전협정을 무실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는 등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더욱 주력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6년 1월 31일 개최한 정당·단체연합회의에서 1996년을 「평화와 민족대단결의 해」로 설정하고 북·남·해외의 정당·단체 및 각계 인사들과의 접촉과 대화를 제의함으로써 정상적인 남북대화 단절의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 내부의 국론분열을 유도하려는 통일전선공세를 전개하였다. 1996

년 9월 18일의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사건, 1997년 6월 5일의 북한 경비정의 북방 한계선 월선 및 함포사건 등 무장도발을 자행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우리 내부교란을 위한 통일전선 공세와 무장도발을 자행하면서도 우리 정부 및 대한적십자사와 민간단체들의 식량 및 인도적 대북지원물자는 받아들이는 등 대남관계에 있어 이중적 접근태도를 보여왔다.

김일성 사후 3년여간 유지되던 북한의 과도적 비상관리체제는 1997년 10월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추대됨으로써 어느정도 탈피되었다. 김정일은 당총비서 추대를 앞두고 8월 4일 「8·4노작」을 발표하여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등 기존 대남정책들을 묶어 조국통일 3대헌장이라 명명하고, 북한은 이러한 기본노선을 그대로 고수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김일성의 통치형태를 지속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제2절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헌정 50년 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현상을 방지하고 남북 당사자 원칙에 입각하여 주도적인 입장에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성숙을 토대로 한 자신감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대북포용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과정과 그 이후 여러 차례의 계기를 통하여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확인한 바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일(2.25)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기조에 대하여 국민의 93.8%가 지지를 표시하였고, 북한 잠수정 사건후 실시(6.28, 7.13)한 여론조사에서도 전문가집단 93.4%, 일반국민 62.4%가 포용정책의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엿다.

국제적으로도 대북포용정책은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였다. 미국·일본등 우방국들은 물론 전세계가 대북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김대중 대통령의 ASEM, APEC 회의 참가,

미국・일본・중국 방문 등 정상외교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국민의 정부」 출범 원년인 1998년도를 살펴보면, 남북관계가 대립・갈등으로부터 화해・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한 해였다고 평가된다.

한편, 북한은 비록 선전적 차원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군사훈련 중지 등 「연북화해로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면서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는가 하면, 잠수정 침투사건 등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우리국민들에게 실망과 안보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게 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비록 선별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와의 교류와 협력에 호응하면서, 부분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1. 대북포용정책 천명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12월 19일 제15대 대통령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유지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 점진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분야의 국정과제와 대통령 취임사 등에 잘 나타나 있다. 통일분야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으로 평화의 초석을
② 대북경수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③ 남북경제협력은 정경분리 원칙으로 추진
④ 남북간 만남은 사회문화 교류로
⑤ 이산가족 재회는 가능하면 빨리 실현
⑥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을 원활하게
⑦ 통일정책은 국민합의 바탕위에 추진

가. 목표 및 3대원칙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나갈 대북정책의 목표와 3대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현 단계에서는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데 주력하기 보다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간 공존공영관계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①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②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③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대북정책의 3대원칙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확고한 안보태세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억지하고,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감으로써 무력도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기보다는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통해 「남북연합」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이를 단계적으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평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흡수통일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사구시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평화의 바탕위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반세기에 걸친 남북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이루는 지름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보다 많은 대화와 접촉, 그리고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대북 화해·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중단된 「남북기본합의서」체제를 복원해 나간다는 것이며, 아울러 북한이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남북간에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전체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나. 추진기조

「국민의 정부」는 이상과 같은 목표와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대북정책 추진의 6대 기조를 제시하였다.

첫째,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다지는 일은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본바탕이 된다. 자주적 안보태세를 강화하면서 한·미 동맹체제의 강화 등 주변국가들과의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국가를 수호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튼튼한 안보 위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둘째, 평화공존과 교류의 실현

당장 실현이 어려운 통일은 서서히 시간을 두고 달성하더라도 무력대결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공존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대로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출발점임을 명확히 하고 이제부터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이러한 평화공존의 토대위에서 남북간의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통일지향적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룩해 나간다는 것이다.

셋째,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북한체제 붕괴론에 근거한 대북 압박정책보다는 북한 대남정책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현실적 대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강요하기 보다는 북한 스스로가 변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북한의 선동·위협·억지 등 비합리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의연히 대처하되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넷째, 남북간 상호이익 도모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나 시혜의 차원을 벗어나 민족 전체의 공동발전과 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한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하여 민족 전체의 공동발전과 번영이라는 대승

적 차원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하에 국제적지지 확보

민족의 장래를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반도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남북간 문제를 남북당사자가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꾸준히 설득해 나가는 동시에 진행중인 4자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긴장완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다.

여섯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국민적 합의와 지지는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토대이다. 정부는 소수 특정인이 밀실에서 대북정책을 결정하거나 정부의 공식기구가 아닌 비선조직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일관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합의를 얻어낸다는 것이다.

다. 추진방향

(1)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

남북간 당국이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대하여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족의 장전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착실히 이행·준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 및 8·15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밝혔듯이 「국민의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관한 남북 최고당국자의 의사와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특사교환을 비롯하여 각종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남북간에 우선 실천가능한 분야부터 협의·실행하고 점차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면 이행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통일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접촉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한 것도 정부의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남북경협은 경제논리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대만은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당국간 회담이나 합의없이도 엄청난 규모의 인적·물적교류를 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경협은 우선 북한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분야부터 추진할 수도 있지만, 상호 이익이 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안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4월 30일 대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시행하여 경협추진 절차 간소화 및 투자규모 상한 철폐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6월 19일에는 남북직교역 유도 및 위탁가공 교역 확대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분야 국정과제중 하나로 「정경분리 원칙하의 남북경제협력 적극 추진」을 제시하여 이의 꾸준한 실천을 도모하고 있다.

(3)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

분단 반세기가 넘었지만 1천만 이산가족들은 아직도 흩어진 가족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1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 정부는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방북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영세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5월 28일 「남북이산가족 교류협의회」를 발족하고 9월 1일에는 고령이산가족 방북절차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12월 18일에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여 내적기반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회담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차원에서 「이산가족 면회소」, 「우편물 교환소」 설치 및 「고향방문단」 교환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이산가족의 조속한 재회」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4) 대북지원의 탄력적 제공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3월 18일, 9월 18일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취하였다.

이같은 긴급구호적 식량지원과 함께 북한의 식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업협력등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정부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 북측이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요청해야 함은 물론, 우리측 관심사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등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5)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제네바 합의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며, 동시에 중·장기적 차원의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국제적 약속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성실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중 하나로 대북경수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하였다.

(6)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

「국민의 정부」는 남북대화를 중심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해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4자회담」 등을 활용,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춤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노력을 지속하였다.

남북대화는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문제를 중심으로 협의하며, 4자회담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 및 이와 관련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등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중심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과의 조화속에 북한이 미·일은 물론 국제기구와도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2. 제2의 건국을 향한 통일비전 제시

「국민의 정부」는 199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출범 이후 6개월간의 대북정책 추진을 평가하고 보다 보완·발전시켜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의 방향을 구체화

김대중 대통령은 건국 50주년을 맞아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공존공영할 것이라는 새시대 구축의지를 천명하였다. 즉 지난 50년간 한반도를 지배해온 남북대결주의를 극복하고 확고한 안보의 기반위에 남북간 화해협력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불원, 화해·협력의 적극 실현 등 대북정책 3대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할 것을 재확인하고, 남북기본합의서 틀안에서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를 실현하며,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남북 경제교류협력과 문화·종교 등 제반분야의 남북교류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 최고당국자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나. 남북간 교류협력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촉구

김대중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제2의 건국의 기치아래 국민의 정부는 남북간의 오랜 불신을 해소하고,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북간에 문화, 종교 등 여러 분야의 교류도 촉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일관되게 견지해온 정경분리의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이익과 민족복리를 도모하고 오늘의 위기극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다.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촉구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의 장전이며, 남북관계의 기

본틀로서 이를 착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국정과제로 선정, 이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남북당국대표회담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측에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분야별 공동위 가동을 촉구하였다. 분야별 공동위는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이행·실천기구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이의 가동을 통해 분야별 남북간 합의사항과 현안문제들을 협의·실천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광복절 경축사에서 기본합의서 이행을 재촉구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의 틀내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공존공영 관계를 실현하고, 기본합의서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으며, 최우선 과제로 이산가족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라. 남북당국간 대화재개 제의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구성된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하면서 장·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남북상설대화기구의 창설을 제의하고 북한이 원한다면 특사를 평양에 보낼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이산가족문제, 대북지원문제 등을 협의하는 회담이 진행되었으나, 이들 회담은 특정분야에 국한하여 협의함으로써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는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 쌍방이 이미 합의한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가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북한의 소극적 태도를 감안하여 볼 때 분야별 공동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란 쉽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공동위의 운영에 앞서 남북간에 시급히 해결해야할 주요 현안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풀어나가는 남북간 상설대화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반면 특사교환은 대통령 취임사 등을 통해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제의한 것으로 특사를 통해 쌍방 최고 당국자간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고 그 뜻이 굴절없이 전달되어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즉 북한측이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특사를 평양에 파견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타개해 보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3. 북한의 대남정책

북한은 1998년 1월 1일 「당보·군보 공동사설」과 2월 18일 「정당·단체연합회의」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안기부를 해체하여 「연북화해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였다.

이와함께 4월 18일에는 김정일의 서한형식으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발표하였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②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
③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④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위해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해외의 온민족이 서로 내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연대와 연합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특사교환, 남북상설대화기구 창설 등을 제의한 것에 대해 8월 2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명의의 「공개질문장」을 발표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5개항의 공개질문장을 발표하였다.

① 미군의 영구강점을 애걸하면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한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대해 운운할 수 있는가
②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를 그대로 두고 북남사이의 화해를 실현할 수 있는가
③ 상호주의와 햇볕론 따위를 들고 상대방을 우롱하려들면서 진정한 협력교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가
④ 도발적인 무력증강과 북침을 위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계속하면서 평화와 전쟁위험 제거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떨쳐나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은 역대 파쇼독재자들이 감행해온 반통일 분열주의 책동의 재현이 아닌가

한편 북한은 이와 같이 우리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등「연북화해로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면서도 6월 22일 동해상 잠수정 침투사건, 7월 12일 무장간첩 침투사건, 12월 17일 여수 앞바다 잠수정 침투사건 등 대남도발을 병행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8년 8월 들어 내부적으로「강성대국 건설」론을 본격화하고 8월 31일에는 로켓발사체를 쏘아 올림으로써 대내결속을 강화하였다. 이어 9월 5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등 권력구조를 개편하였다.

북한은 이처럼 대내적으로는 강성대국 건설 등을 주창하여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남면에서는 대화와 대결을 병행하는 기존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제 3 장

남북대화의 추진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소의 양국적 냉전구조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1970년대 이전까지는 남북간에 실질적인 대화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소간에 평화공존이 모색되는 등 한반도 주변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남북한은 대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월 15일 「평화통일구상」을 선언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1971년 8월 20일 남북간의 최초의 대화인 적십자회담이 성사되었고 이어 남북당국간의 비밀접촉을 통해 「7·4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다. 그러나 남북간에 대화통로가 트였다는 역사적 의의는 있었지만 구체적 진전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1980년대에는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LA올림픽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를 위한 남북체육회담, 로잔느 체육회담, 1984년 수재물자 인도·인수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남북국회회담 예비·준비접촉,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등 남북간에 다양한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는 1985년 9월 20일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50명)과 예술공연단(50명)이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1990년에 들어서면서 국제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를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계기로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으로 참가하였다. 특히, 1990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8차례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키고, 3개 분과위원회(정치, 군사, 교류·협력)를 구성·운영하였으며, 5개 공동위원

회(화해, 군사,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핵통제)를 설치키로 합의함과 아울러「화해」,「불가침」,「교류·협력」등 3개 분야의 부속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발효시켰다.

이로써 남북이 화해와 협력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 교류·협력시대로 진입해 가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출범이래 남북한 문제는 남북당국간 직접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시키는 기본틀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한·미 공조체제 유지와 중국의 협조를 바탕으로 4자회담을 병행추진하여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제1절 1970년대 이전의 남북대화

1. 실향민 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

1953년 7월 휴전협정 발효 이후 남북간에 실향민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 접촉이 진행되었다.

첫 접촉은 휴전협정 제3조 제59항에 근거하여 설치된「실향민간귀향협조위원회」를 통하여 1953년 12월 11일부터 1954년 3월 1일 사이에 전개되었다.

두번째 접촉은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전개되었다. 1954년 정부는 제네바의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대해 1952년 캐나다에서 열린 제18차 적십자국제회의에서 채택된「이산가족의 재회 알선에 관한 결의」(제20호)에 근거하여 한반도에서 발생한 이산가족 문제의 인도적 해결을 알선하는 데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개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1955년 11월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표단의 남북한 현지 실태조사 방문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사업

방법으로 ① 안위와 행방의 조사 ② 생존자에 관한 소식통보 및 생존자와 가족간의 통신 ③ 원거주지로의 귀환 등 3단계 방안을 제시, 이를 국제적십자위원회 주관하에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처음에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제의를 거부하다가 1957년 1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현지 실태조사 방문은 거부하고 그 대신 남북적십자간의 직접회담을 제의하는 한편, 남북적십자사의 주선으로 쌍방지역의 이산가족간 문안편지를 직접 교환케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동안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하여 한국 지역에서 1차적으로 신고된 납북인사 7,034명의 생사여부와 행방을 문의했으며, 반면 북한적십자회는 14,032명의 월남 인사들의 안위와 행적을 대한적십자사에 문의해 왔다. 1957년 11월 북한적십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문의한 7,034명 중 337명의 생존자 명단만을 대한적십자사에 알려왔으며,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적십자회가 문의한 14,032명중 14,012명은 자의에 의한 월남자라고 북한적십자회에 통보하였다.

2. 동경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대한올림픽위원회는 1947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가입한 이후 한반도를 대표하여 올림픽 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은 1962년 6월 제59차 모스크바 IOC 총회를 계기로 1964년 동경올림픽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판문점에서 남북체육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올림픽위원회는 1962년 8월 14일 IOC에 단일팀 구성 원칙에 동의한다는 전문을 발송하였다. 그후 12월에 대한올림픽위원회 대표가 IOC를 방문, 스위스 로잔느에서 남북체육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 결과 로잔느에서 IOC와 남북한 체육실무자들간의 회담이 한 차례 개최된 데 이어 홍콩에서 남북한 체육실무자간에 회담이 2차례 개최되었다.

또한 1963년 1월 24일 IOC의 주선으로 로잔느 몽테포 소재의 IOC사무국 회의실에서 IOC의 주재로 남북한 체육실무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의 의제는 국기 문제, 국가 문제, 선수단 선발 문제였으며, 쌍방이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원칙적으로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한다.
② 국가는 아리랑으로 한다.
③ 선수단 선발은 동서독의 경우를 따른다.
④ 다만, 국기 문제는 IOC 집행위원회에 일임한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대 표	김진구(대한체육회 이사) 월터 정(대한체육회 사무장) 손기정(대한체육회 임원) 민용식(대한체육회 대책위원) 김정연(동계 올림픽대회 빙상 속도 경기 선수)	김용황(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수(북한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겸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김화영(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양성욱(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김용구(북한체육지도위원회 위원)
	IOC 측	
사 회 임 석	모하메트 타헤트(브런디지 IOC위원장 개인대표) 오토 마이어(IOC 사무총장) 알버트 마이어(IOC 집행위원 겸 스위스 올림픽위원)	

로잔느 회담의 합의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963년 4월 18일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홍콩에서 2차례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었다. 1차회담은 연락관회의에 이어 실무자 본회담이 개최되었으나, 2차회담은 쌍방 연락관회의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본회담이 결렬되었다.

쌍방 연락관회의에 이은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실무자회담은 1963년 5월 17일부터 1963년 6월 1일까지 14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전종목에 대한 예선실시, 필요한 경비 각자 부담 등 일부 부분적인 사항에 합의를 보았다. 미합의 사항은 팀호칭 문제, 예선 장소와 일시, 선발된 선수의 훈련 문제, 단일팀 임원구성 문제, 올림픽 참가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문제 등이었다.

제2절 1970년대의 남북대화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국의 평화통일 기반을 쌓아 올리기 위한 「평화통일 구상」을 내외에 선언하고, 남북한간의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였다.

이 「8·15 선언」에 입각해서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한적)는 북한적십자회(북적)에 인도적 차원의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했으며, 8월 14일 북한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본격적인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비단 인도적 차원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도 별도의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1972년 5월 2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비밀리에 평양에 파견하여 김일성, 김영주 등과 일련의 회담을 갖게 했으며, 그 결과 「7·4 남북공동성명」이 탄생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한간에는 인도적 차원의 남북적십자회담과 함께 정치적 차원의 대화를 위한 남북조절위원회가 발족되었다.

1. 남북적십자회담

가. 파견원 접촉

1971년 8월 20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한적의 이창열, 윤여훈과 북적의 서성철, 염종련이 만나게 됨으로써 남북 쌍방 적십자간의 첫 파견원 접촉이 이루어졌다.

접촉에서 한적은 최두선 총재의 8·12 제의 내용을 담은 문건을 북적에 넘겨 주었고, 북적은 최두선 총재 앞으로 보내는 북적 손성필 위원장의 서신을 전달하였다. 이들 파견원들은 8월 26일 제2차 접촉을 가졌고, 한적은 예비회담 절차에 관한 제의 내용을 담은 최두선 총재의 서한을 북적에 전달하였다. 그후 8월 30일 제3차 파견원 접촉에서 북적은 예비회담 첫회의 날짜를 9월 20일로 제의했고, 9월 3일 제4차 접촉에서 한적이 북적의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개최 준비를 마무리 짓고, 9월 16일 제5차 파견원 접촉에서 쌍방은 예비회담 대표 명단을 상호 교환하였다.

나.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은 1971년 9월 20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적 측	북 적 측
수석대표	김연주(한적 보건부장)	김태희(북적 서기장)
교체수석대표	박선규(한적 충남지사장)	김덕현(북적 보도부장)
대 표	정홍진(한적 회담사무국 회담운영부장)	조명일(북적 문화선전부장)
	정희경(한적 청소년지도위원)	리종학(북적 참사)
	정주년(한적 회담사무국 대변인)	서성철(북적 문화선전부 부부장)

회담에서 한적은 판문점 지역에 쌍방의 상설연락사무소 설치와 연락관의 상주, 그리고 쌍방 연락사무소간을 연결하는 직통전화의 가설·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북적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1945년 남북 쌍방간의 전화 운용이 중단된 이래 26년만에 전화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1차 예비회담에 이어 9월 29일에 열린 제2차 회담에서 예비회담의 진행절차와 의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다.

① 본회담 장소
② 제1차 본회담 개최 일시
③ 본회담 의제
④ 본회담 대표단 구성
⑤ 기타 본회담 진행절차

합의된 의제중 본회담 장소 문제와 관련, 10월 6일 개최된 제3차 예비회담에서 북적은 한적의 서울·평양 윤번 개최제의를 수락하였다.

10월 27일 제6차 예비회담에서 본회담 의제와 관련하여 한적은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고 그들의 소식을 알려주는 문제 등 5개항을 제시하였다.

한적이 제의한 의제는 생사와 거처확인→소식통보→서신교환→면회(또는 상봉)→재결합으로 이어지는 국제적십자 심인(尋人)사업에서 통용되는 사업

항목과 순서에 따랐다.

북적은 심인사업의 대상에 범위조차 모호한 「친우」를 포함시키고 사업의 순위를 「가족」 보다는 「친우」를 강조함으로써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다. 이 때문에 쌍방은 본회담 의제에 완전히 합의하기까지 무려 25차례의 예비회담 전체회의와 16차례의 비공개 실무회의를 걸쳐, 1972년 6월 16일 20차 예비회담에서 5개항의 본회담 의제를 채택하였다.

①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②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에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③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④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문제
⑤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 할 문제

1972년 7월 10일 제21차 예비회담에서부터 남북적 쌍방은 본회담 대표단 구성 문제를 토의하기 시작하여 7월 19일 제23차 회담에서 한적이 각기 자기측의 필요에 따라 7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임명하여 대표단을 수행케 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음으로써 대표단 구성 문제를 매듭지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적 측	북 적 측
수석대표	이범석(한적 부총재)	김태희(북적 부위원장)
교체수석대표	김연주(한적 보건부장)	주창준(북적 서기장)
대 표	김달술(한적 회담사무국장) 박선규(한적 충남지사장) 정희경(한적 청소년지도위원) 정주년(한적 회담사무국 대변인) 서영훈(한적 청소년부장)	조명일(북적 상무위원) 궁상호(북적 참사) 리청일(북적 상무위원) 한시혁(북적 문화선전부장) 김수철(북적 계획부 부부장)

구 분	한 적 측	북 적 측
자문위원	김준엽(고려대 교수) 조덕송(조선일보 논설위원) 양홍모(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준규(서울대 교수) 구범모(서울대 교수) 송건호(동아일보 논설위원)	윤기복(노동당 대외연락위 부위원장) 김성률(조선민주당 부위원장) 강장수(천도교청우당 부위원장) 김길현(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국 부국장) 백남준(직업총동맹 부위원장) 오광택(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부위원장) 김병식(조총련 제1부의장)

남북 쌍방은 1972년 7월 26일 제24차 예비회담과 8월 11일 제25차 예비회담 및 3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본회담의 첫 회의 문제, 신변보장, 왕래절차, 교통, 통신 등 본회담 진행절차에 합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담 개최 장소 : 1차 평양, 2차 서울
② 신변보장 : 초청측은 상대측의 대표단과 기자단의 왕래와 체제기간중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 보장
③ 왕래절차
  ○ 명단 : 출발 3일전 상대측에 전달
  ○ 소지품 : 대표는 자기측 적십자사가 발급한 신임장과 신분증명서 휴대, 자문위원·수행원·기자는 신분증명서만 휴대
  ○ 통과지점 : 판문점
  ○ 통과시간 : 쌍방 협의·확정
④ 체류기간과 회담일정 : 체류기간은 4~6일로 하고, 구체적인 체류일 및 회담일정은 쌍방 합의·결정
⑤ 회담운영 방식 : 회담장의 참석인원은 대표, 자문위원, 수행원으로 한정
⑥ 본회담 일시 : 1차 본회담은 1972년 8월 30일 오전 10시 평양에서 개최, 2차 본회담은 1972년 9월 13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개최

다. 남북적십자 본회담

(1) 제1차 본회담

남북적십자 제1차 본회담은 1972년 8월 30일 평양 대동강 회관에서 개최되었다. 4박 5일 동안의 평양회담은 양측 수석대표의 개회사와 북한측 정

당·사회단체 대표들의 축사 그리고 본회담 의제를 공식으로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는 본회담의 진행원칙에 관한 남북간의 합의문서에 서명하였다. 이 합의문서는 예비회담에서 합의된 5개항의 의제를 본회담 의제로 채택할 것을 재확인하면서, 남북 양측이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을 다짐하였다.

(2) 제2차 본회담

남북적십자 제2차 본회담은 1972년 9월 1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한적 이범석 수석대표는 앞으로 의제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남북 이산가족, 친척들의 자유의사 존중 등 3대 방침을 강조하였다.

9월 14일 양측 수석대표는 북적 대표단 숙소인 타워호텔에서 쌍방 대표단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개항의 합의문서에 서명, 교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쌍방은 온 겨레의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의 의제로 설정된 모든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자유로운 원칙, 남북공동성명의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한다.

② 쌍방은 제1차 및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하여 더욱 다져진 쌍방간의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하여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부터는 의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며,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972년 10월 24일 평양에서,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972년 11월 22일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3) 제3차 본회담

1972년 10월 24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본회담은 그 동안의 홍분을 가라 앉히고 의제의 실질적 토의에 들어간 회담임과 동시에 쌍방의 상반된 입장과 견해차가 뚜렷이 노정된 회담이기도 하였다.

회담에서 한적 이범석 수석대표는 의제의 실질적 토의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인도성과 중립성의 원칙 등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

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① 쌍방 적십자가 책임지고 주관할 것 ② 적십자 본질을 저해할 요소를 배제할 것 등의 방침이 일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적 김태희 단장은 의제 5개항을 토의·해결하는 데 있어서 ① 민족화목과 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을 견지할 것 ② 적십자 사업을 온 민족적 사업으로 추진시켜 나가는 인도주의 원칙을 구현할 것 등을 주장하여 회담에서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 또한 의제 제1항의 토의에 있어서도 남한의 모든 법률적, 사회적 장애제거와 당사자들과 협조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의 개선을 비롯 적십자 요해(了解)해설인원의 상대방 파견 등 현실성 없는 주장을 함으로써 제3차 본회담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이 종료되었다.

다만, 제4차 본회담 때부터 남북으로 왕래하는 기자 수를 각기 5명씩 늘리는 데 구두 합의를 보았다.

(4) 제4차 본회담

제4차 본회담은 1972년 11월 22일 서울의 한적 회담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3차 본회담에 이어 의제 제1항의 토의에 들어갔으나 북적은 법률적, 사회적 조건과 환경의 개선을 선결조건으로 계속 고집함으로써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한편 회담에서 쌍방은 회담사업의 실행을 위해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 등 공동사업기구 설치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하였으나, 이들 기구의 성격에 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후 여러차례에 걸친 한적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가 실현되지 못하였다.

(5) 제5차 본회담

1973년 3월 21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5차 본회담에서 한적은 이산가족 및 친척의 소재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산가족으로부터 받은 조사의뢰서를 상호 교환하여 쌍방 적십자가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적은 이산가족 본인이 직접 상대방 지역을 찾아 확인해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반공법,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만 이산 당사자가 자유로이 남북을 오가며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족, 친척의 범위에 재일교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적은 재일교포 문제는 본회담 의제 제5항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 이산가족찾기 사업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재일교포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흩어진 모든 동포 문제도 다같이 다루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6) 제6차 본회담

1973년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본회담에서 북적은 제3차 본회담시의 제안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 남한의 법률적, 사회적 조건과 환경의 개선, 적십자 요해해설인원의 파견, 가족 및 친척 범위에 재일교포를 포함시킬 것과 자문위원의 회의 발언권 인정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적은 의제 제1항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인도적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적십자회담에서 소위 상대방의 법률적, 사회적 장애제거 주장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공박하였다.

(7) 제7차 본회담

1973년 7월 11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7차 본회담에서 한적은 쌍방 주장의 현저한 견해차로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져 들어간 상황에서 회담 진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인도주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범적 사업으로서 추석 성묘 방문단의 상호 교류를 제의하였다.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한 제반사항을 토의하기 위하여 각각 대표 2명과 수행원 3명으로 한 실무자 회의를 구성하고 곧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적은 성묘 방문단 문제는 법률적, 사회적 환경이 조성된 후에 의제 순서에 따라 토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남한의 반공 법규의 철폐, 반공 활동의 금지와 반공 단체의 해체 등을 내용으

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북적의 주장으로 제7차 본회담도 끝내 아무런 진전없이 폐회되었고, 제8차 본회담 일자는 쌍방 적십자간의 직통전화나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협의·결정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북적십자 본회담은 1973년 8월 28일 이른바 김영주 성명으로 제7차 본회담 이후 중단 상태에 들어갔다.

라. 남북적십자 대표회의 및 실무회의

(1) 남북적십자 대표회의

한적은 1973년 김영주의 8·28 대화중단 성명으로 중단된 본회담을 재개하기 위하여 1973년 11월 15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8차 본회담을 연내에 개최하기를 요망하며 이에 대한 세부 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락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자고 북적에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21일 쌍방 연락책임자 사이에 회담 재개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이 접촉에서 한적은 제8차 본회담을 1973년 12월 19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적은 차기 연락책임자 회의시에는 대표 1명씩을 포함시키자고 수정 제의하고, 이를 한적이 동의함으로써 남북간에는 본회담 중단후 4개월만에 판문점에서 대표회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표회의는 한적에서 김달술 대표가, 북적에서 조명일 대표가 각각 참석한 가운데 1973년 11월 28일부터 1974년 5월 29일까지 모두 7차례 개최되었다.

대표회의에서 한적은 본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재개할 것과 모든 문제는 회담을 통해 토의·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안에 제8차 본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북적에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적은 본회담의 재개 조건으로 한적 대표단의 개편과 남한에서의 이른바 애국적 인민과 청년학생에 대한 탄압중지를 요구하고, “서울은 회담 개최에 적합한 분위기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제8차 본회담을 서울 대신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하였다. 또한 북적은 제8차 본회담 때까지 판문점에서 쌍방의 수석대표를 책임자로 하는 본회담 예비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이같은 북적의 제의에 대해 한적은 타협안으로 본회담의 축소판이 될 남북적십자회담 임시회의를 판문점에서 열어 본회담 재개 문제와 회담 의제 등을 토의 해결할 것을 수정 제의하였다. 쌍방은 거듭된 토의 끝에 제6차 대표회의('74.5.22)에서 남북적십자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1974년 5월 22일에 개최된 제6차 남북적십자 대표회의의 합의에 따라 1974년 7월 10일부터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쌍방 교체수석대표를 책임자로 하는 실무회의에서는 본회담 의제와 본회담 재개 문제를 토의하였다. 실무회의는 1977년 12월 9일까지 3년여에 걸쳐 25차례 진행되었다.

실무회의에서 북적은 이른바 법률적, 사회적 조건과 환경의 개선 주장을 계속하면서 본회담 재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적은 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제6차 실무회의('74.11.29)에서 시범적으로 「노부모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사업」을 진행함과 더불어 당사자(노부모와 그 자녀 및 친척)들의 희망에 따라 상봉, 방문, 서신교환을 실시할 것 등을 제의하였다.

또한 제7차 실무회의('75.1.24)에서 한적은 제8차 본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 것과 노부모 사업을 수락할 것을 촉구하면서, 남북간에 전면적인 문호개방을 통해 하루속히 이산가족의 고통을 풀어줄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적은 「서울분위기」와 「조건과 환경 개선」 등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노부모 사업 실현을 거부하는 한편, 「6·23 선언」은 분열주의 정책이며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한 인도주의 사업의 실현은 물론 본회담도 재개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적은 제8차 실무회의('75.2.28)에서 노부모와 이산자녀들간의 사진 교환을, 제13차 실무회의('75.10.23)에서는 ① 신정과 추석을 이용한 이산가족 성묘 방문단의 상호교환 ② 노부모와 이산자녀들간의 판문점 면회소 및 우편물교환소 운영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적은 거듭된 실무회의에서도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1978년 3월 20일로 예정된 제26차 실무회의를 하루 앞둔 3월 19일 평양방송을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78 팀스피리트)을 비난하면서 실무회의를 무기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2. 남북조절위원회회의

가. 「7·4 남북공동성명」의 발표

「7·4 남북공동성명」의 탄생을 가져온 남북한간의 비밀 막후교섭은 1971년 11월 남북적십자 예비회담과는 별도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의 신임장을 지참한 남북실무자간의 비밀접촉이 성립됨으로써 시작되었다. 한적의 정홍진과 북적의 김덕현은 제9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다음날인 1971년 11월 20일부터 11차례에 걸쳐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가면서 실무자접촉을 갖고, 이후락·김영주의 남북 교환방문에 대한 사전준비를 마쳤다.

이같은 준비단계를 거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3명의 수행원과 함께 1972년 5월 2일 판문점을 경유, 극비리에 평양 방문길에 올랐다.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3박 4일간 평양에 체류하는 동안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김일성과 2차례, 김영주와 2차례 회담하였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평양 방문 후에 김일성은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3박 4일간 박성철을 비밀리에 서울로 파견하였다. 수행원을 대동한 박성철은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2차례 회담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1차례 예방하였다. 쌍방은 이후락과 김영주가 공동위원장이 되고 각기 3~5명의 쌍방 대표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위원회안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간에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이후락, 박성철의 서울·평양 상호 방문을 통해 이루어진 쌍방간의 고위급회담을 거쳐 남북은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나.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

남북공동성명의 발표에 이어 1972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차례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가 진행되었다.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공동위원장 회의는 1972년 10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서 울 측	평 양 측
공동위원장	이후락(중앙정보부장)	박성철(제2부수상)
보 좌	김치열(중앙정보부 차장)	류장식(로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정홍진(중앙정보부 협의조정국장)	김덕현(로동당 책임지도원)

제1차 공동위원장 회의에서 「7·4 남북공동성명」 제1항(통일 3원칙)의 해석과 그 실천 방법이 쟁점화되었다.

한국측은 제1항의 민주·평화통일의 달성과 이를 위한 민족적 대단결의 도모를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의 창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선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발족시키고, 이를 통해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겨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공동성명에서 쌍방이 통일 3원칙에 합의한 이상 남한측의 반공정책 포기와 공산주의 용납, 주한미군 즉시 철수 등을 주장하였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쌍방은 10월 하순경에 제2차 공동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2차 공동위원장 회의는 1972년 11월 2일과 11월 4일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서 울 측	평 양 측
공동위원장	이후락(중앙정보부장)	박성철(제2부수상)
보 좌	장기영(IOC 위원)	류장식(로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최규하(대통령 특별보좌관)	리경석(내각참사)
	강인덕(중앙정보부 제9국장)	한웅식(로동당 책임지도원)
	정홍진(중앙정보부 협의조정국장)	김덕현(로동당 책임지도원)

회의에서 박성철 북한측 공동위원장은 공동성명에 입각한 대화와 남조선의 반공정책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후락 공동위원장은 남북대화는 서로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두 체제간의 대화이므로 서로 상대방 체제내부 문제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대화는 계속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동성명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남북 쌍방은 서로 자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대방 체제내부 문제에 간섭함이 없이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초월하여 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회의 기간중 11월 3일 오전 10시 15분부터 4시간 30분 동안 이후락 공동위원장은 박성철의 안내로 김일성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는 북한측에서 김일(제1부수상)과 김중린(노동당 정치위원, 비서국 대남사업담당비서)도 배석하였다.

쌍방은 제2차 공동위원장 회의에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교환하고, 아울러 ① 대남·대북방송 중지 ② 군사분계선상에서의 확성기에 의한 대남·대북방송 중지 ③ 상호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살포 중지 등에 합의, 이를 1972년 11월 11일 영시(零時)를 기해 발효시켰다.

제3차 공동위원장 회의는 1972년 11월 30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절차를 마무리하고 공동위원장 회의를 종결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 명단

구 분	서 울 측	평 양 측
공동위원장	이후락(중앙정보부장)	김영주(로동당 조직지도부장)
부위원장	장기영(IOC 위원, 전 부총리)	류장식(로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위 원	최규하(대통령 특별보좌관) 강인덕(중앙정보부 제9국장)	리완기(내각참사) 한웅식(로동당 책임지도원)
간사위원	정홍진(중앙정보부 협의조정국장)	김덕현(로동당 책임지도원)

다. 남북조절위원회 본회의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공동위원장 회의가 끝난 후, 양측은 당일로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 본회의는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제1차 회의는 서울시내 영빈관에서 1972년 11월 30일과 12월 1일 2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나, 양측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회의에서 이후락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실무기능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대화의 원만한 진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제도와 이념의 차이로 인한 마찰 및 저항 요인이 비교적 적은 비정치·비군사 분야에서 시작하여 실적을 축적시키고,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해와 신뢰의 증진을 바탕으로 정치·군사분야의 문제로 옮겨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의 박성철은 「공동성명이 나온 이상 남북은 서로를 신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쌍방은 우선적으로 군사대표자회담을 열어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방안에 합의하고, 정치·군사·외교·경제·문화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일괄 발족시키자고 주장하였다.

제1차 회의가 종료된 뒤 쌍방은 공동발표를 통해 ① 금번 회의에서 쌍방간에는 각 분야에서 교류를 실시하고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데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② 남북조절위원회의 실무기능을 조속히 완비하기 위해 단시일 내에 간사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사무국을 설치하며 필요한 운영 세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2차 본회의는 1973년 3월 14일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한국측은 제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조절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실무기능을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지적하면서, 우선 ①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세칙·간사회의 운영세칙·공동사무국 설치 규정 등을 조속히 제정하고 ②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 남북조절위원회 건물을 남북이 함께 건립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의 박성철은 ① 남북은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 두고 ② 군대를 각기 10만 또는 그 이하로 줄이고 군비를 대폭 축소하며 ③ 외국으로부터 일체의 무기와 작전 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하고 ④ 미군을 포함한 일체의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간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남북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등 5개항의 군사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남북조절위원회를 개편, 쌍방의 군간부를 여기에 참가시키든가 아니면 군사분과위원회를 우선적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자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이같은 쌍방간의 견해 차이로 제2차 남북조절위원회 본회의는 공동발표도 없이 끝마쳤다.

제3차 본회의는 1973년 6월 12일과 6월 13일 2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도 북한측은 ① 군사 5개항목 제안의 우선 토의 ② 남북조절위원회와 별도로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 ③ 남북조절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의 일괄 동시 설치를 거듭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후락 공동위원장은 남북조절위원회 및 그 산하기구의 운영세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공동사무국의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북한측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측이 상호 비방행위 중지에 관한 합의가 발효된 1972년 11월 11일 이후에도 한국측에 대한 각종 비방행위는 물론 간첩 남파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이의 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남북조절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 중 경제와 사회문화 분과위원회를 우선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조절위원회 본회의도 쌍방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없이 종료되고 말았다.

라. 간사회의

남북 쌍방은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한 위원회의 실무 운영기구인 간사회의를 1973년 3월에 구성·발족시키고 1973년 3월 10일, 4월 24일, 5월 23일 3차례에 걸쳐 판문점에서 회의를 가졌다.

대표단 명단

구 분	서 울 측	평 양 측
간사위원	정홍진(남북조절위원회 간사위원)	김덕현(남북조절위원회 간사위원)
간 사	이동복(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	전금철(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
	백천일(남북조절위원회 직원)	허필국(남북조절위원회 직원)

3차례의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세칙」, 「간사회의 운영세칙」, 「공동사무국 설치 합의서」 등 3개 합의문건에 대한 문안 절충작업을 계속하였으나, 「남북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정당·사회단체 대표와 개별인사를 방청인으로 초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세칙에 포함시키자는 북한측의 주장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후 1973년 8월 28일 북한의 평양방송은 북한측 공동위원장 김영주의 명의로 된 장문의 성명에서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의 일방적 중단을 선언하였다. 북한측은 이 성명에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것은 같은해 6월 23일 발표된 박정희 대통령의 「6·23 선언」이 두 개 조선노선의 공개적 선포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북조절위원회는 응당 전민족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하며, 그를 위하여서는 당국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남북조선의 각 정당·사회단체, 각계 각층 인민들의 대표들이 참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회의

남북조절위원회 한국측은 1973년 11월 15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조절위원회 제4차 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면서 만약 남북조절위원회 개편이 필요하다면 양측 간사위원간의 접촉을 통해 이를 토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쌍방은 남북조절위원회의 개편 문제를 포함하여 위원회 재개에 필요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회의를 판문점에서 갖기로 합의하였다. 부위원장 회의는 1973년 12월 5일부터 1975년 3월 14일까지 10차례 판문점 자유의 집과 판문각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제1차 회의에서 한국측은 북한측의 남북조절위원회 개편안이 합리적일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북한측이 구체적인 개편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남북조절위원회 정상 운영의 조속한 재개를 거듭 촉구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제2차 회의에서 북한측의 위원회 개편 주장을 고려하여 남북 쌍방의 위원 수를 5명에서 10명 내외로 늘리고 여기에 정당 및 사회단체 인사를 참여시키는 데 동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이를 중심으로 토의

를 진행시키자고 북한측에 촉구하였다.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북한측은 한국의 반공정책과 「6·23 선언」을 비난하면서 남북조절위원회 재개 방안에 관한 토의를 기피하였다.

제3차 회의에서 북한측은 한국측이 납득할 수 없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즉 북한측은 남북조절위원회를 개편하되, 개편되는 새 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당국 대표와 60~70개의 정당·사회단체에서 각 5~20명의 대표, 그 밖에 각계 각층의 대표들로 구성하자고 하였다.

제4차 회의에서 북한측은 조절위원회 개편안을 자진 철회하였다. 그 대신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및 각계 각층의 대표들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구성, 통일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는 여기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새로이 내놓았다. 이와 함께 북한측은 ① 「6·23 선언」의 철회 ② 반공정책 포기, 반공법·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③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행조건으로 주장함으로써 부위원장 회의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한편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암살기도 사건과 그해 11월 고랑포 북방 비무장지대의 남침용 땅굴이 처음으로 발견되자 북한측은 제9차 부위원장 회의부터 부위원장 자격(장관 또는 장관급)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변인 격으로 임명하는 등 부위원장 회의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1975년 봄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 이후, 5월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11차 부위원장 회의의 무기연기를 한국측에 일방적으로 통고함으로써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를 완전히 중단시키고, 남북조절위원회간의 직통전화마저 단절시켰다.

3. 남측 「조절위」와 북측 「조국전선」간 대표접촉

1979년 1월 19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중단되어 온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하여 시기, 장소, 수준에 구애됨이 없이 남북한 당국간에 무조건 직접대화를 갖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1979년 1월 23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각 정당·사회단체들의 「전민족대회」를 소집할 것과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6월 중순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북한측은 ① 1979년 2월 1일 10시를 기하여 쌍방 당국이 각각 「7·4 남북공동성명」의 이념과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를 엄숙히 준수할 것을 공식적으로 성명할 것 ② 민·관을 막론하고 상대방에 대한 중상·비방을 그만 둘 것 ③ 1979년 3월 1일 10시를 기하여 쌍방 군사당국이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위협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무조건 중지할 것 등을 아울러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정부 대변인과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명의로 책임있는 당국자간의 회담을 개최하거나 조절위원회 회의를 재개하자는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조국전선」 명의의 계속적인 성명을 통해 민족통일준비위원회의 결성을 주장하고, 2월 13일에는 이의 협의를 위해 연락대표 4명을 2월 17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로 파견할 것을 밝혔다.

그 결과 남북 쌍방간에는 판문점에서 상호 성격과 자격이 다른 대표자들간의 접촉이 1979년 2월 17일, 3월 7일, 3월 14일 3차례에 걸쳐 열리게 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대 표	민관식(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함병춘(남북조절위원회 위원) 정홍진(남북조절위원회 간사위원) 이동복(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	권민준(로동당 부부장) 리창선(정무원 부장) 김석준(조선민주당 부위원장) 백준혁(조국전선 서기국 부국장)

3차례에 걸친 접촉에서 한국측은 책임있는 남북한 당국간의 실효성 있고 생산적인 대화를 갖거나 아니면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정상화하자고 주장한데 반해, 북한측은 「민족통일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연락대표회의」를 요구함으로써 양측간의 접촉은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종결되고 말았다.

4. 남북탁구협회회의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대표와 북한측의 조국전선 대표간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측은 1979년 2월 20일 북한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김

유순과 북한탁구협회 회장 김득준 명의로 박종규 대한체육회 회장과 채영철 대한탁구협회 회장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방송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 서한에서 북한측은 4월 25일 평양에서 개최하는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월 27일 남북탁구협회 대표들이 판문점에서 만날 것을 제의하였다.

대한체육회와 대한탁구협회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남북한 탁구협회간의 첫 회의가 1979년 2월 27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게 되었으며, 도합 4차례(2.27, 3.5, 3.9, 3.12) 회의가 진행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대 표	채영철(대한탁구협회 회장) 이종하(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천영석(대한탁구협회 전무이사) 정주년(대한탁구협회 대변인)	김득준(북한탁구협회 회장) 박무성(북한탁구협회 부회장) 김덕기(북한탁구협회 서기장) 김선일(북한탁구협회 위원)

제1차 회의(2.27)에서 남북한 탁구협회 대표들은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한 남북한 단일선수단 구성 문제를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대한탁구협회 대표단은 남북한 탁구단일선수단 구성에 관한 합의가 3월 12일 이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탁구협회측이 한국선수단의 대회 참가를 보장하고, 한국선수단이 판문점을 통과하여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처음부터 단일팀 구성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요구함과 동시에 절차 문제에 관한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제1차 회의는 쌍방의 기본입장과 제안만을 밝힌 후 구체적인 문제는 앞으로 계속 토의키로 하고, 회의를 끝마쳤다.

제2차 회의(3. 5)에서 대한탁구협회 대표단은 북한측의 단일팀 구성 제의가 한국선수단의 대회참가 기득권을 저지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선수단의 개별 출전 기득권을 우선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단일팀을 구성하는 원칙에 먼저 합의할 것을 고집함으로써 한국선수단의 개별 출전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사

실상 명백히 하였다.

남북 양측은 제3차 회의(3.9)와 제4차 회의(3.12)에서도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단일팀 구성은 물론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한국선수단의 개별 참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제3절 1980년대의 남북대화

1.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북한측은 신현확 국무총리 앞으로 보내는 이종옥 정무원 총리의 서한을 통해 「남북총리회담」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신현확 국무총리는 1980년 1월 24일,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차관급 수석대표를 포함한 3명의 실무대표와 수행원으로 실무대표단을 구성하여 1980년 2월 6일 판문점 자유의 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신현확 국무총리의 1월 24일자 제의에 동의하면서 회담장소는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이 1980년 8월 20일까지 10차례 진행되었으나, 북한측은 제11차 남북한 실무대표접촉을 이틀 앞둔 9월 24일 예고도 없이 방송을 통해 실무대표접촉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남북직통전화마저 두절시켰다.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대표단 및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영주(외무부 본부대사)	현준극(로동당 부부장 겸 정무원 참사)
대 표	정종식(국토통일원 정책기획실장) 이동복(남북대화사무국장)	백준혁(정무원 국장) 림춘길(정무원 국장)

실무대표접촉 경과

구 분	일 자	한 국 측	북 한 측
제 1 차	1980. 2. 6	○ 총리간 대화의 진전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에 기여 ○ 실무접촉에서 의제문제 합의 필요	○ 총리접촉은 정당·사회단체의 다각적 접촉의 일환 ○ 실무접촉에서 의제문제 합의 불필요
제 2 차	2. 19	○ 총리간 대화의 성과를 위해 실무접촉에서 의제 마련 필요	○ 실무접촉에서 의제설정은 불필요
제 3 차	3. 4	○ 남북한 총리회담이라는 공동호칭 용어 사용	○ 남북한 총리회담으로 호칭 ○ 의제설정에 대해 고려할 용의 표명
제 4 차	3. 18	○ 3개항 의제 제의 : ① 남북간 상호 신뢰조성문제 ② 한반도의 평화정착문제 ③ 조국의 평화통일문제	○ 단일의제 제의 : 북과 남이 합작하고 단결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킬 데 대하여
제 5 차	4. 1	○ 북한의 3.23 및 3.27 무장간첩 침투사건 및 3.25 무장선 침투사건 경고	○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주장
제 6 차	4. 18	○ 북한의 의도 포함된 합작과 단결 용어의 부당성 지적	○ 합작과 단결의 정당성 강조
제 7 차	5. 6	○ 북한의 의도 포함된 합작과 단결 용어의 부당성 지적	○ 합작과 단결의 정당성 강조
제 8 차	5. 22	○ 합작과 단결에 내포된 정치적 요구를 거론치 않을 것임을 확약할 수 있는지 질의	○ 5.17 비상계엄 비난

구 분	일 자	한 국 측	북 한 측
제 9 차	6. 24	○ 새로운 의제 제의 : ① 교류, 협력으로 신뢰를 조성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 ② 조국의 평화통일문제 ○ 총리회담의 일시·장소에 관한 새로운 제안 제시	○ 남측 총리의 자격시비 및 총리 임명후 의제 토의 주장 ○ 실무대표 접촉 관련 전제조건 제시 : ① 계엄령 해제 ② 한국정부 퇴진 ③ 민주화 ④ 민주인사 석방
제10차	8. 20	○ 9.26 11차 접촉 개최 제의	○ 전제조건 제시와 남측 총리자격 시비 ○ 남측의 9.26 개최 제의에 동의
※ 북한은 '80. 9. 24 제11차 접촉의 무기연기 성명발표			

2. 남북체육회담

1983년 10월 9일 버마 아웅산테러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한간에 과거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1984년 3월 30일 김유순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한을 정주영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이 서한에서 북한은 "제23회 국제올림픽경기대회와 그 후에 있게 될 아시아 및 세계선수권대회에 북과 남이 유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할 것"을 제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올림픽위원회의 부책임자급을 단장으로 하는 쌍방 체육대표단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제23회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참가선수 명단 제출 마감일이 불과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단일팀 구성 문제를 협의·해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면서

도, 이를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증대의 계기로 삼기 위해 4월 2일, ①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1986년 아시아 경기대회,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비롯한 앞으로 있을 국제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할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 ② 남북체육교류를 실시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4월 9일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4월 6일 김득준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박무성 부서기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을 구성하되, 첫 회담에는 부단장을 책임자로 한 4명의 대표를 파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대한올림픽위원회도 4월 7일 김종규 대한체육회 부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 명단을 통보함으로써, 남북체육회담이 1984년 4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례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종규(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김득준(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대 표	김종하(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이종하(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 임태순(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남정문(대한체육회 이사)	박무성(북한올림픽위원회 부서기장) 김세진(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서명호(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석태호(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제1차 체육회담(4.9)에서 한국측은 북한 당국이 자행한 버마 아웅산테러사건과 최은희·신상옥 납치사건은 남북한간의 긴장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북의 체육인들이 마음놓고 접촉하고 협력할 수 없음을 지적, 회담 의제로 첫째, 1984년 제23회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를 비롯 앞으로 있을 국제체육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 둘째, 남북체육교류를 실시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국제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할 단일팀 구성과 관련하여 ① 선수 선발 ② 선수 및 임원단 구성 ③ 선수 훈련 ④ 선수단 경비 ⑤ 단기 ⑥ 단가 ⑦ 선수단 호칭 문제 등 7개항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유일팀 구성을 논하는 이 마당에서 논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버마사건과 같은 정치 문제를 개입시키는 것은 체육 문제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회의 의제로 첫째, 제23회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와 그 이후에 진행되는 국제체육경기대회들에 북과 남이 유일팀으로 출전하는 문제, 둘째, 남과 북이 체육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는 문제 등 2개 항을 제안하였다.

제2차 체육회담(4.30)에서 북한측은 제1차 회담이 무산된 책임을 한국측에 전가하고, 버마 아웅산테러사건에 대해서도 자기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제1차 회담에서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퇴장한 데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측안을 의제로 채택하는 데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3차 체육회담(5.25)에서도 한국측은 1,2차 회담에서 제의한 2개항의 의제를 보다 구체화한 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이 남북 교환경기 개최 등 7개 항의 체육교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체육회담에서 남측이 정치적 발언으로 난관을 조성하고 제23회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 유일팀 출전을 방해한 데 대해 인정하고 사죄할 것과 앞으로 회담에 정치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고 또한 정치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요구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의제 토의를 거부하였다.

특히 제4차 회담일자를 결정하자는 한국측의 제의에 대해 전화통지문을 통해 연락하자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회담을 중단시키고 말았다.

그후 정주영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1984년 5월 29일 제4차 남북체육회담을 6월 1일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했으나, 북한측은 제3차 회담에서 제기한 두가지 전제조건을 또다시 내세워 제4차 회담 개최를 거부함으로써, 제23회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출전하기 위한 체육회담은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3. 로잔느체육회담

1981년 9월 바덴바덴 제84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제24회 올림픽대회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되자 북한측은 “한반도에 긴장이 상존하고 있으며 올림픽경기의 서울 개최는 한반도의 분단 고정화를 초래하고, 이는 올림픽의 기본 이념과도 배치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서울이 대회 개최지로 부적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마란치 IOC위원장이 IOC주재하의 남북체육회담 개최문제를 제기하고, 1985년 2월 1일에는 이를 IOC집행위원회 결정사항으로 하여 남북한의 올림픽위원회(NOC)에 제의해 왔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1985년 3월 31일 서울올림픽에 대한 IOC총회의 결정사항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IOC주재하의 남북체육회담을 수락하였다. 한편 북한은 제24회 올림픽 개최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다가 1985년 7월 30일 정무원 부총리 정준기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제24회 올림픽대회를 남북한이 공동 주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IOC측은 남북한과 협의를 거쳐 8월 1일 IOC주재하의 남북체육회담이 로잔느에서 개최될 것임을 남북한에 각기 통보함으로써, 제3차 남북체육회담(’84. 5.25)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남북 체육인간의 접촉이 IOC주재하에 1년반만에 스위스 로잔느에서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대한올림픽위원회측	북한올림픽위원회측
수석대표	김종하(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유순(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차석대표	장충식(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진충국(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대 표	최만립(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하(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임태순(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남정문(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한장은(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안복만(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조명황(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장 웅(북한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

	IOC 측
수석대표	사마란치(IOC 위원장, 스페인)
차석대표	시페르코(IOC 제1부위원장, 루마니아)
대 표	쿠마르(IOC 제2부위원장, 인도) 바이츠(IOC 제3부위원장, 서독) 가프너(IOC 사무총장, 스위스) 세이크 파하드(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장, 쿠웨이트)

가. 제1차 회담

제1차 회담은 1985년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IOC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느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김종하 KOC 수석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북한 체육인들도 올림픽 헌장에 따라 모든 나라의 선수단과 똑같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문호가 열려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김유순 북한측 단장은 “제24회 올림픽대회 장소 문제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대안을 취하지 않는다면 조선인민의 통일위업과 올림픽운동의 건전한 발전에 극히 위해로운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제24회 올림픽대회는 남북한이 각각 절반씩 나누어 경기를 치루어야 한다는 「공동주최안」을 제시하였다.

① 대회주최 : 남북한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이 경기에 남북한이 「유일팀」으로 출전
② 대회명칭 : 「조선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조선 평양·서울 올림픽경기대회」
③ 경기종목 할당 : 평양과 서울에서 각기 절반씩 나누어 진행
④ 개·폐회식 : 할당된 종목에 따라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진행
⑤ 자유왕래 문제
  ○ 육·해상 운송수단 및 항공편을 이용 자유로이 왕래
  ○ 자유로운 왕래를 위하여 평양과 서울간의 도로와 철도 연결, 남포항과 인천항간 여객항로 개설
  ○ 기자들과 관람객들에게 사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고 통과지점에서 통과증 발급

⑥ 텔레비젼 방영권과 이익금 배당 : 방영권은 계약되는 데에 따르며, 이익금은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배당

⑦ 공동주최를 위한 상설기구 구성

- 공동주최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남북 공동상설기구 구성
- 기구명칭은「조선올림픽경기대회 공동조직위원회」또는「조선 평양·서울 올림픽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한편,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KOC측과의 개별 접촉에서 제24회 올림픽대회의 서울개최를 결정한 1981년 바덴바덴 IOC 총회 결정을 존중하고, 또 올림픽헌장 및 IOC와 KOC간 계약 내용도 준수할 것이라는 IOC의 기본입장을 밝혔다. 또한 KOC측에 대해 북한측이 서울올림픽대회에 보다 뜻있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으면 이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 김종하 수석대표는 제24회 올림픽의 경기진행, 장소,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가 큰 무리없이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핸드볼 등 2~3개 종목의 예선경기를 북한측에 배정하는 것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측이 남북한 공동주최안과 단일팀 참가만을 거듭 주장함으로써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제2차 회담 일자만 합의하고 끝마쳤다.

나. 제2차 회담

제2차 회담은 1986년 1월 8일부터 1월 9일까지 개최되었다.

회담에서는 IOC가 채택한 6개항의 회담 의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① IOC 위원장 환영인사
② 제24회 올림픽대회 개회식에서 남북한 선수단의 공동입장 문제 협의
③ 북한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는 자유종목의 협의
④ 양측의 관할지역을 사용하여 개최될 수 있는 종목의 협의
⑤ 문화행사에 북한이 참가하는 문제 협의
⑥ 협상 후속조치 및 IOC 위원장 종결 발언

한국측의 김종하 수석대표는 북한측이 올림픽 헌장과 IOC총회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서울올림픽대회에 참가할 것을 촉구하면서 회담 의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서울올림픽대회 개회식에 남북한 선수단이 함께 입장하는 문제
② 핸드볼 등 일부 남자단체 구기종목의 예선경기를 북한지역 경기장에 배정하는 문제
③ 남북한 지역을 연결하는 사이클 단체도로경기를 실시하는 문제
④ 서울올림픽대회 기간중 북한이 문화행사에 참가하는 문제

이에 대해 북한측은 이미 IOC와 남북한의 NOC 사이에 협의를 거쳐 확정된 6개항의 의제와 비교해 볼 때 의견이 유사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고 하면서 의제에서 제외된 공동주최안과 단일팀 구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국측 김종하 수석대표는 북한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단일팀 구성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남북한 당사자들 사이의 직접회담을 통해 해결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 제3차 회담

제3차 회담은 1986년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IOC는 1,2차 회담 및 남북한과의 개별회의 결과를 토대로 IOC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수락 여부를 6월말까지 회신해 줄 것을 남북 양측에 요청함으로써 회담을 조속히 타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그들이 주장해 오던 공동주최 및 단일팀 구성 문제를 거론치 않음으로써 종래의 입장에서 다소 후퇴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올림픽 경기의 남북 분산개최, 대회명칭, 조직위원회 및 문화행사 문제 등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이틀간의 회의가 끝난 6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IOC 중재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① IOC측은 올림픽 정신 및 1981년 바덴바덴 IOC 총회 결정사항을 존중한다는 기본정신으로 제24회 올림픽대회에서 예정된 몇몇 경기종목을 북한측에 배정토록 제의하였는 바, 특히 결승전 포함 2개 종목(양궁 및 탁구)을 북한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제의하였다.
② IOC측은 추가종목의 부분적인 북한지역 배정(축구예선 1개조 및 싸이클 단체도로경기의 남북연결 실시)과 올림픽 관련 문화행사의 북한 참여를 제의하였다.

③ 남북한의 NOC측은 이러한 IOC측 제안을 검토, 1986년 6월 30일 원칙적인 수락 여부를 IOC측에 통보할 것이며, 양측은 남북한 지역의 경기개최 장소에 대한 모든 올림픽 가족의 자유왕래 보장을 이미 IOC측에 확약하였다.

④ 양측 통보접수후 IOC측은 대회 개최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상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4차 회담을 개최할 것이다.

라. 제4차 회담

제4차 회담은 제3차 회담이 종료된 지 13개월만인 1987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개최되었다. 제4차 회담이 1년 이상이나 지연되어 온 것은 IOC 중재안에 대해 북한측이 원칙적으로 수락한다고 하면서도 종목의 추가배정 및 경기의 조직·운영 등과 관련한 일련의 요구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제4차 회담에서도 북한측은 올림픽경기의 남북한 공동주최 등 종래 그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남북한의 인구비례에 따라 올림픽 경기종목의 1/3인 8개 종목을 북한지역에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종전보다 경색된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IOC는 기존 중재안을 일부 수정·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락여부를 1987년 8월말까지 남북한이 회신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IOC의 수정 중재안에 대해 KOC는 1987년 8월 17일 IOC에 보낸 회신을 통해, 북한측이 그들의 공동주최 주장을 철회하고 남북 자유왕래를 보장하며 서울 개·폐회식에 무조건 참가할 것을 약속한다면 IOC 수정안을 수락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1987년 8월 4일 김득준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한 담화에서, IOC가 제4차 회담에서 제시한 조정안은 종래의 제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우리의 공동주최 요구와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등 기존입장을 고수하였다. 따라서 4차례에 걸친 로잔느 체육회담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4. 남북적십자회담

가. 수해물자 인도·인수와 관련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북한은 1984년 9월 8일 북한적십자회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보낸 방송통지문을 통해 북한적십자회가 서울·경기 일원에 내린 폭우로 생긴 수재민에게 쌀 5만석, 천 50만미터, 시멘트 10만톤, 기타 의약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한적은 9월 14일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북적의 제의를 수락하고 인수절차 협의를 위해 쌍방 적십자 실무접촉이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남북적십자간 실무접촉이 성립되었다.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은 1984년 9월 18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적 측	북 적 측
수석대표	이영덕(한적 부총재)	한웅식(북적 부위원장)
대 표	조철화(한적 사무총장)	최원석(북적 상무위원)
	송영대(한적 재해구호협의회 위원)	최기봉(북적 부장)
	최은범(한적 구호봉사부장)	백영호(북적 부서기장)
	이준희(한적 사회사업 자문위원)	리남인(북적 남포시위원회 부위원장)

접촉에서 한적은 수재물자 인도·인수 방법에 관한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물자를 인도·인수하는 주체는 남북한의 두 적십자사가 된다.
② 물자의 인도·인수는 9월중에 완료한다.
③ 물자의 운반은 배로 한다.
④ 물자의 인도·인수 장소는 운반거리 등을 감안하여 인천항으로 한다.
⑤ 물자는 전량 일괄하여 인도·인수한다.

⑥ 물자의 인도·인수와 관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남북직통전화를 운영한다.

이에 대해 북적은 물자는 육로와 해상을 이용하여 수송할 것과 서울·속초항·인천항 및 부산항 등을 전달 장소로 제시하고, 전달 방법은 북한 선원과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인계·인수 의식을 거행하고 이들이 직접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수재민을 위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북 쌍방은 인도·인수 장소 문제와 관련하여 물자수송은 해상과 육로로 하고, 해상수송은 인천항과 북평항을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육상수송의 경우에는 한적이 인도·인수 장소로 판문점 남측지역을 주장한 데 반해, 북적은 서울까지 직접수송을 고집하면서 차기 접촉을 9월 21일에 개최하자는 말만 남기고 일방적으로 퇴장하였다.

이후 북적측은 실무접촉에서 그들이 보여준 입장과 일방적 퇴장에 대한 내외의 비판여론을 의식하여 9월 19일 실무접촉 대표단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적이 요구한 인천·북평·판문점으로 물자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한적이 수락함으로써 남북적십자간에 수재물자 인도·인수 작업이 1984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루어졌다.

나. 남북적십자 본회담 예비접촉

유창순 한적 총재는 남북적십자간의 수재물자 인도·인수를 계기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보다 폭넓게 하자는 뜻에서 1984년 10월 4일 손성필 북적 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였다.

이에 북적의 손성필은 10월 29일 남북적십자 본회담 재개에 따른 실무문제 협의를 위한 예비접촉을 갖자고 제의해 옴에 따라,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접촉이 1984년 11월 20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적 측	북 적 측
수석대표	조철화(한적 사무총장)	서성철(북적 상무위원)
대 표	송영대(한적 재해구호협의회 위원)	박영수(북적 부부장)
	최은범(한적 구호봉사부장)	박동춘(북적 과장)

접촉에서 쌍방은 남북적십자 본회담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① 장소 : 제8차 회담은 서울에서, 제9차 회담은 평양에서 한다.
② 의제 : 1972년 6월 16일 제20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쌍방이 기합의한 5개항을 의제로 한다.
-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 ○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문제
- ○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③ 대표단 구성 :
- ○ 대표 : 7명, 자문위원 : 7명, 수행원 : 20명, 기자 : 50명

④ 상설연락사무소 운영 :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의 기능 및 직통전화를 즉시 재개한다.
⑤ 공개여부 : 8, 9차 본회담은 공개로 하며, 그 후 회담부터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 있다.
⑥ 기타 운영절차문제 : 신변보장, 왕래절차, 표지, 장비 및 소지품, 교통, 통신, 회담장 외의 활동, 회담장 시설, 편의제공 등에 대해서는 1972년 8월 11일 제25차 예비회담과 1972년 10월 24일 제3차 본회담의 추가 합의사항 대로 한다.

다. 남북적십자 본회담

(1) 제8차 본회담

1985년 1월 22일부터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연기되어 1985년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적 측	북 적 측
수석대표	이영덕(한적 부총재)	리종률(북적 부위원장)
대 표	조철화(한적 사무총장) 송영대(한적 재해구호협의회 위원) 이병호(한적 홍보 자문위원) 정용석(한적 청소년 자문위원) 이준희(한적 사회사업 자문위원) 이병웅(한적 총무부장)	서성철(북적 상무위원) 한연수(북적 상무위원) 박영수(북적 동포사업부장) 김완수(북적 문화선전부장) 박동춘(북적 국제부 부부장) 김창현(북적 조직계획부 부부장)
수석자문위원	조덕송(조선일보 논설위원)	강석숭(로동당 위원)
자문위원	김동환(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이사) 이경숙(숙명여대 교수) 정시성(한적 회담운영위원) 안병준(연세대 교수) 이상우(서강대 교수) 한승주(고려대 교수)	김석준(사회민주당 부위원장) 최희준(천도교청우당 부위원장) 림춘길(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남(직업총동맹 부위원장) 김창룡(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부위원장) 박재로(조총련 부의장)

제1일 회의(5.28)에서 이영덕 한적 수석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쌍방이 본회담과 예비접촉을 통해 이미 합의·확인한 바 있는 회담 의제, 의제토의에 적용할 원칙 및 사업 추진기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회담 의제
- ○ 1984년 11월 20일의 예비접촉에서 합의한 5개항의 의제를 재확인

② 의제토의의 원칙
- ○ 7·4 남북공동성명 정신과 적십자원칙에 기초하여 이산겨레의 고통을 풀어주고 통일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
- ○ 의제 해결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칙과 자유로운 원칙, 남북공동성명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

③ 사업 추진기구
- ○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판문점공동사업소」 설치

또한 이영덕 수석대표는 8월 15일까지는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판문점공동사업소」를 발족, 이산가족찾기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아울러 시범사업으로서 8월 15일을 기해 일정규모의 제1차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을 구성하여 상호 교환할 것도 제의하였다.

북적은 과거의 진부한 방식을 버리고 참신한 새로운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쌍방이 이미 합의한 바 있는 5개항의 의제를 일괄 토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북적은 남북적십자회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방 40돌을 맞이하는 1985년 8월을 기해 쌍방 적십자사 총재들이 각기 적십자회원들로 구성된 100명 정도의 예술단과 함께 상호 방문하여 전통적인 민속가무를 기본으로 하는 축하공연을 가질 것도 제의하였다.

제2일 회의(5.29)에서 이영덕 수석대표는 북적이 제안한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제의를 수용, 8월 15일을 기해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을 교환할 것과, 일정 규모의 쌍방 기자들이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북적이 동의한다면 7월 15일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종률 북적 단장은 5가지 의제들에 공통적으로 관계되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서 가장 선결적이고 중핵적인 방도는 자유왕래임을 내세워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합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 대표단은 사업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제9차 회담에서 계속 토의하기로 하고, 의견일치를 본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후 별도 실무접촉을 갖고 절차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한 후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끝마쳤다.

(2) 제9차 본회담

제9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은 1985년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되었다.

제1일 회의(8.27)에서 한적 대표단은 「남북적십자 본회담 의제 5개항의 사업실시에 관한 합의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사업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산가족찾기 의뢰서와 회보서를 주고 받음으로써 실시하는 방법과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과정에서 알아내는 방법으로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방문과 상봉을 실현하는 사업은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실시한다.

○ 상봉의 경우 당사자들의 희망에 따라 판문점이나 기타 장소에 면회소를 설치하여 상봉할 수 있도록 한다.

○ 판문점 면회소의 설치 및 운영은 「남북적십자 판문점공동사업소」가 담당한다.

③ 남북의 서신거래 업무는 「남북적십자 판문점공동사업소」가 담당하도록 한다.

④ 재결합을 위한 실무적 사항은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다.

⑤ 쌍방은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4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에서 합의한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판문점공동사업소」를 조속히 발족시킨다.

⑥ 서울과 평양에 각각 「적십자대표부」를 설치한다.

그러나 북적은 제8차 본회담에서 5개항 의제를 일괄 토의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도로서 자유왕래를 실현하는 문제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합의서로 채택하고 그 이후에 사업의 추진 방법과 절차를 토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1단계로 자유왕래 문제의 합의서 채택, 2단계로 자유왕래 이외의 기타 방도 토의 해결, 3단계로 의제의 구체적인 실현과 관련된 절차 토의 등의 단계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북적의 단계별 해결 주장은 제8차 회담에서 쌍방이 동의한 「일괄토의·해결원칙」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제1일 회의가 끝난 후 북적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우리측 대표단을 모란봉경기장으로 안내하여 북한정권의 선전을 목적으로 한 집단체조를 관람케 함에 따라 한적측이 이에 항의하고 중도에 퇴장하였다.

제2일 회의(8.28)에서 북적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합의를 무시하고 공개리에 진행하는 한편, 모란봉경기장 사건을 새삼 거론하면서 한적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본질 문제 토의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1985년 11월 26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종료되었다.

(3) 제10차 본회담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은 1985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제1일 회의(12.3)에서 이영덕 수석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먼저 지난 제9차 본회담에서 한적이 제안한 「남북적십자 본회담 의제 5개항의 사업실시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자유왕래 절차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 및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으로 된 종합적인 합의서(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를 일괄토의, 종합적인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적십자회담을 하루 속히 마무리 짓고 사업실천 단계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사업실천 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에라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사업의 좋은 성과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족전통의 명절인 1986년 구정을 기하여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을 계속 실시할 것을 제의하고, 고향방문단 교환시 서울과 평양에서 상봉하고 다시 헤어진 가족들간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상호 서신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아울러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적은 제9차 본회담에서 제시했던 자유왕래에 관한 그들의 제안을 일부 보완, 합의서 형식으로 제시하고 이를 우선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북적은 이산가족·친척들 가운데서 연령상, 신체상, 기타 사정으로 자유왕래를 할 수 없는 대상들에 한해 적용할 이른바 「자유왕래 이외의 기타 방도에 관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① 왕래자의 인도적 활동을 장애하는 일체의 간섭·통제를 금하며, 왕래자의 신변을 구속하는 일을 금지
② 친척은 방계에서 8촌, 처·외가는 4촌까지, 그 밖에 요구하는 친척도 포함
③ 자유왕래할 수 없는 가족·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방도로 자기측 적십자단체에 의뢰하거나 자기가 신뢰하는 대리인을 상대측 지역에 보내 주소와 생사 확인
④ 자유왕래할 수 없는 가족·친척들의 상봉 실현방도는 판문점과 철원, 그 밖의 당사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상봉
⑤ 자유왕래할 수 없는 가족·친척들의 재결합 실현방도는 당사자의 편지거래를 통해 재결합 실현, 또는 자기의 친척과 신뢰하는 중개자를 내세워 재결합 실

현 등을 제시하였다.

제2일 회의(12.4)에서 이영덕 수석대표는 쌍방이 제8차 본회담에서 합의한 의제의 일괄토의 및 자유왕래 원칙을 준수하고 의제 5개항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서 북적에서도 자유왕래 문제 뿐 아니라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 및 판문점 공동사업소의 구성·운영 문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합의서(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1986년 구정을 기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교환사업 실시와 고향방문단 교환시 상봉했던 이산가족들간의 서신교환 제안에 대한 북적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하였다.

이에 반해 북적은 제1일 회담에서 그들이 제시한 바 있는 자유왕래 및 자유왕래 이외의 기타방도들에 대한 제안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구정을 기한 제2차 고향방문단 교환과 상봉한 이산가족들간의 서신교환 제의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제2일 회의도 의제 5개항을 기본합의서로 하고, 자유왕래 절차 문제 및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합의서를 채택하자는 한적의 입장과 의제 5개항의 사업실시에 관한 합의서를 우선 채택하자는 북적의 입장이 대립됨으로써 진전없이 회담이 끝났다.

다만, 쌍방은 제11차 본회담을 1986년 2월 26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이 1986년 1월 20일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남북대화를 전면 중단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아직까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라.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의 합의에 따라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1985년 5월 29일과 5월 30일 2차례 개최되었다. 실무접촉에서 쌍방은 1985년 8월 15일을 기해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을 실시하는데 합의하고, 구체적인 절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7월 15일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차 실무대표접촉(7.15)에서 쌍방은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방법과 절차 문제를 각기 제안하였다.

제2차 실무대표접촉(7.19)에서는 방문지 문제가 주로 거론되었는데, 북적대표단은 제1차 접촉에서와 같이 방문지를 서울과 평양으로 국한하자고 고집하였다.

이에 대해 한적은 제1차 실무대표접촉에서 방문지 문제는 북적에서 검토하고 방문단의 규모에 대해서는 한적이 검토하기로 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고향방문단이 각자의 고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다면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규모는 별 문제없이 타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방문지 문제를 비롯한 제반 문제를 하나 하나 토의·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제3차 실무대표접촉(8.22)은 방문단 규모와 방문지, 방문단 교환에 따른 방법과 제반 절차 등 비공식접촉(8.19)에서 쌍방간에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기 작성해 온 합의서(안)을 놓고 문안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접촉에서 남북 쌍방 적십자사는 큰 쟁점없이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법과 절차 문제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보았다.

쌍방은 이 사업을 1985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에 걸쳐 동시 교환방문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규모는 적십자 중앙기관 책임자를 단장으로 하여 고향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취재기자 30명 및 지원인원 20명 등 총 151명으로 하고, 방문지는 서울과 평양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85년 9월 20일 상오 9시 30분을 기해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동시 교환방문이 실현됨으로써, 남북간에는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들이 직접 가족·친척들과 상봉하게 되었다.

이산가족의 상봉은 평양을 방문한 한국측 방문단의 경우 35명이 41명의 가족·친척들과 상봉하였으며, 서울을 방문한 북한측은 30명이 51명과 상봉하였다. 한편 예술공연단은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예술단은 평양 대극장에서, 평양예술단은 서울 국립극장에서 각기 2회의 공연을 가졌다.

5. 남북경제회담

1984년 10월 12일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북한의 최영림 부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필요하다면 남북한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상설기구로서 쌍방 당국과 경제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남북한 경제협력기구를 실치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이상과 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남북한 경제당국 및 민간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남북경제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1984년 10월 16일 김환 부총리 명의로 서한을 통해 한국측의 경제회담 개최제의에 호응함으로써,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남북한간 경제분야의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기환(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 단장)	리성록(무역부 부부장)
대 표	차상필(상공부 제2차관보) * 제2차 회담부터 임인택으로 교체	계형명(채취공업위원회 참사) * 제2차 회담부터 한영읍으로 교체
	구본태(국토통일원 정책연구부장)	백준혁(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무위원)
	김인준(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허항찬(대외경제협조총회사 부사장)
	신봉식(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	리진식(금속공업부 국장)
	노진식(대한무역협회 전무이사)	손종철(무역경제연구소 부소장)
	임병석(중소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김해룡(광명연합회사 부사장)

가. 제1차 회담

제1차 경제회담은 1984년 11월 15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한국측은 남북간에 물자교역을 활발히 진전시키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본 및 기술의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회담 의제로 「남북간의 교역을 실시하는 문제」와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문제」 등 2개항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남북간의 물자교역 실시와 관련하여 교역품목, 교역량, 거래방식,

결제통화 등 10개항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 관계당국간에 교역협정과 세부 약정을 체결할 것과 남북간의 교역 및 경제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쌍방의 관계당국 및 경제단체 인사들로 구성되는 가칭 「남북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아울러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회담의제로 「북과 남사이의 경제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 데 대하여」로 할 것을 주장하고, 교역품목, 거래방식, 운송 문제 등 물자교류와 경제협력 실시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제 문제 토의에 있어 「북과 남사이의 경제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 데 대하여」로 할 것을 고집하여 처음에는 이견을 보였으나, 한국측이 절충안으로서 남북간에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문제로 제시하자 북한측도 합작을 협력으로 수정하는 등 한국측의 제의에 접근해 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다음 회담때 이를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함으로써 의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제1차 회담을 끝마쳤다.

나. 제2차 회담

제2차 경제회담은 팀스피리트 훈련 등을 구실로 한 북한의 대화 거부로 2차례에 걸쳐 연기된 후 1985년 5월 17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한국측은 교역 문제에 있어서 이미 남북 쌍방간에 의견이 합치된 철광석, 무연탄, 마그네샤크링카, 옥수수, 명태, 철강재, 섬유 등 공통교역 품목을 중심으로 우선 교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역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북한이 판매하기를 희망하고 또 한국이 구입하기를 희망했던 품목 가운데 하나인 무연탄 30만톤을 당장 북한으로부터 구입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남북간의 경제합작과 교류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쌍방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면서, 제1차 회담에서 쌍방간에 거의 의견이 접근되었던 의제 문제의 토의를 회피함으로써 별다른 진전없이 끝마쳤다.

다. 제3차 회담

제3차 경제회담은 1985년 6월 20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한국측의 김기환 수석대표는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쌍방의 공통점을 종합 정리하고,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자는 취지에서 「남북간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촉진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제2차 회담에서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였으나, 남북간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추진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데는 동의하였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이 제시한 합의서(안)을 연구하여 제4차 회담에서 이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갖기로 하고 회담을 끝마쳤다.

라. 제4차 회담

제4차 경제회담은 1985년 9월 18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한국측은 지난 제3차 회담에서 쌍방이 남북간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추진과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던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토의와 문안조정을 위해 쌍방 회담대표 3명과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 각각 7명 이내로 구성되는 실무회담을 1개월 이내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제3차 회담에서 각각 분리 제시한 「남북경제협조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한 경제합작과 교류를 위한 16개 방안」, 「남북상품교류위원회 구성안」을 종합하여 하나의 합의서(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쌍방 제안중 거래 및 결제방식, 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수 등을 비롯하여 의견조정이 필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쌍방이 제시한 합의서(안)을 바로 실무회담으로 넘길 것을 주장함으로써 성과없이

끝마쳤다.

마. 제5차 회담

제5차 경제회담은 1985년 11월 20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한국측은 제4차 회담에서 쌍방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에 대해 합의서 명칭 문제, 사업추진의 원칙 문제, 교류대상 품목 명시여부, 거래방식 및 결제은행, 경제협력대상사업 명시여부, 공동위원회 기능 및 분과위원회 수 등 7개항의 검토의견을 밝혔다.

또한 남북간의 물자교역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것과 무연탄, 철강 등 쌍방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서로 사고 팔자는 데에 대해서는 벌써 1년전에 사실상 합의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동안 한국측이 수차례에 걸쳐 제의한 무연탄 30만톤 구입 문제와 관련, 연내에 쌍방간에 등가방식에 의한 물물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한국측이 제기한 7개항과 중복되는 합의서 명칭 문제, 사업추진 원칙 문제, 교류대상 품목 명시 문제 및 공동위원회 수 이외에 서명자의 최고책임자로부터 권한위임 명시 문제와 서명난에 국호사용 문제를 추가적으로 제시하면서, 한국측이 제시한 무연탄 30만톤 구입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였다.

이날 회담에서도 쌍방은 서로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전혀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채 제6차 회담을 1986년 1월 22일 개최하기로 하고 제5차 회담을 성과없이 끝마쳤다.

그러나 북한은 1986년 1월 22일로 예정된 제6차 회담을 불과 이틀 앞둔 1월 20일,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진행중인 모든 남북대화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남북경제회담도 중단되고 말았다.

6.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북한은 1985년 4월 9일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명의로 채문식 국회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남북간의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문제를 협의

하기 위한 남북국회회담을 개최할 것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예비접촉을 5월초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이 제의에 대해 한국국회는 1985년 6월 1일 남북국회회담에 관한 회신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6월 3일 이재형 국회의장 명의로 북한 최고인민회의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남북간의 협의기구 구성 문제와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국회의원 각 5명이 참가하는 예비접촉을 7월중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한국국회의 제의에 대해 7월 5일 북한이 최종적으로 동의함으로써 남북국회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예비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권정달(민주정의당)	전금철(조선로동당)
대 표	정시채(민주정의당)	주창준(조선로동당)
	신순범(신한민주당)	최장룡(조선로동당)
	박관용(신한민주당)	렴국렬(조선사회민주당)
	강경식(한국국민당)	우달호(천도교청우당)

가. 제1차 접촉

남북국회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1차 예비접촉은 쌍방에서 각기 5명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1985년 7월 23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접촉에서 한국측 권정달 수석대표는 북한이 주장하는 불가침선언 문제와 관련하여,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쌍방의 책임있는 정부 당국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한국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열어 긴장완화와 전쟁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과 무력사용 금지, 상호 내정불간섭, 군비경쟁 지양 및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등을 포함하는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해 온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한 통일헌법 제정을 통해 통일조국의 청사

진과 통일조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민족의 진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북한측은 회담 의제로 그들이 4월 9일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하면서 제안했던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문제」를 우선적으로 토의할 것을 주장하면서 남북국회회담 개최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본회담 수석대표의 급 문제(級 問題)와 제1차회담 개최장소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① 회담 형식 : 쌍방 국회의 대표회담으로 한다.
② 대표단 규모 : 각각 11명으로 구성한다.
③ 회담 장소 : 서울·평양을 번갈아 가면서 한다.
④ 일　　시 : 예비회담이 끝나고, 1개월내 첫 회담을 개최한다.
⑤ 보도·기록 :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⑥ 대표단의 왕래절차·편의보장 : 종래 남북대화의 관례에 따른다.

나. 제2차 접촉

제2차 예비접촉은 1985년 9월 25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접촉에서 권정달 수석대표는 제1차 접촉에서 쌍방간에 합의를 보지 못한 의제 문제, 본회담 수석대표의 급 문제와 제1차회담 장소 문제 등을 협의·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문제」의 우선적 토의를 거듭 주장하면서, 제1차 접촉에서 제의한 내용과 남북 쌍방간에 의견의 접근을 본 절차 문제들을 묶어 합의서를 초안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국회회담에서 불가침선언을 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서는 선언적 의미밖에 없으므로 실천력을 가진 정부 당국에서 직접 다루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측은 더 이상 불가침 문제를 의제로 거론하지 않고 국회회담의 의제를 「북과 남사이에 긴장을 완화하며, 조국통일을 촉진시킬 데 대하여」로 수

정・제의하였다.

제2차 예비접촉도 1차때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입장만을 계속 주장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3차 접촉장소와 일자 문제에 대해서 추후 직통전화를 통해 협의・결정하기로 합의하고 끝마쳤다.

그러나 북한이 1986년 1월 20일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남북간의 모든 대화를 중단시킴에 따라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도 제2차 접촉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7.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가. 제1～3차 준비접촉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은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과는 별개의 것으로 김재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여 「서울올림픽대회에의 북한참가 촉구 결의문」을 담은 서한을 1988년 7월 18일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에게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7월 21일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명의로 8월중 제1차 남북국회연석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서한과 함께 「남북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초안을 보내왔다. 이어서 7월 26일 양형섭 의장은 재차 김재순 국회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남북국회연석회의에서 서울올림픽에 북한측 초청 문제와 올림픽 공동주최안을 긴급의제로서 동시에 토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이로써 1985년 9월 제2차 국회회담 예비접촉 이후 2년 11개월만에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이 1988년 8월 19일부터 1990년 1월 24일까지 10차례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제1차 준비접촉(8.19)에서 북한측 전금철 단장은 남북국회회담의 형식을 정당・사회단체 대표,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로 하고, 의제는 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 문제 ②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 문제, 그밖에 긴장상태의 완화를 비롯한 남한측이 제기하는 문제로 하자고 제의하면서 북한측이 작성한 남북국회연석회의 소집 및 운영과 관련 합의서 초안을 제시, 이를 문항별로 토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박준규(민주정의당) * 제7차 접촉부터 채문식 의원으로 교체	전금철(조선로동당)
대 표	이한동(민주정의당) * 제7차 접촉부터 김현욱 의원으로 교체 김봉호(평화민주당) 박관용(통일민주당) 김용환(신민주공화당) * 제8차 접촉부터 이희일 의원으로 교체	안병수(조선로동당) 리동철(조선로동당) 리주웅(조선사회민주당) 박문찬(천도교청우당)

이에 대해 박준규 수석대표는 본회담의 형식, 의제, 대표단 구성, 본회담 일자 및 장소, 실무절차 문제 등을 중심으로 토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2차 준비접촉(8.20)에서는 쌍방간의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 남북국회회담의 형식과 의제 문제에 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였다. 한국측은 회담 형식에 대해 대표회담으로 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의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①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 문제
② 남북간 인적·물적교류와 협력 문제
③ 남북불가침 문제
④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재개 문제
⑤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

또한 긴급의제로 제24회 올림픽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남북국회회담을 8월 29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한국측이 제시한 절충안에 대해 전혀 문제해결 방도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경직된 입장을 보였으며, 불가침공동선언 문제와 올림픽 문제가 초미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국회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동시에 토의하자는 1차 접촉에서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한국측의 긴급제

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였다.

제3차 준비접촉(8.22)에서 한국측은 남북국회회담을 이달 안에 열어 제2차 준비접촉에서 제기한 절충안을 폭넓게 협의·해결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제2차 접촉시 긴급제의로서 제24회 올림픽 문제와 관련 남북국회회담을 8월 29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은 불과 며칠 후로 다가온 제24회 서울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이 함께 참가함으로써 민족화합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려는 데 참뜻이 있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회담 형식을 남북연석회의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회담 의제에 있어서도 한국측이 제의한 불가침협정 체결을 권고하는 문제를 철회하고 북한측이 주장해 온 불가침공동선언 채택만을 의제로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측의 긴급제의에 대해 이번 접촉이 올림픽 문제와 불가침 문제를 다 같이 묶어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나. 수석대표 접촉

제3차 접촉시 한국측이 쌍방 수석대표간의 단독접촉을 제기한 데 대하여 북한측은 다음 날인 8월 23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8월 23일 11시에 비공개로 만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북한의 제의가 시간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쌍방 수석대표간의 접촉 일자를 8월 24일로 하며, 각기 1명의 수행원을 참석토록 하자는 수정 제의에 북한측이 동의함으로써, 쌍방 수석대표간의 접촉이 1988년 8월 24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접촉에서 한국측은 북한의 올림픽참가 문제에 대한 진의를 탐색하였으나, 북한측은「연석회의」준비사업을 하는 것이 자기들의 기본입장이라는 점을 들어 한국측에 조정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성과없이 끝마쳤다.

다. 제4～7차 접촉

제4차 준비접촉(8.26)에서 한국측은 올림픽 문제가 초미의 과제라는 데 쌍방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올림픽 문제를 긴급의제로 한 남북국회회담을 8월 29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재강조 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회담형식과 관련, 연석회의를 합동회의로 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단체·개별인사의 참가 문제는 본회담에서 협의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제5차 준비접촉(10. 3)에서 북한측은 회담형식은 남북국회합동회의로 하되, 참가 인원수를 대폭 축소하여 북한측은 최고인민회의 전체 대의원 655명의 3분의 1(218명), 한국측은 전체 국회의원 299명의 절반(150명)이 참가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올림픽 문제가 자동적으로 탈락된 조건에서 의제를 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 ②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시할 데 대한 문제로 하자고 주장하면서,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재개 문제는 이미 양측이 남북사이의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를 실시할 데 대한 문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양해한 조건에서 회담 재개 문제를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측은 의제 문제와 관련해서 ①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재개 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 문제 ② 남북불가침 문제 ③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제의하면서, 회담 형식과 관련하여 「남북국회회담을 개회모임과 의제 토의를 위한 대표회담, 폐회모임 순으로 진행한다」 등 6개항의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박준규 수석대표는 한국측이 제시한 의제 2항 남북불가침 문제는 쌍방의 입장을 모두 포용한 타협안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준비접촉에서 불가침의 내용과 성격까지 규정하는 것은 대표단의 임무를 벗어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이번 접촉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 문제를 양보할 수 없는 선으로 설정하고, 불가침공동선언 초안이 선언의 기본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6차 준비접촉(11.17)에서 한국측은 제5차 준비접촉에서 수정 제의한 회담 형식에 있어서의 6개항 제안을 다시 한번 강조한 데 이어, 의제 문제에 있어 그간 북한측이 주장하던 남북불가침 공동선언 발표 문제를 남북불가침선언 문제로 바꾸어 제의하였다.

이와 관련 북한측은 회담 형식에서 개막 회의, 기본문제 토의를 위한 대표회의, 폐막 회의로 나누어 진행하자고 수정 제의함으로써 외견상 한국측 제안에 상당히 접근한 반응을 보였다.

남북 양측은 국회회담을 개회모임, 의제토의를 위한 본회담, 폐회모임 순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개·폐회모임은 남북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고 본회담의 대표수를 양측에서 각각 50명씩으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의제토의를 위한 본회담 운영에 있어서의 대표모임의 성격 및 의사결정방법 등 본질 문제에 대해서는 큰 시각차를 보였다.

한편, 북한측은 회담 의제에 있어서 한국측이 남북불가침선언 문제로 수정 제의한 데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외군철수 문제 등 기본적 요소가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7차 준비접촉(12.29)에서 북한측 전금철 단장은 “정세가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남한측은 팀스피리트 훈련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갈래의 대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 문제를 남북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이 문제는 국회회담의 권능과 기능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6차 준비접촉때까지 전혀 거론하지 않던 이 문제를 준비접촉의 마무리 단계에서 갑자기 제의하는 것은 남북국회회담을 지연시키려는 술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남북 쌍방은 제6차 준비접촉에서 본회담 형식과 의제 문제에 많은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제7차 접촉에서는 입장의 차이만 더욱 크게 노출시켰다.

다만, 제8차 준비접촉을 1989년 2월 10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끝마쳤다.

그러나 북한측이 1989년 2월 8일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북한측 대표단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팀스피리트 훈련을 강행하는 조건에서 제8차 준비접촉을 예정대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주장,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을 중단

시켰다.

라. 제8～10차 접촉

한국측 수석대표가 1989년 2월 9일 대북성명을 통해 하루속히 준비접촉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 이후, 서한(5.26) 및 쌍방 전화통지문이 오간 다음 10개월만인 1989년 10월 25일 제8차 준비접촉이 재개되었다.

제8차 준비접촉(10.25)에서 한국측은 제7차 접촉시 제시했던 합의서(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내놓았으나, 북한측은 팀스피리트 문제, 문익환·임수경·서경원의 사법처리 중지 문제 등 회담 외적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일관함으로써, 실질 문제는 토의되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제9차 준비접촉(11.29) 및 제10차 준비접촉('90.1.24)에서도 북한측은 콘크리트장벽 철거, 북남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개최 등 회담과 관련없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회담의 진전을 방해함으로써 회담을 성과없이 끝마치고, 제11차 준비접촉을 1990년 2월 22일 갖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1990년 2월 8일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고위급회담 예비회담·적십자 실무대표접촉 북한측 대표단 명의의 연합성명을 통해 팀스피리트 훈련기간 동안 진행중에 있는 모든 남북대화를 연기한다고 선언함으로써 국회회담 준비접촉은 또다시 중단되고 말았다.

제4절 1990년대의 남북대화

1. 남북고위급회담

가.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1988년 12월 28일 강영훈 국무총리는 연형묵 북한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남북한간 제분야에서의 상호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한「남북총리회담」개최를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1989년 1월 16일 연형묵 북한 총리는「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개최에 동의하면서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동년 2월 8일에 갖자고 제의해 옴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남북한 쌍방은 1989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송한호(국토통일원 차관)	백남준(정무원 참사)
대 표	김삼훈(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류성철(정무원 실장)
	용영일(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실장) * 제3차 회담부터 박종권으로 교체	최우진(외교부 국장)
	강근택(청와대 비서관) * 제3차 회담부터 염홍철로 교체	최성익(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김보현(국무총리실 심의관)	김영철(인민무력부 부국장)

제1차~제4차 예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와 문익환, 임수경 등의 석방 문제, 민족통일협상회의 소집 등 회담 외적인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본회담의 절차 문제와 의제 문제에는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제5차 예비회담에서 비로소 본회담 명칭 문제에 있어서 한국측의

「남북고위당국자회담」 또는 「남북총리회담」 제안과 북한측의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주장을 절충하여 「남북고위급회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측은 제6차 예비회담에서 긴급제안으로 콘크리트장벽 제거, 남북당국·정당수뇌급 협상회의 개최,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문제 등을 들고 나와 실질적인 토의를 거부함으로써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후 중단되었던 제7차 예비회담이 5개월여만인 1990년 7월 3일 개최되어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본회담 의제 문제에 있어서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 문제로 합의」함으로써 고위급회담 절차 문제 전반에 타결을 보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1990년 7월 26일 개최된 제8차 예비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나. 남북고위급회담

(1)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0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강영훈(국무총리)	연형묵(정무원 총리)
차석대표	홍성철(통일원 장관)	김광진(인민무력부 부부장)
대 표	정호근(합참의장)	안병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이진설(경제기획원 차관)	백남준(정무원 참사실장)
	김종휘 (대통령 외교안보담당보좌관)	김정우(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이병용(국무총리 특별보좌관)	최우진(외교부 순회대사)
	임동원(외교안보연구원 원장)	김영철(인민무력부 부국장)

회담에서 한국측은 상호 체제인정 및 존중을 포함한 8개항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8개항을 제안하면서,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방향」 5개항도 함께 제시

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회담의 전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3개 원칙」(①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 재확인 및 준수 ② 일방의 이익보다 민족공동의 이익을 준수 ③ 회담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회담의 진전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함)과 유엔가입 문제, 팀스피리트 훈련 문제, 방북구속자 석방 문제 등 「3개항의 긴급 문제」를 제1차 회담에서 협의·해결하자고 주장하면서 미군철수, 핵무기 철거, 군축 등 정치·군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면 교류·협력은 자연히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쌍방이 본질적인 문제에 입장 차이를 노정시켰지만, 분단 45년만에 남북의 총리가 처음 만났다는 사실 자체와, 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2)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0년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한국측은 제2차 회담에서도 상호 실체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 개선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으며, 아울러 북한측에 대남혁명노선을 포기하고 실질적인 평화공존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유도코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에 북한측이 제1차 회담시 주장한 3개 원칙을 수용하여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한편, 북한측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실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국측이 제기한 대남혁명노선 포기, 이산가족 문제 해결, 경제교류와 협력 활성화 등 3가지 당면 해결과제 토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제1차 회담시 제기한 3개항의 긴급 문제를 또다시 주장하는가 하면, 「남북불가침에 관한 선언(초안)」을 내놓고 이의 채택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국측이 2일 회의에서 북한측의 불가침선언(초안)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안)」을 채택하자고 한데 대해서도

북한측은 불가침선언의 채택만을 고집함으로써 회담이 성과없이 끝났다.

(3)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0년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한국측은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난 제1, 2차 회담과 3차례 실무대표접촉 과정에서 제기해 온 북한측의 여러가지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이 주장하는 불가침선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실효성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첫째, 쌍방간에 불가침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실천의지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둘째, 상대방 체제를 부정하고 파괴·전복시키려는 정책이나 태도를 포기해야 하고 셋째, 불가침의 이행을 보장하는 확고한 보장장치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이같은 입장에 기초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위해 우리측이 추진해 온 일관된 노력을 설명하면서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후 1개월 이내에 구성·운영되는 정치군사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할 8개항의 「불가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그동안 진행된 회담에 대한 3가지 견해라는 것을 밝히면서, 한국측이 평화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하고, 외세의존적 자세를 배격해야 하며, 신의있고 성실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난 제1, 2차 회담에서 제기했던 3개항의 긴급 문제에 「베를린 범민족연합 결성」 참가와 관련한 구속자 석방 문제를 포함시켜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측의 확답을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이와 함께 그들이 제시한 「불가침선언 초안」과 한국측이 제2차 회담시 내놓은 「화해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초안」을 바탕으로 「북남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이라는 하나의 문건을 채택하자고 주장, 「불가침 선언」의 우선적 채택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와 같이 제3차 회담 역시 쌍방간의 기본 입장 차이로 제4차 회담의 개최일자 합의 외에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났다.

(4)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1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원식(국무총리)	연형묵(정무원 총리)
대 표	김종휘(대통령 외교안보담당보좌관)	안병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송응섭(합참 제1차장)	김광진(인민무력부 부부장)
	송한호(통일원 차관)	백남준(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강현욱(경제기획원 차관)	김정우(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임동원(외교안보연구원 원장)	최우진(외교부 순회대사)
	이동복(국무총리 특별보좌관)	김영철(인민무력부 부국장)

회담에서 쌍방은 합의서를 단일문건으로 할 것과 합의서의 명칭, 내용 및 체계 등에 합의함으로써 타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다음과 같은 공동발표문 채택에 합의하였다.

① 남과 북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현을 위해 단일문건으로 된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합의서의 명칭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 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합의서의 내용 구성을 서문,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수정 및 발효 조항 순으로 중간 제목을 설정하여 해당 내용을 정리 구성하기로 하였다.

(5)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전문과 25개 조항으로 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타결하고 이를 채택·서명하였다. 아울러 현안으로 떠오른 한반도 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표접촉을 12월안에 개최

키로 하는 등 3개항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하였다.

① 남과 북은 1991년 12월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빠른 시일 안에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2월 안에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992년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사이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6)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원식(국무총리)	연형묵(정무원 총리)
대 표	김종휘(대통령 외교안보담당 수석비서관)	안병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송응섭(합참 제1차장)	김광진(인민무력부 부부장)
	임동원(통일원 차관)	백남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한갑수(경제기획원 차관)	김정우(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공로명(외교안보연구원 원장)	최우진(외교부 순회대사)
	이동복(국무총리 특별보좌관)	김영철(인민무력부 부국장)

회담에서 쌍방은 2월 19일 역사적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효시키고,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발효시켰다.

아울러 남북 쌍방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명단을 1992년 3월 6일 서로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하고 각 분과위원회 개최 장소와 날짜도 합의하였다.

(7)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원식(국무총리)	연형묵(정무원 총리)
대 표	김종휘(대통령 외교안보담당수석 비서관)	김광진(인민무력부 부부장)
	송응섭(합참 제1차장)	안병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임동원(통일원 차관)	백남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공로명(외교안보연구원 원장)	김정우(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이동복(국무총리 특별보좌관)	최우진(외교부 순회대사)
	박용옥(국방부 군비통제관)	김영철(인민무력부 부국장)

회담에서 쌍방은 5월 7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키고, 8.15 해방 47돌에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과 예술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 분야의 이행기구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 남북화해분야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이전에 남북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킨다.

○ 남북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1992년 5월 18일자로 구성함과 동시에 각기 자기측 구성원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 남북 쌍방은 1992년 5월 18일자로 판문점 자기측 지역에 설치할 남북연락사무소 자기측 소장과 부소장 및 연락관들의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함과 동시에 사무소 운영을 개시한다.

○ 불가침 분야의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1일까지 작성하고, 교류·협력분야

의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5일까지 작성한다.

○ 올해 8·15해방 47돌을 계기로 각기 노부모 100명과 예술인 70명, 그리고 70명의 기자·지원인원들로 구성되는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교환하도록 쌍방 적십자단체들에 위임한다.

(8)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원식(국무총리)	연형묵(정무원 총리)
대 표	송응섭(합참 제1차장)	김광진(인민무력부 부부장)
	임동원(통일원 차관)	안병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한갑수(경제기획원 차관)	백남준(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공로명(외교안보연구원 원장)	김정우(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이동복(국무총리 특별보좌관)	최우진(외교부 순회대사)
	박용옥(국방부 군비통제관)	김영철(인민무력부 부국장)

회담에서 쌍방은 9월 1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8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쌍방이 채택·발효시킨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 2.19 발효)
○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2.19 발효)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 2.19 발효)
○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5. 7 발효)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5. 7 발효)
○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5. 7 발효)
○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9.17 발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 9.17 발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 9.17 발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 9.17 발효)

다.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회의

(1) 남북정치분과위원회 회의

남북기본합의서 화해 분야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정치분과위원회는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1992년 3월 6일 서로 위원 명단을 통보하였으며, 3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8차례 회의를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위원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위 원 장	이동복(국무총리 특별보좌관)	백남준(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위 원	민병석(대통령외교안보담당비서관) 김달술(통일원 자문위원) 최규학(국무총리실 심의관) 강근택(외무부 심의관) 신광옥(법무부 심의관) * 8월 5일 위원접촉부터 김각영 으로 교체 신 정(합참 민심실장)	김완수(외교부 순회대사) 조상호(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국 부국장) 최성익(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정영춘(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 심태진(정무원 상급 심의원) 조성대(조선중앙방송위원회 처장)

제1차 회의(3. 9)에서 한국측은 정치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해야 할 과제인 남북화해를 이룩하기 위한 세가지 원칙으로 ① 서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를 존중하는 원칙 ② 남북당사자 해결원칙 ③ 남북 호혜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분야의 각 조항별 구체적 이행과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제7조와 관련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은 남

북기본합의서에 시한이 명시(남북기본합의서 발효후 3개월 이내)된 시급히 협의·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고,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 이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남북화해는 남북불가침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인 만큼 정치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하게 되는 문제들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도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북남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초안)」을 제시, 이를 채택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남북기본합의서 화해부문의 이행기구로 정치분과위원회를 반드시 내와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북남정치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초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현 적십자연락사무소를 대체하여, 정치·단체·개별적 인사들의 전반적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판문점 북남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초안)」을 제시, 앞서 제시한 합의서와 함께 일괄채택·동시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2차 회의(3.27)에서 한국측이 제1차 회의에서 일괄채택·동시실천 하자던 북한측의 제의는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전문과 제2조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남북기본합의서 화해분야의 주요 협의과제를 구체화한 19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5월 19일로 설치 시한이 정해져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위원접촉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부속합의서 채택, 공동위원회 구성, 연락사무소 설치의 순으로 토의를 진행해야 하며, 공동위원회는 정치공동위원회 하나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속합의서 채택 문제를 우선 협의하지 않는 한 위원접촉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제3차 회의(4.23)에서 한국측은 제2차 회의에서 제시한 19개 과제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은 5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① 「남북사이의 상호체제(제도)인정·존중과 내부 문제 불간섭에 관한 합의서(안)」
② 「남북사이의 비방·중상중지에 관한 합의서(안)」

③「남북사이의 파괴·전복행위 금지에 관한 합의서(안)」
④「남북사이의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에 관한 합의서(안)」
⑤「남북사이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관한 합의서(안)」

이와 함께 남북기본합의서에 시한이 명시되어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우선 토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접촉을 가질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부속합의서와 공동위 구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에야 연락사무소 설치·운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후 한국측 이동복 정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4월 27일 백남준 북한측 정치분과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접촉을 갖자고 제의, 이를 북한측이 동의함으로써 열리게 되었다.

위원 접촉(4.29)에서 쌍방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장소, 명칭, 기구설치, 기능 등 제안 내용에 대한 협의를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위원장간에 해결토록 하고 끝마쳤다.

결국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기간중 열린 정치분과위원회 위원장 접촉('92.5.6~5.7)에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타결시켰다.

제4차 회의(5.19)에서 한국측은 제3차 회의에서 제시했던 5개 부속합의서들을 하나의 합의서에 통합한「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에 관한 합의서(안)」과 부속합의서부터 먼저 토의·해결한 후 공동위원회 문제를 협의·해결해야 한다는 전제하에「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부속합의서가 구체적 세부내용이 배제된 포괄적 내용을 담은 하나의 부속합의서가 되어야 한다면서, 제3차 회의때 제시했던 한국측 합의서안을 일부 수정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제5차 회의(6.9)에서 한국측은 제4차 회의시 제시한 부속합의서의 기본취지와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측의 부속합의서 수정안에 대해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합의서를 단순히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쌍방은 우리측의 합의서안을 중심으로 제2장까지 조항별 토의를 진행했으나, 명칭과 전문에 대해서만 의견접근을 보고, 제1장 총칙과 제2장 체제(제도) 인정·존중과 내부 문제 불간섭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쌍방은 상대측 법령을 서로 교환하는 데 합의하고 다음 회의에서 교환요구 법령목록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제6차 회의(7.2)에서 한국측은 부속합의서안의 제2장 「체제(제도) 인정·존중과 내부 문제 불간섭」을 제2장 「체제(제도) 인정·존중」과 제3장 「내부 문제 불간섭」으로 분리하고, 「이행기구」를 독립된 장으로 신설한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제5차 회의에서 합의된 북한측 법령중 교환요구 목록(사회주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11종)을 북한측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제8차 고위급회담 이전에 부속합의서 작성과 화해공동위 발족여부,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실시여부 등이 한국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 상호핵사찰과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측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핵 문제를 부속합의서와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노정시켰다.

쌍방은 양측이 제시한 합의서안을 놓고 토의를 벌였으나, 제5차 회의때 의견접근을 보았던 부속합의서 명칭과 전문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제2장 「체제(제도) 인정·존중」문제에서부터 의견이 맞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합의서 내용검토를 진전시키기 위한 위원장 접촉을 갖자는 데 합의하였다.

위원장접촉(7.10)에서 쌍방은 각 장의 제목을 「체제(제도) 인정·존중」, 「내부 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이행기구」, 「수정 및 발효」 등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총칙과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보지 못함에 따라 위원접촉을 통해 계속 절충키로 하였다.

위원접촉(7.18, 7.30, 8.5, 8.19)에서 쌍방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준수」, 「국제무대에서의 비방·중상 중지」, 「재외공관 사이의 협의」,

「해외동포들의 권익보호」 등 4개 조항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한국측안 가운데 「상대방 정부의 권한·권능 인정」,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에 의한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등의 조항과, 북한측안 중 「법률적·제도적 장애제거」, 「사상 인정·존중」, 「타국가와의 조약·협정 개정·폐기」, 「상대방에 대한 제3국의 간섭행위 불가담」, 「국제기구 단일의석 가입」 등 주요 쟁점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부속합의서 작성방법과 관련하여 한국측은 부속합의서에는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북한측은 포괄적인 내용만을 부속합의서에 담고 구체적 이행 대책을 공동위원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편, 북한측은 대한민국 헌법 등 57개에 이르는 교환요구 법령목록을 한국측에 제시하였다.

제7차(8.28)회의에서 한국측은 9장 34개조의 기존안 중 「뉴욕 등 양측 상주대표부간의 협의 정례화」 조항 등을 삭제한 9장 32개조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국가보위부의 설치와 관련된 법령 등 67개에 달하는 제2차 교환요구 법령목록을 북한측에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북한측이 처음 제시한 「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과 한국측이 제시한 동 합의서안을 토의하여 타결시킬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부속합의서 우선 토의를 주장함으로써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쌍방은 특수관계를 담고 있는 「총칙 규정 문제」, 「통일관련 법률적·제도적 장치제거 문제」, 「비방·중상 중지의 주체에 민영언론을 포함시키는 문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문제」 등 핵심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위원장 접촉을 통해 협의키로 하였다.

위원장접촉(9.4, 9.8)에서 북한측은 3개분야 부속합의서의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화해분야 부속합의서가 타결되지 않으면 화해공동위원회 발족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3개분야 부속합의서의 일괄타결을 하자는 북한측의

입장과 같다고 밝히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일단 합의된 내용을 부속합의서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문제는 추가적인 부속합의서를 작성해 나가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부속합의서 타결후 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자는 북한측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항별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북한측이 기존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끝마쳤다.

결국 제8차 고위급회담 기간중에 열린 위원장 접촉('92.9.15~9.16)에서 쌍방은 그동안의 쟁점 조항들을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 존중,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해결, 언론·삐라 및 그 밖의 수단·방법을 통한 상대방 비방·중상 중지,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 등으로 절충·타결하는 한편, 북한측이 제기한 국제기구에 단일의석 가입 문제, 다른 국가와 맺은 조약과 협정의 개정·폐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후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해결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합의 사항으로 부속합의서에 부기하여 「화해분야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관련 한국측은 법률공동위, 비방중상공동위 구성을, 북한측에서는 정치공동위 구성을 주장하였으나, 위원장 접촉에서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 중지 실무협의회를 「공동위」내에 두기로 하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로 절충되었다.

(2) 남북군사분과위원회 회의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분야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1992년 3월 6일 위원 명단을 서로 통보하였으며, 3월 13일부터 9월 5일까지 8차례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위원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위 원 장	박용옥(국방부 군비통제관)	김영철(인민무력부 부국장)
위 원	김희상(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임태순(통일원 자문위원) 이영호(국방부 대령) 김영진(국방부 대령) 조상훈(외무부 심의관) 채준석(국방부 판단관)	박웅수(조선인민군 소장) 박성진(조선인민군 대좌) 리길청(조선인민군 대좌) 김민현(조선인민군 대좌) 박림수(조선인민군 대좌) 원동연(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제1차 회의(3.13)에서 한국측은 남북불가침 분야의 구체적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과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이를 우선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북남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안)」과 「북남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직통전화 문제는 부속합의서 해당 조항에서 협의·해결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포괄적인 단일부속합의서 채택을 군사공동위원회 발족의 전제조건화함으로써 군사공동위 문제를 먼저 토의하자는 한국측 입장과 맞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제2차 회의(3.31)에서 한국측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군사공동위 문제를 우선 논의·해결하고,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문제를 별도로 병행해결하며, 이어서 불가침 분야의 이행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필요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한국측은 불가침 분야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요 용어의 정의에 관한 문제,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시 긴급조치 및 사후처리 문제 등 7개항의 협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포괄적 단일부속합의서 우선 토의를 계속 주장하였으며,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문제는 부속합의서 해당조항을 논의할 때 협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진전없이 끝나고 말았다.

제3차 회의(4.30)에서 한국측은 북한측이 2차회의시 제의한 7개항의 협의 과제를 발전시킨 「남북사이의 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했으며, 쌍방은 「선 공동위 문제, 후 부속합의서」 토의에 합의하고 각기 제시한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 내용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였으나, 군사공동위원회의 기능을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의 협의·실천으로 하자는 한국측 입장과 불가침분야 전반적 이행으로 하자는 북한측 입장이 대립되었다.

그러나 제7차 고위급회담('92.5.5~5.8) 기간중에 열린 위원장 접촉(5.6~5.7)에서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타결시켰다.

제4차 회의(5.25)에서 한국측은 1차회의 때 제시한 「남북군사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을 3차회의 때 제시한 「남북사이의 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에 관한 합의서(안)」에 포함시킨 총 7개장 22개조를 단일화된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1차회의때 제시했던 합의서(안)을 일부 수정하여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북남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담보를 위한 부속합의서(초안)」을 제시하였다.

제5차 회의(6.19)에서 북한측이 총 6개장 22개조로 구성된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쌍방은 부속합의서(안)에 대한 토의에 들어갔으나, 기본합의서 불가침분야의 내용 토의부터 시작한 후 그에 따라 장을 편성하고 장제목을 결정하자는 한국측 입장과 불가침분야 각 조항에 맞게 장을 편성하여 장제목을 정한 후 내용 토의를 하자는 북한측 입장이 맞서 토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제6차 회의(7.16)에서 한국측은 실질적인 토의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안)」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남북 쌍방은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의 명칭과 전문,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등 장제목에 합의하였다.

한편, 위원장접촉(7.23)에서 남북 쌍방은 부속합의서 전체조항에 대해 각 조항별로 제안설명을 교환하고, 유사한 조항, 절충 가능한 조항, 의견이 대립되는 조항들을 확인하였다.

또한 3차례의 위원접촉(8.3, 8.12, 8.20)에서 쌍방은 지상불가침 경계선, 합의서 발효 이후 50일이내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등 6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7차 회의(8.26)에서 남북 쌍방은 제1장과 제2장의 제목을 각각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으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제8차 회의(9.5)에서 남북 쌍방은 제5장의 제목을 협의·이행기구로 합의하고, 긴급분쟁발생시 적대행위 중지 및 통보, 추가적인 불가침의 이행·준수, 공동위원회의 기능 등 일부조항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그러나 군사분야의 분쟁해결 창구 문제, 정찰활동 문제, 불가침 경계선 대책 마련 창구 문제, 영해·영공 봉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절충키로 하였다.

제8차 고위급회담 기간중에 열린 위원장 접촉(9.15~9.16)에서 쌍방은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 및 무력도발 행위 금지, 상대방 관할구역을 침입·공격·점령하는 행위 금지,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한 분쟁 문제 해결, 합의서 위반시 공동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등에 추가적으로 합의하였다. 군사분계선 일대 무력증강과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 봉쇄와 서울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 문제 등은 기본합의서의 신뢰구축 및 군축 관련사항이므로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는 단서를 붙여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를 타결지었다.

(3)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회의

남북기본합의서 교류·협력분야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1992년 3월 6일 위원 명단이 서로 통보되었으며, 3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7차례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위 원 장	임동원(통일원 차관)	김정우(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위 원	김인호(경제기획원 실장) * 제6차 회의부터 김태연으로 교체	손종철(무역경제연구소 부소장)
	송영대(통일원 자문위원) 박운서(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유득환(상공부 차관보) 신현웅(문화부 국장) 박수창(국무총리실 심의관)	김채성(정무원 사무국 부장) * 제6차 회의부터 김령성으로 교체 김이순(문화예술부 국장) 류창석(국가계획위원회 부국장) 장덕기(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김승국(로동청년사 부주필)

제1차 회의(3.18)에서 한국측은 이산가족, 통행·통신, 경제, 사회문화의 4개 분야별 「부속합의서(안)」과 「부문별 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에 맞게 인도, 통신, 경제 교류·협력, 사회문화 교류·협력 등 4개분야로 나누어 설치·운영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한국측은 시범사업으로 「남북 고령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을 상호 교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포괄적인 단일 부속합의서」로 「북남 협력, 교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초안)」을 제시하고, 부속합의서를 우선 협의·해결한 후 공동위원회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는 적십자 소관사항이라고 하면서 논의자체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남북 쌍방은 부속합의서와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가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서명·발효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 내용 검토를 위한 위원 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위원접촉(3.25, 4.2, 4.10)에서 한국측은 부속합의서 형식보다 내용에 대해 먼저 토론할 것과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당국간 구체적 해결대책 마련 및 고향방문단 같은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북한측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경제부문 우선 토의를 주장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자고 맞섰다.

남북 쌍방은 이산가족 문제 및 고향방문단 교환에 대해서는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지만 부속합의서 내용전반에 대한 토의를 벌여 경제부문중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제2차 회의(4.18)에서 한국측은 부속합의서와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의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측의 변함없는 입장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제3차 회의(4.27)에서 쌍방은 각기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사안별로 토의를 진행하였으나,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별다른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다만, 시한이 명시되어 있는 공동위원회 구성 문제를 논의·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위원접촉(4.28)에서 남북 쌍방은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의 조항내용에 있어서 대부분 합의를 보았으나, 공동위원회 수(한국측 4개, 북한측 2개) 등 일부조항은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제7차 고위급회담('92.5.5~5.6) 기간중 열린 위원장접촉(5.6)에서 남북 쌍방은 공동위원회를 2개로 한다는 등 쟁점사항을 모두 타결하여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는 데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교환하였다.

제4차 회의(5.30)에서 남북 쌍방은 부속합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경제교류·협력 당사자에 대한 당국 승인,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에 따른 교통로 개설, 이산가족 문제 해결조항 등과 부속합의서 구성체계에 있어 통행·통신 문제 등에 대해 토의를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이 맞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제5차 회의(6.26)에서 북한측은 부속합의서 토의는 회피한 채 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 이인모 송환, 일본의 역사날조에 대한 남북

공동대처 등을 들고 나옴으로써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제6차 회의(7.28)에서 북한측은 노부모방문단 교환의 전제조건으로 이인모 송환을 다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측은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에 관한 합의때 북한측이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노부모방문단 교환은 무조건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위원접촉(8.10, 8.21)에서 남북 쌍방은 부속합의서 공통사항에 대해 토의를 진행, 제3장 제목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교류물자의 가격, 교류물자의 비관세, 상대측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특허권·상표권 등 13개조 13개항에 합의, 문안정리를 마쳤다.

제7차 회의(9.3)에서 쌍방은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 미합의 조항에 대한 집중 토의를 통해 5개조 30개항에 추가로 합의하고 문안정리를 하였다. 그러나 교류·협력 당사자의 당국 승인,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이산가족들의 우편·전기통신 우선 보장,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적십자 본회담 재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이후 열린 위원장접촉(9.7)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조항들을 협의, 우편·전기통신 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의 우선 보장, 이산가족의 범위 규정 및 상봉 면회소 설치 문제의 적십자간 협의·해결, 빠른 시일내 적십자회담 재개, 당사자간에 계약 체결시에는 자기측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것으로 절충하였다.

결국 제8차 고위급회담 기간중에 열린 위원장접촉(9.16)에서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해결한다."는 부기 조항을 두기로 하고 부속합의서를 타결하였다.

(4)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가) 한반도 핵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지 6년이 넘도록 핵안전조치협정의 서명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회피해 오면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측은 1991년 12월 10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이 하루속히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안)」을 긴급 제안하고, IAEA의 핵사찰과는 별도로 1992년 1월 31일 이전에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하여 각기 상대측이 선정하는 군사 및 민간시설에 대한 동시 시범사찰 실시를 제의하였다.

남북 쌍방은 제5차 고위급회담('91.12.10~12.13)에서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91년 12월안에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 핵 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이 1991년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차례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접촉에서 쌍방은 핵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시설 불보유, 핵통제공동위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가서명하였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대 표	임동원(고위급회담 대표) 이동복(고위급회담 대표) 김재섭(대통령 비서실) 반기문(외무부) 박용옥(국방부)	최우진(고위급회담 대표) 김영철(고위급회담 대표) 김수길(외교부) 최한춘(군축 및 평화문제연구소) 최영관(인민무력부)

(나)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대표접촉은 제6차 고위급회담('92.2.18~2.21)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효('92.2.19)시킴에 따라 1992년 2월 19일부터 3월 14일까지 7차례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대 표	임동원(통일원 차관) 공로명(외교안보연구원 원장)	최우진(외교부 순회대사) 김영철(인민무력부 부국장)

접촉에서 쌍방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사찰규정 채택시한 등이 포함된 3개항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하였다.

① 남과 북은 1992년 3월 17일과 3월 19일 두차례에 걸쳐 쌍방 총리가 서명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판문점에서 교환한다.
②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 19일 판문점에서 개최한다.
③ 남과 북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2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문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문건이 채택된 이후 20일 안으로 사찰을 시작하기로 양해하였다.

(다)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1992년 3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차례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제1차 회의(3.19)에서 한국측은 비핵화공동선언의 효과적인 검증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철저히 구현한다는 입장에서 핵의혹이 제기되는 군사기지 사찰과 특별사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된 「남북 상호핵사찰 실시에 관한 규정(안)」을 제시하고 사찰규정 마련 이전이라도 우선 핵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상대방의 일정한 핵시설과 장소에 대한 교환방문 실시를 제안하였다.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위원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위 원 장	공로명(외교안보연구원 원장)	최우진(외교부 순회대사)
부위원장	반기문(외무부장관 특별보좌관) * 제7차 회의때부터 정태익으로 교체	박광원(조선인민군 소장)
위 원	정대규(통일원 자문위원) 변종규(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이부직(국방부 준장) * 제9차 회의부터 안광찬으로 교체 이승구(과학기술처 심의관) 홍석범(국무총리실 심의관) * 제8차 회의부터 정의부로 교체	김경춘(원자력공업부 국장) 장창천(외교부 연구원) 김수길(외교부 연구원) 최영관(조선인민군 대좌) 김만길(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 참사)

북한측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초안)」와 부록 형태로 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규정(초안)」을 제시함으로써 이행합의서 채택을 사찰규정 채택의 전제조건화하였다.

특히 북한측은 외부 핵위협 공동대처, 비핵지대에 대한 국제적 보장, 핵무기 사용을 가상한 작전이나 훈련참가 불허 등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채택과정에서 철회한 비핵지대화 논리를 이행합의서 초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사찰규정에 있어서도 핵무기, 핵기지에 대한 사찰에 비중을 두고 「의심동시해소원칙」에 따른 전면 동시사찰을 주장하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상호핵사찰에 대한 거부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제2차 회의(4.1)에서 한국측은 제1차 회의에서 북한측이 제시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초안)」은 사찰규정 채택을 지연시키려는 수단에 불과하며, 외부 핵위협 공동대처 등을 제시한 것은 핵 문제 해결에 인위적 장애를 조성하려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핵의혹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사찰 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핵통제공동위원회의 최우선 과제인 사찰규정 협의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제1차 회의에서 한국측이 제시한 「남북 상호핵사찰 실시에 관한 규정(안)」은 핵사찰을 통해 불순한 목적을 달성해 보려는 것이

라고 비난하고, 군사기지에 대한 특별사찰을 제기한 것은 또다른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3차 회의(4.21)에서 한국측은 사찰규정 마련시한(5.19 경)이 촉박함을 지적하면서 북한측이 제시한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철회하고, 사찰규정 토의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와 부록형태로 된 사찰규정을 일괄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찰규정에 대한 실질토의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제4차 회의(5.12)에서 한국측은 특별사찰제도에 따라 포괄적이고 철저한 핵사찰을 실시하여 핵 문제와 관련한 내외의 의혹을 조속히 해소시킬 것을 촉구하고, 쌍방이 제시한 사찰규정 문안정리를 위한 위원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특별사찰제도를 반대하고 「의심동시해소원칙」을 거듭 주장하는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와 사찰규정을 일괄타결한다는 전제하에 사찰규정을 토의하기 위한 위원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으로써, 위원접촉이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례 개최되었다.

위원접촉(5.15, 5.20, 5.23)에서 한국측은 최근 북한측이 풀루토늄 생산을 시인한 사실과 현재 북한측이 건설중인 방사화학실험실이 핵재처리 시설이라는 한스 브릭스 IAEA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상기시키고, 이는 비핵화공동선언 위반임을 지적, 재처리 시설의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측은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이행합의서와 사찰규정을 일괄토의하자는 주장을 고수함으로써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제5차 회의(5.27)에서 한국측은 북한측이 IAEA의 사찰을 받고 있으나 국제사찰만으로는 한반도 핵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없으므로 남북 상호핵사찰이 실시되지 않고는 남북한간 실질적 관계진전은 불가능할 것이며, 군사기지 사찰이 불가피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군사기지 사찰을 반대하고 이행합의서와 사찰규정의 일괄타결 주장 등 주요 쟁점사항에 있어 종래의 입장을 반복 주장하였다.

제6차 회의(6.30)에서 한국측은 남북 상호핵사찰 규정에 따른 첫 사찰이 완료되어야 할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사찰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한반도 핵문제 발생의 근원이 마치 한국측에 있는 것처럼 북한측이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핵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사찰제도를 받아 들일 것을 재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IAEA의 사찰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심의 근거가 없어졌다면서, 이제 남은 일은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제7차 회의(7.21)에서 한국측은 사찰규정을 먼저 토의하여 가서명한 후 이행합의서에 대한 토의를 시작한다는 전제하에, 전문과 6개조로 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IAEA 사찰로 밝혀진 대규모 재처리시설의 건설 중단 및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IAEA 사찰과는 별도로 남북 상호핵사찰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IAEA의 제2차 임시사찰로 북한에 대한 핵무기 개발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강조하고,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제8차 회의(8.31)에서 쌍방은 상호핵사찰 실시와 관련한 근본 문제들에 대해서는 종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지만, 사찰규정의 장 제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사찰규정안 내용검토를 위한 위원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① 제1장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교환
② 제2장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핵사찰단의 구성·운영
③ 제3장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의 선정
④ 제4장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절차와 방법
⑤ 제5장 : 핵사찰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와 분쟁의 해결
⑥ 제6장 : 신변보장 및 편의제공

⑦ 제7장 : 수정·발효 및 기타

위원접촉(9.19, 9.30, 10.14)에서 쌍방은 사찰규정의 명칭과 전문 그리고 제1장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교환의 각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실질토의를 가졌다.

접촉에서 정보교환의 대상중 핵물질, 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핵무기·핵기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였다.

또한 사찰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측은 사찰규정 발효후 10일 이내에 50명의 사찰관 명단을 상호교환하고 그중 20명이내로 사찰단을 구성하자고 제의한 반면, 북한측은 사찰단을 사찰대상에 따라 핵무기·핵기지에 대해서는 15명, 핵시설에 대해서는 5명으로 구성하며, 전면 동시사찰을 실시하기 위해 사찰대상의 수와 규모에 따라 한꺼번에 많은 수의 사찰단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북한측은 사찰실시 10일전에 사찰단 명단을 교환하고,「상대방이 사찰단의 인원교체를 요구하면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특별사찰을 회피하려는 입장을 노정시켰다.

제9차 회의(10.22)에서 북한측은 한·미 양국이 제24차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남북관계, 특히 상호핵사찰 등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 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한 사실을 비난하면서,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철회, 외국의 핵무기와 관련 장비가 동원되는 군사연습 중단,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철회를 전제로 사찰규정과 이행합의서 토의 등 3개항을 제시하면서 사찰규정 토의에 앞서 이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실질토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다.

한편 한국측은 현승종 국무총리 명의의 전화통지문(10.21)을 통해,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측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해소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며, 올해안에 사찰규정이 채택되고 효과적인 상호사찰이 실시될 경우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하는 문제가 검토될 수 있음"을 밝혔다.

제10차 회의(11.18)에서 북한측이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철회를 거듭 요구함에 따라, 한국측은 "11월말까지 사찰규정을 채택하고 늦어도 12월 중순

지 상호핵사찰이 실시된다면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찰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성역이나 사각지대가 없는 사찰이 실시될 수 있도록 특별사찰제도가 필요함을 재강조하였다.

제11차 회의(11.27)에서 한국측은 남북간에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관련하여 의심이 제기되는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이 필요하고, 사찰을 적시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찰제도가 필수적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핵사찰 지연책임을 "특별사찰 제도와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을 고집하는 남측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12차 회의(12.10)에서 한국측은 "제9차 고위급회담(12.21) 이전까지 첫 상호사찰이 실시된다면 팀스피리트훈련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효과적인 상호사찰규정을 토의하기 위해 위원접촉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한국측이 상호사찰 실시와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를 연계시킨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조치를 12월 15일까지 철회하고 주한미군의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전면사찰을 조건없이 받아들일 것과 남측의 핵무기 개발 진상을 해명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핵사찰 규정에 대한 실질토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위원접촉을 갖기로 하고 끝마쳤다.

위원접촉(12.14)에서 북한측은 한국측의 사찰규정(안)이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측의 군사기지 사찰과 특별사찰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군사기지 사찰과 관련 한국측은 "모든 일반 군사기지를 사찰하자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에 관련된 군사기지만 사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북한측은 "모든 일반 군사기지까지 사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의견접근을 좁히지 못하였다.

제13차 회의(12.17)에서 한국측은 사찰규정의 기본요소로서 쌍방의 균형된 사찰이 보장되는 상호주의 원칙 위에, 의심이 제기되는 모든 곳에 성역

없는 사찰이 이루어져야 하며, 적시에 지속적으로 사찰을 실시할 수 있는 특별사찰제도가 핵심적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한국측이 엄청난 핵개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이 이미 핵무기 생산단계에 진입했다고 주장하면서, 핵무기개발을 당장 중지하고 그 진상을 내외에 밝히라고 주장함으로써, 제14차 회의 일자도 결정하지 못하고 끝마쳤다.

이후 한국측은 공로명 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93.1.18)을 통해, "위원접촉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사찰규정 토의를 진척시키고 그 토대 위에서 위원회 회의가 생산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위원장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최우진 위원장 명의로 전화통지문(1.20)을 통해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철회를 기본안건으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한 토의를 전제로 위원장접촉에 응할 수 있다고 수정 제의함으로써 위원장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위원장접촉(1.25)에서 한국측은 상호핵사찰 규정과 관련 ① 의심이 제기되는 곳은 어느 곳이라도 사찰이 가능하도록 성역없는 사찰 보장 ② 지속적으로 적시에 사찰을 실시할 수 있는 특별사찰 반드시 포함 ③ 군사기지 사찰은 일반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이 아니라 「비핵화와 관련하여 의심이 제기되는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의미하는 만큼 한국측의 사찰규정(안)을 북한측이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없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군사기지 사찰은 핵통제공동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군축검증단계에서 군사공동위원회의 소관사항이며, 특별사찰은 비핵화 공동선언 제4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함으로써 13차례에 걸쳐 개최된 회의는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2. 남북체육회담

가.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를 위한 남북체육회담

1988년 12월 21일 북한올림픽위원회 김유순 위원장이 김종하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출전하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1989년 3월 9일부터 1990년 2월 7일까지 9차례의 남북체육회담 본회담과 6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이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장충식(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진(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대 표	이학래(대한올림픽위원회 상무위원)	장 웅(북한올림픽위원회 서기장)
	임태순(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김세진(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장병조(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허혁필(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 제3차 회담부터 조영승으로 교체	김상부(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박수창(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제1차 회담(3.9)에서 한국측은 그간의 남북회담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측 태도에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남북단일팀 구성을 통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최대한의 신축성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였다.

쌍방은 단일팀 구성·참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단일팀의 호칭, 단기, 단가, 선수선발 문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단가는 1920년대의 「아리랑」으로 하고, 선수선발은 가장 우수한 선수를 뽑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선수단 호칭에 있어서 한국측은 우리말로 객관적 용어인 「남북단일팀」으로 할 것과 영문자 「KOREA」로 표기할 것을 제의한 데 반해, 북한측은 우리말로 「고려」, 영문자로 「KORYO」로 할 것을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제2차 회담(3.28)에서 북한측은 단기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 지도로 하되, 색깔은 「하늘색」으로 하고, 지도 아래에 아무런 외래어 표기를 하지말자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단일팀 명칭에 있어서도 우리말로는 고려를 고수하면서도 영문표기는 KORYO 대신 KOREA로 할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고려와 KOREA는 별도로 떼어서 합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그같은 제의가 우선 고려라는 명칭에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임을 드러냈다.

또한 쌍방은 ① 단기에 명칭을 표기하지 않고 ② 합동훈련을 통해 선수를 선발하며 ③ 합동훈련에 참가할 선수 수는 남북 각기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정하게 될 경기참가 정원수 정도로 하되, 종목별 특성에 따라 협의·조정하고 ④ 1차 회담에서 북한측이 제기한 선수선발 원칙은 구두로 합의하는 조건에서 삭제키로 하였다.

이후 북한측은 문익환 목사의 사법처리를 구실로 1989년 4월 18일로 예정된 제3차 회담을 7월 18일로 일방적으로 연기하였다.

제3차 회담(10.20)은 제2차 회담후 7개월만에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단기 문제와 관련하여 흰색 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넣자는 북한측의 제안을 한국측이 받아들임으로써 합의를 보게 되었다.

제4차 회담(11.16)에서 먼저 선수단 호칭의 우리말 표기와 북한측이 처음에 「코레아」 표기를 고집하였으나, 결국 영어발음상 「코리아」가 정확하다는 한국측 주장에 동의해 옴으로써 우리말 표기는 코리아로 합의되었다. 그리고 중국어 표기에서도 고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상호 의견일치를 보았다.

다만 중국어 표기를 상호 협의하여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단일안으로 제시하는 문제는 제5차 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제5차 회담(11.24)에서 북한측은 합동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혼합하여 경기종목별 선발전을 통해 단일팀 선수를 선발하자는 종래 입장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선수선발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 시기, 장소, 회수, 심판배정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한국측은 본회담의 타결시기, 공동추진기구 발족, 선수합동훈련 실시, 선수선발, 선수단구성, 강화훈련 기간 등 단일팀 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회담은 늦어도 1990년 1월말까지는 타결되어야 단일팀 출전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북한측에 확고히 인식시켰다. 아울러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 이견조정을 위해 실무대표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실무대표접촉(12.1, 12.6, 12.15)에서 쌍방은 선수훈련 및 선수단구성 문제에 관해 집중논의 하였다.

선수훈련과 관련 북한측은 합동훈련과 강화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자는 한국측안에 동의하였으나, 상호 용어사용에 있어서는 한국측은 합동·강화훈련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한측은 공동·종합훈련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선수단 단장과 관련 한국측은 선발된 선수 수가 많은 쪽에서 단장을 맡고, 부단장은 선수의 수가 적은 쪽에서 맡는 것을 요구한 반면, 북한측은 공동단장제를 계속 고집하였다.

제6차 회담(12.22)에서 한국측은 단일팀 구성 문제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으로 호칭 문제에서의 중국어 표기 문제, 선수단 단장 문제, 공동사무국의 설치장소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해결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한국측안 대로 공동사무국 설치 장소는 서울·평양으로 하고, 선수단 호칭의 중국어 표기는 「可禮亞」로 하는데 동의하는 한편, 선수단장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측안의 선수구성 비율에 따른 단일단장제로 합의하였다.

제7차 회담('90.1.18)에서 한국측은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와 3개의 「부속합의서」(「코리아 선수단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0개항 내용의 용어해석에 관한 합의서」,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및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보낼 서한에 관한 합의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용어해석,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한 추진일정 준수,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및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보내는 서한 등 합의서 이행보장장치는 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채택후 조직되는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내용이라고 고집하면서 끝내 합의서 이행보장방안에 대해서는 토의를 거부함에 따라 실무대표접촉에서 협의키로 하였다.

실무대표접촉(1.22)에서 북한측은 "남측이 유일팀 구성 의지가 없다", "한국측이 합의사항 이행보장방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접촉을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회담결렬 책임을 한국측에 전가함으로써 이렇다할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끝마쳤다.

제8차 회담(1.29)에서 한국측은 합의사항 이행보장방안의 내용과 취지가 명문화된다면 형식면에서 구애받지 않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북한측의 성의있는 대화자세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한국측이 제시한 합의사항 이행보장장치가 단일팀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난관을 조성하기 위한 제동장치라고 주장하는 등 남북체육회담을 사실상 결렬상황으로 몰아가려고 하였다.

특히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OCA에 서한을 보내는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사항 불이행시는 절대로 개별팀으로 못간다는 것이 보장장치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도가 한국측의 개별 참가를 저지하려는 데 있었음을 노정시켰다.

제9차 회담(2.7)에서 북한측은 회담시작과 함께 한국측이 회담을 파탄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①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절대로 「별개팀」으로 참가하지 않음을 내외에 선포할 것 ② 회담지연 책임을 시인하고 합의사항 이행보장방안을 전면 철회할 것 ③ 책임있는 체육인사의 북경아시아경기대회 개별팀 참가 발언을 취소할 것 등 이른바 3개항을 회담진행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한국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더 이상 회담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북한측이 진정으로 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다면 이른바 3개 원칙을 취소하고 합의사항 이행보장 문제의 토의에 성의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회담이 결렬상태까지 오게된 것은 남한측의 분열책동 때문이라고 비난함과 동시에 3개 원칙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회담결렬을 선언하였다.

나.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참가 및 남북체육교류를 위한 남북체육회담

남과 북은 북경아시아경기대회 기간중 남북공동응원 등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1990년 9월 23일 북경에서 쌍방 체육장관(남:정동성, 북:김유순) 간에 접촉이 이루어졌다.

접촉에서 쌍방은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한편, 바르셀로나 올림픽경기대회 등 주요국제경기대회의 단일팀 구성·참가와 남북체육교류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이어 개최된 남북통일축구 평양대회('90.10.9~10.13)와 서울대회('90.10.21~10.25)기간중 한국측의 정동성 체육청소년부 장관과 북한측의 김유순 국가체육위원장은 3차례 회담(1·2차 평양, 3차 서울)을 갖고, 1990년 10월 25일 다음과 같이 공동발표문을 발표하였다.

① 제1차 남북체육회담은 1990년 11월 29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② 회담대표단의 구성은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를 위한 남북체육회담 대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단 명단은 추후 발표한다.

③ 회담 의제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경기대회, 제3회 삼지연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및 기타 주요 국제경기대회에 쌍방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문제로 한다.

④ 남북 통일축구대회의 정례화 문제와 기타 남북체육교류 문제는 위의 남북체육회담에서 협의·결정한다.

남북 쌍방간 합의에 따라 국제경기대회 참가 및 남북체육교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체육회담이 1990년 11월 29일부터 1991년 2월 12일까지 4차례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장충식(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진(북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대 표	이학래(대한올림픽위원회 상무위원)	장 웅(북한올림픽위원회 서기장)
	임태순(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김정식(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김사홍(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김상부(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박수창(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김영석(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

제1차 회담(11.29)에서 한국측은 국제경기대회의 단일팀 구성·참가 문

제는 남북간에 체육교류의 실현이 보장되는 바탕위에서 병행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회담 의제를 ① 남북통일축구대회 정례화를 비롯한 남북체육교류 실현 문제 ② 국제경기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문제로 제시하면서 이 의제의 순서가 토의의 순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병행 토의하자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북한측은 「유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와 이에 기초한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으로 참가하기 위한 합의서」, 「제25회 올림픽경기대회 아시아지역 축구예선경기에 남북단일팀으로 참가하기 위한 합의서」,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으로 참가하기 위한 합의서」 초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IOC, 국제축구연맹 및 아시아축구연맹, 국제탁구연맹에 남북 공동 명의로 편지를 보낼 것을 주장하면서 그 문안까지 내놓았다.

또한 북한측은 남북통일축구경기 정례화를 비롯한 남북체육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단일팀 구성 문제를 타결한 후 협의하자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였다.

제2차 회담('91.1.15)에서 한국측은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시일이 촉박한 것을 감안, 토의순서에 있어 ①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문제 ② 남북통일축구대회 정례화 문제 ③ 전반적인 남북체육교류·협력과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북한측 주장을 사실상 수용하였다.

북한측은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문제부터 토의하자는 한국측 제의에 일단 동의하고, 쌍방의 합의서를 비교·검토하는데 호응해 옴으로써 회담의 실질적 진전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단일팀 구성에서의 핵심 문제인 선수선발과 선수단 구성 문제, 그리고 선수훈련 문제 등에서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단일팀 참가 논의시 합의했던 사항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체육교류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즉 북한측은 선수선발전에 대해 남북간에 대결의식을 고취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남북을 왕래하는 선수훈련에 대해서도 남과 북에서 각기 실시하

다가 대회 한달 전부터 현지에서 강화훈련을 함께 진행하자고 주장했으며, 단일단장제를 반대하고 공동단장제를 고수하였다.

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문제에 관한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토의하는 진전을 보았으나, 북한측의 소극적 입장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제3차 회담(1.30)에서 한국측은 남북단일팀 구성과정에서 실질적인 체육교류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는 입장에서 쌍방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상호 경기력 평가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특례방식을 적용한 일괄타결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선수선발에서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출전선수는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하여 선발하고,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출전선수는 서울·평양에서의 공개평가전을 기초로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하여 선발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선수단장 문제도 선수선발시 탁구와 축구의 선수 수가 남북 동수로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남북이 각기 단장을 나누어 맡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측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남북왕래훈련이 선수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된다는 점을 들어 남북왕래훈련을 반대하고 공동단장제를 고수함으로써 제3차 회담 일자도 잡지 못한 채 회담을 끝내고 말았다.

이후 1991년 2월 8일 한국측 장충식 수석대표는 북한측 김형진 단장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2월 12일 회담재개를 촉구하였다.

한국측은 동 전화통지문에서 그동안 한국측이 토의순서나 주요 쟁점사항에서 양보를 거듭해온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해서든 회담을 성사시켜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하기 위해 북한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전진적 방안을 제시할 것임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 김형진 단장은 2월 11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탁구단일팀 선수훈련은 일본 전지훈련으로 하고, 단장은 공동단장제로 해야한다는 북한측 제안을 사실상 조건화하면서도 일단 2월 12일 판문점에 나올 것임을 통

보해 왔다.

제4차 회담(2.12)에서 쌍방은 이날 전체회의와 실무대표접촉을 잇따라 열어 합의서 문안조정을 함으로써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문제를 완전히 타결하였다.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수단 호칭 : 우리말로 「코리아」, 영문자로 「KOREA」(약자:KOR)
② 선수단 단기 :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
③ 선수단 단가 :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부르던 「아리랑」
④ 선수선발 :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선발(축구는 평가전 실시)
⑤ 선수단 구성
  ○ 1991년 3월 초순까지 완료
  ○ 연맹규칙과 대회 조직위원회의 관계규정 준수
  ○ 단장은 한국측(탁구는 북측)에서 맡음
  ○ 기타 임원구성도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
⑥ 선수훈련
  ○ 탁구는 대회현지에서, 축구는 남북왕래 실시
  ○ 훈련에 참가할 단일팀의 규모, 훈련기간, 장소, 방법, 경비 등은 단일팀 공동 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
  ○ 훈련은 선수단이 구성된 때로부터 대회참가시까지 실시
⑦ 선수단 경비 : 남북이 공동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
⑧ 단일팀 공동추진기구
  ○ 「탁구(축구) 단일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 구성·운영
  ○ 실무위원회는 쌍방 대표 각기 5명씩으로 구성하며, 남과 북이 각각 1명씩의 공동위원장을 둠.
  ○ 실무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판문점에서 개최
  ○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
    -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선수단 단복 및 참가에 따른 장비에 관한 사항
    - 기타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따른 제반 사항
    -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별도 작성

이와 같이 4차례에 걸친 남북체육회담을 통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일본, '91. 4.24~5.6)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포르투갈, '91.6.15~6.17)에 참가하였다.

이후 한국측은 1991년 7월 23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경기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 남북단일팀의 구성·참가 문제와 통일축구대회 등 남북체육교류·협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5차 남북 체육회담을 1991년 8월 6일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1991년 7월 31일 제5차 남북 체육회담을 8월 17일에 갖자고 수정 제의했으나, 회담 개최를 불과 5일 앞둔 8월 12일,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 유도선수 이창수씨 문제를 구실로 제5차 남북 체육회담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

3.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가. 제2차 고향방문단 교환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북적측은 1985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이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쌍방이 합의한 제11차 본회담을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이래 한국측의 거듭된 회담재개 촉구('88.7.13, '89.1.24)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외면해 오다가, 1989년 5월 31일 갑자기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갖자고 제의해 왔다.

이에 대해 한적의 김상협 총재는 6월 12일 북적측 제의를 원칙적으로 수락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냄에 따라 북적측이 8월 2일 또다시 동 실무대표접촉을 개최하자고 제의해 왔다. 그러나 북적측이 제13차 세계청소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밀입북했던 임수경양의 귀환 문제를 둘러싸고 판문점에서 회담을 선전장화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함에 따라 7월 29일 개최예정인 접촉을 연기하였다.

이후 한적측은 8월 11일과 9월 5일 2차례에 걸쳐 실무대표접촉을 9월 27일 가질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를 북적측이 수락함으로써 남북적십자간 접촉이 4년만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은 1989년 9월 27일부터 1990년 1월 8일까지

8차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적 측	북 적 측
수석대표	송영대 (한적 재해구호협의위원회 위원)	박영수(북적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대 표	이준희(한적 사회사업 자문위원) 이병웅(한적 기획관리부장)	김광수(북적 중앙위원회 위원) 정덕기(북적 중앙위원회 책임지도원)

제1차 접촉(9.27)에서 한적측은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 개최일자 및 본회담 의제를 비롯 대표단 구성, 회담운영 방식, 대표단의 왕래방법 등 회담진행에 따른 문제는 종전의 관례에 따라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제2차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문단 규모, 방문지 및 공연장소, 방문시기 및 기간, 고향방문단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였다.

북적측은 「선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추진, 후 남북적십자 본회담 개최」 입장을 밝히면서,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과 제11차 남북적십자 회담 문제와 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북적측은 회담외적 문제인 문익환·임수경 등의 문제를 집중거론하고 이들 문제가 회담의 장애요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마쳤다.

제2차 접촉(10.6)에서 한적측은 방문단의 규모나 방문지는 고향방문단을 위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예술공연단은 남북문화교류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방문단 규모면에서는 고향방문단을 300명, 예술공연단을 50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향방문단은 명칭 그대로 자기 고향까지 직접가서 가족과 친척을 만나고 성묘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북적측은 현 상황이 본회담을 열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방문단을 먼저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규모면에서는 예술단의 요구를 고려하여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수를 300명씩 동수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3차 접촉(10.16)에서 한적측은 시기 문제와 관련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을 12월 8일로 하고, 제11차 본회담 개최를 12월 19일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적측이 본회담 개최일자만 12월 15일로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한적측이 받아들임으로써 시기 문제는 합의를 보았다.

또한 방문지 문제에 대해 한적측은 고향방문단 인원이 자기 고향까지 가서 성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북적측은 고향까지 가는 것은 본회담에서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서울·평양 방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였다.

방문규모에 있어서는 한적측은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사업의 취지에 맞게 방문단 규모는 고향방문단이 위주가 되고 예술공연단은 부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북적측은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규모를 동수로 하자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특히 예술공연단 규모에 대해 북적측은 300명으로 하고 한적측은 50명으로 각기 편리한대로 하자는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의를 함으로써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제4차 접촉(11.8)에서 방문단 규모 문제와 관련 한적측은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을 300명으로 하되 예술공연단을 종전의 50명에서 두배로 늘려 100명으로 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기자단 및 지원인원의 경우에도 북적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각각 30명과 40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한적측은 방문지 및 방문 기간을 포함하여 방문단 단장의 격, 상봉방법, 예술공연단의 공연내용 및 세부추진절차 등 방문단 규모 이외의 사항은 제1차 방문단 교환사업의 선례에 따라 일괄타결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적측은 예술공연단의 규모를 50~300명 범위에서 상호 편의주의로 정하되 250명으로 할 것을 밝힘으로써 예술공연단 규모 문제를 실질적으로 조정하려는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쌍방은 논쟁이 되어온 방문지 문제에 있어 서울과 평양으로 국한한다는 데 사실상 의견일치를 보았다.

제5차 접촉(11.13)에서 한적측은 규모 문제에 관해 고향방문단 300명, 예술공연단 100명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적측은 방문단 총 규모를 지원인원 40명, 수행기자 30명, 인솔자 1명을 포함하여 571명으로 하고 고향방문

단 및 예술공연단 규모는 각기 편리한 대로 구성하자고 제의하였다.

제6차 접촉(11.21)에서 한적측은 방문단 규모 문제에 관해 고향방문단 350명, 예술공연단 150명, 기자 30명, 수행원 40명, 인솔자 1명으로 하고, 북적측은 고향방문단 300명, 예술공연단 200명, 기자 30명, 수행원 40명, 인솔자 1명으로 한다는 데 쌍방이 합의를 보았다.

또한 한적측은 방문지 문제, 실황중계 문제, 방문단 규모 문제에 있어서 북적측 제의를 모두 수용함으로써, 「남북적십자회담 재개와 제2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 초안을 내놓고 문안 조정에 들어 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적측은 한적측의 합의서 초안과 관련 공연내용은 민족적인 것, 건전한 내용인 것,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공연형식을 노래·춤·가극 등으로 명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예술공연 회수 및 시간과 관련하여 한적측은 3회 각 150분 공연으로 할 것을 주장한 데 반해, 북적측은 4회 각 3시간 공연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합의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북적측은 예술단의 공연물로 「꽃파는 처녀」, 「피바다」 등 혁명가극을 공연할 것임을 밝혔다.

제7차 접촉(11.27)에서 한적측은 예술단의 공연물로 「꽃파는 처녀」, 「피바다」 등 혁명가극을 들고 나옴에 따라 회담타결을 지연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제11차 적십자 본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합의한 대로 12월 15일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주장한 반면, 북적측은 「선 방문단 교환, 후 본회담 개최」 주장만을 되풀이함으로써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성과없이 끝마쳤다.

이후 12월 7일 한적 총재의 담화 및 송영대 실무대표접촉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12.15) 개최를 촉구하였으며, 북적측은 12월 14일 북적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방문단 사업이 무산된 모든 책임이 한적측에 있다고 모략선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 송영대 수석대표는 12월 15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산가족들

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예술단의 공연내용 문제로 이산가족의 소망을 저버리지 말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공연내용으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였다.

제8차 접촉('90.11.8)은 제7차 접촉 이후 11개월만에 개최되었다.

접촉에서 한적측은 적십자 본회담 개최 문제, 혁명가극 공연철회 문제, 60세이상 이산가족 재회 문제 등에 대해 북적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했으나, 북적측은 혁명가극 공연에 대한 한적측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종래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회담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또한 차기접촉 문제와 관련하여 한적측은 다음주 중에 제9차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적측은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공연에 동의하지 않는 접촉은 가질 의미가 없다며 회피함으로써, 8차례의 접촉은 아무런 성과없이 중단되고 말았다.

나.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91.12.10~12.13)에서 1992년 8·15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을 서로 교환키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노부모방문단 교환을 위한 실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대표접촉이 1992년 6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8차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적 측	북 적 측
대 표	이병웅(한적 사무총장) 이준구(한적 회담운영위원) 이정용(한적 이산가족사업 자문위원)	박영수(북적 중앙위원회 상임위원) 김광수(북적 중앙위원회 위원) 신원철(북적 중앙위원회 책임지도원)

제1차 접촉(6. 5)에서 한적측은 노부모방문단 교환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다음 3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① 방문희망자 명단을 교환할 때 그 수를 방문단 규모의 2배인 200명으로 할 것

② 단 한사람이라도 더 혈육을 상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방문단에 포함되

어 있는 예술단원, 기자, 지원인원 중에도 이산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가족·친척을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

③ 상봉상대자의 희망에 따라 상봉가족끼리 합숙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으며, 서울과 평양 인근지역에 한해서는 직접 가정방문이나 성묘도 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이와 같은 사항과 1989년과 1990년에 개최된 제2차 고향방문단 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8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감안한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적측은 8·15를 계기로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이 교환되게 되면 온 겨레에게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대한 전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과 관련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북적측은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의 전도와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서, 핵문제와 이인모 송환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한적측의 태도여하에 따라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이 유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2차 접촉(6.12)에서 쌍방은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을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교환방문토록 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위해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의 일정으로 사전답사반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연실황 방송중계에 대해서도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방문단 교환인원 수와 지원인원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 범죄자 제외 문제, 상봉방식 문제, 공연회수 등에 대해서는 의견차이를 보였다.

제3차 접촉(6.22)에서 한적측은 1·2차 접촉에서의 토의사항을 토대로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북적측은 노부모방문단의 교환을 백지화시킬 수도 있다는 발언과 함께 핵문제에 관한 한적측의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적측은 핵문제와 같이 실무대표접촉과 무관한 문제로 장애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노부모방문단 교환을 위한 실무절차 문제 토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제4차 접촉(7.8)에서 한적측은 쌍방이 합의한 대로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7월 15일까지 실무

대표접촉을 마쳐야 방문대상자 명단통보 등이 원활해진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북적측의 성의 있는 대화자세를 촉구 하였다. 그러나 북적측은 이인모를 노부모방문단 교환 이전에 송환하지 않으면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은 유산될 수 있다고 하는 등 난관을 조성하였다.

제5차 접촉(7.14)에서 한적측은 어떻게든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예술단, 기자, 지원인원 중 이산가족이 있을 경우 상봉을 주선하는 문제, 상봉방법에 있어서 상봉당사자가 원할 경우 가정방문과 성묘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부모방문단 선정을 위한 사전 명단교환시 그 인원수 문제에 대해서는 방문자 전원이 이산가족을 상봉할 수 있도록 사전 명단교환 인원수를 200명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적측은 핵문제, 이인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방문단 교환일자가 조정되거나 방문단 교환사업 자체가 유산될 기로에 있다는 기존입장을 거듭 주장하였다.

제6차 접촉(7.20)에서 한적측은 시간의 촉박함을 감안하여 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실무절차 문제를 타결짓고 합의서 작성까지 끝내야 함을 강조하고, 상호이견을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사항과 1985년 고향방문단 교환시의 선례를 기준으로 일괄타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적측은 핵문제, 이인모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포커스렌즈 훈련('92. 8.19~8.30) 중지 문제를 새롭게 들고나와 또다른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실무절차 문제와 관련하여 사전 명단교환, 인원수를 130명으로 하는 조건에서 방문단 총규모를 241명으로 하고, 예술단의 공연회수를 2회, 행낭운용을 1일 2회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제7차 접촉(7.25)에서 북적측은 제6차 접촉시 제기한 핵문제 등 3가지 문제를 반복하여 거론하면서, 이들 전제조건에 대한 한적측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히고 차기접촉을 8월 9일 갖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한적측은 차기접촉을 갖는다 하더라도 방문단 교환일자는 당초 예정대로 하되 준비일정을 단축하든가 아니면 방문단 교환일자를 연기할 경

우 그 구체적 일자를 정하자고 제의하였다.

제8차 접촉(8.7)에서 한적측은 북적측이 진정으로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을 성사시킬 의사가 있다면 합의서 작성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북적측은 실무절차 문제 토의를 회피하고, 3가지 전제조건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토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차기 접촉일자 조차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로서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을 위한 8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중단되고 말았다.

4.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가. 제1～3차 실무대표접촉

황인성 국무총리는 1993년 5월 20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5월 25일 강성산 정무원 총리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쌍방 정상들이 만나는 문제와 남북사이의 현안 문제 등을 타협하기 위한 특사를 교환하자고 역제의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9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 북한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특사교환 방식에 변화된 제의를 하였다. 담화에서 북한측은 특사를 쌍방 최고책임자가 임명하는 임의의 급으로 하며, 의제에 있어서 비핵화 문제 및 긴장완화와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대책 문제를 우선적으로 하자고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9월 2일 국무총리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고 그 밖의 남북간 협의 문제들을 함께 다루기 위하여 쌍방 최고책임자가 임명하는 특사를 교환하자고 밝히고, 특사교환의 실무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각기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실무대표접촉을 9월 7일 갖자고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10월 2일 강성산 정무원 총리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핵전쟁연습 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에 대한 답변을 실무접촉에 나와 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실무대표접촉 수용의사를 밝히는 한편, 접촉일자를 10월 5일로 수정 제의함으로써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이 1993년 10월 5일부터 1994년 3월 19일까지 8차례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송영대(통일원 차관)	박영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대 표	김일무(국무총리실 심의관)	최승철(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장재룡(외무부 미주국장)	최성익(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제1차 접촉(10.5)에서 한국측은 「남북사이의 특사교환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면서 특사의 임무, 특사교환 방법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특사교환을 위한 절차 문제를 마무리지어 빠른 시일 내에 특사교환을 실현시키자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특사교환에 관한 합의서(초안)」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핵전쟁연습 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 2개 조건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특사교환을 위한 절차 문제 토의를 거부하였다.

제2차 접촉(10.15)에서 한국측은 실무대표의 기본임무가 특사교환을 위한 절차 문제를 협의하는 데 있음을 상기시키고 제1차 실무대표접촉시 제시된 절차 문제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기초로 하여 토의에 들어갈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핵전쟁연습 중지와 국제공조체제 포기를 계속 제기하면서 특사교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측이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먼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3차 접촉(10.25)에서 북한측은 기존의 2개 요구사항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측의 새로운 입장표명을 요구함으로써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다만 특사교환 절차 문제에 있어서 특사의 급 및 동행인원, 특사의 임무, 특사의 교환방식, 특사의 교환 날짜, 체류일정 등이 구체화된 합의서(안)을 제시함으로써 의견접근 사항을 확인하는 정도의 진전만이 있었다. 차기 접촉일자와 관련 한국측은 10월중에 갖자고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11월 5일 이후 개최를 주장하여 결국 제4차 접촉은 11월 4일에 갖기로 합

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예정되어 있던 제4차 실무대표접촉을 하루 앞둔 1993년 11월 3일 박영수 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4차 접촉을 예정대로 가질 수 없다고 통보함으로써 실무대표접촉을 중단시켰다.

전화통지문에서 북한측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우발적 도발대비 문제도 협의될 예정이라는 한국측 국방장관의 발언을 군사적 대결을 공언한 것 이라고 왜곡·비난하면서 남북 실무대표접촉 개최거부의 구실로 내세웠다.

나. 제4～8차 실무대표접촉

1994년 2월 25일 「미·북 뉴욕접촉」에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이 합의문에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재개가 명시되었는데, 이는 남북간 특사교환이 필요하다는 한·미 양국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1994년 2월 28일 송영대 수석대표는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4차 실무대표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1994년 3월 1일 박영수 실무대표접촉 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그들이 요구해 온 핵전쟁연습 중지 및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을 남한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접촉일자를 1994년 3월 3일로 수정제의함으로써 제4차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4차 접촉(3.3)에서도 북한측은 핵전쟁연습 중지와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 2개 요구조건을 또다시 거론하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신형무기 반입중지 및 김영삼 대통령이 핵무기를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고 한 발언 취소 등 새로운 2개 요구조건을 추가로 제기하였다.

제5차 접촉(3.9)에서 한국측은 북한측이 내세우고 있는 4개 요구조건의 부당성에 대해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실무절차 합의서(안)의 채택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4개 요구조건의 선결을 재강조하면서도 절차 문제에 있어서 특사의 임무, 특사교환 순서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새로운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특사의 임무 문제에 있어서 제3차 접촉에서 제시한 5개 문제 이외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방도를 확정하는

문제, 민족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문제」 등 2개항을 새로이 추가한 7개항을 제시하였다.

제6차 접촉(3.12)에서 북한측은 남과 북이 특사교환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안에 특사를 교환하기로 완전히 합의하였다는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내외에 발표할 것을 새로이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공동보도문은 불필요하며, 합의서를 즉각 타결하면 특사교환 의지도 확인되고 특사교환에도 완전 합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측이 공동보도문 발표를 제의한 것은 예정된 미·북 3단계회담(3.21)을 개최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다.

제7차 접촉(3.16)에서 한국측은 특사교환 절차에 관한 쌍방의 미합의 사항인 특사의 임무, 특사의 방문순차 및 교환날짜 등에 대해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특사임무 7개항과 공동보도문 발표를 계속 고집함으로써 절차 문제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제8차 접촉(3.19)에서 한국측은 북한측이 회담외적 문제를 제기하고 실무절차 토의를 의도적으로 지연·기피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① 우리 최고당국자에 대한 비방·중상을 즉각 중지할 것 ② 반정부 투쟁선동을 즉각 중지할 것 ③ 특사교환에서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한다는 태도를 명백히 할 것 등을 「긴급제안」 형식으로 북한측에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우리 정부가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반입 발표 등을 한 것은 "특사교환 포기 선언", "전쟁선언" 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박영수 단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은 불바다로 될 것이라는 전쟁위협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북한측의 「서울 불바다」 등 전쟁위협 발언과 함께 북한측이 차기 접촉일자의 협의마저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퇴장함으로써 8차례 진행되어 오던 실무대표접촉은 중단되고 말았다.

5.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

가. 부총리급 예비접촉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취임사와 1994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일성 주석과 만날 용의가 있음을 밝혀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한편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한 후 김영삼 대통령을 면담('94.6.18)한 자리에서 "김일성이 김영삼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정상회담에 호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4년 6월 20일 이영덕 국무총리 명의로 북한 강성산 정무원 총리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절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부총리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예비접촉을 6월 28일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6월 22일 강성산 정무원 총리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에 동의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절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1994년 6월 28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홍구(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김용순(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회 위원장)
대 표	정종욱(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윤여준(국무총리 특별보좌관)	안병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백남준(정무원 책임참사)

접촉은 「예비접촉 합의서」 제시 및 토의 순으로 진행, 합의서에 서명하기까지에는 전체회의 2차례, 수석대표간 단독접촉 2차례, 합의서 문안정리를 위한 대표접촉 1차례 등 회의 속개와 휴회를 반복하면서 남북회담사상 가장 긴 13시간 동안 회담을 진행하였다.

한국측은 ① 7월중에 정상회담을 실현시킨다는 조기개최 원칙 ② 남북정상회담을 서울·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정상회담 개최시기를 8월 15일로 고집하면서 회담을 정례화할 것도 아니며 남북관계가 특수관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환방문이라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더욱이 북한측이 합의서 초안으로 제시한 내용중 쌍방은 1994년 7월 1일부터 회담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행동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항목을 계속 주장하여 회담 분위기를 긴장시켰다.

한국측은 이러한 회담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석대표 단독접촉을 제의, 이에 북한측이 응해 나옴으로써 회담은 급진전을 이루어 기본적인 사항에 합의하게 되었다.

쌍방 수석대표들은 정상회담 장소 및 시기 문제, 차기 정상회담 개최 문제, 분위기 조성 문제, 실무절차 토의를 위한 대표접촉 문제 등에 합의를 이루었다. 이어 합의서 문안작성을 위한 대표접촉을 가진 후 전체 대표가 참석하는 두번째 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특히 북한측이 단 한차례 평양 개최만을 시종일관 주장한 데 대해 한국측은 이번 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데 동의하는 만큼 다음 회담은 서울에서 개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측이 이를 당장 수용하지 못한다면 다음 회담은 쌍방 정상의 뜻에 따라 정하기로 하자고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남북정상회담개최를 위한 합의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쌍방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1994년 6월 28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서 쌍방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합의하였다.

쌍방은 남북정상회담을 1994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체류일정은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다. 다음 회담은 쌍방 정상의 뜻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남북정상회담 대표단 구성과 규모, 회담형식, 체류일정, 선발대파견,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기타 실무절차 문제들은 각기 예비접촉 대표 1명, 수행원 2명으로 구성되는 대표접촉에서 토의·합의한다. 대표접촉은 1994년 7월 1일(금요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가진다.

쌍방은 화해와 단합,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1994년 6월 28일

남 북 정 상 회 담 을 위 한	북 남 최 고 위 급 회 담을 위 한
부 총 리 급 예 비 접 촉	부 총 리 급 예 비 접 촉
남 측 수 석 대 표	북 측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부 총 리 겸 통 일 원 장 관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회위원장
이 홍 구	김 용 순

나. 실무절차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협의를 위한 실무대표접촉이 1994년 7월 1일과 7월 2일 2차례 판문점 통일각과 평화의 집에서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한국측 대표로는 윤여준 국무총리 특별보좌관과 구본태 통일원 통일정책실장, 엄익준 국무총리 보좌관이, 북한측에서는 백남준 정무원 책임참사와 최승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최성익 부장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양측은 서로 제시한 합의서(안)을 비교·검토한 후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한 토의를 거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쌍방은 현장답사와 실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기 17명이 참가하는 실무자 접촉을 1994년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평양에서 가지며, 대표단 방문 3일전에 25명의 선발대를 파견하고, 통신관계 실무자 접촉을 1994년 7월 7일, 경호관계 실무자접촉을 1994년 7월 8일 판문점에서 각각 갖기로 합의하였다.

TV 중계 문제도 북한측이 중계차량 및 장비를 포함, 위성중계에 필요한 일체의 편의를 생중계에 비견될 정도로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에 합의하였다.

다. 통신 및 경호 실무자접촉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판문점에서 남북 통신관계

실무자접촉('94.7.7)과 남북 경호관계 실무자접촉('94.7.8)이 남북 각기 3명씩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접촉에서 TV 실황중계, 남북직통전화 이용, 휴대용 위성통신 전화 이용과 대통령의 평양 체류기간중 경호범위, 경호방법 등 대부분에 합의하였으며, 미합의 사항은 평양에서 개최되는 실무자접촉(7.13~7.16)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실무절차의 합의에 따라 1994년 7월 9일 한국측은 평양 실무자접촉에 참가할 인원의 명단을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측에 넘겨주었고, 북한측은 정무원 총리 명의로 된 신변안전보장각서를 한국측에 전달해 왔다.

그러나 같은 날 북한측은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했다고 발표하고, 이어 7월 11일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김용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한측의 유고로 예정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통지해 옴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6. 남북간 북경회담

가. 제1차 북경회담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3월 7일 베를린 방문중 독일 외교 3단체 초청 연설과 5월 15일 개최된 제44차 국제언론인협회(IPI) 서울총회 개막연설에서 대북곡물제공 의사를 밝혔다.

한편 1995년 5월 26일 일본을 방문한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리성록 위원장은 와타나베 전 부총리 등 연립여당의 방북단 대표들과의 회담에서 한국쌀도 전제조건이 없으면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날 나웅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의 발표문을 통해 "식량난을 겪고있는 북한동포들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족복리 차원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 없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측은 6월 9일 한국측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북한측의 조선삼천리총회사가 6월 13일 중국 북경에서 만나 이 문제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제의해 왔다.

정부는 KOTRA로 하여금 선 당국간회담, 후 민간상사간 접촉 방침을 북

한측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북한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남북당국간 북경회담이 1995년 6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차례 중국 북경에서 열리게 되었다.

제1차 북경회담은 1995년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석채(재정경제원 차관)	전금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
대 표	김용환(국무총리 보좌관)	김봉익(조선삼천리총회사 총사장)
	추준석(대통령 비서실 경제비서관)	김영진(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참사)
	김형기(통일원 제1정책관)	리성덕(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참사)
	유광석(외무부 제3 심의관)	림태덕(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제2차 회담부터 추가로 참가	* 제2차 회담부터 추가로 참가

제1차 회담에서의 최대의 쟁점사항은 쌀지원 규모 문제였다. 한국측은 지원 규모부터 먼저 정하자는 북한측 주장에 대해 1차로 쌀 5만 톤을 제공하고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측은 1단계로 10월말까지 쌀 20만 톤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또한 합의서의 서명자 직함과 관련하여 한국측은 쌍방의 당국자가 서명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측 명의는 대한민국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하고 북한측 명의는 전금철의 당 직함을 사용토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처음에는 당·정 직함 사용을 거부하였으나,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위원회 위임에 의하여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 전금철」로 한다는 데 합의를 이루었다.

한편, 쌀 수송선의 국적표시 문제와 관련, 쌀 수송 선박이 북한 항구에 입항시 쌍방의 국기를 모두 게양치 않을 것에 구두 양해사항으로 합의하였다.

한국측은 북한측의 식량사정의 어려움을 감안, 북한측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① 북한측에 1차로 쌀 15만 톤 전량 무상제공 ② 한국측 선박으로 청진·나진항에 인도 ③ 쌀의 원산지 불표기 ④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민간상사로서 한국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북한측의 조선삼천리총회사를 지정 ⑤ 1995년 7월 중순에 제2차 회담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

쌀지원에 관한 합의」를 성사시켰다. 쌍방 대표단은 6월 21일 「대북곡물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우리측은 이날 서울에서 통일부총리가 동 합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식 발표하였다.

① 한국측은 북한측에 1차로 쌀 15만 톤을 인도하며, 이 1차분은 전량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한국측은 본 합의서를 서명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첫 선박을 출항시킨다. 한국측은 상기 1차분을 해상을 통해 한국측 선박으로 청진·나진항 등에 인도한다
③ 북한측에 1차분으로 인도되는 쌀은 정미 40kg 단위 PP포대로 포장하며 일체 표기를 하지 않는다.
④ 본 합의서에 명시된 합의 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쌍방 상사는 한국측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북한측에서는 「조선삼천리총회사」로 한다.
⑤ 남과 북은 쌀 인도·인수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협조를 보장한다.
⑥ 남과 북은 1995년 7월 중순에 제2차 회담을 개최한다.
⑦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본 대표단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제2차 북경회담

1995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북한에 보내기로 한 쌀 15만 톤에 대한 수송작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측 쌀 수송선 「씨 아펙스호」에 북한측의 인공기 강제게양 사건과 북한측에 납치된 「우성호」 선원의 억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차 북경회담이 1995년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한국측은 인공기 강제게양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측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고, 납치·억류되어 있는 우성호 선원을 최단시일내에 송환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아울러 한국측이 제안한 남북경협 문제는 「여타문제」가 아니라 북한측의 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지원방안임을 설명하였다.

북한측은 인공기 사건은 북한측의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과 우성호 선원 송환 문제도 자기측의 관계당국과 수차 협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쌀 문제만 논의하고 다른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한측은 쌀 지원 문제

를 중심으로 먼저 추가제공 규모에 대한 토의를 진행해야 경협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제2차 회담은 아무런 진전없이 끝나고 말았다.

다. 삼선비너스호 억류사건 관련 실무접촉

북한측은 1995년 7월 31일 포항항을 출발, 8월 2일 청진항에 도착한 한국측의 쌀 수송선「삼선 비너스호」1등 항해사의 사진촬영을 구실로 선박과 선원들을 청진항에 억류시키는 한편, 8월 10일 개최 예정이던 제3차 북경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연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김형기 대표와 유광석 대표를 북경에 파견, 북한측에 대하여 동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제3차 북경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표접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한국측은 대신 KOTRA로 하여금 북한측 조선삼천리총회사와 접촉, 협의를 하게 하였다.

한국측은 무엇보다도 선원들의 신변안전 및 조속귀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재발방지 대책강구, 선원·선박의 조속송환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전화통지문을 8월 12일 북한측에 전달함으로써 삼선비너스호 선박과 선원 전원의 신변안전 및 조속귀환에 합의하였으며, 9월하순경 제3차 북경회담을 재개한다는 데에도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라. 제3차 북경회담

제3차 북경회담은 1995년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국측 대표단의 일부가 교체된 가운데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석채(재정경제원 차관)	전금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
대 표	정세현(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구본태(통일원 통일정책실장) 김용환(국무총리 보좌관) 유광석(외무부 심의관) 신언상(통일원 운영2부장)	김봉익(조선삼천리총회사 총사장) 김영진(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참사) 리성덕(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참사) 림태덕(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제3차 회담에서 한국측은 첫째, 우성호 송환 등 현안 문제 해결과 안승운 목사 납치사건, 김용순 당비서의 쌀제공 관련발언 등에 대한 해명, 둘째, 한반도내 서울·평양 또는 판문점에서 회담개최, 셋째, 선박-선사간 통신 보장조치 및 남북간 왕래인원의 신변안전보장장치 보완 등을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우성호가 북한측 법에 의해 단속되는 것은 당연하며 송환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부상자들의 치료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대표단의 기본사명은 쌀 협력 문제인 만큼 여타 현안 문제는 다른 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회담장소 문제는 북경회담이 현 남북관계의 여건상 쌀지원이라는 특수 문제로, 특수시기에 나온, 특수접촉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문제가 단시일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과 북한측 대표단이 이에 관한 아무런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과제로 안고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한측 전금철 대표는 「조선큰물피해복구대책위원회」의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북한측 수해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측이 지원해주면 받겠다고 하면서도 굳이 공식요청의 형식은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이 수재지원도 당국간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함에 따라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

이후 북한측은 1995년 12월 22일 우성호 선원들을 돌려 보내겠다고 발표하고, 4일 뒤인 12월 26일 판문점을 통해 선원 5명, 나포당시 사망자 2명 및 병사자 1명의 시신 등을 한국측에 송환하였다.

7. 4자회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파기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특히 1996년에 들어 북한은 대미 잠정협정 체결을 제의한 후 비무장지대의 유지·관리에 관한 임무의 포기를 선언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정전체제의 근본을 파기함으로써 한반도 불안정 상황을

심화시켰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파기행위 및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이 대화에 응해 올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6년 4월 16일 제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이 「한·미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남북한 및 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가. 공동설명회

4자회담 제의 직후 북한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검토중이란 반응을 보이다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측에 4자회담 제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설명요구에 대하여 4자회담이 한·미 양국의 공동제의인 만큼 한·미가 공동으로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미국에 대해 공동설명회의 참여를 시사하면서 식량지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측은 북한이 4자회담과 식량지원을 연계하는 데 반대하며, 4자회담 수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96.9.18)이 터지고 남북간에 극도의 긴장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가 확고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북한은 1996년 12월 29일 강릉 잠수함 침투에 대한 사과성명 발표와 함께 4자회담 공동설명회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4자회담 공동설명회」가 1997년 3월 5일 뉴욕 힐튼호텔에서 개최되게 되었다.

설명회에는 한국측은 송영식 외무부 제1차관보, 북한측에서는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 미국측에서는 찰스 카트만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각기 4명씩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설명회에서 한국측 송영식 수석대표는 4자회담 개최 제의 배경을 설명하고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감안할 때 항구적인 평화체제는 남북한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측은 식량 문제를 포함한 남북경협 추진 문제는 북한측이 구체적인 제의를 해올 경우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절차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측은 공동설명회 종료후 가급적 조속히 4자회담 본회담을 상호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것과 회담대표는 장관급을 수석대표로 하고 차관급을 교체수석대표로 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회담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문제」와 「남북한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문제」를 양대 의제로 하되 필요시 의제를 세분화하여 토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미국측의 카트만 수석대표는 설명회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가져올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고, 이러한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이 「남북기본합의서」와 「미·북 제네바 합의문」을 기초로 조속히 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미국측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는 미·북한이 별도로 협상할 문제가 아니며, 직접 당사자인 남북간에 논의되어야 하며 바로 4자회담은 이러한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나아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전협정의 서명당사국인 중국의 참여가 매우 긴요함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 김계관 수석대표는 남북간에 이미 불가침 합의가 있으므로, 미·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한국과 미국측의 설명내용에 대하여 돌아가서 신중히 품을 들여 연구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다소간 긍정적인 여운을 남겼다. 아울러 김계관은 한·중은 수교관계인 데 비해 북한은 미국과 미수교 상태라는 점을 들어 북한이 4자회담에 동등한 지위로서 참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나. 공동설명회 후속협의

북한측의 요청에 따라 1997년 4월 16일 공동설명회 후속협의가 뉴욕 유엔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측은 송영식 수석대표, 북한측은 김계관 대표단장, 미국측은 카트만 수석대표 등 각측에서 4명씩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북한측은 4자회담은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한·미측에 4자회담의 개최를 전후하여 대규모 식량지원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4자회담 개최이전에 식량지원은 불가하며 4자회담이 시작되면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차원에서 식량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16일 전체회의 이후 3차례의 실무접촉과 1차례의 비공식 수석대표접촉을 가졌으나, 북한측은 한국측이 제의한 예비회담과 본회담 개최시기를 결정하는 문제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4자회담 개최전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 완화 및 적대정책 포기 등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진행하다가 적절한 단계에 가서 중국을 참여시키는 「3+1」 형식의 회담을 제의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측이 선 대북식량지원 보장, 후 4자회담 예비회담 개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공동설명회 후속협의는 별 진전없이 4월 21일 종료되었으나, 남·북·미 3자는 외교채널을 통한 실무접촉은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다. 차관보급 3자협의

공동설명회 후속협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남·북·미 3자 실무대표들은 뉴욕에서 접촉을 갖고 4자회담 개최와 관련된 실무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접촉에서 북한측은 4자회담 예비회담의 개최에 동의하면서 북한측이 필요로 하는 식량에 대해 한·미가 보장해 줄 것을 또다시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한·미 양측은 4자회담 참석을 조건으로 하는 식량제공의 사전보장은 불가하며, 인도적 성격의 식량지원은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되, 정부차원의 식량지원은 4자회담 테두리내에서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북한측에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북한측에게 4자회담을 수락하는 것만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식량부족 등 북한이 처한 경제난을 극복하는 길임을 꾸준히 설득함으로써 북한측은 마침내 4자회담 예비회담 개최에 호응해 나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합의를 토대로 1997년 6월 30일 뉴욕 팔레스호텔에서 남북한 및 미국이 참여한 차관보급 3자협의가 개최되었다. 3자협의에서는 그동안 실무대표간에 논의된 내용들을 최종 확인하고, 중국을 포함하는 4자회담 예비회담을

1997년 8월 5일 뉴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이를 공동발표하였다.

라. 4자회담 예비회담

(1) 제1차 예비회담

4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이 1997년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뉴욕 콜럼비아대학에서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대 표	송영식(외무부 제1차관보) 유명환(외무부 북미국장) 권종락(대통령비서실 외교비서관) 유진규(국방부 군비통제관실 차장) 이봉조(통일원 제1정책관) 이수혁(주미대사관 정무참사관) 전옥현(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계관(외교부 부부장) 리 근(주유엔대표부 부대사) 장창천(외교부 부국장) 김명길(주유엔대표부 참사관) 박명국(외교부 미주국 과장)

구 분	미 국 측	중 국 측
수석대표 대 표	Charles Kartman(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Mark Minton(국무부 한국과장) Jack Pritchard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주담당 보좌관) Thomas Harvey(국방부 한국담당관) Eric John(국무부 한국과 북한담당관) Lawrence Robinson (주한미대사관 1등서기관)	陳 健(외교부 부장조리) 寧賦魁(외교부 아주국 부국장) 田寶珍(외교부 한국과장) 田春燕(외교부 북미·대양주국 1등서기관) 楊希雨(주미대사관 1등 서기관) 邢海明(외교부 한국과 2등 서기관)

회담에서 4자회담 본회담 개최시기, 장소, 대표수준, 소위원회 설치, 회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잠정합의가 이루어졌다.

본회담 개최와 관련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담 개최시기는 예비회담 종료후 대략 6주이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한다.

② 대표수준은 4자회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경우 외무장관들이 참석토록 하고, 여타 본회담에는 (외무장관이 임명하는) 고위관리가 대리 참석토록 한다.

③ 개최장소는 스위스 제네바로 한다.
④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등은 본회담에서 협의하여 설치한다.
⑤ 회담기간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이같은 실무절차 문제에 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회담 의제 문제에 관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문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 등 포괄적인 양대 의제로 하자는 한국측 입장과,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미군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세부의제로 포함하자는 북한측 입장이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차기 예비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북한측은 회담 기간중 개최된 남북한 및 미국 3자 수석대표단 회의에서 4자회담 개최 이전에 대규모 식량지원 보장 등을 계속 요구하였다.

(2) 제2차 예비회담

제2차 예비회담은 장승길 주이집트 북한대사 망명사건(8.24)에도 불구하고 1997년 9월 18일 뉴욕 콜럼비아대학에서 열리게 되었다.

북한측은 첫날 회의에서 1차회담시 제의한 2개 의제(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으로 부터의 미군철수, 미·북 평화협정 체결)외에 「남과 북이 한반도 외부로부터 군사장비 도입 금지」를 본회담 의제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의제 문제 토의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한국측은 예비회담에서는 본회담의 의제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북한측 입장을 고려한 대안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긴장완화에 관한 제반 문제」라는 단일의제를 제시하고 북한측의 수락을 촉구하였다.

한편, 미국측은 북한측이 내놓은 세부의제는 본회담 개최 이전부터 어떤 결과를 예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측도 각측의 관심사항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의제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채택하자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의제 문제에 관한 의견차이는 단순한 의제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신축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회담기간중 북한측 요구에 따라 남북한 및 미국의 3자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북한측은 또다시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3) 제3차 예비회담

1997년 10월 21일 미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했던 마크 민튼 미 국무부 한국과장과 이근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비공식 접촉을 갖고 4자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접촉에서 북한측은 3차 예비회담과 본회담 개최에 호응할 뜻을 비쳤고, 이어 뉴욕에서 개최된 4자 실무접촉에서는 세부의제 대신에 의제를 일반화하는 데 융통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따라 제3차 예비회담은 11월 21일 뉴욕 콜럼비아대학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북한측은 한국측이 지난 2차 예비회담에서 제시했던 포괄적 단일의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 문제(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ssues concerning tension reduction there)」로 하는 데 동의하였고 미국측과 중국측도 이를 지지함으로써 의제 문제가 타결되었으며, 4국 수석대표들은 본회담을 12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다.

마. 4자회담 본회담

(1) 제1차 본회담

예비회담의 합의에 따라 1997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차 본회담이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시영(주프랑스 대사)	김계관(외교부 부부장)
차석대표	문무홍(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장)	리 근(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대 표	유명환(외무부 북미국장)	박석균(외교부 미주국 부국장)
	권종락(대통령 비서실 외교비서관)	김경남(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사)
	유진규(국방부 군비통제관)	박명국(외교부 미주국 과장)
	이수혁(주미대사관 참사관)	정동학(외교부 지도원)
	이봉조(통일원 제1정책관)	
	전옥현(국무총리실 심의관)	

구 분	미 국 측	중 국 측
수석대표	Stanley O.Roth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唐家璇(외교부 부부장)
차석대표	Charles Kartman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	沙祖康(주제네바 대표부 대사)
대 표	William H. Wright (국방부 아·태 담당 과장) Michael Moseley (합참 아시아 정치·군사 담당 부과장) Jack Pritchard (국가안전보장회의 동아담당 보좌관) Norman Wulf (군비통제·군축처 비확산 및 지역군비통제 담당차장보 대리) Mark Minton(국무부 한국과장)	寧賦魁(외교부 아주국 부국장) 陳明明(외교부 북미·대양주국 부국장) 關華兵(외교부 한국과장) 顧子平(외교부 신문국 과장) 田學軍(당가선 부부장 비서관) 楊希雨(주미대사관 1등서기관)

회담은 미국이 의장국으로서 회의의 진행을 맡았다.

회담에서 한국측은 남북당사자 원칙 존중,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 강구, 남북기본합의서와 군사정전협정 등 기존합의의 준수·이행, 평화체제 구축 및 긴장완화 조치의 상호주의에 바탕한 점진적 협의·이행, 회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 구성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5개항의 기본틀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한반도의 평화보장체계 수립과 긴장완화 및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4자회담에서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 논의가 우선하여야 한다는 등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였다.

미국측은 4자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 그리고 4자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미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상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북한측의 주장에 대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북한의 안보위협 때문이라고 반박하였다.

한편, 중국측은 4자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4자회담에서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회담에서 분과위 구성을 먼저하자는 한·미측 입장과 의제를 세분화하자는 북한측의 입장이 맞섰으나, 제2차 회담 준비를 위한 특별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차기 의장국 순서를 결정, 그 결과를 의장성명('97.12,10)으로 발표하였다.

(2) 제2차 본회담

제1차 본회담에서 제2차 본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1998년 2월 중순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1월 한국측에서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이 정식 취임하기 전에 회담을 갖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별소위원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이에 대해 한·미 양측은 예정대로 「특별소위원회」 개최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고 취소에 대해 공식설명을 요구함으로써 1998년 2월 6일 「4자 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제2차 본회담 개최전에 준비회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제네바에서 개최된 준비회의(3.14)에서 한·미 양측은 4자회담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이미 합의된 의제에 따라 「평화체제 구축」, 「긴장완화·신뢰구축」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2개 분과위가 우선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분과위 구성에 앞서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세부의제가 우선 채택 되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 함으로써, 4자 대표단은 이 문제를 제2차 본회담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였다.

한편 북한측이 좌석배치와 관련하여 미국과 마주 앉기 위해 의장국인 중국측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알파벳 순으로 앉아야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문제는 의장국인 중국측이 북한측과 계속 접촉하여 설득하기로 하고 준비회의를 마쳤다.

북한측이 제기한 좌석배치 조정 문제로 인해 3월 16일 본회담이 개최되기 전 수석대표 회의가 열렸다.

한국측은 북한측 주장이 국제관례에 맞지 않으나 좌석배치 문제가 아무런 정치적 함의가 없음을 전제로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제2차 4자회담이 개막될 수 있었다.

제2차 본회담은 1998년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의장국인 중국측의 사회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송영식(외교통상부 제1차관보)	김계관(외교부 부부장)
차석대표	문무홍(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장)	리 근(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대 표	유명환(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박석균(외교부 미주국 부국장)
	권종락(대통령 비서실 외교비서관)	김경남(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사)
	유진규(국방부 군비통제관)	박명국(외교부 미주국 과장)
	이수혁(주미대사관 참사관)	정동학(외교부 지도원)
	이봉조(통일부 제1정책관)	
	전옥현(국무총리실 심의관)	

구 분	미 국 측	중 국 측
수석대표	Stanley O. Roth(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陳 健(외교부 부장조리)
차석대표	Charles Kartman(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王 毅(외교부 아주국 국장)
대 표	Wallace Gregson (해병사령부 정책·작전 담당부참모장, 해병준장)	寧賦魁(외교부 아주국 부국장)
		劉曉明(외교부 북미·대양주국 부국장)
	Norman Wulf (군비통제·군축처 비확산 및 지역군비통제 담당 차장보 대리)	關華兵(외교부 아주국 한국과장)
		顧子平(외교부 신문국 과장)
	Jack Pritchard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주담당 보좌관)	楊希雨(주미대사관 1등서기관)
	Mark Minton(국무부 한국과장)	
	Bruce Lemkin(합참 해군 대령)	

회담에서 한국측 송영식 수석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4자회담과 남북대화는 병행 추진돼야 함을 강조하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체제가 준수되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하는 한편, 4자회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화체제 분과위원회,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 김계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장애가 된다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분과위 구성에 앞서 세부의제를 먼저 확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측은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장기적 과정이 필요하나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은 즉각적인 진전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우선적이고 손쉬운 조치들에 대해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측은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4자회담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후, 북한측이 주장하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 한반도 평화유지 실제당사자는 남북한이기 때문에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상정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측은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의 필요성과 그 과정이 장기적일 수 밖에 없다는 데 4자가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회담의 주요 과업은 「분과위」 등 조직과 형식의 확정 및 이와 관련된 문제의 논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측은 수석대표 회의, 차석대표 회의를 거치면서 한·미 양측은 각 분과위에서 논의할 「논의방향」을 제시하고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하나의 분과위 설치에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 북·미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세부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였다.

결국 회담은 차기회담 일자도 정하지 못한 채 제2차 본회담 회의진행 과정을 밝히는 「4자회담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회담을 끝마쳤다.

(3) 제3차 본회담

한·미 양측은 1998년 8월초 하와이에서 한·미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1998년 3월 이후 중단되어 있는 4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이와 같은 협의를 바탕으로 1998년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뉴욕에서 열린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지하건설시설 의혹규명 문제 등 현안

문제를 포함하여 4자회담 제3차 본회담을 10월중에 개최하는 데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어 9월 25일 뉴욕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서는 제3차 본회담을 10월 21일부터 10월 25까지 제네바에서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3차 본회담이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박건우(4자회담 담당대사)	김계관(외무성 부상)
차석대표	권종락(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리 근(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대 표	유진규(국방부 군비통제관) 이수혁(주미대사관 참사관) 이용준(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정책 조정부장) 김만복(국무총리실 심의관) 김홍재(통일부 운영3과장)	장창천(외무성 미주국 부국장) 김경남(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사) 박명국(외무성 미주국 과장) 정동학(외무성 미주국 지도원)

구 분	미 국 측	중 국 측
수석대표	Charles Kartman (국무부 한반도 평화회담담당 특사)	錢永年(외교부 본부대사)
차석대표	Jack Pritchard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주담당 보좌관)	張九桓(외교부 아주국장)
대 표	Michael Moseley (합참 아시아 정치·군사문제 담당 차장) Philip Yun(국무부 동아태국 선임자문관) Norman Wulf (군비통제·군축처 비확산 및 지역군비 통제담당 차장보 대리) Evans Revere(국무부 한국과장) Thomas Henry Harvey (국방부 장관실 한국담당관)	關華兵(외교부 아주국 한국과장) 安洪泉(주미대사관 1등서기관) 謝未薇(외교부 미주국 부과장) 方 昆(외교부 한국과 3등서기관)

회의는 의장국을 맡은 한국측의 박건우 수석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한국측은 4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율적인 회담조직과 회담운영 방안에 관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번 회담에서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체제」·「긴장완화」 분과위 구성, 군사당국자 직통전화의 설치 등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합의, 4자회담의 정례적 개최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남북한측은 주한미군 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 기존 주장 외에 한반도내 군사장비 반입 문제,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지 문제 등을 추가의제로 제시하고, 군사적 신뢰구축보다 정치적 신뢰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측은 북한측이 합의를 번복하고 절차 문제를 걸어 회담진전에 난관을 조성하였다면서 앞으로 목적도 없이 회의만 계속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내보였다.

중국측은 1·2차 본회담을 통해 각측이 4자회담의 목적을 재확인하고 조속한 분과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에 도달할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각국의 의견 차이가 다소 있으나 허심탄회하고 융통성있는 태도로 회담진전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회의에서는 기조연설을 통해 나타난 각측의 입장을 토대로 분과위 구성 및 운영 문제, 본회담 정례화 문제 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한·미 양측은 2개 분과위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의 명칭은 「평화체제」, 「긴장완화」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2개 분과위 구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분과위 명칭을 부여하는 데에는 반대하였다.

한국측은 분과위 개최시기와 관련하여 회담기간중 뿐만 아니라 본회담과 본회담사이에도 개최하며, 3차 본회담 기간중 분과위를 1차례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북한측은 분과위를 본회담 기간중에만 개최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3차 본회담에서 분과위를 개최하는 것은 "준비도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현안 문제(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였다.

한·미 양측은 2개 분과위에서 다룰 세부의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나 북한측은 미·북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종래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본회담을 3개월에 1차례 정도 개최하는 등 정례화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북한측은 "오히려 더 자주 개최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지 말자."고 하면서 회담 정례화를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4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를 각각 논의하기 위한 2개 분과위 구성에 합의하고 「분과위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서」를 채택하는 한편, 4차 본회담을 1999년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분과위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자는 1998년 10월 21~24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4자회담 제3차 본회담에서 2개 분과위를 설립하는데 합의했다. 분과위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를 각각 논의한다.
2. 각 분과위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본회담 대표중에서 1인이 맡는다. 각 대표단원의 숫자는 각측의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각 대표단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 회의에 전문가들을 동반할 수 있다.
3. 분과위는 제4차 본회담시부터 실질적인 작업을 개시하며, 그 이후부터 매 본회담시마다 개최된다. 분과위는 각 본회담 종료이전 자신들의 작업결과를 본회담에 보고한다.
4. 본회담 의장국은 분과위 의장직도 수임한다.

(4) 제4차 본회담

제3차 본회담시 합의에 따라 제4차 본회담이 1999년 1월 19일부터 1월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첫날 전체회의(1.19)에서 한국측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및 긴장완화를 논의하는 2개 분과위를 통해 실질 문제 논의가 본격화 되어야 하며, 실질 문제 논의에 있어서 쉬운 것부터 실천해 나감으로써 서로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근본 문제들이 반드시 논의·해결되어야 하며, 우리 민족의 내부 문제인 남북사이의

문제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논의·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측은 실질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이 가장 실제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밝혔다.

중국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각측의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과위 논의를 점진적으로 해나간다는 원칙과 상호간 압력행사 자제 및 구동존이(求同存異) 원칙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박건우(4자회담 담당대사)	김계관(외무성 부상)
차석대표	권종락(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리 근(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대 표	유진규(국방부 군비통제관) 이수혁(주미대사관 참사관) 이용준(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정책조정부장) 김만복(국무총리실 심의관) 김홍재(통일부 운영3과장)	장창천(외무성 미주국 부국장) 김경남(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사) 박명국(외무성 미주국 과장) 최 일(외무성 미주국 지도원)

구 분	미 국 측	중 국 측
수석대표	Charles Kartman (국무부 한반도 평화회담 담당대사)	錢永年(외교부 본부대사)
차석대표	Jack Pritchard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주담당 보좌관)	張九桓(외교부 아주국장)
대 표	Philip Yun(국무부 동아태국 선임자문관) Norman Wulf (군비통제·군축처 비확산 및 지역군비통제 담당 차장보) Evans Revere(국무부 한국과장) Bruce Lemkin(국방부 해군 대령) Thomas Harvey(국방부 한국담당관)	寧賦魁(외교부 아주국 부국장) 孫延風(국방부 대령) 關華兵(외교부 아주국 한국과장) 傅 聰(외교부 군축국 과장) 安洪泉(주미대사관 1등서기관)

긴장완화분과위 회의(1.20, 1.21)에서 한국측은 분과위 의제와 관련하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중 시급하고 실천이 용이한 조치로 남북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주요 군사훈련의 통보 및 제한된 범위의 군사훈련 참관 허용, 군인사 상호 교류 등을 협의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분과위 활동은 전원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우선 분과위 수석대표 회의→차석 또는 수석대표 회의→전체회의 회부 순으로 해결하되, 회의운영은 쉬운 문제부터 논의하고 점차 어려운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측은 분과위 의제와 관련하여 미군의 남한 주둔 등 긴장완화의 본질적 문제, 미군철수 문제를 포함한 긴장완화의 방법 문제, 미·북 정치적 신뢰조성 등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분위기 조성 문제 등을 의제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분과위 활동내용에 대해 한국측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회의운영과 관련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 순으로 해결하자는 한국측 주장이 쉬운 문제에 대한 각측의 견해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측은 점진적 긴장완화를 통해 관계를 증진하고 더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뢰구축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경제·군사 신뢰구축 조치가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측은 유관국가간 정치·경제·사회적 분야를 망라한 일반적 신뢰구축조치, 다차원·다형식적 신뢰구축조치 등을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화체제분과위 회의(1.20, 1.21)에서 한국측은 평화체제의 내용 및 형식으로 나누어 논의하되, 평화체제의 내용은 일반적인 평화협정의 내용 이외에 한반도 특수사정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평화체제의 형식은 당사자 문제 등 입장차이가 큰 어려운 문제이므로 추후에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북한측은 토의 의제로 한반도의 평화과정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한반도의 평화보장과 관련한 원칙적인 문제 및 미·북간 평화협정과 관련한 원칙적인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측은 논의사항을 평화체제의 내용과 형식으로 하자는 한국측 제안에 찬성한다면서, 각측이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서 의제 선정기준은 4자의 콘센서스와 「쉬운 문제부터 논의·해결해 나가면서 점차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전진해 나간다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측은 평화협정의 내용에 유관 각측의 대결 종식, 관계개선과 평화공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날 전체회의(1.22)에서는 분과위 활동보고서 처리 문제와 공동언론 발표문 작성 문제, 차기회담 일자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4자는 이날 각측 대표단 중 1인으로 구성된 합의문 기초위원회를 통해 작성된 공동발표문을 그대로 채택하는 데 합의하였다.

남·북·미·중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4자가 이번 회담에서 분과위 운영절차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냄으로써 향후 회담에서 실질적 문제에 대한 진전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차기회담을 4월 중순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8.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1995년 8월 북한은 이례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큰 홍수피해가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유엔에 긴급구호 요청을 하였다.

정부는 1995년 9월 이후 정부차원에서 WFP(국제식량기구), UNICEF(유엔아동기금) 등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차원에서의 대북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단일창구로 하여 북한동포돕기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감에 따라 정부는 1997년 3월 31일 대북지원 품목과 참여범위 확대조치를 내려 민간차원의 대북한 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1997년 4월 18일 강영훈 총재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4월 29일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간 대표접촉을 갖고,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북한측에 보내고 있는 지원물품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한 절차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다음날인 4월 19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접촉장소는 중국 북경으로, 접촉날짜는 5월 3일로 하자고 수정 제의, 이를 수용함으로써 대북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가. 제1차 접촉

대북구호물자 지원절차 마련을 위한 남북적십자간 제1차 대표접촉은 1997년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적 측	북 적 측
수석대표	이병웅(한적 사무총장)	백용호(북적 중앙위원회 서기장) * 제3차 접촉부터 최경린으로 교체
대 표	조명균(한적 긴급구호대책본부 운영위원) 김장균(한적 긴급구호대책본부 운영위원)	정영춘(북적 큰물피해복구위원회 위원) * 제5차 접촉부터 김영성으로 교체 김성림(북적 큰물피해복구위원회 위원)

접촉에서 북적측은 지원식량과 물품의 전달절차 문제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인 지원물량과 지원시기 등을 한적측이 먼저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적측은 대북구호물자 지원은 민간단체들의 성금과 물품들이 모아지는 대로 북한에 보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절차 문제에 대한 우선 토의를 설득하였다.

결국 한적측의 「선 절차 문제 합의」 주장과 북적측의 「지원물량 규모, 지원시기 제시 후 지원절차 문제 토의」 주장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제1차 대표접촉은 종결되었다.

나. 제2차 접촉

제2차 대표접촉은 1997년 5월 16일 한적 강영훈 총재의 제의를 계기로 1997년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접촉에서 한적측은 제1차 접촉에서의 북적측 요구를 고려하여 지원품목은 옥수수를 위주로 하여 밀가루·라면·분유·식용유 등으로 하며, 1차 지원분은 옥수수 기준으로 약 4만 톤 정도를 1997년 7월말까지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수송방법, 인도·인수 장소 등을 명시한 「직접 지원절차에 관한 합의서(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합의서 문안조정을 위한 실무접촉에 들어 갔으나, 북적측이 지원총량을 옥수수 10만 톤으로 해 줄 것과, 전달시기를 7월중순으로 해 줄 것을 새로이 요구하였다.

한적측은 북적측의 새로운 요구에 대해, 1차 지원규모를 5만 톤 정도로 하고 지원시기를 7월중순까지로 하되 우리측이 1차 접촉시 제시했던 신의주·남포항 이외에 만포·흥남을 지원물자 인도장소로 추가 지정할 것과 물품포장에 한국측 지원단체명과 대한적십자사를 명기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요구하였다.

결국 남북한 양측은 전체회의 3회, 합의서 문안조정 실무회의 3회를 거쳐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었다.

1997년 5월 26일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서명한 합의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구호물자의 수량과 품종 및 인도시기
  ○ 수량 : 1차적으로 옥수수 기준 5만톤 정도
  ○ 품종 : 옥수수 위주로 하여 밀가루, 라면, 분유, 식용유 등
  ○ 인도시기 : 1997년 7월말까지 인도·인수
② 물자수송 및 인도인수 지점
  ○ 물자수송 : 육로와 해로 수송수단을 이용, 인도·인수 장소까지 운반
  ○ 인도·인수 지점 : 육로의 경우 신의주·남양·만포, 해로의 경우 남포항과 흥남항
③ 물자전달 방법
  ○ 적십자인원의 인도·인수장소 확인, 인도증과 인수증 서명·교환
  ○ 인도·인수시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대표 참가 허용
④ 지정전달 : 지정 기탁할 경우 지정된 지역 및 대상자에게 기증자가 전달
⑤ 분배과정 입회 :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대표의 분배과정 입회
⑥ 편의보장
  ○ 체류시 전신·전화 등 통신 보장
  ○ 체류기간중 숙식·차량·안내 등 편의 제공
⑦ 기록협조 : 인도·인수장소 사진촬영 협조, 보장
⑧ 신변안전 및 안전운행 보장 : 신변안전과 선박·차량의 안전운행, 무사귀환 보장을 위한 안전보장각서 사전 전달

⑨ 수송차량 및 선박의 표지
  ○ 차량 : 적십자 표지 부착
  ○ 선박 : 항구 입·출항시 양측 국기 게양 금지, 적십자 깃발만 게양
⑩ 물자포장 : 적십자 표지와 지원하는 단체명 또는 개인명의 표기, 기존상표 부착
⑪ 검수 및 검역 : 검수 및 검역절차는 국제관례에 따라 이행·처리

다. 제3차 접촉

제3차 대표접촉은 1997년 7월 12일 한적 강영훈 총재의 제의를 계기로 1997년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접촉에서 한적 이병웅 수석대표는 1차 지원량이 약속한 대로 전달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물자수송 및 인도·인수 지점의 추가, 지정기탁 대상자 확인 협조, 분배투명성 보장 문제, 기자 취재활동, 인도요원 편의보장 문제 등 지원절차의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의 합의서(안)을 북적측에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적측은 2차 지원규모를 1차분보다 늘릴것과 지원품목은 쌀·옥수수 위주로 하되 지원시기는 9월 20일까지로 해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양측은 전체회의 3회, 합의서 문안조정 실무협의 2회를 거쳐 7월 25일, 옥수수 기준 5만 톤을 1997년 9월까지 제1차 지원시 전달통로를 통해 지원키로 하는 등 「제2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합의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구호물자의 수량과 품목 및 인도시기
  ○ 수량 : 옥수수 기준 5만 톤 정도
  ○ 품목 : 옥수수 등 식량 위주
  ○ 인도시기 : 1997년 9월말까지 인도·인수
② 물자 검수 : 육로의 경우 화차량 기준, 해로의 경우 선상 인도 방식
③ 분배과정 입회 및 분배결과 통보
  ○ 분배과정 입회 :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대표의 분배결과 확인 보장
  ○ 분배결과 통보 : 구체적 분배내역(지역, 대상, 품목, 수량 등을 명기), 구호물자 전달 후 20일 이내 통보
④ 기존 합의서와의 관계 : 기존 합의서 효력 계속 유효

한편 한적측은 북적측이 합의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합의내용 이행에 장애를 조성할 우려가 있는 부분과 전달절차상 나타난 일부 실무적 개

선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양해사항으로 별도 합의함으로써 전달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① 해로 수송시 인도인원들의 북측지역 체류기간중 숙식은 육지에서 하도록 한다.
② 인도·인수장면, 하역장면, 검수장면에 대해 육로, 해로 모두 사진촬영과 함께 녹화촬영도 보장한다.
③ 구호물자 수송계획 및 분배결과 통보는 적십자 남북연락대표를 통해 문건으로 전달한다.
④ 남측 인도인원들의 북측지역 방문을 위해 필요한 방문사증은 심양주재 북측 총영사관에서도 발급한다.
⑤ 자연재해, 휴일 등으로 수송기일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인도·인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남측은 북측에 전달되는 물자의 품질 및 정량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라. 제4차 접촉

제2차 대북구호물자 전달이 10월말 완료되면서 북적측은 1997년 11월 7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한적측 요청사항인 지원물품의 분배내역 통보와 국제연맹 지원지역 이외의 전달지역에 대한 분배결과 확인을 협의하기 위한 대표접촉을 제의함에 따라 제4차 대표접촉이 1997년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접촉에서 한적측은 북적측이 2차지원 관련 합의서를 통해 약속한 구호물자 전달에 대한 분배결과 확인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대북지원 분위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분배결과 확인에 대한 북적측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적측은 분배투명성 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2차 합의서의 “국제적십자연맹 대표의 분배결과 확인” 합의는 백용호 전서기장이 잘못한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오히려 종전보다 후퇴한 입장을 보였다

한적측은 분배투명성 문제에 대해 북적측이 좀더 연구·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으나 북적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함으로써 다음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마. 제5차 접촉

1998년 3월 2일 북한측은 중앙통신을 통해 3월중순이면 식량재고량이 떨어진다면서 1995년에 이어 또다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호소하였고, 3월 11일에는 북적측이 제3차 대북구호물자 지원을 위한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한적측이 이같은 북적측의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이 1998년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접촉에서 북적측 수석대표 최경린은 3차지원과 관련한 북적측 기본입장을 밝혔다.

지원사업은 어떠한 전제조건이나 부대조건도 없어야 하며, 또한 변화되는 현실적 여건에 맞게 발전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식량 문제와 비료지원 문제도 함께 협의·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한적측 이병웅 수석대표는 새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한적의 대북지원은 민간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민간기증단체들의 분배결과 확인요청을 합의서에 포함하여야 함을 역설하고, 지원물자 전달절차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적측은 남한의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1~2차분 지원을 영(零)으로 하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적측은 적십자 활동은 정치와 이념을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 만큼, 상황이 바뀌었다고 기존 합의서를 무시하고 새로이 해야한다는 주장은 적십자 원칙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5차 접촉이 4차 접촉의 연장임을 분명히 하였다.

한적측은 3차 지원품목은 국내산 밀가루를 위주로 1, 2차와 같은 규모의 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적측은 지원규모를 10만 톤을 생각하고 나왔다며 지원량과 품목을 늘려줄 것과 추가로 비료 20만 톤 지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적측은 그와 같은 대규모 비료지원은 남북 당국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방은 접촉에서 대북구호물자의 지원규모, 품목, 지원기간, 전달경로 추가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한적측이 종전대로

IFRC 현지 대표가 분배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북적측이 거부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수석대표간 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쌍방 수석대표는 국제적십자연맹의 분배결과 확인을 합의서에서 명기하지 않는 대신 「양해사항」으로 처리하기로 절충하고, 3월 27일 전체회의에서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1998년 3월 27일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서명한 합의서의 전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구호물자의 규모와 품종 및 인도·인수 시기
  ○ 규모 : 1차 및 2차 지원분과 같은 수준
  ○ 품목 : 밀가루를 기본으로 한 식량과 식용유·소금 등과 이외 비료
  ○ 인도·인수 시기 : 1998년 5월말까지 인도·인수
② 물자수송 및 인도·인수 지점 : 해로의 경우 남포항, 홍남항, 나진항
③ 분배결과 통보 : 매회 전달후 20일이내에 통보, 통보문건은 도·시·군 단위까지 구체적 분배내역 명시
④ 기존 합의서와의 관계 : 기존 합의서 효력 계속 유효

한편 양해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적십자연맹 현지 대표의 남측 지원물품에 대한 분배결과 확인은 연맹의 구호대상 지역 이외의 1~2개 지역을 선정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9. 남북당국대표회담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래 "남북 당사자가 직접 대화를 통해 남북간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밝힌 취임사와 3.1절 기념사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과 북한이 원한다면 남북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 하는 등 남북당국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98.3.25~3.27)에서 북한측은 한국측에 비료 20만 톤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 1998년 4월 4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과 남 사이의 비

료 문제 등 서로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부장(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을 4월 11일 북경에 보내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회담장소를 판문점이나 한반도내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북경 개최를 수용함으로써 남북당국대표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가. 제1차 전체회의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 비료지원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당국대표회담」은 1998년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대표단 명단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세현(통일부 차관)	전금철(정무원 책임참사)
대 표	조건식(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손인교(통일부 국장) 김동근(농림부 국장) 서영교(통일부 국장)	리성덕(대외경제위원회 국장) 리창호(광명성경제연합회 부회장) 김성림(광명성경제연합회 실장) 리치훈(광명성경제연합회 중국 주재 대표부 대표)

4월 11일 개최된 회의에서 한국측 정세현 수석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과거의 대결과 반목의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번영과 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자고 촉구하면서 회담에 임하는 한국측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이산가족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면회소·우편물교환소 설치, 고령이산가족의 개별방문·상봉 및 시범적 사업으로 고향방문단 교환 실시
② 쌍방 최고 당국자들이 지명하는 특사의 교환
③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분야별 공동위원회 전면 가동 및 남북연락사무소의 정상 가동
④ 북한측이 희망하는 비료는 남북간 협력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되 비료지원의 규모를 감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측의 상응 조치 필요

북한측 수석대표 전금철은 “남측의 비료지원은 북남관계 개선의 첫걸음이 되며, 부대조건 없는 지원은 북남간의 화해, 단합도모, 북남대화의 새 장을 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의제를 비료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이 서로 관심갖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비료 문제를 토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비료 지원량은 50만 톤으로 하고, 인도·인수와 관련한 실무절차 문제들은 1984년 수재물자를 인도·인수한 경험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십자 구호물자 지원의 전례에 준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쌍방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의를 진행했으나, 북한측의 비료지원 문제 우선결정, 후 상호관심사 논의 주장으로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나. 제2차 전체회의

4월 12일 회의에서 한국측은 비료지원 문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산가족 문제, 기본합의서 이행 문제 등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하여 토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1995년 쌀 지원 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일방적 지원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한국측이 제기한 남북관계 개선방안 문제를 토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료가 지원될 경우 한국측이 제기한 문제들에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선 비료지원 후 관심사 협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남북 쌍방은 수석대표 접촉에서 협의키로 하고 2차 전체회의를 종료하였다.

다. 제1～2차 수석대표 접촉

수석대표 접촉은 4월 12일과 4월 13일 한국측 대표단 숙소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측에서는 손인교 대표가, 북한측에서는 김성림 대표가 배석하였다.

한국측 정세현 수석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과 연계되지 않은 비료지원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국민여론에 비추어 실현될 수 없게 된다면서 북한측의 입장변화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비료를 조건부로 받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고, 비료가 지원돼야 한국측의 정책전환을 믿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2차례에 걸친 수석대표 접촉도 별 진전없이 마치게 되었다.

그러나 쌍방은 서로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한 뒤 견해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4월 14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라. 제3차 전체회의

4월 14일 회의에서 한국측은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 일괄타결 방식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4월말까지 비료 3만 톤 북한측에 전달, 나머지는 5~6월에 전달 ②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원칙에 합의, 실무 문제의 협의를 위해 4월 25일 판문점에서 적십자 대표접촉 진행 ③ 이산가족 문제, 특사교환 등 상호관심사 협의 계속 ④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위한 실무접촉 개최

그러나 북한측은 한국측 안을 거부하고 이산가족 문제는 적십자단체간의 사항이므로 당국대표회담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이번 회담을 종료하고 4월 29일 다시 만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북한측이 합의를 이룰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이틀 이내에 상호 연락해 재접촉키로 하고 종료하였다.

마. 제3~4차 수석대표 접촉

제3~4차 수석대표 접촉은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보낸 뒤 다음날인 4월 16일 북한측 요구로 이루어졌다.

접촉에서 한국측 수석대표는 한국측 수정안에 대한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는 한편,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4월 25일 판문점에서 개최하는 데 동의하면 비료 20만 톤 지원을 합의서에 명기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다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도 절충안을 제시하였는데 ① 남한측의 비료 30만 톤 제공 ② 제6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 이산가족 문제 토의 ③ 상호관심사 계속 토의 ④ 4월 29일 제2차 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선 비료지원, 후 상호관심사 협의라는 기존입장에서 조금도 변하

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회담의 진전을 이룰 수 없었다.

그후 남북 쌍방은 북한측 제의로 4월 17일 다시 수석대표 접촉을 가졌다. 그러나 북한측은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회담태도도 바꾸어 한국측의 대북정책과 대화 자세를 시비하고 4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회담을 결속, 기자들에게 갈라진 것을 알리자는 등의 사실상 회담중단선언을 하였다.

이어 북한측은 4월 17일 밤 한국측에 전화를 걸어 "18일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으로 회담을 마치겠다."고 통보, 쌍방이 합의한 회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참선언을 함으로써, 3년 9개월만에 재개된 남북당국간 회담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한국측은 남북당국대표 회담을 통해 새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틀인 「상호주의 원칙」을 북한측에 분명히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제 4 장

남북교류협력의 진전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분단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1960년대까지 거의 단절되어 왔다. 1971년 8월 12일 남북적십자회담이 성사된 이래,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경제인 및 물자 교류를 제의(1973년)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북한의 교류확대와 문호개방을 수 차례 촉구하였고, 1984년 10월에는 북한적십자사의 수재물자 지원을 계기로 5차에 걸쳐 남북경제회담(1984.11.15~1985.11.20)이 열리기도 하였으나, 남북교류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정도에 그쳤다.

정부는 1988년 7월 7일「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를 불신과 대결구조에서 신뢰와 협력구조로 바꾸어 가기 위해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7·7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1988년 10월에는 남북한간 교역을 허용하는「대북경제개방조치」를 취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89년 6월 12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1989년 7월 21일에는「남북교류협력 세부시행지침」을 제정·시행하였다. 1990년 8월에는「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남북협력기금법」등 관련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우리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1992년 9월 제8차 회담에서 교류협력분야의 구체적 이행 대책을 담은「남북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가 채택되면서 남북한간의 화해·협력시대가 개막되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1993년 3월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인모 노인의 방

북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고,「신경제 5개년 계획 남북경제교류협력부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경협을 핵문제 해결시까지 유보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자, 기업인 방북 등 남북경협이 일시 중단되었다. 1994년 10월 미·북한간 제네바합의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면서 정부는 북한 경수로 건설지원에 우리측 자본과 기술을 제공할 것을 천명하고「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나가는 한편, 남북경협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를 발표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들을 취해나갔다. KEDO-북한간에 경수로 공급협정이 타결되고, 한국전력공사가 주계약자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1996년 한국전력공사의 대북 경수로 사업에 대해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하였다. 1997년에 들어서는 4자회담,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적십자회담이 개최되고, 8월에는 대북 경수로사업 초기공사가 북한 현지에서 착공되었으며, 교역규모도 처음으로 3억달러를 돌파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말에 국내 경제가 IMF 관리체제로 들어서게 됨에 따라 남북경협은 다시 위축되게 되었다.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의「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협력의 적극적 추진을 대북정책 3대 원칙의 하나로 천명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국정 100대과제중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정부는「정경분리」원칙에 입각,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8년 4월 30일「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하여 남북경협 절차 간소화, 대북 투자규모 제한 철폐 및 투자분야의 완화, 대기업 총수의 북한방문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1998년 6월에는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하여「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위원장 : 김용순)와 금강산관광문제를 협의하고 6월 22일「금강산 관광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금강산관광사업이 가시화 되었다. 현대와 북측간 수 차례의 실무협의와 이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있은 후 11월 18일에 금강산 관광선이 첫 출항함으로써 금강산관광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로써 1998년 12월말까지 총 10,544명이 금강산을 관광하는 등 남북간 대규모 인적 교류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 한 해 동안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341건 3,317명이 북한을 방문하여 1989년부터 1997년까지의 지난 9년간의 방북인원에 비해 1.4배의 남한주민이 북한을 다녀왔다. 특히 사회문화분야는 리틀엔젤스 평양공연이 성사되는 등 제3국 교류 위주에서 벗어나 방북교류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성사되기 시작하였고, 종교교류나 언론교류를 위한 방북도 크게 증가하여 방북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9.2배 늘어났다.

「국민의 정부」는 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한 이후에도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교류협력 관련규정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나갔다.

제1절 남북교류협력의 제도화

1.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운영

정부는 1989년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협의·조정기구로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 1998년말까지 50회를 개최하여 8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1989년 3월 31일「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규정」(대통령령 제12670호)으로「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발족시키고, 1990년 8월 1일「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법률 제4239호)을 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위원장인 통일부장관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차관급)로 구성되며, 협의회 아래에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3급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두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남북교류 촉진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관계부처간의 실무적 협의를 담당하고 있다.

2.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의 제정 및 보완·발전

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공포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추진되어 온 남북교류협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7월 국회 외무통일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 평화민주당 의원 70인이 발의한 「남북교류촉진법안」, 민주자유당 의원 216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의 정신을 고루 수용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안」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안」은 1990년 7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정일지>

- 1989. 2. 13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 제145회 임시국회 제출
- 1989. 5. 15 「남북교류촉진법안」 발의 (평화민주당)
- 1990. 3. 14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 발의 (민주자유당)
- 1990. 7. 1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안」 발의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 1990. 7. 1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 1990. 8.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공포 (법률 제4239호)
- 1990. 8. 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13017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등 내부기준에 의거 행해지고 있던 남북간 인적왕래나 물자 반출·반입 등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율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절차에 의해 추진되는 남북교류는 합법성과 정당성을 보장받게 되었다.

나.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의 보완·발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이의 시행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1990.8.9)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0.

11.9)이 제정되었다. 또한 남북교류를 촉진·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1990.8.1)이 제정되었다.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1990.12.31)과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1991.3.27)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1991.4.17)으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인적왕래를 규율하기 위한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국토통일원고시 제90-1호, 1990.8.13)과 물적 교류를 규율하기 위한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국토통일원고시 제90-2호, 1990.9.25)를 제정하는 등 세부지침까지 마련하여 남북교류 추진에 대비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조치들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관련 법령을 계속 보완하여 왔다. 특히, 1994년 11월 8일 발표된「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는 남북경협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실천조치로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였다.

1994년 12월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통일원고시 제94-2호, '94.12.1)을 제정하고,「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통일원고시 제94-4호, '94.1 2.1)를 개정하였으며, 「국내기업및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통일원고시 제94-3호, '94.12.1)을 제정하였고, 1995년 6월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외국환관리의 특례를 정한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재정경제원고시 제95-23호, 1995.6.28)을 제정하였다. 또한, 1997년 6월에는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통일원고시 제97-2호, 1997.6.27)을 제정하여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사업 추진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을 남북경협의 추진방향으로 제시하면서 1998년 4월 30일에는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법령도 교류협력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1998.10.23, 1998.12.31 개정)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1998.5.12 개정),「국내기업및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1998.12.31 개정),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1998.6.19 개정) 등이 경협활성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되었다.

다.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1) 남북한 주민간 접촉

접촉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전화·편지 등 통신이나 회합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만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은 북한주민 접촉을 통일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외국여행을 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남한주민이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서신왕래·상봉, 생사확인 등 이산가족 교류를 위해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등 접촉의 전후사정을 보아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촉사실에 대한 사후 신고로 사전승인을 대신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거나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접촉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령이 남북관계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2) 남북한 왕래

왕래란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이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은 남한주민이나 북한주민이 상대지역을 방문하고자 할 때, 통일부장관이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소지토록 하고 있다.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북한당국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의 보증이다. 남북간 당국차원의 통행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북한당국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남한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신변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로부터 북한을 방문하려는 남한주민은 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출입장소(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항구·비행장 등)에서 신원확인 등의 출입심사를 받아야 하며, 남한으로 귀환한 때에는 출입장소에서 이를 반납해야 한다.

북한과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인들처럼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남한주민은 3년의 범위내에서 횟수의 제한없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방문

증명서 유효기간 중에는 통일부에 신고하기만 하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1회 방문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횟수의 제한없이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방문할 때에는 방북하기 5일전 또는 귀환후 10일이내에 북한방문 사실을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한 제3국 소재 외국법인에 취업하여 외국에서 법인의 목적으로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법령은 남북 왕래절차에 대해서도 당국간의 합의가 있거나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이산가족북한방문증명서발급절차에관한지침」을 제정(통일부훈령 제289호, 1998.9.1)하여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60세이상의 남한주민 또는 실향민이 가족상봉, 고향방문, 성묘 등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 「금강산관광객등의북한방문절차에관한특례」를 제정(통일부고시 1998-3호, 1998.11.16)하여 대규모 단체관광객의 북한방문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금강산단체관광객(재외국민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현대-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의 합의에 따라 발급된 북한 사회안전부장(백학림) 명의의 포괄적 신변안전보장각서로 개개인에 대한 신변안전보증서류를 대신하고, 개별적인 방문증명서를 발급하는 대신 관광객의 북한방문을 일괄승인하는 방북승인공문으로 북한방문을 허가하도록 하였다.

(3) 남북한 교역

남북한 교역이란 남한물자의 북한반출 또는 북한물자의 남한반입 및 북한과 제3국간 물품의 중개무역 등을 말한다. 법률은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간주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남북교역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남북간의 교역을 반·출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교역 관련 제도 및 화폐단위가 다르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남북교역당사자를 무역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 남북교역에 대해 대외무역법 등 국제무역 관

련법령을 준용하거나 국제무역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세법, 지방세법 등이 정하고 있는 수출지원제도가 남북교역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즉,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항공기·선박 등에 의한 북한항행용역은 이를 수출하는 재화,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관련 세금의 면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교역당사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역물품을 반출·반입한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의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는 남북 교역물품을 포괄승인품목과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구분하고 승인대상 품목을 고시하고 있다. 교역당사자는 승인품목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의 반출입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포괄승인품목에 대해서는 통일부의 별도 승인없이 통관 등 일반절차에 따라 물자를 반출입할 수 있다.

(4) 수송장비 운행

법률은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 항공기, 철도,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승인기준을 정하고 있다. 수송장비 운행신청이 있으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승인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5) 협력사업

협력사업이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 및 경제 등에 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협력사업은 사업분야에 따라 경제협력사업과 사회문화협력사업으로 구분된다. 법률은 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승인의 2단계로 사업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접촉이나 북한방문을 통해 북한측 사업상대방과 사업내용에 대한 기본적 합의를 하게 되면 통일부장관에게 협력사업자 승인을 신청한다.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고 북측과 합의서·계약서 등을 통해 즉각 사업시행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적 합의를 하게 되면 통일부에 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하고 정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규정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회문화 협력사업을 규율하기 위해 「사회

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을 두고 있다. 경제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협력사업 관련 외국환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과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위한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등 세부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남북기본합의서」 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20조에서 남북간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기로 합의한 취지를 살려 남북간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사업자의 자격, 사업대상, 사업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통신역무의 제공도 협력사업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8년 12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남북간에 제공할 수 있는 통신역무의 범위를 우편물·소포물, 유선전기통신에서 무선통신 및 위성통신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제2절 남북인적교류

1. 남북왕래

남북인적교류는 남북한의 주민이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왕래」와 남북한 및 제3국 등에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만나거나 교신하는 「접촉」을 말한다.

남북왕래는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1998년 12월말까지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신청 729건(6,836명), 승인 668건(6,365명), 성사 584건(5,724명)으로,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신청 15건(607명), 승인 14건(597명), 성사 12건(575명)으로 집계되었다.

1992년 이전까지는 남북고위급회담등 회담 관련 방북,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제정이후 최초의 민간차원방북인 이태경 목사의 방북, 1990년 평양범민족통일음악회, 1991년 국제의원연맹(IPU) 평양총회, 1992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평양세미나」 참석 등 주로 비경제분야의 방북이 있었다.

1992년 들어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과 고려합섬그룹 장치혁 회장, 남포투

자실무조사단의 방북 등이 성사되면서 남한기업인들의 북한방문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북한 핵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과 1994년에는 남북간 왕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가, 1995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연도별 남북왕래 현황

(1989.6.12~1998.12.31) 단위 : 건(명)

연 도	구 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북한방문 남한방문	1(1) -	1(1) -	1(1) -
1990	북한방문 남한방문	7(199) 5(306)	6(187) 5(306)	3(183) 4(291)
1991	북한방문 남한방문	12(244) 3(175)	11(243) 3(175)	10(237) 3(175)
1992	북한방문 남한방문	17(303) 4(113)	8(257) 3(103)	8(257) 3(103)
1993	북한방문 남한방문	6(21) 2(6)	5(19) 2(6)	3(17) 2(6)
1994	북한방문 남한방문	12(78) -	7(54) -	1(12) -
1995	북한방문 남한방문	66(567) 1(7)	59(546) 1(7)	53(539) -
1996	북한방문 남한방문	50(249) -	35(170) -	28(146) -
1997	북한방문 남한방문	156(1,194) -	149(1,172) -	136(1,015) -
1998	북한방문 남한방문	402(3,980) -	387(3,716) -	341(3,317) -
계	북한방문 남한방문	729(6,836) 15(607)	668(6,365) 14(597)	584(5,724) 12(575)

1996년부터는 기업인 이외에도 대북 경수로지원사업 관련 인원의 방북이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1997년 이후에는 남북적십자사간 합의에 의한 대북 식량지원 인도요원의 방북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국민의 정부」출범후「보다많은 접촉, 보다많은 대화, 보다많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으로 기업인 및 각계 사회단체 인사들의 방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1993년까지는 남북통일축구대회, 예술단 교환공연, 남북고위급회담, UNDP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의 목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1993년말 이후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 북한방문

(1) 기업인 방북

1989년부터 1998년 12월말까지 기업인의 방북은 신청 239건 890명, 승인 210건 771명, 성사 171건 574명이다.

1992년 10월 남포투자실무조사단의 방북이후 한동안 북한 핵문제로 중단되었던 기업인의 방북은 1994년 11월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발표 이후부터 재개되어 1996년에는 23건 92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1996년 9월 강릉 무장잠수함 침투사건으로 다시 중단되었다가, 1997년 초부터 재개되어 1997년 중에 45건 196명의 기업인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국민의 정부」들어서는 1998년 4월 30일「남북경협 활성화조치」발표로 기업인 방북 승인 범위가 확대되면서 어려운 국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12월말까지 77건 231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특히 대기업 총수의 북한방문이 허용됨에 따라, 1998년 6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이 성사되었고, 이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주)대우의 임원과 기술자들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남포공단의 경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여 장기체류 하면서 공장운영 및 제품생산 관련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

(2) 사회문화분야 방북

사회문화분야에서의 북한방문은 초기에는 1990년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의 평양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 1991년의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참가를 위한 남북단일팀 평가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세미나」참가 등 남

북공동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1992년부터는 종교인 등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인 북한 방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에는 각계의 종교인 6명이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종교교류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1997년 남북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면서 종교인, 언론인 등 28명(13건)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1998년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사회문화계의 대북교류 열기가 고조되어, 12월말까지 문화·학술, 언론 등을 중심으로 40건 238명이 방북하여 지난 수년간의 실적을 능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에 이루어진 중요한 방북사례로는 리틀엔젤스예술단 평양공연, 학술교류협의를 위한 성균관대 관계자의 방북, 언론 및 종교계 인사의 방북 등을 들 수 있다.

(3) 대북경수로 지원사업 관련 방북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진전에 따라 관련 인원의 북한방문은 대폭 확대되고 있다. 1995년에 부지조사 활동이 시작되어 부지조사단 22명이 북한을 방문한데 이어, 1996년에는 부지조사단 42명을 비롯 총 5건 54명이 방북하는 등 매년 방북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1997년에는 초기현장공사가 시작되면서 착공을 위한 사전 실무협상단 등 총 62건 711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1998년에는 초기현장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12월말까지 97건 756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4) 「한적」의 대북식량지원 관련 방북

1997년부터는 남북한 적십자사간의 합의에 따라 6월부터 10월말까지 대북지원식량 인도요원 149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1998년 들어서도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12월말까지 총 20건 129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5) 금강산 관광 관련 방북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1998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총 1,962명에 달하는 현대측 실무협의단, 금강산 현지 편의공사 인력 등이 북

한을 방문하였으며, 1998년 11월 18일 「현대 금강호」가 첫 출항한 이후 12월말까지 총 23항차 10,554명의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나. 남한방문

1990년부터 1992년까지는 4차례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 북한대표단 방문,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송년통일전통음악회, 1991년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단일팀 평가전 및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서울세미나, 1992년 두만강지역 개발계획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참가, 김달현 정무원부총리 일행의 남한방문 등 주로 행사참가를 위한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1993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두만강개발계획 관련 통신분야 전문가회의(1.27~1.30)와 자원·산업·환경분야 전문가회의(11.8~11.10)에 각 3명씩의 북한주민이 참석한 이후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북한주민접촉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이후 1998년 12월말까지 신청 12,090건(25,246명), 승인 11,671건(24,031명), 성사 3,447건(9,26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북한주민접촉은 매년 증가하여 오다가 1996년 9월 북한 강릉 무장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일시 감소하였으나 1997년 들어 다시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새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한 접촉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북한주민접촉은 주로 이산가족들의 재북가족과의 서신교환, 학자·종교인들의 제3국 개최 학술회의 참석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도별 북한주민접촉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북한주민접촉 현황

(1989.6.12~1998.12.31) 단위 : 건(명)

연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36(70)	21(22)	-
1990	235(687)	206(652)	62(377)
1991	753(2,195)	685(2,047)	266(1,173)
1992	801(2,420)	744(2,250)	238(1,015)
1993	1,172(2,220)	1,148(2,182)	313(707)
1994	1,338(2,864)	1,261(2,673)	237(691)
1995	1,011(2,769)	1,007(2,703)	494(1,222)
1996	729(2,338)	692(2,029)	465(1,003)
1997	1,387(2,969)	1,340(2,850)	516(1,191)
1998	4,628(6,714)	4,567(6,623)	856(1,890)
계	12,090(25,246)	11,671(24,031)	3,447(9,269)

가. 경제분야

1998년 12월말까지 경제분야 북한주민접촉은 신청 2,993건(7,791명), 승인 2,895건(7,517명), 성사 1,499건(2,561명)에 이르고 있다.

물자교역, 현지조사 등 경협 협의를 위한 남북주민간 접촉이 중국 북경·연변·홍콩 등 제3국에서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다.

나. 사회문화분야

(1) 학 술

1998년 12월말까지 학술분야 북한주민접촉은 신청 435건(3,002명), 승

인 399건(2,692명), 성사 133건(1,7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남북간의 학술교류는 남북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술세미나 개최 등의 형태로 중국 연변 등지에서 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학술분야 북한주민접촉 신청현황

(1989.6.12~1998.12.31) 단위 : 건(명)

구 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11(11)	10(10)	·
1990	50(301)	47(298)	13(192)
1991	77(505)	71(498)	21(348)
1992	71(319)	65(308)	10(146)
1993	35(190)	34(190)	9(50)
1994	28(209)	22(195)	6(91)
1995	36(367)	37(339)	19(282)
1996	44(513)	39(280)	21(196)
1997	34(414)	28(399)	13(321)
1998	49(173)	46(175)	21(74)
합 계	435(3,002)	399(2,692)	133(1,700)

(2) 문화·예술

1998년 12월말까지의 문화·예술분야 북한주민접촉은 신청 280건(1,317

명), 승인 237건(1,234명), 성사 68건(651명)으로 집계되었다.

1997년까지는 의사타진을 위한 접촉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1998년 들어서는 리틀엔젤스예술단 평양공연, 남북공동사진전 개최 등의 결실을 거두기도 하였다.

문화예술분야 북한주민접촉신청 현황

(1989.6.12~1998.12.31) 단위 : 건(명)

구 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4(4)	3(3)	-
1990	26(78)	20(72)	4(50)
1991	66(457)	44(417)	8(209)
1992	39(142)	39(142)	2(81)
1993	19(71)	18(68)	2(21)
1994	20(126)	17(112)	4(32)
1995	25(120)	22(110)	9(69)
1996	13(51)	9(48)	3(40)
1997	20(101)	18(90)	9(74)
1998	48(167)	47(172)	27(75)
계	280 (1,317)	237(1,234)	68(651)

(3) 체 육

1998년 12월말까지 체육분야에서의 북한주민접촉은 신청 162건(831명), 승인 153건(803명), 성사 46건(486명)으로 나타났다. 대한산악연맹의 북한 등산협회 관계자에 대한 암벽등반교육 및 스포츠클라이밍선수권대회 참관(1997.7, 북경) 등을 위한 남북한 접촉이 있었다. 1998년에는 아시아경기대회(1998.12, 방콕)에서의 남북공동응원을 위한 대규모 접촉이 성사되었다.

체육분야 북한주민접촉 신청현황

(1989.6.12~1998.12.31) 단위 : 건(명)

구 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1(1)	1(1)	-
1990	15(15)	15(15)	1(1)
1991	23(89)	22(86)	6(46)
1992	16(53)	13(40)	2(2)
1993	15(35)	13(32)	3(6)
1994	11(26)	11(22)	2(5)
1995	14(15)	14(15)	2(2)
1996	14(58)	14(58)	6(12)
1997	17(74)	16(71)	9(20)
1998	36(465)	34(463)	15(392)
합 계	162(831)	153(803)	46(486)

(4) 관 광

1989년 6월 12일 이후 1998년 12월말까지 관광분야에서의 북한주민접촉은 신청 155건(483명), 승인 147건(455명), 성사 41건(116명)으로 집계되었다.

1997년까지는 세계관광기구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위원회 회의 참석 등으로 의사타진 차원의 단순접촉만 성사되었으나, 1998년에는 현대그룹 및 금강산 국제그룹(통일그룹)이 금강산 관광사업의 추진을 위해 북측과 접촉하였다.

관광분야 북한주민접촉현황

(1989. 6.12~1998. 12.31) 단위 : 건(명)

연 도	신 청	승 인	성 사
1990	3(3)	3(3)	-
1991	29(69)	25(38)	9(21)
1992	17(78)	16(85)	7(43)
1993	22(91)	21(90)	2(5)
1994	29(77)	29(77)	8(10)
1995	14(58)	11(51)	2(5)
1996	15(44)	16(48)	2(6)
1997	11(20)	11(20)	4(3)
1998	15(43)	15(43)	7(23)
계	155(483)	147(455)	41(116)

(5) 종 교

1998년 12월말까지 종교분야 북한주민접촉은 신청 299건(1,381명), 승인 245건(1,233명), 성사 94건(727명)으로 나타났다.

1997년도에는 남북한 기독교계 관계자들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남·북·

미 교회협의회(6.17~6.19)에서 접촉한 것을 비롯해서 독일교회의 날 행사(6.17~6.22, 독일 라이프치히) 및 세계개혁교회연맹총회(8.8~8.20, 헝가리 드브리첸) 참가 등을 통한 접촉이 있었다.

불교의 경우 북경에서 실무자급의 접촉을 통해 부처님오신날 봉축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을 합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남북한 종교지도자 북경회의(5.30~5.31)와 남북천주교인 북경세미나(6.4~6.7) 개최 등을 통한 남북 종교인간 접촉이 있었다. 1998년에는 신청 55건(214명), 승인 51건(202명), 성사 35건(15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1998년중 주요 접촉사례로는 통일과 나눔 남북교회협의회(3.16~18, 시드니), 제6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자회의(10.8~10, 오사까) 등이 있다.

(6) 언론·출판

1998년 12월말까지 언론·출판분야 북한주민접촉은 신청 237건(623명), 승인 198건(531명), 성사 45건(130명)으로 나타났다.

언론분야의 접촉은 북한의 자연경관 촬영, 문화유적 답사 및 북한실상 취재를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었으며, 북한현지 취재를 위한 협력사업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출판분야 교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3절 남북경제교류협력

1. 교 역

분단후 남북한간의 물자교류는 군정무역(바터제) 형태로 일부 이루어지다 6·25 전쟁으로 전면중단 되면서 1988년 「대북경제개방조치」가 있기까지 단절되어 왔다.

1988년 「대북경제개방조치」 이후, 단절되었던 남북간 물자교류를 재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다. 정부는 대북경제개방조치로 남북교역 허용 및 지원방침을 밝히고, 교역관련 제도의 기본원칙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남북물자교류운영지침」(상공부고시,1988.10.18)과 「남북경제인상호교류지

침」(상공부고시,1988.12.15)을 제정하여 남북간 물품 반출입절차 및 대금결제방법등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 12월말까지 4건의 북한물품 반입이 이루어졌다.

1989년 들어「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대통령특별지시 제1호, 1998.6.12)이 제정되면서 남북교역 관련 사항도 큰 변화없이 새로운 지침에 흡수되었다. 1989년에는 57건의 북한물품에 대한 반입승인이 이루어지는 한편, 최초로 우리 제품(잠바 5,000벌)이 북한에 반출되었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8.1)이 제정되면서 남북교역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종합·조정 권한이 커지고, 관계부처간 협의기능이 강화되었다. 남북교역이 시작된 1988년 10월부터 1990년 9월까지 반입 115건 35,540천달러, 반출 3건 162천달러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법률제정 이후「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통일원고시 제90-2호, 1990.9.25), 「남북교역물품통관요령」(관세청예시, 1990.9.4) 등 교역품목 및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도 마련되었다.

정부는 남북교역 추진상황을 보아가면서 교역품목을 확대하고 교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994년 11월「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를 발표하여 남북간 위탁가공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자방북을 허용하였으며, 1995년에는 WTO체제 출범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품목분류기준에 따라 남북교역대상품목을 재조정하였고,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1996년과 1997년에는 반입제한품목을 225개에서 213개로, 다시 213개에서 205개로 축소하였다.

1998년에는「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4.30)를 발표하여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205개에서 178개로 축소·조정하고, 위탁가공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설비의 반출금액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북한지역 사업장의 노후설비 대체와 생산설비 확장, 국내 유휴설비의 북한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해외주재상사원 및 현지법인들에 대한 교역정보 제공을 위해 1998년 6월 29일과 7월 1일 한국무역협회 홍콩·북경지부에 각각「해외남북교역 상담창구」를 개설하였다.

가. 교역규모의 변화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래, 1988년 11월 (주)대우에서 도자기 159점(104천달러)에 대해 최초로 반입승인을 받았고, 1989년 1월 효성물산(주)이 북한산 전기동 200톤을 반입한데 이어 현대상사의 잠바 5,000벌이 최초로 북한으로 반출되었다.

1989년도의 교역량은 1,883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989년과 1990년에는 총 교역규모가 2천만달러 미만이었으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정으로 교역제도가 정비된 1991년에는 1억달러를 넘어서는 규모로 신장되었다.

1992년에는 1억 7,343만달러, 1993년에는 1억 8,360만달러, 1994년에는 1억 9,455만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4년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에 힘입어 1995년에는 연간 교역규모가 2억달러를 넘어섰다. (2억 8,729만달러,대북지원쌀은 제외)를 기록하였다. 1996년에는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남북교역도 위축되어 2억 5,204만달러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1997년에는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되고 경수로 건설사업 관련 물자 반출이 시작되어 남북교역 규모가 최초로 3억달러를 넘어섰다(3억 8백만달러). 그러나 1998년에는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상승과 내수경기 침체로 교역량이 줄어들어 2억 2,194만달러로 전년 대비 28% 감소하였다. 남북교역이 시작된 1988년이래 1998년까지의 교역 누계액은 17억 6,763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전체 대외무역 규모에서는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지만,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면에서는 한국이 중국, 일본에 이어 3대 교역국이다.

나. 교역품목의 변화

(1) 반입품목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교역초기에는 금괴, 아연괴 등 철강금속, 농림수산물, 광산물 등 1차산품이 대부분이었으나 1994년 이후에는 철강금속과 광산물의 반입비중이 줄어들고 위탁가공제품인 섬유류의 반입이 증가하여 2차산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로 품목구조가 바뀌었다. 그러나 전체 반입품목에서 차지하는 철강금속의 비중은 50%선으로 아직까지도 최대 교

역품목이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전체적인 반입 품목별 구성비율을 보면 철강금속 36.6%, 광산물 32.0%, 섬유류 14.0%, 농림수산물 11.7% 화학공업생산품 3.2%, 전기전자 0.7%,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0.2%, 기타 1.6%이다.

철강금속은 1992년이래 계속 1억달러를 상회하였으나 1997년에는 9,600만달러로 감소하였다. 섬유류는 위탁가공교역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계·전자제품도 1995년 이후부터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입 품목수도 1989년에는 25개품목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7년에는 140개 품목으로 증가하였고 1998년에는 136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2) 반출품목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위탁가공교역이 시작된 1991년부터는 섬유류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94년 이후부터는 KEDO 제공 중유가 반출되면서 화학제품의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1997년부터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된 설탕, 밀가루, 분유, 감자 등 구호물품의 반출도 증가하고 있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의 반출 품목은 섬유류 36.0%, 비금속광물 19.0%, 일차산품 14.0%,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10.8%, 화학공업제품 4.9%, 플라스틱·고무 4.5%, 철강금속 3.7%, 생활용품 2.6%, 전기전자 2.9%, 잡제품 1.6%로 구성되어 있다.

반출 품목수는 1989년에는 1개품목(잠바)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7년에는 274개품목으로 증가하였고, 1998년에는 380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반출입 건수도 1989년에는 67건이었으나 1997년에는 3,991건으로 증가하였고 1998년에는 4,810건에 이르고 있다.

다. 교역형태의 변화

(1) 직・간접교역

남북한간의 교역은 초기에는 제3국 중개인을 매개로 한 간접교역방식이었으나, 1991년 이후부터 북한 무역상사와 우리 기업의 해외지사가 직접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차츰 직접교역에 가까운 교역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직접교역은 상담, 계약, 수송, 대금의 결제, 상사분쟁의 해결 등이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이루어지는 교역형태로 거래관계가 명확하고 불필요한 중개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남북간 교역 관련제도가 합의되어 있지 않아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1996년까지는 중개지역으로 홍콩의 비중(총 반입건수 3,619건 중 2,104건(58.5%))이 높았으나, 중국의 경제 개방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북경과 동북3성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1998년 교역목적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신청 358건중 중국 239건(66.8%), 홍콩 21건(5.9%), 일본 22건(6.1%), 기타 76건(21.2%))

전체 교역 중에서 직접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7.5%, 1992년 3.9%, 1993년 1.7%로 감소하다가 1994년 4.5%, 1995년 8.7%, 1996년 8.6%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호두, 당면, 한약재, 일부 농산물 등이 직접교역에 의해 반입되고 있다. 남북한당국이 인정한 대표적인 직접교역 사례로는 1991년 한국의 천지무역상사와 북한의 금강산국제무역개발회사간의 한국산 쌀 5,000톤과 북한산 무연탄 30,000톤, 시멘트 11,000톤의 물물교환 건으로 천지무역상사는 1991년 8월 쌀을 남포항에 인도하였으나 북한은 아직까지 대응물품에 대한 상환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교역은 북한의 노동력과 기술을 이용하고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국의 원・부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완제품으로 다시 반입하는 교역방식을 말한다. 1991년 코오롱상사의 학생용 가방 생산이 남북간 위탁가공교역의 시작이었다.

위탁가공교역액은 1992년에는 84만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3년 701만

달러, 1994년 2,566만달러, 1995년 4,644만달러, 1996년 7,440만달러, 1997년 7,907만달러로 큰 증가추세를 보이다 1998년에는 경제위기로 7,099만달러로 소폭 감소하였다. 전체 교역액에서 위탁가공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25.6%, 1998년 32.0%이다.

초기에는 북한의 설비를 이용하였으나, 1994년 11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로 설비반출이 허용되면서 한국 설비가 북한지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위탁가공용 설비의 반출은 1995년에는 2건(53만달러), 1996년 6건(67만달러), 1997년 4건(49만달러), 1998년 7건(181만달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의류, 가방, 신발, 완구, 슈트카바 등이며, 1996년 이후부터는 칼라TV, TV스피커, 자동차배선 등으로 품목이 점차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1998년에는 컴퓨터용 모니터부품, 마이크 등 음향기기, 전자부품,카세트테이프 등으로 위탁가공교역품목이 확대되었으며, 총 4개 기업(연 19명)의 기술자가 북한에 체류(최장1개월)하면서 기술지도를 하기도 하였다.

라. 교역업체

남북교역 초기에는 주로 대기업들이 남북교역에 참여하였으나, 1991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남북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수는 1989년 30개, 1992년 147개, 1996년 333개로 매년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1997년에는 442개 업체로 전년보다 32.7% 증가하였으나, 1998년에는 378개 업체로 전년보다 14.5% 감소하였다. 위탁가공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수도 1992년 4개 업체에서 1997년 48개 업체, 1998년 61개업체로 증가되었다.

이들 업체중 1989년부터 1998년까지 반입누계액이 1억달러 이상인 업체는 삼성물산(주), (주)대우, (주)LG상사, 동양글로벌 등 4개사이고 반출누계액이 2천만달러 이상인 업체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LG-Caltex정유(주), LG상사, S.K상사(주) 등 6개사이다. LG-Caltex정유(주)는 KEDO의 중유, 현대건설(주)은 경수로 및 금강산관광산업 물자, 한성코리아(주)는 대한

적십자사의 대북구호물품의 반출을 주로 담당하였다. 1998년에는 4백만달러이상 반출한 업체는 현대건설(주) 등 7개업체이고 2백만달러이상 반입한 업체는 (주)대우 등 7개업체이다.

마. 남북교역수지

1998년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 남북한간 교역수지는 한국이 매년 적자였으며, 1989년부터 1998년까지의 총 누적 적자는 9억 2,151만달러이다.

1998년에는 반입 9,226만달러, 반출 1억 2,968만달러로 명목교역수지는 한국이 3,742만달러 상당 흑자이나 경수로물자, 대북지원, KEDO 중유 등 지원 물자 반출을 제외하면 실질 교역수지는 북한이 415만달러 흑자이다.

바. 남북교역의 장애요인

남북교역은 간접교역으로 인한 중개 수수료부담과 가격경쟁력 약화, 남북간 운항선박의 운항횟수 부족에 따른 물류비용의 과다, 통신제약 등 기술적 장애요인, 상사분쟁 해결 및 대금결제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결여, 북한상사원들의 국제 무역관행 미숙, 산업수준의 낙후 등 산업구조적인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경제협력

남북경제협력사업은 1988년 10월 「대북경제개방조치」이후 사업협의에서 공장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며, 1992년 10월 (주)대우의 협력사업자 승인이후 계속 증가하였다. 1998년 12월 현재까지 총 40개 기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으며, 15개 사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992년 1월 대우가 방북한 이래 LG, 삼성, 현대 등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협의 목적으로 방북하였으며, 섬유・의류・신발・농수산물,・식음료 임가공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남북간 상호이익을 도모하면서 남북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남북관계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조치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1994년 11월 8일 발표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는 북한 핵문제로

일시 중단되었던 남북경협을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동 조치는, 첫째「시범사업」협의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업인 방북 등 남북경제인사 상호방문을 허용하고, 둘째 생산설비 운용·기술지도·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자 방북 및 위탁가공교역의 시설재 반출을 허용하여 위탁가공교역을 활성화하며, 세째 생활용품·제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시범적 경제협력사업을 장려하고 민간차원의 북한지역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조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국내기업및경제단체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1995년 들어 기업인 방북승인, 경제협력사업(자) 승인 등 후속조치들이 시행되었다. 1995년 5월 17일에는 (주)대우가 셔츠· 블라우스, 쟈켓, 가방 생산(512만불)에 대해 최초로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1996년 9월 나진·선봉 투자설명회 선별초청으로 인한 한국측 대표단의 참가 무산 및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이 일어나면서 경협분위기가 위축되어 기업인의 접촉·방북과 협력사업(자) 승인이 일시 보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96년 말부터 북한측의 사과와 4자회담 예비회담 참가, 대북식량지원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개최 등으로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기업인 방북이 다시 허용되었고 1997년 5월 22일 태창 등 5개 기업이 추가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다.

1998년 새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1998년 4월 30일「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하여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민간주도의 남북경협 추진 여건을 정비하였다

<「국민의 정부」, 남북경협활성화조치(98. 4.30)의 주요내용>

□ 기본방향

o 경협주체인 기업의 자율적 판단 존중, 민간주도의 경협 추진
o 정부는 경협질서 유지를 위한 과당경쟁 및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등 경협추진 여건 조성에 주력

□ 주요 내용

① 접촉·방북

o 방북요건(초청장 등) 구비시, 승인을 원칙
- 방북을 제한해 온 대기업총수 및 경제단체장도 허용
o 수시방북제도 확대 시행
- 협력사업자 승인시 적용 → 기업인 방북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
o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 확대(1년→3년)
o 승인처리기간 단축
- 접촉 : 현행 20일 → 15일
- 방북 : 현행 30일 → 20일

② 교 역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의 관련조항 개정을 거쳐 시행)

o 국내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포괄승인품목」의 지속적 확대
o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 국내유휴설비의 무상반출, 임대 허용
- 1회 승인한도(현행 100만불)의 기준 폐지

③ 협력사업

o 투자규모제한 완전 폐지
- 현행 500~1,000만불 규모

o 투자제한업종의 Negative List 化
- 전략적으로 기술이전이 곤란한 분야

▶ 신소재, 전자장비, 전기통신 및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져, 항공전자공학 등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관련 산업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방산물자 관련 산업

- 기타 북한의 전력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

o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 제도 도입
- 300만불 이하의 협력사업
-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고용사업
- 남북간 당국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

가. 남북간 경제협력의 추진

(1) 협력사업자

1992년 10월 5일 (주)대우를 협력사업자로 승인한 이래, 1998년 현재까지 40개 기업이 협력사업자로 승인되었다.「협력사업자」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평양·남포와 나진·선봉 지역에 주로 투자(나진·선봉지역 14개 사업, 남포지역이 8개사업, 평양지역이 7개사업 및 강원도 고성군 1개사업, 신포 지역 3개사업, 기타지역 7개사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주로 의류·신발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농·수산업 및 국내 유휴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하여 활용하는 제조업 분야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류·신발생산 7개사업, 의약품생산 1개사업, 통신분야 2개사업, 생수개발 1개사업, 일반공산품 제조업 6개사업, 경수로관련 3개사업, 광고 2개사업, 농·수산업 5개사업, 농업협력 2개사업, 공단개발 1개사업, 물류·유통 2개사업 및 기타분야가 4개사업 등이다.

투자 규모는 100만~500만달러가 제일 많으며 1,000만달러 이상은 2개사업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0만달러 이하 8개사업, 100만~500만달러 17개사업, 500만~1,000만달러 9개사업, 1,000만달러 이상 2개사업 등이다.

「협력사업자」승인

기 업	사 업 내 용	금 액	지 역	승인일
대 우 (합영)	남포공단 셔츠, 가방, 쟈켓 등 9개사업	-	남포	'92.10. 5
고합물산 (합영, 합작)	의류·봉제, 직물 등 4개 사업	686만불	남포·나진·선봉	'95. 5.17
한일합섬 (합영, 합작)	쉐타, 봉제, 방적 등 4개 사업	980만불	남포·나진·선봉	'95. 6.26
국제상사 (합영, 합작)	신발	350만불	남포·나진·선봉	"
녹 십 자 (합작)	의약품(유로키나제)	300만불	평양 통일구역	'95. 9.15
동양시멘트 (단독투자)	시멘트 싸이로 건설	300만불	나진·선봉	"

기 업	사 업 내 용	금 액	지 역	승인일
동룡해운 (단독투자)	하역설비(크레인 등)	500만불	나진・선봉	”
삼성전자 (합작)	나진선봉 통신센타	700만불	나진・선봉	’96. 4.27
태 창 (합영)	금강산 샘물개발	580만불	강원 고성군	”
대우전자 (합영)	TV 등 가전제품 생산	640만불	남포	”
한 전	경수로 건설지원사업(PWC)	4,500만불	신포	’96. 7.19
미흥식품 (합영)	수산물 채취・가공	15만불	청진·함흥·원산·남포	’97. 5.22
신일피혁 (단독투자)	피혁・의류 봉제	300만불	나진・선봉	”
한 화 (합작)	PVC장판 제조	90만불	평양・남포	”
LG전자 /LG상사 (합영)	전자제품(컬러TV)조립생산	450만불	평양	변경승인일 ’97.10.14 (최초승인일 : ’97.5.22)
한국통신	북한 경수로 건설을 위한 통신지원사업	・	신포	’97. 8. 1
삼성전자 (합영)	전전자교환기 등 통신설비 생산	500만불	나진・선봉	”
코오롱 (합작)	섬유 및 섬유제품 가공・생산	400만불	평양・남포	”
신 원 (합작)	의류・봉제사업	100만불	평양	”
파라우수산 (합영)	수산물 생산・가공	300만불	원산, 해주	”
금오식품 (합작)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40만불	평양	”

기 업	사 업 내 용	금 액	지 역	승인일
한국토지공사 (단독투자)	나진·선봉지대 시범공단 조성	-	나진·선봉 (유현지구)	'97.10.14
대상물류 (단독투자)	나진·선봉 국제물류 유통기지 개발·운영	420만불	나진·선봉 (동명지구)	〃
삼천리자전거 /LG상사 (합영)	자전거 조립·생산	800만불	나진·선봉	〃
태영수산 /LG상사 (합영)	가리비 양식 생산	200만불	나진·선봉 원산	〃
한국외환은행	경수로사업 부지내 은행 점포 개설	-	금호	'97.11. 6
아자 커뮤니케이션 (합영)	인쇄물 및 TV광고 제작	-	평양, 기타지역	'97.11.14
에이스침대 (합작)	침대 및 가구 제조·판매	425만불	평양 락랑구역	'98. 1. 9
롯데제과 (합영)	과자류(쵸코파이) 생산·판매	575만불	평양 락랑구역	〃
광 인	옥외광고(야립, Push Cart, 옥상 및 도시형간판, 내부벽면 부착광고 등) 사업	250만불	평양, 나진·선봉	'98. 2.18
안성개발 (합작)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50만불	남포	'98. 3.13
두레마을 영농조합 (합작)	나진·선봉지대 합영농장 설립	800만불	선봉(굴포·부포농장)	'98. 4. 8

기 업	사 업 내 용	금 액	지 역	승인일
국제옥수수재단	신품종 옥수수개발 및 공동 농업연구	220만불	도별 1곳씩 총 10개 지역	'98. 6.18
(주)현대상선, 현개건설, 금강개발산업	금강산 관광사업(금강산 관광, 관광선 운항, 관광기반 및 편의시설 설치·운영,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95,826 만불	-	'98. 8. 6
세원 커뮤니케이션	북한올림픽위원회 스폰서쉽 대행	미정	-	"
코리아랜드 (합영)	북한 부동산 개발(임대·분양) 및 컨설팅업	60만불	평양·묘향산	'98. 8.28
성화국제그룹 (합영)	원정 국제자유시장 건설·운영 및 평양 지역내 백화점 운영	190만불	나진·선봉 원정리 평양	'98. 9.14
(주)아이엠 시스템	방송용 광고 제작	미 정	-	'98.10.17
백산실업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	81만불	-	'98.10.28
현대전자산업, 한국통신, 온세통신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1단계 :온정리~장전간 통신선로 매설, 제3국 경유 남북간 통신망 구축 및 운영)	13만불 (1단계)	-	'98.11.12

투자기업의 규모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18개사, 대기업이 12개사, 정부투자기관이 3개사, 은행 등 기타기관이 3개 단체로 초기의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2) 협력사업

1995년 5월 17일 (주)대우의 남포공단 셔츠, 가방, 자켓 생산사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데 이어 1998년 12월 말까지 15개사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제조업 분야에서 대우, 태창, 녹십자의 3개사업, 수산업 분야에서 미홍식품산업사, 태영수산/LG상사의 2개사업, 농업분야에서 국제옥수수재단, 두레마을 영농조합, 백산실업의 3개사업,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및 한국외환은행의 경수로지원 3개사업(초기부지정지사업, 통신지원, 외환업무), 아자커뮤니케이션의 광고홍보물 제작사업, 코리아랜드의 북한 부동산개발사업, 현대건설·현대상선등의 금강산관광사업 및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사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협력사업」승인

기 업	사 업 내 용	금 액	승인일
대 우	남포공단 셔츠, 가방, 쟈켓 등 3개 사업 - '96.1.26 민족산업총회사설립 - '96. 6월 투자자금 송금	512만불	'95. 5.17
태 창	금강산 샘물 개발	580만불	'97. 5.22
한국통신	북한 경수로건설 관련 통신 지원사업	·	'97. 8. 1
한 전	경수로건설 지원을 위한 초기 부지정지 사업(PWC)	5,346만불	'97. 8.16 (변경 : '98.10.16)
한국외환은행	경수로 사업부지내 은행 점포 개설	·	'97.11. 6
녹 십 자	혈전증 치료제(유로키나제)제조 사업	311만불	'97.11.14

기 업	사 업 내 용	금 액	승인일
아자 커뮤니케이션	북한 풍경 인쇄·TV광고 및 기업 홍보용 영상물 제작	편당 25만불	'98. 2.18
미홍식품 산업사	북한 수산물 채취·가공·양식 및 판매	47만불	'98. 3.13
국제옥수수재단	신품종 옥수수개발 및 공동 농업연구	220만불	'98. 6.18
두레마을영농조합	합작농장 경영 및 계약재배	200만불	'98. 7.27
태영수산/ LG상사	가리비 양식 생산 및 부대사업	65만불	'98. 8.28
코리아랜드	북한부동산 개발(임대·분양) 및 컨설팅업	60만불	'98. 8.28
(주)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산업	금강산 관광사업(금강산 관광, 관광선 운항, 관광기반 및 편의시설 설치·운영, 관광상품 및 개발 및 판매)	9,5837만불	'98. 9. 7 (변경: '99.1.15)
백산실업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	81만불	'98.10.28
현대전자산업, 한국통신, 온세통신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1단계:온정리~장전간 통신선로 매설, 제3국경유 남북간 통신망 구축 및 운영)	13만불 (1단계)	'98.11.12

한국전력공사의 경수로 건설지원사업은 KEDO라는 국제적인 기구를 매개로 진행되고 있으나, 장기간 남북간의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를 수반하게 되는 협력사업으로 KEDO와 북한간에 합의된 각 분야별 의정서 및 절차규정은 남북교류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선례로 원용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가지고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방한 나진·선봉지대의

투자여건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 등 16개기업이 나진·선봉지대내의 사업 추진을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

(3)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장애요인

남북경제협력사업은 투자규모·투자분야·투자업체 등이 꾸준히 확대되면서도 몇 가지 장애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남북당국차원에서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 분쟁해결절차 및 청산계정 설치에 관한 합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이 무엇보다 큰 장애요인이다. 대북투자에 대한 제도적 보장장치의 미비는 투자규모의 증대 및 투자기업의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남북간 직교역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직접계약, 직접수송, 직접통신이 어려운 것도 경제협력사업 활성화의 장애요인이다. 대북사업 추진과정에서 중개수수료, 수송비용, 통신비용 등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투자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남포간 해상운임은 한·중 해상운임의 2배에 이른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비, 설비의 노후화, 운영시스템의 비효율, 현지 기술자 상주와 기술지도의 어려움, 노무관리의 제약, 투자지역의 한정, 불명확한 외국인투자법규 등 북한의 열악한 투자여건도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나.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협력의 추진:두만강개발계획(TRADP)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은 1991년 3월 두만강지역개발, 석탄사용·대기오염 감소,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사용, 온대지역 식량증산을 동북아지역 4대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두만강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1991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정부원조조정관회의」(MAC; Meeting of Government Aid Coordinators)에서 정부차원의「계획관리위원회」(PMC; Programme Management Committee)를 구성하고,「두만강지역 개발계획」(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의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두만강개발계획의 목표는 두만강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운송 중심지 및 가공·제조업 중심지로 개발하여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협력의 거점을

마련하는데 있다. 동 개발계획에는 UNDP의 주관하에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회원국으로, 일본·핀란드·캐나다 등이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으며, 두만강유역의 3개권역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다. 나진-훈춘-포시에트로 연결되는 소삼각 지역(1,000㎢)을 두만강경제구역(TREZ; Tumen River Economic Zone)으로, 청진-연길-블라디보스톡으로 연결되는 대삼각지역(10,000㎢)을 두만강경제개발지역(TREDA;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으로, 두만강지역개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동북아 내륙 전지역을 동북아지역개발지구(NEARDA; North East Asia Regional Development Area)로 설정하고 있다.

두만강개발계획은 사업계획 확정을 위한 투자 전단계와 사업의 본격 시행단계의 2단계로 구분·추진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비상설기구로 PMC를 구성·운영하고, 분야별로 실무그룹(WG; Working Group)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그 동안 PMC는 6차례의 회의를 통해「점진적 조화방식」을 개발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5개국위원회(Commission), 접경 3개국위원회(Committee),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두만강개발계획」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 경제협력 추진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제6차 PMC회의('95.12.4~7, 뉴욕)에서「두만강경제개발지역 및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협의위원회(Commission) 설립협정」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4월「한·UNDP 신탁기금」에 100만불을 출연하고, 1997년 9월 북한 등 회원국에 투자촉진·사업지원센터 지원, 두만강유역 공무원 훈련 프로그램 등 5개사업에 80만불을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TRADP를 지원하기 위한 UNDP·한국국가사업(ROK Country Program)으로 현재까지 3개의 사업에 약 97만불을 출연하여「TRADP에 대한 분야별 평가」('94.7 완료) 및「두만강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상업은행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97.7 완료)를 추진해 왔으며,「백두산 관광자원 개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3. 교통·통신협력

남북한간 교통통신 분야의 협력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회담 대표단이나 당국간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방문단의 판문점을 통한 왕래, 임시로 지정된 해로나 육로를 통한 물자운송, 경수로사업 등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적인 교통 통신망 연결이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그러나 대북 경수로건설 사업의 본격적 추진, 금강산 관광사업의 진전 등 남북협력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되면서 남북간의 교통통신 분야의 협력도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가. 교통협력

(1) 해상운송

(가) 남북한간 선박운행

1988년 10월 「대북경제개방조치」로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래, 1993년말까지 남북한간에 운송된 5억불 상당의 물자는 모두 외국의 선박에 의해 운송되었다.

남북간에 운행되는 선박들은 남한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공해상을, 북한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북한당국의 직운항 거부에 따라 제3국을 거쳐 운행되었다.

남북한간에 운행되는 선박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1994년 6월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통일원고시 제94-1호, 1994.6.20)를 제정하여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가 시행된 1994년 7월 1일 이후 남북한간에 운행된 선박과 남북한간의 물동량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남북한간 연도별 선박운행 현황

(단위 : 회)

구 분	'94년 7~12	'95년	'96년	'97년	'98년
남한→북한	27	99	101	113	260
북한→남한	70	208	221	244	342
총 계	97	307	322	357	602

남북한간 연도별 물동량 수송현황

단위 : 톤

구 분	'94년 7~12	'95년	'96년	'97년	'98년
남한→북한	6,758	281,220	147,888	361,282	396,111
북한→남한	131,136	345,778	187,610	249,759	162,220
총 계	137,894	626,998	335,498	611,041	558,331

1995년 한국이 북한에 지원한 쌀 15만톤을 모두 국적선으로 수송하게 되면서, 남북간 해상운송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1995년 6월 25일 씨아펙스호가 동해항을 출항한 이래 10월 9일 마지막 쌀수송선 코렉스 부산호가 청진항을 출발할 때까지, 국내 9개선사 18척의 선박이 총28회에 걸쳐 남북한 항로에 취항하고 연간 400명의 선원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1997년에는 남북 적십자간 합의에 따라 한국의 대북지원물자를 국적선을 이용하여 수송하였고, 같은해 8월, 대북경수로사업이 착공되면서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된 통행의정서에 의해 우리 국적선이 경수로사업 물자를 수송하였다.

한편, (주)동용해운은 1997년 10월 5일부터 부산~나진간을, (주)한성선박은 1998년부터 8월 인천~남포간을 제3국적선을 용선하여 월3회씩 운항하고 있다.

1998년에는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이 첫 출항한 이래, 「현대금강호」와 「현대 봉래호」가 총 23항차(1998.12.31 현재) 운행되었다. 또한 장전항 부두공사 건설인력 등을 수송하기 위해 (주)대아고속해운이 속초-장전간에 「오션플라워호」를 10항차 운행하기도 하였다.

(나) 속초-나진-훈춘간 해륙교통로 개설 추진

한국과 중국은 1993년에 한국의 속초와 중국의 방천간에 카훼리항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인 두만강하구 대신에 북한의 나진항을 이용하여 속초-나진-훈춘간 중계수송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1995년 북한의 나진·선봉행정경제위원회와 중국의

훈춘시간에 중계수송을 위한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1997년 1월 31일 중국정부가 훈춘의 권하(圈河) 통상구를 임시1급 통상구로 승격시키면서 남북한과 중국간에 해륙교통로의 개설을 위한 협의가 시작되었다. 북한 당국은 한국-중국간, 중국-북한간에 분리된 합의에 의한 교통로 개설을, 한국은 3국 정부간 공동 합의에 의해 교통로 개설을 주장하였다.

1997년 11월 13일부터 이틀간 UNDP의 주선으로 북경에서 국장급 실무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여객의 신변안전보장 등에 관한 남북한 당국간의 이견으로 타결을 보지는 못하였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3당사국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의한 여객 신변안전보장, 통신수단의 연결, 돌발사태 및 분쟁해결을 위한 「민관공동협의회」 구성·운영을 제의하였고, 여객의 차별없는 초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 북한은 당국간에는 항로개설 등에 관한 원칙에만 합의하고, 여객의 신변안전은 당사국의 법에 의해 보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자간의 상업적 계약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1998년에 들어 한국은 해로개설에 관한 우리측 합의서안을 작성하여 두만사무국을 통해 북한과 중국정부에 전달하였고, 두만사무국은 「두만강개발지구 및 동북아개발을 위한 협의위원회의 설립협정」 틀내에서 3국 정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당사국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있다.

(2) 육상교통로 연결·복원 모색

(가) 남북한간 철도연결 추진

남북한간에 끊어진 철도는 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북부선 등이다. 정부는 1983년에 경의선 철도의 실시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남북한간 철도연결을 위한 기초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북한과 합의하였으며, 1992년에 작성한 제7차 사회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남북교류협력부문계획에도 남북한 교통·통신망 연결·확충의 추진이 포함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남북한간에 교통·통신망 연결·복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우선 우리측 미연결 구간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한간

철도의 미연결 구간과 우리측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남북한 철도 미연결구간 및 사업추진현황

구 분		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북부선
미연결 구간	남측	◦문산-장단(12.0㎞)	◦신탄리-월정(16.2㎞)	◦철원-금곡(24.5㎞)	◦강릉-군사분계선 (124.5㎞)
	북측	◦장단-봉동(8.0㎞)	◦월정-평강(14.8㎞)	◦금곡-기성(50.8㎞)	◦군사분계선-구읍리(8.0㎞)
사업비 (추정)	남측	◦463억원	◦571억원	◦854억원	◦9,171억원
	북측	◦208억원 (용지비 제외)	◦393억원 (용지비 제외)	◦1,439억원 (용지비 제외)	◦539억원 (용지비 제외)
	합계	◦671억원	◦964억원	◦2,293원	◦9,710억원
사업기간		◦19개월	◦24개월	◦19개월	◦최소 7년
추진현황		◦실시설계('85.1~3) ◦임진강교량하부보강 ('86.10~'87.7) ◦용지매입완료('98.4)	◦실시설계('91.7~12)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94.8) ◦실시설계 승인('96.4) ◦편입용지 매입위탁 협약 체결('96.12)	◦현지조사 및 실시 측량('91.7~12) ◦기본설계('97.11~'98.10)	

(나) 국제협력을 통한 육상교통로 연결 모색

1991년 4월 제47차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ESCAP) 총회에서 한국은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간 아시아북부철도의 연결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을 제안하였고, 1992년 4월 제48차 ESCAP 총회에서 「아시아북부철도망 타당성조사」 추진이 결정되었다.

타당성 조사결과 1) 남한-북한-중국-카자흐스탄-러시아-유럽, 2) 남한-북한-러시아-유럽, 3) 북한(나진)-러시아-유럽, 4) 중국(연운항)-카자흐스탄-러시아-유럽, 5) 중국-몽골-유럽, 6) 러시아-유럽 등 6개의 아시아북부 횡단 노선이 제시되었다.

1995년 10월 ESCAP 정책담당자회의에서 노선별 대안노선의 운행시간, 요금, 서비스 등의 실질적 여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

며, 1996년 4월 제52차 ESCAP 총회에서는 「수도와 수도의 연결」 및 「주요 국제교통로에 대한 방해받지 않은 접근」을 아시아북부 육상교통망 사업(ALTID)의 추진원칙으로 정하였다.

또한 1997년 4월부터는 아시아북부 횡단철도 「컨테이너 수송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컨테이너 수송시범사업은 1단계에서는 1997년 5월에서 1998년 12월까지 운행시간, 요금, 서비스 등에 관한 조사사업을 하고, 1999년 이후에는 실제 운행을 준비하기 위한 2단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한 철도연결을 통해 중국횡단철도(TCR) 또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로 연결되는 대륙연결 육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구상에 따라, ESCAP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북부노선 철도망 연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FIR) 통과항공로 개설추진

1987년 5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서울과 평양 상공을 동시에 통과하는 일-중 직선항로(동경-서울-평양-북경)를 북한에 제의하였다. ICAO의 제의에 반대하던 북한은 1991년 10월 17일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서울과 평양의 상공을 각기 통과하는 일-중 직선항로안을 수락한다는 입장을 ICAO에 전달해 왔다.

1994년 12월에는 북한민영항공기총국 김요웅국장이 ICAO 창립 5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북한영공 개방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1995년에는 10월 11부터 14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미·러 극동지역 항로회의에 남북한과 미, 러, 일 등이 참석하였으며, 북한은 여기서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하는 새로운 국제항공노선의 개설을 제안하였다. ICAO는 북한, 미국, 러시아 등의 요청에 따라 블라디보스톡 FIR-평양 FIR-대구 FIR을 통과하는 국제노선 개설을 제의하였으며, 1996년 1월에 북한과 협의를 위해 ICAO담당관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북한의 김요웅 민항총국장은 1996년 1월 ICAO 방북단 면담시,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 민간항공기에 대해 영공을 개방한다는 무차별원칙을 확인하고, 상기 사실을 확인하는 합의서 채택이 가능하지만 남북한간 직접 합의는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ICAO를 중개로 한 간접 합의방식으로 체결하기를

희망하였다.

1996년 4월 19일 한국은 새로운 항공로 개설과 관련하여 ①항로개설에 관한 남북한간 양해각서는 ICAO를 통한 간접체결 가능, ②모든 국가의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차별 통과허용, ③대구-평양 항로관제소간 관제협정 체결 및 직통관제통신절차 설치 등 정부입장을 ICAO를 통해 전달하였다.

1996년 5월 20~24일간 미국의 앵커리지에서 열린 제6차 미·러 항로회의에서 남북한은 한국 국적기의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통과항로의 이용보장, 대구~평양 항로관제소간의 관제협정 및 직통관제통신전화의 설치·운영 등 항로개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하였고, 관제협정 체결방식외에는 ICAO의 제의에 따라 1996년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된 남북한간 협의를 통해 일부 기술적인 사항을 제외한 여타 사항이 합의되었다. 항로는 대구/평양 FIR를 통과하는 북미주~서울항로와 평양 FIR를 통과하는 일~중항로를 개설키로 하고, 한국의 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나라의 항공기에 대해 무차별 개방을 보장하고, 시카코협약에 따른 승객·승무원·화물·항공기에 대한 안전보장, 비상시 수색 및 구조·사고조사의 협조, 불시착시 승객 등의 지체 없는 송환보장 등 항공기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나, 대구/평양 FIR를 통과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의 핵심사항인 대구~평양 항로관제소간 관제통신망 구성방식에 대하여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1997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된 후속회의에서 한국은 남북한 항로관제소간에 최소한 2개 이상의 관제통신망 구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양해각서의 통신망을 복수제로 변경하는데 합의하였다. 1997년 10월 7일에서 9일간 방콕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대구~평양 항로관제소간 관제통신망의 주회선은 「판문점 경유 직통유선전화」로 하고, 보조회선은 「ASIASATⅡ 인공위성 이용 남북한 직접연결 통신망」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 통과 항공서비스 노선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에 가서명하고, 「대구 항로관제소와 평양 항로관제소간의 관제협정」에는 대구와 평양의 항로관제소장을 대신하여 양측의 수석대표가 서명하였다.

관제협정에 따라 1997년 11월 19일 판문점 경유 남북한 직통 관제통신망이 개설되었고, 1998년 2월 17일 인공위성(ASIASATⅡ)을 이용한 보조

회선이 구성되었다. 또 3월 1일부터 6일까지 대한항공, 델타항공사 등 6개 항공사가 개설될 항공로의 시험비행을 실시한 후, 4월 23일 항공로가 정식으로 개설되어 월 180여편의 항공기가 이용하고 있다.

나. 통신협력

(1) 통신망 연결추진

남북한간의 통신망은 분단이후 줄곧 단절되었다가 1971년 9월 22일 남북적십자회담 준비를 위하여 처음으로 한국의 「자유의 집」과 북한의 「판문각」간에 직통전화 회선이 연결되었다. 현재 남북한간에 직접 연결된 전화는 29회선이다.

남북한간의 통신망은 주로 남북한 당국간 회담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나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서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망 개설이 확대되고 있다.

1997년 8월 4일 체결된 「경수로사업 이행을 위한 통신관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북한간의 의정서」(이하 「통신의정서」)에 의해 경수로사업 지원을 위한 통신망이 일본 KDD를 경유하여 서울~신포간에 개통되었다. 전용선 방식으로 모두 8회선이 구성되었는데 4회선은 업무용으로 나머지 4회선은 공중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남북한간 제3국경유 간접연결 전화 현황

용 도	구 간	회선수	연결시기
◦KEDO 경수로사업용	◦한국~일본KDD~인텔셀~평양~신포	8회선	'97. 8. 4
◦금강산 관광지원	◦한국~일본IDC~인텔셀~평양~원산~온정~장전	6회선	'98.11.17
합 계		14회선	

남북한간 직접연결 전화 현황

용 도	구 간	회선수	연결시기
◦ 남북적십자간 직통전화	◦ 서울~평양	2회선	'71. 9.22
◦ 남북조절위원회	◦ 남북조절위원장간	1회선	'72. 7. 4
◦ 남북회담	◦ 서울~평양	18회선	'72. 8.26
◦ 남북경제회담	◦ 서울~평양	1회선	'84.12.21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남북 직통전화	◦ 남북적십자회담연락사무소간	2회선	'71. 9.22
	◦ 남북연락사무소간	2회선	'92. 5.18
◦ 남북한 관제통신망	◦ 대구-평양항로관제소(판문점경유)	2회선	'97.11.19
	◦ 대구-평양항로관제소(위성통신)	1회선	'98. 2.17
합 계		29회선	

또한 1998년 10월에는 남북간 관제협정에 따라 대구항로관제소(ACC)와 평양항로관제소(ACC)간에 관제통신망이 연결되었다. 남북관제통신망의 주회선은 1997년 11월 19일에 2회선이, 보조회선은 1998년 2월 17일 1회선이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다.

1998년 금강산관광사업이 추진되면서 10월 19일 현대전자산업(주)와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간에 「통신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은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다. 1단계 사업은 온정리-장전간 통신선로를 매설하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간에 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6회선이 연결되었다. 2단계 사업은 북한내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남북간 통신회선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1999년초에 시행할 예정이며, 제3단계 사업은 금강산 관광지역내에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는 장기사업이다.

(2) 우편교류의 추진

남북한간에는 1945년부터 1950년 6월 22일까지 165회에 걸쳐 280여만통의 우편물이 교환되었으나, 6·25 전쟁으로 중단된 이래 1998년 현재까

지 우편교류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만국우편연합(UPU) 회원국 169개국중 유일하게 남북한 상호간에만 우편물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4년 9월 6일 제21차 UPU 서울총회 전체회의에서 「한반도에서의 우편교류에 관한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나, 북측의 거부로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 북경을 경유한 국제우편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북경수로사업을 위해 신포에 파견된 한국근로자들의 국내와의 서신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제4절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1. 학 술

학술분야는 사회문화분야 중 비교적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북한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신청 및 승인 건수에 비해 접촉횟수는 저조한 편이다.

남북간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교류가 대부분이다. 분단이후 1998년 12월 현재까지 학술교류를 위한 남북 직접왕래는 총4건이 성사되었다.

학술분야 남북한 왕래현황

행 사 명	기간/장소	주 최	비 고
o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	91.11.25~29 서울	o서울세미나실행위원회(남)	o 북한 여성계 인사의 (15명) 최초남한방문
o 평양 동북아 경제포럼	92.4.28~5.4, 평양	o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북) o 동아시아경제연구원(미) o 일본실행 위원회(일)	o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구상안에 대한 토론 및 시찰
o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세미나	92.9.1~6, 평양	o 평양세미나 실행 위원회	o 남한 여성계 인사의 (30명)최초 북한 방문
o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국제토론회	93.11.6~9, 평양	o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대책 위원회(북)	o 종군위안부 피해 보상문제 협의

가. 한국학

한국학분야에서의 남북교류는 남북한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한국학 연구학자들이 한국어·한국사·한국사상 등에서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종합학술회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o 제3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 ('90.8.2~5, 오사까)	o 오사까 경법대 아세아연구소 o 북경대 조선문화연구소	o 남한: 145 o 북한: 11	o 북한학자 160여명 참석 예정이었으나 11명만 참석
o 구주한국학회 제15차 학술회의 ('91.3.22~26, 프랑스 듀르당)	o 구주한국학회	o 남한: 15 o 북한: 3	o 북한은 제13차 런던 회의('89)부터 참가
o 고려학 소장학자 학술토론회 ('91.7.29~31, 연길시)	o 국제고려학회, 길림성 사회과학원	o 남한: 75 o 북한: 12	o 조국의 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 학술토론회 제의
o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 ('91.8.12~14, 연변대학)	o 연변대학	o 남한: 45 o 북한: 3	o 남북한 어문학 교류 및 독립운동사 연구제의
o 제4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 ('94.8.20~22, 북경)	o 북경대 조선문화연구소 o 오사까 경법대 아세아연구소	o 남한: 90 o 북한: 23	o 국제고려학회 가입 문제 등 논의
o 통일을 지향하는 철학 학술회의 ('94.2.20~23, 북경)	o 국제고려학회	o 남한: 10 o 북한: 4	o 통일에 이바지하는 철학과 종교에 대한 논의
o 코리아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학술회의 ('96.8.19~20, 북경)	o 숭실대 사회과학연구원 o 국제고려학회 아세아분회	o 남한: 12 o 북한: 12	o 언어, 문학, 법학 철학, 역사, 경제, 사회복지, 지역개발등 8개분과 논문발표

나. 역사학

역사분야에서는 고대사 학술회의, 만주일원의 고구려유적 공동답사, 러시아일원의 발해유적발굴 등 다양한 형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o 아시아사학회 창립총회 ('90.3.15~18, 일본)	o 아시아사학회 창립위원회	o 남한: 3 o 북한: 2	o 남·북한, 일본, 중국이 참가하는 아시아사학회 창립
o 제2차 아시아사학회 ('91.5.20~28, 길림성)	o 길림성고고연구소 o 길림성사회과학학회	o 남한: 16 o 북한: 2	o 고구려유적 공동답사
o 동북아 조선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세미나 ('93.4.15~17, 연변 대학)	o 경희대 아시아·태평양지역 연구소 o 연변대 동북아 정치연구소	o 남한: 11 o 북한: 4	o 언어, 풍속 등 민족문화관련 학술토의
o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발굴 ('93.4.15~17, 연변 대학)	o 대륙연구소 o 러시아 극동연사연구소	o 남한: 3 o 북한: 5	o 러시아 발해유적 발굴
o 고구려문화 국제학술회의 ('93.8.11~14, 접안시)	o 연변대 중국조선족연구회	o 남한: 7 o 북한: 5	o 무용총 등 집안 일대 고구려유적 답사 및 학술회의
o 동아시아 역사연구 국제학술회의 ('94.8.1~5, 상해)	o 재단법인 천원, 한국신학연구소 o 상해 사범대학	o 남한: 10 o 북한: 5	o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아세아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
o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원시, 고대문명의 재검토 학술회의('95.8.4~6, 오사까)	o 오사까 경법대	o 남한: 10 o 북한: 4	o 고조선사 연구발표
o 고구려 고분벽화 ('97.7.20~21, 동경)	o 고구려연구회 o 일본 학습원대학 동화문화연구소 o 재일본조선역사고고학회	o 남한: 12 o 조총련: 9	o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토의

다. 경제학

경제분야는 동북아지역 경제권 형성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은 경제분야의 각종 학술회의 개최를 나진·선봉지역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o 제3차 동북아경제공동체 국제심포지움 ('90.10.9~12, 북경)	o 국민대 중국문제연구소 o 중국 아·태경제연구소	o 남한: 5 o 북한: 3	o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관한 논의
o 동북아지역 경제발전과 협력 회의 ('91.1.28~2.1, 장춘·연길)	o 길림대학	o 남한: 13 o 북한: 8	o 동북아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연구성과 교류등 협의
o 동북아 경제협력 민간협회 창립총회 ('91.7.17~19, 북경)	o 동북아경제공동체추진연구회	o 남한: 1 o 북한: 2	o 동북아경제협력 민간협회 총본부 서울유치 등 협의
o 동북아 경제기술발전 국제연찬회 ('91.8.29~31, 장춘)	o 중국 아·태연구회 o 유엔개발계획(UNDP) o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o 남한: 19 o 북한: 3	o 두만강유역 동북아 경제 기술발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
o 동북아 국제협력 세미나 ('91.8.27~9.1, 심양)	o 요녕성	o 남한: 21 o 북한: 4	o 동북아 지역간 경제협력방안 토의
o 환동해경제권 국제 심포지움 ('91.11.22, 오사까)	o 아사히신문사	o 남한: 1 o 북한: 2	o 남북한, 일본, 소련, 중국의 경제교류 협의 및 두만강개발계획 논의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o 동북아 경제협력 국제 학술회의 ('92.2.3~5, 삿뽀르)	o 일본국립고등연구원(NIRA) o 북태평양지역연구센터(NPRARC)	o 남한: 2 o 북한: 2	o 동북아 경제협력 문제 논의
o 동북아지역개발 비교 연구 국제학술회의 ('92.7.10~12, 연변)	o 연변대 동북아경제연구소	o 남한: 21 o 북한: 5	o 동회의의 연례개최 및 관계자료 교환 협의
o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포럼 ('92.8.25~28, 블라디보스톡)	o 하와이 아·태연구소 o 블라디보스톡 해양연구소	o 남한: 10 o 북한: 4	o 자유무역지대 설치 및 두만강유역 개발 등
o 동북아 경제협력 민간협회 제2차 전체이사회 ('93.4.18~20, 천진)	o 동북아 경제협력 민간협회	o 남한: 3 o 북한: 3	o 황해 및 발해지역 자원공동개발 o 나진, 청진, 선봉항 개발 o 연구과제 채택 o 제3차 이사회 평양 개최 제의
o 동북아지역 경제발전과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94.7.16~25, 연길)	o 길림대학	o 남한: 6 o 북한: 4	o 두만강개발현황 논의
o 21세기 동북아지역 국가간 협력방안의 전망 학술회의 ('94.8.18~19, 심양)	o 경희대 아·태연구소 o 요녕대학	o 남한: 8 o 북한: 5	o 동북아 국가간 경제협력 방안 논의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o 21세기 동북아 국제학술 회의 ('95.7.18~21, 심양)	o 경희대 아·태연구소 o 요녕대학	o 남한: 7 o 북한: 5	o 21세기 동북아의 경제 발전과 도덕성에 대하여 논의
o 니이가타 동북아시아 경제회의 ('96.2.7~9, 니이가타)	o 니이가타현 o 환일본해 경제연구소 o UN	o 남한: 10 o 북한: 5	o 동북아시아 경제교류 문제 논의
o 발해만 경제협력의 전망 학술회의 ('96.5.8~12, 심양)	o 사회과학원 o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 요녕대학	o 남한: 12 o 북한: 6	o 동북아 경제협력 논의 및 산업시찰

라. 통일문제

통일문제분야의 학술교류는 한반도 평화유지 방안 등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과 주변국 관계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학술회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o 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화·평화·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90.9.4~6,블라디보스톡)	o 소련과학아카데미	o남한: 3 o북한: 5	o 아세아태평양지역 정치·경제 문제 논의
o 동북아 안보회의 ('91.3.23~25, 북경)	o 조지아공대전략연구소, 중국세계관찰연구소	o남한: 3 o북한: 3	o 남북한 경제협력 및 한반도 안보문제토의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o 동북아시아 국제회의 ('91.5.27~29, 동경)	o 요미우리신문사, 죠지 워싱턴대학 중소연구소	o남한: 3 o북한: 4	o 군축문제 논의
o 제7회 한반도통일문제에 관한 국제학술심포지움 ('91.5.31~6.2,동경)	o 환태평양연구소, 아사히신문사	o남한: 3 o북한: 4	o 군축문제 논의
o 제1차 북한·미국 학술회의 ('91.6.3~7, 하와이)	o 하와이대 한국연구소	o남한: 3 o북한: 3	o 군축문제 논의
o 제8회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국제학술 심포지움 ('92.5.17~18, 동경)	o 환태평양연구소 o 아사히신문사	o남한: 11 o북한: 3	o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연례적 국제학술 심포지움
o 북태평양 안보협력회의 ('92.5.22~23, 오타와)	o 캐나다 평화안보연구소	o남한: 2 o북한: 2	o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비통제 및 신뢰구축 문제 논의
o 하와이 6개국 국제학술회의 ('92.6.23~25, 하와이)	o Pacific Forum o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o남한: 2 o북한: 3	o 한반도 통일문제 논의
o '92 상해 유엔군축회의 ('92.8.17~19, 상해)	o UN 군축국	o남한: 3 o북한: 2	o 화학무기 군축 및 다자간 안보협력 논의
o 제2차 한반도 통일문제 심포지움 ('93.4.16~17, 버클리대학)	o 버클리대 한인학생회	o남한: 5 o북한: 4	o 핵·군축 등 남북통일 문제 토론
o 제1차 동아시아 차세대 정치인 회의 ('94.8.3~8, 쿠알라룸푸르)	o 말레이지아 국민전선	o남한: 7 o북한: 4	o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번영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o 남·북한 및 해외한인 학자 통일학술회의 ('95.7.31~8.1, 북경)	o 서울대한국정치연구소 o 북한사회정치학회	o남한: 16 o북한: 6	o 한반도 통일의 3대 원칙, 통일의 방식, 남북한 화해·협력 등 논의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o 제5차 한반도 통일문제 심포지움 ('96.4.19~22, 버클리대학)	o 버클리대 한인학생회	o 남한: 3 o 북한: 3	o 통일방안, 평화협정, 남북대화 및 교류논의
o '96 조국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토론회 ('96.8.5~6, 런던)	o 한반도통일연구회	o 남한: 4 o 북한: 3	o 통일문제에 대한 남북한 및 해외 교포들의 의견발표
o 통일을 위한 남북 해외학자 학술회의 ('96.9.13~15, 북경)	o 한국통일학술포럼 o 북한사회정치학회	o 남한: 21 o 북한: 9	o 정치화해, 평화체제 및 군사문제, 경제사회 교류 및 협력 등 논의
o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위한 모임 ('97.6.30~7.1, 북경)	o 남북신뢰회복추진협의회 o 북한민족문제연구소	o 남한: 13 o 북한: 8	o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위한 문제 토의
o 남북 해외학자 통일회의 ('97.8.29~30, 북경)	o 한국통일학술포럼 o 북한사회정치학학회	o 남한: 15 o 북한: 11	o 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
o 제4차 세계청년학생 평화세미나 ('97.9.13~17, 북경)	o 세계평화청년연합 o 대학원리연구회	o 남한: 167 o 북한: 85	o 21세기 평화와 통일을 향한 청년의 역할
o 남북 평화와 화합을 위한 모임 ('98.2.20~21. 북경)	o 한국통일포럼 o 북한사회정치학회	o 남한: 17 o 북한: 7	o 남북 화해·협력의 새시대 모색

마. 과학기술

과학기술분야는 북한측도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 학술회의 등에 비교적 다수의 인원을 참석시키고 있다.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o 현대물리학 국제워크샵 ('90.7.16~18, 북경)	o 연변대학	o 남한: 18 o 북한: 5	o 물리학분야 학술교류
o 제11차 세계 자동제어 연맹총회 ('90.8.13~16, 소련)	o 세계 자동제어연맹	o 남한: 2 o 북한: 3	o 자동제어분야 학술교류
o 제6차 동해 및 동지나해 해양학술회의 ('91.4.22~27, 후쿠오카)	o 일본 구주대학	o 남한: 25 o 북한: 3	o 해양학분야 학술교류
o '91 국제과학기술 학술대회 ('91.8.19~24, 연길시)	o 조선족과학자협회 o 연변과학기술협회	o 남한: 87 o 북한: 45	o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공동협의체 구성 o '92 국제과학기술 학술대회 평양개최 등 제의
o '91 전자·정보·통신 국제학술대회 ('91.8.21~23, 연길시)	o 연변대학	o 남한: 44 o 북한: 10	o '92 전자·정보·통신 국제학술회의 평양개최 등 제의
o '94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 ('94.8.5~10, 연길시)	o 국어정보학회 o 연변과학기술협회	o 남한: 24 o 북한: 25	o 한글정보처리에 관한 학술발표 및 관련기기 전시
o '95 전자·정보·통신 국제학술회의 ('95.8.7~12, 연길시)	o 대한전자공학회 o 연변과학기술협회	o 남한: 72 o 북한: 10	o 전자·정보·통신 분야 학술논문 발표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o '95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 ('95.9.14~16, 연길시)	o 국어정보학회 o 북한과학기술총동맹 o 연변과학기술협회	o 남한 :35 o 북한 :20	o 컴퓨터를 이용한 우리말 정보처리 논의
o '96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 ('96.8.12~14, 연길시)	o 국어정보학회 o 북한과학기술총동맹 o 연변과학기술협회	o 남한: 28 o 북한: 10	o 정보처리 용어, 자판 배치, 자모순, 부호계 등의 분과에서 남북한 사용권고안 채택

바. 언 어

언어분야는 남북한 언어이질화와 관련하여 남북학자들 간에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주로 한국학 관련 학술회의의 언어분과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언어이질화 문제를 주제로 하는 회의도 개최되고 있다.

1991년 6월부터 1992년 6월간에는 서울대 이현복 교수와 북한 혜산사범대 로길용 교수가 폴란드 바르샤바대학에서「남북한 언어비교연구」라는 최초의 남북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1996년 8월 장춘에서 개최된 한국어 언어학자 국제학술회의에서는 국립국어연구원과 북한국어사정위원회 관계자들이 향후 어문규범을 개정할 때에는 지금보다 더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는데 합의하기도 하였다.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o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학술회의 ('93.8.28~31, 북경)	o 국제고려학회	o남한: 10 o북한: 7	o 언어, 철학분야 한국학 학술회의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o KOREAN 규범문제와 관련한 국제학술토론회 ('95.8.3~4, 연길)	o 연변대학	o 남한: 10 o 북한: 4	o 한국어 언어규범 논의
o 한국어 언어학자 국제 학술회의 ('96.8.5~7, 장춘)	o 국립국어연구원 o 북한국어사정위원회 o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	o 남한: 5 o 북한: 6	o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에 대한 남북어문규범 논의

2. 문화·예술

초기에는 당국간 합의에 의한 남북왕래 행사가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1993년이후에는 제3국에서의 남북공동행사 개최나 개별적인 북한방문의 형태로 교류가 추진되어왔다. 「리틀엔젤스예술단」평양공연 이후 우리 문화예술계의 남북교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1998년 들어 문화예술분야 남북교류협력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가. 음악·미술

음악분야에서는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의 범민족통일음악회(1990.10.14~10.24, 평양), 평양민족음악단의 송년통일전통음악회(1990.12.8~12.13, 서울)를 비롯하여「리틀엔젤스예술단」평양공연(1998.5),「윤이상통일음악회」(1998.10, 평양) 등이 성사되어 다른 장르보다 비교적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1985년 제1차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시에는 우리 대중연예인들이 평양에서 공연하기도 하였으며, 1992년 8월에는 MBC 예술단과 대중가요 가수들이 사할린에서 동포위문행사인「통일예술제」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미술분야에서는 남북 직접왕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중국·일본 등 제3국에서「남북코리아서화전」(1991.5, 북경),「코리아통일미술전」(1993.10, 동경·오오사카),「남북평화미술전」(1997.10, 동경) 등의 남북미술작품 전시회가 성사되었다. 최근에는 물자교역 차원에서 북한미술

작품의 반입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강산 미술기행(1998.8)이 성사되는 등 남북미술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한 접촉도 시도되고 있다.

나. 연극・영화・사진

연극분야에서도 우리 극단의 공연에 북한주민을 초청하려는 시도가 여러차례 있었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1991년 북경에서 개최된「아세아 전통연극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최초의 남북연극인 접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영화분야에서는 최초의 남북영화교류라 할 수 있는 1990년 10월의「뉴욕남북영화제」를 계기로 대종필름, 김호선영화, 다남흥업, 성일시네마트 등의 영화제작사들이 미주지역 교포 영화인들을 통해 남북영화교류를 모색해 왔다.

「임꺽정」(김호선영화),「장길산」(대종필름) 등의 남북합작영화 제작, 백두산・금강산 기록영화 제작, 남북만화공동제작, 제37회 아・태영화제 북한초청 등이 시도되었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사진분야에서는「남・북한, 중국 사진전」(1994.9, 연길),「1997국제한민족 사진세미나 및 사진전」(1997.7, 연길),「남북 공동사진작품전」(1998.5, 서울) 등이 성사되어 비교적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다. 민 속

1991년 8월 사할린에서 남북합동으로「'91남북통일전통미용문화풍속제」가 개최되어 진도북춤・농악 등이 공연되었으며, 한국부인회는 북한에 남북토속음식경진대회를 제의하기도 하였다. 남북전통공예자료 교환(전통공예기능보존협의회), 남북한 수공예품 교환전시(여성신문사), 어촌민속 공동조사(부산수산대), 통일민속예술제(남북문화예술교류재단) 등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남북한 왕래 문화예술 교류현황

행 사 명	내 용
평양범민족 통일음악회	o 기 간 : 1990. 10. 14 ~ 24(10박 11일) o 장 소 : 2.8 문화회관, 동평양대극장 o 방 북 자 :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대표 황병기 등 17명 o 공연내용 : 평시조『마음이 지척이면』등 16개 곡목
'90송년통일 전통음악회	o 기 간 : 1990. 12. 8 ~ 13(5박 6일) o 장 소 :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o 방 문 자 : 평양민족음악단 단장 성동춘 등 33명 o 공연내용 : 옥류금 독주『도라지』등 20여 곡목
리틀엔젤스 예술단평양공연	o 기 간 : 1998. 5. 2 ~ 12(10박 11일) o 장 소 : 봉화예술극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o 공연회수 : 3회 o 방 문 자 :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박보희 등 66명 o 공연내용 : 한국전통무용, 한국가곡, 세계민요 등
윤이상 통일음악회	o 기 간 : 1998. 10. 31 ~ 11. 7(7박 8일) o 장 소 : 모란봉극장, 윤이상음악당 o 방 북 자 :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무총장 최학래 등 14명 o 공연내용 :「그네」등 18개 곡목

제3국 개최 문화예술교류 현황

행 사 명	내 용
뉴욕 남북영화제	o 기 간 : 1990. 10. 10~14 o 장 소 : 뉴 욕 o 참 가 : 남측 31명, 북측 8명 o 내 용 : 남북한 영화 각 7편 시사회 개최
환동해국제 예 술 제	o 기 간 : 1991. 5. 2~5 o 장 소 : 쓰루가 o 참 가 : 남측 52명, 북측 60명 o 내 용 : 중앙국립관현악단과 평양음악무용단의 합동공연

행 사 명	내 용
남북코리아 서 화 전	o 기 간 : 1991. 5. 27 ~ 29 o 장 소 : 북 경 o 참 가 : 남측 28명, 북측 10명 o 내 용 : 남북작품 49점, 북한작품 27점 합동전시
'91남북통일 전통미용 풍속제	o 기 간 : 1991. 8. 17 ~ 18 o 장 소 : 사할린 o 참 가 : 남측 120명, 북측 80명 o 내 용 : 농악·진도북춤 등 전통예술 합동공연
'92통일예술축제	o 기 간 : 1992. 8. 16 o 장 소 : 사할린 o 참 가 : 남측 78명, 북측 42명 o 내 용 : 남한의 대중가요와 북한의 전통예술단 합동공연
코 리 아 통일미술전	o 기 간 : 1993. 10. 12 ~ 24 o 장 소 : 동경, 오오사카 o 참 가 : 남측 16명, 북측 3명 o 내 용 : 미술작품 101점 전시(남37점, 북30점, 조총련34점)
코리아나 사진전	o 기 간 : 1994. 9. 26 ~ 30 o 장 소 : 연 길 o 참 가 : 남측 5명, 북측 3명 o 내 용 : 사진작품 216점 전시 (남85점, 북85점, 조선족동포46점)
남북평화 미술전	o 기 간 : 1997. 10. 29 ~ 11. 3 o 장 소 : 동 경 o 참 가 : 남측 25명, 북측 6명 o 내 용 : 미술작품 210점 전시(남150점, 북60점)
제4회 아·태 지구분재 전시회	o 기 간 : 1997. 11. 1 ~ 2 o 장 소 : 상 해 o 참 가 : 남측 3명, 북측 4명 o 내 용 : 전시회, 심포지움, 창작실습 및 시범

3. 종 교

남북 종교교류는 1980년대말 이후 남북 종교인간 접촉이 늘어나면서 시작되었다. 1998년 12월말 현재 주로 제3국에서 개최된 남북종교인회의 등을 통해서 94건 727명의 남북종교인 접촉이 이루어졌다. 또한 북한교회 실태파악 및 예배·미사집전 등을 위한 개신교교계 및 천주교계 인사의 북한방문 18건(60명)이 성사되기도 하였다

종교교류현황

(89.6.12~98.12.31) 단위:건(명)

구 분	신 청	승 인	불 허	성 사
북한주민접촉	298(1,374)	245(1,233)	53(141)	94(727)
북 한 방 문	36(130)	29(103)	7(27)	18(60)

가. 개신교

남북 종교교류에 있어 선구적인 역할을 하여 온 개신교의 대북접촉은 세계교회협의회(W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가 주최한 남북 기독자 도쿄회의 채널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81년 6월 8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독교회협의회에서 채택된 공동결의문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이 교회의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고, 국내 사정을 감안하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토록 WCC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 첫번째 계기가 1984년 10월 29일 일본 도잔소에서 개최된 「동북아의 평화와 정의협의회」(일명 도잔소협의회)로서 세계 20개국에서 65명의 대표자가 참가하여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선언서(일명 도잔소 선언서)를 채택하였다. 도잔소협의회 이후 세계교회협의회의 주선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단과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단이 1986년 8월 2일 스위스 글리온에서 개최된 「남북교회평화통일협의회」(제1차 글리온회의)를 통해

최초의 공식적 만남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1988년 11월 제2차 글리온 회의 이래 최근의 1998년 3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통일과 나눔 남북교회협의회」에 이르기까지 연례적으로 제3국에서 종교인회의 등 참석을 통해 접촉이 이루어져 왔다. KNCC 등은 이와 같은 대북접촉을 통해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에서 사용할 공동기도문을 1989년이래 매년 조선기독교도연맹측과 합의해 오고 있으며 1997년이래 매년 남북교회 부활절 공동기도문도 합의해 오고 있다.

1991년 9월에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의 방북이 성사되어 남한 종교인의 북한방문이 최초로 이루어졌다. 1992년에는 KNCC 권호경 총무의 방북이, 1997년 9월에는 KNCC 김동완 총무의 방북이 성사되었다. 1998년 들어 5월과 10월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 대표단의 방북, KNCC등으로 구성된 한국교회 대표단의 방북이 5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성사되는 등 개신교계 인사의 방북이 증가하고 있다.

나. 천주교

천주교계는 1982년 12월 12일 「북한선교위원회」를 설립하고, 바티칸 라인을 통해 장익 신부가 1989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비동맹특별각료회의에 참석하는 등 북한당국과의 직접대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1991년 9월에는 「북한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함께 도라산 전망대에서 평화통일기원 미사를 드리면서 평화통일 기원미사 합동봉헌, 남북한 합동성지순례 등 「대북제의 5개항」을 발표하였다.

1995년 10월(10.27~11.2)에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서울대교구 장덕필 신부 등 7명이 「남북해외천주교인 뉴욕세미나」에서 조선천주교인협회 장재철 일행과 만나 「민족의 화해와 일치」라는 주제아래 「조국통일을 위한 천주교인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1997년 6월에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최창무 주교 등이 장재철 등 북한 천주교 관계자들과 북경에서 만나 「남북한천주교인세미나」를 개최하고, 남북한 천주교 신자의 상호방문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1998년 5월에는 최창무 주교 일행이 방북하여 평양의 장충성당에서 최주교의 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하였다.

1998년 8월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방북하여 평양 장충성당에서 8·15 성모승천대축일 기념미사를 봉헌하였으나, 일행중 문규현신부가 북한측이 주도한 8·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함으로써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다. 불 교

불교계는 1988년 11월 「남북불교도교류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남북교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1991년 10월 L.A 관음사에서 개최된 「조국통일기원 불교도 합동법회」에서 남북불교인들의 접촉이 최초로 성사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없이 남북불교교류의 필요성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1996년 4월에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신법타 회장이 금강산 신계사 복원문제 등을 협의할 목적으로 방북하였으며, 조계종단측에서는 1997년이래 조선불교도연맹측과 「부처님오신날 봉축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을 채택하여 남북의 사찰에서 동시에 봉독해 오고 있다.

라. 천도교·대종교

천도교는 1991년 10월 네팔에서 개최된 제4차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ACRP)」총회에 임윤길 교화관장이 천도교 대표로 참석함으로써 북한의 천도교 대표들과의 접촉이 최초로 이루어졌다. 1993년 10월에는 오익제 교령이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유미영 위원장과 북경에서 만나 남북 천도교 교류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으나, 1997년 8월 오익제 월북사건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또한 대종교는 1991년 3월 「어천절(3.15) 및 개천절(10.3) 제례 봉행 등 문제 협의」를 위해 대북접촉 승인을 받았으며, 1994년 4월 안호상 총전교가 북한의 유미영을 북경에서 만나 개천절 등 전례행사 공동개최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5년 4월 안호상 총전교 및 김선적 종무원장이 어천절(4.4)행사 참가 목적으로 북경을 경유하여 불법입북함으로써 물의를 빚은 이래 아직까지 별다른 남북교류 추진 움직임이 없다.

4. 체 육

남북간 직접 체육경기 교류는 1990년 10월「남북통일축구대회」서울-평양교환경기,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및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파견 등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1991년 8월 북한 유도선수 이창수의 망명을 구실로 북측이 기합의된 체육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이후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체육인 교류 역시 1993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7차 동아시아경기대회 협의회 총회에 KOC 명예총무 등 6명이 참석한 것을 끝으로 아직까지 남북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제3국을 통한 체육교류는 북한이 그동안 국제체육대회 참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으나 1995년의 세계군인체육대회(9월), 아시아야구연맹총회(9월), 1996년의 제26회 아틀란타올림픽(7월), 제5회 동아시아호프탁구대회(8월), 제19회 월리암죤스배국제농구대회(8월)에 참여하는 등 제3국에서의 남북 체육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1998년 들어 일본에서 개최된 제14회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중국 웬조우시에서 개최된 국제프로복싱대회(8.15) 및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3회 아시안게임(12월)에 참가하는 등 다소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가. 남북통일축구대회

남북한은 1990년 9월 28일 북경아시안게임 기간중 남북체육장관회담을 갖고 남북통일축구대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11일 평양의 5.1 경기장과 10월 23일 서울의 잠실주경기장을 오가며 축구경기를 치르게 되었다.

남북통일축구 대회

구 분	행 사 내 용
남북통일 축구대회 (평양경기)	o 기간 및 장소 : 1990.10.9~13(4박5일), 5·1경기장 o 방문단 규모 : 76명 - 선수단 : 이재명 단장 등 45명(임원 7, 남 20, 여 18) - 인솔단 : 정동성 체육부장관 등 11명 - 보도진 : 20명 o 방문경로 : 북경→평양(조선민항)→판문점→서울(육로) o 경기결과 : 북측 승리(2:1)
남북통일 축구대회 (서울경기)	o 기간 및 장소 : 1990.10.21~25(4박5일), 잠실주경기장 o 방문단 규모 : 78명 - 선수단 : 이한복 단장 등 45명(임원 7, 남 20, 여 18) - 인솔단 : 김유순 조선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등 11명 - 보도진 : 22명 o 방문경로 : 판문점 경유 o 경기결과 : 남측 승리(1:0)

나.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남과 북은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를 계기로, 점차 고조된 남북체육교류의 열망을 수렴하여 1990년 11월 29일부터 1991년 2월 12일까지 4차례의 남북체육회담을 통해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1963년 동경올림픽 단일팀 참가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체육회담을 개최한 이래 단일팀 구성에 관한 최초의 결실이었다.

정부는 1991년 3월 16일 대한탁구협회 회장을 협력사업자로 하여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 및 참가를 협력사업으로 승인하

고 우리 선수단의 합동훈련 등 경비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였다.

남북단일팀은 1991년 4월 일본의 지바현에서 개최된 이 대회에서 우승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최초의 남북간 협력사업이기도 하였다.

< 탁구 남북단일팀 구성관련 주요 합의사항 >

o 선수선발(출전선수)
- 남측 : 남자 6명, 여자 5명(11명)
- 북측 : 남자 6명, 여자 5명(11명)

o 선수훈련
- 장소 : 일 본
- 기간 : 1991. 3. 26 ~ 4. 23
- 방법 : 합동훈련

o 선수단 구성
- 단장 : 북 측
- 인원 : 남북 각 28명(총 56명)

o 소요경비 : 선수훈련 및 대회기간중 소요되는 제경비는 남북 합동부담

o 필요장비 문제
- 단복은 북측, 운동복 일체는 남측 준비
- 개인지참 용구(탁구라켓 등)는 남북 각각 확보
- 공동사용 용구는 공동구입

다.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남북한은 1990년에서 1991년까지의 남북체육회담을 통해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포르투칼, 리스본)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1991년 2월 2차에 걸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수선발 등 단일팀 구성・참가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정부는 1991년 4월 30일 제1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를 협력사업으로 승인하였다.

또한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구성을 위한 서울·평양 평가전을 비롯한 강화훈련과 대회참가에 이르기까지의 2개월간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였다.

남북단일팀은 한달여의 합동훈련 후 대회에 출전, 8강에 진출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 남북단일팀 구성관련 주요 합의사항 >

o 선수선발
- 방법 : 평가전(2회 개최)
- 인원 : 18명(남측 9, 북측 9)
- 선발전 일시 : 제1차 1991.5.4(토) 서울, 제2차 1991.5.8(수) 평양

o 선수강화훈련
- 장소 및 기간
  - 평 양 훈련 : 1991. 5. 10 ~ 14
  - 서 울 훈련 : 1991. 5. 16 ~ 20
  - 프랑스 훈련 : 1991. 5. 22 ~ 26(남북쌍방 추후 합의)
  - 뜰 롱 국제대회 참가 : 1991. 5. 27 ~ 6. 4(남북쌍방 추후 합의)
  - 포르투갈 강화훈련 : 1991. 6. 6 ~ 13
- 훈련인원 : 72명(남측 36, 북측 36)

o 선수단 구성
- 단 장 : 남 측
- 부단장 : 북 측
- 인 원 : 남북 각 31명(62명)

o 소요경비 부담
- 평가전 및 훈련 기간중 제반편의는 장소를 제공하는 측에서, 대회현지에서 소요되는 제경비는 남북이 공동으로 부담

o 결단식 및 해단식
- 결단식 : 서울(강화훈련 직후)
- 해단식 : 평양(대회귀환 직후)

o 기 타
- 단복은 북측, 운동복 및 운동용품은 남측에서 준비
- 평가전 트레이닝복과 경기복은 장소 제공측에서 준비

주 요 일 정

구 분	성 사 내 용	주 요 일 정
서 울 평가전	o 방 문 자 : 리명성 등 70명 o 방문기간 : 1991. 5. 6 ~ 9 o 방문경로 : 평양→판문점→서울 o 경기일시 및 장소 : 5.8(수), 15:00~17:00, 잠실주경기장	o 북측 선수단 서울 도착(5.6) o 1차 평가전(5. 7) o 북측 선수단 평양 귀환(5. 9)
평 양 평가전 및 강화훈련	o 방 문 자 : 오완건 등 70명 o 방문기간 : 1991. 5. 10 ~ 16 o 방문경로 : 서울→판문점→평양 o 경기일시 및 장소 : 5.12(일), 15:00~17:00, 5.1경기장	o 우리측 선수단 평양 이동(5.10) o 2차 평가전(5.12) o 우리측 선수단 일부(35명) 서울 귀환(5.13)
서 울 강 화 훈 련	o 방 문 자 : 리명성 등 72명 o 방문기간 : 1991. 5. 17 ~ 21 o 방문경로 : 평양→판문점→서울 o 훈련장소 : 잠실경기장	o 서울 강화훈련진행(5.17~20) o 코리아축구팀 결단식 및 리스본 향발(5.21) o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출전(5.22~6.26)
평 양 해단식 참 가	o 방 문 자 : 장충식 등 33명(추가 2명 포함) o 방문기간 : 1991. 6. 21 ~ 7. 10 o 방문경로 : 서울→판문점→평양	o 평양 귀환 및 해단식 개최(6.28) o 우리측 선수단 서울 귀환 및 환영식 개최(6.29)

5. 언론·방송·출판

1980년이래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언론교류 제의는 여러차례 이루어져 왔으며, 민간 방송사(KBS, MBC 등) 수준의 제의도 수 차례 있었으나 이에 따른 구체적 성과는 없었다.

최근 북한은 제한된 지역과 범위내에서나마 취재를 일부 허용하고 있으며, 개별 언론사 및 독립 프로덕션 수준의 북한 자연경관 촬영, 문화유적 답사 등이 있다.

출판분야의 교류는 북한의 고전 번역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1992년 9월 17일 발효된 부속합의서 제2장 9조 5항은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남북한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책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출판분야 교류에는 뚜렷한 진전이 없다.

가. 언 론

지금까지 신문·잡지 등 언론분야 북한주민접촉신청은 주로 제3국 또는 북한에서의 인터뷰 및 현지취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1997년말 중앙일보의 북한방문을 시작으로 북한의 문화유적 및 명승지 답사가 이루어졌고, 「로동신문」, 「통일신보」등 북한 언론기관과의 교류를 위한 주요 일간지 대표단의 방북도 이어졌다.

언론분야 북한방문 승인현황

(1998.12.31 현재)

신 청 자	방 북 목 적	방북기간(지역)
권영조(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등 4명	문화유적 답사 협의 및 현지답사	'97. 9.23~10. 4 (평양 등)
권영조(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등 5명	북한문화유적 답사 및 조사	'97.12.16~12.27 (평양, 개성, 구월산, 정방산 등)

신 청 자	방 북 목 적	방북기간(지역)
권영조(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등 6명	북한문화유적 답사	'98. 7. 7~ 7.21 (평양, 개성, 백두산, 금강산 등)
이정(경향신문사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 부소장) 등 5명	남북 문화정보화 사업 관련 실무협의 및 문화유적 답사	'98. 8. 4~ 8.11 (평양, 묘향산)
홍석현(중앙일보사장) 등 8명	남북한 언론 및 문화교류 협의	'98. 8.22~ 8.29 (평양, 금강산, 묘향산)
최규철(동아일보사 편집부국장) 등 5명	백두산·금강산 개발계획 취재, 언론교류 추진	'98. 8.27~ 9. 5 (평양, 백두산)
신준영(월간「말」기자)	남북출판교류사업 협의	'98.10.27~11. 3 (평양 등)
이정(경향신문사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 부소장) 등 5명	남북문화정보화사업 관련 실무협의 및 문화유적 답사	'98.10. 3~10.10 (평양 등)

나. 방 송

방송분야 남북교류는 이전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1998년부터 KBS, MBC, SBS 등 3대 방송사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이 방북한 방송인들에게 공개하는 지역은 평양, 개성, 백두산, 금강산 등 일부 관광지로만 한정되어 있고, 이들 지역에서의 촬영 역시 북한측이 안내하고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북한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일본을 통해 수입, 문화관광부의 수입추천을 받아 SBS에서 처음 방영(98.9.1)되었고 「임꺽정」(5부작)도 미국을 통해 들여와 9월에서 11월에 걸쳐 KBS에서 방영한 사례가 있다.

방송분야 북한방문 승인현황

(1998.12.31 현재)

신 청 자	방 북 목 적	방북기간(지역)
심현우(제일영상 대표)	민간차원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방송교류 협의	미성사
유홍렬(MBC 이사) 등 2명	금강산 촬영 등 TV프로그램 제작 협의 및 현지답사	97.10.25~11.1 (평양, 묘향산)
김승규(스포츠아트 대표) 등 4명	북한 역사유물 및 풍물기행 관련 방송영상물 제작	98.5.16~5.23 (평양, 묘향산)

협력사업에 대한 신청과 승인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프로그램 교환방영이나 공동제작, 아울러 본격적인 상호방송개방 등의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분야 협력사업(자) 승인현황

(1998.12.31 현재)

협력사업자	사 업 내 용	금 액	구 분
문화방송	북한의 자연경관 및 명승고적 등 TV 프로그램 촬영	60만불	협력사업자
스포츠 아트	북한 역사유물 및 풍물기행 관련 방송영상물 제작	60만불	협력사업 (동시승인)
우인방 커뮤니케이션	북한 명산·역사적 명승지 탐방 관련 방송다큐멘타리 및 방송광고 제작	미정	협력사업자

언론분야 협력사업(자) 승인현황

(19998.12.31. 현재)

협력사업자	사 업 내 용	금 액	구 분
중앙일보사 부설 통일문화연구소	북한문화유적 답사·조사	6만불	협력사업 (동시승인)
경향신문사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	남북문화 정보화 사업	3억 5천만원	협력사업자 협력사업

다. 출 판

정식 저작권계약에 의하여 북한의 서적이 반입·출판된 사례는 없으나, 민간차원에서 북한서적의 한국내 출판 및 판매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1년에는 한국의 여강출판사가 북한에서 완역한 「이조실록」의 반입·출판을 위해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와의 복제출판 권설정계약 체결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고려사』, 『팔만대장경해제』 등 북한에서 번역해놓은 고전을 CD-ROM 등으로 편집하여 내놓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미 통일교육원 북한자료센터 등을 통해 국내에 공개된 북한 조선작가동맹의 기관지인 「조선문학」에 게재된 시 15편을 시전문 계간지 「시안」에서 옮기기도 하였다.

북한에서도 한국의 앞선 과학·기술 정보를 얻기 위하여 도서교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6. 관 광

남북간의 관광교류는 1982년 2월 정부가 20개 시범사업의 하나로 설악산과 금강산을 자유관광지역으로 개발할 것을 북한에 제의하면서 가능성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1989년 1월 현대그룹과 북한측(대성은행)은 금강산 공동개발에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고, 한국관광공사, 관광사업자 등이 남북관광교류를 협의하기 위해 대북접촉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

1998년 6월에 들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측(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과 관광선에 의한 금강산 관광에 합의하면서 남북 관광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89년 6월이후 금강산 관광이 성사되기 전인 1998년 9월까지 관광교류 협의를 위한 북한주민 접촉은 155건이 신청되어 이중 147건이 승인되었으며, 41건이 성사되었다. 또한 금강산국제그룹도 북한측과 쾌속선에 의한 금강산 1일관광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 12월 31일 현재까지 남북왕래(방북) 현황은 관광객 10,554명, 기타 1,962명이다.

가.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1) 금강산 관광사업의 추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이 1998년 6월16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순, 이하 「아태」로 표기)와 금강산 관광문제를 협의하였고, 1998년 6월 22일 「금강산 관광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금강산 관광사업에 합의하였다.

현대는「아태」와 여러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신변안전보장문제」,「통신보장문제」,「공동해난구조문제」,「입북료문제」등에 합의함으로써 금강산 관광사업이 성사되게 되었다.

현대-북측간 주요 합의사항

일 자	명 칭	주 요 내 용	서 명 자
'98.6.22	의 정 서	o 금강산 관광 및 개발에 대한 기본합의 및 원칙	o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과 「아태」위원장 김용순
'98.6.22	합 의 서	o 「금강산관광개발추진위원회」구성 - 위원장: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o 현대그룹회장 정몽헌과 「아태」서기장 강종훈
'98.6.22	금강산관광을 위한 계약서	o 관광사업범위, 신변안전과 편의보장, 관광시기, 일정 등	"

일 자	명 칭	주 요 내 용	서 명 자
'98.7.6	금강산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	o 신변안전보장, 통신보장, 관광객의 방북절차, 분쟁해결, 관광선의 항로 등	o 현대그룹을 대표하여 김윤규와 「아태」를 대표하여 강종훈
'98.8.14	공동해난구조를 위한 합의서	o 비무장공동해난구조대 편성 및 공동해난구조를 위한 협의기구 설치	o 현대그룹을 대표하여 김윤규와 「아태」를 대표하여 강종훈
'98.8.14	기자재공급 계약서	o 편의시설에 필요한 기자재 인도방법 및 공급대금 지불방법	o 현대그룹 위임에 의하여 현대건설 김윤규와 「아태」위임에 의하여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총사장 방종삼
'98.8.15	합영계약서	o 합영회사 설립·운영	o 현대그룹의 위임에 의하여 김윤규와 「아태」의 위임에 의하여 방종삼
'98.8.15	부두시설 설치·운영·공급계약서	o 현대측의 부담으로 부두시설을 설치하여 30년간 운영한후 북측에 이전	o 현대상선을 대표하여 김윤규와 「아태」를 대표하여 강종훈
'98.9. 2	금강산 현지 관광요금에관한부속합의서	o 4박5일기준 관광객 1인당 입북료 300불 지급	o 현대상선을 대표하여 김윤규 대리인과 「아태」를 대표하여 강종훈 대리 황철
'98.10.16	긴급정황처리에 관한부속 합의서	o 부상자 및 사망자, 체류(잔류) 희망자, 잠입·밀항자 발생시 처리방법 등	o 현대그룹을 대표하여 김보식과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를 대표하여 방종삼

일 자	명 칭	주 요 내 용	서 명 자
'98.10.19	금강산관광 통신(1단계) 보장을 위한 합의서	o 장전항에서 전화통신 보장 - 현재 6회선 구성·운영	o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를 대표하여 책임지도원 김계사, 김응섭, 류상과 현대전자를 대표하여 부사장 박항구
'98.10.21	합 의 서	o 선박의 입·출항과 화물의 검사	o 현대를 대표하여 이사 정봉두와 금강산국제 관광총회사 최윤길
'98.10.21	합 의 서	o 금강산 입출국 절차	o 현대를 대표하여 이사 김보식과 금강산국제 관광총회사 최윤길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 8월 6일 현대 3사(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산업)를 협력사업자로 승인한 후 1998년 9월 7일 금강산 관광사업을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승인하였다.

협력사업(자) 승인현황

기 업	사업내용	투자규모	북측회사	투자지역
현대상선/현대건설/금강개발산업	금강산 관광사업	95,826천불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금강산지구

현대는 동해여객터미날 및 장전항 임시부두를 설치하고, 1998년 11월 14일 시험운항을 실시하여 관광선 출항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하였다. 1998년 11월 18일 승객 826명을 태우고 관광선을 첫 출항시킨 이래, 1998년 12월말 현재까지 10,544명이 금강산을 관광하였으며, 현재 매주 3~4회 관광선을 운항하고 있다.

1999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장전항 부두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

며, 공연장, 식당, 매점, 주차장, 오락실 등 관광객 편의시설의 설치 공사, 관광시설 운영을 담당할 현지기업의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공사인원 1,800여명이 북한을 방문(1일 평균 400명 체류)하여 북한 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현황

항 차	관광기간	인원(명)	항 차	관광기간	인원(명)
1항차	'98.11.18 ~ 11.22	826	13항차	'98.12.12 ~ 12.15	504
2항차	'98.11.20 ~ 11.24	641	14항차	'98.12.14 ~ 12.17	210
3항차	'98.11.22 ~ 11.26	363	15항차	'98.12.16 ~ 12.19	474
4항차	'98.11.24 ~ 11.28	247	16항차	'98.12.18 ~ 12.21	280
5항차	'98.11.26 ~ 11.30	305	17항차	'98.12.19 ~ 12.22	516
6항차	'98.11.28 ~ 12. 2	199	18항차	'98.12.21 ~ 12.24	439
7항차	'98.11.30 ~ 12. 4	376	19항차	'98.12.23 ~ 12.26	782
8항차	'98.12. 4 ~ 12. 7	447	20항차	'98.12.25 ~ 12.28	396
9항차	'98.12. 5 ~ 12. 8	633	21항차	'98.12.26 ~ 12.29	566
10항차	'98.12. 7 ~ 12.10	311	22항차	'98.12.28 ~ 12.31	514
11항차	'98.12. 9 ~ 12.12	440	23항차	'98.12.30 ~ 1. 2	757
12항차	'98.12.11 ~ 12.14	328	계		10,554

정부도「금강산관광객등의북한방문절차에관한특례」,「북한지역관광을위한환전지침」,「남북한왕래자에대한출입심사지침」을 마련하여 관광객의 방북절차를 정비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였다.

(2) 개발사업으로의 확대

1998년 10월 29일 현대는 기존의 관광사업을 개발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아태」와「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현대는 북측으로부터 금강산 지역의 토지 및 시설물 이용권과 관광사업권을 단독으로 장기간 확보하여 호텔, 해수욕장 등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대가로 6년 3개월간 9억 4,200만불을 북측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대상 지역도 외금강 일부지역에서 내금강, 통천, 시중호 지역에까지 확대되었으며 관세면제, 반출입·송금의 자유보장 등 각종 특혜들을 확보하였다. 정부는 1999년 1월 15일 현대의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협력사업 변경 승인을 하였다.

주요 변경 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범위	o 관광선에 의한 금강산 관광사업	o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개발사업 추가 - 호텔, 해수욕장, 온천, 골프장, 스키장 등
권리내용	o 특별한 언급 없음	o 토지 및 시설물 이용권과 관광사업권은 장기간 현대측에게만 부여
대가지불	o 4박5일기준 관광객 1인당 300불 지급	o 2005년초까지 9억4천2백만불 지급
특혜조치	o 특혜조치 없음	o 관세면제, 반출입 및 송금의 자유보장, 시설물이용권 및 양도권보장 등
투자방식	o 합영(합영회사 설립)	o 단독투자(외국인기업 설립)
사업대상 지역	o 구룡연지구, 만물상지구, 삼일포 및 해금강지구	o 삼일포지구, 해금강 및 금강산 해변지구, 온정리지구, 성북리지구, 장전만지구, 내금강지구, 통천지구, 시중호지구 등

나. 금강산국제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금강산국제그룹도 북한과 쾌속선에 의한 금강산 1일 관광에 합의하고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승인을 유보한 상태이다.

제5절 대북 경수로 지원

1.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추진경위

가. 북한 핵문제의 대두

북한은 1985년 12월 핵비확산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NPT)에 가입하였으나, NPT가입후 18개월이내 의무사항인 IAEA안전조치협정의 체결을 거부해 오다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한 뒤인 1992년 1월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5월, 보유중인 핵시설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IAEA에 제출하였다.

IAEA가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6차에 걸쳐 실시한 임시사찰 결과, 북한이 주장한 방사화학실험실이 사실상 재처리시설이며,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과 IAEA의 추정치간에 중대한 불일치가 밝혀져 IAEA 이사회는 1993년 2월 북한의 특별사찰 수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1993년 3월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NPT를 탈퇴한다."고 선언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NPT복귀와 IAEA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요구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함에 따라, 핵비확산체제를 주도해 온 미국이 북한과 두차례 회담을 개최하여 북한의 NPT탈퇴 유보 및 핵문제 해결을 위해 IAEA와의 협의 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IAEA사찰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가 논의되었으며, 북한은 1994년 6월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IAEA를 탈퇴한다고 선언하면서 유엔제재가 취해질 경우 이를 곧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추진되고 한반도의 정세가 점차 급박해 지고 있는 가운데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1994년 6월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면담하였으며 김일성은 3단계 미·북회담 개최시 연료봉 재처리를 유보하고, 핵안전조치의 유지 및 경수로 도입시 흑연감속로 포기 용의를 확인하였다.

미국은 미·북 대화의 기초로 ① 5MWe 원자로 연료의 재장전 금지 ② 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 금지 ③ IAEA 안전조치의 계속성 유지를 제시하였

고, 북한이 이를 공식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 추진은 중단되었고, 3단계 미·북회담이 1994년 7월 8일 갈루치(R. Gallucci)대사와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을 수석대표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나 김일성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하루만에 중단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경수로 건설을 비롯한 북한의 평화적 에너지 개발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였다.

이후 1994년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개최된 미·북 3단계 회담은 10월 17일 마무리를 짓고 양측 정부의 승인을 받은후 1994년 10월 21일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본구도인 「제네바기본합의문」이 서명·발효되었다.

나. 미 · 북 제네바 합의

제네바 미·북 회담에서 채택된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의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대체
- o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 발전용량 약 2,000메가와트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
- o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동결에 따른 대체 에너지(연간 50만톤의 중유) 제공
- o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 접수 즉시 북한은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

②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 추구
- o 무역 및 투자제한을 완화시켜 나가는 조치 실시
- o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
- o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

③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
- o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을 공식 보장
- o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조치 실시
- o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

④ 양측은 국제적 핵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

- o 북한은 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
- o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 즉시, 동결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IAEA 간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반사찰 재개
- o 경수로 주요 핵심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IAEA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이행

이같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비록 북한의 과거 핵개발 활동이 규명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으나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핵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 한국표준형 경수로 지원 결정

미·북 제네바합의 서명후 6개월 이내에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한다는 제네바합의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1994년 11월부터 1995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경수로관련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북경과 베를린을 오가며 진행된 전문가회의에서 미국은 사모아(G. Samore) 국무부 핵비확산부과장이, 북한은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양측은 경수로 노형(爐型), 주계약자, 경수로 공급조건 등에 있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미국은 정치·재정·기술적인 이유로 한국표준형 원전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반면, 북한은 한국형 원자로가 북한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 역할을 할 것이므로 수락할 수 없고, 주계약자는 미국기업 주도의 합작회사가 되어야 하며, 핵연료 제조공장 및 송전망 개선 등을 공급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양측의 팽팽한 주장으로 공급협정 체결시한인 1995년 4월 2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은 미·북 준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미·북 준고위급회담은 허바드(T. Hubbard)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1995년 5월부터 6월까지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어 그동안 핵심쟁점이었던 경수로 노형과 주계약자 문제에 합의하였다. 경수로 노형은 “두개의 냉각재유로를 가진 1,000㎿e 발전용량의 가압형 경수로 2기”로 하되 주계약자 및 노형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

KEDO)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수로사업은 KEDO가 담당하며, KEDO-북한간 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

한편 쿠알라룸푸르 합의의 발표 당일, KEDO는 서울에서 집행이사회를 개최하고,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를 KEDO설립협정(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국표준형 경수로로 하고, 그 참조발전소는 울진 3·4호기로 할 것과, 주계약자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시작할 것을 결의하였다.

2. 경수로 지원사업 추진체계

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발족

정부는 1994년 11월 제17차 통일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구로서 통일원에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을 설치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 12월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 개정령이 공포·시행되었고, 운영규칙등 내부규정들이 마련되었다.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은 1995년 1월 통일원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단장과 통일원, 재정경제원, 외무부,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 등 관계부처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연구소등 관련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되어 출범하였다.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기구·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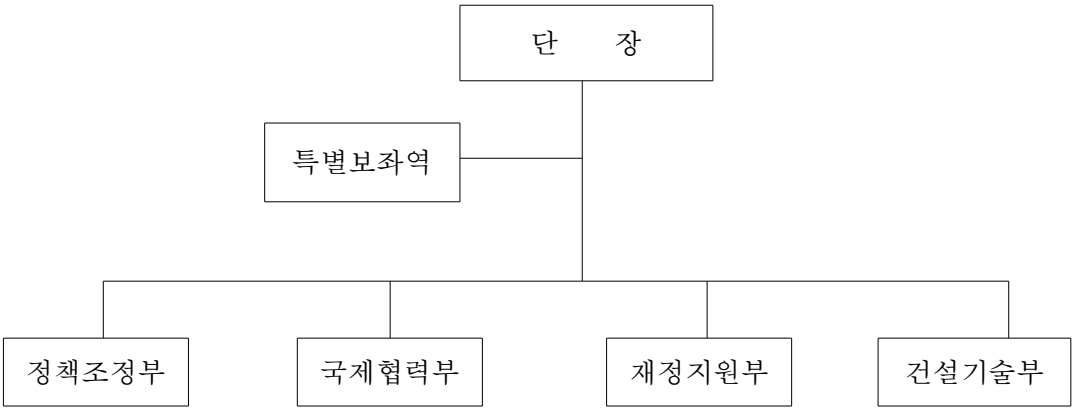

직 급	단 장 (차관급)	2·3급	4급	5급	6·7급	기능직	계	전문가
정 원	1	5	8	12	2	9	37	15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주요 임무는 경수로사업에 관한 기본대책 수립과 총괄조정, 경수로사업관련 대북조치 및 교류협력에 관한 계획수립, KEDO와 관련한 업무 및 그 구성국과의 교섭지원, 경수로사업에 관한 주요 협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계획 수립, 소요재원의 조달 및 상환계획과 단계별 자금소요계획 수립, 설계·기자재 제작 및 시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안전규제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이다.

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한국, 미국, 일본은 1995년 3월 대북 경수로 지원을 위해 국제콘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하였다. KEDO의 목적은 1,000MWe 용량의 한국표준형 원전 2기의 제공에 따른 재원조달과 공급, 1호기 완성시까지의 대체에너지 제공, 기타 제네바합의의 목적 수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는 것이다.

KEDO의 최고의사 결정기구는 「집행이사회」로서, 집행이사회는 원회원국인 한국, 미국, 일본과 1997년 9월 새로 가입한 EU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이 집행이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집행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전원합의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집행이사회를 보좌하며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행정기구로 사무국을 뉴욕에 설치하였으며, 북한 금호지구 경수로건설현장에 금호사무소를 두고 있다. 사무국은 경수로사업과 관련된 북한과의 각종 협상, 공사관련 계약·집행, 핵안전활동, 대북 중유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무국 직원은 집행이사국 출신의 직원들로 구성되고, 사무국 운영비는 한·미·일 3국이 각각 1/3씩 분담하고 있다.

KEDO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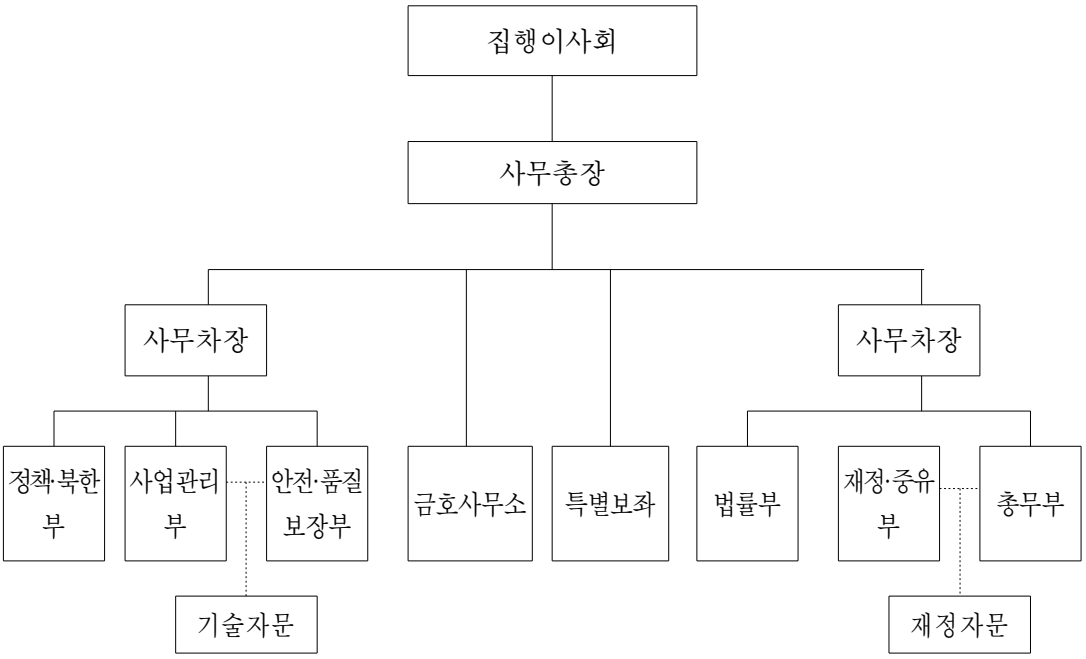

KEDO는 집행이사국인 한국·미국·일본·EU이외에 일반회원국으로 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칠레, 아르헨티나, 폴란드, 체코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KEDO는 1996년 3월 경수로 건설을 위해 일괄도급 방식(Turn-key Basis)으로 한국전력공사를 주계약자로 지정하였다.

KEDO는 경수로사업의 계약업무 지원 및 기술문제 자문을 위하여 기술자문(Technical Support Consultant : TSC)을 두고, 1996년 10월 미국의 Duke사와 TSC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북한도 경수로사업 추진 및 KEDO와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경수로대상사업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무성과 원자력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KEDO사업 추진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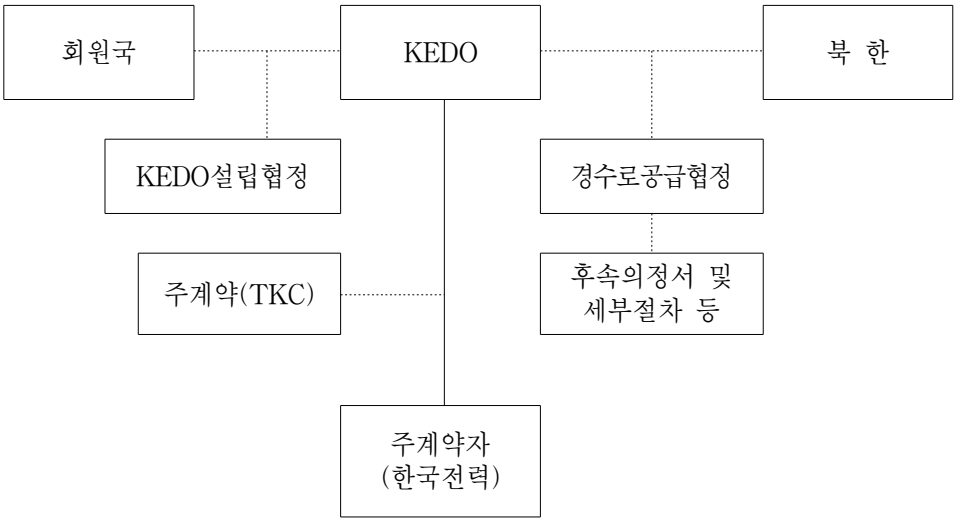

다. KEDO-북한간 사업추진 절차 협상

(1) 경수로공급협정

미국과 북한과의 1995년 6월의 쿠알라룸푸르 합의로 노형선정과 주계약자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이 마무리 되었다. 이에 따라 KEDO가 협상주체가 되어 북한과의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제1차 협상은 1995년 9월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2차 협상은 1995년 9월부터 12월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었다. KEDO측 수석대표는 보스워스(S. Bothworth) KEDO사무총장이, 북한은 허종 외교부 순회대사가 맡았다. 한국측은 KEDO사무국에 파견된 정부대표 2명이 KEDO측 대표로 참석하였다.

KEDO·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 협상에서도 북한은 송배전시설, 핵연료성형공장, 항만부두 시설 개선 등의 추가공급과 흑연감속로 기투자분 탕감 등을 요구하였으나, KEDO측은 통상적인 원전건설 관례와 참조발전소인 울진 3·4호기에 준하여 공급한다는 원칙을 견지한 한국측 입장을 반영하여 1995년 12월15일 뉴욕에서 최종 서명하였다. 경수로 공급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공급범위

o 두 개의 냉각재 유로를 가진 1,000MWe 용량의 가압경수로 2기 공급

o 노형은 KEDO가 선정하되, 미국의 원설계와 기술로부터 개발된 개량형으로서 현재 생산중인 것

② 상환조건

o 각 호기별로 3년거치 기간을 포함, 20년간 무이자로 연 2회 분할 상환

③ 인도일정

o 북한은 경수로 사업 진전에 따라 핵동결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관련시설을 해체

④ 이행구조

o KEDO는 경수로 사업을 수행할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와 상업공급계약 체결

⑤ 북한측 협조의무

o 사업참여자의 방해받지 않는 통행 및 효율적인 통행로(해·공로 등) 보장 등

(2) 후속의정서 협상 및 주요내용

경수로공급협정에서 KEDO와 북한은 공급협정의 세부사항들은 별도의 후속의정서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 KEDO와 북한은 경수로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10여개의 관련 의정서를 단계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1996년 4월부터 진행하였다.

특히 의정서 협상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수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관련부처와 기관에서 참여하였다.

공급협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의정서들의 협상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의정서 협상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의정서는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가 북한에 파견한 모든 인원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와 이들 인원에 대하여 확립된 국제관행에 따른 적절한 영사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1996년 4월부터 5월까지 KEDO와 북한간 협상이 뉴욕에서 개최되

어 7월 11일 서명·발효되었다.

KEDO측은 KEDO가 국제기구로서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면제 부여를 강조하면서 면제의 적용지역을 북한 전역에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고, KEDO 직원은 물론 KEDO계약자인 근로자들에게도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외교관과 동일한 특권·면제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KEDO를 주권국가나 국제기구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적용지역을 제한하여 경수로부지와 기타 연관지역으로 제한하고, KEDO를 주도하는 미국만 특권·면제가 허용되며 KEDO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특권·면제 부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대표단이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KEDO계약자 인원에 대한 광범위한 특권 및 면제를 보장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리고 KEDO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유사한 특권·면제를, KEDO직원과 회원국 정부대표는 외교관 수준의 특권·면제를 향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KEDO계약자인 경수로 근로자들은 KEDO직원의 특권·면제에 준하는 대우를 향유하여 북한의 체포·구금을 금지하고, 북한의 관습이나 정치적·사회적 의무를 강요받지 않으며, 어떠한 북한측 관할의 민사 및 형사재판과 증언으로부터 면제받도록 하였다. 영사보호 지역도 부지 뿐만 아니라 관련지역(항구, 공항, 통행로)과 연계지역(비상시 관계되는 지역)등 사실상 KEDO인원이 활동하는 모든 지역을 포함하게 되었다.

(나) 통행의정서 및 통신의정서 협상

통행의정서는 KEDO인원의 자유로운 출입절차와 효율적 통행로의 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1996년 4월부터 6월까지 뉴욕에서 협상되어 7월 11일 정식 서명·발효되었다.

항공로 분야에서 KEDO는 남북직항로를 포함한 모든 가능항로를 요구하였으며, 북한은 남북 직항로는 불가하며 북한-일본간 항로이용을 제의하였으나 북·일간 항로는 일본이 반대하였다. 결국, 사업초기에는 북경-선덕간 고려항공을 이용하되, 추가적인 항로는 기초굴착공사 개시 이전에 협의토록 합의하였다.

해상로분야에서 KEDO는 사람·물자가 모두 해상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바지선의 경우 연안 2~3마일 해로를 이용하며 소형선박의 경우는 바지선 해로를 이용하고 일반선박은 일정 지점을 통해 항구에 접근할 것을 제의하였다. 사용항만은 물양장 설치전에는 청진, 흥남, 나진, 선봉 등의 항만을 이용하며 물양장 설치 이후에는 양화항과 신포항을 이용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물자만 해상로 이용이 가능하며, 인원수송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바지선은 연안에서 30마일 해로를 이용하며, 소형선박 및 인원수송의 바지선해로 이용은 망원경 등을 통한 스파이 활동이 우려되므로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용항만도 초기에는 양화항만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협상결과, 해상로를 통한 KEDO인원 및 물자수송은 허용하되, 바지선로는 KEDO의 주장보다 거리가 먼 지점(동해기점 153마일)으로 하며 일반선박의 해로는 공로(동해기점 200마일)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사용항만은 양화항만을 이용하되 양화항의 이용이 불가능할 시 북한이 추가적인 항구를 지정하도록 합의하였다.

통신의정서 협상은 통행의정서 협상과 병행하여 개최되었다. 통신의정서는 KEDO인원의 사업부지 내외로의 효율적인 통신수단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1996년 7월 11일 정식 서명·발효되었다.

우편분야는 사업부지와의 문서수발 및 우편서비스를 보장하며 북한은 사업부지내 우편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세계우편협약에 따른 서신·소포 수발을 하도록 합의하였다.

통신분야에서 KEDO는 KEDO의 독자통신이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부지내 유·무선 통신이 가능토록 북한에 요구하였다. 북한은 KEDO측의 독자적 위성통신 보유는 곤란하며 남한과의 통신은 통신협정의 미체결로 제3국을 경유하여 연결이 가능하고 부지내에서는 첩보활동 우려로 유선만 사용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협상결과, KEDO의 독자적인 위성통신망은 부지착공후 24개월부터 설치·운영이 가능하며, 무선전화기는 사업부지내에서만 사용가능하다고 합의하였다.

(다) 부지의정서 및 서비스의정서 협상

부지의정서 및 서비스의정서 협상은 경수로사업 부지의 인수 및 접근과

사용에 관련한 구체적 사항과 북한이 제공하는 노무, 물자, 시설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6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2차례 개최되었다.

부지의정서 협상에서 KEDO측은 부지의 일괄인수 원칙과 향후 분쟁가능성 예방을 위해 부지인도증 내용의 사전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북한은 부지내 농경지 등의 이용을 위해 부지를 단계적으로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KEDO측은 북한의 간섭없이 부지사용의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고 공사기간중 변형된 지질의 원상복구 책임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측은 부지중 일부지역은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고 공사기간중 발생된 변형된 지질은 원상복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KEDO측의 입장이 반영되어 KEDO가 경수로 부지를 일괄 인수하여 KEDO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되 공사중 KEDO측이 사용하지 않는 부지는 북측의 경작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비스의정서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북한측 노무임금 문제였다. KEDO측은 경수로사업이 투자계약 성격이므로 나진·선봉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반해, 북한측은 북한 근로자의 임금은 모든 생활비용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상황에서의 임금이므로 자본주의 국가와는 상이하다고 주장하고, 해외취업인력 수준인 월 200~300불을 요구하였다. 또한 KEDO측은 북한인력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성과급 및 임금의 개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측은 개별임금 지급에는 강력히 반대하였다.

결국 임금기준에 대해서는 북한내 합영기업과 외국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임금을 고려하여 계산되며 생산성, 기술수준, 여타 관련요인에 따라 변동되도록 합의하였고, 북한측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1997년 KEDO-북한간 실무협상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되었다. 북한측 근로자의 임금은 비숙련공과 숙련공으로 구분하되 비숙련공의 임금은 간접비(보험료, 세금 등)를 포함하여 월 110불로 하고 중식 및 초과근무수당을 제공하고, 숙련공은 숙련정도 및 직종별 임금구조 등을 고려하여 46개 직종을 등급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월 138~220불 수준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서비스의정서에서는 부지굴착공사 기공식후 14개월 경과 또는 부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KEDO측 은행지점을 개설하여 수신, 환전, 송금 등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부지의정서 및 서비스의정서는 1996년 9월 가서명을 하였으나,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시인·사과를 요구하면서 동 의정서의 정식서명을 유보하였다. 1996년 12월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북한의 시인·사과가 있은 이후 정부가 1997년 1월 8일 정식서명함에 따라 발효되었다.

(라) 미지급시 조치의정서 협상

경수로공급협정에 따라 북한은 KEDO에 각 경수로발전소 완공후 3년 거치기간 포함 20년간 무이자로 연 2회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되어있다. 미지급시 조치의정서 협상은 북측이 이러한 상환의무 이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용될 벌칙금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7년 3월부터 5월까지 뉴욕에서 개최되어 6월 24일 서명·발효되었다.

KEDO측은 북한이 경수로 대금의 상환을 지연할 경우 적용되는 기준이자율을 KEDO가 실제 조달하는 비용개념으로 제시하고, 벌칙금은 유예기간 없이 기준이자율+3%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정치성을 고려해야 하며 국제적 상거래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상환지연시 1% 벌칙금만 지불하되, 일정기간후부터는 벌칙금을 2%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결국 북한이 KEDO측 입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미상환시 벌칙금리를 「KEDO측의 실제 조달비용 + 3%(또는 가능할 경우 2%)」로 합의하였고, 미상환 상태로 30일 경과후부터는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마) 품질보장의정서 협상

1997년 11월부터 KEDO와 북한은 「품질보장의정서」 협상을 시작하였다. 협상에서는 경수로 건설과정에서 수행하게 될 KEDO측의 품질보장 활동과 이에 대한 북한측의 참여범위, 완공된 발전소의 성능보장 조건 등이 주로 협의되었다.

의정서는 핵사고시 책임과 완공후의 전반적인 책임문제가 연결되어 있어 세차

례에 걸친 장기간의 협상(1차:'97.11.4~11 묘향산, 2차:'97.12.3~23 뉴욕, 3차:'98.8.10~27 뉴욕)에도 불구하고 일부 핵심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바) 훈련의정서 협상

경수로 발전소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북한 인력의 훈련계획을 규정하게 될 훈련의정서의 1차 협상이 1999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북한의 묘향산지역 향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협상에서는 훈련장소, 훈련생의 선발, 영사 보호문제, 북한내 훈련시설 제공범위 등이 논의되었다.

향후 협의할 잔여의정서는 다음과 같다.

미합의 의정서

의정서 명칭	체 결 목 적	근 거
인 도 일 정	북한의 핵동결 및 해제조치와 경수로 공급일정	공급협정 제3조 3항
상 환 조 건	경수로 발전소 건설대금의 상환 금액 및 조건	공급협정 제2조 4항
사용후 연료	사용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처리 및 제3국 이전에 관한 세부사항	공급협정 제8조 4항
핵안전 및 규제	경수로 발전소 완공후 정기 안전점검을 위한 절차와 일정	공급협정 제10조 5항
핵사고시 책임	핵사고시 보장장치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공급협정 제11조 2항

(3) 실무절차 협상

공급협정 및 후속의정서 협상과는 별도로 KEDO와 북한은 기합의된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규정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실무협상을 1997년 4월부터 3차례 진행하였다. 1차협상은 1997년 4월 북한의 신포 및 마전지역에서 개최되었고, 여기에는 경수로기획단, 통일원,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기관의 전문가 그리고 주계약자인 한전측 관계자

40여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1차 협상을 위해 KEDO대표단은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한나라호」(3,640톤)를 이용하여 강원도 동해항과 함경남도 양화항을 왕래하였다. 한나라호를 이용한 대표단 방북은 1996년 7월 발효된 통행의정서상의 해로를 이용한 첫번째 사례이다.

이후 2차협상은 1997년 5월부터 6월까지 북한의 묘향산 향산호텔에서, 3차협상은 1997년 6월부터 7월까지 뉴욕에서 속개되었고, 그 결과 7월 2일 19개 분야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합의하였다. 이로서 부지준비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

(가) 출입절차

- o 무사증원칙에 따라 KEDO 증명서를 사용하여 방북
  - 단, 지정된 출입지점(양화항 및 선덕공항) 이외의 지역으로 출입시에는 KEDO증명서에 사증취득 필요
- o KEDO 인원에 대한 체류수속은 1년 단위로 실시하되, 연장 요청시 자동연장
- o 부지, 여타작업구역 및 부지-숙소간 연결지역의 자유통행
- o 선덕공항 등 관련지역 여행시 24시간전 통보
  - 연계지역으로 여행시 KEDO측 요청에 의해 북측은 여행증명서 발급

(나) 통 관

- o 개인 수하물·휴대품 통관은 기계검사를 원칙으로 하여 통관편의 확보
  - 기계검사결과 금수품 휴대혐의가 제기되는 경우만 개장검사
- o 현금·유가증권 등의 제한없는 반출입
  - 1인당 미화 3천불 상당까지는 세관신고 면제
- o 화물통관은 보세구역 및 출입지점중 KEDO측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
- o 보세구역내 화물통관은 원칙적으로 통관검사 요청후 2일이내 실시

(다) 검 역

o 검역은 인원, 동·식물 및 가공품, 의약품, 컨테이너 및 포장재료, 수송수단을 대상으로 실시
  - 검역대상 병균 및 병해충은 국제기준 및 북한측 자체기준을 고려 규정
o KEDO인원은 필요한 예방접종 증명, 동·식물은 관련검역 증명을 소지
  - 예방접종 증명은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하며, 미소지 경우에도 KEDO측 의료시설에서 접종 가능
o 사안별 합의에 의해 식물종자 반입 가능
o 검역절차는 KEDO직원 입회하에 진행해야 하며 필요시 시료채취는 가능하되 인체는 대상에서 제외
o 식료품의 경우 변질문제 등을 고려하여, 검역은 통관절차와 동시진행
o KEDO측은 부지내의 위생·방역·전염병 방지 활동을 자체적으로 실시
o KEDO와 북한측은 질병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위해 상호협조하며 전염병 발생시 각각 자기측 인원에 대해 전염병 방지조치를 실시

(라) 해상수송

o KEDO 선박에 대한 안전항해 보장
o 선박운항 관련 통지절차 및 통신방법은 통행의정서 및 국제관례 준용
o 연안항로를 이용하는 소형선박은 3,000GT이하로 규정
o 입항관련 검사(C.I.Q)를 위한 북측 검사요원의 승선은 최대 14명 이하로 제한
o 부두 화물작업시 KEDO측에 최대 편의제공 및 작업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국제관례에 따라 보상
o 선박검사는 원칙적으로 선교, 기관실, 통신실, 보세창고등 공공구역만 실시
  - 통신장비는 도선구역에서부터 봉인 가능하나, 필요시 또는 항

구에 적절한 국제 통신시설 미비시 사용 가능
- 여객선·바지선은 도선구역-항구까지의 구간에서 항해장비를 계속 사용하며, 화물선만 항해장비 봉인

o 항만요금은 북한측이 외국선박에 적용하는 요금의 75% 수준 적용
* 선박톤세, 입항세 등 세금 성격의 요금은 면제

(마) 육상수송

o 등록 및 면허대상 장비는 수송장비로 한정(건설장비는 원칙적으로 제외)
o 건설장비를 제외한 수송장비에 대해서만 연1회 기술검사 실시
o 교통사고 발생시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의정서 규정에 따라 처리
- 사고에 대한 사실 확인은 KEDO 영사와 북측관계자 입회하에 실시
- 사고현장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가능

(바) 은행 서비스 및 비북한 은행 설립

o KEDO측 은행의 출장소 설립시까지 조선무역은행이 지점을 설치하여 경수로 사업관련 업무(예금, 송금, 환전 등) 수행
o 예금 비밀보장 및 예치금 등에 대한 보호의무 부과
o KEDO측이 대상은행을 선정한 후 출장소(지점) 설립을 요청하면 북한은 15일 이내에 동의해야 하며, 대상은행은 동의통지를 받은 즉시 영업 가능
- KEDO의 부지내 은행 설립에 대해서는 북한측의 은행관련 법령의 적용 배제
o KEDO은행 출장소는 지점과 같이 모든 은행업무 수행 가능
o 경수로사업관련 합영은행 설립시 북한측 당사자는 조선무역은행으로 합의

(사) 보험 서비스

o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은 KEDO측의 판단에 따라 북한측 보험회사(조선국제보험회사) 이용 가능

o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가입(보험증서 발행) 즉시 발생
o 사고시에는 KEDO영사직원의 참여하에 북한측 교통안전기관이 사실 확인
  - 다만, 부지내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감정원과 KEDO영사직원이 함께 사실확인
o 북측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KEDO 인원의 피해방지를 위한 특약조항 마련
  - 보험회사는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별도로 KEDO측에 손해보상 요구 불가
  - 피해자측에서 피보험자에게 추가적 보상청구 금지

(아) 항 공

o 북경-순안간 정기노선 이용 가능
o 북경-선덕 및 순안~선덕간 전세기 이용 가능
  - KEDO측 구매자와 북한이 합의하는 공정한 요금 적용
o 항공기 운항지연 및 계약취소시 책임이 있는 측이 보상
o 항공사고 발생시 배상은 북한측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정(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실시

(자) 통 신

o 부지-한국간 통신망은 중계국을 경유 구성
  - 부지와 한국간 전용회선은 부지공사 착수와 함께 개설·운영
o 통신망 고장시 북측 관계자의 입회하에 예비통신 장비 (INMARSAT 휴대전화 장비) 사용
o 통신요금은 동북아지역과 북미지역으로 구분, 각각 단일요금 적용
o 부지내 구내 교환설비 설치
  - 워키토키는 차량 또는 사무실에 설치 가능
o 위성 TV 수신은 착공과 동시 가능하며 설비는 KEDO가 독자적으로 운영

(차) 우 편

o 북한은 양해각서 발효 3주후부터 부지내 우체국 설치·운영

o 초기에는 북경을 통한 개낭 중계방식을 이용하되, 부지정지공사 착공후 14개월 또는 부지정지공사 완료중 선도래 시점에 폐낭중계로 전환

o 주소는 「Seoul Korea + 국내주소/KEDO Kumho + 북한주소」로 표기하며, 국내 및 북한주소는 한글 표기

o 우편요금은 미국 및 동북아지역으로 구분, 현금으로 지불

o 폐낭으로 전환시 북한과의 요금정산 및 분실·훼손시 보상은 만국우편연합(UPU) 조약 준용

(카) 노무, 물자, 시설 및 서비스 사용을 위한 일반원칙

o 개별계약은 KEDO와 북한측 관련기관을 경유하여 공급자와 직접 체결

o 사용자는 북한측 노동자 선정, 작업지시 등 노동력 관리권한 확보

o 미숙련근로자의 임금은 간접비를 포함한 기본임금 월 110불에 중식 및 초과근무수당 제공

o 적정한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하도급업자의 이행보증과 책임하에 북한측 기업에 대한 도급 가능

o 북한측의 물자공급시 공급자측의 품질보장, 운송책임, 이행보증, 신용장 개설 등의 계약 이행수단 확보

(타) 의 료

o KEDO 의료진 파견 및 부지내 자체 의료시설 운영

- 북한 의사, 간호원 채용,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응급치료 실시

o 함흥인민병원을 이용한 KEDO의료진의 KEDO환자 치료 및 북한의료진과 협진 가능

- 양측 의료진의 협의에 따라 필요시 함흥인민병원보다 시설·장비가 우수한 병원 사용 가능

o 북한 병원은 KEDO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KEDO측에 제공하고 의료사고시 협의처리

o 주계약자(한전)는 필요한 구급차를 반입·사용

o KEDO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환자를 북한밖으로 후송 가능

o 환자가족 방문·간병에 대한 북한측의 최대한 협조 보장

(파) 경제적 해상로

o 통행의정서상의 인원 및 물자수송 해로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해로로 교체

- 동해기점 200마일에서 182마일로 조정

o 향후 적절한 시점(500명 이상의 KEDO 인원이 파견되거나 착공 후 1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중 선도래 시점)에서 보다 경제적인 해로로 교체

라. 경수로사업 재원분담 협상

한·미·일 등 집행이사국들 재원분담 협상을 위해 우선 경수로 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KEDO는 1996년 한전에 용역을 의뢰하여 경수로사업의 개략사업비(Rough Order of Magnitude: ROM)를 1차로 산정케 하였고, KEDO는 그 결과를 집행이사국들에 통보하였다. 사업비 산정(1995년 12월 불변가, 환율 780원/$ 기준)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KEDO는 한전이 1차로 제출한 기준사업비외에 건설기간중 물가상승비와 북한의 특수성에 기인한 예비비(contingency)를 포함하여 경수로 사업수행에 관련된 총 소요비용 재산정을 한전에 요구하였다.

한전은 1997년 9월 총사업비를 재산정하여 KEDO에 제출하였고, 집행이사국들은 이를 기초로 최종 확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97년 11월 25일 최종 사업비 규모를 환율 1불당 925원을 적용하여 약 51.785억불로 합의하였다. 다만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KEDO가 추가 조달하여 한전에 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경수로 총사업비의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한·미·일·EU 등 집행이사국들은 재원분담 협의를 위한 집행이사회를 7차례 개최하였다.

1998년 7월 제7차 집행이사회에서 예상사업비 규모와 각국별 분담액수에 합의하였다. 예상사업비는 1997년 11월 합의한 51,785억불에서 IMF 위기관리체제 이후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반영하여 기준 환율을 1불당 1,100원으로 변경하여 46억불로 조정하였다. 각국별 분담규모는, 한국측은

실제공사비의 70%(46억불 기준으로 3조 5,420억원)를 기여하되 어려운 외환사정을 감안하여 원화로 기여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당초 1,000억엔을 기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종적으로 10억불 상당의 엔화를 기여하도록 하였다. EU는 KEDO가 필요로 하는 재원으로 사용되도록 KEDO 가입 당시 7,500만 ECU를 기여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중유비용 및 사용후 연료봉 처리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재원분담에 소극적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KEDO의 여타 소요자금에 대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KEDO집행이사국들이 기여하는 총액이 예상사업비 46억불에 미달될 경우, KEDO집행이사국들은 부족분 조달을 위해 노력하되, 특히 미국은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재원분담결의」가 1998년 8월31일 KEDO 집행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당일 북한이 로켓발사를 함에 따라 채택되지 못하고 1998년 11월 9일 정식 채택되었다.

3. 부지준비공사

가. 부지조사

KEDO는 경수로건설 예정지인 북한의 함경남도 금호지역에 대한 부지조사를 1995년 8월부터 실시하였다. 부지조사는 일차적으로 경수로건설 후보지가 발전소 부지로 적합한지를 조사하며, 나아가 발전소의 설계 및 건설의 인허가 취득을 위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8년 12월말 현재 8차례 진행되었으며, 3차 부지조사 이후에는 한전이 사업전용역(Pre-Project Service)의 일환으로 이를 수행하였다.

1997년 2월 KEDO는 6차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략적인 부지조사 보고서를 북한에 제출하였다. 동 결과에 의해 금호부지가 발전소 건설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북한은 1997년 7월 KEDO에 「부지인도증」을 발급하였다.

나. 착공준비

KEDO집행이사들 간의 재원분담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KEDO측은 재원

이 확보되기까지 우선적으로 부지준비공사를 추진하였다.

공사진행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우선 기합의된 해로를 통한 물자 및 인원 방북을 위해 1997년 7월 바지선의 시험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7월말에는 착공식 준비 및 초기공사를 위한 물자를 투입하였다. 또한 경수로 인원의 영사업무 지원과 KEDO사무국과의 업무연락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측 2명, 미국측 2명, 일본측 1명으로 구성된 KEDO금호사무소가 개설(7.28)되었다. 이어 8월에는 경수로 부지와 남한간의 통신(8회선)이 개통되었고, 중국을 경유한 우편서비스도 개시되었다.

이러한 준비작업을 거쳐 KEDO는 1997년 8월 19일 부지준비공사 착공식을 거행하였다.

다. 부지준비공사 착수

1997년 8월 19일 착공이후 한국측에서 불도저, 포크레인 등 건설 중장비 50여대와 건설기자재 3만 4천톤의 물량이 투입되었고, 한국측 건설인원 150여명이 상주하면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였다. 북한측 또한 기 합의에 따라 근로자 100여명을 제공하였다.

당초 부지준비공사는 약 1년간을 공사기간으로 책정하였으나 1998년 8월에는 재원분담 협상이 막바지 진행중에 있어 본공사 개시가 불가능함에 따라 부지준비공사 대금으로 확보한 4,500만불중 잔여분을 이용, 1998년 10월 15일까지 공사를 연장하여 후속공사를 진행하였다.

1차 연장공사가 1998년 10월 완료되었으나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로켓발사사건으로 인해 일본측이 재원분담결의안 서명을 보류함으로써 본공사의 착공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KEDO집행이사국들은 경수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1998년 10월 16일부터 1999년 1월 15일까지 3개월간 공급자신용방식(한전의 외상공사)으로 약 846만불 규모로 공사를 2차 연장하였다.

또한 2차 연장공사 완료후에도 각국의 재원분담 관련 절차 수행 및 주계약 체결의 지연으로 본공사 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1999년 1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5개월간 같은 방식으로 약 1,350만불 규모로 공사를 3차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총 부지정지물량의 약 30%를 완료하였고, 부지간 도로 개설 및 양화항과 부지간 도로보수와 함께 임시동력설비, 통신설비 등의 공사기반 시설도 마무리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숙소, 식당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위성수신장치를 통해 한국에서 방영하는 케이블 방송 및 위성방송 등 20개 채널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제6절 남북협력기금

1.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7·7 특별선언」에 따라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을 제정·시행한 이후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동 기금의 설치를 위한 법률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한편, 1989년 11월 제147회 정기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할 기금설치 문제가 거론되어 국회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정부는 1990년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법(안)」을 의결하고 1990년 7월 14일 제150회 임시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함께 「남북협력기금법」(법률 제4240호, 1990.8.1 공포)을 통과시켜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게 되었다.

2. 남북협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가. 조 성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정부출연금이며, 일부 민간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도 조성되고 있다. 또한 향후 대규모 수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기금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채권발행) 등으로 조성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금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1998

년 12월말 현재 정부출연금 5,350억원, 민간출연금 5억 4,300만원, 운용수익금 1,206억 7,100만원 등 총 6,562억 1,400만원이 조성되었다.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

(1998. 12. 31 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계
정부출연	25,000	40,000	40,000	40,000	240,000	100,000	50,000	-	535,000
민간출연	-	-	4	-	119	132	288	-	543
운용수익	237	5,118	4,777	9,387	14,589	18,410	27,873	40,280	120,671
계	25,237	45,118	44,781	49,387	254,708	118,542	78,161	40,280	656,214

나. 관리・운용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를 관장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고 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는 남북간 주민왕래지원,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 지원,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이다.

다. 집 행

초기에는 축구・탁구 등 체육분야 국제대회 단일팀 출전지원과 쌀 직교역의 손실보조 등 남북 공동사업 지원에 사용되었으나, 북한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 1994년에는 지원실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이 심화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는 북한에 대한 쌀 15만톤 무상지원 및 국제기구의 대북 식량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1998년 12월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지원실적은 대북 쌀 15만톤 무상지원 비용 1,854억원 등 15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3,02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다.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

('98.12.31 현재) (단위:백만원)

연 도	내 역	금 액
'91	o 세계 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지원	786
	o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지원	164
	o 쌀 직교역 손실보조(천지무역)	1,268
	소 계	2,218
'92	o 「8·15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 준비금 보전	551
	소 계	551
'95	o 대북 쌀 15만톤 지원	185,435
	소 계	185,435
'96	o 대북 기상장비 지원(WMO)	40
	o 유엔기구 제2차 대북지원사업 참여(WFP)	2,435
	o 대북 경수로사업 사전용역비 지원(KEDO)	4,882
	소 계	7,357
'97	o 유엔기구 제3차 대북지원사업 참여(WFP, UNDP 등)	24,597
	o 대북 탈수방지약공장 복구 지원(UNICEF)	304
	소 계	24,901
'98	o 대북 경수로사업 초기사업비 대출	67,523
	o 유엔기구 제4차 대북지원사업 참여	14,108
	o 남북공동사진전 소요경비 일부 지원	30
	o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비 지원	13
	소 계	81,674
합 계		302,136

* 한국수출입은행 위탁수수료 1,876백만원 별도 집행

라. 여유자금 운용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은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운용기준」에 따라 자금의 공공성,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국채·공채의 매입, 재정융자특별회계·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

1998년 12월말 현재 3,522억 200만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1,806억 1,900만원은 재정경제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였고, 나머지 1,715억 8,300만원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

제 5 장

대북지원 및 인도적문제 해결 노력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노력은 1970년대 남북대화시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추진되어 1980년대 중반에는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이 성사되기도 하였다.

우리의 대북정책에 있어 본격적으로 남북간 인도적 분야에 관심이 제기되기 시작한 계기는, 1990년대 중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 및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의 열악한 식량사정과 경제 악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어, 동포애적·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실제로 남북관계에서 인도적 문제가 포괄하는 범위는 이보다 훨씬 폭이 넓고 뿌리가 깊다. 분단으로 인해 겪는 민족적 이산의 아픔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북한주민의 고통은 인도주의적 정신이 외면할 수 없는 대표적 분야이다. 여기에는 북한이 휴전 후 송환시키지 않고 있는 국군포로와 실향사민 및 그 이후의 납치·억류자 문제도 포함된다.

아울러 북한의 식량난 심화로 북한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하였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한편,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지속적인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1990년대 중반 들어 국제사면위원회(AI) 보고서 등으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국제인권기구 및 비정부기구(NGO)로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이 북한 및 남북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인도적 문제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17일 통일원에 인도지원국을 설치하여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함께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그리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과 국군포로·납북억류자 문제 해결방안 모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제1절 대북지원

1. 정부차원의 지원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매년 100~200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식량난은 집단농장제도로 인한 노동의욕 저하,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비료·농약 부족, 수송체계 미비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이 누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주의 경제협력의 감축과 1995년부터 계속된 자연재해로 북한의 식량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100만명 이상의 정규군을 유지하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정치선전물 건설 등에 막대한 자원을 낭비함으로써 자구적인 노력을 외면하였다.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이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대두된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은 베를린 방문중 가진 독일 외교 3단체 초청연설(3.7)과 제44차 국제언론인협회(IPI) 서울총회 개막연설(5.5)시에 북한에 대한 곡물제공 의사를 밝혔다.

1995년 5월 26일 일본을 방문한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리성록 위원장은 일본 연립여당의 방북단 대표들과 회담시 대북 식량지원을 요청하면서, 한국 쌀도 전제조건이 없으면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나웅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의 발표문을 통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 없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6월 17~23일 중국 북경에서 남북 당국간 회담이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남북간 북경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산 쌀 15만톤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측 쌀 수송선「씨아펙스호」인공기 강제 게양사건,「삼선비너스호」억류사건 등이 발생하였으나,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합의로 해결이 되었다.

이어 정부는 1996년 4월 16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4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남북간 긴장완화와 상호 신뢰구축 차원에서 포괄적인 대북지원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기여할 용의가 있으며,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수해농지 복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다 구체적인 대북지원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1997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첫째, 북한 식량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북간 실질협력이 필요하며, 둘째,「민족발전공동계획」을 남북대화를 통해 협의·추진하고, 셋째,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대한 협력을 제공하며, 넷째, 북한당국은 변화를 통해 자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대북지원 4대방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엔기구를 통한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996년에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 아동용혼합곡물(CSB) 3,409톤과 국산분유 203톤 등 300만불 상당의 식량을 지원하고, 국제기상기구(WMO)를 통해 5만불 상당의 기상자재를 제공하였다. 1997년에도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600만불 상당의 아동용혼합곡물과 1,053만불 상당의 중국산 옥수수 5만톤 및 국산분유 300톤, 유엔아동기금을 통해 탈수방지약(ORS) 제조공장 복구비용 34만불 등 총 2,667만불 상당을 지원하였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유엔기구에 현금 및 현물을 기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6세 이하 아동과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해 지원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루어졌다.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아울러 북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고, 남북 농업개발협력 및 경협 활성화 등을 통해 북한 식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경제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UN기구의 제4차 대북지원계획에 동참하여 1998년에는 WFP를 통해 1,100만불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우리의 지원사실을 북한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히 알리고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는 방향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정부차원 대북지원 현황

(1998.12월말 현재)

기 간	지원 규모	비 고
1995년	2억3,200만불	- 국내산 쌀 15만톤 - 1,850억원(1$당 800원 적용)
1996년	305만불	- WFP 200만불(혼합곡물 3,409톤) - UNICEF 100만불(분유 203톤) - WMO 5만불(기상자재)
1997년	2,667만불	- WFP 600만불(혼합곡물 9,852톤) - UNICEF 34만불(ORS공장비용) - WFP 1,053만불(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 UN기구 980만불(WFP 400만불, CSB 8,389톤, · UNICEF 360만불, 분유 781톤, WHO 70만불, · UNDP 120만불, FAO 30만불)
1998년	1,100만불	- WFP 1,100만불(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계	2억 7,272만불	

2. 민간차원의 지원

북한 식량난의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노력과 함께, 1995년 9월 14일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의 대북지원 허용조치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민간차원에서도 인도적, 긴급구호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한때 중단되기도 했으나, 그해 12월 북한의 공식사과 이후 재개되었다.

계속되는 재해로 인해 북한의 식량난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1997년 3월 31일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대북지원 품목 확대(쌀 등 포함)

와 경제단체를 통한 기업체의 대북지원 참여를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대북지원 기탁성금이 증대되고, 지정기탁 등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들이 늘어남에 부응하여 1997년 4월 18일 한적은 대북지원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접촉을 제의하였으며, 남북적십자는 1997년 5월 북경에서 대표접촉을 갖고 5월 26일「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로써 그간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에서 남북간 직접전달 방식으로 전환되고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는 남북간 구호물자 직접전달, 수송경로 및 대상지역 확대, 지원주체 명기 및 지정기탁 등 그동안 국내 민간단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었다.

이어 1997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통해서는 1차지원에 이은 2차지원 문제를 협의하였다. 2차분 지원 합의는 구호물자 검수방식, 분배과정 입회 및 분배결과 통보 등 1차분 지원과정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남북적십자간 합의 이전인 1995년 9월부터 1997년 5월까지는 19차례에 걸쳐 39억 7천만원(496만불) 상당의 구호물자를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해 지원하였다.

1997년 5월 26일 남북적십자간 합의 이후에는 1차분으로 6월부터 7월말까지 옥수수 기준 5만 3천 800여톤의 식량을 신의주, 만포, 남양과 남포항, 흥남항을 통해 전달했으며, 이어 7월 25일 남북적십자간 2차분 지원합의에 따라 8월부터 10월말까지 옥수수 기준 5만 2천 800여톤의 구호물자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1998년 3월 중순에는 2차분 추가물량으로 17만불 상당의 비료 800톤을 지원하였고, 이어 3월25일에서 27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남북적십자 제5차 대표접촉의 합의에 따라 제3차 대북지원이 4~6월간 추진되었다. 3차분 지원규모는 총 935만불 상당(옥수수 기준 5만4천여톤)으로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이 전달되었다. 아울러 9월부터는 3차분 추가물량으로 1,133만불 상당의 옥수수와 밀가루, 분유 등이 지원되었다. 3차지원에서는 최초로 판문점을 통해 한우 1,001두가 북한에 전달되었다(6.16, 10.27).

1995년 9월 이후 1998년 12월말 현재까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총 4,321만불(472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옥수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27만톤 상당이다.

민간차원 대북지원 현황

(1998.12월말 현재)

기 간	지원 규모	비 고
1995.9~ 1997.5 (國赤경유)	496만불 (39억6,915만원)	- 밀가루 3,664톤,분유 94톤, 담요 1만개, 식용유18.6만톤, 라면 10만개, 양말 3만5천켤레, 감자 1,900톤, 무종자 4.8톤, 배추종자 6.4톤, 옥수수 4,980톤 - 1$당 800원 환율적용
1997.6~7 (1차지원)	850만불 (75억7,000만원)	- 옥수수 4만1,511톤, 밀가루 2천톤, 라면 15만상자, 비료 2천톤(옥수수기준 53,841톤) - 1$당 890원 환율적용
1997.8~10 (2차지원)	890만불 (81억원)	- 옥수수 1만7,100톤, 수수 1만4,576톤, 밀가루 5,501톤, 식용유 27만ℓ, 감자 1,300톤, 이유식 96.74톤, 분유 100톤, 어린이영양제3만병(옥수수기준 52,888톤) - 1$당 910원 환율적용
1998.3 (2차추가지원)	17만불 (2억8,000만원)	- 비료 800톤 (옥수수기준 1,261톤) - 1$당 1,680원 환율적용
1998.4~6 (3차지원)	935만불 (130억9,045만원)	- 옥수수 16,585톤, 밀가루 13,500톤, 식용유 26만ℓ,분유 111톤, 비료 2,500톤, 소금 1,000톤, 쌀 57톤, 씨감자 5톤, 양말 26천셀, 한우 500두, 비닐 3.4톤, 초콜렛 14톤, 의약품(41천만원상당),앰블란스 1대(옥수수기준 54,544톤) - 1$당 1,400원 환율적용
1998.9~12 (3차추가지원)	1,133만불 (141억6,200만원)	- 정주영: 옥수수 39,509톤(95억원,톤당24만원), 한우 501두(사료 85톤, 물통 205개 포함 10억9,400만원) - 민간단체 개별지원: 옥수수 4,010톤, 밀가루 2천톤, 백미 60톤, 분유 128톤, 설탕 34톤, 식용유 35만6,700ℓ, 젖소 200두, 사료 46톤, 비닐 50.8톤, 유리 984장, 의류 45,904매, X-Ray차 1대, 의약품 등(15개 단체, 35억 6,800만원) - 1$당 1,250원 환율적용
계	4,321만불 (472억원)	

아울러 그동안 대북지원에 참여한 민간단체는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총 130여개(1천만원 이상 지원만 포함)에 이른다.

또한 우리측 민간단체가 지정한 구호물자 분배지역(단체)은 1차 지원의 경우 북한의 9개 시·도 및 4개 단체, 2차 지원시 15개 시·도 및 13개 단체, 3차 지원시 8개 시·도 및 9개 단체였다.

지원물자는 중국산 옥수수와 밀가루·라면·감자 등 국내산 물품을 구입·지원하였고, 전달경로는 대체로 육로의 경우 신의주·만포·남양 등 중국과의 국경지역을 통해 철도로 운송하였으며, 해로의 경우 흥남·남포·원산·청진을 통해 선박으로 운송하였다.

1998년 3월 18일 정부는 남북주민간의 접촉을 증대시키고, 민간단체의 자율적 참여 속에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3·18조치에 따라 1998년 12월말까지「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범국민운동」등 민간단체 관계자 129명이 구호물자 인도 및 대북지원 협의 등을 목적으로 방북하였다.

<민간차원 대북지원활성화 조치>

o 민간단체 대북지원 참여 확대
  - 남북적십자간 구호물자 인도인수시 민간단체 참여 허용
  - 대북지원 협의·모니터링 목적의 접촉 및 방북 허용

o 민간의 대북지원 모금활동 규제 완화
  - 자선음악회·바자회 등 이벤트성 모금행사 허용
  - 언론사·기업체의 모금행사 협찬 및 무기명기탁 허용

o 협력사업 방식의 시범적인 대북지원 허용

또한 9월 18일「한적지원 구도하의 민간단체 개별지원」허용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민간이 대북협의·운송·모니터링 등을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등 15개 단체에서 35억여원 상당 옥수수 등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주요 민간단체·개인 대북지원 현황

(1995.9~1998.12.31 분야별 고액지원 순위, 1억원 이상 50개 단체·개인)

<기독교>

순위	단 체 명	지원액(억원)	비고
1	북한동포후원연합회	36.14	
2	예장(통합)총회	8.70	
3	한국선명회	6.70	
4	한기총북한동포돕기위원회	4.20	
5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3.05	
6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82	
7	사랑의쌀나누기운동	2.08	
8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	1.72	
9	기독청년대학생통일봉사단	1.50	
10	두레마을	1.14	
11	대한YWCA연합회	1.02	
1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	
13	광림교회	1.00	

<천주교>

순위	단 체 명	지원액(억원)	비고
1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42.81	
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7.50	
3	정의구현사제단	2.04	
4	주교회의사회복지위원회	1.78	
5	춘천교구한솥밥한식구	1.15	

<불교·원불교>

순위	단 체 명	지원액(억원)	비고
1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6.40	
2	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2.63	
3	조계종총무원	2.63	
4	원불교은혜심기운동본부	1.30	

<사회단체·개인>

순위	단 체 · 개 인 명	지원액(억원)	비고
1	정주영	144.47	
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39.41	
3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	35.35	
4	전국경제인연합회	18.00	

순위	단 체 · 개 인 명	지원액(억원)	비고
5	의약품지원본부	6.55	
6	남북어린이어깨동무	6.14	
7	북녘동포돕기운동전북본부	5.00	
8	한국로타리현총재단	3.92	
9	국제라이온스한국연합회	2.68	
10	인천시민모임준비위원회	2.57	
11	한국네슬레	2.50	
12	한국이웃사랑회	2.50	
13	삼육국제개발구호기구	2.06	
14	건국대학교	2.05	
15	21세기통일봉사단	1.81	
16	부천시흥시민운동본부	1.65	
17	옹진·강령돕기범인천시민	1.50	
18	한국노총	1.50	
19	전국금융노련	1.50	
20	KNCC여성위원회 등	1.50	
21	효도회·이산가족재추위	1.42	
22	가톨릭대학교	1.32	
23	한겨레신문사	1.21	
24	한국여약사회	1.05	
25	아르헨티나교민회	1.04	
26	대한변협	1.02	
27	한솔PCS	1.02	
28	한국지역대학연합회	1.01	

<한국 및 국제사회 대북지원 비교>

구 분	한 국		국 제 사 회	
1995.6 ~1997.12	정 부	2억 6,172만불	UN기구	1억 7,206만불
	민 간	2,236만불	개별국가	1억 7,273만불
	소 계	**2억 8,408만불**	국제NGO	7,201만불
			소 계	**4억 1,680만불**
1998.1~12	정 부	1,100만불	UN기구	2억 710만불
	민 간	2,085만불	개별국가	7,943만불
	소 계	**3,185만불**	국제NGO	1,737만불
			소 계	**3억 390만불**
총 계	**3억 1,593만불**		**7억 2,070만불**	
비 고	옥수수기준 197.5만톤		옥수수기준 450만톤	

* 옥수수 기준 환산은 톤당 160불 기준 적용

제2절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

1. 1970년대 이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협정은 제3조 제59항에서 귀향을 원하는「실향사민」의 귀향을 허용·지원키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양측 각기 2명씩의 영관급장교로 구성된「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회의가 1953년 12월 11일과 12월 29일 두차례 개최되어, 1954년 3월 1일부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사이에 1일 100명씩의 실향사민을 교환키로 합의했다.

유엔군측은 1954년 1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귀향을 원하는 실향사민 신고를 접수해 신고자 총 76명의 명단을 1954년 2월 18일 공산군측에 전달하였으나, 공산군측은 귀향을 원하는 한국인 실향사민은 한명도 없고 다만 외국인 10명만이 송환을 희망한다고 통보해왔다.

1954년 3월 1일 유엔군측은 신고자 76명중 최종단계에서 귀향의사를 변경한 37명과 간첩으로 확인된 2명을 제외한 37명을 북한측에 인도하였으나, 북한측은 터어키인 11명과 일본계 러시아인 8명 등 19명의 외국인만 송환했으며, 이것이 군사정전협정에 따른 실향사민 송환의 전부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1954년 한국문제와 월남문제 협의를 위한 제네바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변영태 외무장관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대표를 만나 실향사민 송환문제를 협의한 것을 시발로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전개하였다.

한적은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향사민 재등록을 실시해 등록자 총 7,034명의 명단을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측은 1957년 11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9차 적십자 국제회의에서 납북인사 337명의 생존자 명단을 한적에 통보해왔다.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한 실향사민 문제 해결노력

구 분	한 국 측	북한측 반응
1954.9.8	o 한적, 납북인사 17,500명과 미송환 포로 2,200명의 행방조사와 송환주선을 국적에 요청	무 반 응
1956.10	o 한적, 1956.6.15~8.15간 전국적으로 실시한 실향사민 재등록시 등록한 총 7,034명의 명단을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전달	o 북적, 1957.11 제9차 적십자 국제회의(뉴델리)에서 337명의 생존자 명단 회신

2. 1970~1990년대 중반

1960년대말 세계적인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외 정세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1970년 8·15 경축사를 통해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했다.

남북간 긴장완화와 남북간 인위적 장벽의 단계적 철폐 등 이 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1971년 8월 12일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북한측에 제의했다.

북한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를 시발로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1971년 8월 20일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위한 파견원 접촉이 이루어진 이후 1970년대말까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본회담 7회, 예비·실무회담 60여회의 남북적십자 회담이 진행되었다.

1972년 6월 16일 제20차 예비회담에서는 ① 생사·주소확인 ② 방문·상봉 ③ 서신거래 ④ 재결합 ⑤ 기타 인도적 문제 등 남북적십자회담 「의제5개항」에 합의했으며, 1972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에서 이를 확인·채택했다.

1972년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본회담에서는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자유로운 원칙, 7·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적십자 인도주의정신을 철저히 구현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1972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본회담에서는 합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남북적십자공동위

원회」와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를 설치·운영키로 합의했다.

1982년 2월 1일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은 성명을 통해 민족화합을 위한 「20개 시범실천사업」의 하나로 이산가족간의 편지교류와 상봉의 실현을 제시했다.

한편, 제8차 본회담 개최를 위한 제25차 실무회의(1977.12.9) 이후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은, 1984년 9월 18일의 수해물자 인도·인수관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과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된 쌀 5만석, 시멘트 10만톤등 수해물자 전달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11월 20일 예비접촉을 거쳐 1985년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에서는, 광복절을 기해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을 상호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고향방문단」 교환문제 협의를 위해 7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개최된 3차례의 실무대표접촉과 4차례의 비공개접촉에서, 남북 쌍방은 1985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3박 4일간 이산가족 50명 등 각기 151명의 「고향방문단」을 상호교환키로 하고 관련 실무문제를 완전 타결했으며,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9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에서 이를 확인했다.「고향방문단」교환과 관련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단의 명칭은 각기 편리한대로 하되, 대한적십자사측은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으로 함.
2. 방문단의 구성 및 규모
   가. 방문단은 쌍방 적십자사중앙기관 책임자(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를 단장으로 하여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예술공연단, 취재기자 그리고 지원인원으로 구성함.
   나. 방문단의 규모는 적십자사중앙기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각기 총 151명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함.
      ⑴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은 서울과 평양을 고향으로 한 인원을 위주로 하여 50명으로 함.
      ⑵ 예술공연단(제작진과 출연진)은 50명으로 함.
      ⑶ 취재기자는 30명으로 함.
      ⑷ 지원인원은 20명으로 함.
3. 방문단 교환방법은 동시 교환방문 방식으로 함.

4. 교환방문시기는 9월20일~9월23일(3박4일)로 함.
5. 방문지는 서울과 평양으로 함.
6. 상봉의 주선과 범위
 가. 쌍방은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인원들에 대해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가족과 친척을 찾아서 상봉을 시켜주는 편의를 제공함.
 나. 상봉의 범위에 있어, 직계 존·비속은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 이후에 출생한 가족을 포함하고, 친척의 경우 방계는 8촌, 처·외가는 4촌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생사, 소재가 확인된 친척도 포함함.
7. 예술공연단의 공연장소 및 공연회수
 가. 공연장소는 초청측이 성의를 가지고 제공하는 시설이 완비된 극장으로 함.
 나. 공연회수는 총 2회로 함.
8. 공연내용
 가. 공연은 민족전통 가무를 중심으로 하며, 상대방을 비방·중상, 자극하지 않는 내용으로 함.
 나. 공연시 사회자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상대측을 비방·자극하지 않는 원칙하에 공연 종목만을 소개할 수 있음.
9. 공연 프로그램 교환 및 공연장 사전 답사
 가. 공연 프로그램은 방문 3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하도록 함.
 나. 연출상의 구성문제, 장치전환문제, 음향·조명·효과문제 등 공연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적십자 인원 2명과 공연기술 인원 3명이 1985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공연장을 사전 답사토록 함.
10. 공연시간은 120분 정도로 함.
11. 고향방문자 명단 작성 양식
 가. 고향방문단 명단의 방문자난에는 방문자의 성명, 성별, 연령, 고향, 방문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함.
 나. 고향방문자 명단의 방문 대상자난에는 방문대상자의 성명, 성별, 연령, 고향, 헤어진 때를 기재하고 기타 가족찾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첨부함.
12. 기타
 가. 방문단이 상대측 지역을 방문중에는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도록 함.
 나. 숙식, 통신 등 방문단 인원들에 대한 편의는 초청측에서 제공함.
 다. 초청측은 공연개막전 방문측이 공연무대에서 사전연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
 라. 공연무대장치의 보조인원 및 일반 조명기구 제공 등 기타 공연에 관련되는

문제는 초청측에서 편의를 제공함.

마. 공연 프로그램은 공연하는 측이 제작 휴대하여 배포하도록 함.

이같은 합의에 따라 1985년 9월 20일「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동시 교환방문이 실현됨으로써, 남북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들이 직접 가족·친척들을 상봉할 수 있었다.

남한측 방문단 중에서는 35명이 41명의 가족·친척들과 상봉하였으며, 북한측은 30명이 51명과 상봉하였다. 한편 예술공연단도 9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서울예술단은 평양대극장에서, 그리고 평양예술단은 국립극장에서 각기 2회의 공연을 가졌다.

이산가족 상봉내역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상봉일자		o 1985. 9.21(토) 10:30~13:30 o 1985. 9.22(일) 09:02~11:17	o 1985. 9.21(토) 10:20~11:30 o 1985. 9.22(일) 10:30~11:30
상봉장소		평양, 고려호텔	서울, 쉐라톤호텔
상봉방법	제1일	호텔 3층 로비에서 공개상봉(5-10분간)후 객실에서 개별 상봉	상봉 가능 재남가족이 호텔상봉장에서 대기, 북측방문단 해외가족과 동시 상봉
	제2일	호텔 3층 영화관에서 공개상봉(5분간)후 객실에서 개별 상봉	제1일 상봉자는 호텔객실에서 개별상봉, 미상봉자는 상봉장에서 공개상봉(15분간)후 객실에서 개별 상봉
상봉인원		35명이 재북가족 35가구 41명 상봉	30명이 재남가족 30가구 51명 상봉

제1차「고향방문단」교환이후 1985년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에서 한적은 1986년 구정을 기해 제2차「고향방문단」을 교환할 것과 제1차「고향방문단」교환시 상봉한 이산가족들간의 서신교환을 제의했으나, 북한측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한편, 정부는 1988년 7·7선언을 통해, 적십자회담 타결이전에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이같은 정책방향에 따라 정부는 남북간 회담을 통한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정·시행 및 「민족대교류」 등을 통한 이산가족교류를 병행 추진해 나갔다.

「7·7 특별선언」 실천조치의 하나로 한적은 1988년 8월 11일 총재 명의의 특별담화를 통해 중단된 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친척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이산가족찾기 신청서 접수」 사업을 8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3개월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한적은 기간중 접수된 총 4,346명의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명단을 1989년 1월 24일 북한측에 전달했다.

1989년 9월 27일부터 1990년 11월 8일까지 8차례 개최된 남북적십자실무대표접촉에서, 쌍방은 1989년 12월 8일을 기해 한국측 350명, 북한측 300명의 이산가족을 포함한 각기 571명 규모의 제2차 고향방문단을 상호교환키로 원칙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혁명가극을 공연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고향방문단 교환을 거부해 이 합의는 실현되지 못했다.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시행지침」 및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정·시행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의 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1990년부터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남북이산가족간 교류가 시작되었다.

또한 정부는 1990년 7월 20일 대통령 특별발표를 통해 1990년 8월 13일부터 17일까지의 5일간을 「민족대교류」 기간으로 선포하고, 기간중 남북의 동포들이 판문점을 통해 아무런 제한없이 남북을 자유로이 왕래토록 하자고 제의했다.

아울러 북한측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호교류를 수용할 수 없다면 북한동포에 대한 우리사회의 전면개방을 일방적으로 실천할 것임과, 향후 외국인이 판문점을 통해 남북한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 제의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시·군·구청 민원창구를 통해 방북신청을 접수했다.

이 기간중 방북신청자는 총 61,355명이었으며, 이중 이산가족 및 친지상봉 목적의 방북신청자는 42,773명이었다.

방북신청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이산가족 상봉	친지 상봉	언론 취재	학술	경제	문화	종교	관광	체육	기타
총 계	61,355 (100)	37,408 (61)	5,365 (8.8)	688 (1.1)	896 (1.5)	300 (0.4)	879 (1.5)	1,114 (1.8)	13,271 (21.6)	59 (0.1)	1,375 (2.2)
서 울	22,539 (36.7)	14,650	1,959	426	264	130	250	327	4,078	24	431
지 방	38,816 (63.3)	22,758	3,406	262	632	170	629	787	9,193	35	944

그러나 「민족대교류」 제의는 북한측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이를 거부함으로써 무산되었으며, 방북신청자 명단조차 북한측에 전달되지 못했다.

한편,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정부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주요의제로 제기, 「남북기본합의서」 제18조에서,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명문화했다.

또한 1992년 9월 17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서는 이산가족 범위의 확정, 왕래절차, 면회소 설치, 재결합 대책, 사망자의 유품처리·유골이전 등의 문제를 적십자회담을 통해 해결키로 합의했다.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시범사업으로 1992년 8·15 광복절을 기해 쌍방 각기 고령이산가족 100명씩을 포함하는 240명 규모의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교환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동 방문단 교환문제 협의를 위해 개최된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한측은 이인모 송환 등을 방문단 교환의 전제조건화함으로써 동 합의를 무산시켰다.

정부는 1993년 남북특사교환 및 1994년 남북정상회담 추진등을 통해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주요 의제의 하나로 북한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었으나, 특사교환 및 정상회담이 무산됨으로써 이같은 구상은 현실화 되지 못했다.

북한측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남북간 이산가족문제 협의 노력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 나갔다.

1993년부터「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의 이산가족 재회사업을 지원하고, 1997년말까지 8개의 이산가족 교류 주선단체에 대해 교류주선 목적의 북한주민접촉을 승인했다.

또한 재북가족과의 접촉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승인신청 등 이산가족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이산가족 민원접수 창구 확대를 추진했다. 1993년 7월 1일에는 한적 본사 및 지사 민원실, 1994년 8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34개 시·군·구 협의회 민원실, 1994년 9월 1일에는 이북5도위원회 민원실, 1997년 4월 14일에는 이북5도위원회 14개 시·도 사무소 등 총 264개 창구로 확대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 따라 민간차원의 교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3. 1990년대 후반

1998년 2월 25일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이 이산가족문제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사망으로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절박하다는 상황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흩어진 가족이 서로 안부를 주고 받으며 상봉하고 재결합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떠나 천륜과 인륜상의 당연한 도리이다. 이같은 가족권은 천부적인 기본적 인권으로「세계인권선언」(1948),「제네바제4협약」(1948),「국제인권규약」(1966) 등 수많은 인권선언과 국제조약 등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1천만명 이상이 반세기가 지나도록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인류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동·서독의 예를 보더라도 분단 후 1990년 통일시까지 가족간의 교류는 중단없이 지속되었으며, 중국·대만의 경우 1987년부터 교류가 시작되어 현재 연간 150만명 이상이 가족·친지를 상호 방문하고 있다.

더욱이 남북분단이 오랫동안 지속됨에 따라 이산가족의 고령화 추세가 두드러져 유명을 달리하는 이산가족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은 약 767만명이며, 이중 69만명에 이르는 60세 이상의 고령이산가족은 10년후에는 약 36% 이상이 세상을 떠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족상봉이라는 가장 인도주의적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이같은 고령 이산가족문제는 북한의 경우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인식에 따라 정부는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북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1998년 대통령 취임사, 3·1절 경축사, 8·15 경축사 등 주요 계기시마다 북한측에 대해 남북당국간 또는 적십자간 회담 등 이산가족문제 협의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1998년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남북당국대표회담에서도 대북 비료지원 문제와 생사·주소확인 및 상봉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함께 논의했으나, 북한측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거부함에 따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산가족교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1998년 4월 1일부터 생사확인 또는 제3국 상봉을 추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60세 이상의 이산가족들에 대해 소요경비중의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1998년에는 생사확인 주선비 40만원, 상봉주선비 80만원, 상봉여비 60만원 내외를 지원했으며, 1999년에는 생사확인 40만원, 상봉 및 방북 80만원을 지원하고 영세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가족 등을「특별지원 대상자」로 지정해 2배 내외 규모의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1998년 9월 1일부터 고령 이산가족등의 방북절차를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60세 이상의 이산가족 및 1953년 7월 27일이전 북한지역에서 출생한 실향민, 고령 이산가족 방북 보조자, 재북가족 문병·문상 등 긴급 가사사유자 등은 초청장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제약없이 방북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또한 이산가족교류 주선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간교류 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류 주선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1998년 들어 22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이산가족교류 주선 목적의 북한주민접촉을 승인했으며, 정부와 교류 주선단체 협력하에 생사확인 등 이

산가족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이산가족문제 해결노력에 따라 1998년들어 이산가족교류는 대폭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접촉신청은 12월 31일 현재까지 3,726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5배 수준이며, 생사·주소확인은 2.3배인 377건, 제3국상봉은 1.8배인 108건, 서신교환은 469건이 성사되었으며, 처음으로 방북 상봉이 성사되기도 했다.

이산가족 교류 현황

<연도별 교류현황> (단위 : 건)

연 도 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계
접촉신청	1	62	275	267	743	651	311	231	761	3,726	7,028
생사확인	-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1,391
서신교환	-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4,516
제3국상봉	-	6	11	19	12	11	17	18	61	108	263
방 북	-	-	-	-	-	-	-	-	-	1	1

<중개자별 교류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해외동포	상봉주선단체	언론매체	국제행사참여 등	계
건수(상봉)	1073(235)	259(18)	49(4)	10(6)	1,391(263)
비 율	77%	19%	3%	1%	100%

<중개지별 교류현황 > (단위 : 건, %)

구 분	중 국	미 국	일 본	캐나다	기 타	계
건수(상봉)	952(250)	294(-)	74(12)	32(-)	39(1)	1,391(263)
비 율	69%	21%	5%	2%	3%	100%

<신청인 거주지별 교류현황> (단위 : 건, %)

구 분	서 울	경 기	부 산	인 천	강 원	기 타	계
건수(상봉)	836 (158)	250 (45)	65 (15)	64 (12)	40 (15)	136 (18)	1,391 (263)
비 율	60%	18%	5%	5%	3%	9%	100%

<원적지별 교류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함 남	평 북	황 해	평 남	함 북	경 기	평 양	강 원
건 수 (상 봉)	363 (80)	189 (28)	153 (26)	146 (26)	146 (45)	50 (8)	39 (8)	32 (7)
비 율	26%	14%	11%	11%	11%	4%	3%	2%

구 분	서 울	경 북	경 남	충 남	전 남	부 산	기 타	계
건 수 (상 봉)	51 (4)	42 (6)	39 (2)	30 (8)	26 (6)	9 (3)	76 (6)	1,391 (263)
비 율	4%	3%	3%	2%	1%	-	5%	100%

아울러 정부는 이산가족교류 본격화에 대비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이산가족문제 해결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1998년 5월 28일에는 한적 등 22개 이산가족관련 민간단체들의 참여하에「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를 발족시켰다.

협의회는 총회(회장:정원식 한적총재), 자문위원회, 남북협력홍보위원회·교류후원위원회·학술연구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 실행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산가족 교류에 관한 의견 자율조정 및 대정부 건의, 이산가족교류 활성화시 상봉 및 고향방문 대상자 선정 등 민·관 역할분담을 통한 교류지원, 민간차원의 남북이산가족교류 추진 창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회원 단체

번호	단 체 명	대 표 자	성 격
1	21세기통일봉사단	송 자	통일부 허가법인
2	민족통일협의회	송영대	〃
3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김신삼	〃
4	한민족통일촉진협회	양순임	〃
5	한사랑민족통일진흥원	김학옥	〃
6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김승균	〃
7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조영식	〃
8	한국사회문화연구원	방찬영	〃
9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민형윤	〃
10	한민족이산가족상봉회	김귀덕	주 선 단 체
11	이산가족상봉추진회	조동식	〃
12	우리민족서로만나기모임	송낙환	〃
13	효도회	장승학	〃
14	한민족물자교류협회	김영일	〃
15	KBS 통일방송연구소	한중광	언론사 부설 연구소
16	대한적십자사	정원식	보건복지부 허가법인
17	홍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장태욱	교육부 허가법인
18	국제옥수수재단	김순권	농림부 허가법인
19	남북통일국민운동연합	곽정환	임 의 단 체
2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서영훈	〃
21	이북도민중앙연합회	안응모	〃
22	통일경모회	오훈칠	〃

이와함께 정부는 이산가족찾기 및 상봉 등 이산가족교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통합·전산화해 향후 교류본격화에 대비하고 민간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8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998년 12월 18일 통일부와 이북5도위

원회에「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우선 대한적십자사, KBS 등 유관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기존자료를 취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제3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1. 북한이탈주민의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신분이 외교관, 해외무역상사원, 당간부, 노동자, 벌목공 등의 여러 계층으로 확대되고, 입국경로도 해상, 중국, 러시아 등으로 다양화 되면서, 가족을 동반하여 집단으로 탈북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입국자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북한주민의 탈북현상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인한 만성적인 경제난과 한·중수교 이후 중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유입으로 인한 북한체제 내외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일부변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식량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존권 확보를 위해 중국 접경지역으로 탈북하는 사례가 급증하였다. 또한 북한내 사적경제활동의 증가로 사회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을 우려하여 탈북을 하는 사례도 상당수 발생하였다.

한편,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1990년대 이후부터 북한의 식량·경제난 등이 심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식량획득 목적의 단순 탈북자를 제외하면 약 2,000~3,000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언어상의 문제로 중국내 조선족이 집단거주하는 동북3성을 중심으로 농사일, 잡역부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중국의 호구제도 등으로 인하여 한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여러 곳을 떠돌며 은신·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식량 등을 구할 목적으로 일시 탈북한 것이므로「난민」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불법 입국한 외국인에 불과하다

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이들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국내송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한편,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이 벌목·건설현장을 이탈한 후 러시아 각지를 떠돌아 다니면서 집수리 등을 해 주며 은신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북한이탈주민에게 합법적인 신분은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한국으로의 입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국제적십자사(ICRC)의 협조를 통해 국내입국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협조를 해주고 있다. 정부는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전원수용 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실적으로 국내입국이 어려운 관련 당사국 및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통한 다각적인 국내입국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입국자 현황

(1)총괄	총 입국자	사망·이민자	국내 거주자	'69 이전	70 년대	80 년대	'90	'91	'92	'93	'94	'95	'96	'97	'98
인원	945	204	741	485	59	63	9	9	8	8	52	40	56	86	70

(2)성별	'89이전	'90이후	'90	'91	'92	'93	'94	'95	'96	'97	'98
남	561	266	9	9	6	8	48	34	44	56	52
여	46	72	0	0	2	0	4	6	12	30	18

* '94년 이후 가족동반 이탈주민 : 37가족 138명(45.3%)

(3) 직업	'89이전	'90이후	'90	'91	'92	'93	'94	'95	'96	'97	'98
벌목공·노동자·농장원	94	164	1	4	3	3	37	24	28	28	36
군인	244	24	3	0	0	1	3	6	5	1	5
해외상사원·외교관·외화벌이	3	23	3	1	1	1	1	3	3	8	2
당·정무원·교사	11	39	0	3	3	1	5	4	5	14	4
학생·무직·기타	113	87	2	1	1	2	6	3	14	35	23
자수간첩·전향	142	1	0	0	0	0	0	0	1	0	0

(4) 출신지	강원	경기	황해	평양	평안	자강	양강	함경	기타
'89이전	28	43	106	21	159	4	2	104	140
'90이후	18	3	25	65	64	12	13	117	21

(5) 연령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89이전	0	107	289	127	57	22	5
'90이후	21	21	105	123	32	24	12

국내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직업별 분포는 회사원 등 봉급생활자가 약 27.2%, 상업 등 자영업자가 약 12.9%, 학생 8%, 주부, 고령자를 포함한 무직이 33.3% 이며, 소득수준에서는 약 절반 정도가 다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대부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입국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정부지원이 축소된 1994년 이후 입국자의 경우에는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취업부진 영향 등으로 상당수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우리사회 적응에 있어서도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으나, 일부는 외로움, 경제적 자립능력 부족,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적응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거주자 유형별 현황

(1)직업	계	회사원 (군인·공무원)	자영업	학생	직업훈련	무직	기타 (노동, 수용, 유아)
계	741	202	96	59	25	247	112
'89이전	406	96	60	3	1	191	55
'90이후	335	106	36	56	24	56	57

* 무직자에는 60세이상 고령자·주부 등 포함, 실제 취업대상자는 100여명 정도

(2)연령	10세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15	25	72	162	74	118	273
'89이전	0	0	5	23	29	91	258
'90이후	15	27	67	139	45	27	15

* '90년 이전 입국자의 62%(전체대상 38%)가 60세 이상 고령

(3) 학력	무학	국졸	중졸	고등중졸	전문대졸	대재	대졸	대학원졸
'89이전	16	44	85	75	3	47	123	13
'90이후	4	23	15	162	41	25	62	3

(4)거주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충남 대전	광주 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수용
계	435	175	46	10	18	2	8	4	17	0	26

* 서울(60%) 등 수도권에 84%가 거주('97이후는 수도권에 약 60%가 거주)

2. 보호·정착지원체계 정비

가. 북한이탈주민법의 제정경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은 남북한 통일환경 및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1962년 4월 16일 국가원호처에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을 제정·시행하면서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동 법은 1974년 12월 24일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으로 개칭되는 등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를 국가유공자와 함께 관리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고려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동 법에서 분리하여 1978년 12월 6일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독립법이 처음으로 제정되게 되었다.

이후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양상이 다양화되고 국내입국 규모도 증가하게 되면서, 탈냉전시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업무를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난민구호 차원으로 인식을 전환하면서,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옮기고, 1993년 12월 11일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물질적 지원수준도 국내 영세민과의 형평성에 맞게 하향 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귀순북한동포보호법」도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을 「정보사범」으로 인식하여 냉전시대

적 시각에서 대처하였고, 수용시설에서의 수용·조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기본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였으며, 또한 주무부처가 불분명하고 업무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처리에 있어 체계적·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근시각과 보호·지원체계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이 통일정책의 전반적인 구도하에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새로운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중 하나였던「북한주민의 인권보장 및 삶의 질 향상」문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16일 통일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북한인권개선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한 후, 1995년 9월 5일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북한이탈주민대책」을 우선 정책과제로 결정하였다. 이에 1996년 2월 15일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통일정책적 차원에서 재정립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하기로 하는 한편, 기존「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전면 대체하는 새로운「특별법」의 제정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을 위한 「정착지원시설」의 건립을 결정하였다. 이에따라 통일원을 중심으로 외무부, 국가안전기획부 등 유관부처간의 협의하에「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성안하여 1997년 7월 14일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령 변천비교

구분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
소관부처	국가보훈처(국방부)	국가보훈처(국방부)	보건복지부	통 일 부
시행기간	1962.4.16~1978.12.31	1979.1.1~1993.12.10	1993.12.11 ~1997.7.13	1997.7.14 ~

구분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
정착금	o 정착수당 지급 - 1급 : 100만원 - 2급 : 70만원 - 3급 : 50만원	o 지급기준 : 신분 및 정보가치 o 지급액 :황금1,900g-14,500g (1천9백만원-1억4천5백만)	o 지급기준 : 가족수(기본금) 정착여건(가산금) o 지급액 : 월최저임금의20~100배 (690만원-3,450만원) : * 대부분이 1인가족(690만원)	o 지급기준 : - 가족수(기본금) -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가산금) o 지급액 : 좌동
보로금	o 없음	o 지급기준 :휴대장비가치 o 지급액 :금10g-14,500g	o 지급기준 : 정보가치+휴대장비가치 o 지급액 : 황금10g-20,000g	o 지급기준 : 좌동 o 지급액 : 최고 2억 5천만원
주거지원	o 국가융자 건립주택 입주 우선권	o 무상 15평 이상	15평이하 무상·임대보증금	o 25.7평이하 무상·임대보증금
교육보호	o 본인 : 대학까지 공납금, 학자금 지급 o 자녀 : 고등학교까지 공납금, 학자급 지급	좌 동	o 본인에 한해 국립 : 면제, 사립 : 50%	o 본인에 한해 국립 : 전액 사립 50% o 고교 20세(25세)미만, o 대학 30세(35세)미만
취업알선	o국가·지자체·일정규모이상의 기업체의 전고용인의 3%이내고용	o본인·자녀를 16인이상 고용업체에 3-8% 범위내 의무고용	o본인에 한해 채용 알선 「기능직 공무원 요청시 우선 채용」	o취업희망시 협조 요청
특별임용	o 공무원, 국·공기업에 특별임용	o특별임용(해고제한)	o특별임용	o특별임용
사회적응교육	o없음	o없음	o없음	o있음
직업훈련	o 자활보호 차원에서 실시	o대상자 지정 훈련	o희망자에 노동부 협조 요청	o국가비용으로 훈련
생활보호	o 상이자에게 수당지급	o생계곤란자 구호수당 (상이자 연금지급)	o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o좌동
대부제도	o 없음	o유공자법에 의한 대부실시	o 없음(종전자 경과조치)	o없음
의료보호	o의료보호	o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o좌동	o좌동
자격인정	o없음	o없음	o없음	o있음

나. 북한이탈주민법의 특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자는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초기 입국과정에서부터 거주지편입 이후까지 전과정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안정된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를 소수계층의 소외문제로서 보고 단순한 인도적·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의 시험무대로 삼아 통일 이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통일정책의 전반적 구도하에서 접근하였다.

둘째, 이전 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에서부터 국내입국 이후 정착지원 과정을 거쳐 사회에 편입되어 정착하는 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지원을 하는데 미흡하였으며, 또한 보호·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부서가 없어 업무의 중복·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됨으로써 효율적인 보호·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새 법은 업무전반에 대한 통일부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각 유관부처별로 업무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

셋째, 이전 법에서는 물질적 보상 위주의 정착지원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거주지 배출 이후 초기생계지원금을 모두 소진하는 등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빈발하였으며, 일부는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일탈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에따라 새 법에서는 경제적 지원외에 자립·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함에 따라 언론계·종교계·기업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설립·운영하여 민간의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다섯째, 그동안은 단순히 신변보호 위주의 관리에 치중함으로써 생활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에따라 새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생활이 곤란한 자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설치・운영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여부 결정, 보호 및 정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종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13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준비회의를 거쳐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1997년 7월 15일 제1차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시작으로 동 협의회는 공식 발족하였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19개 유관부처 1급 내지 2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협의회 아래에 통일부 인도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유관부처 3-4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두어, 동 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유관부처간의 상호협조와 사전의견조율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동 협의회는 긴급현안 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성격별로 정책・운영・교육훈련・정착지원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소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차기 전체회의에 보고만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회의에서 심의・결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라. 정착지원시설의 건립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착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시설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6년 2월 15일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필요한 「정착지원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여 정착지원시설의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1997년 12월 29일 부지면적 18,147평에 연건평 2,214평, 수용인원 100명 규모로 시설건립을 착공하게 되었으며, 동 시설은 1999년 상반기중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다.

주요 시설 현황

시설명	연건평	시 설 내 역
교육행정동 후 생 동	약1,242평	o 강당,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자치활동실, 자원봉사실, 상담실, 고충상담실, 자료실 등 o 주방, 식당, 목욕탕, 휴게실, 의무실 등
숙 소 동	약701평	o 1인실, 2인실, 4인실, 별실, 특실, 가족실 등
경비숙소동	약241평	o 숙소, 내무반, 정비실 등
경비, 면회실	약30평	o 경비실, 면회실
계	약2,214평	

새로 건립되는 정착지원시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교육을 위한 종합지원센타로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고충상담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One-Stop Service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동 시설에서 약 1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수용기간 중에는 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호금품이 지급되며,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정착지원교육을 받은 후 사회에 편입되게 된다.

또한 동 시설에서는 심리·법률·직업·고충분야 상담실 등을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민간단체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안정, 애로사항 해소 등 기타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착지원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사회에 편입된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특별한 기술이 없어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재교육장으로도 적극 활용되게 된다.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부는 국내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자립·자활능력을 갖추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착지원을 해 주고 있다.

첫째, 초기생계자금·주거지원금 및 임대주택을 알선해 주고 있다. 초기생계지원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액의 16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지급하고, 가산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종류에 의하여 2억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85㎡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동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주거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사회에 배출시 영구·공공임대주택을 알선해주고 있다.

('99년도 월최저임금액: 344,650원)

구 분		지 원 기 준	비 고
정착금	기본금	o 1급(5인이상) : 월최저임금액의 160배 상당액 o 2급(4인) : 월최저임금액의 140배 상당액 o 3급(3인) : 월최저임금액의 120배 상당액 o 4급(2인) :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 o 5급(1인) : 월최저임금액의 80배 상당액	
	가산금	o 세대구성원중 18세이하 또는 55세이상 이상인 경우(2인까지) - 매 1인마다 월최저임금액의 10배 상당액 o 세대구성원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또는 중증신체장애자 - 3개월이상 10배, 1년이상 20배 상당액 o 자활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가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월최저임금액의 10배 상당액	o 동일인에 지원항목 2개이상이 중복되거나 세대구성원과 중복될 경우에도 40배 이내에서 지급

구 분		지 원 기 준	비 고
주거지원	임대	o 1급(6인이상) : 21-25평 o 2급(5인) : 19평 o 3급(4인) : 17평 o 4급(3인) : 15평 o 5급(1-2인) : 13평	o “나”, “다”지역은 급수별 “가”지역의 각각 10%, 15%를 가액 지급(지방거주 가산금)
	무상	o 25.7평이하: 세대주가 중병으로 상당기간 장기치료를 요하거나 신체장애자인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o 사안별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지급
보로금	정보	o 2억 5천만원 이하	o 보로금 지급지침에 의거 지급
	장비	o 군함, 전투폭격기 : 1억 5천만원 이하 o 전차, 유도무기, 기타 비행기 : 5천만원 이하 o 포, 기관총, 소총류 등 무기류 : 1천만원 이하	
	재화	o 시가 상당액	

둘째, 교육대상자를 수준·단계별로 나누어 다양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교과목을 설치하여, 우리 사회를 소개하고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사회적응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체제에 순조롭게 적응하여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

단 계	주 요 교 육 내 용
1단계	o 심리적응과 한국사회 이해단계의 교육 - 심리적·정서적 안정제고, 자아성찰 및 자아실현 의지제고 - 우리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윤리관 형성 및 미래에 대한 목표설정과 정착에 대한 자신감 제고 -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부문의 기본구조 및 작동원리 등
2단계	o 일상생활 안내단계의 교육 - 일상생활 언어, 신문방송이해, 생활법률, 생활경제, 생활예절, 생활의학, 적성과 진로, 이성과 결혼, 자녀교육 등
3단계	o 직업현장의 적응체험 단계의 교육 - 영농현장 체험교육 및 대상자의 적성을 고려, 각 기업체에 배치하여 직장 적응 체험교육

셋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다. 1인 1기능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직업훈련 희망자와의 면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적성·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종을 정한 후 공·사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다양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해 주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의 참여율 제고 및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중에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종교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의 핵심요소라고 볼 수 있는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으며, 아울러 북한에서의 직업이 정무원에 근무하였거나 군인이었던 자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특별임용도 시켜주고 있다.

넷째, 학력·자격인정 및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북한에서 취득하였던 학력이나 자격을 인정해 줌으로써 이들의 자립·자활기반을 한층 강화시켰다. 학교에 편·입학한 자에게는 고등학교까지는 학비 전액을 면제해 주고, 대학은 사립은 반액, 국·공립의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다섯째, 의료·생활보호대상자 편입을 주선해 주고 있다. 사회에 편입된 후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의료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주고 있으며,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편입을 적극 주선해 줌으로써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동 후원회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민간·종교단체 등과 연계하여 각종 생활상담·취업·결연 등 분야별로 특화된 지원을 해줌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한층 강화하였다.

새 법이 시행된 이후 이러한 정착지원 내용에 따른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현황

(1997.7-1998.12.31)

지 원 내 용	지원실적	지원금액	비 고
○ 신분안정지원 - 보호결정 - 취적·주민등록 지원	 138명 125명		
○ 생활안정지원 - 정착금등 지원 - 보로금 지급 - 주거지원(알선) - 생활보호 - 의료보호	 82세대 23명 75세대 82세대 91세대	 835백만원 1.130백만원 869백만원	
○ 자립·자활지원 - 학력인정 및 교육지원 - 자격인정 및 취업지원	 317건 13명	204백만원	
○ 교육·훈련지원 - 사회적응교육 실시 - 직업훈련 실시	 71명 49명	79백만원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50명	월5만원	

*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 중 생계곤란자 등 사회부적응자에 대한 각종 지원 실시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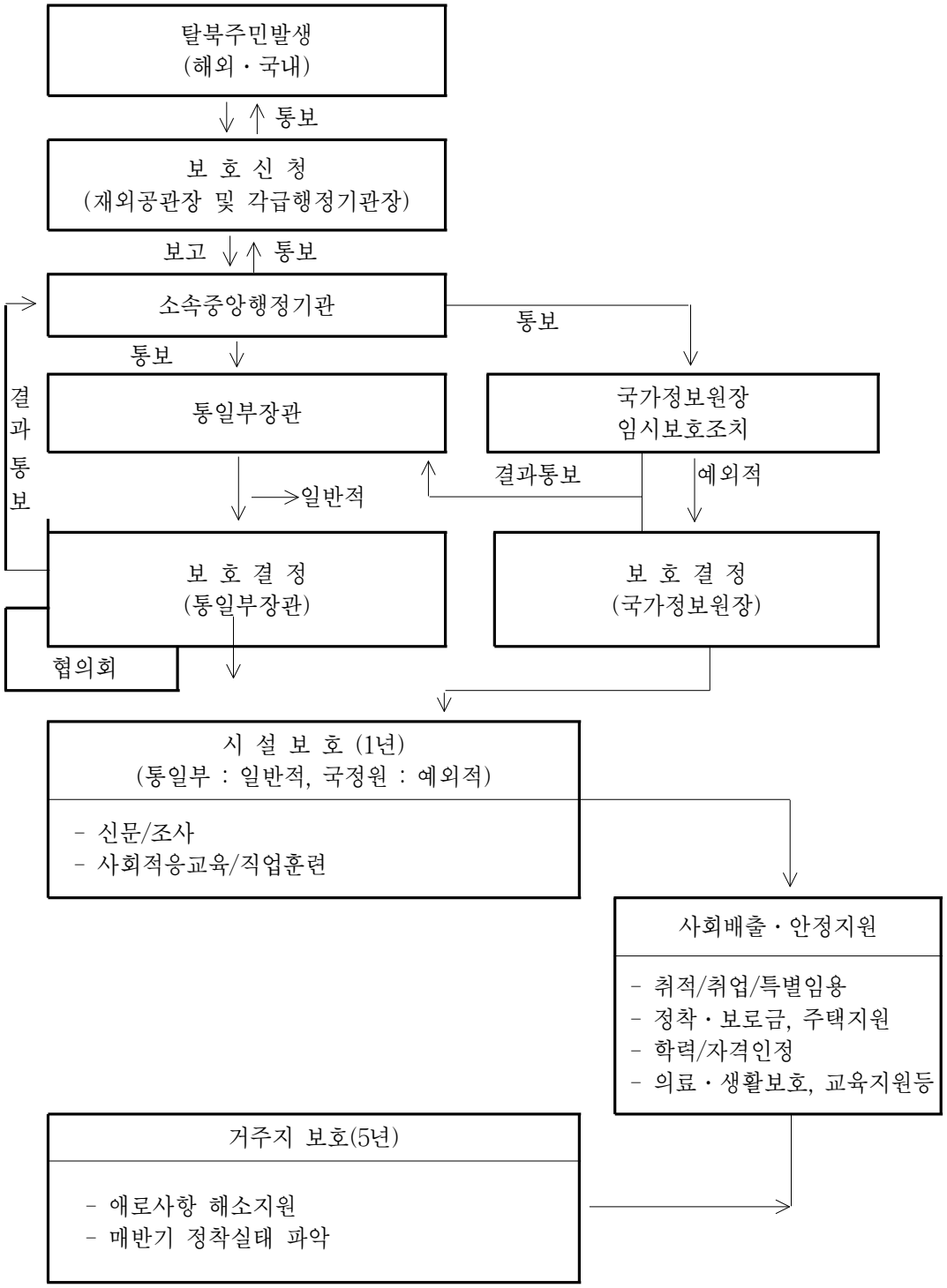

제4절 북한인권 개선문제

국제사회는 인권문제에 대해서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내용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세계인권선언」과「국제인권규약」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고 탄압해왔다. 이러한 인권탄압 실태가 국제인권기구의 각종 보고서 및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짐으로써 국내외적인 관심이 고조되었다.

정부로서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추진과 함께,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정보·자료수집 및 분석, 그리고 국제 인권기구 등을 통한 북한인권문제 개선노력도 병행해 왔다.

1. 북한의 인권실태

미국의「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연례보고서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세계에서 최악"(world's worst)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 인권기구 및 관련 NGO의 주요 보고서에 지적된 북한의 인권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엄격히 제한·통제하고 있다.

북한은 전주민을 계층별로 구분하고, 의식주 생활은 물론 진학, 직장선택 등에 있어서도 성분별로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헌법에서는 명목상 보장할 뿐이며, 자유로운 참정권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87년에 형법, 1992년과 1993년에 각각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등 인권과 관련한 제도적 변화를 도모하였으나, 여전히 사법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7년 귀순한 황장엽씨에 따르면, 북한은 "오히려 각 단위마다 설치된 비정규적 사회통제기구인「법무생활지도위원회」(1982년 12월 설치)가 사법기관을 대신"하여 주민의 일탈행위를 규제할 뿐만아니라, 지도층인사까지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거주·이전의 자유도 엄격히 통제해 왔으나, 1998년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75조)을 신설한 바 있다.

둘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경제적 침체의 지속과 식량난의 악화로 인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중앙배급제가 붕괴함에 따라 정상적인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기아 내지 영양실조 상태에 처해 있다. 보건·의료분야 등 사회보장실태도 의약품 부족, 치료시설의 낙후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무상치료는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사적 거래를 불허하고 개인의 소유권은 철저히 제약하고 있으며, 교육면에서는 김일성·김정일의 우상화 교육과 이념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일하면서 배우자」는 구호 아래 인민학교 어린이의 노동력도 착취하고 있다.

셋째, 공개처형이 합법화되고 있다. 1997년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북한의 공개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1970년 이후 1992년까지 최소한 23명을 공개처형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의 증언자들이 최소한 1건 이상의 공개처형을 목격한 점으로 미루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지만, 국제인권기구 보고서 및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는 10여개소의 수용소에 20여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는 모든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상태에서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다. 1994년 국제사면위원회는 승호리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 45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다섯째, 체포·송환된 탈북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식량난 등으로 북한주민들의 중국·러시아 등 제3국으로의 탈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지 공안당국과 북한 공안요원에 의한 체포 및 강제송환, 불법처형 등으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도 1996년 9월 발표한 「재러시아 북한난민 보고서」에서 탈북자에 대한 즉결처형 및 송환 후 처형에 대한 실태를 발표하여 탈북자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여섯째, 납북억류자 및 국군포로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 북한은 1955년 이후 1998년말 현재까지 3,745명을 강제 납북하여 이중 447명을 송환하지 않고 있다. 납북억류자 447명은 어부가 407명으로 가장 많으며, KAL기 승무원 및 승객이 12명, 해군 Ⅰ-2정 승무원이 20명, 기타 8명이다. 납북억류자 중 일부는 KAL기 승무원이었던 성경희, 정경숙과 같이 대남방송 등에 활용하거나, 1977년과 1978년에 납치한 5명의 고등학생들은 대남공작요원들의「이남화교육」교관으로 활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납북억류자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1994년 7월 30일 국제사면위원회 특별보고서「북한정치범에 관한 새로운 정보」에서도 확인되었다.

납북억류자 현황

(1955년~1998년말) (단위:명)

구 분	계	어 부	KAL	Ⅰ-2정	기 타
납 북	3,745	3,662	51	20	12
억 류	447	407	12	20	8

* 상기 통계는 제3국을 통한 미확인 납북억류자는 미포함.
* 상기 통계는 사망자도 포함.

한편 국방부 실사('93.7.15~'94.10.30)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19,409명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를 송환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미송환 국군포로의 존재는 조창호, 양순용, 장무환씨 등 귀환 국군포로와 함께 동용섭씨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1998년말 현재 136명의 생존추정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6.25 실종 국군포로 현황

(단위 : 명)

인 원	계	전 사 처 리	행불처리(미송환 국군포로로 추정)
	41,971	22,562	19,409
처리기준	o 전사 : 유가족 신고 및 민원에 의해 관련자료를 근거로 심의 결정 o 행불 : 유가족 신고 및 민원 등 제보가 없는 자, 실종자 명부와 병적부 대조시 명단확인이 곤란한 자		

* 중국이 '90년 발간한 『항미원조전사』는 한국·유엔군 포로 46,523명, 북한의 평양방송('50.12.30)은 65,000명으로 발표
* 실종 UN군 포로(정전당시 자료) : 총 6,944명(미군 5,178명 포함)
* 국방부『6.25행불자명부('97.10.1)』에 근거함. 이들중 행불자에 대해서는 '98.3~4월중 전사 처리함.

일곱째, 북송교포들은 대조총련 정책 및 대일본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 재일 한국인의 북송은 1959년 8월「일·북 적십자간 협정」에 의거하여 1959년 12월부터 1984년 7월까지 187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기간중 93,340여명이 북송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본인 처가 6,630여명(일본국적자는 1,830명)이었다. 북한은 북송교포 등에 대해서도 고향방문을 허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 1997년 들어 북송교포와「일본인 처」의 인권문제는 일·북 수교협상 및 대북 식량지원과 연계하여 2차에 걸친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이 이루어짐으로써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킨 사례도 있었다.

2.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이러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동안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요활동으로는 UN인권위원회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여 왔고, 동 위원회의 위원국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여 왔다는 점등을 들수있다. 특히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유엔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임되면서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인권 문제 개선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그리고 1995년 9월 28일에는 공노명 외무부장관이 제50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정부 각료로서 국제기구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1997년 9월 29일 유종하 외무부장관도 제52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거론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1994년 12월 통일원 출연 연구기관인 민족통일연구원에「북한인권정보자료센터」를 설치하여 북한인권 관련 정보·자료를 체계화하고, 1996년 12월 17일에는 통일원에 인도지원국을 신설하여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업무도 관장케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민간차원에서도 1994년 12월에「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설립에 이어, 1997년 5월에는「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그리고 1998년 5월에는「북한민주화촉진협의회」등이 설립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 NGO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인권과 관련된 국내 민간단체들은 국제 NGO와의 연대를 통한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공론화와 국내 인식기반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도 정보·자료의 협조 등을 통한 정보 교류체계의 구축 등 이들 단체의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와 민간차원의 노력과 함께 국제 인권기구 및 인권NGO에 의한 북한인권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1973년의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에 의해 처음 국제사회에 제기된 북한인권상황은 1988년 아시아워치(Asia Watch)와 미네소타 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처음으로 발간되면서 그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같은 국제 인권관련 NGO의 문제제기로, 국제인권기구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1990년 2월의 제46차 유엔인권위원회를 시발로 매년 계속되고 있다. 특히 1994년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대표 및 호주·노르웨이·스웨덴 등이 북한 당국에 대해 국제적 인권실상 조사활동에 대한 문호개방과 국제인권법규의 준수를 촉구하였고, 제51차 회의와 제53차 회의에서도 북한인권문제가 거론되었다.

한편 1997년 8월 21일 제49차 유엔인권소위원회(공식명칭은 차별방지·

소수민보호 소위원회)에서는 국제인권기구에서 최초로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동 결의안의 요지는 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식량지원의 증대 요청 ②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과 UN인권위에 대한 정기보고서 제출 및 국제인권기구의 활동에 협조 촉구 ③ 북한내 심각한 인권위반 및 인권상황 파악을 위한 국제사회의 방문 불가능에 대한 우려 표명 등이다.

이에 반발하여 북한은 8월 23일 국제인권규약 B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탈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나, 10월 29일 UN인권위원회는 「일반권고」를 통해, 북한의 B규약 탈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98년 4월의 제54차 UN인권위원회 국별 논의시에도 B규약 탈퇴문제, 정치범(양심수)문제, 강제노동,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북한의 인권문제가 거론된 바 있으며, 동년 8월 19일 제50차 UN인권소위원회에서도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1997년 결의에 비해 찬성 19, 반대 4, 기권 1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되었으며, 1999년 UN인권위원회에서도 토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98 결의안 요지>

- o 북한내 처형, 실종, 언론인·정치범 탄압 등에 대한 우려 표명 및 거주 이전의 보장 촉구
- o 북한당국에 대해 UN 등 국제인권감시기구의 북한내 활동 협조 촉구
- o 국제인권·구호기구들의 북한인권 및 식량상황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청
- o UN인권위 차기회의에서 북한인권 토의 권고, 불가능할 경우 차기 인권소위에서 동 문제 계속 토의

그밖에도 해리티지재단, 국제사면위원회, 케네디인권센터, 국제인권협회,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NED) 등의 NGO 인권보고서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지속적으로 인권개선을 촉구해 오고 있으며, 1998년에 처음 갖게된 EU와 북한간의 정치대화에서도, EU측은 대북 지원과 연계하여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제 6 장

통일부의 창설과 통일업무의 발전

제1절 통일부의 창설과 조직의 변천

1. 통일부의 창설

가. 창설의 배경 및 경위

1960년 4·19 혁명후 정당,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각계에서는 통일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통일문제를 장기적으로 연구·추진하기 위한 정부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해 11월초에 민주당에서 분당한 신민당이 통일방안에서 정부에 통일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 것이나, 장면 국무총리가 통일문제연구소 설치를 언급한 것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5·16후 억제된 민간차원의 통일논의는 1963년 정당활동이 재개되면서 다시 시작되었으며, 민주공화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은 창당과정에서 통일문제 연구를 위한 전문기구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1963년 9월 국민의 당은 외교·국방 기본정책에서 「국토통일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10월에는 박정희 공화당총재가 행정부내 통일문제 전담기구 설치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1964년에 들어와서도 민정당(民政黨)과 삼민회(三民會) 등이 통일문제 연구기관의 설치를 계속 주장하였다.

국회에서는 1964년 2월 19일 방일홍 의원외 19명의 의원이 통일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는 「국토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를 국회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1964년 3월 26일 변종봉 의원외 18명의 의원이 대통

령 직속하에 국무위원급이 장이 되는 「국토통일연구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196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국외에서의 중립화론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통일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공화당 이만섭의원의 남북이산가족면회소 설치주장 등 새로운 남북관계의 모색을 위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물론 여야 정당사이에서도 민간차원의 통일논의를 제도권내에 끌어들임으로써 국론분열을 방지하고 통일에 대한 제반준비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정부내에 통일문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국회는 1966년 7월 14일 제57회 국회 제24차 본회의에서 김동환의원외 10명의 의원이 제출한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o 위원장 : 서인석(공화당)
o 위 원 : 길전식, 이종극, 황호현, 이만섭, 신형식(이상 공화당)
유성권, 조윤형, 방일홍, 김상현(이상 민중당)

그 후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하는 등 본격적 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해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여론수집활동의 일환으로 국토통일연구기구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2회 개최하였다.

이 공청회에는 최문환 서울대총장 등 각계인사 10명이 참석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시책 마련을 요청하면서 통일문제 전담기구의 설치를 촉구하였다.

1967년 1월 19일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의 「5인 소위원회」는 공청회 등에서 나타난 의견을 토대로 통일문제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기구를 정부에 설치하되, 그 조직은 국무위원을 장으로 보하고 명칭은 국토통일원으로 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통일백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 민중당의 김대중의원은 '신설될 통일문제 전담기구의 장을 총리 내지는 부총리급으로 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1967년 1월 30일 제9차 국토통일연구 특별위원회는 5인 소위원회가 작성한 『통일백서』를 채택하여 1967년 2월 27일 제60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 보

고하였고, 본회의는 「국토통일연구 전담기구 설치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1968년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토통일원신설등에관한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고, 7월 4일 제66회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정부는 1968년 7월 24일 법률 제2041호로 이 법률을 공포하고 1969년 1월 29일 「국토통일원직제」를 제정, 1969년 3월 1일 기미독립선언 제5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마침내 국토통일원을 창설하게 되었다.

나. 창설의 의의

통일부의 창설은 국민들 사이에 일기 시작한 통일열망을 배경으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처음 마련하였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도 개원식에서의 유시를 통해 통일부의 창설의의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의 중지를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인 토론의 광장이 되도록 문호를 널리 개방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론을 통합하고 통일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토통일이 단시일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보다 긴 안목으로 국력을 신장하고 국내정세의 추이를 살피면서 통일에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부의 창설의의는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첫째, 통일부는 통일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초당적 이해와 협조 아래 창설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통일부의 창설로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고취시키는 구심체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분단이후 정부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실질적 준비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물론 당시에 통일이 가시권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통일에 대비한 사전 계획 및 준비의 필요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통일부 창설을 앞두고 있던 1969년 1월 15일 조선일보의 사설은 이러한 분위기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통일원에서는 꾸준한 조사연구를 통해 국토통일을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통일의 시기가 닥쳐오면 당연히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국민적 초당적 행동체의 일종의 사무국 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통일부 창설은 그동안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통일관련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통일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개원식에서 신태환 초대장관은 개식사를 통해, "국토통일원의 발족은 바로 온국민의 조국통일에의 염원과 이를 향한 확고부동한 우리 의지의 구체적이고 보다 전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의 벅찬 감격을 억누를 수 없다...앞으로 국토통일원은 현재 정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는 통일을 위한 제반업무와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조직 및 기능의 변천

가. 본 부

1968년 7월 24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따라 1969년 1월 29일 국토통일원직제(대통령령제3754호)가 제정되어 통일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통일방안, 통일 이후의 제반정책 및 통일에 관한 홍보선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 직제에 따라 발족된 국토통일원은 3실1과 7담당관, 45명의 정원으로 1969년 3월 1일 서울 장충동에 소재한 한국반공연맹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개원하였다.

(1969.1.29 직제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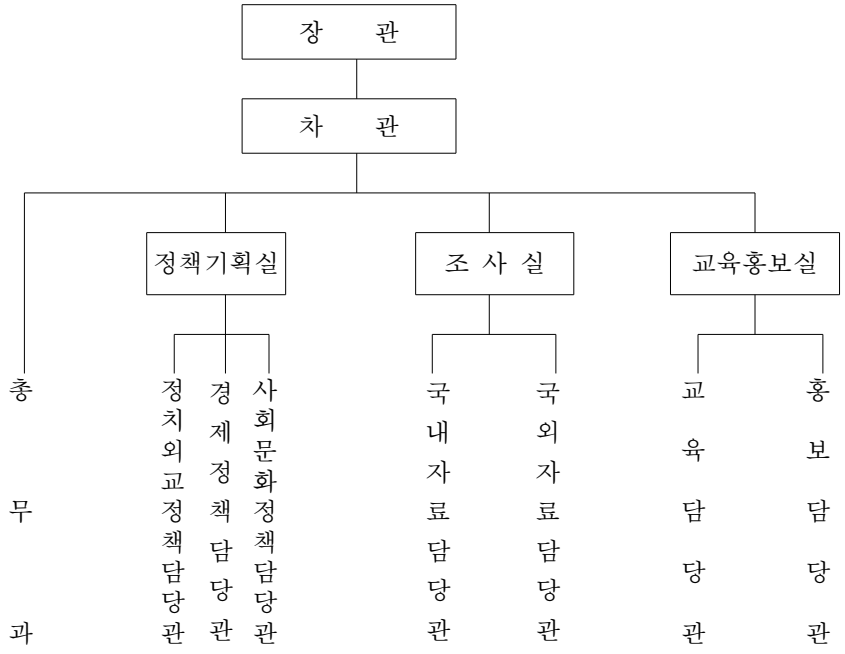

구분	계	장관	차관	1급	2급	4급	5급	6급	7급	고용직
정원	45	1	1	3	7	9	3	5	2	14

(1) 1970년대

1970년대 조직변천은 첫째, 북한문제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기능의 강

화를 통해 통일정책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고, 둘째 북한관계 자료의 과학적인 수집·정리를 통해 효율적 통일업무 지원을 위한 자료관리 기능을 점차적으로 확충하였으며 셋째, 통일문제에 관한 교육홍보기능을 강화하여 국론분열을 방지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모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 제1차 개정 (1969. 12. 12 대통령령제4453호)

o 기구를 3실 1과 11담당관(2급8, 4급3)으로 개편, 기획관리관(2급)을 신설하고, 그 밑에 기획예산・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각 4급)을 두고 정원 32명(2급1, 4급3, 5급19, 6.7급6, 고용직3)을 증원하였다.

(1969.12.12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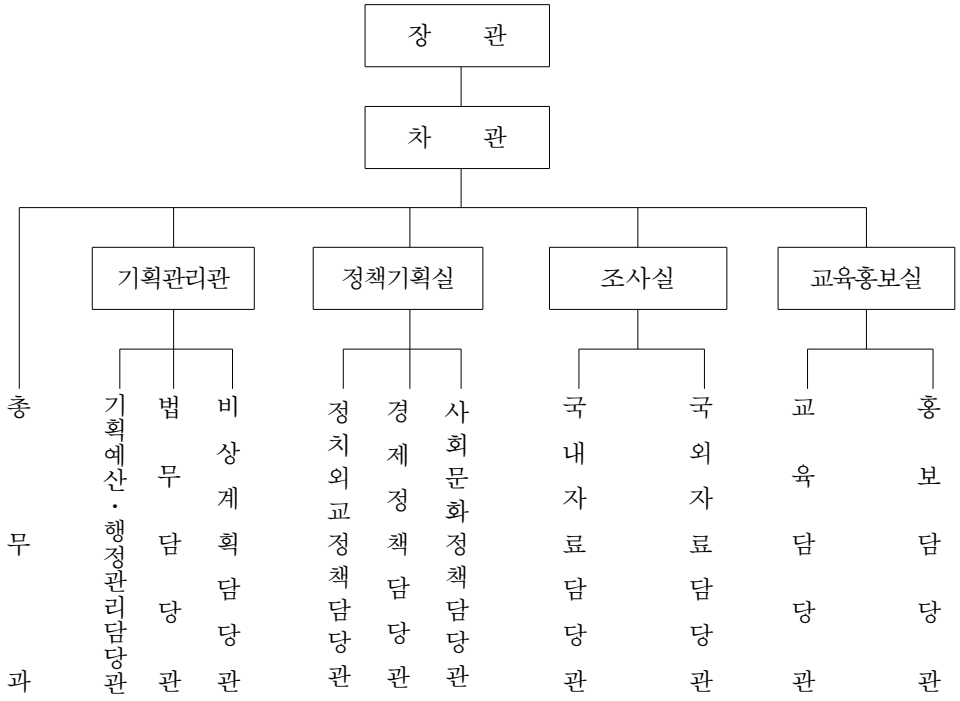

구분	계	장관	차관	1급	2급	4급	5급	6급	7급	고용직
정원	77	1	1	3	8	12	22	10	3	17

□ 제2차 개정 (1971. 8. 7 대통령령제5744호)

o 기구와 정원은 변동없으며 기획관리관실 공무원중 별정직 11명(4급2, 5급3, 6.7급6)을 일반직으로 조정하였다.

□ 제3차 개정 (1972. 2.15 대통령령제6003호)

o 정부의 공무원 정원 5% 감축 계획에 의해 정원 3명(5급2, 6급1)을 감축하였다.

□ 제4차 개정 (1972. 6.12 대통령령제6240호)

o 북한관계 자료의 과학적인 수집·정리와 각종 대비책의 사전정비를 위해 기구는 기획관리관 밑에 행정관리담당관(4급), 정책기획실에 종합조정관(2급), 조사실에 자료관리담당관(4급) 등 3개 담당관을 신설하고, 정원 35명(2급1, 3급5, 4급10, 5급10, 6.7급4, 고용직5)을 증원하였다.

□ 제5차 개정 (1973. 3. 28 대통령령제6604호)

o 통일에 관한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구와 정원은 변동없이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4급1명을 증원(7급1 감축) 하였다.

□ 제6차 개정 (1973.12.12 대통령령제6953호)

o 기구와 정원은 변동없이 북한문제 조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일반직 2명(5급1, 7급1)을 감축하고 별정직 2명(5급)을 증원하였다.

□ 제7차 개정 (1974.10.15 대통령령제7281호)

o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구를 3실 1국 3과 14담당관(2급10, 4급4)으로 개편하고, 정원 3명(6급)을 감축하였다.

- 차관 밑에 자료관리관(2급)을 신설
- 기획관리관(2급)을 기획관리실(1급)로 확대 개편하고, 실장밑에 4개 담당관을 둠.
- 정책기획실장 밑에 있는 정치외교정책담당관, 경제정책담당관 및 사회문화정책담당관의 명칭을 각각 제1담당관, 제2담당관, 제3담당관으로 변경

- 조사실은 그 명칭을 조사연구실로 변경하고, 실장밑에 있는 3개 담당관(국내자료담당관, 국외자료담당관, 자료관리담당관)을 폐지하고, 5개 연구관(정치외교연구관, 경제과학연구관, 사회문화연구관, 공산권연구관, 정세분석연구관)을 신설
- 교육홍보실(1급)을 교육홍보국(2급)으로 축소 개편하고, 교육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각각 교육계획과와 홍보과로 조정

(1974.10.15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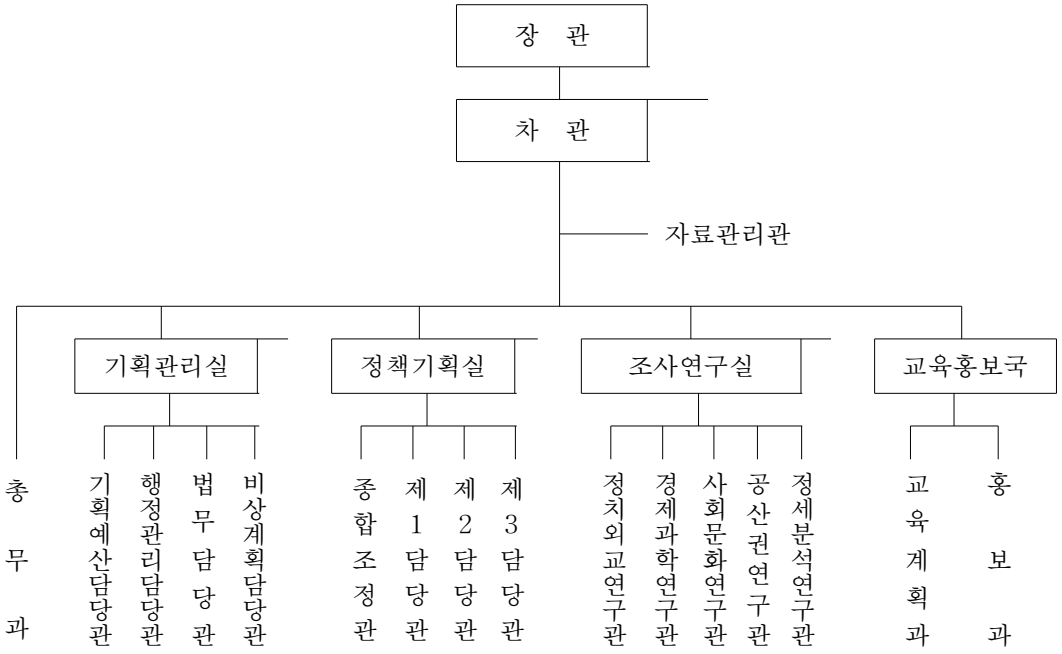

구분	계	장관	차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고용직
정원	105	1	1	3	9	5	23	28	10	4	21

□ 제8차 개정 (1975. 11. 20 대통령령제7878호)

o 통일교육 및 홍보에 관한 정책 및 전략개발 기능의 강화와 정보자료의 수집, 관리, 분석 등 제반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구를 3실 2국 6과 15담당관(2급12, 4급3)으로 개편하고, 정원 10명(고용직)을 증원하였다.

- 기획관리실장 밑에 있는 비상계획담당관(4급)을 폐지하고, 차관 밑에 비상계획관(2급)을 신설
- 정책기획실장 밑에 있는 종합조정관을 기획관리실장 밑으로 조정하고, 제4담당관(3급)을 신설
- 조사연구실장 밑에 있는 정세분석연구관(3급)을 폐지하고, 군사연구관을 신설
- 교육홍보국장 밑에 심리전담당관(3급)을 신설
- 차관 밑에 있는 자료관리관(2급)을 폐지하고 자료관리국으로 개편, 그 밑에 조사과, 관리과 및 분석과를 신설

(1975.11.20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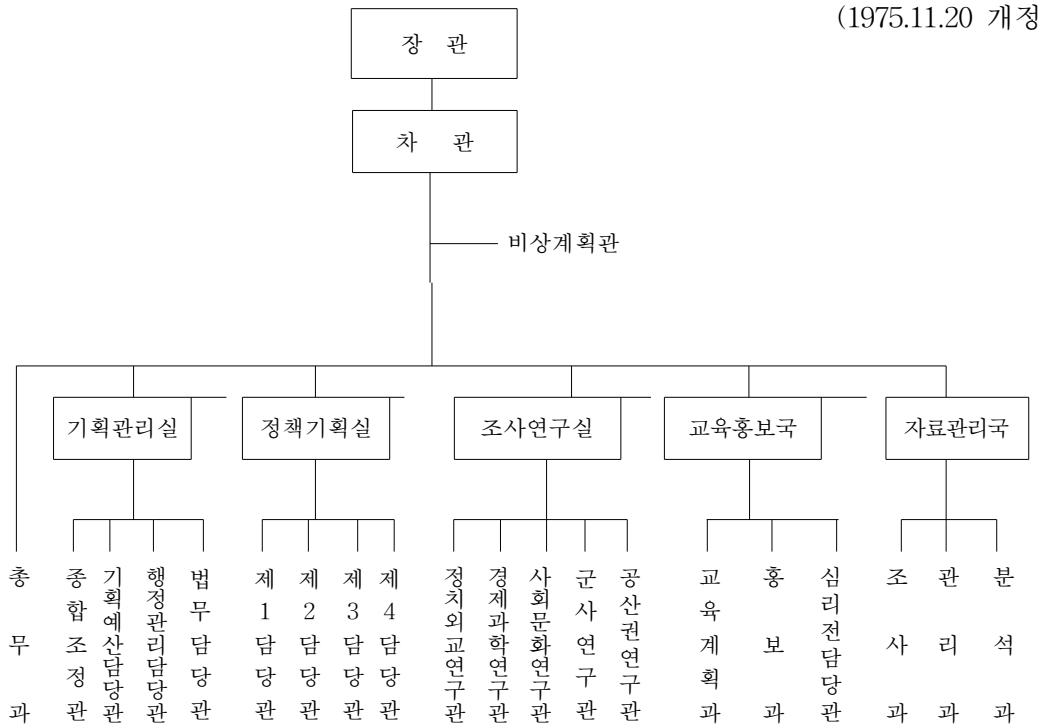

구분	계	장관	차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고용직
정원	115	1	1	3	9	5	23	28	10	4	31

□ 제9차 개정 (1977. 9. 20 대통령령제8698호)

o 기구와 정원은 변동없이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감사기능을 추가하였다.

□ 제10차 개정 (1977. 10. 5 대통령령제8713호)

o 북한실태와 공산권 및 분단국 동향에 관한 연구를 보다 적극화하며, 민간역량의 조직활용을 위하여 기구를 4실 1국 3과 19담당관(2급15, 4급4)으로 개편하고, 정원 21명(1급1, 2급2, 4급4, 5급10, 6급4)을 증원하였다.

- 정책기획실 담당관의 명칭을 연구관으로 변경하고 제5연구관을 신설
- 교육홍보국(2급)을 교육홍보실(1급)로 확대 개편하고, 교육계획과의 명칭을 교육담당관으로, 홍보과와 심리전담당관을 통합하여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기획담당관과 운영담당관을 신설
- 조사연구실에 있는 군사연구관의 명칭을 정치군사연구관으로 변경
- 자료관리국 분석과를 시사정보과로, 조사과를 자료조사담당관으로 그 명칭을 각각 변경
- 기획관리실의 종합조정관을 폐지

(1977.10.5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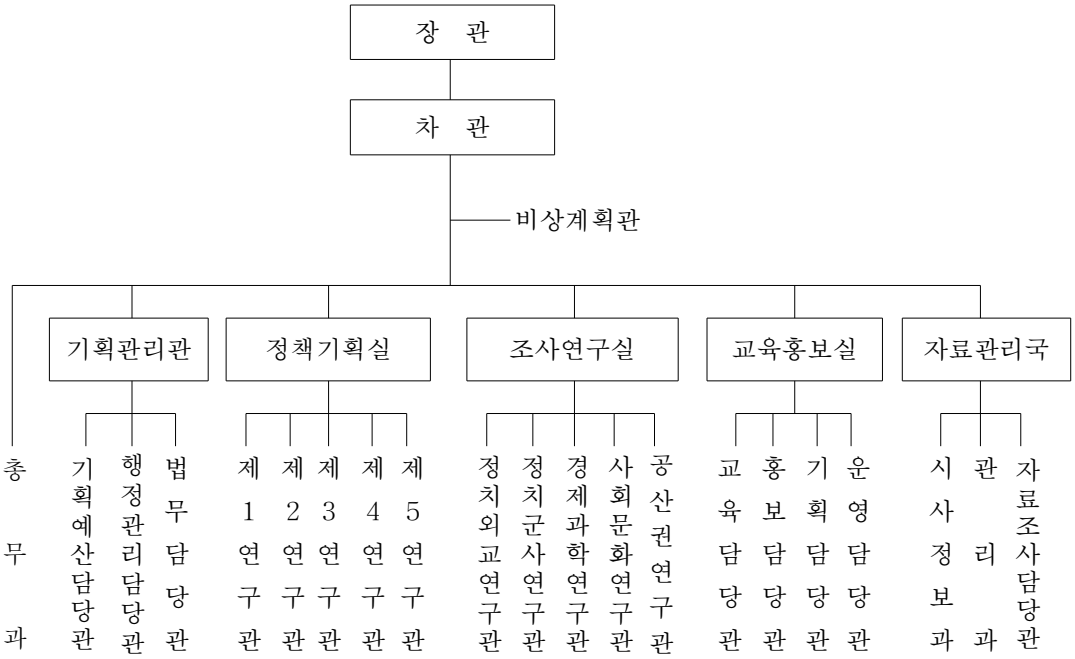

구분	계	장관	차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고용직
정원	136	1	1	4	11	5	27	38	14	4	31

□제11차 개정 (1978.9.23 대통령령제9166호)

o 기구변동 없이 정원 5명(고용직)을 증원하였다.

(2) 1980년대

1980년대는 통일문제가 1970년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첫째, 국민의 다양한 통일욕구의 분출에 따라 1980년대 중반이후 통일논의가 활성화되었다. 둘째, 국제적으로 냉전체제가 와해 조짐을 보이면서 동서간의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공산진영의 개혁과 개방추세도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같은 통일환경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남북대화업무를 이관받게 됨으로써 대북정책업무가 국토통일원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일관성있게 체계화되었다.

□ 제12차 개정 (1980. 2. 1 대통령령제9748호)

o 북한방송 수신기능 강화차원에서 기구변동 없이 정원 7명(7급2, 고용직5)을 증원하였다.

□ 제13차 개정 (1980. 6. 21 대통령령제9924호)

o 통일연수소에 국민정신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함에 따라 본부 기구를 개편하여 1개 담당관(정책기획실 제5연구관)을 폐지하고, 정원 2명(2급1, 4급1)을 감축하였다.

□ 제14차 개정 (1981. 11. 2 대통령령제10603호)

o 정부조직정비 기본방향에 따라 기구를 2실 1국 3과 15담당관(2급11, 4급4)으로 개편하고, 정원 11명(△1급2, △2급1, △3급2, △4급3, 기능직19)을 증원하였다.

- 기획관리실장(1급)을 기획관리관(2급)으로 조정
- 정책기획실(4개담당관)을 폐지하여 조사연구실에 통합하고, 정책기능을 남북대화사무국 정책연구부에 이관

(1981.11.2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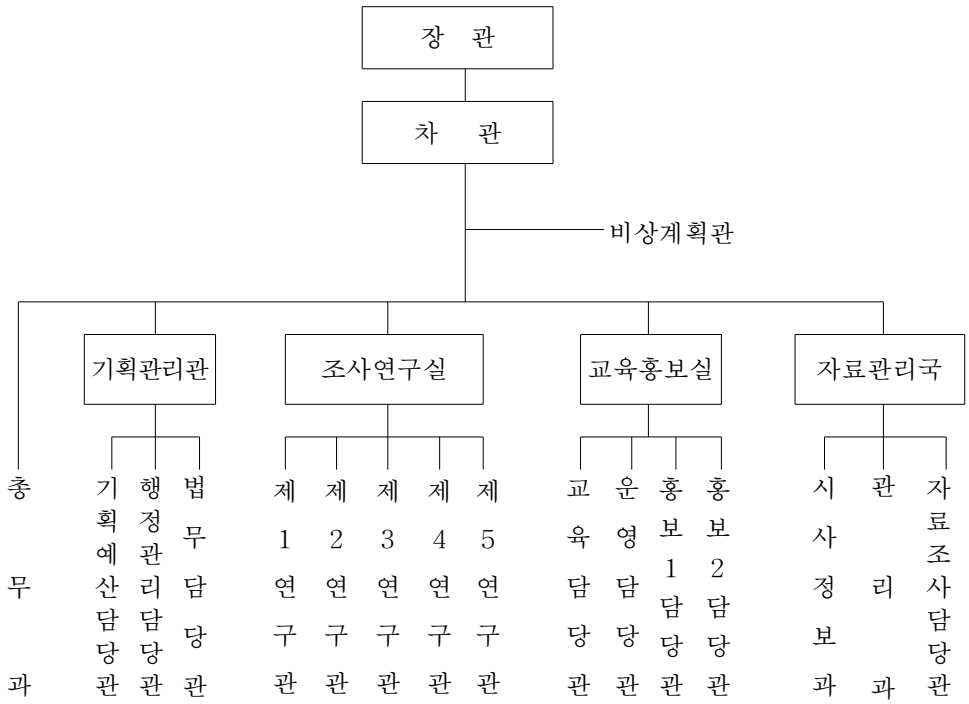

구분	계	정무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정원	157	2	2	9	3	22	38	15	6	60

□ 제15차 개정 (1983. 3. 30 대통령령제11085호)

o 기구와 정원은 변동없이 일부 별정직(2급1, 4급3, 5급12)을 일반직과 복수직으로 조정하였다.

□ 제16차 개정 (1983. 10. 7 대통령령제11238호)

o 기구변동 없이 자가운전제 실시로 고용직 2명을 감축하였다.

□ 제17차 개정 (1985. 12. 31 대통령령제11834호)

o 청사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구변동 없이 청사관리요원 18명을 감축하였다.

□ 제18차 개정 (1987. 12. 31 대통령령제12341호)

o 기구변동 없이 고용직(운전원) 8명을 기능직으로 조정하였다.

□ 제19차 개정 (1989. 6. 17 대통령령제12733호)

o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공무원 전환방침에 따라 기구변동 없이 고용직 32명을 기능직으로 조정하였다.

□ 제20차 개정 (1989. 7. 24 대통령령제12764호)

o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7·7특별선언」을 계기로 통일정책개발 및 남북교류협력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기구를 2실 2국 7과 16담당관(2급11, 4급5)으로 개편하고, 정원 56명(2급2, 4급9, 5급11, 6.7급 25, 기능직9)을 증원하였다.

(1989.7.24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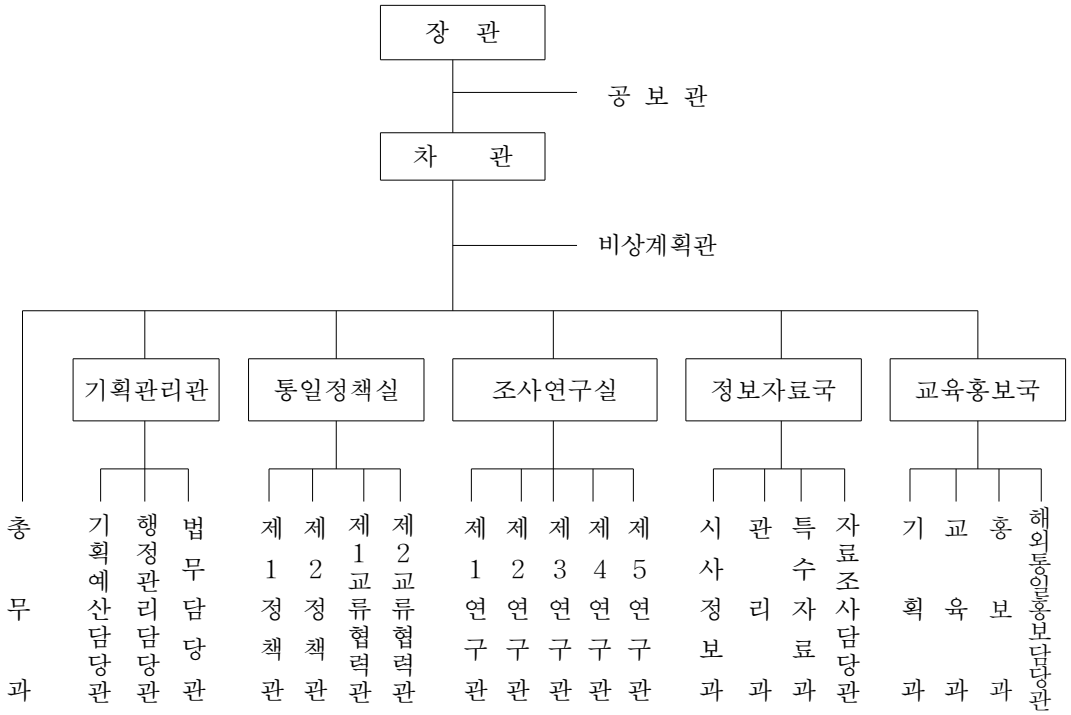

구분	계	정무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정원	193	2	2	11	3	31	49	27	19	49

- 차관밑에 공보관(2급)을 신설
- 통일정책실을 신설하고, 그밑에 제1정책관, 제2정책관, 제1교류협력

관 및 제2교류협력관(각 2급)을 둠.
- 교육홍보실(교육·운영·홍보1·홍보2담당관)을 폐지하고, 교육홍보국(2급)을 신설하며 그 밑에 기획과, 교육과, 홍보과 및 해외홍보담당관를 둠.
- 정보자료국에 특수자료과를 신설

(3) 1990년대

1990년대는 국내외적 통일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다. 외적으로는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소련·중국과 수교하게 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정착과 대북정책 추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내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발효와 북한식량난에 따른 대북지원 및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등에 따라 남북관계도 크게 변화하였다.

이처럼 통일문제가 다변화되면서 통일업무의 기능이 중요시됨에 따라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1990.12.27 법률제4268호)하여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통일원으로 변경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였으며,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관계 각부의 총괄·조정기능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말 밀어닥친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작은 정부」의 구현을 위해 정부조직이 대폭개편됨에 따라 통일원(부총리급)이 통일부(장관급)로 다시 조정되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국으로 축소 개편되어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통합되었다.

□ 제21차 개정 (1991. 2. 1 대통령령13269호)

o 정부방침에 의해 본부직제에 소속기관직제를 통합 규정함에 따라, 통일연수원직제와 남북대화사무국직제는 폐지되었다.

□ 제22차 개정 (1991. 7. 1 대통령령제13418호)

o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의 제정·시행(1990.8.1)으로 인한 업무의 증가에 따라 기구를 3실 2국 11과 14담당관(2급8, 4급6)으로 개편하고, 정원 28명(1급1, △2.3급3, 5급7, 6.7급18, 기능직5)을 증원하였다.
- 차관 밑에 감사담당관(4급)을 신설

- 기획관리관을 기획관리실로 개편하되, 실장(1급)의 정원은 남북대화사무국의 상근대표(1급) 정원 1명을 상계
- 통일정책실에 제3정책관(2급)을 신설하고, 제1교류협력관 및 제2교류협력관(2급)을 폐지하여 교류협력국으로 개편하고, 그밑에 총괄과, 교류1과, 교류2과 및 협력과를 둠.
- 조사연구실과 정보자료국을 통합하여 정보분석실로 개편하고, 정보분석실에 제1분석관, 제2분석관 및 제3분석관(각2급)과 시사정보과, 관리과, 특수자료과 및 자료조사담당관(각4급)을 둠.

(1991.7.1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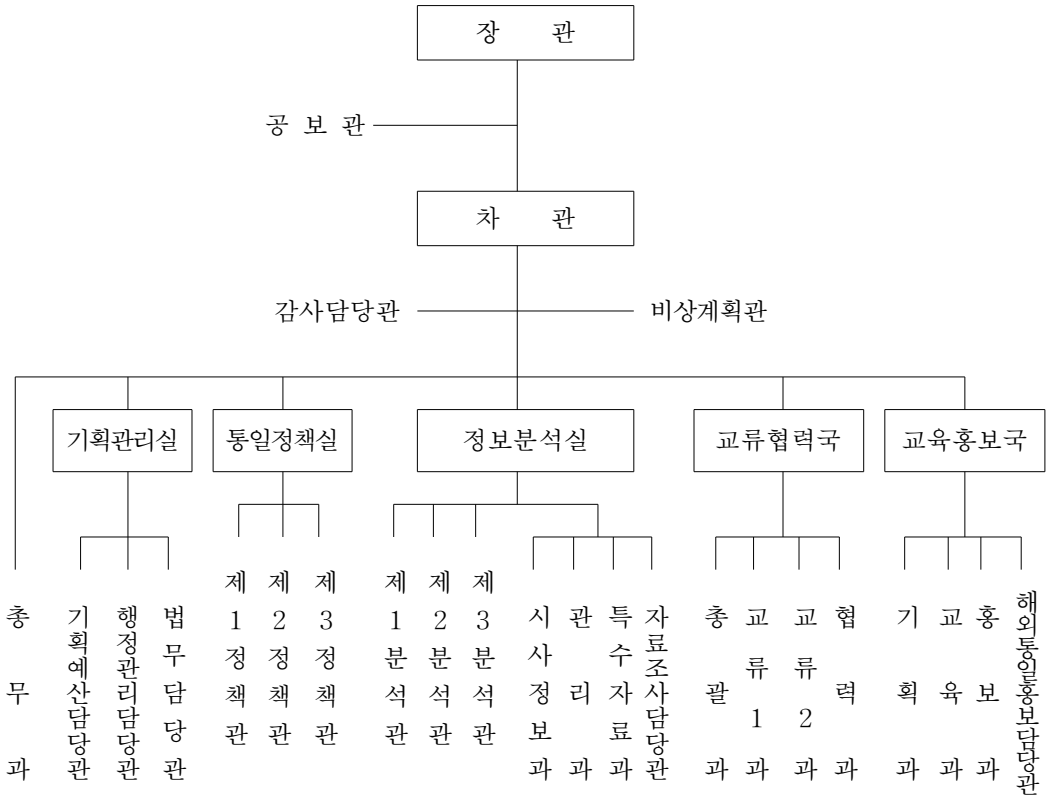

구분	계	정무직	1급	2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정원	221	2	3	11	31	56	37	27	54

□ 제23차 개정 (1992. 10. 30 대통령령제13750호)

o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92.2.19)에 따른 업무의 증가로 기구를 개편하고, 정원 16명(3급1, 4급1, 5급4, 6.7급9, 기능직1)을 증원하였다.

- 교류협력국장 밑에 협력관(3급) 1인을 신설하고, 교류1과와 교류2과를 교류1과, 교류2과 및 교류3과로 개편함.

□ 제24차 개정 (1994. 1. 17 대통령령 제14111호)

o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구변동 없이 5급 5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였다.

□ 제25차 개정 (1995. 4. 12 대통령령 제14576호)

o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구변동 없이 4급 3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5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였다.

□ 제26차 개정 (1996. 6. 29 대통령령 제15038호)

o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구변동 없이 4급 2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4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각각 조정하고, 실무기획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6.7급 4명을 감축하여 그중 3명을 5급으로 조정하고, 소속기관의 4급 1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2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고, 정원관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소속기관별 정원을 통합 운영토록 하였다.

□ 제27차 개정 (1996. 12. 17 대통령령제15180호)

o 통일정책의 수립·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대북지원·이산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 기구를 3실 2국 25담당관(2.3급9, 4급16)으로 개편하고, 정원 10명(△4급1, 5급11)을 증원하되 남북회담사무국 정원으로 상계하였다.

- 감사담당관(3.4급)을 감사관(2.3급)으로 조정하고, 공보관 및 감사관밑에 각각 4급 1명을 보강
- 통일정책실에 통일정책의 수립·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총괄과, 정책기획과, 정책1담당관, 정책2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제3정책관을 폐지

- 정보분석실의 관리과, 특수자료과, 자료조사담당관을 각각 폐지하고, 조사관리과를 신설
- 교육홍보국(기획과, 교육과, 홍보과, 해외홍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정책기능은 통일정책실로, 집행기능은 통일교육원으로 각각 이관
- 인도지원국을 신설하여 인도1과, 인도2과, 지원1과 및 지원2과를 둠.

(1996.12.17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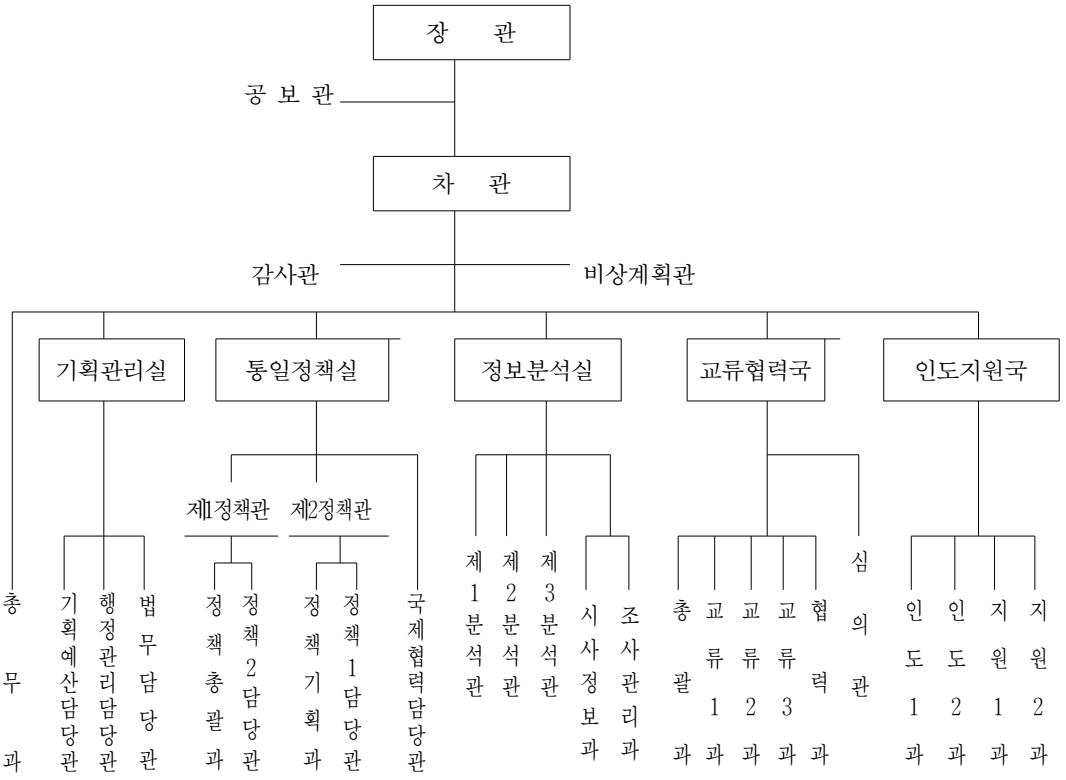

구분	계	정무직	1급	2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기능직
정원	243	2	3	11	1	5	26	14	60	42	27	52

□ 제28차 개정 (1997. 8.13 대통령령제15462호)

o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인력 감량화 추진을 위한 실무인력 조정계획에 따라, 기구변동 없이 5급 3명을 증원하고 6.7급 8인을 감축하였다.

□ 제29차 개정 (1998. 2.28 대통령령제15709호)

o 「국민의 정부」의 출범에 의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조직법(1998.2.28 법률제5529호)의 개정으로 통일원(부총리)을 통일부(장관)로 개편함에 따라 조직을 감량화하고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구를 축소 개편하였으며, 정원 20명(△2급3, △4급3, 5급2, △6.7급12, △기능직4)을 감축하였다.

(1998.2.28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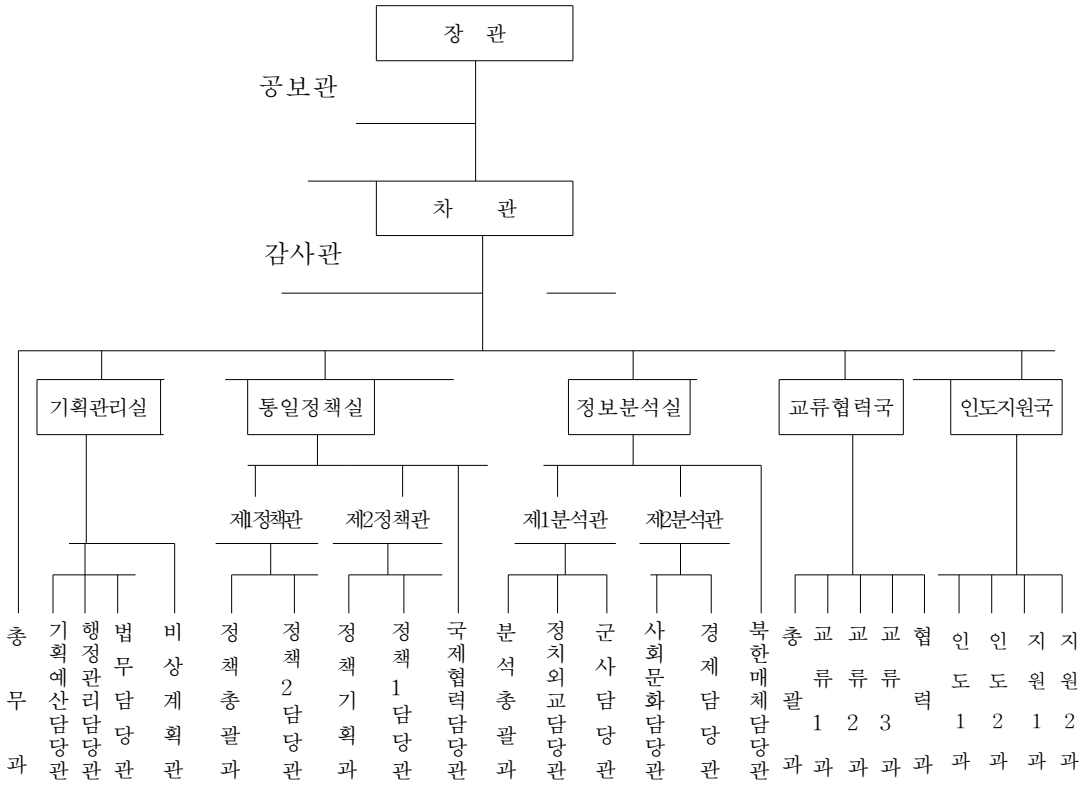

구분	계	정무직	1급	2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기능직
정원	223	2	3	8	1	5	23	14	62	36	21	48

- 부총리비서실장(2급)을 폐지
- 감사관의 직급을 2급에서 3급으로 하향조정
- 차관 밑에 두었던 비상계획관(2급)을 기획관리실장 밑으로 조정

- 정보분석실의 제3분석관을 폐지하고, 분석관 중심제에서 과·담당관제(2.3급2, 4급6)로 개편하여 분석총괄과, 정치외교담당관, 군사담당관, 사회문화담당관, 경제담당관, 북한매체담당관을 신설
- 교류협력국 심의관(3급)을 폐지

□ 제30차 개정 (1998. 12. 31 대통령령제16004호)

o 기구변동 없이 고용직 1명을 감축하였다.

나. 소속기관

(1) 통일교육원

정부는 변화하는 국내외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70년 8월 15일 「평화통일 구상」을 내외에 천명하여, 남북한간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였으며, 1971년 8월에는 남북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고, 마침내 남북간에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평화통일이 정부의 주요정책과제로 등장하고 국민들에게도 통일문제가 하나의 현실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1972년 4월 22일 통일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실시를 분장업무로 하는 직제(대통령령제6158호)를 제정하게 됨에 따라 발족하게 된 통일연수소는 기구를 2과(서무과, 교무과)로, 정원은 30명으로 하고 1972년 5월 1일 서울 장충동에 소재한 한국반공연맹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개소하게 되었다.

□ 제1차 개정 (1972. 5. 12 대통령령제6169호)

o 기구변동 없이 소장 직급을 2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였다.

□ 제2차 개정 (1974. 10. 15 대통령령제7282호)

o 기구변동 없이 정원 5명(교수2, 6급3)을 증원하였다.

□ 제3차 개정 (1976. 12. 31 대통령령제8396호)

o 통일연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수부 신설 등 기구를 1부 3과로 개편하고, 정원 34명(2급1, 교수6, 4급1, 5급4, 6급3, 고용직19)을 증원하였다.

(1976.12.31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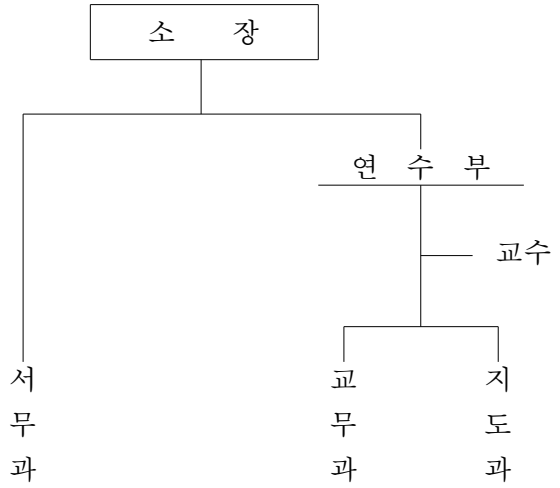

구분	계	1급	2급	교수	4급	5급	6급	7급	고용직
정원	69	1	1	11	3	8	14	8	23

□ 제4차 개정 (1978. 9.23 대통령령제9166호)

o 기구변동 없이 정원 1명(고용직)을 증원하였다.

□ 제5차 개정 (1980. 6.21 대통령령제9925호)

o 기구는 연수부를 제1연수부와 제2연수부로 개편하고, 정원 13명(2급 1, 4급2, 5급4, 6급3, 고용직3)을 증원하였다.

□ 제6차 개정 (1981. 11.2 대통령령제10604호)

o 기구는 제1연수부를 교수부(교학과, 관리과)로, 제2연수부를 운영부(연수과, 지도과)로 개편하고, 정원 4명(고용원)을 증원하였다.

(1980. 6. 21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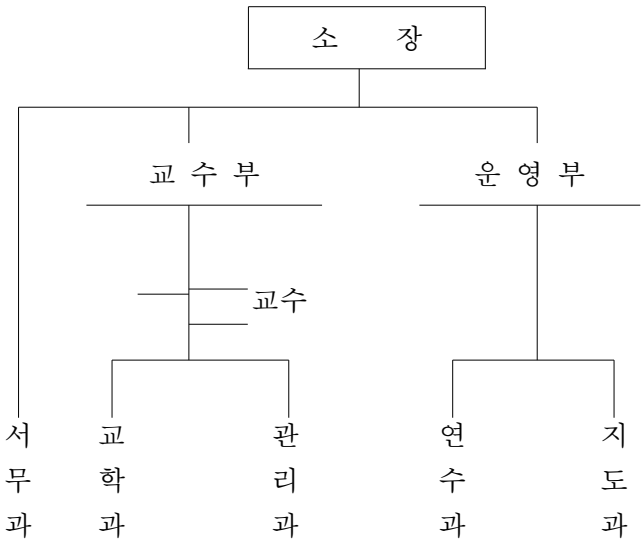

구분	계	1급	2급	교수	4급	5급	6급	7급	고용직
정원	87	1	2	11	5	12	17	8	31

□ 제7차 개정 (1983.10. 7 대통령령제11238호)

o 기구변동 없이 자가운전제 실시로 정원 1명(고용직)을 감축하였다.

□ 제8차 개정 (1986.12.26 대통령령제12012호)

o 통일연수소 명칭을 통일연수원으로 변경하고, 기구는 일부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과를 신설하였으며, 정원 15명(4급1, 5급3, 6.7급6, 기능직3, 고용직2)을 증원하였다.

- 운영부를 관리부로, 그밑에 있는 지도과를 평가과로 개편하고 운영과를 신설
- 교수부 소속의 관리과를 관리부 소속으로, 관리부 소속의 연수과를 교수부 소속으로 각각 개편

(1986.12.26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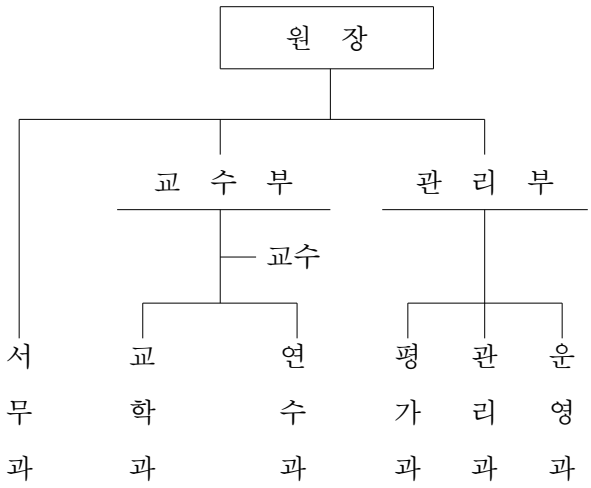

구분	계	1급	2급	교수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고용직
정원	101	1	2	11	6	15	20	11	3	32

□ 제9차 개정 (1987. 12. 31 대통령령제12341호)

o 기구변동 없이 고용직(운전원) 4명을 기능직으로 조정하였다.

□ 제10차 개정 (1989. 6. 17 대통령령 제12733호)

o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공무원 전환방침에 따라 기구변동 없이 고용직 28명을 기능직으로 조정하였다.

※ 1991. 2. 1 소속기관직제가 본부직제와 통합, 이후 본부직제에 포함

□ 통일원직제 제22차 개정 (1991. 7. 1 대통령령제13418호)

o 통일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구변동 없이 정원 17명(교수5, 5급 1, 6.7급4, 8급1, 기능직6)을 증원하였다.

□ 통일원직제 제23차 개정 (1992. 10. 30 대통령령제13750호)

o 기구변동 없이 교수 2명을 감축하였다.

□ 통일원직제 제27차 개정 (1996. 12. 17 대통령령제15180호)

o 통일연수원의 명칭을 통일교육원으로 변경하고, 기구를 3부 7과로 개편하며, 정원 13명(교수2, 2급1, 4급2, 5급3, 6급4, 기능직1)을 증원하였다.

- 관리부(평가과, 관리과, 운영과)를 폐지하고, 기획지원부(서무과, 기획과, 교육발전담당관)를 신설
- 교수부를 교육1과, 교육2과 및 교육관리담당관으로 개편
- 홍보부를 신설하여 종전 관리부의 운영과를 관장하고 홍보담당관을 신설

(1996.12.17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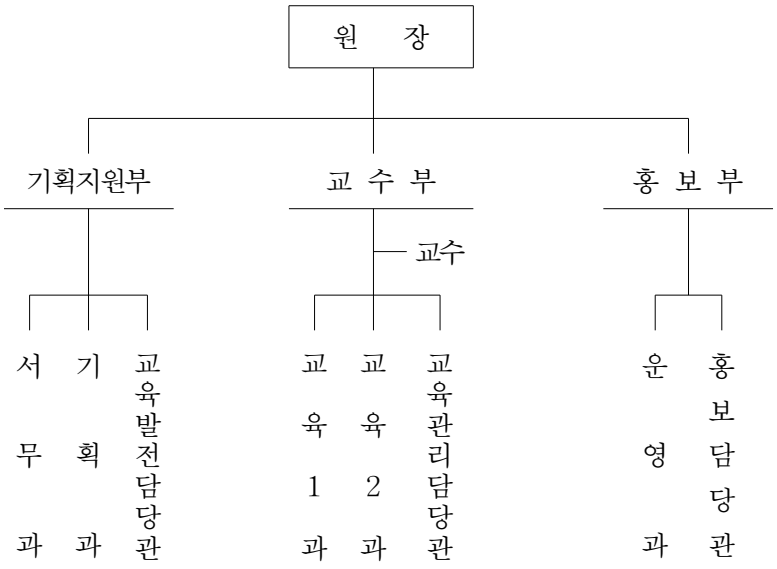

구분	계	1급	2급	교수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기능직	고용직
정원	135	1	3	16	1	7	1	18	28	12	1	47

□ 통일부직제 제29차 개정 (1998. 2. 28 대통령령제15709호)

o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지원부의 교육발전담당관을 기획과에 통합하고, 교수부의 교육관리담당관을 교육지원담당관으로 개편하여 기획지원부에 소속하게 하고, 정원 8명(교수2, 4급1, 7급1, 8급1, 기능직3)을 감축하였다.

(1998.2.28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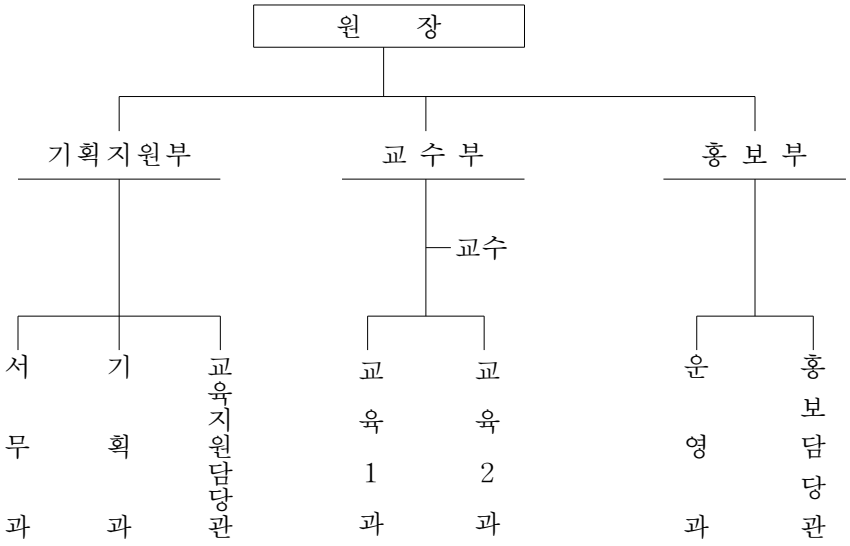

구분	계	1급	2급	교수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기능직
정원	119	1	3	14	1	6	2	17	28	11	36

□ 통일부직제 제30차 개정 (1998. 12. 31 대통령령제16004호)

o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정비계획에 의하여 기구를 축소 개편하고, 정원 29명(2급1, 교수5, 4급2, 5급2, 6.7급7, 기능직12)을 감축하였다.

- 기획지원부(서무과, 기획과, 교육지원담당관)를 폐지하고, 교수부의 교육1과와 교육2과를 기획과와 교육과로 각각 개편
- 기획지원부의 서무과를 지원관리과로 개편

(1998.12.31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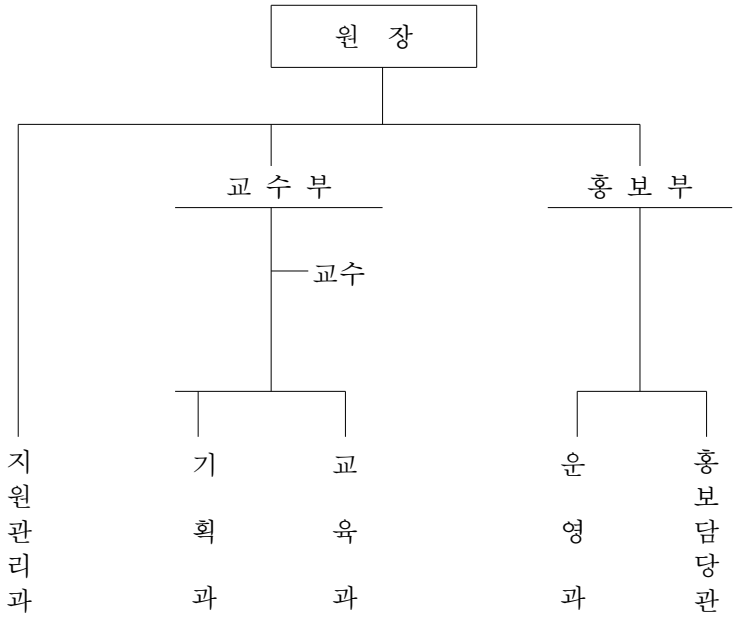

구분	계	1급	2급	교수	3.4급	4급	4.5급	5급	6.7급	기능직
정원	90	1	2	9	1	4	2	15	32	24

(2) 남북회담사무국

1970년대부터 남북한간에 여러 형태의 대화가 진행되었으나 통일정책업무와 남북대화추진업무가 각기 다른 기관에 의하여 분장됨에 따라 통일업무 수행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국가안전기획부에 소속되었던 남북대화사무국을 국토통일원으로 이관하게 되었다.

1980년 10월 20일 남북대화사무국 직제가 제정(대통령령제10046호)됨에 따라 발족하게된 남북대화사무국은 국장밑에 정책조정관, 공보관과 3부 7과를 두고, 정원은 161명으로 하며,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현재의 회담사무국 건물을 인수하여 개국하였다.

(1980.10.20 직제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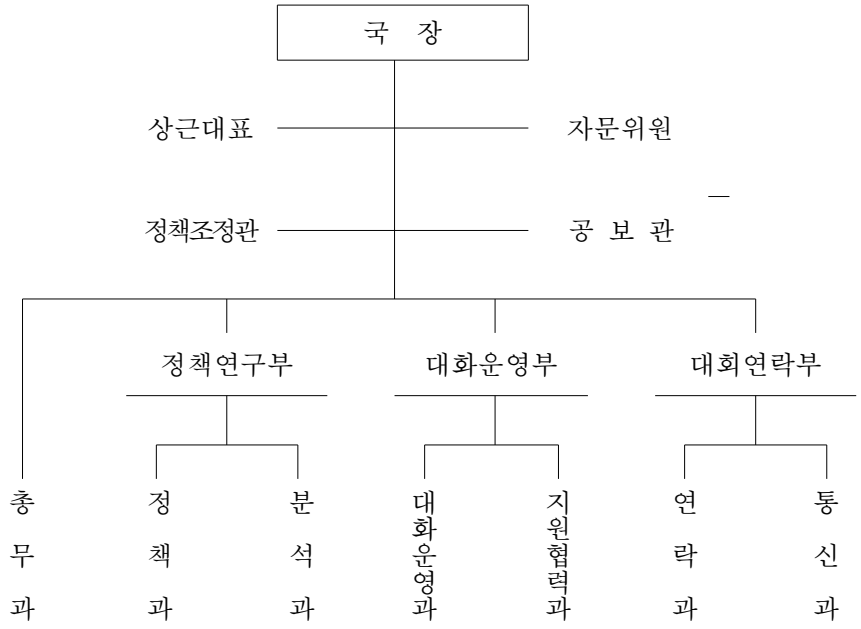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고용직
인원	161	9	5	1	8	34	20	1	16	67

□ 제1차 개정 (1981. 11. 2 대통령령제10605호)

o 기구는 총무과 명칭을 서무과로 변경하되 과장직급을 3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본부 정책업무를 정책연구부에서 인수하였며, 정원 1명(3급)을 감축하였다.

□ 제2차 개정 (1983. 3. 30 대통령령제11086호)

o 기구와 정원은 변동없이 별정직 11명(5급8, 6급3)을 일반직으로 조정하였다.

□ 제3차 개정 (1983. 10. 7 대통령령제11238호)

o 기구변동 없이 자가운전제 실시로 고용직 5명을 감축하였다.

□ 제4차 개정 (1986. 12. 26 대통령령제12012호)

o 기구변동 없이 통일연수원 운영과의 신설요원으로 10명(5급2, 6.7급3, 기능직3, 고용직2)을 감축, 이관하였다.

□ 제5차 개정 (1987. 12. 31 대통령령제12341호)

o 기구변동 없이 고용직(운전원) 10명을 기능직으로 조정하였다.

□ 제6차 개정 (1989. 6. 17 대통령령제12733호)

o 정부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공무원 전환방침에 따라 기구변동 없이 고용직 50명을 기능직으로 조정하였다.

□ 제7차 개정 (1989. 7. 24 대통령령제12765호)

o 본부에 통일정책실이 신설되어 통일정책업무를 분장하게 됨에 따라 일부 기구의 명칭 및 기능을 변경·조정하였다.

- 기능중 통일정책기능을 삭제하고 정책조정관, 정책연구부 및 정책과의 명칭을 각각 대화조정관, 대화기획부 및 기획과로 변경
- 본부에 공보관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남북대화사무국의 공보관을 대화공보관으로 변경

(1989.7.24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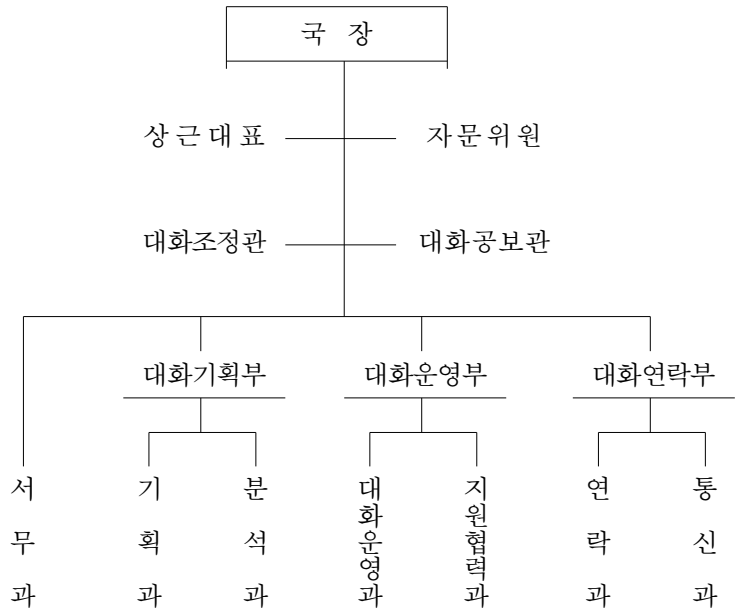

구분	계	1급	2급	4급	5급	6급	기능직
정원	145	9	5	8	32	18	73

※ 1991. 2. 1 소속기관직제가 본부직제와 통합, 이후 본부직제에 포함

□ 통일원직제 제22차 개정 (1991. 7. 1 대통령령제13418호)

o 기구변동 없이 상근대표 2명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3명을 증원하였다.

□ 통일원직제 제23차 개정 (1992. 10. 30 대통령령제13750호)

o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1992.2.19)됨에 따라 남북대화사무국을 남북회담사무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야별 공동위원회의 본격 가동에 대비, 대화유도체제에서 회담운영체제로 개편하며, 정원 18명(△1급1, 2급1, 4급2, 5급4, 6.7급9, 기능직3)을 증원하였다.

- 대화공보관을 홍보협력관으로, 대화기획부를 기획부로, 대화연락부를 연락부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

- 대화운영부를 운영1부와 운영2부로 분리·개편하고, 운영1부에 정치회담과와 군사회담과를, 운영2부에 사회문화회담과와 경제회담과를 두되, 신설되는 부장(2급) 1명은 상근대표(1급) 1명을 상계
- 회담협력관(2급) 3인을 신설하고, 상근대표(2급) 2명과 대화조정관(2급) 1명을 각각 상계

(1992.10.30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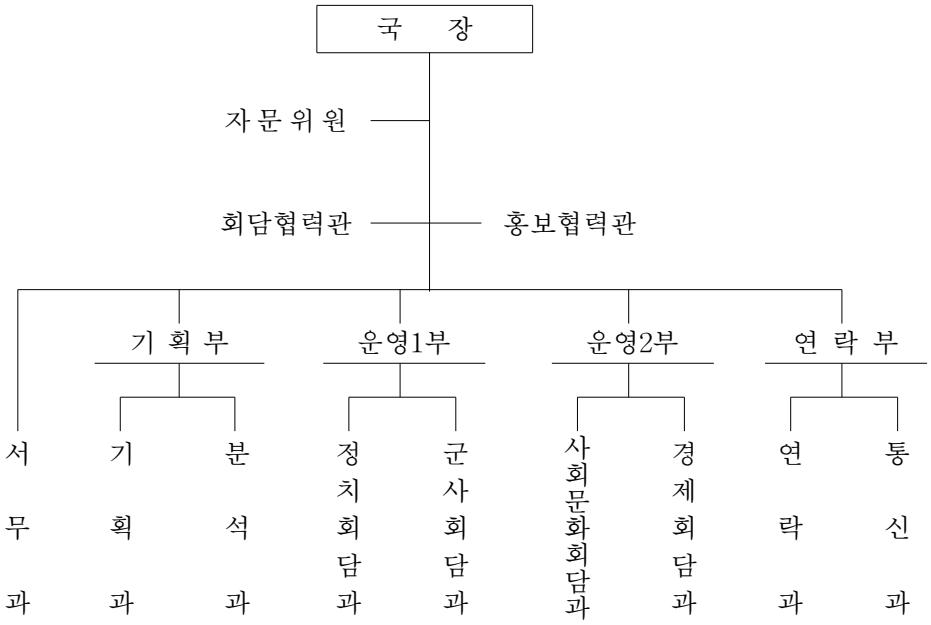

구분	계	1급	2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정원	163	6	8	10	36	24	3	76

□ 통일원직제 제27차 개정 (1996 12. 17 대통령령제15180호)

o 자문위원의 명칭을 상근위원으로 변경하고, 기구는 운영1부와 운영2부를 운영부(운영1과, 운영2과, 운영3과)로 통합하고 홍보협력관을 폐지하며, 정원 23명(1급1, 2급2, 4급2, 5급14, 6급3, 기능직1)을 감축하였다.

□ 통일부직제 제29차 개정 (1998. 2. 28 대통령령제15709호)

o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구변동 없이 정원 7명(1급1, 2급2, 5급1, 기능직3)을 감축하였다.

(1998.2.28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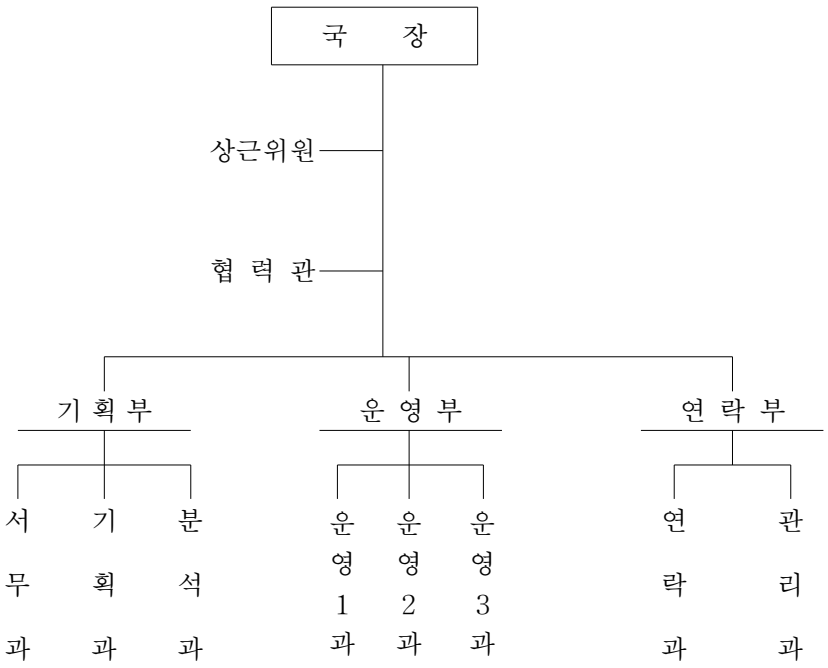

구분	계	1급	2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기능직
정원	121	4	4	8	1	20	20	4	60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국

1980년 10월 27일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1년 3월 14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이 제정되고 1981년 6월 5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제1차 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창설되었다. 그리고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1년 4월 7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처직제(대통령령제10277호)가 제정되었으며, 평화통일정책자

문회의사무처는 기구를 2국 4과 7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총장은 장관급, 사무차장은 차관급으로 보하되, 정원은 70명으로 장충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재의 청사에서 발족되었다.

(1981.4.7 직제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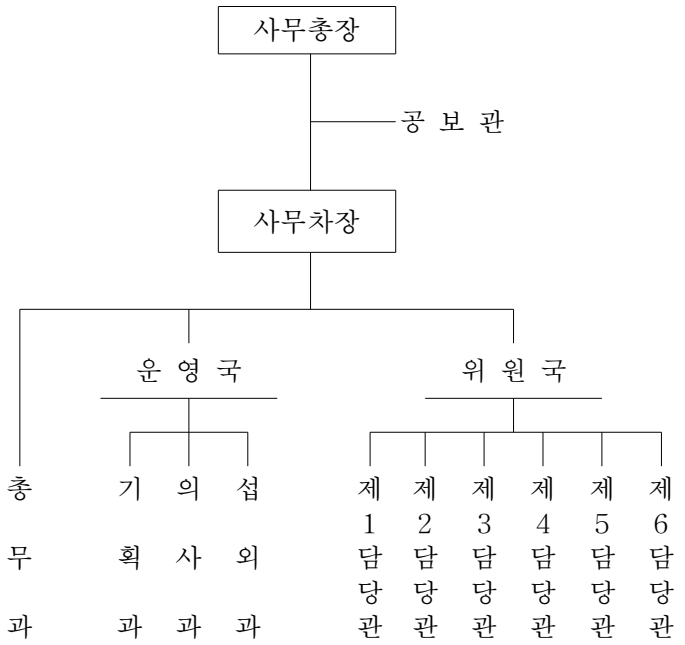

구분	계	정무직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고용직
정원	70	2	3	6	11	9	15	2	22

□ 제1차 개정 (1983. 10. 8 대통령령제11240호)

o 기구변동 없이 사무총장 비서요원 2명(6급1, 7급1)을 증원하였다.

※ 1987년 10월 29일 헌법의 개정에 의해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그 명칭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변경(법률제4000호) 됨에 따라 사무처도 그 명칭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로 변경

□ 제2차 개정 (1987. 12. 31 대통령령제12341호)

o 기구변동 없이 고용직 8명을 증원하였다.

□ 제3차 개정 (1989. 6. 17 대통령령제12733호)

o 기구변동 없이 회의운영 및 자료편찬요원 등 정원 8명(5급2, 6.7급4, 기능직2)을 증원하고 고용직의 기능직전환 방침에 따라 고용직 22명을 기능직으로 조정하였다.

□ 제4차 개정 (1990. 1. 30 대통령령제12911호)

o 기구변동 없이 기능직 2명을 증원하였다.

□ 제5차 개정 (1991. 11. 5 대통령령제13499호)

o 기구는 위원국(2급)을 위원실(1급)로 확대하여 부서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운영국의 기획과, 섭외과를 각각 연수과, 자료편찬담당관으로 개편하고, 연수기능 강화 등을 위해 정원 18명(1급1, △2급1, 4급1, 5급5, 6.7급8, 기능직4)을 증원하였다.

(1991.11.5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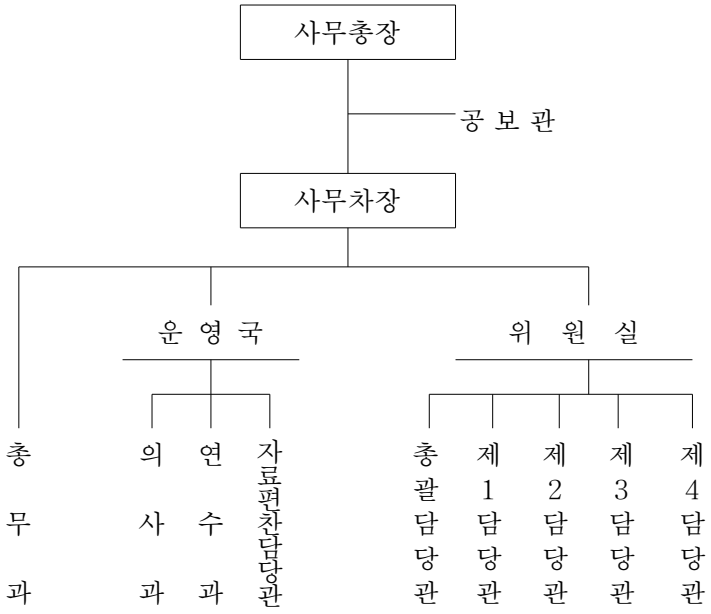

구분	계	정무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정원	108	2	1	2	6	12	16	23	8	38

□ 제6차 개정 (1993. 8.9 대통령령제13951호)

o 기구변동 없이 기능직 2명을 감축하였다.

□ 제7차 개정 (1995. 4.12 대통령령제14617호)

o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기구변동 없이 5급 1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였다.

□ 제8차 개정 (1995.7.13 대통령령제14730호)

o 기획과를 기획관으로 개편하고, 섭외과를 자료편찬담당관으로, 위원실 제1담당관을 총괄담당관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5.7.13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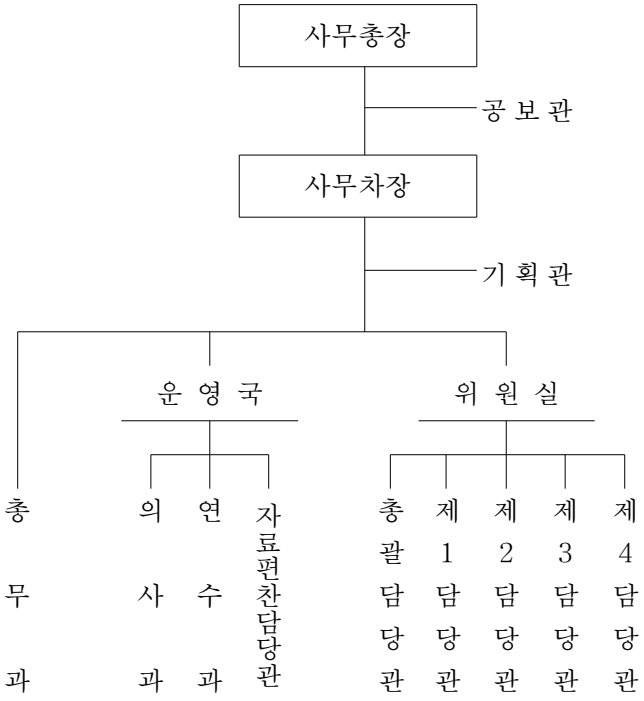

구분	계	정무직	1급	2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기능직
정원	106	2	1	2	6	1	11	2	14	23	8	38

□ 제9차 개정 (1996. 6. 29 대통령령제15058호)

o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기구변동 없이 4급 1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1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고, 실무기획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6급 1명을 5급으로 조정하였다.

□ 제10차 개정 (1997. 3. 20 대통령령제15305호)

o 기구변동 없이 정원 3명(5급1, △7급1, 기능직3)을 증원하였다.

□ 제11차 개정 (1997. 8. 13 대통령령제15462호)

o 인력감량화 추진을 위한 실무인력 조정계획에 따라 기구변동 없이 기능직 3명을 감축하였다.

※ 정부 조직개편계획에 의거 1998년 2월 2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개정(법률제6529호)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가 통일부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국으로 통합

□ 통일부직제 제29차 개정 (1998. 2. 28 대통령령제15709호)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관급)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국(1급)으로 축소 개편됨에 따라 기구는 2부 2과 7담당관으로 조정되고, 정원은 36명(정무직2, 3급4, 3.4급1, 4급2, 4.5급2, 5급4, 6.7급9, 기능직12)이 감축되었다.

(1998.2.28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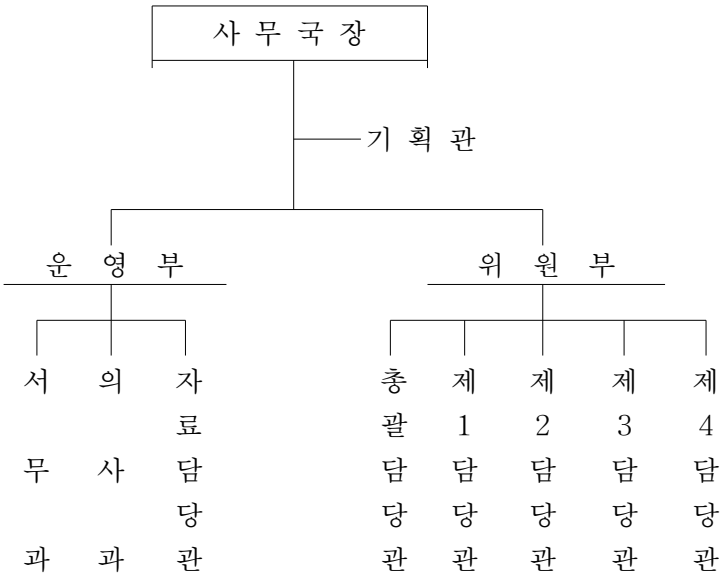

구분	계	1급	2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기능직
정원	65	1	2	2	1	8	1	12	15	2	21

다. 출연 연구기관 : 민족통일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은 1990년 8월 1일 민족통일연구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국가 통일정책의 수립·지원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통일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으로 1991년 4월 9일 장충동에 소재한 한국자유총연맹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발족하였다.

임원은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임기는 3년이다.

조직은 출범 당시 북한연구실, 정책연구실, 국제연구실의 3개 연구실과 지원부서로서 연구조정실, 자료조사실, 행정실 등 7개 실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1996년 기초연구와 대책연구를 상호 연계시켜 효율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팀체제로 개편하였고,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북한인권센터를 별도의 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5개 연구팀과 2개 실 및 2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인원은 연구직 53명, 관리직 14명, 기능직 20명 등 87명이다. 현재 국내는 물론 미·일·중·러·독·불 등에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41명, 석사학위 소지 연구원 12명 등 53명의 연구인력이 있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1999.1.29 법률제5733호)의 제정에 의해 「민족통일연구원법」이 폐지됨에따라 민족통일연구원이 국무조정실 소관 출연연구기관으로 이관되고 명칭도 「통일연구원」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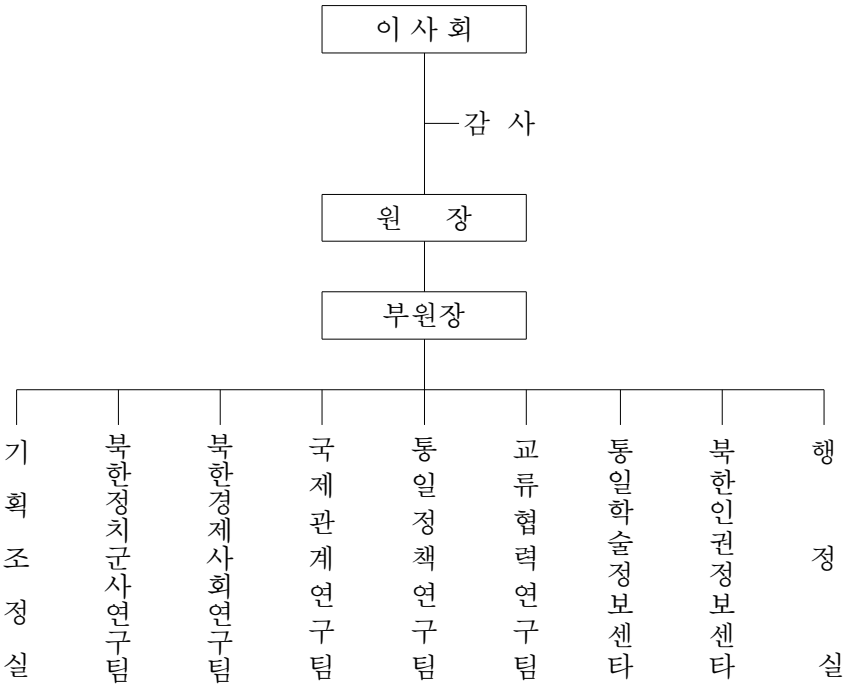

3. 예산의 변천

통일부 예산은 부처 창설후 조직 및 기능이 계속 확대·발전됨에 따라 1970년대에는 연평균 31%, 1980년대에는 연평균 24%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나, 1991년부터 1995년 기간중에는 연평균 4% 내외의 낮은 예산증가율을 유지하였다.

1996년 부터는 판문점 자유의집 증·개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 및 강릉 통일안보전시관 건립 등 건설사업 추진과 1998년 2월 28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가 통일부로 편입되는데 따른 예산이체 등으로 연평균 18%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통일부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남북협력기금을 제외할 경우 평균 0.05%~0.07% 수준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전 내독관계성의 예산이 정부예산 대비 평균 0.4%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볼 때 통일부 예산은 매우 미미한 규모이다.

연도별 예산 및 증가율

(단위:천원)

연도별	'69	'70	'71	'72	'73	'74	'75	'76
예산액	19,777	204,459	267,044	405,032	471,095	532,783	586,781	582,350
증가율	-	934%	31%	52%	16%	13%	10%	-1%

'77	'78	'79	'80	'81	'82	'83	'84
1,265,338	1,505,236	1,839,488	2,449,223	4,673,067	5,683,221	5,512,479	5,601,468
117%	19%	22%	33%	91%	22%	-3%	2%

'85	'86	'87	'88	'89	'90	'91	'92
5,999,614	7,269,804	8,699,274	12,467,783	14,557,680	17,126,099	25,590,076	28,608,716
7%	21%	20%	43%	17%	18%	49%	12%

'93	'94	'95	'96	'97	'98	'99
23,289,933	24,174,189	26,740,000	36,183,442	46,343,314	54,093,483	49,177,022
-19%	4%	11%	35%	28%	17%	-9%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1990.8.1제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현재까지 대부분 정부출연금이며 일부 민간출연금과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1998년 12월까지 5,350억원, 민간출연금 5억원, 운용 수익금 1,207억원 등 도합 6,562억원이 조성되었다. 이중 1995년 대북 쌀지원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등에 3,039억원을 집행하고 3,478억원(1998.12.31 현재)를 운용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

('98.12.31 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계
정부출연	25,000	40,000	40,000	40,000	240,000	100,000	50,000	-	535,000
민간출연	-	-	4	-	119	132	288	-	543
운용수익	237	5,118	4,777	9,387	14,589	18,410	27,873	40,280	120,671
계	25,237	45,118	44,781	49,387	254,708	118,542	78,161	40,280	656,214

제2절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와 대책개발

1. 북한실태 분석

북한실태 분석업무는 관련자료 수집과 분석, 그리고 활용으로 나뉘어진다. 관련자료 수집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방송을 직접 청취하거나 북한간행물들을 해외에서 수집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다 다각적인 정보수집이 가능해졌다.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로 크게 늘어난 방북자들과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북한실상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획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98년부터 북한TV방송 수신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실상에 관한 영상자료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분석업무는 1990년대 이전까지는 장기적·총괄적이면서 남북한을 비교하는 시각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교류협력이 늘어나고 북한의 개혁·개방문제가 주요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체제경쟁 차원에서의 비교분석보다는 북한의 변화양상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분석업무는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 분야별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그 비중이 옮겨졌다.

분석자료는 통일부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배포되어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간 북한동향」 등 정기간행물에 수록되어 관련연구소와 전문가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주간 북한동향」은 1991년 1월 1일부터 발간되어 1998년 말 현재 414호에 이르고 있으며, 발간부수도 1,650부로 늘어났다. 이와함께 「주간 북한동향」은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등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제공됨으로써 급증하는 정보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한편 분석자료를 종합하여 『북한개요』, 『남북한비교총서』 등 북한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발간하였다. 그중 『북한개요』는 북한의 지리, 정치, 경제·과학, 사회, 문화, 외교, 군사, 대남·통일 등 분야별로 엄선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1980년대 이후 격년제로 발간되어 현재 1995년판까지 출간되었다.

가. 정치·외교·행정분야

(1) 1969년~1978년 기간

정치・행정분야에서는 북한의 통치이념과 주체사상, 행정조직, 대남혁명전략, 민족관, 권력구조 등에 관한 분석을 주로 하였으며, 특히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 사후문제 등 김일성 관련 연구에 집중하였다.

외교분야에서는 북한외교의 기본정책과 현황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으나, 1973년 6월 북한의 「조국통일 5대 강령」 발표와 1975년 8월 북한의 비동맹 가입 등을 계기로 외교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남북한 외교역량 비교, 중립국외교 연구 등으로 그 비중이 옮겨졌다.

<정치・행정분야>

o 북한 공산주의 이념의 변천과정과 전략동향에 관한 연구
o 북한의 사상 및 제(諸)제도
o 북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론 분석
o 북한 행정법규의 문제점과 그 대비책
o 북한의 인민혁명전략의 對남한 적용 가능성 진단
o 북한사회와 민족주의 문제
o 북한공산주의 사상체계와 권력구조
o 김일성 행태연구
o 북한의 지방행정 조직에 관한 연구
o 김일성 주체사상 형성과정 연구
o 김일성 주체사상 연구
o 김일성 후계자문제 종합분석
o 공산권의 다원화 추세와 북한의 진로
o 남북한 비교(이념, 체제, 현황 등) 등

<외교분야>

o 북한의 대미・일 접근시도에 따른 문제점
o 북한의 대외선전·선동방식에 관한 연구

o 북한의 기본외교정책과 전략
o 북한의 대외관계 조약 및 협정체결 현황과 내용검토
o 북한의 외교정책 분석
o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o 북한의 대중립국 외교정책 및 대비책
o 남북한 외교역량 비교
o 남북한 대외선전 활동의 비교
o 남북한의 제3세계에 대한 외교역량 비교연구
o 김일성부자체제 등장시기에 있어서의 동북아 국제정치 전망 등

(2) 1979년～1988년 기간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부각됨에 따라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과 그 결과를 예측하는 연구가 많았다. 아울러 북한 주요인물들의 동향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인물연구도 활발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물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른 북한의 외교전략을 재평가하는 한편, 대남제의 및 대서방권 평화공세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특히 『북한 40년 종합평가』를 통해 북한이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하였다.

<정치분야>
o 김일성부자체제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o 김일성부자체제 등장과 경제정책 전개양상
o 김일성부자체제하의 북한 군사정책 전개양상 예측
o 김일성부자체제하의 북한 대외정책변화양상 예측
o 김일성부자 세습체제의 정책전망
o 북한 정치이념 및 체제연구
o 남북한 정치상황 변화 양상의 장기예측
o 북한 정치실태 및 남북한 관계전망
o 북한정치구조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o 북한의 권력엘리트 구조변화에 대한 비교 연구

o 북한행정체계와 당관료화에 관한 연구
o 북한 40년 종합평가
o 김일성부자 세습체제 구축 관련 동향
o 남북한 정치실태 및 남북한 관계 전망 등

<외교분야>
o 북한 외교노선과 전략 평가
o 북한의 지역개발 및 해외인사초청 선전 실태분석
o 북한과 비동맹
o 주변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의 대외관계 전망
o 남북한 외교역량 비교
o 남북한 교차승인 연구 등

(3) 1989년~1998년 기간

1990년을 전후하여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됨에 따라 북한정권의 장래에 관한 분석이 활기를 띄었다. 또한 1990년대 초 야기된 북한 핵문제로 인해 북한의 핵개발 실태 및 그 의도, 미·북 협상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대외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주의권 붕괴 및 북한정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로 연구하였다.

<정치·행정분야>
o 북한 핵개발 현황
o 북한의 핵개발 의도 분석
o 북한의 핵개발 능력 평가
o 북한 핵문제 협상과정 분석
o 핵 비확산체제 연구
o 북한 체제의 안정도 연구
o 김정일의 권력기반과 체제유지능력 평가
o 북한정권의 장래
o 북한체제 붕괴론
o 북한정권의 붕괴 가능성 평가 등

<외교분야>
o 소련, 동구권 사회주의국가 붕괴과정 연구
o 사회주의권 붕괴가 북한정권에 미치는 영향
o 북한정권의 사회주의권 붕괴에 대한 대응전략
o 주변국의 북한핵에 대한 태도 분석 등

나. 경제·과학기술분야

(1) 1969년~1978년 기간

경제·과학기술분야에서는 북한경제의 기초연구를 튼튼히 다지는 데에 큰 비중을 두고 우선 북한의 경제관련 통계를 하나로 모아 시계열 자료로 정리하는 한편, 남북한의 경제력을 비교·분석하고 순차적으로 분야별 실태를 검토해 나갔다.

1970년대 후반기 들어서는 북한경제의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북한의 6개년경제계획의 추진실적 종합 평가, 경제체제 변동가능성에 관한 연구, 북한의 자원과 수송망 등 산업입지에 대한 연구 등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경제·과학실태 분야>
o 북한경제 통계집 (초판:1986년, 보완판:1996년)
o 북한에 있어서의 토지개혁 및 집단화 과정 연구
o 북한의 재정·행정제도 연구
o 북한의 산업시설 현황과 경영 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
o 북한의 산업기술 현황 분석
o 북한의 경제체제의 변혁가능성과 요인 분석
o 북한의 소비수준 분석
o 북한의 6개년경제계획에 관한 연구
o 북한의 과학기술 연구
o 북한 공업시설 분포의 산업입지론적 분석
o 북한의 산업지리

o 경제협력(자본・기술)면에서 본 북한경제 분석
o 북한경제의 잠재력과 전망
o 북한의 자원 및 산업실태 조사 등

<남북한 비교 연구분야>
o 남북한 국민총생산의 현수준과 장래의 비교
o 재정 및 예산부문의 남북한 비교평가
o 농수산부문의 남북한 비교평가
o 비교경제체제하의 국민소득 추계방법에 관한 연구
o 남북한 천연자원의 비교
o 남북한 중공업분야의 비교
o 남북한 국제수지부문의 비교평가
o 남북한 국민경제생활의 비교평가
o 남북한 영농기반 분석과 생산능력 비교
o 남북한 사회간접자본부문의 현황과 산업기여도 분석
o 남북한 경제역량 및 성장잠재력 비교
o 남북한 산업구조 실태비교
o 남북한 기초과학의 비교
o 남북한 과학기술자 현황 파악
o 남북한 농업기술 현황비교
o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국・일・영문판 발간 및 슬라이드 제작)
o 비교경제체제하에서의 국민후생의 계량적 비교
o 남북한의 과학기술 수준 비교
o 남북한 집약농법의 기술수준 비교
o 남북한 중공업 생산능력과 기술수준 비교 등

(2) 1979년~1988년 기간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후속조치인 「20개 시범실천사업」관련 기초연구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1978년부터 국립지리원과 협조하여 제작하였던 북한지도를 보완, 최초로 완벽한 남북한 전도를 제작하여 관계기관 및 연구기

관에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1984년 북한의 합영법 제정과 남북경제회담이 개최됨에 따라 북한의 경제개방 및 산업실태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게 되었다.

<북한의 경제·과학 실태분야>
o 남포항 실태 조사
o 북한자원 및 산업실태 조사
o 남북한 전도 제작
o 북한 합영법과 경제 개방화 전망
o 북한경제의 잠재역량 연구
o 북한 합영관계법령 조사 분석
o 북한경제의 거시계량적 분석
o 북한 주요경제인물을 통해 본 경제정책성향 연구
o 북한경제 개방화 및 개혁전망과 우리의 대책연구
o 북한 수출상품의 대외경쟁력 분석과 전망(1988년) 등

<남북한 비교 연구분야>
o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매년 국·영·일문판으로 발간)
o 남북한 경제역량 변화 장기예측
o 남북한 장기경제발전 전망연구 등

(3) 1989년~1998년 기간

식량난, 에너지난 등 북한 경제난이 심화되고 남북간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정책 추진의 기초자료 분석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북한경제 정보를 신속하고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ECON」이라는 분석용 전산프로그램과「북한경제정보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의 경제·과학 실태분야>
o 상·하반기별 북한경제동향
o 상·하반기별 북한의 대외무역규모 계량 추정
o 북한의 제3차7개년계획('87～'93) 수행실적 분석평가
o 북한경제 종합평가
o 연도별 북한GNP 계량 추정
o 북한의 식량수급 판단
o 분석용 전산프로그램「ECON」및「북한경제정보 검색시스템」개발
o 북한의 산업지도
o 북한경제통계집 (제4판)
o 남북한 경제지표
o 북한의 실질 재정규모 추정
o 북한의 정치사상적 관리비용 추정 등

다. 사회・문화분야

(1) 1969년～1978년 기간

북한주민 의식구조, 청소년의 가치관, 언론, 풍습, 체육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1970년대 후반에는 김일성 우상화와 문학, 예술, 종교, 역사 및 주민생활 실태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사회 분야>
o 북한주민의 실태
o 북한사회제도의 법적 구조 분석
o 북한주민의 계층별 의식구조에 관한 분석
o 북한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통일에 미치는 영향
o 사회변동이론 및 사례에서 본 북한사회 변동전망
o 북한체제 및 사회예측
o 남북한 사회문화 현황비교(국・영・일문판 발간)
o 남북한 사회문화 역량 비교

o 남북한 청소년 의식구조 비교
o 공산권 사회변동에 관한 연구
o 「남북한 이질화」주제 학술회의 개최
o 이질화 실태파악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o 월남귀순자의 자유사회 적응과정 조사 등

<문화 분야>
o 북한사관의 이론적 구명
o 북한 교육 행정제도 변천과 현황
o 북한교과서 내용분석 연구
o 최근의 북한교육 동향 분석
o 북한의 언론통제 정책에 관한 연구
o 북한의 언어정책 특징과 실태 파악
o 북한의 교육과 정치사상
o 북한의 연극・영화
o 북한의 음악
o 북한의 왜곡사관
o 남북한 언어 이질화 연구
o 남북한 문화전통의 전승(傳承)실태 비교
o 남북한 역사관 문화전통 비교
o 조총련 교과서 분석

(2) 1979년～1988년 기간

「20개 시범실천사업」의 구체적 실천방안과 관련하여 체육, 관광자원, 문화재 실태 등 분석에 큰 비중을 두었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북한주민의 생활상과 사회변동 가능성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 사회 분야 >
o 금강산 이남과 설악산 이북의 관광자원 실태조사
o 북한주민 의식구조 변화실태 조사

o 북한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통해 본 사회정책 변화예측
o 북한의 사회변동과 개방화 유도 방안
o 북한주민의 생활상 -「북에서 사는 모습」 발간
o 남북한 주민의 의식구조 비교
o 남북한 의료기술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등
o「김일성혁명전통」비판연구

<문화 분야>
o 북한의 종교
o 북한의 신문방송
o 북한의 체육현황 조사연구
o 북한 교육기관 및 문화재 실태 조사
o 북한의 문화재 보존실태 및 교류방안
o 북한의 관광자원 현황 및 개발실태
o 북한의 전통문화 왜곡실태
o 북한의 학교교육과정 분석
o 남북한 영화 및 무대예술 비교
o 남북한 체육현황 비교
o 남북한 우정실태 비교 및 서신교류방안 연구

(3) 1989년~1998년 기간

사회·문화분야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한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관습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남북한 주민의 이질화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도 많았다. 1994년 김일성 사망후에는 북한사회의 변화추이, 주민통제실태 및 식량난에 따른 사회질서의 변화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했다.

<사회 분야>
o 북한 민법내용 분석
o 북한사회 변화동향 분석
o 북한 외제 생필품 암거래 실상

o「북한의 자연지리와 사적」발간
o「북한 지지요람」발간
o「북한의 인권실태」발간
o「김일성 민족」검토
o 나진·선봉 주민의식 실태 변화
o 북한의 가족법과 정통적 가족 제도
o 북한 사회문화 실태 재평가 등
o 재중동포를 통한 북한실태 조사

<문화 분야>
o「북한 사회문화 시설현황」발간
o 북한의 조기 외국어 실태
o 김정일 우상화 관련동향
o 김일성 우상물 건립 동향
o 김일성 우상화 사례집

라. 군사분야

(1) 1969년~1978년 기간

군사분야는 북한의 군사엘리트 충원과정, 군사력, 북한군의 전략전술, 지도층의 전쟁관, 북한의 도발행위 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o 북한의 건군사와 군사주의 노선의 연구
o 북한의 군사엘리트 충원과정
o 북한군의 전략전술에 관한 연구
o 북한의 경제역량과 군사잠재력 평가
o 북한 군사력 분석과 우리의 대비책
o 현 정전체제에서 본 서해 5도의 문제점 발생 원인 및 대책
o 북한군 지도층의 언동 및 전쟁관 평가 등

(2) 1979년～1988년 기간

1980년대 초 주변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의 군사동원체제 연구에 이어, 대남군사 관련 제의 등 일련의 평화공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 연구하였다.

- o 북한 군사동원체제 연구
- o 북한 군사외교 실태 연구
- o 군사문제관련 대남제의 내용 및 대응책 연구
- o 핵시대의 군사력과 한반도 주변 핵상황 연구 등

(3) 1989년～1998년 기간

1989년 이후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국가의 몰락으로 북한도 체제위기를 맞이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대남 군사도발로 연결되지 않도록 북한의 군사동향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함께 김정일체제하에서의 군부위상과 영향력 강화 및 경제난에 따른 국방정책 변화 가능성 등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 o 체제생존 중심축으로서의 북한 군부의 위상과 영향력
- o 북한의 체제위기와 군사정책 변화가능성
- o 한반도 평화보장문제에 대한 북한 군부의 입장
- o 북한의 대미접근과 한미 안보협력체제
- o 북한의 경제난과 군축제의 가능성
- o 북한 위기시「조·중 우호조약」해석문제
- o 북한 군부의 사회개혁 주도가능성
- o 북한의 비정규전 능력 및 관리실태
- o 4대 군사노선의 대내외 정책적 효과
- o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군사정책 변화 가능성
- o 김정일에 대한 북한 군부 및 주민지지 정도
- o 북한 군부의 위상 및 영향력 강화 동향 등

마. 공산권 연구

(1) 1980년대 까지

공산권 연구는 북한 연구를 위한 보조적 입장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까지 북한실태 연구와 병행·추진되어 왔다. 통일부 창설이래 1970년대 후반까지의 공산권 연구는 공산주의 이념에 관한 연구를 필두로 소련, 중공 및 동구권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수준도 기본적인 개요에서부터 차츰 구체적 각론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공산주의 본질과 이론>
o 공산주의 본질 비판
o 공산주의 정치이론 비판
o 사회주의 사회의 과학적 발전원리

<소련연구>
o 소련 경제체제 개혁과정에 관한 연구
o 소련의 공산당과 정치조직의 변천과정
o 소련의 제9차 5개년 경제계획
o 소련의 사회실태
o 소련의 「전민족의 국가론」에 관한 연구
o 소련 주요 동향분석(시기별)

<중공연구>
o 중공 권력투쟁 사례의 양상과 특색 분석
o 중공의 현대화 정책연구
o 중공현황 분석
o 중공 법률
o 중국 공산당 제9차 대회 및 정세전망
o 중공의 경제체제 및 경제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
o 중공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o 모택동의 10대 관계론 연구

<동구권 연구>
o 동구권의 경제개혁과정 분석
o 동구권의 형성 변천 및 전망
o 共産諸國의 협동조합제도 연구
o 동구권 경제동향 분석
o 동구 공산주의 이념, 실천과정 연구
o 동구 共産諸國의 경제체제 변화에 관한 연구
o 동구사회 형성의 연혁과 정치현실 연구

(2) 1980년대 이후

1980년대 이후에는 공산권 내부의 개혁과 개방화 움직임에 주목하고, 통일부는 특히 중공과 소련의 개방화가 북한에 미치게 될 영향을 집중분석하였다. 1990년을 전후하여 소련 및 동구 공산국가들이 붕괴됨에 따라 공산권 연구도 사라지게 되었다.

<중공연구>
o 중공 현대화 추진동향과 개방화 정책 전망
o 2천년대의 중공·대만 관계전망
o 중공개요
o 중공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교과서 분석

<소련연구>
o 소련의 군사력 평가
o 소련의 남진정책 변화과정 연구
o 소련의 경제개혁과 중공 경제개혁의 비교
o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기 타>
o 사회주의 諸國의 경제상황 변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o 사회주의 제국의 경제개혁이 공산주의 이념 및 체제변화에 미칠 영향
o 사회주의 제국 및 북한 경제현황 변화와 한반도 통일여건

제3절 통일정책 추진체계의 발전

1980년대 중반 남북간에 체육회담,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등 남북대화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한 의견조율과 정책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처음으로 통일부가 주관하는 회의체가 설치되었다. 1986년에 설치된 「남북대화기획단」은 통일부 차관이 단장이 되고 청와대, 총리실,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의 차관보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북간 현안문제를 협의하였다.

1990년대초 남북고위급회담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회담전략과 대책 및 운영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간 제반 현안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인 총리가 주재하고 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참석하는 「고위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남북고위급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서 남북간 교류협력 등 통일관련 업무도 양적으로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통일원이 정부내 각 부처의 통일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함으로써 통일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통일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1년 3월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였다.

한편, 1990년 8월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설치하였다.

1993년 3월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로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일원장관이 의장이 되고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참석하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가 설치·운영되었다.

또한 1997년 1월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통일문제를 비롯하여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현안문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헌법 제9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폐지하고,「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임위원회」를 두어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무조정회의」와 「정세평가회의」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관련부처의 차관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참여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이 이를 소집·운영하고 있다.

1. 통일관계장관회의 설치·운영

1989년 2월 8일부터 시작된 남북고위급회담은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를 새로이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통일원이 통일정책 관련 각 부처를 총괄·조정토록 하여 통일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1년 3월 23일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대통령령 제13330호)에 의해 「통일관계장관회의」가 설치되었다.

「통일관계장관회의」는 통일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장관 및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해당부처의 장으로 구성되며, 통일 및 남북대화와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① 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주요사항
② 남북대화대책의 수립에 관한 주요사항
③ 통일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각 부처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④ 통일홍보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⑤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하는 통일에 관한 사항
⑥ 대북경수로건설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⑦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또한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1997년 3월 25일 개최된 제25차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회의의 기능과 역할을 전문분야별로 분장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분과위원회는 「통일·대화」, 「사회문화」, 「경제협력」, 「인도지원」, 「경수로」 등 5개로 이루어지며, 각 분과위원회는 의장인 통일부장관 및 상정안건과 관계있는 부처의 장 등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통일관계장관회의는 회의에 부의할 의안과 통일관계장관회의 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실무조정회의는 통일부차관을 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통일부의 통일정책실장·남북회담사무국장과 통일관계장관회의 구성 부서와 의장이 의안과 관계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급 또는 2급공무원으로 구성된다.

1991년 3월 29일 제1차통일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이래 1998년 12월 현재까지 28차례의 통일관계장관회의 및 1회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회의개최 현황 및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차수	일 시	장 소	안 건
1	'91.3.29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 추진현황 등
2	'91.6. 5	남북회담 사무국	· 북한의 유엔가입방침 발표에 따른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방향 등
3	'91.8. 7	〃	· 최근 남북관계 현황 및 향후 주요일정 등
4	'92.3. 4	〃	· 「남북기본합의서」·「비핵화공동선언」 발효 관련 후속실천계획 추진방향
5	'92.10. 7	〃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결과 등
6	'92.11. 4	〃	· 남북관계 현황 등
7	'92.12. 2	〃	· 남북회담관련 정부입장 발표에 관한 지침 등

차수	일 시	장 소	안 건
8	'93. 2. 3	남북회담 사무국	· 북한 최근정세 평가와 전망 등
9	'93. 3.10	〃	· 통일 및 남북관계 현황 등
10	'93. 4.20	〃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결과 등
11	'93. 6.22	〃	· 미 · 북한 접촉결과와 향후대책 등
12	'93. 8.18	〃	· IAEA · 북한간 핵문제 현황 및 대책
13	'93.10.16	〃	·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결과 등
14	'93.12.11	〃	· 북한 당 중앙위 · 최고인민회의 결과 등
15	'94. 1.25	〃	· '94년도 통일업무 추진방향 등
16	'94.10.18	통일부	· 통일관계장관회의 운영세칙 개정문제 등
17	'94.11. 8	〃	· 남북경제협력 문제 등
18	'95. 1.19	남북회담 사무국	· 대북 경수로건설 지원사업 추진방향 등
19	'95. 5.16	통일부	· 민간통일논의 수렴 관련대책 등
20	'95.11.28	〃	· 최근의 북한동향 등
21	'95.12.13	〃	· KEDO-북한 경수로 협상결과
22	'96. 6.11	〃	· 최근 대북경수로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
23	'96. 8.27	〃	· 나진 · 선봉 투자설명회 참가대책 등
24	'96.12.10	〃	· 통일관계장관회의 개정 추진현황 등

차수	일 시	장 소	안 건
25	'97. 3.25	통일부	· 4자회담 공동설명회 결과 및 평가 등
26	'97. 8.12	〃	· 대북경수로사업 추진현황 등
27	'97.12.16	〃	· 4자회담 1차본회담 결과 등
28	'98. 9. 1	〃	· 대북업무관련 부처간 협력지침 등
제1차	'97.11.11 **(인도지원분과)**	세종로청사	· 남북적십자간 3차 대북지원 추진방향

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설치·운영

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정부는 1989년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조정·협의기구로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1989년 3월 31일「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규정」(대통령령 제12670호)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발족시키고, 1990년 8월 1일「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법률 제4239호)을 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위원장인 통일부장관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차관급)로 구성되며, 협의회 아래에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3급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두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남북교류 촉진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관계부처간의 실무적 협의를 담당하고 있다.

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설치이후 총 50회 개최(1998.12.31 현재)되어 8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1989년에는「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89.6.12) 및「남북교류협력세부시행지침」을 ('89.7.21) 심의·의결하여 법률제정 이전까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0년에는「남북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에관한고시」(국토통일원고시 제90-2호)를 심의·의결함으로써 남북교역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및 평양민족음악단의 교환공연 관련 건 등을 심의하였다.

1991년에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통일원고시 제91-1호)을 마련하였으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등 남북간 교류협력과 관련된 주요사안을 처리하였고, 1992년과 1993년에는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심의하는 등 기금관련 주요사항을 의결하였다.

1992년 이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주요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현황

(1992~1998. 12 현재)

회차	일 시	안 건
18	'92. 2.28	· '91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19	'92. 9. 7	· 「8·15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20	'92. 9.21	· '93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1	'93. 2.23	· '92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22	'93. 6.29	· '94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및 '93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23	'94. 2.23	· '93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회차	일 시	안 건
24	‘94. 6.25	· ’95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5	‘94.11.24	·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규정(안) · 국내기업 등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안)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개정(안)
26	‘94.12.28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개정(안) 관련 동향보고
27	‘95. 2.15.	· ‘94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28	‘95. 6.14	·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안)
29	‘95. 6.29	· 대북 쌀 지원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건 · ‘95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및 ’96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 남북경제협력 추진현황 보고
30	‘95. 8.29	· 대북 쌀 제공 경비 중 일부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1	‘95.12.15	· 대북 쌀 제공 경비 중 양곡대금, 운송비 등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건
32	‘96. 2.16	· ‘95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33	‘96. 3.13	· 대북 쌀 지원경비 중 육상운송비, 선적비, 해상보험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황반 운영경비에 대한 남북 협력기금 지원
34	‘96. 4.15	· 대북경수로지원사업 사전용역(PPS) 비용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5	‘96. 5.16	· 대북 기상장비 제공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회차	일 시	안 건
36	'96. 6.19	· 대북 식량제공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97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및 '96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37	'97. 2.21	· '96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안)
38	'97. 3.26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안) · 대북 탈수방지약 제조공장 복구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9	'97. 6.20	· 국제기구의 제3차 대북지원계획 추가 참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안) · '98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및 '97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40	'97. 7.29	· 대북 경수로사업 초기현장공사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 · 대북 경수로사업 초기현장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41	'97. 8.29	· UN기구를 통한 대북 추가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대북지원식량 분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남북협력 기금 지원
42	'97.12.22	· 대북 경수로건설사업 초기 현장공사 사업비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관련 주요내용 결정
43	'98. 2.23	· '97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44	'98. 4.21	· '98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45	'98. 4.30	·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안) ·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안) ·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식량제공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회차	일 시	안 건
46	'98.6.12	· 「남북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안) ·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47	'98.6.29	· '99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48	'98. 9. 7	· 현대상선,현대건설,금강개발산업의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사업 승인 · 금강산관광객 북한방문절차 간소화 방안 · 금강산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계획
49	'98.11.11	· 「금강산관광객등의북한방문절차에대한특례」 개정(안) · 「북한지역관광에따른환전지침」 제정(안) · 「남북한간에반출입되는식물에대한검역요령」 제정(안)
50	'98.12.21	·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개정(안) · 「남북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개정(안)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개정(안)

3.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설치·운영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여부 결정, 보호 및 정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종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13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준비회의를 거쳐 1997년 7월 14일「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1997년 7월 15일 제1차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동 협의회는 공식 발족하였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19개 유관부처 1급 내지 2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협의회 아래에 통일부 인도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유관부처 3-4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두어, 동 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유관부처간의 상호협조와 사

전 의견조율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동 협의회는 긴급현안 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성격별로 정책·운영·교육훈련·정착지원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소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차기 전체회의에 보고만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회의에서 심의·결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구성·기능

회의체		구 성 부 처	기 능
전체회의	대책협의회	o 청와대, 총리실,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방부 등 19개부처	o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o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심의 등
소위원회	정책	o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o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정책수립·홍보, 초기신변안전관리, 대외협력 및 다른 소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심의
	운영	o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o 보호여부결정,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연장,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종료, 이의신청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심의·조정
	교육훈련	o 통일부, 교육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o 사회적응교육, 직업·영농훈련, 학력·자격인정, 취학·편입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정착지원	o 통일부, 행정차지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o 주거·취업알선, 민간·종교단체와의 연계, 거주지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실무회의	실무협의회	o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소위원회) 참여부처	o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소위원회) 상정안건의 사전 협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가 설치·운영된 이후 1998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총 7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1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20여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138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심의·결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개최실적

회수	일 시	심 의 안 건
1	'97. 1.23	o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준비회의
2	'97. 7.15	o 정착금 등 지원기준 o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구성·운영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운영 세칙 o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건립·운영문제 등
3	'97.11.21	o 중국체류 북한이탈주민 민원처리 대책 o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처리 문제 등
4	'97.12.11	o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처리 대책
5	'98. 5.13	o 보호 및 정착금 지급결정 승인 건 o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운영세칙 o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 및 추진현황 보고 등
6	'98. 9. 7	o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송환 및 국내정착 문제 등
7	'98.12. 8	o 정착금 등 지원기준 조정(안) o 북한이탈주민 훈련수당 지급지침 o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안) o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추진현황 및 개선대책 추진경과 등

이밖에도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유관부처간 사전의견 조율을 위해서 총 13회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는 바, 개최실적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실무협의회

회수	일 시	협 의 안 건
1	'97. 6.11	o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o '97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대책 o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설립·운영계획
2	'97. 7. 4	o 정착금 등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o 의료·보건분야 자격인정 문제 등
3	'97.11. 6	o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민원회신 등
4	'97.12.23	o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처리 문제
5	'98. 3.25	o 국군포로 양순용 지원문제 o 보로금 지급기준 작성문제 등
6	'98. 4.22	o 국군포로 양순용에 대한 정착금 지급방법 및 범위
7	'98. 5.22	o 국군포로 양순용 지원금 사후처리 방향
8	'98. 5.29	o 보로금 세부지급기준 작성 문제
9	'98. 6. 3	o 이탈주민 임대주택 지구변경 문제
10	'98. 7.10	o 박광우 민원(국적취득) 관련 문제
11	'98. 8.26	o 정착지원시설 외곽경비 대책
12	'98.12. 3	o 생계보조금 지급지침안 o 정착금 지급지침 개정안 o 직업훈련수당 지급지침안 o 북한이탈주민 지역담당관제 수립·운영계획안
13	'98.12.17	o 최근 북한이탈주민 관련동향 및 향후지원 방안

제4절 통일교육·홍보기능 강화

1. 통일교육

가. 통일교육의 체계확립

(1) 통일교육의 체계화 노력

(가) 1970년대

1970년대 통일교육 추진체계는 통일교육에 관한 지침, 교재 및 시청각자료 등을 제작하여 학교 및 사회교육 기관에 배포하는 등 자료지원 수준이었다.

1976년에 이르러 통일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충·강화하기 위해 「통일안보교육의 집중강화계획」(1976년) 및 「국민정신교육강화방안의 시행계획」(1976년) 등 일련의 종합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다.

정부는 통일연수소를 통일교육의 중추기관으로 확충하고 통일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정신교육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국민정신교육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어 1977년 6월 17일 「연수교육기관 교과내용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세부 실시지침들이 마련됨에 따라 통일교육 과목의 각급 연수기관별 표준시간수가 확정, 시행되었다. 또한 1977년 11월 2일 국민정신교육조정위원회는 표준교육과목 및 각 과목별 교수지침을 확정, 각급 교육실시기관 및 국민정신 교육요원들에게 시달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통일교육과목은 ① 국제정세와 한국의 안보 ② 북한의 대남전략 ③ 북한의 실정 ④ 우리의 통일정책 등이다.

(나) 1980년대

1970년대 후반에 추진되어오던 통일교육 체계화 노력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재정비 되었다. 지금까지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해 온 국민정신교육은 내용적인 체계화나 유기적인 연계성이 결여되고 또 과학적 연구의 뒷받침이 없어 그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통

일원은 각급 사회교육기관(35개)과 국민정신교육 실태를 분석·평가하고, 그 토대위에서 새로운 국민정신교육의 이념, 교육방향 및 교육내용을 설정하여 국민정신교육 체계화의 기본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 후반, "국민정신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에서 내용체계를 연구정립"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되어있는 여러 조직들을 재정비하여 국민계도에 활용하라."는 지침에 의거, 국토통일원은 내무·문교·문화공보부 등 관련부처의 협조하에 「국민정신교육 강화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정신교육 실시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통일연수원은 새로운 차원의 통일교육 내용개발(표준교재 개발), 국민정신교육 전문요원 양성, 각급 사회교육기관의 통일안보교육 실태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다) 1990년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붕괴와 체제전환,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 등 통일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통일교육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2년 제6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통일교육」이 중점 교육분야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기존의 통일·안보교육에서 통일교육으로의 명칭 변화는 소극적인 분단극복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통일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통일이후 민족공동체의 삶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같이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쪽으로 통일교육의 방향이 전환되면서 통일·안보교육의 무게 중심이 통일교육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통일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정부는 1994년부터 방북예정자 사전안내교육을 실시하였고,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통일대비 역량을 강화하는데에 교육의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1996년부터 범정부차원의 통일대비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이수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2) 법적·제도적 기반 확충 :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가) 입법취지

지금까지 실시해온 통일교육은 교육기본법 및 사회교육법의 테두리 내에서 실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기본법과 사회교육법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통일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회교육법 또한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부여라는 목적에 한정함으로써 통일교육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통일문제의 중요성과 방대성에 비추어 볼 때,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통일교육은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제적 뒷받침이 미비하였으며, 또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제가 취약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통일부는 정부와 교육자치단체, 시민사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은 통일교육의 법적기반을 마련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96.9. 국무총리주재 국정좌담회)에 의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통일부는 독일 등 분단국의 통일교육사례와 사계전문가 및 교육계의 의견을 참고하여 법률안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광범위한 국민여론의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97.8.7~8.26) 및 공청회('97.9.1)를 개최하였다.

이렇게 확정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의 심의·의결('97.10.21)을 거쳐 동년 10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법안은 대통령 선거로 인한 국회일정의 단축으로 다음해로 이월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통일외교통상위원회('98.12.28) 및 법사위 ('98.12.29)를 통과하여 1999년 1월 5일에 제19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999년 2월 5일 공포(법률제 5752호)되고, 1999년 8월 6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다) 주요내용

통일교육지원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였다.(법 제3조)

둘째,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의 기본정책이 포함된 통일교육기본계획을 통일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법 제4조),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법 제5조)

셋째, 정부는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등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단체를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6조)

넷째, 통일교육을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교육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법 제7조),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진흥하며, 대학에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8조)

다섯째, 통일교육전문가의 양성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통일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9조)

여섯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법 제10조)

이 법은 단순히 우리사회 내부의 통일역량을 미리 갖추는 일에 그치지 않고 향후 통일과정에서 핵심과제가 될 남북사회통합에도 대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통일교육교수지침서의 개발

통일부는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통일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기법으로 교육할 것인가에 관한 교수지침 및 기법에 대한 연구노력을 꾸준히 경주하였다. 1969년 개원초기부터 착수한 각급 교육기관의 반공교육 실태조사, 통일교육 세미나 개최 등의 기초연구를 토대로 1971년에는 통일교육의 내용범위를 구체화한 대학 및 각계 전문가 「교육용 통일교육지침서」를 개발하고 보완하여 왔다.

1990년대 들어서는 대내외 통일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1992년 『통일교육기본방향』을 처음으로 발간하였고, 이후 통일환경 및 남북관계의 진전을 반영한 수정판을 수시로 발간, 각급 교육기관에 배포, 활용하고 있다.

『통일교육기본방향』은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각종 통일교육활동에서 강조되어야 할 25개 주제항목 즉 통일의 당위성, 통일에 대비하는 자세 등을 선정, 각 주제를 교수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기본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나.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정

(1) 교육목표와 방침

(가) 1970년대

통일교육은 남북관계 및 국가현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목표 또한 다소간의 변화를 보여왔다.

1970년대 전반기에는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에 관한 이해증진과 안보태세의 확립을 위한 핵심요원 양성, 국민들의 사상무장을 공고히 하는데 교육목표를 두었다.

교육방침은 ①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능력 함양 ②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향력있는 인사 선발 ③ 통일교육 담당 교수요원의 적극 양성 등이었다.

후반기에 교육활동이 보다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교육목표 또한 큰 변경이 있었다. 교육목표를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지닌 평화통일의 주체라는 신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주도세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두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우리 평화통일정책의 정당성, 합리성, 현실성을 국민으로 하여금 확고히 인식케하고 남북한관계와

국가안보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국론통일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도층의 올바른 정신자세 정립에 주안점을 두었다.

교육 방침은 ① 우리 통일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 부여 ② 사회각계 지도층인사를 중심으로 한 초청 및 순회교육 확산 ③ 이수자중 국론통일에 앞장서는 통일꾼의 발굴과 양성에 주력하였다.

(나) 1980년대

전반기에는 우리 이념체제의 대북우위성·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신념 고취, 국민통합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력의 조직화에 기여하는데 교육목표를 두었다. 즉, 민주복지국가 건설의 기반이 되는 확고한 국가관 정립, 우리 통일정책의 정당성 및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대한 올바른 인식, 대한민국 주도하의 평화통일 달성에 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등이 중요시되었다.

교육방침은 ①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를 통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정당성 및 공산주의 허구성과 북한실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② 통일후계세대 및 해외동포에 대한 교육 ③ 실증적·현실감있는 교육실시 등에 역점을 두었다.

후반기에는 교육목표를 자유·민주·평화통일관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자유 사회의 이념과 우리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고취를 통해서 국론통합과 통일주도역량의 세력화에 기여하는 데에 두었다.

그리고 ① 공산권의 변화상을 통해 공산주의의 허구성과 북한체제의 한계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② 종교계 지도자, 공무원 등 여론선도층과 통일교육전문위원, 학교교사 등 교육요원의 우선 교육실시 ③ 연구·토의식 방법으로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각계 통일논의를 수렴하는 것으로 교육방침을 설정하였다.

(다) 1990년대

전반기에는 민족공동체 의식에 바탕한 자주·평화·민주통일관의 확산, 자유민주주의 이념체제에 대한 범국민적 신념화, 남북교류협력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역량을 결집하는데 교육목표를 두었다. 즉, 북한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남북한 공존·협력시대에 대비하며 통일역량의 내실화를 위한 민주

시민의식 함양에 교육목표를 두었다.

교육방침은 ① 민주화와 남북교류협력시대에 상응한 통일관 정립 및 시민의식 제고 ② 교육대상의 확대로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교육 강화 ③ 대상에 따른 토론, 분임토의 및 연구발표 등 대상에 따라 교육방법의 다양화에 중점을 두었다.

후반기에는 남북화해·협력과 평화적 통일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북한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대북인식 확립,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조성과 통일대비 역량배양에 교육목표를 두었다.

교육방침은 ① 사회지도층에 대한 통일교육 강화 ② 통일대비 전문교육의 확대 ③ 대학생 등 젊은 세대에 대한 건전 통일의식 함양 ④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과편성과 다양한 교육기법의 활용에 중점을 두었다.

(2) 교육과정

(가) 초청교육

1) 교육과정의 편성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은 크게 초청교육과 순회교육으로 양분된다. 초청교육은 매년 기본교육 프로그램에 의거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원에 입교시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초청교육의 교육과정은 크게 전문과정과 일반과정, 특별과정으로 나누어 진다.

전문과정은 일선에서 국민 각계각층에 대한 국민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정신계도요원의 양성과정으로서 교육기간은 2~5일 과정과 2~3주 과정으로 편성된다.

일반과정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사회단체 간부 등 각 계층의 지도층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3일 정도의 단기교육을 실시한다.

특별과정은 통일정책에 대한 기반확충 및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남북관계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평통위원, 대학교수, 교장·교감, 남북교류협력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2~3일간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초청교육의 과정 편성은 몇 차례 변천을 겪어왔다. 1972년부터 1980년까지는 그 과정편성이 체계화 되지 않아, 교육목표와 방법의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지 않고 교육대상에 따라 과정 명칭을 붙였다. 이 기간에는

과정편성이 체계화되지 않았고 같은 대상자라도 교육과정과 교육기간이 달랐다.

1981년 이후는 「국민정신계도강화계획」에 의거하여 통일교육원이 국민정신계도요원의 양성임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교육과정을 전문과정과 일반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1990년부터는 교육목표와 방법과 기준에 따른 과정편성이 체계화되었다.

2) 과정별 교과목

가) 일반과정 교과목

일반과정의 교육방침은 사회각계 지도층에 대한 통일교육의 강화 및 대학생 등 젊은 세대에 대한 건전 통일의식함양 제고에 있다.

이에 따라 일반과정의 경우는 ① 대상·과정별 특성에 따른 과정편성 ② 패널토의, 대담토론, 북한이탈주민 및 방북경험자와의 대화, 분단현장견학 등과 같은 참여식 교육확대와 ③ 최근의 북한자료를 집중 활용하는 실증적 교육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1998년도 일반과정 교과목

영 역	교 과 목	시간
기본과목 (각 과목 공히 강의·토론병행)	o 정부의 대북정책 o 통일환경 o 최근의 북한동향 및 정세 o 북한이탈주민 또는 방북경험자와의 대담	2 2 2 2
교양과목 및 기타	o 특 강(분야별 저명인사 및 관계실무자) o 종합토의(북한실태, 통일환경, 남북현안문제 등) o 시청각 o 현장견학(판문점 또는 땅굴)	2 2 1 7
연 수 시 간		20

나) 전문과정 교과목

전문과정의 교육방침은 국민정신계도를 담당할 사회교육요원으로서의 자질함양과 국민의 통일의지를 확산시키고 통일에 대비한 통합업무 및 체제전환교육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통일대비 전문요원으로서의 통합대비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전문과정의 사회교육요원에게는 국민계도에 필요한 제반지식·정보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강의기법을 보완시키며, 통일기반 조성의 중추적 요원으로서의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교과목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통일대비 전문요원에게는 관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정보와 활동지침을 제공하고, 체제전환교육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교과목을 편성하였다.

1998년 전문과정 교과목

구 분	교 과 목	시간
통일업무기초	o 통일업무 기본방향과 과제	1.5
	o 대북정책의 추진방향	2
	o 남북한 현안문제	2
	o 통일환경변화와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	2
	o 미국의 신·아태전략과 북미관계전망	2
	o 해외통일사례(독일·베트남)	1.5
	o 중국의 개혁·개방사례 분석	1.5
	o 북한의 대남전략	2
	o 대북경수로사업 추진현황	2
	o 세미나	3
	o 종합토의(통일환경 및 통일정책)	3
	o 남북대화 경험담	1
	o 분야별 주요과제	20
북 한 실 상	o 북한의 분야별 실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14
	o 북한청소년 이해	1.5
	o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4.5
	o 방북경험자와의 대담	1.5
	o 종합토의(북한실태)	2

구 분	교 과 목	시간
체제전환교육	o 통일전후 독일정치교육의 현황과 교훈	1.5
	o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1.5
	o 자유민주이념과 통일국가의 미래상	2
	o 시장경제원리와 경제체제의 비교	2
	o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	2
	o 민주사회와 시민의 자질	2
	o 남북한 언어이질화 실태와 극복방안	1.5
	o 체제전환교육의 기본방향	2
	o 남북한 교육통합방안	2
	o 세미나Ⅰ (남북한 교육의 이질화 실태와 극복방안)	3
	o 세미나Ⅱ(체제전환교육의 방안)	3
기 타	o 특 강(저명인사)	5.5
	o 시청각(북한실태)	7
	o 현장견학	7
	o 체육활동	3.5
	o 분임과제연구	7
	o 기타 행정시간	3.5
연 수 시 간		123

다) 특별과정 교과목

통일과정의 교육방침은 평통위원, 대학교수, 교장·교감, 대학생에게 우리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북한 방문자들에게 남북왕래 및 북한주민 접촉요령을 숙지시키는데 두고 있다. 따라서 특별과정의 교과목은 교육대상에 따라 신축성 있게 편성되고 있다.

3) 초청교육 실적

통일교육원은 1972년부터 1998년말까지 총 337,264명에 달하는 각계각층 국민을 대상으로 1일~3주간의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연수소가 발족된 1972년에 2,672명의 교육이수자를 배출한 후, 1976년까지는 매년 3,000~4,000명의 이수자를 배출하였다.

국민정신교육강화계획이 수립된 1977년 이후부터 1980년까지는 매년 1만명 내외의 이수자를 배출하였고, 국민정신교육요원 양성에 주력하였던

1981년부터 1984년까지는 연간 5,000~6,0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85년 초·중등교사반을 개설하고 자원연수를 확대함에 따라 이수자가 증가하여 연간 10,000여명에 달하였다. 1991년 이후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연간 교육인원은 20,000여명 수준으로 증가되었으며 남북교류요원반, 통일단체간부반, 이북5도민회 등 신규과정을 편성, 교육을 실시하였고 1996년부터는 중앙행정부서요원과 교육요원을 대상으로 한 통일대비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청교육실적

과정 \ 년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전문과정	사회교육반	887	615	846	747	747	931	1,110	1,207	720	576
	학교교육반 (초·중등교사)	1,054	889	1,168	1,347	1,659	1,493	2,977	2,037	1,687	1,325
	통일대비반								59	563	1,333
	소 계	1,941	1,504	2,014	2,094	2,406	2,424	4,087	3,303	2,970	3,234
일반과정	공직자반(일반직, 공안직, 정훈장교등)	3,534	3,899	5,690	5,395	4,434	4,239	3,920	3,544	2,241	1,898
	사회단체반	984	2,141	1,061	1,713	1,719	4,530	2,778	5,020	706	1,014
	자원교육반	6,479	3,398	7,317	8,614	9,156	7,525	7,810	8,210	6,940	3,562
	소 계	10,997	9,438	14,068	15,722	15,309	16,294	14,508	16,774	9,887	6,474
특별과정	평통자문위원반			364	535	899	412	356		200	1,019
	사회교육기관장반	190	194	372	293	40	348	64	201	412	365
	대학교수			54	66	47	215	233	314	229	243
	대학생반	1,068	1,483	827	630	1,067	1,131	1,204	1,667	10,036	8,115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교육반		350	128	179	0	68	274	212	973	2,127
	소 계	1,258	2,027	1,745	1,703	2,053	2,174	2,131	2,394	11,850	11,869
합 계		14,196	12,969	17,827	19,519	19,768	20,892	20,726	22,471	24,707	21,577

(나) 순회 및 대외출강교육

1) 순회교육

순회교육은 교육수요가 있는 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는 다른 사회교육기관에서는 볼 수 없는 교육운영상의 특징이다.

순회교육은 단기간에 광범한 지역과 많은 대상자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초청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는 교육방안이다. 즉, 순회교육은 통일교육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소외계층과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각 지역과 국민 각계각층 및 해외거주동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순회교육의 내용은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로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의 최근동향, 통일환경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시청각 상영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순회교육

(숫자는 연수인원)

구분 \ 연도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지역순회	2,632	6,650	37,805	20.260	7,864	5,549	2,220	2,490
직장순회	9,110	15,406	17,339	19,940	-	7,117	1,906	10,374
계	11,742	22,056	55,144	40,200	7,864	12,666	4,126	12,864

구분 \ 연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지역순회	12,080	7,424	54,695	55,683	80,322	50,519	44,839	39,018
직장순회	13,026	127,371	-	-	-	-	-	-
계	25,106	134,795	54,695	55,683	80,322	50,519	44,839	39,018

구분 \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계
지역순회	50,010	24,960	24,671	18,407	33,347	40,576	622,021
직장순회	-	-	-	-	-	-	221,589
계	50,010	24,960	24,671	18,407	33,347	40,576	843,610

1977년부터 시작된 순회교육은 1979년부터는 해외동포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해외동포순회교육

(숫자는 연수인원)

연도 / 지역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계
동남아지역			1,930			22		440			2,392
미주지역			954	539	425		345		515	260	3,038
구주지역						394		205		165	764
호주지역				70					507		577
일본지역	1,400	550	1,240	3,846	2,240	6,405	1,220	1,430	2,140	1,370	21,841
합 계	11,400	550	4,124	4,455	2,665	6,821	1,565	2,075	3,162	1,795	28,612

연도 / 지역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계
동남아지역	410	300					250				960
미주지역	591		518	347		110	195		215		1,976
구주지역	510	480		521				150		300	1,961
대양주지역			280			297			333		910
일본지역	1,472	930	960	400	673	444		310		260	5,449
독립국가 연합지역					550	360	360	167	207	290	1,934
남미지역					208				440		648
합 계	2,983	1,710	1,758	1,268	1,431	1,211	805	627	1,195	850	13,838

2) 대외출강교육

통일교육원은 초청·순회교육과 함께 각급 공무원교육원, 사회교육기관, 사회단체, 학교, 군부대 등에 대한 소속 교수의 출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77년 교수요원이 증원되고 또한 통일안보교육의 저변확대 필요성에 따라 교수의 출강지원을 통일연수계획에 정식으로 반영하게 되었다. 1977년부터는 대외출강기관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교육기관으로 확대되었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의 강의지원실적은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외출강교육

연도별	주 요 대 상	회 수	인 원
1989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법인체, 군부대,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체	475	102,993
1990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법인체, 군부대, 교육기관 등	408	149,551
1991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법인체 군부대, 교육기관 등	259	42,915
1992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기업체 등	342	62,546
1993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	238	44,405
1994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	267	43,538
1995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 및 공공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등	136	35,845
199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등	309	46,852
199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등	341	44,373
199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등	214	27,947
계		2,989	600,965

다. 교육운영과 이수자 관리

(1) 교육운영

(가) 교육생의 선발

통일교육원은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정부투자기관, 각급학교 및 사회단체 등에서 교육대상자 선발을 의뢰하고 이들 기관으로부터 교육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아 과정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과정 교육생은 통일준비 차원에서의 정부 각부처 기획·행정요원, 중·고교 사회·윤리담당교사, 전문과정 교육을 받은후 전달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요원으로 각 기관·단체에서 적격자로 선발된 자이다.

일반과정 교육생은 정부 각 기관의 간부나, 공공단체 지도급 인사, 지역의 여론선도계층으로서 관계기관이나 단체, 지역에서 교육대상자를 추천받고 있다.

특별과정 교육생은 사회교육기관장, 대학교수, 대학생, 북한방문 및 북한주민접촉 예정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순회교육의 경우 교육요청기관이나 지역에서 교육생을 선정하고 통일교육원 교수진이 출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교육방법

통일교육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제별 강의, 현장견학, 관심사항에 대한 심층적 대담토론, 시청각 자료 등이 활용된다. 전문과정에서는 분임연구와 토의, 사례연구 등으로 교육효과를 제고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과 대상에 따라서는 북한이탈주민 등의 증언청취, 고위정책담당자와의 대화시간도 갖고 있다.

현장견학은 초기에는 주로 산업시찰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1980년에 들어서면서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분단현장인 남침용 땅굴, 판문점,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2) 이수자의 관리

(가) 전문요원의 양성

통일교육원은 대국민 통일교육을 담당할 핵심요원을 양성하여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일을 담당케 하고 있다.

1980년 통일연수소에 「국민정신교육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임무가 부여됨에 따라 1980년 10월 2일부터 11월 28일까지 2개월에 걸쳐 40명의 국민계도요원에 대한 시범연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81년부터는 학교교육요원, 공무원교육요원, 군 정훈교육요원, 사회교육요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한 전문과정 연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1996년부터는 전문과정에 통일대비반을 신설하여 1998년말까지 1,650명을 교육하였다.

(나) 이수자 관리의 체계화

1) 제1단계(1976년～1979년)

초기에는 매년 3～4천명의 교육이수자를 배출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대책이 없었다. 그러나 1976년 「통일안보교육 강화방안」이 수립됨에 따라 대국민 전달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통일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제2단계(1980년～1986년)

1980년 6월 21일 통일연수소의 직제개정(대통령령 제9925호)과 함께 국민계도요원의 양성을 전담하는 제2연수부를 신설하고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확대하였다.

1980년도 하반기에 "통일교육전문요원을 양성하여 대국민 전달교육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문과정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재정비·강화하였다.

3) 제3단계(1987년～1995년)

「통일교육전문위원관리규정」(훈령 제180호)이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문과정 이수자를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각계 지도층 인사를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전문위원」으로 위

촉함으로써 전문위원들의 대국민 통일교육활동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4) 제4단계(1996년～)

1996년말부터 「통일대비요원」의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1997년도부터 이들에게 북한동향, 남북교류협력동향, 통일속보 등 최신의 북한 및 통일관련 자료지원을 확대하였다.

(다) 통일교육전문위원 조직과 활동

1980년부터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연수받은 이수자들이 지역별로 자율적인 조직체를 결성하여 이수자 상호간의 친목도모, 통일교육원과의 연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987년 1월 1일 「통일교육전문위원관리규정」이 제정되어 1988년 8월 30일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9월 1일 국토통일원 산하 사회등록단체로 정식 발족하였다.

1998년 12월말 현재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는 중앙 및 16개 시·도 협의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815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교육전문위원 활동실적

연도별	개인별 교육		지역순회 연수	
	회수	인원(명)	지역(시·군)	인원(명)
'81-'90		60,589,313	225	109,250
'91	25,070	7,092,575	229	64,361
'92	22,010	7,892,594	240	73,700
'93	22,903	8,028,523	225	80,176
'94	20,287	6,816,224	157	45,172
'95	26,293	7,737,823	110	35,962
'96	22,019	5,867,352	59	15,799
'97	18,494	4,801,587	100	28,203
'98	16,713	5,249,451	105	27,320
계		114,075,442	1,450	479,943

라. 교재개발 및 지원

(1) 교재개발

(가) 기본교재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하는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문제 이해』는 교육생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 기관, 사회교육기관, 각급학교 등에 보급되어 통일교육의 표준교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교재 원고는 연수계획에 따라 강의 교과목을 담당할 교수가 직접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검토와 교재편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용이 확정된다.

『통일문제 이해』는 정부의 통일정책기조 등 통일문제 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북한문제 이해』는 분야별 북한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통일문제 이해』, 『북한문제 이해』는 해마다 수요가 증가하여 매년 평균 2만부 이상을 발간하고 있다.

(나) 부교재 및 참고자료

통일교육원은 남북관계 주요현안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북한의 정책노선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남북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시각을 문답식으로 풀어쓴 『통일문답』을 부교재로 개발하여 여러가지 쟁점사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부교재 및 참고자료 발간현황

년 도	책 명	
1994	o 통일문답 o 남북한 교류협력 o 북한의 경제 o 분단국의 통일과 교훈 o 정부의 3단계 3기조 통일정책	o 우리의 통일정책 o 북한의 이해 o 주변정세와 통일환경 o 민중혁명론 o 남북한 주요경제지표 비교

년 도	책 명
1995	o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인권실태 o 통일문답 o 달라진 남북의 언어
1996	o 민족공동체 통일로 가는 길 o 통일문답 o 남북관계 주요현안
1997	o 통일문답 o 통일대비기초 o 통합업무이해 o 체제전환교육
1998	o 통일문답100 o 통일연구 참고자료(전문과정) o 통일연구 참고자료(행정요원용) o 통일연구 참고자료(교육요원용) o 통일과 21세기(전환기의 통일문제이해) o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해설자료

이외에도 대상별 또는 단일주제별로 각종 단행본을 발간하여 교육효과를 높여 왔으며, 각급 사회단체 및 학교교육기관에도 배포하여 널리 활용하게 하고 있다.

(2) 자료 지원

대국민 통일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통일교육전문위원 및 통일대비요원들에게 주간북한동향 등 212종 1,178,000부(1981~1998)를 지원 해 왔다.

지원자료의 종류는 책자 등 인쇄매체가 주종이고, 그 때 그 때의 상황변화에 맞춰 현실감 넘치는 VTR 등 시청각 자료도 배포하고 있다.

마. 대학 통일교육 연구활동 지원

(1) 대학부설 통일문제연구소 지원

통일부는 1981년부터 대학사회의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분위기 조성과 대학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부설 통일문제연구소가 추진하는 사업의

소요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는 통일문제세미나, 대학생 통일문제토론회 및 북한학강좌 교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1981년 16개 대학에 19,200천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계속사업으로 18년간 3,545,800천원을 지원하였다. 1998년에는 전국 80개 대학 통일문제연구소 중 연세대 등 62개 대학 통일문제연구소에 총 306,000천원의 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대학통일문제연구소 지원현황

(단위:천원)

연 도	대 학 수	대학당 지원규모	지원총액
1981	16개 대학	1,200 균일	19,200
1982	17개 대학	1,200 균일	20,400
1983	27개 대학	1,500 균일	40,500
1984	30개 대학	1,800 균일	54,000
1985	34개 대학	1,500~1,800	60,000
1986	37개 대학	1,800 균일	66,700
1987	48개 대학	1,800~2,500	132,100
1988	54개 대학	2,000~2,800	146,900
1989	56개 대학	3,000~6,000	240,500
1990	49개 대학	2,800~5,500	241,100
1991	42개 대학	3,500~5,800	244,000
1992	50개 대학	4,000~9,200	265,000
1993	50개 대학	3,800~9,000	256,400
1994	52개 대학	4,000~9,000	278,000
1995	60개 대학	4,000~10,000	358,000
1996	71개 대학	3,000~9,000	430,000
1997	75개 대학	2,000~8,000	387,000
1998	62개 대학	2,000~9,000	306,000
계			3,545,800

통일문제연구소 현황

('98. 12. 현재)

대학	연구소명	소 장	대학	연구소명	소 장
강릉대	통일문제	오경식	배재대	통일문제	김혁동
강원대	사회과학	배동인	부산대	한국민족문화	채상식
건국대	민족통일	양병희	부산외	국제문제	권선홍
경기대	민족문제	노태구	상명대	통일문제	조성대
경남대	극동문제	곽태환	상지대	사회과학	공제욱
경북대	평화문제	엄재호	서강대	동 아	김수용
경산대	평화전략	권기수	서경대	통일문제	전신욱
경상대	통일문제	김덕현	서울대	사회과학	권태환
경성대	사회과학	공보경	서울시립대	법률행정	박용찬
경원대	사회과학	송태수	서원대	사회과학	김성건
경희대	국제평화	손재식	선문대	평화사상	박홍순
고려대	평 화	조정남	성균관	사회과학	김정우
관동대	동북아평화	유삼열	성신여	사회과학	최민자
국민대	사회과학	이 장	세종대	통일문제	김영식
군산대	현대리념	고용권	여수대	통일문제	유명걸
단국대	정책과학	김성윤	숙명여	통일문제	이창신
대구대	사회과학	서동욱	순천대	사회과학	김인선
대전대	동 북 아	김준호	순천향	사회과학	김영국
동국대	안 보	강성윤	숭실대	사회과학	문수언
동신대	민족통일	최영표	아주대	사회과학	김영래
동아대	사회과학	김제경	안동대	사회과학	김동근
동의대	법정연구소	김태희	안양대	복지행정	유호룡
명지대	사회과학	조병륜	연세대	통일연구원	이영선
목포대	통일문제	이수애	영남대	통일문제	김태일

대학	연구소명	소 장	대학	연구소명	소 장
우석대	한국정치	김영선	청주대	국제문제	윤만근
울산대	사회과학	이은우	충남대	통일문제	윤기관
원광대	통일문제	김용욱	충북대	사회과학	박채용
이화여	한국여성문제	이상화	한국외	공공정책	김명수
인제대	인문사회과학	이광주	한남대	사회과학	이승철
인천대	평화통일	이윤희	한림대	한림과학원	현승종
인천교	통일교육	이근철	한서대	국제협력	조갑동
인하대	국제관계	백광일	한세대	통일문제	강명희
전남대	아·태지역	지병문	한성대	북방문제	유병호
전북대	사회과학	김영정	한신대	평 화	김창락
전주대	사회과학	오세홍	한신대	평 화	김창락
제주대	동아세아	고성준	한양대	통일정책	최성철
조선대	동북아문제	왕임동	호남대	인문사회과학	황오연
중부대	평화통일	이부훈	호서대	통일문제	채경석
중앙대	민족통일	이상만	홍익대	동서문화	전 웅
진주교	초등교육	조기제	효성카톨릭	현대사상	이학수
창원대	사회과학	주정연			

(2)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는 대학사회에 통일, 북한문제에 대한 연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대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제고와 건전한 통일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1982년부터 매년 시의성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응모논문은 사계의 권위있는 학자와 관계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고 있으며, 입상자 전원에게는 장관표창 및 장학금 지급과 아울러 국내외 연수기회를 부여해 오고 있다. 입선논문은 대학생 통일논문집(연간 1,000여부)으로 발간하여 전국 각 대학도서관은 물론 각 시·군립 도서관 등에 배포하여 활용하고 있다.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현황

연 도	응모편수	응모대학
1회('82)	43(6명)	43
2회('83)	31(6명)	31
3회('84)	64(6명)	64
4회('85)	108(6명)	34
5회('86)	182(9명)	42
6회('87)	267(9명)	56
7회('88)	111(5명)	51
8회('89)	113(8명)	43
9회('90)	158(8명)	43
10회('91)	61(8명)	31
11회('92)	284(9명)	28
12회('93)	118(8명)	36
13회('94)	193(8명)	36
14회('95)	115(8명)	49
15회('96)	100(9명)	54
16회('97)	109(9명)	56
17회('98)	114(8명)	64
계	2,171(130명)	

※ ( )숫자는 입선자수

(3) 통일 및 북한 관련단체 지원

(가) 전국 대학 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지원

통일부는 1994년부터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가 추진하는 통일문제워크샵(연 1회)과 연구논문집 발간 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는 전국 80개 대학 통일문제연구소간의 학문적 교류 및 회원 상호간의 협조를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나)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지원

통일부는 1996년부터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가 추진하는 대학총장 통일문제세미나와 대학교재 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다.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기구로서 대학 사회의 건전한 통일교육 도모를 위해 대학총장들로 구성(14인)된 조직이다.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 구성

(98.12 현재)

직 위	소 속	성 명	직 위	소 속	성 명
위원장	한림대학교 총장	이상주	부위원장	부산대학교 총장	윤수인
위 원	조선대학교 총장	김기삼	위 원	한서대학교 총장	김기주
〃	인천대학교 총장	김학준	〃	서경대학교 총장	민병천
〃	대구대학교 총장	박윤흔	〃	관동대학교 총장	백영철
〃	원광대학교 총장	송천은	〃	외국어대학교 총장	안병만
〃	교원대학교 총장	우종옥	〃	창원대학교 총장	이수오
〃	중앙대학교 총장	이종훈	〃	성균관대학교 총장	정범진

2. 통일홍보

가. 통일홍보 방향 정립

(1) 1970년대

1970년 8월 15일 발표된 「평화통일구상선언」을 계기로 하여 기존의 「승공통일」과 「총력안보」와 함께 「평화통일의 개념」이 통일홍보의 과제로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971년 9월 남북적십자회담과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 등 남북대화의 진전에 따른 남북간 상호 중상·비방중지로 「멸공」, 「승공」 등의 용어사용이 자제되었으며, 통일홍보의 방향도 대결보다는 대화를 강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70년대에는 기존의 승공통일과 총력안보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황변화에 대처하는 통일홍보를 전개하였다.

(2) 1980년대

1980년 10월 10일 북한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일성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의하고 1982년 1월 22일 우리 정부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함에 따라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정부 통일방안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정부가 「7·7특별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통일홍보의 방향도 전환기를 맞아 전국민의 통일의지 결집과 남북관계상황의 변화에 따른 올바른 북한관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는 민족공동체의식의 회복이 통일홍보의 중심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1980년대말 동구사회주의권의 개방과 체제전환 등 국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을 맞아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동포들의 통일열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국제사회와 해외 동포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550만 해외동포들에게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민족의 생존권 보장과 자긍심 고양에 기여함을 알리고, 해외동포들

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교량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일홍보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3) 1990년대

1990년대에 들어서는 독일·예멘의 통일 등으로 통일문제가 현실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통일홍보도 통일대비태세 확립과 통일조국의 미래상에 대한 신념고취 등 통일과정과 함께 통일이후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 이후에는 매년 통일홍보 기본방향을 정립, 당해 년도의 홍보목표로 삼고 추진하게 되었다.

1992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 등 남북관계의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통일홍보의 기본방향을 「화해·협력의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북한관 정립, 내외상황 변화에 부응하는 국민의 통일의식 및 통일관 재정립, 이질화된 북한사회와의 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문화적 갈등요인과 해소방안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1994년에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천명과 7월 8일 김일성사망 등 새로운 상황변화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확산, 통일에 대비한 국민적 자세 확립 등의 내용을 보완하게 되었다.

1995년도에는 광복 50주년 및 분단 반세기를 맞아 통일홍보 방향을 민족동질성 회복, 실질적 통일대비태세 확립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우리 내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 북한을 상대하는 일만큼 중요하다」는 기본인식하에 「국민적 합의유도」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통일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홍보 테스크포스를 구성(팀장 국장급 1명과 홍보업무 관련 과장 6명),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홍보방향 수립과 홍보지침을 마련, 제공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햇볕정책, 정경분리 등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설자료를 발간 제공하는 등 대북정책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별·계층별로 다양한 홍보기법과 수단을 강구

하고 필요시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힘쓰고 있다. 아울러 대북정책에 대한 해외동포사회의 이해제고와 국제사회의 우호적 협력기반 조성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나. 다양한 홍보수단의 활용

통일홍보의 수단은 크게 인쇄물, 시청각자료, 방송매체, PC통신과 인터넷, 대중행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홍보수단은 시대적·기술적 상황에 따라 인쇄물, 대중행사 등 전통적인 홍보수단에서 시청각매체, 방송매체, PC통신 등 첨단매체로 발전되어 왔다.

(1) 간행물에 의한 홍보

(가) 정기간행물

통일부가 최초로 발간한 정기간행물은 1970년 8월에 창간된 월간 「국토통일」이며, 이것은 통일문제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의 논문과 연구활동을 수렴하는 전문지였다. 1974년에는 대학생 연구논문집인 「민주통일」과 합병하여 계간 「국토통일」로 발간주기를 변경하였으며, 1975년에 「통일정책」, 1981년 「통일논총」으로 개명, 발간되었다.

1990년에 들어와 국내·외 지식층을 대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정보교류와 통일논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통일문제 학술전문지 「통일문제연구」가 발간되었으며 1995년부터 통일부등록 사단법인인 평화문제연구소에서 유가지로 속간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정책의 내용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의기반 조성을 위해 『통일백서』, 「주간 북한동향」,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등 다양한 형태의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대학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소식지 「통일한마당」을 발간·배포함으로써 젊은 세대에게 정확한 북한실상 이해와 건전한 통일의식을 함양하기도 했다.

정기간행물 발간현황

간행물명	발 간 내 용			배포대상
	기 간	간 기	부 수	
통 일 백 서	1990~	연1회	6,000부	관계전문가
남 북 대 화	1973~	연2~3회	국문10,000부 영문3,000부	국내 및 국외전문가
통일문제연구※	1990~1994	계간	3,000부	통일문제 전문가
북 한 동 향	1991.8~	주간	800부	관계전문가
남북교류협력동향	1991.7~	월간	1,500부	관계전문가
통 일 한 마 당	1997.5~1998.4	월간	7,000부	대학신입생, 대학도서관 등

※ '95년 이후 평화문제연구소 발간

(나) 단행본

1970년『민주통일의 길』을 발간, 각급 학교와 관계기관에 배포한 것을 시작으로『국민승공대화 교양독본』(1971),『통일교양독본』(1971),『공산주의 100문 100답』(1974),『북한문제 100문 100답』(1974) 등이 발간되었고 이들 단행본은 국민들에게 공산주의 실상과 북한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남북통일방안 및 북한실상을 소개하는『통일문답』(1985)과 남북대화의 경과를 정리한『남북대화백서』(1982)를 발간하였고 이외에도『평화통일의 길』(1983),『남북한 사회문화현황 비교』(1982),『남북한 경제현황 비교』(1986, 1988) 등 남북한 실상을 비교한 100여 종의 단행본을 발간·배포하였다.

1990년대에는『남북한 사회·문화지표』(1991)와『북한의 제3차 7개년 계획』(1994), 예멘과 독일의 통일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한『예멘 통일관계 자료집』(1990),『독일통일 실태 자료집』(1993) 등을 발간하였

다. 또한 남북교류의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1993),『남북교역 사례집』(1994),『중국·대만간 교류관계자료집』(1994) 등 북한관련 법규와 교역에 관계된 책자를 발간하였다.

단행본 발간현황

간 행 물 명	발간년도
예멘통일관계 자료집	1990
내독관계발전사	1991
남북한 사회문화지표	1991
남북경제교류협력 실무안내	1992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1993
독일통일실태 자료집	1993
3단계·3기조 통일정책	1993
남북교역 사례집	1994
중국·대만간 교류관계 자료집	1994
남북한 경제지표	1995
독일통일6년 동독재건6년	1996
김정일주요문헌집	1997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관련 자료집	1997
남북관계관련 북한 주요논조	1998

(다) 시청각자료

1973년『민족통일의 길』을 시작으로 각종 슬라이드를 제작·보급해 온 통일부는 1983년에는「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한 홍보용 와이드 칼라를 제작하였고 1985년에는 국립영화제작소에 의뢰하여 제작한 비디오 홍보물 『통일이여 어서 오라』를 각급 교육기관과 사회단체에 보급하였다. 이

후『닫힌 가슴을 열고』(1986),『보이지 않는 전쟁 한반도 지금 몇시인가』(1986)등 비디오 시청각 자료를 개발·보급하였다.

1994년에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보급하였고『국민과 함께 가는 통일의 길』(1995)이라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홍보비디오를 각급학교 등에 배포하였다. 1996년에는 바람직한 통일의 길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하여』를 제작·보급 하였으며, 1998년에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홍보하고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배포하였다.

시청각자료 현황

자 료 명	연도	수 록 내 용	비 고
민족통일의 길	1973	통일의 필요성 등	통일관 전시 내용 편집
통일이여 어서오라	1985	통일문제 등	비디오,20분
닫힌가슴을 열고	1986	남북한 실상 비교	비디오,42분
보이지 않는 전쟁 한반도 지금 몇시인가	1986	KBS통일안보분야 대담 프로 재편집	비디오,30분
북한 핵문제의 진상과 본질	1994	북한 핵문제에 대한 실상소개	비디오
국민과 함께가는 통일의 길	1994	국민적 통일기반 강화	비디오
세계 한민족의 삶	1995	중국, 미국 등 세계 각지에 살고있는 한인의 삶 기록	비디오,6부작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하여	1996	바람직한 통일의 길 설명	비디오 33분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1998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설명	오디오,45분 비디오,18분

(라) 계기별 자료

남북관계 등 주요 상황변화에 따른 필요한 자료를 리플렛 또는 팜플렛 형태로 발간·보급해 오고 있다. 1980년대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1984), 「남북한 통일방안 어떻게 다른가」(1985), 「통일방안과 남북대화」(1986), 김만철씨의 증언을 토대로 한 「동토의 생활」 등을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들어와서 통일방안과 북한실상에 대한 홍보 및 남북대화 제의나 대북성명 등의 발표와 우리정부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해설자료, 브리핑 자료 등을 계기마다 발간해 왔다.

1998년에는 현단계에서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통일철학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해설한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등의 팜플렛, 리플렛을 발간·배포했다.

계기별 홍보자료 발간현황

자 료 명	연 도	발 간 내 역	비 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91	130,000부	만 화
판문점	1991	국·영문 각 30,000	화보집
북한방문 안내	1993	국·영문	팜플렛
8.15대통령 경축사 해설자료	1994	60,000부	팜플렛
함께 생각하는 통일	1995	150,000부	리플렛
남북교류협력 절차안내	1995	10,000부	리플렛
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어야 하는가	1996	50,000부	리플렛
북한의 식량난과 대북식량지원	1997	100,000부	팜플렛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1998	팜플렛(32,000부), 리플렛(410,000부)	팜플렛, 리플렛
햇볕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	1998	22,500부	팜플렛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1998	5,000부	팜플렛

(2) 언론 및 첨단매체를 통한 홍보

통일부는 인쇄물 등 기존의 통일홍보 방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신세대의 대거 등장, 정보화 사회의 도래, 다양한 통일논의의 제기 등 변화된 홍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언론·첨단매체를 활용하는 등 홍보 기법 및 영역을 다양화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 PC와 기타 첨단매체의 보급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PC통신, 전광판 등 첨단매체를 통한 통일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송과 언론매체 등 대국민 접촉도가 높고 정보전파력이 큰 대중매체를 이용한 통일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언론매체가 지닌 정보전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터넷·PC통신 등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홍보기법을 개발하여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1977년부터 TV 및 라디오방송 지원을 통한 홍보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TV방송은 1977년 KBS-TV「통일논단」, MBC-TV「남과 북」 등 통일·남북문제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1989년부터 방영된 KBS-TV「남북의 창」을 비롯하여, MBC-TV「통일전망대」, SBS-TV「통일로 가는 길」 등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였다.

1998년에 들어와서는 주한 외국인 대상 아리랑-TV「Eye on North Korea」와 인천TV의「통일마당 남남북녀」 등에도 출연자 및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라디오 방송은 1977년부터 북한주민 및 중·러 거주동포를 대상으로 한 KBS 사회교육방송과 MBC「남북30년」 등 통일·북한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1982년부터는 KBS·MBC·CBS라디오의 고정프로그램을 통해 통일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1989년부터 국제사회 지식인층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KBS국제방송「통일을 향하여」프로그램에 월2회, 1994년부터는 KBS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인「통일열차」에 주2회 출연진 및 방송자료를 지원하는 등 홍보활동의 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지를 주제로 한 4편의 TV공익광고와 1편의 라디오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MBC를 통해 방송하였고 해외동포 운영 10여개 TV방송사에 전통문화예술 및 통일관련 프

로그램 등을 담은 영상자료를 제공하였다.

공익광고 제작·방송 현황

공익광고명	방송매체	방송기간
할아버지의 기다림	MBC-TV	1994. 8.26~12.25
철마는 달리고 싶다	MBC-TV	1995.11.18~12.29
마음의 거리	MBC-TV	1997. 2. 1~5.31
우리는 하나	MBC-TV	
통일이 되면	MBC라디오	

1992년부터 15개국 47개 신문·방송사에 매월 관계전문가가 집필한 통일관련 칼럼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1995년부터 중국·러시아의 5개 동포언론사에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러와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통일칼럼」 원고를 기획, 지원하고 있다.

(나) 첨단매체 등을 통한 홍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젊은세대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2년 PC통신 천리안을 시작으로 하이텔(1993년), 유니텔(1996년)을 통해 남북한 통일정책, 남북관계 진전사항, 남북교류협력동향, 남북교류협력절차 등 통일·북한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998년에 들어서는 PC통신 「전자공청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하여 2만3천여건의 접속회수를 나타내는 등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젊은 세대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1996년부터는 통일부 인터넷 홈페이지「UniKorea」(http://www.unikorea.go.kr)를 개설, 한·영문으로 통일문제·북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8년도에는 8만 6천여건의 접속회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지하철·역·공항·도심지역 등 전국 주요지역 202개소에 설치된 대형전광판을 통해 "평화와 화해와 협력은 통일의 시작입니다" 등의 내용을 「카피」로 하는 전광판 활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1994년 8월 1일부터는 전화음성정보시스템(ARS)을 설치, 전화통신망을 통해 이산가족, 남북한 방문 및 북한주민접촉, 남북간 물자교역, 남

북협력사업 등의 정보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다) 기타 홍보활동

국민들에게 통일의 의지와 정감을 자연스럽게 북돋우기 위하여 1987년 「통일노래 가사공모」를 실시, 음반으로 제작하여 방송을 통해 보급하였고, 1986년부터 1988년까지 『6천만의 통일가요집』을 제작, 통일유관단체·학교·군·경에 보급하였다.

이와 함께 1993년 『한민족애창곡집』 500조를 제작, 사회주의권 동포들에게 보급하였고, 1995년 『세계한민족총서(10권)』 3,000질 및 『세계한민족의 삶(6부)』 등 영상물 1,000조를 제작하여 해외동포사회 및 국내 주요기관에 배포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1991년부터 격년제로 국내와 해외를 번갈아 가면서 해외동포학자와 국내 통일문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세계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세계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 개최현황

연도	개최지	참가국	토론자	주 제
1991	서울	15개국	36명	21세기를 향한 한민족공동체의 나아갈 길
1992	사할린	11개국	31명	새로운 국제환경속에서의 한반도
1993	서울	17개국	33명	신한국 창조와 조국통일의 과제
1994	연길	10개국	25명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 전망
1995	서울	15개국	31명	통일번영의 한민족시대 전망
1996	도쿄	13개국	35명	한민족 통일을 위한 새로운 이해
1997	서울	16개국	28명	남북관계와 북한의 안정적 변화유도
1998	샌프란시스코	10개국	22명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해외동포사회의 역할

한편, 1993년부터 동포 밀집거주 지역인 미주지역에서 「통일포럼」을 개최함으로써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동포사회의 관심을 제고하였다.

다. 북한자료센타 설치운영

1988년 9월 3일 문화공보부는 7·7 특별선언의 후속실천조치의 일환으로 북한 및 공산권 자료 공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① 북한 및 조총련 등 반국가단체가 선전 목적으로 발행한 자료 등 명백히 국헌에 위배되는 자료를 제외한 일반 공산권 자료는 모두 공개
② 북한의 「로동신문」과 영상자료를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공개하여 북한사회의 실상을 폭넓게 알 수 있도록 함.
③ 일반공개에서 제외된 자료라 할 지라도 학술연구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열람·대출 등 이용절차를 간소화
④ 정부기관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보자료를 각계에 최대한 공급하고 이러한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자료센터를 설치·운영

이와 같은 정부의 북한자료 공개정책에 의거, 통일부는 관련학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북한실상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관련 정부 보유자료를 지원하기 위해 1989년 5월 22일 종로구 서린동 154-1 광화문우체국 6층에 430평 규모로 북한자료센터를 설치하였다.

(1) 자료실 운영

(가) 자료보유현황

자료실은 문헌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시청각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실은 이용자들에게 자료의 열람, 복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문헌자료실은 김일성저작집, 북한총람 등 단행본 56,000여권과 부내생산물 3,500여건, 각종 세미나자료 4,400여건 및 보안자료 5,500여건을 소장하고 있다.

정기간행물실은 「로동신문」, 「민주조선」, 「근로자」, 「조선화보」, 「조선예술」 등 정기간행물 7,700여건과 『도라지꽃』, 『금강산으로 가자』, 『피바다』 등 비디오테잎 및 카세트테잎, 마이크로 필름 등 시청각자료 4,800

여건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물품전시실은 의류 등 북한생활용품 500여점을 소장·비치하여 북한의 주민생활을 살펴볼 수 있으며,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와 정부의 대북정책 등 패널을 제작·전시하여 초·중·고등학생들의 통일교육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나) 자료이용현황

자료실 이용대상은 대학생, 관련전문가 및 학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기타 수업의 연계로 초·중·고등학생들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현황을 센터 개관이래 자료별, 연도별·직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 료 별

('98.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문헌자료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토론회	계
			북한영화	MF 등	소 계		
이용자수(누계)	31,899	14,945	33,494	2,190	35,684	9,395	91,923

연도별·직업별

단위 : 명

직업 / 연도	대학생	학 계	공무원	언론계	기 타	계
'89~92년	9,208	2,802	3,975	1,248	5,928	23,161
'93년	2,106	992	275	136	2,590	6,099
'94년	3,954	2,190	494	260	5,023	11,921
'95년	4,337	930	519	207	5,292	11,285
'96년	3,191	1,157	495	180	6,221	11,244
'97년	4,592	1,510	979	212	4,091	11,384
'98년	8,076	1,775	1,914	244	4,820	16,829
계	35,464	11,356	8,651	2,487	33,965	91,923

(다) 자료전산화 현황

북한 및 통일관련 정보자료에 대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가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검색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DB를 구축, 정보자료 전산화를 추진하였다.

1998년말부터는「도서관리」DB를 통일부 인터넷(Unikorea)에 연결시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자료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북한영화상영

국민들이 북한영화 관람을 통해 북한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통일관을 갖게 하기 위해 북한영화상영을 시작하였다.

1990년 3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북한영화상영의 날」로 지정, 북한자료센터에서 정기상영과 계기별 상영을 한 후, 국민들의 반응이 좋아 지방상영도 추진하였다.

1993년 12월부터는 부산, 광주, 1995년 1월부터는 대구, 전주로 확대되어 분기마다 1회 상영을 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는 북한자료 공개확대 차원에서 각 대학의 학교수업과 연계하여 현지출장 상영도 실시하고 있다.

1998년 12월까지의 영화상영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영화상영 현황

단위 : 명

구분 \ 년도		'90~'94	'95	'96	'97	'98	계
정기	회수	61회	12회	12회	12회	12회	109회
	인원	3,880	722	990	520	680	6,792
계기별	회수	62회	18회	25회	40회	73회	218회
	인원	2,187	939	1,225	2,267	5,849	12,467

구분		년도	'90~'94	'95	'96	'97	'98	계
지방	부산	회수	6회	4회	4회	3회	6회	23회
		인원	1,810	791	795	940	1,350	5,686
	광주	회수	5회	4회	4회	3회	3회	19회
		인원	1,340	1,250	755	776	775	4,896
	대구	회수	-	4회	4회	2회	2회	12회
		인원	-	980	1,040	516	257	2,793
	전주	회수	-	2회	4회	1회	1회	8회
		인원	-	260	485	70	45	860
	소계	회수	11회	14회	16회	9회	12회	62회
		인원	3,150	3,281	3,075	2,302	2,427	14,235
계		회수	134회	44회	53회	61회	97회	389회
		인원	9,217	4,942	5,290	5,089	8,956	33,494

(3) 북한실상 설명회 운영

통일문제 전문가 및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하여 북한정세 및 북한주민생활 등과 함께 토론함으로써 참석자들에게 북한실상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북한실상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다.

설명회는 대학생의 학과수업 및 초·중등교사의 연수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각 기관과 일반 사회단체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설명회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실상설명회 개최현황

('98. 12. 31 현재) 단위 : 명

연 도 별	1989~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계
회 수	70회	28회	24회	23회	18회	20회	183회
참가인원	2,993	1,914	1,134	1,259	1,020	1,075	9,395

(4) 북한자료교류협의회 운영

전국 특수자료 취급기관간 특수자료의 상호교류 및 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한 기관 상호간의 연구활동 등을 협력하기 위해 1988년 12월 22일 북방정보자료교류협의회를 창설 운영하고 있다.

1991년 12월 1일 북방정보자료교류협의회는 현재의 북한자료교류협의회로 개칭되었고 협의회에서 1989~1997년까지 「북한자료목록집」을 발간했다.

협의회는 이사회를 연1회 이상 개최하여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을 토의하고, 총회는 연1회 개최하여 「북한자료목록집」 발간, 특수자료취급 관련 내용 등을 안건으로 회의를 갖고 있다.

(5) 특수자료 관련업무

(가) 북한영화 심의

일반 국민들에게 북한실상을 올바르게 알리고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북한영화를 추천하여 관계기관과 협의·심의해 오고 있다.

(나) 특수자료 취급기관 관리

특수자료취급기관 인가는 1989년 9월 이전까지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인가하였으나 1989년 9월이후 특수자료취급지침 개정에 따라 해당 감독부처장이 인가할 수 있게 되어 1998년말 현재까지 10개 기관이 통일부에 특수자료취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인가기관을 살펴보면,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소, 평화문제연구소, 민주

이념연구소, 남북평화통일연구소, 광주북한관, 부산북한관, 인천북한관,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등이 있다.

라. 북한관 운영

(1) 설치현황

북한관은 북한실상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제의 우월성과 대북자신감을 고취하고 국민의 건전한 통일관 정립을 위해 1986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구 통일연수소 청사내에 설치되었다.

「북한관」은 1991년 3월 2일 통일연수원 청사의 신축 이전에 따라 강북구 수유동 현 통일교육원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독립된 건물에 배치되었으며, 규모도 대폭 확장하고 내용을 보완하였다.

특히 통일교육 초청교육과정의 교육생 뿐만 아니라 각급 사회단체, 초·중·고등학생, 군인 등이 북한관을 관람, 북한실상의 이해를 통한 건전한 통일관 정립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1997년 북한관 건물이 「민족통일연구원」 청사로 개조됨에 따라 2월 1일 폐관하게 되었다.

한편, 지방주민의 북한실상 이해와 건전한 통일관 정립을 위해서 11개지역에 지방 북한관을 확대 개설하였다.

1998년말 현재 부산, 인천, 광주, 청주, 제주, 창원 등 대도시 지역과 임진각, 철원, 고성, 오두산, 양구 등 안보관광지에 북한관이 설치되어 있다.

북한관 설치 현황

구 분	위 치	개관일	운영기관	면적 (평)	전시내역
부 산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회관내)	'89. 1.30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166	판넬: 122점 실물: 628점
인 천	남구 숭의4동 8-7 (수봉공원 자유회관내)	'94.12.15	자유총연맹 인천지회	137	판넬: 59점 실물: 629점
광 주	북구 운암동 164-1 (어린이대공원내)	'89. 3.10	통일교육전문위원 광주협의회	205	판넬: 120점 실물: 699점
청 주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72-13 (우암어린이회관내)	'93. 2.23	청주시 우암 어린이회관	150	판넬: 77점 실물: 649점
제 주	제주시 일도2동 968-2 (탐라자유회관내)	'93.12.18	자유총연맹 제주지회	140	판넬: 51점 실물: 863점
고 성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통일전망대내)	'88. 6.15	통일관광 (주)	59	판넬: 54점 실물: 582점
임진각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482-3 (임진각경내)	'91. 1.25	(주) 임진각	80	판넬: 60점 실물: 500점
철 원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 20-1 (철의삼각전적관내)	'90.12.15	철원군청	53	판넬: 55점 실물: 568점
양 구	강원 양구군 해안면 현2리 (펀치볼지구)	'96. 8.14	양구군청	80	판넬: 64점 실물: 789점
오두산	경기 파주군 탄현면 성동리 659 (통일전망대내)	'92. 9. 8	동화진흥 (주)	350	판넬: 50점 실물: 1,153점
경 남	경남 창원시 용지동 485번지 (자유회관내)	'98. 4.29	자유총연맹 경남지회	379	판넬: 150점 실물: 858점

(2) 전시내용

북한관에서는 북한주민의 생활용품, 북한명승고적의 사진 전시와 함께 통일 및 북한실상관련 전시판넬(와이드칼라 포함), 시청각 기자재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

전시판넬과 북한물품의 배치는 각 북한관의 시설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국광복과 국토분단, 북한정권의 수립, 6·25남침, 북한의 정치체제, 북한의 경제, 북한의 권력기구, 식의주생활, 가야할 산하, 도시와 농촌, 세시풍속, 군사분야 등 북한실상의 전반적 상황과 남북회담, 통일노력의 발자취, 남북교류협력 추진현황 등 정부의 통일노력 관련내용을 전시하여 관람객으로 하여금 북한실상 이해와 건전한 통일관 정립에 도움을 주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관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터치스크린, 분단시계, 멀티슬라이드, 멀티비젼, VTR 등 다양한 첨단 시청각 기자재를 설치해 놓고 있다.

(3) 운영방법

통일교육원은 1991년 9월 18일 지방북한관의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하다가 1992년 6월 19일 북한관운영규정을 통일원훈령으로 격상하여 북한관의 설치·폐지, 북한관 운영, 전시품의 관리·폐기, 관람시간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북한관은 통일교육원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통일교육원의 조직 및 예산 등 여건상의 문제로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법인 등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수탁받은 기관은 북한관의 관리책임자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1986년 9월 북한관 개관이후 관람인원은 매년 증가하여 1998년 12월 현재 4천7백만명을 돌파하였다.

제5절 자문기구 및 민간통일운동의 지원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 및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과 역할은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집결하여 민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함에 필요한 제반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한다”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동포 대표를 자문위원에 위촉하고 있다.

각 기별 자문위원 위촉현황

단위 : 명

구분 \ 기별	1기 (81. 6)	2기 (83. 6)	3기 (85. 6)	4기 (87. 6)	5기 (91. 6)	6기 (93. 7)	7기 (95. 7)	8기(1차) (97. 7)	8기(2차) (98. 7)
계	8,919	10,074	10,634	10,593	10,918	11,501	13,420	13,305	13,340
지역대표	5,214	5,106	4,991	4,846	5,170	5,170	5,373	5,325	4,117
직능대표	3,320	4,129	4,673	4,763	4,756	5,185	6,251	6,059	7,012
해외대표	385	839	970	984	992	1.146	1,796	1,921	2,211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구성, 각종회의 준비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 처리, 자문위원 활동의 지원, 협조를 위해 민주평통사무국이 설치되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 통일정책 자문·건의활동

(1) 전체회의, 지역회의

민주평통은 전체회의(중앙회의 및 지방회의)와 국내외 지역회의를 개최, 통일정책에 관한 정부측 보고를 듣는 한편, 자문위원의 통일현안에 대한 의견개진, 대북정책에 대한 건의안 채택 등을 통해 자문·건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평통은 1981년 6월 창설이후 1998년 12월까지 전체회의 9회, 지역회의 8회를 개최하였다.

전체회의 개최현황

기별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안건 및 주요사항
제1기 (1981.6.5 ~ 1983.5.30)	'81. 6. 5 서울 잠실체육관 8,568명 참석	o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제의 (대통령 개회사) o 통일정책에 관한 정책건의 및 결의문 채택 - 1. 12 제의와 6. 5 제의 지지
제2기 (1983.6.1 ~ 1985.5.30)	'83. 6. 1 서울 잠실체육관 9,383명 참석	o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및 결의문 채택 - IPU 참가자의 판문점 경유 북한방문 제의 - 남북한 종교인 상호교류 제의 - 판문점에 남북문화교류센타 건립 - 남북한간 노동자의 상호교류와 체육 문화행사 촉구 - 북한의 남북 체육회담 재개 호응 및 이산가족 재회 촉구
제3기 (1985.6.1 ~ 1987.5.30)	'85. 6. 5 서울 잠실체육관 9,719명 참석	o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및 결의문 채택 -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단일팀 구성 - 남북교환 경기 및 체육인 상호교류 - 남북한간 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예비회담 개최 -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실현 촉구 - 남북 언론인의 교류 및 자유로운 취재 활동 보장 촉구

기별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안건 및 주요사항
제4기 (1987.6.1 ~ 1991.6.28)	'87. 6. 3 서울 잠실체육관 9,564명 참석	o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실현촉구 (대통령 개회사) o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및 결의문 채택 - 북한의 불성실한 대화자세 규탄과 범국민적 통일국론 형성방안 - 관련 국가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평통위원의 역할 모색 - 좌경 급진세력 규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 단합 촉구 - 조국의 평화통일과 조국발전을 위한 해외동포의 자세 및 역할
제5기 (1991.6.29 ~ 1993.6.28)	'91. 7. 12 서울세종문화회관 4,380명 참석 ・서울지역 위원 (2,028명) ・지방대표 위원 (2,352명)	< 중앙회의 > o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및 결의문 채택 - UN 가입후의 남북한 관계 및 평화정착 구도 - 통일대비 국가경영 역량배양 필요성 강조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민화합의 연장선에서 민족화합 실현 - 지방화시대의 통일자문회의 위상과 역할
	'91. 7. 16 ~ 7. 26 부산 등 13개 시・도 6,977명 참석	< 지방회의 > o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위원 정책건의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한 관계 개선방안 - 평화통일을 위한 자문위원의 역할과 사명 -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방안 - 주변정세 변화에 대비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각 직능단체와 직능 자문위원의 역할
	'91. 8. 27 ~ 8. 28 서울 쉐라톤워커힐 811명 참석	< 해외회의 > o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의견 및 건의 - 일본 조총련의 상황과 교민화합 - 내가 본 북한주민의 생활상 - 북한 종교의 실태와 교류방안 - 통독과정에서 얻은 우리의 교훈 - 교민화합과 통일자문위원의 역할 - 남북한 최고 지도자회담 촉구를 위한 건의

기별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안건 및 주요사항
제6기 (1993.7.1 ~ 1995.6.30)	'93. 7. 6 서울세종문화회관 3,515명 참석 ・서울지역 위원 (2,096명) ・지방대표 위원 (1,419명)	< 중앙회의 > o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및 결의안 채택 - 남북관계・통일문제에 관한 정책건의 - 대북 메시지와 남북관계 대처방안 -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국민적 대비 -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제언
	'93. 7. 12 ~ 7. 16 부산 등 11개 도시 6,912명 참석	< 지방회의 > o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의견 및 건의 및 결의안 채택 - 북한의 핵개발 저의와 우리의 대응책 - 통일운동의 핵심주체로서 통일자문회의의 역할과 사명
	'93. 9. 13 ~ 9. 16 서울 쉐라톤워커힐 851명 참석	< 해외회의 > o 통일정책에 관한 건의 및 결의안 채택 - 재일동포의 화합과 교류, 그리고 통일을 위하여 - 북한의 핵문제와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건의 - 북한의 민주화와 개방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 - 통일에서 새로운 분열로 가는 독일 - 해외 협의회 운영과 해외위원 활동의 활성화 방안 - 6.25 포로출신 교포의 실상과 후원방안
제7기 (1995.7.1 ~ 1997.6.30)	'95. 8. 21 서울세종문화회관 3,386명 참석 ・서울지역 위원 (2,285명) ・지방대표 위원 (1,101명)	< 중앙회의 > o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및 결의안 채택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근간의 남북 관계 현안 문제 - 북한동포의 인권보장 및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촉구 -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범국민운동의 바람직한 전개방향 - 제7기 민주평통의 새 위상과 역할정립
	'95. 8. 25 ~ 9. 13 부산 등 14개 시・도 6,912명 참석	< 지방회의 > o 통일문제에 관한 의견개진 - 시・도별 2~4건 의견 건의 o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결의안 채택

기별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안건 및 주요사항
제7기	'95. 9. 4 ~ 9. 7 서울 쉐라톤워커힐 896명 참석	< 해외회의 > o 국내초청 회의(일본 제외) - 통일정책에 관한 의견개진
	'95. 9. 28 동경 뉴오따니호텔 419명 참석	o 해외 현지회의 (일본지역) - 통일정책에 관한 의견개진
제8기 제1차 (1997.7.1 ~ 1999.6.30)	'97. 7. 9 서울세종문화회관 3,561명 참석 ・서울지역 위원 (2,273명) ・지방대표 위원 (1,288명)	< 중앙회의 > o 통일정책에 관한 정책건의 및 결의안 채택 - 남북관계・통일문제에 관한 정책제언 - 대북메시지 및 남북관계 대응방안 -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국민적 대비 - 제8기 민주평통의 위상 및 역할정립
	'97. 7. 11 ~ 7. 15 부산 등 14개 시・도 7,281명 참석	< 지방회의 > o 통일문제에 대한 의견개진 - 시・도별 2~3건 의견 건의 o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결의안 채택
	'97. 9. 9 ~ 9. 12 서울 쉐라톤워커힐 744명 참석	< 해외회의 > o 서울초청 회의(미국, 캐나다,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 -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의견개진 및 결의안 채택
	97. 7. 28 ~8. 7 491명 참석	o 현지회의 (일본, 구주, 남미) - 통일에 관한 의견개진
제8기 제2차	'98. 9. 23 서울 올림픽 제1체육관 8,462명 참석	< 국내 전체회의 > o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 대북정책 추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 - 민족화해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 한반도 안보와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o 국민대통합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선언

기별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안건 및 주요사항
제8기 제2차	'98. 9. 28 ~ 10. 1 서울 롯데월드 454명 참석	< 해외회의 > o 서울초청 회의 (일본, 구주, 중남미지역) -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건의안 및 제안 채택
	'98. 7. 26 ~ 8. 2 '98. 8. 5 ~ 11. 2	o 해외 현지회의 - 동남아, 대양주, 뉴질랜드 지역 : 73명 참석 - 미국 시카고, 뉴욕, 위싱턴, 휴스턴, LA, 하와이, 시애틀, SF, 캐나다 동부·서부 등 10개 협의회 : 616명 참석 - 조국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 및 자문위원 의견개진

(2) 운영·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지역협의회

민주평통은 주요사업계획을 확정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50인 이내, 연 4회 개최)와 남북관계 주요 현안문제에 관해 자문·건의하는 상임위원회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연 2회 개최),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중장기 통일과제를 연구, 개발하는 11개 분과위원회 (분과별 연 2-4회 개최)를 두고 있다. 또한 국내에는 시·군·구 단위로, 해외에는 북미주, 구주 등 지역단위로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들 회의체들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분과위원회 운영현황

단위 : 회수

기별 / 분과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계
정책심의	6	6	5	8	5	5	5	2	42
교육홍보	6	7	5	7	4	5	5	2	41

분과 \ 기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계
지역협력	6	3	5	5	4	4	5	3	35
이념제도			5	6	4	7	3	2	27
경제과학	6	8	5	4	5	5	5	2	40
사회복지						5	5	2	12
문화예술	6	6	5	5	4	5	5	1	37
체육청소년			5	4	5	5	5	2	26
종 교	5	5	5	8	4	5	5	1	38
여 성	5	5	6	7	7	7	5	2	44
인권특위							5	2	7
총 계	40	40	46	54	42	53	53	21	349

※ 제8기 제2차부터 이념제도분과 위원회 폐지, 민족화해협력특별위원회 신설

(3) 사안별 주요 건의사항

① 통일정책기조, 통일방안, 대북정책
- 「남북연합」 형성방안 ('93. 11)
-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실태와 대책 ('94. 6)
- 남북한 법률 통합방안 ('94. 10)
- 통일에 대비한 사회복지의 모델과 발전방안 ('95. 4)
- 남북한 헌법체제의 비교연구와 통합방안 ('95. 5)
- 통일에 대비한 북한내 부동산 및 국영기업의 사유화 방안 ('97. 4)
-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방안 등 정책과제 ('98. 7)

② 남북대화·교류·협력
- 남북한 예술교류를 위한 방법론적 제안 ('93. 11)

- 남북한 음악교류의 현황과 교류협력방안 ('94. 3)
- 남북 경제교류 확대방안 ('94. 4)
- 통일에 대비한 종교계의 현황과 상호협력관계 ('94. 6)
- 남북한 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 ('94. 9)
- 남북한 이념제도의 차이가 교류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98. 6)

③ 통일환경 및 여건
-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의 대내외적 배경 ('83. 1)
- 북한 핵문제의 국제적 처리전망과 우리의 대책 ('93. 10)
- 사회복지 관점에서 본 독일통일과 남북한 통일과제 ('94. 3)
- 예멘통일의 오늘과 우리의 과제 ('94. 6)
- 주변4강의 대북접촉에 따른 대응책 ('96. 3)

④ 북한의 실태 및 대남전략
- 북한체육의 특성과 통일체육의 과제 ('94. 3)
- 북한연구 이대로 좋은가 ('95. 5)
- 북한의 인권실상과 정책과제 ('95. 10)
- 납북억류자 및 북송교포의 인권실상 ('95. 10)
- 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인의 과제 ('95. 11)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실상과 전망 ('95. 11)
- 김일성 사후 북한의 주체사상 실체와 전망 ('96. 4)
-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 ('96. 10)
- 북한인권 현황과 개선을 위한 국제인권기구와의 연계방안 ('97. 5)

⑤ 국내외 각계의 통일논의 수렴 및 국론통일 방안
- 평화통일과 청소년 대책 ('93. 10)
- 지방화시대의 통일운동 전개방향 ('94. 5)
- 통일에 대비한 청소년의 의식과 가치관 확립의 과제 ('94. 7)
- 주사파 등 급진세력의 실태와 대책 ('94. 8)
- 남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위한 방안 ('95. 3)
- 국민적 통일교육 체계화 방안 ('95. 11)
-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의 지혜와 역할 ('96. 8)

- 민족·민족주의, 통일과제 ('96. 10)
- 중국내 동포들의 올바른 민족관 정립을 위한 이념제도적 방안 ('97. 5)
- 통일에 대비한 청소년 인성교육 방안 ('98. 6)
-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국민대통합 방안 ('98. 7)

나. 국민여론 수렴

(1) 전문가회의, 통일정책 포럼

통일문제 전문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통일관련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대안을 모색·건의하였다.

또한 전문분야별 중장기 통일정책 과제를 연구·개발, 건의하기 위한 통일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통일과정과 통일후 제기될 수 있는 제반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 통일문제 여론조사

또한 자문위원을 통하여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의 일반적 인식상황과 변화추이를 정례적으로 분석하고, 통일문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통일모니터제를 운영, 국민 각계의 통일여론을 폭넓게 수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다. 국민적 합의형성 노력

(1) 통일정세보고회

통일정세 보고회는 지역협의회별로 또는 권역별 합동으로 매년 실시하였다.

통일정세보고회는 전 자문위원과 지역주민들에게 한반도 통일환경과 정세를 정확히 인식시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론을 통일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통일문제 대토론회, 학술심포지엄 개최

통일문제 대토론회와 학술 심포지엄은 통일의지와 역량결집 및 범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특히 국제학술 심포지엄 중「북한인권문제 국제학술 심포지엄」('95. 12. 15)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이산가족의 아픔,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문제, 북송교포들의 인권침해 실상, 북한인권 개선방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과 같은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3) 시·군·구 협의회 주관 통일대화 및 강연회, 통일후계세대 육성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통일강좌가 자문위원 및 지역주민과 중·고교 윤리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수시로 개최되었다. 또한 국내 지역협의회가 주관하여 실시한 통일대화 및 강연회에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 통일안보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통일후계세대들에게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도 각 시·도별로 매년 2회이상 개최되었다. 또한 중·고교생 대상 교육, 해외동포 대학생 연수 등을 매년 개최하였다.

라. 기타 활동

(1) 자문위원 연찬 등 지원

민주평통은 각계각층의 통일의지와 안보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먼저 자문위원 스스로의 통일자문 역량함양에 힘썼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통일환경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연찬, 통일관련 자료지원, 각종회의, 현장시찰 등을 실시하였다.

자문위원 연찬은 매년 10회이상 때로는 20여회에 걸쳐 실시되었다(지역대표 자문위원 포함). 또한 기관지「민주평통」「시사자료」「통일정세」「정책연구자료」「통일로」「통일논총」기타 통일관련 문헌 및 통일관련 정기간행물을 선별, 지원하였다.

(2) 통일관련 특화사업 전개

전국 시·군·구 협의회별로 통일기원제, 한시백일장, 통일염원 군민 등반대회, 통일 줄다리기, 통일 연날리기대회, 통일대행진, 각종 문예·체육행

사, 북한동포돕기 통장갖기,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등 특성에 맞는 사업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함양에 기여하였다.

(3) 지역협의회간 자매결연

국내외를 망라한 협의회간의 자매결연과 상호방문을 통해 국민화합 차원에서 지역간의 교류와 상호친목 및 단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자매결연 중에는 영·호남간의 교류와 협력, 해외지역 협의회와 국내지역 협의회, 해외 도시와 국내지역 협의회간의 자매결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협의회간 자매결연 현황>

- o 영·호남간 결연 : 34건 59개 협의회
- o 도·농간 결연 : 16건 25개 협의회
- o 국내·해외간 결연 : 16건 27개 협의회

이밖에 전국의 여성위원을 중심으로 북한 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결연사업과 연변 조선족 유학생 및 북한이탈 재학생 「장학사업」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4)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재외동포의 인식제고와 통일의견 수렴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은 통일문제 자료제공과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를 통해 모국정부 통일방안의 합리성과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득력있게 이해시키는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재외동포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켰다.

특히 재외동포 1.5세, 2세를 위한 통일문제 세미나 또는 통일연수 프로그램 개발 (통일강좌, 강연회, 글짓기 대회 등) 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5) 북한사회의 개혁·개방 유도와 인권개선 촉구활동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은 거주국별로 친북한 인사 접촉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북한의 개혁·개방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사회주의권 동포와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노력을 펼쳤다.

이와함께 해외위원 및 재외동포가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북한인사를 초청하거나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에 관한 세계언론을 환기시키는 데도 노력하였다.

2. 자문기구의 운영

가. 통일고문회의

1969년에 제정된 국토통일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3934호)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토통일자문위원회로 출발, 1970년 국토통일고문회의로 개칭(대통령령 제4841호)한 통일고문회의는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사회원로급 자문기구이다.

통일고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초당적·범국민적 의견을 종합하고 국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 선양하며, 효율적인 통일정책의 협의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통일고문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각계 원로·대표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1) 주요 연혁

일 자	연 혁
1989. 3. 1	국토통일고문 14명 위촉
1991. 2. 1	「국토통일고문회의규정」을 「통일고문회의규정」으로 개정(대통령령 제13269호)
1992. 9. 1	통일고문 14명 위촉 - 의장(7대) 민관식 고문
1993. 6. 1	통일고문 30명 위촉 - 의장(8대) 민관식 고문(유임)
1996.12.31	「통일고문회의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5207호) - 고문정원 축소(60→40), 임기 축소(4년→2년
1997. 6. 1	통일고문 30명 위촉 - 의장(9대) 김재순 고문
1998. 5.19	통일고문 27명 위촉 - 의장(10대) 강원룡 고문
1998. 8. 1	통일고문 2명 추가 위촉
1998.11.28	「통일고문회의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5933호)

(2) 역대 통일고문

姓 名	在任期間
姜元龍	'69. 5.27～'84. 2. 8
郭尙勳	'69. 5.27～'80. 1.19
高在旭	'69. 5.27～'76. 6.22
具平會	'91. 5. 8～'93. 5.31
金瓊元	'97. 6. 1～'98. 4.30
金 德	'95.12. 1～'96. 6.25
金東煥	'97. 6. 1～'98. 4.30
金明潤	'89. 3. 1～'96. 6.25
金相廈	'97. 6. 1～'98. 4.30
金壽煥	'69. 5.27～'92. 2. 8
金英錫	'93. 6. 1～'97. 5.31
金永善	'83. 2.22～'87. 2.17
金榮禎	'91. 5. 8～'97. 5.31
金玉均	'92. 9. 1～'97. 5.31
金玉烈	'91. 5. 8～'97. 5.31
金溶植	'84. 2. 9～'92. 2. 8
金容完	'80. 2. 9～'84. 2. 8
金宇中	'91. 5. 8～'93. 5.31
金雲龍	'97. 6. 1～'98. 4.30
金元萬	'89. 3. 1～'95. 5.27
金義澤	'74.11.20～'83. 2. 1
金一煥	'74.11.20～'92. 2. 8
金在淳	'97. 6. 1～'98. 4.30
金貞烈	'69. 5.27～'83. 5.31
金宗鎬	'84. 2. 9～'88. 4.15
金埈成	'84. 2. 9～'88. 2. 8

姓 名	在任期間
高在鎬	'86. 7.15～'91.10.18
孔魯明	'97. 6. 1～'98. 4.30
權五琦	'91. 5. 8～'96. 1. 4
金炯琪	'91. 5. 8～'94. 8. 4
金弘壹	'69. 5.27～'80. 8. 8
金活蘭	'69. 5.27～'70. 2. 1
南時旭	'96. 4. 1～'98. 4.30
南 旭	'93. 6. 1～'97. 5.31
盧載源	'97. 6. 1～'98. 4.30
董 勳	'96. 4. 1～'98. 4.30
柳達永	'74.11.20～'84. 2. 8
柳致松	'93. 6. 1～'97. 5.31
毛允淑	'74.11.20～'84. 2. 8
閔寬植	'92. 9. 1～'97. 5.31
閔丙權	'84. 2. 9～'92. 2. 8
閔復基	'80. 2. 9～'84. 2. 8
朴權相	'92. 9. 1～'97. 5.31
朴東鎭	'91. 6. 7～'97. 5.31
朴順天	'69. 5.27～'83. 1. 9
朴 昇	'92. 9. 1～'93. 5.31
朴鍾和	'69. 5.27～'81. 1.13
朴贊兢	'86. 7.15～'93. 5.31
朴瓚鉉	'86. 7.15～'91. 9.24
朴賢植	'92. 9. 1～'97. 5.31
朴炯圭	'93. 6. 1～'97. 5.31
朴 弘	'97. 6. 1～'98. 4.30

姓　名	在任期間
金　濮	'92. 9. 1～'97. 5.31
金致烈	'92. 9. 1～'93. 5.31
金判述	'89. 3. 1～'93. 5.31
金賢子	'91. 5. 8～'97. 5.31
夫完嫮	'74.11.20～'80. 2. 8
徐東權	'97. 6. 1～'98. 4.30
徐珉濠	'69. 5.27～'74. 2.24
徐廷柱	'87. 4.15～'93. 5.31
徐廷和	'83. 2.22～'84. 3.19
鮮于輝	'75. 5. 6～'86. 6.12
成炳旭	'97. 6. 1～'98. 4.30
孫元一	'69. 5.27～'80. 2.15
孫仁實	'87. 4.15～'91. 4.14
孫在植	'96. 4. 1～'98. 4.30
宋南憲	'89. 3. 1～'93. 5.31
宋志英	'80. 2. 9～'84. 2. 8
宋膺燮	'97. 6. 1～'98. 4.30
宋漢虎	'97. 6. 1～'98. 4.30
愼道晟	'89. 3. 1～'93. 5.31
申東元	'94.10.11～'98. 4.30
申泰煥	'75. 5. 6～'92. 2. 8
梁一東	'74.11.20～'80. 4. 1
梁好民	'89. 3. 1～'93. 5.31
吳綠園	'91. 5. 8～'98. 4.30
兪鎭午	'80. 2. 9～'84. 2. 8
尹古庵	'69. 5.27～'80.11. 3
尹勤煥	'92. 9. 1～'97. 5.31
尹汝訓	'97. 6. 1～'98. 4.30

姓　名	在任期間
白樂濬	'69. 5.27～'84. 2. 8
白斗鎭	'69. 5.27～'84. 2. 8
白善燁	'86. 7.15～'93. 5.31
卞鴻圭	'69. 5.27～'76. 7.26
李季順	'92. 9. 1～'93. 5.31
李範奭	'69. 5.27～'72. 5.11
李丙燾	'69. 5.27～'84. 2. 8
李相敦	'89. 3. 1～'97. 5.31
李相禹	'97. 6. 1～'98. 4.30
李瑄根	'69. 5.27～'83. 1.19
李世中	'96. 4. 1～'98. 4.30
李用熙	'83. 2.22～'93. 5.31
李源京	'87. 4.15～'88. 4.15
李允榮	'69. 5.27～'70.10.15
李殷相	'75. 5. 6～'82. 9.18
李應俊	'69. 5.27～'84. 2. 8
李　仁	'74.11.20～'79. 4. 5
李寅基	'80. 2. 9～'87. 6.28
李昌熙	'92. 9. 1～'97. 5.31
李哲承	'80. 3.24～'84. 3.19
李忠煥	'89. 3. 1～'93. 5.31
李兌榮	'89. 3. 1～'95.11.11
李亨根	'89. 3. 1～'93. 5.31
李　澔	'80. 2. 9～'84. 2. 8
李孝祥	'69. 5.27～'84. 2. 8
李效再	'93. 6. 1～'94. 3.22
李嬉性	'84. 2. 9～'89. 2.28
林炳稷	'69. 5.27～'76. 9.21

姓 名	在任期間
尹濟述	'69. 5.27～'80. 2. 8
尹致映	'69. 5.27～'84. 2. 8
李圭東	'83. 3. 2～'88. 4.15
張利郁	'69. 5.27～'80. 2. 8
鄭一亨	'69. 5.27～'82. 4.23
鄭義淑	'97. 6. 1～'98. 4.30
鄭海永	'89. 3. 1～'97. 5.31
鄭憲柱	'89. 3. 1～'93. 5.31
趙南基	'89. 3. 1～'92. 3. 2
趙錫來	'92. 9. 1～'97. 5.31
趙 淳	'91. 5. 8～'92. 4. 2
趙淵夏	'91. 5. 8～'97. 5.31
趙容淳	'69. 5.27～'75. 8.27
趙鎭滿	'69. 5.27～'79. 2.12
趙香祿	'92. 9. 1～'97. 5.31
池學淳	'87. 4.15～'91. 4.14
蔡汶植	'92. 9. 1～'93. 5.31
千寬宇	'80. 2. 9～'85. 5.18
千命基	'83. 2.22～'88. 4.15
崔佻洙	'97. 6. 1～'98. 4.30
崔德新	'69. 5.27～'80. 2. 8

姓 名	在任期間
任永信	'69. 5.27～'77. 2.17
張坰淳	'69. 5.27～'80. 2. 8
張盛煥	'86. 7.15～'93. 5.31
崔斗善	'69. 5.27～'74. 9. 9
崔錫采	'75. 5. 6～'91. 4.11
崔完福	'84. 2. 9～'92. 2. 8
崔主鎬	'87. 4.15～'91. 4.14
崔昌武	'97. 6. 1～'98. 4.30
崔浩中	'92. 9. 1～'98. 4.30
崔 薰	'97. 6. 1～'98. 4.30
韓景職	'69. 5.27～'88. 2. 8
韓完相	'94. 3.22～'98. 3.21
韓豹頊	'89. 3. 1～'93. 5.31
咸錫憲	'69. 5.27～'80. 2. 8
許 政	'69. 5.27～'80. 2. 8
洪南淳	'93. 6. 1～'93. 7.12
洪性澈	'91. 5. 8～'98. 4.30
洪鍾仁	'69. 5.27～'84. 2. 8
黃秉冀	'97. 6. 1～'98. 4.30
黃山德	'87. 4.15～'89.10.19
黃聖秀	'75. 5. 6～'87. 4.14

(3) 현 통일고문

姓 名	委囑日字	主 要 經 歷
姜元龍 (議長)	1998. 5.1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장, 세계종교인평화회의 공동의장,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姜萬吉	1998. 5.19	고려대 교수, 월간「사회평론」발행인,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姜汶奎	1998. 5.19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원장,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金大中	1998. 5.19	조선일보 논설주간·편집국장·주필
金玟河	1998. 5.19	중앙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金壽煥	1998. 8. 1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서울대교구장, 추기경
金榮俊	1998. 5.19	농림부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이사장
金宗河	1998. 5.19	남북체육회담 수석대표, 대한체육회장, 고합뉴욕생명보험 회장
金鎭炫	1998. 5.19	동아일보 논설주간, 과기처장관, 서울시립대 총장
金昌悅	1997. 6. 1	한국일보 편집국장, 한국일보 사장, 방송위원회 위원장
朴英淑	1998. 5.19	13대 국회의원, 평민당 부총재, 한국환경사회 정책연구소장
朴宗和	1998. 5.19	한신대 교수,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총무
邊衡尹	1998. 5.19	서울대 교수, 경제학회장,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
徐英勳	1998. 5.19	남북적십자회담 대표, 한국방송공사 사장, 신사회공동선운동공동연합 상임공동대표
宋月珠	1998. 5.19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 공동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조계종 총무원장

姓 名	委囑日字	主 要 經 歷
安武赫	1998. 5.19	국세청장, 안기부장, 14대 국회의원, 한국발전연구원 이사장
吳在植	1998. 5.1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문제연구원장, 세계교회협의회 국장, 한국선명회 회장
李慶淑	1998. 5.19	11대 국회의원, 남북적십자회담 자문위원, 숙명여대 총장
李秉衡	1998. 5.19	제2군 사령관,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성우회 부회장
李御寧	1998. 5.19	언론사 논설위원, 문화부 장관, 이화여대 석학교수
李嬿淑	1998. 5.19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여성 NGO위원회 상임대표, 정무2장관
李愚貞	1998. 5.19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14대 국회의원, 국회 여성특위 위원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회장
張基天	1998. 8. 1	기독교학생총연맹 이사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장, 동대문감리교회 담임목사
張 裳	1998. 5.19	이화여대 학생처장·인문대학장, 이화여대 총장
鄭光謨	1998. 5.19	서울 YWCA 회장,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趙永植	1998. 5.19	경희대 총장, 경희학원 이사장,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위원장
崔明憲	1998. 5.19	11·12대 국회의원, 노동부 장관, 무역진흥공사 이사장
崔永喆	1993. 6. 1	9~12대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체신·노동부장관, 대통령 정치담당특보,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咸正鎬	1998. 5.19	국제한인변호사협회장,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나. 통일정책평가회의 운영

통일정책수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990년 3월 1일 통일정책평가단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각계 각층의 통일문제 전문가들로 하여금 통일정책 평가단을 구성·운영하

게 되었다.

특히 평가위원은 분야별 전문성, 직능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정치·경제·법률·언론 등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위촉하고 매년 일부를 재위촉함으로써 평가회의 운영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1) 통일정책 평가위원

年 度	性 名
'92년('92.3.1~93.2.28)	○ 위원장 : 金點坤 ○ 위 원 : 康仁德, 具本湖, 金達中, 金 悳, 金東一, 朴奉植, 박영철, 安秉俊, 李相禹, 鄭鍾文, 지정일
'93년('93.3.1~94.2.28)	○ 위원장 : 韓培浩 ○ 위 원 : 具本湖, 具永祿, 具宗書, 權泰煥, 金東一, 朴在圭, 呂永茂, 安秉俊, 李相禹, 李泳禧, 林東源, 車東世, 崔相龍
'94년(94.3.1~'95.2.28)	○ 위원장 : 韓培浩 ○ 위 원 : 康仁德, 金璟東, 金基桓, 金文煥, 李仁浩, 具本湖, 具永祿, 具宗書, 權泰煥, 安秉俊, 李相禹, 林東源, 車東世, 崔相龍
'95년('95.3.1~'96.2.28)	○ 위원장 : 金基桓 ○ 위 원 : 康仁德, 金璟東, 金明基, 金潤坤, 金學俊, 安秉俊, 李範俊, 李相禹, 李成春, 李仁浩, 張仁順, 鄭鍾文, 陳德奎, 崔相龍
'96년('96.3.1~'97.2.28)	○ 위원장 : 金基桓 ○ 위 원 : 具本湖, 康仁德, 金明基, 金潤坤, 金學俊, 安秉俊, 李範俊, 李相禹, 李成春, 李時炯, 李將鎬, 張仁順, 鄭鍾文, 崔相龍

年 度	性 名
'97년('97.3.1~'98.2.28)	○ 위원장 : 金基桓 ○ 위 원 : 具本湖, 康仁德, 金光億, 金明基, 金潤坤, 金學俊, 安秉俊, 楊秀吉, 李範俊, 李成春, 李時炯, 張仁順, 鄭鍾文, 崔相龍
'98년('98.3.1~'99.2.28)	○ 위원장 : 李相禹 ○ 위 원 : 金明基, 金學俊, 都俊鎬, 朴熊緖, 安秉俊, 吳淇坪, 柳世熙, 李相晃, 李成春, 李榮善, 鄭鍾文, 崔相龍, 河英善, 韓相震

(2) 개최 현황

년 도	일 자	의 제
'93년	'93. 3. 31	○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
	'93. 5.7~8	○ 새정부의 통일정책 추진방향 모색
	'93. 9. 22	○ 신정부의 3단계 3기조 통일정책 발전방안 검토 - 화해·협력시대 중심 -
	'93.11.26~27	○ 신정부의 통일정책 추진방향 -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방향
'94년	'94. 4. 8	○ 최근 남북간의 현안문제와 대책방향
	'94. 6. 23	○ 북한 핵문제 관련 대북제제 국면하의 대책방향
	'94.11.18~19	○ '94년도 대북정책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남북교류협력 평가 및 추진방향 등
	'94. 12. 26	○ '95년도 남북관계 전망 및 대책

년 도	일 자	의 제
'95년	'95. 3. 14	○ 최근 남북간의 현안문제와 대책방향
	'95. 6. 8	○ 상반기 대북정책평가 및 향후 대책방향
	'95. 10. 18	○ 대북정책 평가 및 향후 대책방향
	'95. 11. 24	○ '96년도 통일정책 추진방향 - 주변 4각의 대 한반도 정책전망과 한국의 대응 등
'96년	'96. 3. 27	○ 남북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96. 7. 3	○ 4자회담의 대북식량지원 등 최근 대북정책 추진 사항 평가
	'96. 10. 22	○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의 대북정책 방향
	'96. 11. 22	○ '97년도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시 고려해야 할 주요 과제
'97년	'97. 2. 26	○ 황장엽 북한노동당비서 망명사건이후 남북관계 전망 등 의견수렴 (*96년도 평가위원 참석)
	'97. 6. 20	○ 상반기 대북정책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검토 - 4자회담 개최관련 향후 대책 - 북경적십자 대표접촉합의에 따른 후속대책 및 전망 등
	'97. 8. 25	○ 현단계 대북정책 평가 및 전망
	'97. 12. 4	○ 향후 5년간 통일정책 추진방향 - 문민정부 5년간의 통일정책 평가 - 향후 통일정책 추진방향

년 도	일 자	의 제
'98년	'98. 4. 17	○「국민의정부」대북정책 추진방향 - 주요 대북정책 추진방향
	'98. 7. 23	○「국민의정부」대북정책 추진실적 평가 - 남북관계 현황
	'98.9.11~12	○ 김정일체제의 공식출범과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 - 북한정세 종합평가 - 김정일 시대의 대내외·대남정책 전망 -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
	'98. 11. 4	○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현황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모색
	'98. 12. 19	○ '98 대북정책 추진평가 및 '99 정책추진 방향

다. 정책자문위원회

통일부는 1981년부터 중요정책의 입안·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학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11074호)에 근거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운영규정(통일부훈령 제284호)에 따라 1998년 현재 6개 분과위(통일정책,북한정보,교류협력,인도지원,남북회담,교육홍보) 48명을 위촉·운영하고 있다.

(1) 주요연혁

일 자	내 용
1981. 1.28	o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정(대통령령 제10181호) - 국정운영과 정책수립에 학계·전문가의 전문지식 활용 및 국정참여 기회 확대 목적으로 기관별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1.30	o 국토통일원정책자문위원회운영규정 제정(국토통일원훈령 제107호) - 통일정책, 북한, 통일교육, 통일홍보, 남북대화, 자료, 자문회의 분과위원회 등 7개분과
2.12	o 정책자문위원 위촉(70명) - 통일정책분과 등 7개분과
1982. 3.31	o 정책자문위원 위촉(66명) - 북한분과 등 5개분과
1983. 3.16	o 정책자문위원회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1074호) - 기관별 실정 따라 신축성있게 구성(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4.19	o 국토통일원정책자문위원회운영규정 개정(국토통일원훈령 제155호) - 북한, 통일대화, 교육홍보, 자료분과위 등 4개분과로 축소
5. 9	o 정책자문위원 위촉(24명) - 북한분과, 통일대화분과 각 12명
1984. 5. 9	o 정책자문위원 위촉(24명) - 북한분과, 통일대화분과 각 12명
1985. 5. 9	o 정책자문위원 위촉(27명) - 북한분과 14명, 통일대화분과 13명

일 자	내 용
1985. 5. 9	o 정책자문위원 위촉(28명) - 북한분과 14명, 통일대화분과 14명
1987. 4.25	o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확대(40명) - 교육홍보분과 신설(12명)
5. 9	o 정책자문위원 위촉(36명) - 북한분과 15명, 통일대화분과 13명, 교육홍보분과 8명
1988. 5. 9	o 정책자문위원 위촉(38명) - 북한분과 15명, 통일대화분과 13명, 교육홍보분과 10명
1989. 5. 9	o 정책자문위원 위촉(38명) - 통일정책분과 7명, 북한분과 8명, 교육홍보분과 7명, 자료분과 6명, 남북대화분과 10명
1990. 3. 7	o 국토통일원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국토통일원훈령 제204호) - 분과위 월 1회→매분기 1회
4.26	o 정책자문위원 위촉(38명) - 통일정책분과 8명, 북한분과 8명, 교육홍보분과 7명, 자료분과 6명, 남북대화분과 9명
1991. 5.30	o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 개편 - 북한분과, 자료분과→북한정보분과 - 교류협력분과 신설
7.29	o 정책자문위원 위촉(40명) - 통일정책분과 10명, 북한정보분과 7명, 교류협력분과 6명, 교육홍보분과 7명, 남북대화분과 10명
1992. 6.17	o 정책자문위원 위촉(38명) - 통일정책분과 8명, 북한정보분과 7명, 교류협력분과 7명, 교육홍보분과 7명, 남북대화분과 9명

일 자	내 용
1993. 7. 1	o 정책자문위원 위촉(38명) - 통일정책분과 9명, 북한정보분과 7명, 교류협력분과 7명, 교육홍보분과 6명, 남북대화분과 9명
1994. 7. 1	o 정책자문위원 위촉(38명) - 통일정책분과 9명, 북한정보분과 7명, 교류협력분과 7명, 교육홍보분과 7명, 남북대화분과 8명
1995. 7. 1	o 정책자문위원 위촉(38명) - 통일정책분과 9명, 북한정보분과 7명, 교류협력분과 7명, 교육홍보분과 7명, 남북대화분과 8명
1996. 7. 1	o '96년도 통일원 정책자문위원 위촉(38명) - 통일정책분과 9명, 북한정보분과 7명, 교류협력분과 7명, 교육홍보분과 7명, 남북대화분과 8명
1997. 1.28	o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증원(40명이내→50명이내) - 인도지원국 신설('96.12.17)로 인도지원분과 신설
7. 1	o 정책자문위원 위촉(47명) - 통일정책분과 9명, 북한정보분과 8명, 교류협력분과 8명, 인도지원분과 7명, 남북회담분과 8명, 교육홍보분과 7명
1998. 7. 1	o 정책자문위원 위촉(48명) - 통일정책분과 10명, 북한정보분과 8명, 교류협력분과 8명, - 인도지원분과 7명, 남북회담분과 8명, 교육홍보분과 7명

(2) 1980년대 자문위원

姓 名	在任期間
姜聲允	81. 2.12~83. 5. 8
姜容植	82. 7.20~83. 5. 8
康仁德	81. 2.12~90. 5. 8
姜在倫	82. 3.31~83. 5. 8
郭東安	82. 3.31~83. 5. 8
權武穗	81. 2.12~82. 3.30
金 悳	81. 2.12~88. 5. 8
金甲喆	82. 3.31~83. 5. 8 85. 5. 9~90. 5. 8
金南植	81. 2.12~90. 5. 8
金達中	81. 3.31~90. 5. 8
金東鉉	82. 3.31~83. 5. 8
金明基	89. 5. 9~90. 5. 8
金 明	82. 5.15~83. 5. 8
金玟河	83. 5. 9~85. 5. 8
金錫泳	89. 5. 9~90. 5. 8
金善亨	82. 3.31~83. 5. 8
金聖奉	89. 5. 9~90. 5. 8
金壽鎭	81. 2.12~83. 5. 8
金永俊	81. 2.12~85. 5. 8
金用洙	82. 7.20~83. 5. 8
金俊燁	81. 2.12~83. 5. 8
金重緯	84. 5. 9~86. 5. 8
金鎭炫	88. 5. 9~90. 5. 8
金昌順	81. 2.12~90. 5. 8
金忠男	81. 2.12~82. 3.30
金河龍	81. 2.12~83. 5. 8
金學俊	82. 3.31~86. 5. 8
盧喜目	89. 5. 9~90. 5. 8

姓 名	在任期間
朴奉植	81. 2.12~90. 5. 8
朴性鳳	81. 2.12~83. 5. 8
朴璉鎬	82. 3.31~83. 5. 8
朴容憲	82. 3.31~83. 5. 8 88. 5. 9~89. 5. 8
朴淳英	81. 2.12~83. 5. 8 89. 5. 9~90. 5. 8
朴完信	88. 5. 9~89. 5. 8
朴慈憲	81. 2.12~83. 5. 8
朴熙英	82. 3.31~83. 5. 8
裵名五	81. 2.12~83. 5. 8 87. 5. 9~89. 5. 8
白京南	85. 5. 9~87. 5. 8
邊衡尹	81. 2.12~82. 3.30
徐廷宇	89. 5. 9~90. 5. 8
成元慶	81. 2.12~82. 3.30
成滉鏞	81. 2.12~82. 3.30
孫仁洙	81. 2.12~82. 3.30
孫製錫	81. 2.12~82. 3.30
宋吉永	81. 2.12~82. 3.30
宋庸植	82. 7.20~83. 5. 8
申用淳	82. 7.20~82. 5. 8
申龍澈	82. 3.31~83. 5. 8
申正鉉	89. 5. 9~90. 5. 8
安貴德	81. 2.12~82. 3.30 88. 5. 9~89. 5. 8
安秉俊	81. 2.12~82. 3.30 82.10. 4~88. 5. 8
安溶敎	81. 2.12~82. 3.30

姓　名	在任期間
都興烈	81. 2.12～83. 5. 8
	85. 5. 9～90. 5. 8
文龍鱗	88. 5. 9～90. 5. 8
閔庚培	81. 2.12～82. 3.30
閔丙天	83. 5. 9～87. 5. 8
朴慶錫	84.12.17～87.11. 6
朴吉俊	81. 2.12～83. 5. 8
朴東雲	81. 2.12～88. 5. 8
柳武正	88. 5. 9～89. 5. 8
柳炳華	86. 5. 9～90. 5. 8
柳錫烈	85. 5. 9～90. 5. 8
柳鍾烈	84. 8.17～85. 5. 8
柳世熙	81. 2.12～90. 5. 8
劉元東	82. 7.20～83. 5. 8
劉日演	82. 7.20～83. 5. 8
劉在天	89. 5. 9～90. 5. 8
兪泰榮	82. 3.31～83. 5. 8
柳炯鎭	81. 2.12～82. 3.30
尹相哲	82. 3.31～83. 5. 8
尹性天	81. 2.12～82. 3.30
尹錫憲	85. 7. 1～87. 5. 8
尹嬉重	81. 2.12～82. 3.30
	87. 5. 9～88. 5. 8
李康赫	82. 3.31～83. 5. 8
李慶煥	81. 2.12～82. 3.30
李光宰	87. 5. 9～88. 5. 8
李揆洪	86. 5. 9～88. 5. 8

姓　名	在任期間
安正秀	88. 5. 9～89. 5. 8
梁興模	81. 2.12～83. 5. 8
延河淸	87. 5. 9～89. 5. 8
吳寬治	86. 5. 9～90. 5. 8
吳基完	81. 2.12～83. 5. 8
吳鎭龍	85. 5. 9～86. 5. 8
吳鎭煥	81. 2.12～83. 5. 8
柳根一	86. 5. 9～88. 5. 8
李　涌	82. 3.31～83. 5. 8
李讚九	81. 2.12～83. 5. 8
李昌夏	81. 2.12～90. 5. 8
李　澈	81. 2.12～83. 5. 8
李泰旭	87. 5. 9～90. 5. 8
李罕洙	82. 7.20～83. 5. 8
李浩俊	88. 5. 9～89. 5. 8
李洪九	81. 2.12～88. 2.24
李孝明	82. 3.31～88. 5. 8
李熙鳳	81. 2.12～82. 3.30
任鏞淳	89. 5. 9～90. 5. 8
林寅七	89. 5. 9～90. 5. 8
林鍾哲	82. 3.31～83. 5. 8
張明錫	82. 7.20～83. 5. 8
張貴男	81. 2.12～83. 5. 8
張明奉	82. 3.31～83. 5. 8
	89. 5. 9～90. 5. 8
張淸洙	89. 5. 9～90. 5. 8
田溶新	81. 2.12～82. 3.30

姓 名	在任期間
李基鐸	83. 5. 9~85. 5. 8 87. 5. 9~88. 5. 8
李起夏	81. 2.12~83. 5. 8
李東馥	82. 3.31~86. 5. 8
李命英	81. 2.12~83. 5. 8
李戊基	87. 5. 9~90. 5. 8
李文雄	81. 2.12~83. 5.14
李炳豪	88. 5. 9~90. 5. 8
李相斗	81. 2.12~83. 5. 8
李相禹	81. 2.12~88. 5. 8
李良熙	83. 5. 9~84. 5. 8
李永鎬	81. 2.12~82. 3.30
李禹世	82. 3.31~83. 5. 8
鄭用述	88. 5. 9~90. 5. 8
鄭宗植	82. 5.15~85. 5. 8
鄭鍾旭	88. 5. 9~90. 5. 8
鄭昌基	82. 3.31~83. 5. 8
鄭暢泳	85. 5. 9~87. 5. 8
鄭千九	87. 5. 9~89. 5. 8
鄭漢九	87. 5. 9~88. 5. 8
鄭洪鎭	85. 2. 5~88. 5. 8
陳德奎	81. 2.12~83. 5. 8 87. 5. 9~88. 5. 8
車榮九	85. 5. 9~90. 5. 8
蔡喜俊	81. 2.12~81. 5.12
崔光石	81. 2.12~83. 5. 8
崔大權	81. 2.12~82. 3.30
崔秉烈	82. 7.20~83. 5. 8

姓 名	在任期間
全正煥	83. 5.19~85. 5. 8
鄭載喆	82. 3.31~83. 5. 8
鄭駟謀	81. 2.12~82. 3.30
鄭泰赫	81. 2.12~83. 3.30
趙德松	82. 2.12~83. 3.30
趙英規	82. 3.31~83. 5. 8
曺准煥	81. 2.12~85. 5. 8
朱寧寬	81. 2.12~82. 3.30
朱學重	85. 5. 9~86. 5. 8
鄭世九	81. 2.12~83. 5. 8 87. 5. 9~88. 5. 8
丁世鉉	86. 5. 9~90. 5. 8
鄭鎔碩	83. 5. 9~90. 5. 8
崔相龍	86. 5. 9~90. 5. 8
崔成進	81. 2.12~82. 3.30
崔 榮	82. 3.31~90. 5. 8
崔榮澤	82. 3.31~83. 5. 8
崔仁鶴	81. 2.12~83. 5. 8
崔平吉	85. 5. 9~90. 5. 8
韓國明	88. 5. 9~89. 5. 8
韓武熙	82. 3.31~83. 5. 8
韓昇洲	81. 5. 9~89. 5. 8
韓英哲	81. 2.12~83. 5. 8
洪淳鎬	81. 2.12~83. 5. 8
洪姸淑	81. 2.12~83. 5. 8
洪 哲	81. 2.12~83. 5. 8
黃性模	81. 2.12~82. 3.30

(3) 1990年代 자문위원

年度	姓　　名
1990	< 統一政策分科 >
	o 鄭鎔碩, 安秉俊, 柳炳華, 柳世熙, 李慶淑, 李長熙, 崔　榮, 韓昇洲
	< 北韓分科 >
	o 李基鐸, 吉成喆, 金南植, 金東奎, 裵名五, 徐丙喆, 李溫竹, 河龍出
	< 敎育弘報分科 >
	o 劉載天, 具宗書, 金文煥, 文龍鱗, 元佑鉉, 李仁浩, 車培根
	< 資料分科 >
	o 張明奉, 金景根, 朴淳英, 李淑子, 任鏞淳, 林寅七
	< 南北對話分科 >
	o 康仁德, 金達中, 金鎭炫, 白京男, 李炳豪, 全寅永, 鄭鍾旭, 車榮九, 崔相龍
1991	< 統一政策分科 >
	o 鄭鎔碩, 崔　榮, 李慶淑, 安秉俊, 柳炳華, 李長熙, 柳世熙, 韓昇洲, 李相禹, 金　悳
	< 北韓情報分科 >
	o 李基鐸, 裵名五, 金南植, 金東奎, 吉成喆, 柳錫烈, 張明奉
	< 交流協力分科 >
	o 李相日, 白祐基, 南仁淑, 鄭暢泳, 李達熙, 宋道均
	< 敎育弘報分科 >
	o 李仁浩, 金文煥, 文龍鱗, 元佑鉉, 朴道淳, 金政起, 金兌完

年度	姓 名
1991	< 南北對話分科 >
	o 康仁德, 鄭鍾旭, 李範俊, 李炳豪, 金達中, 崔相龍, 車榮九, 全寅永, 河英善, 朴英圭
1992	< 統一政策分科 >
	o 韓昇洲, 柳炳華, 朴慶緖, 徐時柱, 李源明, 鄭世鉉, 崔大權
	< 北韓情報分科 >
	o 金南植, 都俊鎬, 都興烈, 梁性喆, 延河淸, 柳在甲, 李慶淑
	< 交流協力分科 >
	o 金世源, 具宗書, 白祐基, 徐丙喆, 申光植, 李溫竹, 黃一淸
	< 敎育弘報分科 >
	o 李範俊, 具本弘, 文龍鱗, 元佑鉉, 柳錫烈, 鄭世九, 陳德奎
	< 南北對話分科 >
	o 鄭洪鎭, 金明基, 朴英圭, 李成春, 張達重, 鄭鍾旭, 車榮九, 崔相龍, 河英善
1993	< 統一政策分科 >
	o 金達中, 崔 榮, 張明奉, 徐時柱, 金在慶, 徐鎭英, 柳炳華, 河龍出, 崔學來
	< 北韓情報分科 >
	o 金南植, 梁性喆, 延河淸, 柳在甲, 都俊鎬, 金明基, 申光植
	< 交流協力分科 >
	o 鄭鎔碩, 申永茂, 宋道均, 洪之瑨, 金成勳, 孫大鉉, 韓明淑
	< 敎育弘報分科 >
	o 李範俊, 具本弘, 文龍鱗, 李三悅, 姜禎求, 柳永玉

年度	姓 名
1993	< 南北對話分科 >
	o 鄭鍾文, 金潤坤, 李成春, 申正鉉, 河英善, 林玄鎭, 車榮九, 張達重, 盧晶宣
1994	< 統一政策分科 >
	o 崔 榮, 金達中, 張明奉, 徐時柱, 金在慶, 徐鎭英, 柳炳華, 河龍出, 辛成澤
	< 北韓情報分科 >
	o 金明基, 洪妍淑, 洪承吉, 韓庸燮, 鄭甲泳, 張公子, 都興烈
	< 交流協力分科 >
	o 金成勳, 申雄湜, 宋道均, 趙 馨, 崔鍾庫, 洪之璿, 全洪澤,
	< 敎育弘報分科 >
	o 李範俊, 文龍鱗, 李三悅, 李光奎, 李王宰, 朴弘圭, 李泰永
	< 南北對話分科 >
	o 鄭鍾文, 金潤坤, 李成春, 金學俊, 申正鉉, 河英善, 金浩鎭, 柳世熙
1995	< 統一政策分科 >
	o 崔 榮, 金達中, 張明奉, 徐時柱, 柳炳華, 河龍出, 張達重, 辛成澤, 權萬學
	< 北韓情報分科 >
	o 金明基, 都興烈, 洪承吉, 鄭甲泳, 韓庸燮, 呂永茂, 金容浩

年度	姓 名
1995	< 交流協力分科 >
	o 申雄湜, 全洪澤, 李榮善, 金澐根, 權五乘, 鄭鎭星, 金道宗
	< 敎育弘報分科 >
	o 文龍鱗, 金元用, 鄭鎔碩, 崔成哲, 劉在天, 韓萬桔, 柳興烈
	< 南北對話分科 >
	o 裵成東, 金浩鎭, 柳世熙, 金東秀, 申正鉉, 李相冕, 河英善, 梁 建
1996	< 統一政策分科 >
	o 金達中, 張明奉, 徐時柱, 柳炳華, 河龍出, 張達重, 權萬學, 具本泰, 李重載
	< 北韓情報分科 >
	o 金明基, 都興烈, 洪承吉, 鄭甲泳, 韓庸燮, 金德重, 文正仁
	< 交流協力分科 >
	o 申雄湜, 全洪澤, 李榮善, 權五乘, 田一秀, 金庚亮, 池銀姬
	< 敎育弘報分科 >
	o 鄭鎔碩, 朴贊世, 劉在天, 柳興烈, 崔成哲, 文龍鱗, 韓萬桔
	< 南北對話分科 >
	o 金浩鎭, 金東秀, 申正鉉, 金釦燮, 李長熙, 黃俊性, 李鍾奭, 尹德敏

年度	姓 名
1997	< 統一政策分科 >
	o 金達中, 徐時柱, 柳炳華, 河龍出, 權敏雄, 全聖祐, 左承喜, 張達重, 朴秀赫
	< 北韓情報分科 >
	o 都興烈, 金明基, 洪承吉, 鄭甲泳, 韓庸燮, 金英秀, 高盛允, 金峻永
	< 交流協力分科 >
	o 申雄湜, 全洪澤, 李榮善, 權五乘, 田一秀, 金庚亮, 池銀姬, 李長春
	< 人道支援分科 >
	o 崔殷範, 鄭會聲, 金平佑, 黃在弘, 白忠鉉, 金英周, 李將鎬
	< 南北會談分科 >
	o 金浩鎭, 金東秀, 申正鉉, 金釦燮, 李英峻, 高日東, 李鍾奭, 尹德敏
	< 敎育弘報分科 >
	o 郭台煥, 朴贊世, 金成允, 崔成哲, 金東圭, 鄭世九, 柳興烈
1998	< 統一政策分科 >
	o 金達中, 徐時柱, 柳炳華, 河龍出, 權敏雄, 郭台煥, 張明奉, 李元燮, 左承喜, 全得柱
	< 北韓情報分科 >
	o 都興烈, 洪承吉, 白永玉, 高盛允, 鄭甲泳, 金峻永, 姜聲允, 李瑞恒
	< 交流協力分科 >
	o 申雄湜, 全洪澤, 權五乘, 金庚亮, 李長春, 池銀姬, 田一秀, 權寧詔
	< 人道支援分科 >
	o 白忠鉉, 崔大錫, 金英秀, 金在洪, 申榮鎬, 文俊朝, 李相萬

年度	姓 名
	< 南北會談分科 >
	o 申正鉉, 金釦燮, 李鍾奭, 李達坤, 安炳吉, 高有煥, 盧縉煥, 趙己淑
	< 敎育弘報分科 >
	o 朴贊世, 鄭世九, 金炅泰, 吳哉林, 呂永茂, 元佑鉉, 金東圭

3. 민간단체의 지원

가. 민간 통일운동 지원

통일연수원이 개원(1972)된 이후 매년 연수자를 배출하여 1976년에는 4만여명에 이르렀다. 이중 전문과정 이수자를 국론지도층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핵심요원 150명을 중심으로 민간통일촉진운동 즉, 「통일꾼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통일꾼운동은 통일논의 활동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통일논의로부터 자율적인 민간활동을 시작하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1980년대 들어 각종 회담이 열리고 1985년 9월에는 남북간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방문단이 상호 교환된 것을 계기로 통일유관단체들이 본격적으로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90년대에는 많은 통일유관단체들이 결성되었는데, 과거에 비해 목적과 성격이 뚜렷한 특색있는 단체들이 많아짐으로써 민간통일활동이 전문화되어 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통일유관단체는 그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대중통일활동단체, 조사연구단체, 남북교류협력단체, 종교계 통일활동단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형태로 보면 허가법인(재단, 사단)과 임의단체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을 1994년 3월 1일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로 전환시킨데 이어, 1997년 3월 7일에는 이를 폐지함으로써 단체활동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킨 바 있다.

최근 통일문제 연구활동을 위해 결성된 단체들 중 통일부 소관 법인의 수는 총 63개('99.2.3)로서 정부는 이들 단체들이 연구·교육·홍보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통일관련자료 배포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이들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나. 통일유관단체 간행물 발간현황

단 체 명	간행물명	발간부수	배 포 처	비 고
민족통일협의회	월간「통일」	7,000부	각 기관·회원 등	o 국고보조사업
평화문제연구소	월간「통일한국」(국내판)	7,000부	각 기관·회원·판매 등	o 유가지
	월간「통일한국」(해외판)	3,500부	해외동포·연구기관 등	o 국고보조사업
	반년간「통일문제연구」	5,000부	연구기관 등	o 유가지, 일부 국고보조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계간「이산가족」	3,000부	각 기관, 해외기구, 회원 등	o 국고보조사업
남북평화통일연구소	계간「Korea & World Affairs」	1,800부	해외 각 기관·연구소	o 국고보조사업
민족통일에스라운동협의회	격월간「통일환경 연구자료」	500부	후원 교회·연구위원 등	
민족통일불교협의회	계간「민불」	15,000부	각 사찰·회원 등	
북한연구소	월간「북한」	20,000부	각 기관·회원·판매	o 유가지
	계간「통일문화」	1,000부	각 기관·회원 등	
	연간「북한학보」	1,000부	〃	
다물민족연구소	계간「북소리」	10,000부	각 기관·회원·판매 등	o 유가지
	연간「북방학회보」	5,000부	각 기관·도서관 교육생 등	

단 체 명	간행물명	발간부수	배 포 처	비 고
한국발전연구원	월간「한국발전리뷰」 계간「한국발전」	2,800부 2,500~3,000부	회 원 각 기관·판매 등	o 유가지
백천통일시대연구원	연간「백천통일논총」	10,000부	연구소·대학 도서관	
민족통일선교협회	반년간「민족통일공보」	5,000~10,00부	기관·목회자·신도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월간「국제인권보」	25,000~30,000부	국내외 기관·회원 등	
남북나눔	격월간「나눔의 기쁨」 연간「다니엘 기도운동」	5,000부 20,000부	회원 등 회원·판매 등	o 유가지
민족통일촉진회	격월간「민족통일」	1,500~2,000부	회원·판매 등	o 유가지
한사랑민족통일진흥원	월간「하나로」	3,000부	국내외 기관·회원 등	

다.「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결성 지원

통일부는 국민의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남북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및 공동행사 등을 추진하는 등 민간통일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제정당·사회단체의 상설 범국민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약칭 「민화협」)의 결성을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1998년 7월 6일 제1차 12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3차례의 간담회와 9차례의 6인소위원회의 활동을 주선하여 「범국민협의체」의 명칭, 성격, 목적, 조직, 재정 등 기본골격을 확정하여 「민화협」 출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2인 간담회에는 새정치국민회의(설훈), 자유민주연합(정일영・함석재), 한나라당(제정구), 국민신당(박범진), 경실련통일협회(이장희),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이병웅), 대한체육회(배순학), 민족통일중앙협의회(송영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서경석),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조성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김용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김기수) 등 4개정당 및 8개 주요단체에서 대표가 참여하였다. 제2차 12인간담회에서 「범국민협의체」의 명칭, 구성방법, 8・15축전행사 등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6인소위에는 12인 간담회 위원중 설훈, 조성우, 이장희, 송영대, 서경석, 이병웅 등이 참여하였다.

이어 1998년 8월 5일에는 43개 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민화협」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민화협」준비위는 「8.15 축전행사」 개최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대표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이 없어 「민화협」준비위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8.15해방 53주년 기념식」,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학술토론회」, 「통일기원만찬회」, 「해외동포 통일포럼」등 독자적으로 「8・15 축전행사」를 개최하였다.

1998년 9월 3일에는 171개 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민화협」은 분단이후 처음으로 통일 및 대북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를 가진 민간단체들을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는 구심체로서 향후 통일문제와 관련한 국민합의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민화협」은 민간차원의 남북공동행사와 남북교류협력 등을 통해 민족의 화해를 도모하고 상호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민화협」은 9명의 상임의장과 25명의 공동의장이 대표로 있으며, 1998년 10월 1일 통일부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2. 통일문제 연구 및 대책 수립

가. 당면대책 및 중장기정책 개발

(1) 당면대책 수립

통일부는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 주요현안 발생시 신속하게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일정책 추진을 도모해 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통일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된데 이어 통일관계 장관회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유관부처와의 협의·조정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당면대책 수립기능이 보다 중요시되었다. 또한 「국민의 정부」출범이후 통일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요 참석자이자 동 상임위원회의 의장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수시대책 보고서를 작성, 통일정책 조정활동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하였다.

그동안 수립된 주요 당면대책으로는 대북정책 추진구도 및 당면 조치계획,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대책방향, 4자회담과 단계별 대북지원방안,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경협 연계방안, 남북정상회담 추진기본방향, 8·15 경축사 후속조치계획 등을 들 수 있다.

(2) 중장기 통일정책 개발

1950년대 이후 1969년 국토통일원이 개원되기까지의 통일문제 연구는 유엔감시하 총선거 방식에 의한 통일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기구 및 국제관계에 관한 연구가 대종을 이루었으며, 민간차원에서는 고려대학교 부설 아세아문제연구소, 언론사 등에서 초보적인 연구를 추진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국토통일원이 개원된 이후에는 통일과 관련된 제반문제와 정책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1970년대 주요 통일정책 연구는 민족통일대계 연구, 인간모의실험(simulation) 기법을 통한 대북정책 개발, 미래상황 예측방법의 실제와 통일전략 개발, 남북한 민주적 통합모델, 통일한국의 미래상 정립 등 통일이론의 개발과 한반도 평화정착 여건조성 등에 관한 중장기적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1980년 10월 남북대화사무국이 국토통일원에 통합됨으로써 통일문제

에 관한 연구와 함께 대화 추진업무를 일관된 체계내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통일정책 연구를 토대로 1982년 1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발표된데 이어, 같은해 2월 「20개 시범실천사업」을 북한에 제의함에 따라 통일·대화문제와 각종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을 연구하게 되었다.

주요 정책과제를 예시해 보면, 1980년대 평화통일 기반조성 연구, 20개 시범실천사업 세부계획 수립, 남북한 교차승인 검토, 북한의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 관련 대책연구, 북한사회 변동 및 개방화 유도방안 연구, 남북한 통합전략 연구, 국가연합 조약안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1980년대말 이후에는 1988년 「7·7 특별선언」과 1989년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이 연이어 발표됨에 따라 88서울올림픽 이후의 대내외정세 변화전망과 남북관계 개선대책, 북방정책에 따른 국내외 통일논의 대책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예로써 남북대화와 공산주의자의 협상전략 연구, 동북아 정세속에 김일성체제의 위상과 남북대화 전망, 남북화해와 민족공동체 형성의 비전 연구, 북방정책 추진에 있어 제기되는 국내·국제법적 제문제, 통일문제 국시논쟁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들어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되고, 1994년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이 천명됨에 따라, 이러한 시대적 상황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정부의 통일정책 기본구도에 입각한 세부 실천대책을 구체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독일, 예멘이 통일됨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문제도 가시권에 접어든데다 북한의 식량부족, 에너지 고갈 등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내부에서도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남북한이 함께 협력하여 민족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민족발전 공동계획」을 제시하였으며, 통일부는 이를 실천해 나가는 일련의 계획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민족발전 공동계획은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예기치 않은 순간

에 통일이 닥쳐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북한의 경제적 자생능력을 회복시키고 남북공동 번영을 이룩함으로써 통일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공동개발·탐사, 인적·물적 교류, 합작투자,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정보·자료교환, 공동연구, 공동행사 개최 등의 방식을 택하고 기업, 자본, 통신, 시민, 문화 등을 연계하여 교류·협력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남북간 대립과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비무장지대 및 인근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실천사업을 수립하고 법령의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장기 정책의 연구와 세부 실천과제의 도출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도 통일정책 연구의 주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3) 한반도 주변정세 및 분단국 연구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국내상황, 북한정세 외에도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상호관계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창설이래 주변 4국 상호관계와 그들 관계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장·단기적인 대비책을 검토해왔다.

1970대의 경우, 닉슨독트린 발표이후 드러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미·중과 일·중간 관계정상화에 따른 주변 4국의 관계변화, 북한의 비동맹 가입과 제3세계 관련동향 등의 연구에 주력하였다.

주요 연구과제를 예시해 보면, 아시아로부터 미국의 철수추세와 한국에 대한 영향,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강대국의 대한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책, 1970년대의 국제정세 변동이 남북한 관계에 미칠 종합적 영향진단, 군사적 측면에서 본 한반도 주변정세, 주한미군 감축·철수에 따른 북한의 대남전략 예측, 한국문제에 미치는 제3세계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정치·경제의 중심이 환태평양으로 이동되는 추세에 비추어 한반도 주변정세의 일반동향을 연구하는 한편,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개방·개혁 추세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당시의 주요 연구과제로서는 환태평양 연대 구상의 기본성격과 전망, 미·일 신정권 출범후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한반도 주변정세의 중장기 전

망, 북방 3각 관계의 변화전망과 대책, 일본지식인들의 한국관과 일본방위백서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이 소련·중국과 수교하게 됨에 따라 통일부는 이들 국가의 한반도 정책 관련자료와 북한실태 정보·자료의 입수, 관계 실무자간 「정책협의회」·「북한실태 정보교류회의」 등에 주력하게 되었고, 주변정세와 유관국 상호관계 등의 이론적 연구는 1991년 발족된 민족통일연구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당부는 창설이래 분단국의 분야별 실태와 통일정책, 교류 및 협상사례와 분단국 상호관계의 발전 및 통합과정 등을 조사·연구하여 우리의 통일정책 개발과 발전을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해 왔다.

1975년 베트남 통일에 이어 1990년대 독일·예멘의 통일에 이르기까지 타 분단국의 통일정책과 통합협상 과정, 교류·협력실태 등은 우리의 대북협상 전략과 통일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시사점과 정책적 관점을 제시해 주었다.

이러한 주요연구 결과를 예시해 보면, 서독의 대동독 협상대비 전략분석, 동서독 정상화 과정 연구, 동서독 통독대비정책 연구, 중화민국의 대륙광복 설계에 관한 고찰, 자유중국의 사상교육 현황, 월남공산화 이후의 통합과정, 서방측 통합이론과 공산측 합작전술 비교, 통일예멘 통일과정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1992년 주독 한국대사관에 통일연구관을 파견하여 독일통일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분석한 이후에는 독일통일백서, 동서독 교류협력사례집, 동서독 조약·협정 자료집 등을 발간, 유관부처 및 관계전문가에게 배포·보급하여 통일정책 연구에 기여하였다.

나. 통일문제 학술회의 활동

(1) 국내 학술회의

통일부는 1969년 창설이래 통일정책 개발과 정부 통일정책의 홍보 및 통일논의 저변 확대를 기하며 통일문제 전문가와 지식인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각종 국내 통일문제 학술회의를 주최 또는 후원해왔다.

1970년대에는 남북간의 대화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남북한간의 경제·사회·학술교류의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주제로서는

한국통일의 제문제, 남북대화 발전을 위한 제방안,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한 관계, 민족사의 이념-그 정통과 향방, 남과 북-그 이념과 전망, 통일한국의 미래상 등을 다루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북한의 연방제 주장을 계기로 남북한 통일방안을 비교하면서 통일후계세대,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각계의 역할, 민족공동체문제 등을 다루었다.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북한의「남북연방제」비판
o 통일후계세대로서의 남북한 청소년의 문제와 전망
o 민족화합과 통일문화
o 분단 40년, 통일환경의 변화
o 통일문화 지향과 문화예술
o 통일문화 지향과 교육계의 역할
o 평화통일과 종교인의 사명
o 민족통일의 현실과 전망
o 주변민족과의 경쟁전략으로서의 통일
o 남북화해와 민족공동체 형성의 비전
o 한민족의 도약과 발전방향 등

이러한 학술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유관대학 및 언론기관 부설연구소를 후원하는 공개강좌(panel discussion) 형식의「통일논단」과「북한연구 학술토론회」를 수시 개최해왔다.

이를 통해 당부는 통일문제와 북한문제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 이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고양시키고 통일문제 토론을 활성화시켰으며, 국민의 통일안보의식 제고와 국토통일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민족통일연구원이 발족되었을 뿐만아니라 통일유관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언론사, 대학 부설 통일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학술회의, 세미나, 심포지움 등이 수시 개최됨에 따라 당부는 이러한 행사를 후원하거나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2) 국제학술회의

당부는 창설 이듬해인 1970년부터 통일정책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인식시키고 해외학자 및 연구소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도모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상호 의견교환과 정책자료 개발을 위하여 통일문제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주최 또는 후원하여 왔다.

이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국토통일원이 개원 20주년을 기해 발간한 「민족통일로의 전진」(1989.3.1)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책자에서는 주제정도만 약술하겠다.

1970년대에는 분단국 통일문제와 한반도 문제와의 관계, 통일이념과 통일정책에 관한 이론적 정립,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학술회의 주제로는 한국통일문제의 내외여건, 분단국가의 제문제, 70년대의 세계정세와 한국의 통일문제, 새로운 국제 질서속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한반도 통일문제의 기능적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들어서는 기능주의 통합이론의 한반도 적용문제를 검토하고,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합리성과 이론적 체계화,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 o 한반도 통일문제
- o 한반도의 미래전망과 세계정세
- o 세계정세 추이와 한반도 통일
- o 국제환경속에서의 북한
- o 1980년대의 중공-개혁과 그 의미
- o 남북대화와 동북아의 정치적 전망
- o 소련의 동북아전략과 한반도(고르바쵸프 외교정책의 파장)
- o 한국전쟁 전후 민족 격동기의 재조명 등

이러한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와 함께 통일부는 서독과는 한·독학술회의를, 중화민국과는 한·중학술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왔다. 특히 두 국제학술회의는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서강대 동아연구소 등과의 협조하에 추진함으로써 국내외 학자·전문가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연구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한·독학술회의의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

o 한국과 독일의 분단 및 통일문제 비교평가
o 국제평화와 분단국의 상호체제 관계
o 분단국가의 체제 및 국제정치정세
o 남북한과 동서독의 분단문제 및 통일정책 비교
o 분단국가의 통일정책과 국제정세
o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정치, 경제의 변동과 의의
o 80년대 후반 국제환경과 동·서독 및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
o 고르바쵸프 등장이후의 동서관계와 분단국문제
o 신 데탕트시대의 동서관계 등을 들 수 있다.

한·중학술회의의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

o 중국대륙문제, 북한문제, 동북아 안보와 공산주의의 위협
o 국제공산주의 변천
o 공산당 정권과 동북아지역 문제
o 북한공산주의와 중국공산주의
o 동북아 공산국가의 내외정책 동향
o 북한과 중공의 개방화
o 변화하는 국제환경속에서의 한국과 중국
o 아세아 전통사회에 미친 공산주의 영향
o 분단국가의 체제통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는 해외 한국문제 전문가와 정책실무자, 재미교포사회의 지도급 인사들과의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인식제고와 한반도 정세의 이해, 통일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 수집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민족통일원의 발족과 공산권과의 수교확대 등에 따라 당부는 북한정보교류회의, 실무정책협의회 등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대학차원이나 연구소간의 학술적 교류는 민족통일연구원이 담당토록 하였다.

또한, 1990년대 들어서는 당부의 재정적 지원없이도 연세대와 서강대 주관하에 한·독학술회의나 한·중학술회의를 지속하고 있다.

3. 여론조사 및 활용

통일부는 통일에 관한 국민여론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해왔다. 이는 통일정책이 범국민적 지지기반 위에서 수립되어야 그 현실성이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는 인식을 근거로 한다.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여론조사는 남북관계 발전정도와 국민들의 통일의식변화를 반영하면서 새로운 조사내용과 다양한 조사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되어 왔다.

1970년대의 국민여론조사는 주로 국내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그 조사내용은 반공안보의식과 한반도의 내외상황에 대한 인식, 통일관, 그리고 남북대화 및 교류 등이었다.

1970년대의 통일문제 주요 여론조사

연도	대상범위	조사내용
1969	전국 각지역 2,250명	한반도정세관, 반공의식, 남북교류문제 등
1970	제소자 327명, 전국대학생·종교인 1,210명 등 총 5회	공산주의 사상관, 안보관, 8.15 평화통일구상에 대한 반응 등
1971	기업체 근로자 9.171명 등 총 3회	통일관, 안보의식, 남북교류문제 등
1972	전국 성인남여 6,000명 등 총 4회	통일관,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 7·4 남북공동성명 및 남북적십자회담에 관한 인식 등
1974	전국 계층별 국민 800명	통일 및 안보관
1975	서울 및 대구지역 남자 1,000명	통일 및 안보관, 정세관
1977	통일연수 이수자 4,287명	통일 및 안보관, 정세관
1978	통일연수 이수자 2,186명	통일 및 안보관, 정세관
1979	통일연수 대상자 및 연수교육미이수자 등 800명	통일 및 안보관, 정세관

1980년대의 국민여론조사는 해외동포들을 조사대상에 포함, 그 범위를 과거 1970년대보다 확대하였고 조사내용의 주안점도 과거 1970년대의 안보관 위주에서 탈피, 대북 포용성과 자신감에 입각한 적극적인 통일의식의 파악에 두었다. 해외동포들의 경우 교포들의 조국관과 남북한 비교의식을 함께 조사하였다.

1980년대의 통일문제 주요 여론조사

연도	대상범위	조사내용
1980	전국 각지역 2,500명	통일안보정세관, 국론통일 등
1981	전국 고교·대학생 9,138명	통일안보정세관, 국론통일 등
1982	전국민 10,563명 및 평통자문위원 9,075명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관한 견해, 대북안보관 등
1983	근로청소년·대학생 9,292명 및 평통자문위원 9,799명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관한 견해, 남북한비교 인식도, 대북안보관 등
1984	전국 대학생·종교인 등 10,000명	통일가능성, 통일방안 등
1985	전국 대학생·종교인 등 20,000명	통일가능성 및 당위성, 통일시기 등
1986	전국 12개도시 주민 10,000명	대북안보관, 통일 및 교류방안, 통일가능성 등
1987	전국 근로청소년·대학생 3,000명	대북안보관, 통일 및 교류방안, 통일가능성 등
1988	전국 12개도시 여론선도계층 3,000명	통일 및 교류방안, 대북관, 통일자신감 등
1989	전국 성인남여 1,500명, 2,000명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견해, 북한관 및 안보관, 북한정책과 동일과제 등

1980년대 후반이후 국내외 통일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남북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의 결과, 국민들은 통일을 현실의 실천적인 문제로 바라보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의 국민여론조사는 조사내용과 방법면에서 뚜렷한 변화를

지니게 되었다. 즉, 과거 국민여론조사의 목적이 전반적인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의 변화추이, 대북한 인식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추상적·거시적 접근이었다면 1990년대에는 이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현안문제나 특정정책 사안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등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접근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으며, 통일가능시기, 통일방식, 통일후 사회체제 등 통일미래상에 대한 국민의식 파악에 치중한 문제도 조사내용에 포함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이 증대되면서 국내 각 언론기관과 연구기관들에서 통일문제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광범하게 실시함에 따라 여론조사 내용·기법 및 활용면에서 서로 보완·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민여론수렴의 틀을 정착시킬 수 있게 되었다. 특히「국민의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토대임을 감안, 정책현안에 대한 사전 여론수렴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었다. 아울러「통일고문회의」,「통일정책평가회의」,「정책자문회의」(정책·회담·정보·교류협력 등 6개분과)와 민주평통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11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남북관계 현안발생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북정책에 반영하였다.

1990년대의 통일문제 주요 여론조사

연도	대상범위	조사내용
1990	전국 성인남녀 1,500명, 아·태 지역 해외동포 5,000명	정부의 통일노력에 대한 견해, 남북고위급회담 등 남북대화에 대한 견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견해 등
1991	전국 성인남녀 1,500명, 미주지역교민 1,737명	통일가능시기 전망, 통일방식, 통일후 미래상
1992	국내외 방북유경험자 575명, 통일문제 전문가 각각 635명, 700명	통일정책 추진방향, 방북이후 소감, 북한 핵문제와 남북경제협력 연계방안,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결과 평가 및 향후 대책

연도	대상범위	조사내용
1993	통일문제 전문가 1,000명, 전국 성인남녀 각각 1,500명, 1,200명	통일관련 쟁점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관한 견해, 대북안보관 등
1994	전국 성인남녀 1,500명(2회), 통일문제 전문가 700명(2회)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남북특사교환 철회 및 북한 벌목공 수용에 대한 평가, 남북경협활성화 조치 인식 및 평가 등
1995	통일문제 전문가 및 여론선도층 1,000명(4회), 재미동포 1,000명	대북경수로 및 대북쌀지원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견해, 해외동포의 통일의식 등
1996	전국 성인남녀 1,000명(3회), 통일문제 전문가 500명(2회)	북한식량사정 평가,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견해, 4자회담 추진에 대한 견해, 8.15 경축사 관련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견해 등
1997	전국 성인남녀 1,000명(3회), 통일문제 전문가 1,000명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견해, 남북적십자회담 결과에 대한 인식, 통일정책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견해 등
1998	전국 성인남녀 1,000명(5회), 1,500명(2회), 500명(1회) 통일문제 전문가 (민주평통모니터 요원) 100명(9회)	남북당국대표회담에 대한 대책 및 평가,북한 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 사건 관련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견해, 금강산관광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대북지원에 대한 견해 등

4. 국제협력의 강화

가. 분단 경험국 및 주변 4국과의 협력

(1) 분단 경험국과의 협력

(가) 독일

통일부는 독일 통일 이전에는 구 서독의 내독관계성 등과 고위급 및 실무급 상호 방문을 통해 통일정책에 관한 의견교환과 자료 협조를 해 왔으며, 독일 통일 이후에도 분단 극복 및 통합 과정과 관련 자료교환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장·차관급 정책협의는 1970년 2월 신태환 장관의 서독 방문을 시작으로

서독측에서 1972년 9월 에곤 프랑케 장관이 방한하는 등 현재까지 21회(초청 8회, 방문 13회)가 이루어졌다.

한·독 양측은 1978년 5월 이용희 장관 방독시 한·독 정부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 5월 이규호 장관이 서독을 방문하여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1983년 11월에는 서독의 하인리히 빈델렌 내독관계성 장관이 방한하여 제2차 협의회를 가졌다. 1984년 6월 서독에서 열린 제3차 협의회에는 손재식 장관이 참석하였고, 1986년 제4차 서울 협의회에는 하인리히 빈델렌 내독관계성 장관이, 1988년 9월 협의회에는 도르테 빌름즈 내독관계성 장관이 방한, 참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 10월 독일의 통일로 내독관계성이 해체됨에 따라 동 협의회는 중단되었다.

그 후 1992년 8월 최영철 장관 방독을 계기로 한·독간 협력관계가 재구축되어 1994년 12월에는 이홍구 장관이, 1996년 12월에 권오기 장관이 독일을 방문하는 등 고위급 및 실무 차원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독일 통일 후의 분야별 통합 추진상황 및 문제해결 노력과 경험 등을 교환해 오고 있다.

(나) 기타 분단 경험국

통일부는 독일 이외에도 대만, 베트남, 예멘 등 분단국 및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한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정보·자료 교환 및 통일정책에 대한 상호간의 지지기반을 확대 강화하는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대만과는 1969년 7월 신태환 장관이 대륙광복설계위원회(大陸光復設計委員會)를 방문한 이후 관계 실무자들의 상호방문 및 통일정책 관련 정보·자료 교환 등을 통해 협력해 왔다. 그러나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대만과의 공식적 교류는 중단되고 대신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특히 중국·대만 양안간 교류협력 사례 및 1997년 7월 홍콩의 중국 귀속 이후 통합과정을 통해 남북한 교류 협력 추진 및 통일 대비 업무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 중국과의 협조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동안 독일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협력의 범위를 예멘, 베트남, 이스라엘 등으로 확대하였다. 1992년 8월 최영철 장

관이 예멘을 방문하였고, 그해 12월에는 예멘의 알 알라시 내각담당 장관이 방한하여 남북 예멘의 통합과정 등에 대한 경험을 교환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스라엘 및 베트남과도 1997년 11월 권오기 부총리의 이스라엘 및 베트남 방문을 통해 구축된 우호협력 기반을 토대로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통합과정과 지역 평화체제 구축 경험을 교환하였다.

(2) 주변 4국과의 협력

(가) 고위급 정책협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일정책에 대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이해와 지지가 절실히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주변 4국 등의 정책 담당 관계자와의 협조체제 구축과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의 연계 및 교류 강화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정책협의의 일환으로 1996년 12월 권오기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 비탈리 이그나텐코 부총리,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외무장관 등 러시아 고위 관계자들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러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1997년 4월과 5월 2회에 걸쳐 권오기 장관이 일본을 방문,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이케다 유끼히코 외무장관 등과 회담하여 대북정책 관련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1998년 8월에는 강인덕 장관이 방일, 오부치 게이조 총리 및 고무라 마사히코 외무장관과 회담,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양국간의 대북정책 공조체제 유지 및 협력강화를 재확인하였다.

(나) 통일정책포럼

1996년부터 1~2년 단위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학계, 언론계, 연구소 등의 한반도문제 전문가 및 여론 주도층 인사를 중심으로 포럼을 개최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 한·미 포럼

가) 제1차 한·미 포럼

o 일시 및 장소 : 1996년 12월 20일, 워싱턴 허드슨연구소
o 주제 : 북한정세 전망과 한·미 공조체제
o 주제 및 발표자
  - 동북아정세와 역내 정치역학
    (케네스 퀴노네스 국무부 한국과 북한담당관)
  - 한·미 공조의 바람직한 방향과 강화방안
    (로버트 매닝 USIP 자문위원)
  - 미·북관계의 과제 및 전망(김규륜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하영선 서울대 교수)
o 토론 참가자
  - 한국측 : 문무홍 통일정책실장 등 7명
  - 미국측 : 윌리엄 오돔 등 17명

나) 제2차 한·미 포럼

o 일시 및 장소 : 1998년 9월 24일, 콜럼비아대 교수회관
o 주제 : 김정일 체제 출범 평가 및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전망
o 주제 및 발표자
  - 미국이 대북 협력을 거부하는 이유(리온 시갈 전 뉴욕타임즈 논설위원)
  - 북한 외교의 이론 연구(새무얼 김 콜럼비아대 한국연구소 소장)
o 토론 참가자
  - 한국측 : 고경빈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장 등 3명
  - 미국측 : 가리 레드야드 콜럼비아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등 9명

2) 한·일 포럼

o 일시 및 장소 : 1996년 9월 3일, 도쿄 뉴오타니 호텔
o 주제 : 동북아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o 주제 및 발표자
  - 북한, 現狀과 將來(다케사다 히데시 방위연구소 연구실장)

- 미・일 안보관계와 동아시아의 정치 역학(신희석 아・태정책연구원장)
- 최근 북한정세와 한반도 통일문제(시게무라 토시미츠 마이니치신문 논설위원)

o 토론 참가자
- 한국측 : 박웅희 통일정책실 제1정책관 등 8명
- 일본측 :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 등 5명

3) 한・중 포럼

가) 제1차 한・중 포럼

o 일시 및 장소 : 1996년 11월 7일, 베이징 쉐라톤 워커힐 호텔
o 주제 : 한반도 평화정착과 중국의 역할
o 주제 및 발표자
- 한반도 평화정착과 중국의 입장(陶炳蔚 국제문제연구소 고급연구원)
-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의 의의와 전망(沈聖英 북경대 교수)
- 중국과 남북한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오승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o 토론 참가자
- 한국측 : 박웅희 통일정책실 제1정책관 등 7명
- 중국측 : 김진기 현대국제관계연구소 교수 등 5명

나) 제2차 한・중 포럼

o 일시 및 장소 : 1997년 4월 16일, 베이징 켐빈스키 호텔
o 주제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중 협력
o 주제 및 발표자
-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한진섭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 최근 중・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김진기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교수)
- 동북아 주변정세 변화와 한반도 통일(정세현 민족통일연구원장)

o 토론 참가자
- 한국측 : 김석우 차관 등 12명
- 중국측 : 정보근 신화통신사 외국신문연구실 주임 등 5명

다) 제3차 한·중 포럼

o 일시 및 장소 : 1998년 12월 15일, 베이징 켐핀스키 호텔
o 주제 : 21세기 한·중 동반자 관계 진전 모색
o 주제 및 발표자
  -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陶炳蔚 국제문제연구소 고급연구원)
  - 한반도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沈志遠 중공중앙대외연락부 연구원)
o 토론 참가자
  - 한국측 : 박성훈 통일정책실장 등 3명
  - 중국측 : 박건일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연구원 등 6명

4)「한·러 통일정책 포럼」

가) 제1차 한·러 포럼

o 일시 및 장소 : 1996년 7월 11일~12일,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o 주제 :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안보협력 구상
o 주제 및 발표자
  - 한·러 관계(토르구노프 므기므대학 총장)
  - 북·러 관계 과거와 미래(데니소프 러시아 외무부 아주국 부국장)
  -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박수헌 경희대 교수)
  - 4자회담과 러시아의 역할(하용출 서울대 교수)
o 토론 참가자
  - 한국측 : 문무홍 통일정책실장 등 5명
  - 러시아측 : 파노프 외무부 차관 등 7명

나) 제2차 한·러 포럼

o 일시 및 장소 : 1997년 4월 21일, 러시아아카데미 국제경제정치연구소
o 주제 : 북한의 장래와 한반도 통일
o 주제 및 발표자
  -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아파나시예프 러시아 외무성 아주1국장)
  - 러시아·북한 관계(하용출 서울대 교수)
  -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모이세프 러시아 외무성 아주1국 부국장)
o 토론 참가자
  - 한국측 : 문무홍 통일정책실장 등 7명

- 러시아측 : 트리구벤코 러시아아카데미 아시아연구센터 소장 등 6명

다) 제3차 한·러 포럼

o 일시 및 장소 : 1998년 12월 18일, 아를로뇩 호텔
o 주제 : 21세기 문턱에서의 한반도 상황과 러시아
o 주제 및 발표자
  - 한반도 정세 전망과 한·러 관계(트카첸코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장)
  - 동북아의 지정학적 상황변화와 한반도 문제
    (블라디미르 리 외교아카데미 교수)
  - 남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가능성
    (티모닌 러시아 외무부 한국과 선임참사관)
  -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러 협력문제
    (여인곤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o 토론 참가자
  - 한국측 : 조건식 통일정책실 제1정책관 등 4명
  - 러시아측 : 안드리아노프 러시아 부총리실 수석비서관 등 6명

나. 해외주재 통일연구관 활동

1990년 10월 독일이 통일됨에 따라 통일과정과 통일후 제반 실태를 파악하여 남북 통합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 1990년 12월 4급 통일연구관 1명을 처음으로 독일에 파견하였다.

1992년~1994년에는 독일 통합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정책자료 발간 등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3급과 5급 연구관을 각각 1명씩 증원하였다.

한편,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제고하고 나아가 주변 4국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8월 미국, 중국, 일본에 4급 통일연구관을 각각 1명씩 파견하였다.

(1) 기능 및 임무

통일연구관은 주재국의 주요 인사와 동포 등을 대상으로 통일정책 및 현

안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홍보하는 한편, 주재국의 대 한반도정책 등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현지의 한반도문제 전문가 및 연구기관, 여론 주도층 인사와의 연계 강화와 함께 한반도문제 관련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 등에 참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주요 활동

독일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통일과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으나,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후유증과 교훈 등은 남북관계에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주재 연구관은 과거 동·서독간 교류·협력 사례 및 통일후 각 분야별 통합 과정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등에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독일 통일문제 조사단 지원과 함께 독일내 통일문제 관련 기관 및 학계 전문가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힘써 오고 있다. 독일에는 조용남(4급, '90. 12. 5~'94. 2. 4), 신덕수(3급, '92. 4. 17~'94. 12. 30), 양창석(5급, '92. 4. 22~'94. 12. 12), 김영탁(4급, '94. 2. 5~'97. 7. 29), 백태현(5급, '95. 8. 7~'96. 12. 27) 등이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미국, 중국, 일본 주재 통일연구관은 우리의 통일정책 및 현안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주재국 전문가들에게 설명함으로써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재국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있다. 아울러 해외동포 및 언론에 대한 통일정책 홍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통일문제 워크숍, 정책포럼, 순회연수활동의 지원도 통일연구관의 주요 활동중 하나이다. 미국에는 양창석(4급), 중국에서는 윤정원(4급), 일본에는 김호년(4급)이 1996년 8월 7일부터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다.

<통일연구관 수집·제공 자료>

o 독 일

- 독일통일비용
- 독일 분단으로부터 통일까지 약사
- 독일 통일관련 자료집 I

- 독일 통일관련 자료집Ⅱ
- 독일 통일 소사전
- 독일 통일실태 자료집(비 경제분야)
- 독일 통일실태 자료집(경제분야)
- 동서독 관계 발전에 관한 보고 및 문서
- 10년간의 독일 정책
- 독일 통일과 체제전환
- 통독 2주년 보고서
- 숫자로 본 독일 통일
- 독일통일 실태 자료집(정치·외교분야)
- 독일통일 실태 자료집(경제·사회분야)
- 독일통일 1,000일 보고서
- 통독 3주년 현황과 평가
- 동서독 조약·협정 자료집
-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 동서독 화폐 통합
- 독일통일 3년 현황과 전망 등

o 미 국

-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전망
- 미국 전문가들이 보는 남북관계 전망
- 평화연구소의 한반도 관련 특별 보고서
- CFR의 Korea Project 보고서
- CSCAP CSBM Working Group 회의 결과 등

o 일 본

- 동아시아 전략개관
- 일·북한 심의관급 협의 결과
- 북한 서해지역 유전개발 전망
- 김정일 총서기 취임 관련 일본내 반응
- 북한정세 평가 및 전망
- 일·북 교역 및 경제협력 현황
- 한반도문제 관련 전문가 회의 결과 등

o 중 국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전문가 견해
- 미·중 정상회담 결과
- 중·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
- 중·북한 변경 무역 동향
- 중국의 대북 식량 및 비료지원 관련보고
- 북한 잠수정 침투 사건 관련 중국내 반응
- 중국의 대외정책 등

다. 한·미 정보교류회의

198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 교포들의 북한방문과 함께 해외동포사회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통일논의가 활발해졌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1985년 재미 교포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정세와 통일문제 토의를 위해「미주지역 학술회의」라는 워크숍이 마련되었다. 그후 이 회의는 차츰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실용적 회의로 조정되었으며, 주제선정 및 토론방향도 현안 중심으로 하여 관련정책 추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한편, 1997년(제13차)부터는 회의의 성격을 학술회의에서 미국내 대북정책 담당자들과 실무차원의 북한정보 및 의견교환회의로 전환하고 회의명칭도「한·미정보교류회의」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1) 제1차 미주지역학술회의

o 일시 및 장소 : 1985년 10월 24일 ~ 27일, 미국 일리노이주 블루밍데일
o 주제 :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전략 모색
o 분과별 주제 및 발표자

<제1분과 : 남북한 통일정책 재평가>
- 한국 : 김한교(신시내티대), 북한 : 고병철(일리노이대)

<제2분과 :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남북한의 대내적 요인>
- 한국 : 이만우(밀러스빌대), 북한 : 서대숙(하와이대)

- 남북한 비교 : 정세현(국토통일원)

<제3분과 :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중・소의 역할>

- 중국 : 이채진(캔저스대), 소련 : 하만경(루이스 클라크대)

<제4분과 :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미・일의 역할>

- 미국 : 김종익(웨스턴미시간대), 일본 : 임관하(맨해탄대)

<제5분과 : 남북한 관계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안 모색>

- 곽태환(이스튼 켄터키대)외 9명

(2) 제2차 미주지역학술회의

o 일시 및 장소 : 1986년 6월 20일 ~ 22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톤 쉐라톤 크라스탈시티 호텔

o 주제 : 남북관계 개선 전략

o 분과별 주제 및 발표자

<제1분과 : 남북한 관계에 대한 서울과 평양의 시각>

- 서울 : 정세현(일해연구소), 평양 : 고병철(일리노이대)

<제2분과 : 남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강대국의 역할>

- 미국 : 조영환(아리조나주립대), 소련 : 김응택(드렉셀대)
  중국 : 김일평(코네티컷대), 일본 : 김홍락(웨스트 버지니아대)

<제3분과 : 남북대화의 문제점과 전망>

- 남북대화의 전략적 영향 : 정종욱(서울대)
- 남북경제회담의 문제점과 전망 : 이희상(위스콘신대)
- 남북적십자회담의 문제점과 전망 : 이항열(셰퍼드대)

<제4분과 : 남북관계 개선전략>

- 정치 : 길영환(아이오와주립대)
- 경제 : 임용순(버지니아카먼웰스대)
- 문화 : 김영규(국토통일원)
- 이산가족 재결합 전략 : 박한식(조지아대)

(3) 제3차 미주지역학술회의

o 일시 및 장소 : 1987년 7월 21일 ~ 22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o 주제 : 전환기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o 분과별 주제 및 발표자

<제1분과 : 주변국의 변화와 통일>

- 일본 : 윤정석(중앙대), 미국 : 김영진(조지 워싱턴대)
  소련 : 김응택(드렉셀대), 중국: 이채진(캘리포니아주립대)

<제2분과 : 남북한의 변화와 통일>

- 북한사회의 변화전망과 남북관계 : 도홍렬(충북대)
- 북한경제의 실태와 남북관계 : 오관치(숭실대)
- 한국의 정치변화와 남북관계 : 김한교(신시내티대)
- 북한의 권력승계와 대남전략 : 서대숙(하와이대)

<제3분과 : 분단국의 통일방안 비교>

- 동서독의 통일방안 비교 : 이태영(호남대)
- 중국의 합작론과 공산화과정 : 김홍락(웨스트 버지니아대)
- 월맹과 북한의 통일전략 비교 : 정세현(일해연구소)

<제4분과 :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천과 전망>

-한국 : 한점수(경북대), 북한 : 고병철(일리노이대)

<제5분과 : 남북대화의 전망>

- 남북대화의 촉진방안 : 안병준(연세대)
- 중립화 통일론의 문제점과 가능성 : 황인관(브레들리대)

<제6과 : 남북한의 교류방안>

- 남북 경제교류 방안 : 김세원(서울대)
- 남북 교류협력 방안 : 이항렬(세퍼드대)

<제7분과 : 한반도 평화방안>

- 한반도 평화촉진을 위한 제방안 : 길영환(아이오와 주립대)
- 한반도 평화와 유엔의 역할 : 김종한(윌리암&메리대)

<제8분과 : 핵과 미군의 역할>

- 남북한의 군축 가능성 : 유종렬(경희대)
- 주한미군의 역할과 문제 : 이기원(정신문화연구원)

(4) 제4차 미주지역학술회의

o 일시 및 장소 : 1988년 7월 1일 ~ 3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톤 크리스탈 게이트웨이 메리어트 호텔

o 주제 : 88올림픽이후 한반도 통일환경과 남북한평화체제 전망

o 분과별 주제 및 발표자

<제1분과 : 88올림픽 이후의 4강과 한반도>

- 중국과 남북한 관계 : 김일평(코네티컷대)
- 소련과 남북한 관계 : 김응택(드렉셀대)
- 미국과 남북한 관계 : 임용순(버지니아 카먼웰스대)
- 일본과 남북한 관계 : 김홍락(웨스트 버지니아대)

<제2분과 : 88올림픽 이후 남북한 관계>

- 한국의 정치변화와 남북한 관계 : 길영환(아이오와주립대)
- 북한의 정치변화와 남북한 관계 : 신인섭(미 국회도서관)
- 88올림픽이후 한국의 통일문제 : 유인택(국토통일원)
- 88올림픽이후 북한의 통일전략 : 고병철(일리노이대)

<제3분과 : 88올림픽 이후의 한반도 평화증진 전략>

- 88올림픽이후 한반도 평화증진 방안 : 박한식(조지아대)
- 남북한 군사관계 전망 : 배명오(국방대학원)
- 남북한 관계의 구조적 특성과 회담성공에 관한 이론적 전망 : 김종림(아이오와대)
- 북한 경제정책과 남북한 관계 : 정상훈(일리노이 기술연구소)

(5) 제5차 미주지역학술회의

o 일시 및 장소 : 1989년 7월 6일 ~ 9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o 주제 : 남북한 교류협력과 민족공동체 형성방안의 모색

o 분과별 주제 및 발표자

<제1분과 : 한국의 북방정책과 4강의 이해관계>

- 한국의 북방정책과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 이채진(클레오몬트메키나대)
- 한국의 북방정책과 소련의 대한반도정책 : 김응택(드렉셀대)

- 한국의 북방정책과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 고승균(하와이라오대)
- 한국의 북방정책과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 길영환(아이오와대)

<제2분과 : 남북한 교류협력의 접근전략>

- 남북한 교류협력의 정치적 측면 : 고병철(일리노이대)
- 남북한 교류협력의 경제적 측면 : 이희상(위스콘신대)
- 남북한 교류협력의 군사적 측면 : 김용제(일리노이대)
- 남북한 교류협력의 인도적 측면 : 오관치(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제3분과 : 민족공동체형성의 모색>

- 민족공동체의 이론적 배경 : 박한식(조지아대)
- 민족통합의 정치적 측면 : 임용순(버지니아코몬웰스대)
- 민족공동체와 통일문제 : 김종림(아이오와대)
- 민족통합의 문화적 측면 : 김갑철(건국대)

(6) 제6차 미주지역학술회의

o 일시 및 장소 : 1990년 5월 11일 ~ 12일, 미국 워싱턴D.C.

o 주제 :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모색

o 분과별 주제 및 발표자

<제1분과 : 한민족공동체 형성과 통일이념>

- 공동체의 이념적 배경과 제유형 : 김종림(아이오와대)
- 공동체헌장과 통일국가의 이념 : 이용필(서울대)
- EC와 한민족공동체 : 길영환(아이오와대)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연방제안 비교 : 고병철(일리노이대)

<제2분과 :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실천적 과제>

- 정치제도적 측면에서의 한민족공동체의 실현방안 : 신정현(경희대)
-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구체적 협력방안 : 박한식(조지아대)
- 남북한 경제협력의 구체적 방안 : 이희상(위스콘신대)
-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 문정인(켄터키대)

<제3분과 : 한민족공동체와 국제관계>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국제법적 문제 : 김종한(윌리암・메리대)
- 한미군사협력 조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 나종오(홀린스대)

- 소련의 변화가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 : 김응택(드렉셀대)
- 동구권의 변화가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 :
  임용순(버지니아 카먼웰스대)

(7) 제7차 미주지역학술회의

o 일시 및 장소 : 1991년 7월 12일 ~ 13일, 미국 워싱턴D.C.
o 주제 : 90년대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o 분과별 주제 및 발표자
<제1분과 : 90년대 북한의 개방화>
- 북한의 권력승계와 정치변화 : 양성철(경희대)
- 북한경제의 개혁과 개방 : 이희상(위스콘신대)
- 북한사회의 변화전망 : 박경애(프랭클린・마샬대)

<제2분과 : 90년대 북한의 대외관계>
- 북한의 대 일・미정책 : 김홍락(웨스트버지니아대)
- 북한의 대 중・소정책 : 이채진(클레르몽 맥캔나대)
- 북한의 대남전략 평가 : 김일평(코네티컷대)

<제3분과 : 90년대 남북한관계>
- 남북대화와 교류의 문제와 전망 : 김한교(신시내티대)
- 남북한 긴장완화와 군비통제 : 이항열(세퍼드대)
- 남북한 통합 모형 : 김갑철(건국대)

(8) 제8차 미주지역학술회의

o 일시 및 장소 : 1992년 7월 3일 ~ 4일, 미국 워싱턴 D.C.
o 주제 : 화해협력시대의 개막과 남북한 관계
o 분과별 주제 및 발표자
<제1분과 : 남북기본합의서 이후의 북한의 변화 양상>
- 북한의 대내정책 변화 전망 : 고병철(일리노이대)
- 북한과 주변국과의 관계 : 이채진(클레르몽 맥캔나대)
-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 가능성과 전망 : 김일평(코네티컷대)

<제2분과 :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방안>

- 남북한의 군비통제 및 군축방안 : 박동환(노스웨스턴대)
- 남북 상호간 경제교육과 협력 : 정상훈(일리노이대)
- 남북한 정보 및 인적교류 방안 : 도홍렬(충북대)

<제3분과 : 남북화해 이후의 남북통합>

- 한반도 평화와 핵무기 문제 : 오공단(랜드연구소)
- 남북한의 통합 : 김용제(알콘대)
- 남북연합 형성의 과제 : 김명기(명지대)

(9) 제9차 미주지역학술회의

o 일시 및 장소 : 1993년 7월 16일 ~ 17일, 미국 워싱턴D.C.
o 주제 : 민족동질화 촉진을 위한 접근방안
o 분과별 주제 및 발표자

<제1분과 : 북한의 변화 전망>

- 북한의 권력변동 전망 : 김판석(올드 도미니온대)
- 북한 개방의 유도 방안 : 김우상(텍사스 A&M대)
- 대남정책의 변화 전망 : 신인섭(미 국회도서관)

<제2분과 : 동질화 촉진의 실천과제>

-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 강정구(동국대)
-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 정상훈(일리노이대)
-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 곽태환(이스턴 켄터키대)

<제3분과 : 남북한 공동번영의 모색>

- 북한의 핵개발실태와 남북한 관계 : 박동환(노스웨스턴대)
- 비핵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 : 하영선(서울대)
- 남북연합 형성의 과제 : 길영환(아이오와대)

(10) 제10차 미주지역학술회의

o 일시 및 장소 : 1994년 8월 5일 ~ 6일, 미국 워싱턴D.C.
o 주제 : 민족동질화 촉진을 위한 접근방안
o 분과별 주제 및 발표자

<제1분과 : 핵문제와 남북한 관계>

- 북한 핵문제와 국제사찰 : 박한식(조지아대)
- 핵문제와 남북한 관계 : 김용제(퍼시픽대)
- 핵문제 이후의 북한변화 가능성 : 안병준(연세대)

<제2분과 : 한반도 통일과 주변 강대국의 정책>

- 미국 : 이채진(클레르몽 맥캔나대)
- 일본 : 김홍락(웨스트버지니아대)
- 중국과 러시아 : 사무엘 김(콜롬비아대)

<제3분과 : 국제화시대의 한반도 통일문제>

- 국제화시대의 한국의 통일정책 : 이상우(서강대)
- 국제화시대의 북한의 대남전략 : 고병철(일리노이대)
- 국제화시대의 남북화해협력 : 김한교(신시내티대)

(11) 제11차 미주지역학술회의

o 일시 및 장소 : 1995년 8월 18일 ~ 19일, 미국 알링톤 크리스탈 게이트웨이 메리어트 호텔

o 주제 : 동북아의 신 국제질서와 한반도

o 분과별 주제 및 발표자

<제1분과 :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 미국의 정책 - 신아·태 질서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이항렬(세퍼드대)
- 동북아 신질서와 러·중의 한반도 정책 : 사무엘 김(콜롬비아대)
- 미·북 제네바 합의와 케도 : 신인섭(미 국회도서관)

<제2분과 : 북한의 새로운 체제와 정책 전망>

- 신 북한정권의 권력구조와 정책방향 : 맨소로브 A. Y. (콜롬비아대)
- 김정일 체제하의 경제정책과 전망 : 이희상(위스콘신대)
-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의 대남정책 방향 : 고병철(일리노이대)

<제3분과 : 신동북아 질서와 남북관계>

-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의 전망과 전략 : 김연석(킨대)
- 다자협의회를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 길영환(아이오와대)
- 남북한 군축 - 군사억지력에 의한 데탕드 모색 : 박동환(노스웨스턴대)

(12) 제12차 미주지역학술회의

o 일시 및 장소 : 1996년 7월 12일 ~ 13일, 미국 알링톤 쉐라톤 국제호텔
o 주제 : 김정일체제하의 북한의 문제와 전망
o 분과별 주제 및 발표자
<제1분과 : 체제 위기하의 북한의 정치·경제 및 사회>
- 김정일 정권의 장래 : 사무엘 김(콜롬비아대)
- 북한 경제난의 실태와 타개 방안 : 김휘국(하와이대 동서연구센터)
- 북한 권력구조 진단 : 데이비드 강(다트머스대)
<제2분과 :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의 외교정책>
- 김정일 체제하의 미북관계 : 이채진(클레어몬트 맥킨나대)
- 김정일 체제하의 일북관계 : 김홍락(웨스트버지니아대)
- 북한의 대 중·러정책 : 김일평(코네티컷대)
<제3분과 : 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가능성 : 오공단(Oh & Hassig Pacific Rim Consulting Firm)
-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방안 : 이희상(위스콘신대)
- 남북대화 전망 : 김용제(퍼시픽대)

(13) 제13차 한·미 정보교류회의

o 일시 및 장소 : 1997년 10월 26일 ~ 11월 4일, 워싱턴, 애틀랜타
o 주요대상기관
·정부기관 : 국무부 정보조사국, 국방정보본부
·연구소 : 의회조사국, 외교협회(CFR), Atlantic Council, 카터센타 등
·학교 : 조지아대 세계문제연구소(GLOBIS)
o 주 제 :
- 북한체제의 현황과 전망
- 김정일권력승계 이후 북한의 변화양상
- 4자회담 전망
- 미북관계 개선전망
- 북한의 경제/식량난 등

(14) 제14차 한·미 정보교류회의

o 일시 및 장소 : 1998년 11월 16일 ~ 20일, 워싱턴, 올림피아(미국)
o 주요대상기관
  · 정부기관 : 국무부, 국방정보본부, 워싱턴 주정부
  · 연구소 : 국방연구원(IDA), 해군연구소(CNA), 전략연구소(INSS),
    헨리 스팀슨 연구원, 허드슨연구원, 아시아연구원(NBR) 등
o 주 제 :
  - 북한 지하 핵의혹시설을 둘러싼 한반도 긴장문제
  - 페리 전 국방장관의 대북정책조정관 임명의 의미
  -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 평가
  - 북한 경제난과 붕괴 가능성 문제 등

라. 한·러 정보교류회의

1990년 9월 러시아와 수교한 이래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제반분야에서 꾸준히 관계진전을 이루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통일부는 과거 공산주의 종주국의 지위에 있던 구 소련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교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0년이래 러시아연방 과학아카데미 산하 연구기관 및 북한연구 전문가들과 실무차원의 의견교환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1) 제1차 한·러 정보교류회의

o 일시 : 1990년 5월 19일~28일
o 장소 : 모스크바
o 주제 :
  - 북한의 경제실태
  - 북·소간 경제협력
  - 남북한 및 소련 3각 경제협력

(2) 제2차 한·러 정보교류회의

o 일시 : 1991년 10월 4일~13일
o 장소 : 모스크바

o 주제 :
- 북한의 사회·경제 실상
- 러·북 경제무역 협력
-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3) 제3차 한·러 정보교류회의

o 일시 : 1992년 12월 4일~13일
o 장소 : 모스크바
o 주제 :
- 한반도 통일에 관한 몇 가지 제안 및 러시아의 대북정책 변화
- 1991~1992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
- 군사·정치적 측면의 러·북 관계
- 러·북간 경제·무역 관계

(4) 제4차 한·러 정보교류회의

o 일시 : 1993년 8월 25일~9월 5일
o 장소 : 모스크바
o 주제 :
- 동북아 군사·정치적 상황과 러·북 군사협력
- 1992~1993 북한의 사회·경제적 실상
- 1992~1993 러·북 경제무역 협력
- 두만강 개발계획 관련 각국의 입장

(5) 제5차 한·러 정보교류회의

o 일시 : 1994년 6월 30일~7월 10일
o 장소 : 모스크바
o 주제 :
- 북한의 대외개방관련 사회실상
- 1993~1994 북한의 경제실상
- 러·북 경제협력 관계와 전망

(6) 제6차 한·러 정보교류회의

o 일시 : 1995년 6월 17일~26일
o 장소 : 모스크바
o 주제 :
- 북한의 파워엘리트 등용의 몇 가지 양상
- 북한의 정권교체 문제
- 러·북간 무역 및 경제협력
- 1994~1995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

(7) 제7차 한·러 정보교류회의

o 일시 : 1996년 8월 24일~9월 2일
o 장소 : 모스크바
o 주제 :
- 러시아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 북한의 정치상황 및 권력구조
- 러시아, 남북한 경제협력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미치는 영향
- 1994~1996 러·북 통상 경제협력

(8) 제8차 한·러 정보교류회의

o 일시 : 1997년 8월 30일~9월 8일
o 장소 : 모스크바
o 주제 :
- 북·러 무역 및 경제협력의 실태와 과제
- 북한경제개혁에 외부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
- 북한사회에서의 북한군부의 위치와 역할
- 북한에서의 새로운 정치 리더쉽
-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9) 제9차 한·러 정보교류회의

o 일시 : 1998년 6월 27일~7월 6일

o 장소 : 모스크바
o 주제 :
- 1998 러시아의 대북정책 방향
- 1997~1998 러·북 교역 및 경제협력
- 1998 북한의 정제 전망
-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마. 한·일 정보교류회의

한·일 양국 북한전문가들의 교류를 통해 북한정세에 대한 쌍방의 견해를 비교·분석하고 북한정세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7년부터 한·일 정보 교류회의를 추진하여 왔다. 특히 1998년부터는 기존의 단순한 교류회의 형식을 탈피하고 실무차원의 전문가회의로 연 2회 개최토록 하였다.

(1) 제1차 한·일 정보교류회의

o 일시 및 장소 : 1987년 10월 20일~22일, 서울
o 주제발표
- 북한의 권력구조 해부
  • 타마키 모토이(玉成 素 : 북한경제 전문가)
- 북한의 경제개발 실태와 외채문제
  • 사토카쓰미(佐藤勝己 : 북한문제 전문가)
- 북한의 군사력 실태와 대남도발 가능성
  • 쓰카모토 카쯔이치(塚本藤一 : 전 내각조사실 근무)
- 북한의 대주변 4강정책
  • 구니 아키라(久仁 昌 : 한반도문제평론가, 전 일본공안청근무)
- 주체사상의 위상과 사회개방 전망
  • 니시오카 쯔토무(西岡 力 : 한반도문제 전문가)
- 북한 주민생활 실태
  • 쇼다이치로(商田一郎 : 북한문제전문가)
o 토론참가
- 한국 : 강인덕(극동문제연구소장), 김창순(북한문제연구소장)

- 일본 : 카토유타카(加藤豊 : 북한문제 전문가), 허동찬(대륙연구소 연구위원), 박갑동(북한문제 전문가)

(2) 제2차 한·일 정보교류회의

o 일시 및 장소 : 1989년 12월 31일, 서울
o 주제발표
- 80년대 북한정세 평가와 90년대 예측
  • 박일성(내외통신 해설위원)
  • 사이토 구니아키(齊藤邦昌 : 전 방위청 근무),
- 80년대 북한정세 평가와 90년대 예측(경제)
  • 타마키 모토이(玉成 素 : 북한경제 전문가)
- 80년대 북한정세 평가와 90년대 예측(정치)
  • 구니 아키라(久仁 昌 : 한반도문제평론가, 전 일본공안청근무),
- 80년대 북한정세 평가와 90년대 예측(군사)
  • 쯔카모토 카쯔이치(塚本藤一 : 전 내각조사실 근무)

o 토론참가
- 한국 : 박춘삼(국방대학원 교수), 김세원(서울대사회과학대 교수), 윤석범(연세대 상경대학장), 오관치(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연하청(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안석교(한양대 교수), 김성훈(중앙대 교수)

(3) 제3차 한·일 정보교류회의

o 일시 및 장소 : 1990년 11월 16일~19일, 동경(이케부쿠로 센타 시찌호텔)
o 주제발표
- 북한의 군사력 평가 및 군축문제
  • 요시무라 다케토시(寄村武敏 : 일본 전략정보연구소 이사)
- 북한의 경제역량 평가와 남북협력문제
  • 타마키 모토이(玉城素 : 북한 경제전문가)
- 북한의 개방 전망 - 대외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 미야쯔카 토시오(宮塚利雄 : 일본 문화대학 교수)
- 남북한 관계 전망
  • 이기택(연세대 교수)

o 토론참가
- 한국 : 강인덕(극동문제연구소장), 박일성(내외통신 해설위원), 배명오(국방대학원 교수), 허동찬(대륙연구소 연구위원), 정석홍(조사연구실장), 김경웅(조사연구실 보좌관), 박갑수(조사연구실 보좌관), 조명균(통일정책실 서기관)
- 일본 : 코마키 테루오(小牧輝夫 : 아시아 경제연구소), 쓰가모토 카쯔이치(塚本藤一 : 전 내각조사실 근무), 사이토 구니아키(齊藤邦昌 : 전 방위청 근무), 金元奉(북동아 연구위원)

(4) 제4차 한·일 정보교류회의

o 일시 : 1991년 6월 21일
o 장소 : 서울 타워호텔
o 주제발표
- 북한의 경제력 평가(현황과 문제점)
  • 코마키 테루오(小牧輝夫 : 아시아 경제연구소 동향분석부장)
-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정치적 측면 : 개방촉진 요인, 저해요인 중심)
  • 오코노키 마사오(小此木政夫 : 게이오대 교수)
- 북한의 군사력 평가
  • 오관치(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o 토론참가
- 한국 : 강인덕(극동문제연구소장), 하용출(서울대 교수), 강성윤(동국대 교수), 이달희(민족통일연구원 북한실장), 신정현(경희대 교수), 김봉진(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석홍(조사연구실장), 박웅희(제1연구관), 유인택(제2연구관), 김영규(제4연구관), 박성훈(제5연구관), 김영구(조사연구실 과장), 배대원(조사연구실 보좌관)
- 일본 : 구니 아키라(久仁 昌 : 한반도문제평론가, 전 일본공안청근무), 다케사타 히데시(武貞秀士 : 일본방위연구소 제3연구실장)

(5) 제5차 한·일 정보교류회의

o 일시 : 1991년 11월 12일~16일
o 장소 : 동경 上野파크호텔
o 주제 : 북한정세 평가 및 전망
o 주제발표
- 북한의 정치
  • 김남식(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의 제3차7개년계획 추진현황 및 전망
  • 코마키 테루오(小牧輝夫 : 아시아경제연구소 동향분석부장)
- 북한 군사력의 평가 및 핵문제
  • 다케사타 히데시(武貞秀士 : 방위연구소 제3연구실장)
- 북한의 대외정책 및 남북한 관계 전망
  • 최영(국제평화안보연구소장)

o 토론참가
- 한국 : 강인덕(극동문제연구소장), 유인택(제1분석관), 박갑수(정보분석실 보좌관), 송병각(정보분석실 사무관), 서동훈(정보분석실 보좌관)
- 일본 : 타마키 모토이(玉成 素 : 한반도문제 전문가, 현대코리아 연구위원), 오코노키 마사오(小此木 政夫 : 게이오대 교수), 사카이 다카시(坂井 隆 : 법무성 공안조사청 상석조사관)

(6) 제6차 한·일 정보교류회의

o 일시 : 1992년 11월 10일~14일
o 장소 : 동경 上野파크호텔
o 주제 : 북한정세 평가 및 전망
o 주제발표
- 북한의 정책결정구조와 정책변화 전망
  • 사카이 타카시(坂井隆 : 법무성 공안조사청 상석조사관)
- 북한의 개혁세력과 김일성 이후의 정권
  • 최평길(연세대학교 교수)

- 북한경제의 실상과 개혁·개방정책
  • 코마키 테루오(小牧輝夫 : 아시아경제연구소 동향분석부장)
- 북한의 주변4강과의 새 관계 정립
  • 양성철(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양상과 전망
  • 이즈미 하지메(伊豆見 元 :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
- 북한의 군사실태와 남북한 군비통제 문제
  • 오관치(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o 토론참가
- 한국 : 유인택(정보분석실 제1분석관), 조기수(통일원 상임연구위원), 배대원(정보분석실 4급 보좌관), 송병각(정보분석실 행정사무관), 박광호(정보분석실 5급 보좌관)
- 일본 : 오코노키 마사오(小此木政夫 : 게이오대 교수), 이즈미 하지메(伊豆見 元 :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 코마키 테루오(小牧輝夫 : 아시아경제연구소 동향분석부장), 사카이 타카시(坂井 隆 : 법무성 공안조사청 상석조사관), 쯔카모토 카쯔이치(塚本藤一 : 평화안전보장연구소 사무국장)

(7) 제7차 한·일 정보교류회의

o 일시 : 1993년 10월 12일~16일
o 장소 : 동경 우에노 파크사이드 호텔
o 주제 : 최근 북한정세전망 및 평가
o 주제발표
- 한국의 새정부 출범과 대남전략 조정 가능성
  • 신광식(KBS 남북방송협력국장)
- 북한 권력구조 및 정치이념의 지속과 변화
  • 최상룡(고려대 교수)

o 토론참가
- 한국 : 정대규(정보분석실장), 김시한(특수자료과장)
- 일본 : 코마키 테루오(小牧輝夫 : 아시아경제연구소 동향분석부장),

이즈미 하지메(伊豆見 元 :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 사카이 타카시(坂井 隆 : 법무성 공안조사청 상석조사관), 다케사타 히데시(武貞秀士 : 방위연구소 실장), 니시오카 쯔토무(西岡力 : 한반도문제 전문가), 김봉진(金奉進 : 북구주대 교수)

(8) 제8차 한·일 정보교류회의

o 일시 : 1994년 10월 16일~20일
o 장소 : 동경 우에노 파크사이드 호텔
o 주제 : 최근 북한정세평가와 전망
  - 북한의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및 남북 현안문제 등으로 나누어 분야별 관심사를 중심으로 토의
o 토론참가
  - 한국 : 정대규(정보분석실장), 김경태(전통일연수원 교수), 김시한(특수자료과장), 조원규(정보분석실 보좌관)
  - 일본 : 다케사타 히데시(武貞秀士 : 방위연구소 실장), 오코노키 마사오(小此木政夫 : 게이오대 교수), 코마키 테루오(小牧輝夫 : 아시아경제연구소 동향분석부장),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 니시오카 쯔토무(西岡 力 : 한반도문제 전문가), 이영화(관서대 교수)

(9) 제9차 한·일 정보교류회의

o 일시 : 1995년 11월 5일~10일
o 장소 : 동경 우에노 파크사이드 호텔
o 주제 : 북한의 체제생존 전략과 김정일의 리더쉽
o 주제발표
  - 김정일의 권력기반과 북한 군부 동향
    • 구니 아키라(久仁 昌 : 전 공안조사청 북한책임자, 남북한 문제 프리렌스)
  - 북한 경제실태 및 산업구조의 문제점
    • 나카가와 마사히코(中川雅彦 : 아시아 경제연구소 북한경제담당)

- 북한경제의 회생조건 및 개혁·개방 향방
  • 오쿠보 요시노부(大久保義信 : 군사연구 편집장)
- 북한의 미·일 접근과 군사외교
  •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德成 : 방위연구소 제3연구실장)
- 북한체제 혼란시 주변국의 대응 방향
  • 吳正萬(神奈川대학 정치학 교수)
- 체제생존을 위한 북한의 대내외 전략
  • 양재성(통일연수원 교수)

o 토론참가(한국) : 김형기(정보분석실장), 장진문(총무과장), 박갑수(정보분석실 과장), 사순문(정보분석실 보좌관)

(10) 제10차 한·일 정보교류회의

o 일시 : 1996년 6월 17일~22일
o 장소 : 동경 뉴오타니호텔
o 주제 : 북한의 현 상황과 대내외정책 진단
o 주제발표
- 최근 북한동향 평가 및 당면과제
  • 권민웅(북한문제조사연구소장)
- 북한의 정책결정 체계 검토
  • 시게무라 도시미쯔(重村智計 : 마이니치신문 논설위원)
- 북한내부의 정치갈등에 대한 전망
  • 오코노키 마사오(小此木政夫 : 게이오대 교수)
- 북한경제의 자생력 평가
  •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 장기은행 총합연구소 주임연구원)
- 북한의 군비투자가 경제난에 미치는 영향
  • 쯔카모토 카쯔이치(塚本勝一 : 평화안전보장연구소 사무총장)
- 일·북 관계 변화와 조총련의 위상
  • 니시오카 쯔토무(西岡力 : 현대코리아 편집장)
- 동북아 평화와 정전협정 체제 전망
  • 배정호(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소)

o 토론참가
- 한국 : 이봉조(제1분석관), 박갑수(정보분석실 과장), 조원규(정보분석실 보좌관)
- 일본 : 사토 세이지로(佐藤誠三郎 : 세계평화연구소 주간)

(11) 제11차 한·일 정보교류회의

o 일시 : 1997년 10월 2일~5일
o 장소 : 동경 뉴오타니호텔
o 주제 : 북한체제 현황과 전망
- 북한체제의 현황과 전망
- 김정일 공식 권력승계 이후 북한의 변화 양상
- 식량난 등 북한 경제난의 실태와 전망
- 「8.4 김정일노작」의 의미와 남북관계 전망
- 4자회담 전망
- 일·북관계 전망

o 제1차 회의 (10.2, 전문가 그룹)
- 한국 : 박성훈(제1분석관), 김의도(정보분석실 사무관), 조원규(정보분석실 보좌관), 현성일(북한문제조사연구소)
- 일본 : 히라이 히사시(平井久志 : 교토통신 서울지국장), 오코노키 마사오(小此木政夫 : 게이오대학 교수), 사카이 다카시(坂井隆 : 공안조사청 연수부 교수), 다케사타 히데시(武貞秀士 : 방위연구소 교수),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 장기은행 총합연구소 주임연구원)

o 제2차 회의 (10.3, N.K연구회 그룹)
- 한국 : 박성훈(제1분석관), 김의도(정보분석실 사무관), 조원규(정보분석실 보좌관), 현성일(북한문제조사연구소)
- 일본 : 타마키 모토이(玉城素 : 북한문제 평론가), 노소에(野副 : 아시아경제연구소), 하나부사 마사오(花房征夫 : 아시아경제연구소),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 현대코리아 편집장), 히라이 히사시(平井久志 : 교토통신 서울지국장)

(12) 제12·13차 한·일 정보교류회의

o 1998년도는 북한정세평가를 위한 한·일 정부실무자간 정보교류회의가 서울(5.21~22)과 동경(11.18~20)에서 개최되었다.

바. 한·중 정보교류회의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1993년부터 중국의 북한문제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왔으며, 1996년부터는 이를 정례적인 정보교류회의로 확대·발전시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1) 제1차 한·중 정보교류간담회

o 일 시 : 1993년 10월 27일
o 주 제 : 한반도 비핵화문제 등 북한정세
o 방문기관 : 현대국제관계연구소
o 참 석 : 임태순(자문위원), 박두복(외교안보연구원 중국부장) 등 4명

(2) 제2차 한·중 정보교류간담회

o 일 시 : 1994년 10월 11일~17일
o 주 제 : 김일성 사후 북한의 후계체제 문제 등
o 방문기관 :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중국문제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등
o 참 석 : 권오덕(제3분석관) 등 3명

(3) 제3차 한·중 정보교류간담회

o 일 시 : 1995년 10월 12일~18일
o 주 제 : 김정일 공식승계 전망 등
o 방문기관 :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 요녕성 사회과학원 등
o 참 석: 이정윤 제3분석관 등 3명

(4) 제4차 한·중 정보교류회의

o 일 시 : 1996년 12월 3일
o 장 소 : 장춘국제호텔
o 주 제 : 북한정세 및 분야별 전망
- 북한의 정책결정과정 및 주요인물 동향
- 북한의 경제현황과 향후 경제정책 전망
- 북한의 주민생활과 사회변화 전망
- 북한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o 토론참가
- 한국측: 이정윤 제3분석관, 김홍재 정치회담과장, 김명상 보좌관
- 중국측: 장세화(장춘 한국문제연구소장), 조봉빈(길림대 교수), 김승남(〃), 장보인(〃), 임창배(〃)

(5) 제5차 한·중 정보교류회의

o 일 시 : 1997년 6월 24일
o 장 소 : 장춘국제호텔
o 주 제 : 분야별 북한실태 평가
- 김정일의 권력장악력 및 승계전망
- 북한의 경제난 타개전망
- 북한주민의 의식실태
- 북한의 대외정책 전망
o 토론 참가자
- 한국측: 신언상 제2분석관, 김명상 사무관
- 중국측: 진용산(길림성 동북아연구중심 비서장), 장영(길림성 사회과학원 교수), 장보인(길림대 교수), 김승남(〃), 장세화(〃)

(6) 제6차 한·중 정보교류회의

o 일 시 : 1998년 10월 28일
o 장 소 : 장춘 한국학연구소
o 주 제 : 북한정세평가 및 북·중관계

- 김정일정권의 대내외 정책방향
- 북·중 관계의 문제점과 전망

o 토론 참가자

- 한국측: 나한언 제2분석관, 김명상 사무관
- 중국측: 장세화 (길림대 교수), 장명(〃), 진용산(동북아연구중심 비서장)

5. 민족통일연구원을 통한 연구기반 확대

가. 연구사업

(1) 중점연구사업

1년단위로 수행되는 중점연구사업을 통하여 중·장기 통일정책을 개발하고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시기별로 총론적 기초연구(1991～1993), 각론적 심층연구(1994～1996), 정책현안 대책 개발(1997년～)에 연구초점을 맞춤으로써 전문성 및 적실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 「민족통일대계」의 연구

「민족통일대계」 연구는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첫째, 북한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변화방향을 예측하고 둘째, 통일의 국제적 여건 변화상황을 심층분석하며, 셋째, 그 토대 위에서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를 대비한 중·장기 정책과 남북관계에서의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왔다. 즉 정부의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실태, 통일환경, 통일정책 연구 등 3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상호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왔던 것이다.

(나) 북한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한 위기관리 방안 연구

1990년대에 들어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는 한편, 북한이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화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민족 전체의 안정적 발전이란 차원에서 북한내

부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상황의 변화에 따른 위기관리 방안을 연구해 왔다.

(다) 통일비용 연구

위기관리 방안 연구와 병행하여 급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대별하여 통일에 소요될 비용을 산출하였다.

(라) 통일이후 대비책 연구

94년부터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부문별로 통일이후를 대비하는 각종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일국가에서의 내적 통합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통일문화를 연구한 바 있다.

(마) 북한인권 관련 연구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는 정부부처내에 산재해 있는 북한인권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연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매년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영문의 백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단기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2) 수시대책 연구

수시대책 연구는 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당면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개발 연구이다. 연구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관련 부처에 제출되어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3) 통일정세 분석연구

우리의 통일과정에 영향을 미칠 주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북한 및 주변환경에 있어서의 주요 사건이나 상황변화의 발생을 분석하는 통일정세분석 시리즈를 수시로 발간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수시대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정부당국에 제출된다. 또한 매년 연말

에는 당해년도의 북한정세 및 국제환경, 남북한관계 변화 등을 분석·평가하고 다음해의 정세를 전망하기 위하여 「통일환경과 남북한관계」라는 연례 정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나. 연구지원사업

(1) 학술지 발간

통일문제 연구의 기반을 확충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1992년부터 국·영문논총을 발간하여 왔다. 국문논총인 「통일연구논총」은 일년에 두차례 발간되고 있으며, 영문논총인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은 일년에 한차례씩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특별호가 출간되었다. 학술지 발간사업은 연구원의 연구진들과 사계의 전문학자들이 축적해온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통일관련 전문학술지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2) 학술회의, 워크샵, 초청세미나 개최

북한정세 및 통일문제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고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균형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국제학술회의, 워크샵, 국내외 저명 한반도 전문가들을 초청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그외 연구보고서의 영역본 발간, 연구보고서 시판도 실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및 출판물 발간현황

(단위 : 회수)

구 분	'91~'95	'96~'98 현재	계
정책보고서	89	79	168
연구보고서	118	56	74
정세분석보고서	58	22	80
계간 북한동향	-	6	6
통일문화연구	4	3	7

구 분	'91~'95	'96~'98 현재	계
북한인권백서(국·영문)	-	6	6
학술회의 결과보고서	22	12	34
워크샵 결과보고서	6	1	7
세계주요사건일지	19	4	23
연례정세보고서	6	2	8
자료목록집	10	-	10
학 술 지(통일연구논총 등)	14	6	20
뉴스레타(분기별)	16	8	24
번역시리즈	-	2	2
요약	-	2	2
정책연구자료	-	8	8
기 타	3	1	4
계	365	215	583

Ⅰ. 역대 장관·차관

1. 장 관

代順	姓 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申 泰 煥	1969. 2. 17 ~ 1970. 3. 8	國土統一院長官
2	金 永 善	1970. 3. 9 ~ 1973. 12. 1	〃
3	金 溶 植	1973. 12. 2 ~ 1974. 9. 17	〃
4	愼 道 晟	1974. 9. 18 ~ 1975. 8. 17	〃
5	兪 尙 根	1975. 8. 18 ~ 1976. 12. 3	〃
6	李 用 熙	1976. 12. 4 ~ 1979. 12. 13	〃
7	李 奎 浩	1979. 12. 14 ~ 1980. 5. 21	〃
8	崔 完 福	1980. 5. 22 ~ 1980. 9. 1	〃
9	李 範 錫	1980. 9. 2 ~ 1982. 1. 3	〃
		「平統」事務總長 兼職('81. 4. 7 ~ '82. 1. 3)	〃
10	孫 在 植	1982. 1. 4 ~ 1985. 2. 18	〃
		「平統」事務總長 兼職('82. 1. 4 ~ '83. 7. 6)	〃
11	李 世 基	1985. 2. 19 ~ 1985. 7. 31	〃
12	朴 東 鎭	1985. 8. 1 ~ 1986. 8. 26	〃
13	許 文 道	1986. 8. 27 ~ 1988. 2. 24	〃
14	李 洪 九	1988. 2. 25 ~ 1990. 3. 18	〃
15	洪 性 澈	1990. 3. 19 ~ 1990. 12. 26	〃
16	崔 浩 中	1990. 12. 27 ~ 1992. 6. 25	副總理 兼 統一院長官
17	崔 永 喆	1992. 6. 26 ~ 1993. 2. 25	〃
18	韓 完 相	1993. 2. 26 ~ 1993. 12. 21	〃
19	李 榮 德	1993. 12. 22 ~ 1994. 4. 29	〃
20	李 洪 九	1994. 4. 30 ~ 1994. 12. 16	〃
21	金 悳	1994. 12. 24 ~ 1995. 2. 21	〃
22	羅 雄 培	1995. 2. 22 ~ 1995. 12. 20	〃
23	權 五 琦	1995. 12. 21 ~ 1998. 3. 2	〃
24	康 仁 德	1998. 3. 3 ~	統 一 部 長 官

2. 차 관

代順	姓 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李 圭 學	1969. 2. 25 ~ 1975. 1. 5	國土統一院次官
2	兪 尙 根	1975. 1. 6 ~ 1975. 8. 17	〃
3	董 弘 旭	1975. 8. 18 ~ 1975. 12. 26	國土統一院次官
4	董 勳	1975. 12. 27 ~ 1980. 1. 3	〃
5	李 秉 龍	1980. 1. 4 ~ 1986. 1. 8	〃
6	金 東 燮	1986. 1. 9 ~ 1988. 3. 4	〃
7	宋 漢 虎	1988. 3. 5 ~ 1990. 12. 26	〃
		1990. 12. 27 ~ 1992. 1. 8	統 一 院 次 官
8	林 東 源	1992. 1. 9 ~ 1993. 3. 4	〃
9	宋 榮 大	1993. 3. 5 ~ 1996. 8. 12	〃
10	金 錫 友	1996. 8. 13 ~ 1998. 3. 8	〃
11	丁 世 鉉	1998. 3. 9 ~	統 一 部 次 官

Ⅱ. 역대 간부

1. 기획관리실장(기획관리관)

代順	職　位	職　級	姓　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企劃管理官	2級相當	金 而 鉉	1970. 4.13 ~ 1971. 9.20	
2	〃	〃	盧 啓 鉉	1971. 9.21 ~ 1972. 7.10	
3	〃	副理事官	李 鎬 經	1972. 7.11 ~ 1974.10.30	
4	企劃管理室長	管 理 官	金 而 鉉	1974.11. 1 ~ 1975.11. 2	
5	〃	〃	金 政 鎭	1975.11. 3 ~ 1978. 5.15	
6	〃	〃	李 昌 世	1978. 5.16 ~ 1980. 1.28	
7	〃	〃	盧 啓 鉉	1980. 1.29 ~ 1981. 1.12	
8	〃	〃	金 東 燮	1981. 1.13 ~ 1981.11. 1	
	企劃管理官	書 記 官	姜 玨 大	1981.11. 2 ~ 1983. 3.22	職務代理
9	〃	副理事官	〃	1983. 3.23 ~ 1984. 5. 6	
10	〃	理 事 官	崔 鳳 基	1984. 5. 7 ~ 1986. 1.31	
11	〃	副理事官	姜 玨 大	1986. 2. 1 ~ 1986. 8.12	
	〃	理 事 官	〃	1986. 8.13 ~ 1986.12.31	
12	〃	〃	曺 峙 鉉	1987. 1. 1 ~ 1987.12.25	
13	〃	〃	朴 相 瓚	1987.12.26 ~ 1989. 2. 7	
14	〃	〃	姜 玨 大	1989. 2. 8 ~ 1991. 7. 8	

代順	職 位	職 級	姓 名	在 任 期 間	備 考
15	企劃管理室長	管 理 官	白 樂 曙	1991. 7. 9 ~ 1993. 4. 1	
16	〃	〃	朴 贊 世	1993. 4. 2 ~ 1994. 6. 1	
17	〃	〃	朴 鏞 德	1994. 6. 2 ~ 1995. 4.30	
18	〃	〃	朴 相 瓚	1995. 5. 1 ~ 1998. 3.17	
	〃	2級相當	崔 炳 輔	1998. 3.18 ~ 1998. 4. 7	職務代理
19	〃	管 理 官	〃	1998. 4. 8 ~	

2. 통일정책실장(정책기획실장)

代順	職 位	職 級	姓 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政策企劃室長	1級相當	柳 泰 鉉	1969. 3.15 ~ 1970. 4. 4	
2	〃	〃	白 麟 善	1970. 5. 1 ~ 1973. 8. 9	
3	〃	〃	李 晦 榮	1973. 8.10 ~ 1975. 1.15	
4	〃	〃	李 永 鎬	1975. 1.18 ~ 1976. 2. 2	
5	〃	〃	韓 英 哲	1976. 2. 3 ~ 1978. 3.28	
6	〃	〃	鄭 宗 植	1978. 3.29 ~ 1981.11. 1	
7	統一政策室長	管 理 官	崔 文 鉉	1989. 8. 1 ~ 1991. 7. 3	
8	〃	〃	具 本 泰	1991. 7. 9 ~ 1993. 8. 6	
9	〃	〃	梁 榮 植	1993. 8. 7 ~ 1994. 2. 1	
10	〃	〃	任 台 淳	1994. 2. 2 ~ 1994. 6. 1	
11	〃	〃	具 本 泰	1994. 6. 2 ~ 1996. 1.18	
12	〃	〃	文 武 烘	1996. 1.19 ~ 1997.10.31	
13	〃	〃	金 炯 基	1997.11. 1 ~ 1998. 3.17	
	〃	2級相當	朴 聖 勳	1998. 3.18 ~ 1998. 6. 2	職務代理
14	〃	管 理 官	〃	1998. 6. 3 ~ 1999. 1.11	
15	〃	〃	金 炯 基	1999. 1.12 ~	

3. 정보분석실장(조사연구실장)

代順	職 位	職 級	姓 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調 査 室 長	1級相當	孫 官 道	1969. 3.15 ~ 1971. 9.20	
2	〃	〃	金 而 鉉	1971. 9.21 ~ 1974.11. 1	
3	〃	〃	李 永 鎬	1974.11.13 ~ 1975. 1.17	
4	調査硏究室長	〃	李 秉 龍	1975. 1.18 ~ 1979. 2.15	
5	〃	〃	尹 炳 益	1979. 4.18 ~ 1980. 1.28	
6	〃	〃	宋 榮 大	1980. 1.29 ~ 1980. 3.23	
7	〃	〃	徐 極 性	1980. 3.24 ~ 1981.11. 1	
	〃	管 理 官	〃	1981.11. 2 ~ 1986.12.31	
8	〃	〃	崔 文 鉉	1987. 1. 1 ~ 1989. 7.31	
9	〃	〃	鄭 錫 弘	1989. 8. 1 ~ 1991. 7. 3	
10	情報分析室長	〃	朴 贊 世	1991. 7. 4 ~ 1993. 4. 1	
11	〃	〃	白 樂 曙	1993. 4. 2 ~ 1993. 8. 6	
12	〃	〃	鄭 大 圭	1993. 8. 7 ~ 1995. 7. 4	
13	〃	〃	金 炯 基	1995. 7. 5 ~ 1996.12.27	
14	〃	〃	李 浩	1996.12.28 ~ 1997.10.31	
15	〃	〃	鄭 大 圭	1997.11. 1 ~ 1998. 3.17	
16	〃	〃	李 浩	1998. 3.18 ~	

4. 교류협력국장

代順	職 位	職 級	姓 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局 長	理 事 官	朴 相 瓚	1991. 7. 4 ~ 1994. 2. 1	
2	〃	〃	金 英 一	1994. 2. 2 ~ 1996.12.16	
3	〃	〃	趙 建 植	1996.12.17 ~ 1997.10.31	
4	〃	副理事官	黃 河 守	1997.11. 1 ~ 1998. 6.25	
		理 事 官	〃	1998. 6.26 ~	

5. 인도지원국장

代順	職 位	職 級	姓 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局 長	2級相當	李 鍾 烈	1996.12.17 ~	

6. 자료관리국장(정보자료국장)

代順	職 位	職 級	姓 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資料管理局長	理 事 官	李 鎬 經	1975.11.24 ~ 1981.11. 1	
2	〃	〃	崔 鳳 基	1981.11. 2 ~ 1984. 5. 6	
3	〃	副理事官	姜 玨 大	1984. 5. 7 ~ 1984.12.30	
4	〃	理 事 官	曺 峙 鉉	1984.12.31 ~ 1986.12.31	
5	〃	副理事官	朴 相 瓚	1987. 1. 1 ~ 1987.12.25	
6	〃	〃	河 喆 東	1987.12.26 ~ 1989. 2. 7	
7	〃	理 事 官	曺 峙 鉉	1989. 2. 8 ~ 1989. 7. 3	
8	情報資料局長	〃	朴 相 瓚	1989. 8. 1 ~ 1991. 7.31	

7. 교육홍보실장(교육홍보국장)

代順	職 位	職 級	姓 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室 長	1級相當	趙 東 河	1969. 3.15 ~ 1972. 7.15	
2	〃	〃	李 晦 榮	1972. 8.16 ~ 1973. 8. 9	
3	〃	〃	禹 在 昇	1973. 9.10 ~ 1974. 4.17	
	〃	理 事 官	簡 泳 洙	1974. 4.18 ~ 1974.10.27	職務代理
4	局 長	〃	〃	1974.10.29 ~ 1975. 1.10	
	〃	3級相當	鄭 錫 弘	1975.12. 9 ~ 1977.10.31	職務代理
5	室 長	1級相當	李 榮 一	1977.11. 1 ~ 1980. 1.18	

代順	職 位	職 級	姓 名	在 任 期 間	備 考
6	室 長	1級相當	金 永 俊	1980. 1.19 ~ 1980. 3.23	
7	〃	〃	宋 榮 大	1980. 3.24 ~ 1981.11. 1	
8	〃	〃	金 東 燮	1981.11. 2 ~ 1984. 5. 6	
9	〃	〃	朴 贊 世	1984. 5. 7 ~ 1986. 1.31	
10	〃	〃	崔 鳳 基	1986. 2. 1 ~ 1986.12.31	
11	〃	〃	梁 榮 植	1987. 1. 1 ~ 1988. 6. 3	
12	〃	〃	鄭 錫 弘	1988. 6. 4 ~ 1989. 7.31	
13	局 長	理 事 官	曺 峙 鉉	1989. 8. 1 ~ 1993. 4. 1	
14	〃	〃	金 英 一	1993. 4. 2 ~ 1994. 2. 1	
15	〃	〃	河 喆 東	1994. 2. 2 ~ 1994. 6. 1	
16	〃	〃	姜 玨 大	1994. 6. 2 ~ 1996. 5. 9	
17	〃	〃	權 五 德	1996. 5.10 ~ 1996.12.16	

8. 통일교육원장(통일연수소장, 통일연수원장)

代順	職 位	職 級	姓 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所 長	1級相當	金 永 俊	1972. 5.20 ~ 1980. 1.18	
2	〃	〃	李 榮 一	1980. 1.19 ~ 1980.12. 1	
	〃	理 事 官	崔 鳳 基	1980.12. 2 ~ 1981. 5.12	職務代理
3	〃	1級相當	朴 贊 世	1981. 5.13 ~ 1984. 5. 6	
4	〃	〃	金 東 燮	1984. 5. 7 ~ 1986. 1. 8	
5	〃	〃	朴 贊 世	1986. 2. 1 ~ 1986.12.31	
6	院 長	〃	〃	1987. 1. 1 ~ 1991. 7. 3	
7	〃	管 理 官	崔 文 鉉	1991. 7. 4 ~ 1993. 8. 6	
8	〃	〃	鄭 時 成	1993. 8. 7 ~ 1994. 6. 1	

代順	職 位	職 級	姓 名	在 任 期 間	備 考
9	院 長	管 理 官	朴 贊 世	1994. 6. 2 ~ 1996. 5. 9	
10	〃	〃	姜 玨 大	1996. 5.10 ~ 1997.10.31	
11	〃	〃	梁 榮 植	1997.11. 1 ~ 1998. 3.17	
12	〃	〃	鄭 大 圭	1998. 3.18 ~ 1998. 9. 1	
13	〃	〃	金 英 一	1998. 9. 2 ~	

9. 남북회담사무국장(남북대화사무국장)

代順	職 位	職 級	姓 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局 長	1級相當	李 東 馥	1980.11. 3 ~ 1982. 2. 4	
2	〃	〃	宋 漢 虎	1982. 2. 5 ~ 1988. 3. 4	
3	〃	〃	鄭 時 成	1988. 3.30 ~ 1993. 8. 6	
4	〃	管 理 官	具 本 泰	1993. 8. 7 ~ 1994. 6. 1	
5	〃	〃	鄭 時 成	1994. 6. 2 ~ 1996.10.31	
6	〃	〃	任 台 淳	1996.11. 1 ~ 1997.10.31	
7	〃	〃	文 武 烘	1997.11. 1 ~ 1998. 3.17	
8	〃	〃	金 炯 基	1998. 3.18 ~ 1999. 1.11	
9	〃	〃	鄭 大 圭	1999. 1.12 ~	

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국장

代順	職 位	職 級	姓 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局 長	管 理 官	金 明 洙	1998. 3. 12 ~ 1998. 3.31	職務代理
	〃	〃	〃	1998. 4. 1 ~	

11. 공 보 관(홍보2담당관)

代順	職 位	職 級	姓 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弘報2擔當官	3級相當	金 京 得	1981.11. 2 ~ 1981.12.15	
2	〃	2級相當	鄭 錫 弘	1982. 2.19 ~ 1983.12.29	
3	〃	〃	梁 榮 植	1983.12.30 ~ 1986. 3.11	
4	〃	3級相當	崔 炳 輔	1986. 3.12 ~ 1986. 8.12	
	〃	2級相當	〃	1986. 8.13 ~ 1989. 7.31	
1	公 報 官	〃	〃	1989. 8. 1 ~ 1993. 8. 6	
2	〃	〃	金 炯 基	1993. 8. 7 ~ 1994. 7.30	
3	〃	3級相當	金 京 雄	1994. 8. 1 ~ 1995. 8. 3	
	〃	2級相當	〃	1995. 8. 4 ~ 1996.12.16	
4	〃	〃	姜 鎬 洋	1996.12.17 ~ 1997.10.31	
5	〃	3級相當	洪 興 柱	1997.11. 1 ~ 1999. 1.11	
6	〃	2級相當	申 彦 祥	1999. 1.12 ~	

12. 감 사 관(감사담당관)

代順	職 位	職 級	姓 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監査擔當官	書 記 官	趙 俊 鎬	1991. 7. 8 ~ 1992.11. 8	
2	〃	〃	羅 漢 彦	1992.11. 9 ~ 1995. 5. 9	
	〃	副理事官	〃	1995. 5.10 ~ 1996.12. 9	

代順	職 位	職 級	姓 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監 査 官	副理事官	金 鎭 道	1996.12.17 ~ 1997. 1.31	
	〃	理 事 官	〃	1997. 2. 1 ~ 1998. 3.17	
2	〃	副理事官	羅 漢 彦	1998. 3.18 ~ 1998. 5.20	
3	〃	〃	洪 在 亨	1998. 5.21 ~	

13. 총무과장

代順	職 位	職 級	姓 名	在 任 期 間	備 考
1	課 長	書 記 官	李 鎬 經	1969. 3. 5 ~ 1972. 7. 9	
2	〃	〃	李 喆 永	1972. 7.10 ~ 1974.10.17	
3	〃	〃	金 秉 時	1974.10.18 ~ 1975. 8.21	
4	〃	〃	蔡 永 植	1975. 8.22 ~ 1976. 1.31	
5	〃	〃	崔 鳳 基	1976. 2. 1 ~ 1977. 3.23	
6	〃	〃	金 孔 烈	1977. 3.24 ~ 1979. 4.17	
7	〃	〃	金 勳 基	1979. 4.18 ~ 1980. 6.25	
8	〃	〃	姜 玨 大	1980. 6.26 ~ 1981.11. 1	
9	〃	〃	權 五 德	1981.11. 2 ~ 1988. 6. 3	
10	〃	〃	金 鎭 道	1988. 6. 4 ~ 1992.11. 8	
11	〃	〃	孫 弼 永	1992.11. 9 ~ 1993. 5.17	
12	〃	〃	金 鎭 道	1993. 5.18 ~ 1993. 8. 6	
13	〃	〃	黃 河 守	1993. 8. 7 ~ 1994.11.25	
14	〃	〃	張 鎭 文	1994.11.26 ~ 1995. 5. 9	
	〃	副理事官	〃	1995. 5.10 ~ 1996. 5. 9	
15	〃	〃	洪 良 浩	1996. 5.10 ~ 1997. 8.12	

代順	職　位	職　級	姓　名	在　任　期　間	備　考
16	課　長	書 記 官	朴 興 烈	1997. 8.13 ~ 1997.11.23	
	〃	副理事官	〃	1997.11.24 ~ 1998. 3.17	
17	〃	〃	高 景 彬	1998. 3.18 ~ 1998. 5. 5	
18	〃	〃	朴 興 烈	1998. 5. 6 ~	

Ⅲ. 서 훈 포 상 자

1. 상훈자

(褒賞日字順)

所 屬	職 級	姓 名	表彰種類	年 月 日
調 査 室	4 級 相 當	李 徹	國務總理表彰	1972. 3. 4
總 務 課	行政事務官	曺 峙 鉉	國務總理表彰	1972. 3. 4
國土統一院	次 官	李 圭 學	黃條勤政勳章	1972. 6. 9
國土統一院	長 官	金 永 善	靑條勤政勳章	1972. 8.10
企劃管理官室	行政事務官	李 甲 熙	大統領表彰	1973.10.30
總 務 課	行政事務官	鄭 秉 天	勤 政 褒 章	1974. 6.14
調査硏究室	1 級 相 當	李 秉 龍	紅條勤政勳章	1975. 2. 4
企劃管理室	管 理 官	金 而 鉉	紅條勤政勳章	1975. 8.12
調査硏究室	2 級 相 當	徐 極 性	紅條勤政勳章	1976. 4. 2
非常計劃官室	5 級 相 當	洪 鎭 學	大統領表彰	1976. 8.27
政策企劃室	3 級 相 當	尹 璟 泰	紅條勤政勳章	1976. 9.10
企劃管理室	書 記 官	金 孔 烈	綠條勤政勳章	1976.12.31
企劃管理室	行政事務官	朴 相 瓚	綠條勤政勳章	1977. 6.10
統一硏修所	1 級 相 當	金 永 俊	紅條勤政勳章	1977.12.28
企劃管理室	管 理 官	金 政 鎭	大統領表彰	1978. 5.23
總 務 課	行政事務官	孫 弼 永	勤 政 褒 章	1978. 8. 1
政策企劃室	行 政 主 事	朴 煥 秀	國務總理表彰	1978. 8. 1
總 務 課	行 政 主 事	金 南 石	玉條勤政勳章	1978.12. 9
政策企劃室	2 級 相 當	宋 榮 大	大統領表彰	1978.12. 9
國土統一院	長 官	李 用 熙	靑條勤政勳章	1979. 6.15
敎育弘報室	1 級 相 當	李 榮 一	紅條勤政勳章	1979. 6.15
敎育弘報室	2 級 相 當	鄭 錫 弘	紅條勤政勳章	1979. 6.15
統一硏修所	行 政 主 事	金 北 卿	大統領表彰	1979.12.29
調査硏究室	1 級 相 當	尹 炳 益	紅條勤政勳章	1979.12.29
企劃管理室	管 理 官	盧 啓 鉉	紅條勤政勳章	1980. 8. 1
總 務 課	雇 傭 職	李 相 根	大統領表彰	1980. 8. 1
政策企劃室	2 級 相 當	趙 英 規	紅條勤政勳章	1980.12.31
資料管理局	司 書	鄭 光 采	大統領表彰	1980.12.31
資料管理局	理 事 官	崔 鳳 基	紅條勤政勳章	1981.12. 1
調査硏究室	4 級 相 當	金 淳 培	勤 政 褒 章	1981.12. 1

所　　屬	職　級	姓　名	表彰種類	年 月 日
南北對話事務局	5 級 相 當	李 鍾 烈	大統領表彰	1981.12. 1
總　務　課	行 政 主 事	張 東 赫	大統領表彰	1981.12. 1
資料管理局	司　　書	宋 吉 成	國務總理表彰	1981.12. 1
南北對話事務局	6 級 相 當	吳 世 雄	國務總理表彰	1981.12. 1
敎育弘報室	1 級 相 當	金 東 燮	紅條勤政勳章	1982.12. 2
南北對話事務局	1 級 相 當	宋 漢 虎	勤 政 褒 章	1982.12. 2
企劃管理官室	書　記　官	張 鎭 文	勤 政 褒 章	1982.12. 2
資料管理局	書　記　官	梁 泰 鎭	大統領表彰	1982.12. 2
總　務　課	行政事務官	李 聖 鎬	國務總理表彰	1982.12. 2
統一硏修所	行政事務官	柳 根 渲	國務總理表彰	1982.12. 2
非常計劃官室	4 級 相 當	尹 錫 台	大統領表彰	1982.12.28
南北對話事務局	1 級 相 當	崔 文 鉉	紅條勤政勳章	1983.12.14
敎育弘報室	2 級 相 當	梁 榮 植	勤 政 褒 章	1983.12.14
總　務　課	書　記　官	權 五 德	大統領表彰	1983.12.14
南北對話事務局	雇　傭　職	安 基 祚	玉條勤政勳章	1984.12.19
南北對話事務局	1 級 相 當	兪 完 植	紅條勤政勳章	1984.12.24
南北對話事務局	2 級 相 當	鄭 大 圭	勤 政 褒 章	1984.12.24
調査硏究室	3 級 相 當	崔 炳 輔	大統領表彰	1984.12.24
總　務　課	行政事務官	金 鎭 道	國務總理表彰	1984.12.24
非常計劃官室	2 級 相 當	金 孝 鉉	紅條勤政勳章	1985.10.23
資料管理局	理　事　官	曺 峙 炫	紅條勤政勳章	1985.12.23
統一硏修院	書　記　官	河 喆 東	勤 政 褒 章	1985.12.23
企劃管理官室	行政事務官	吳 斗 山	大統領表彰	1985.12.23
統一硏修所	1 級 相 當	朴 贊 世	紅條勤政勳章	1986.12.22
敎育弘報室	3 級 相 當	河 碩 俊	勤 政 褒 章	1986.12.22
總　務　課	行政事務官	柳 鍾 洙	大統領表彰	1986.12.22
敎育弘報室	理　事　官	姜 玨 大	紅條勤政勳章	1987.12.23
統一硏修院	敎　　授	章 洙 棟	勤 政 勳 章	1987.12.23
企劃管理官室	書　記　官	李 洛 泳	大統領表彰	1987.12.23

所 屬	職 級	姓 名	表彰種類	年 月 日
敎育弘報室	3 級 相 當	金 炯 基	勤 政 褒 章	1987.12.28
統一硏修院	敎 授	申 喆 均	勤 政 褒 章	1987.12.28
敎育弘報室	行政事務官	金 鍾 完	大統領表彰	1987.12.28
南北對話事務局	4 級 相 當	李 鍾 烈	勤 政 褒 章	1988. 1.22
調査硏究室	4 級 相 當	李 浩	勤 政 褒 章	1988. 1.22
敎育弘報室	4 級 相 當	卞 景 燮	勤 政 褒 章	1988. 1.22
敎育弘報室	行政事務官	金 錫 珍	大統領表彰	1988. 1.22
南北對話事務局	1 級 相 當	李 鎬 經	大統領表彰	1988. 6.30
南北對話事務局	1 級 相 當	任 台 淳	紅條勤政勳章	1988.12.31
統一硏修院	書 記 官	李 慶 雨	勤 政 褒 章	1988.12.31
總 務 課	行政事務官	金 時 漢	大統領表彰	1988.12.31
敎育弘報局	5 級 相 當	徐 斗 鉉	大統領表彰	1989. 4.11
統一政策室	2 級 相 當	具 本 泰	紅條勤政勳章	1989.11.22
統一硏修院	行政事務官	金 義 三	大統領表彰	1989.11.22
交流協力局	書 記 官	洪 良 浩	大統領表彰	1990. 6. 5
統一硏修院	書 記 官	張 鎭 文	綠條勤政勳章	1990.12.26
統 一 院	書 記 官	高 景 彬	大統領表彰	1990.12.26
統一硏修院	敎 授	金 炅 泰	紅條勤政勳章	1991.12.31
總 務 課	行政事務官	李 康 洛	大統領表彰	1991.12.31
統一政策室	行政事務官	金 千 植	大統領表彰	1992. 2.20
敎育弘報局	行 政 主 事	權 寧 範	大統領表彰	1992. 2.28
南北對話事務局	管 理 官	鄭 時 成	紅條勤政勳章	1992. 4.22
南北對話事務局	2 級 相 當	金 炯 基	紅條勤政勳章	1992. 4.22
南北對話事務局	2 級 相 當	孫 仁 敎	勤 政 褒 章	1992. 4.22
南北對話事務局	3 級 相 當	李 俊 求	勤 政 褒 章	1992. 4.22
南北對話事務局	4 級 相 當	李 重 珪	勤 政 褒 章	1992. 4.22
南北對話事務局	3 級 相 當	李 正 允	大統領表彰	1992. 4.22
南北對話事務局	5 級 相 當	李 永 範	大統領表彰	1992. 4.22
南北對話事務局	5 級 相 當	柳 鍾 烈	國務總理表彰	1992. 4.22

所　　屬	職　級	姓　名	表彰種類	年 月 日
南北對話事務局	5 級 相 當	金 煉 哲	國務總理表彰	1992. 4.22
南北對話事務局	5 級 相 當	沈 用 昌	國務總理表彰	1992. 4.22
總　務　課	行政事務官	鄭 海 童	大統領表彰	1992. 7.20
情報分析室	7 級 相 當	宋 基 營	國務總理表彰	1992. 7.20
敎育弘報局	行政事務官	鄭 東 文	勤 政 褒 章	1992. 9. 8
統一硏修院	敎　　授	章 洙 棟	紅條勤政勳章	1992.12.31
企劃管理室	書　記　官	金 鎭 道	勤 政 褒 章	1992.12.31
統一政策室	5 級 相 當	文 大 瑾	大統領表彰	1993. 1. 9
南北對談事務局	4 級 相 當	鄭 應 采	綠條勤政勳章	1993. 6.30
敎育弘報局	理　事　官	金 英 一	紅條勤政勳章	1993.12.16
情報分析室	4 級 相 當	徐 成 雨	大統領表彰	1993.12.16
統一硏修院	書　記　官	李 珣 雨	勤 政 褒 章	1994. 3.31
統一硏修院	2 級 相 當	崔 炳 輔	紅條勤政勳章	1994. 6.30
企劃管理室	行政事務官	韓 洪 基	大統領表彰	1994. 6.30
交流協力局	行 政 主 事	鄭 有 秀	國務總理表彰	1994. 8. 2
非常計劃官室	2 級 相 當	金 恢 東	保國勳章 天授章	1994.12. 2
非常計劃官室	行政事務官	李 康 鎭	國務總理表彰	1994.12. 2
統一政策室	行政事務官	金 桂 鎭	勤 政 褒 章	1994.12.15
南北對談事務局	4 級 相 當	洪 興 柱	紅條勤政勳章	1994.12.26
總　務　課	技　能　職	金 容 寬	國務總理表彰	1995. 3.31
情報分析室	2 級 相 當	朴 雄 熙	紅條勤政勳章	1995. 6.30
企劃管理室	行政事務官	金 文 鎬	大統領表彰	1995. 6.30
情報分析室	書　記　官	洪 起 樹	紅條勤政勳章	1995.12.26
統一硏修院	敎　　授	任 鍾 嫩	紅條勤政勳章	1995.12.30
敎育弘報局	4 級 相 當	韓 相 逸	勤 政 褒 章	1995.12.30
統　一　院	行政事務官	康 鉉 植	大統領表彰	1995.12.30
南北對談事務局	6 級 相 當	徐 在 植	大統領表彰	1995.12.30
統一硏修院	行 政 主 事	曺 圭 鳳	國務總理表彰	1996. 5. 8

所 屬	職 級	姓 名	表彰種類	年 月 日
統 一 院	副理事官	張鎭文	紅條勤政勳章	1996. 6.20
統一硏修院	敎 授	鄭秉天	紅條勤政勳章	1996. 6.29
統 一 院	5級相當	崔常喆	大統領表彰	1996. 6.29
統 一 院	理 事 官	李慶雨	紅條勤政勳章	1996.12.14
統 一 院	書 記 官	柳根渲	綠條勤政勳章	1996.12.14
人道支援局	行政事務官	林正高	綠條勤政勳章	1996.12.19
統一政策室	4級相當	金容在	紅條勤政勳章	1996.12.27
情報分析室	行政主事	南宮滉	大統領表彰	1996.12.30
企劃管理室	電算事務官	金泳弼	大統領表彰	1997. 6.17
統一敎育院	敎 授	張錫澈	紅條勤政勳章	1997. 6.30
交流協力局	書 記 官	曺龍男	大統領表彰	1997. 6.30
統 一 院	書 記 官	鄭輝敦	大統領表彰	1997. 9.30
統一敎育院	管 理 官	姜玨大	黃條勤政勳章	1997.12.20
南北會談事務局	管 理 官	任台淳	黃條勤政勳章	1997.12.20
人道支援局	副理事官	趙明均	黃條勤政勳章	1997.12.29
統一敎育院	2級相當	李楨秀	紅條勤政勳章	1997.12.31
企劃管理室	行政主事	朴 極	國務總理表彰	1997.12.31
統一敎育院	書 記 官	鄭一采	勤政褒章	1998. 3.31
統一敎育院	行政事務官	崔壽根	勤政褒章	1998. 6.30
南北會談事務局	技 能 職	黃根澤	國務總理表彰	1998. 6.30
南北會談事務局	4級相當	金煉哲	大統領表彰	1998. 7. 9
南北會談事務局	5級相當	權英陽	國務總理表彰	1998. 7. 9
統一敎育院	2級相當	柳仁澤	國務總理賞狀	1998. 9.10
統一敎育院	行政主事	朴海豊	大統領表彰	1998. 9.30
統 一 部	書 記 官	李洛泳	綠條勤政勳章	1998.12.22
統一敎育院	書 記 官	李仁燮	綠條勤政勳章	1998.12.22
統一敎育院	書 記 官	金英男	勤政褒章	1998.12.22
統一敎育院	行政主事	蔡奎文	勤政褒章	1998.12.22

所　　屬	職　級	姓　名	表彰種類	年 月 日
統一敎育院	行 政 主 事	李 學 容	勤 政 褒 章	1998.12.22
統一敎育院	副 理 事 官	柳 鍾 洙	大統領表彰	1998.12.22
統一敎育院	技　能　職	李 福 振	大統領表彰	1998.12.22
南北會談事務局	技　能　職	鄭 成 得	大統領表彰	1998.12.22
統一敎育院	行 政 主 事	李 三 台	國務總理表彰	1998.12.22
南北會談事務局	技　能　職	黃 義 俊	國務總理表彰	1998.12.22
南北會談事務局	技　能　職	朴 昌 谷	國務總理表彰	1998.12.22
南北會談事務局	技　能　職	金 奉 基	國務總理表彰	1998.12.22
南北會談事務局	技　能　職	李 秉 九	國務總理表彰	1998.12.22
企劃管理室	書　記　官	金 錫 珍	綠條勤政勳章	1998.12.28
統一敎育院	書　記　官	金 鍾 完	大統領表彰	1998.12.28
總　務　課	書　記　官	崔 正 秀	國務總理表彰	1998.12.28
交流協力局	行 政 主 事	金 喜 奉	大統領表彰	1998.12.31

2. 모범공무원표창 수상자

(表彰日字順)

所 屬	職 級	姓 名	年 度	備 考
總 務 課	行 政 主 事	金 鍾 吉	1970.12.17	
統一硏修所	行 政 主 事	權 五 德	1973. 2.22	
總 務 課	行政主事補	金 鎬 經	1973.12.31	
總 務 課	行 政 主 事	金 鳳 熙	1974.12.26	
敎育弘報局	行 政 主 事	白 日 善	1975.12.30	
統一硏修所	行 政 主 事	朴 秉 哲	1976.12.31	
總 務 課	行 政 主 事	金 鎭 道	1977.12.31	
總 務 課	行政主事補	李 三 台	1978.12.30	
總 務 課	行 政 主 事	金 元 浩	1979.12.31	
總 務 課	行 政 主 事	申 亨 淳	1980.12.31	
總 務 課	行 政 主 事	鄭 海 童	1981.12.31	
企劃管理官室	行 政 主 事	金 義 三	1981.12.31	
統一硏修所	雇 傭 職	趙 鏞 國	1981.12.31	
總 務 課	雇 傭 職	金 德 鉉	1982.12.31	
總 務 課	行 政 主 事	金 用 煥	1982.12.31	
統一硏修所	行 政 主 事	尹 秀 山	1982.12.31	
總 務 課	行 政 主 事	金 春 謙	1983.12.31	
統一硏修所	行 政 主 事	柳 鎭 永	1983.12.31	
統一硏修所	行 政 主 事	韓 洪 基	1983.12.31	
總 務 課	行 政 主 事	崔 正 洙	1984.12.31	
總 務 課	雇 傭 職	尹 在 億	1984.12.31	
統一硏修所	行 政 主 事	李 俊 雨	1984.12.31	
總 務 課	行 政 主 事	崔 炳 日	1985.12.31	
統一硏修所	行 政 主 事	咸 明 秀	1985.12.31	
南北對話事務局	6 級 相 當	徐 在 植	1985.12.31	
南北對話事務局	6 級 相 當	朴 聖 墁	1985.12.31	
資料管理局	行 政 主 事	蔡 奎 文	1986.12.31	

所　　屬	職　級	姓　名	年　度	備　考
總　務　課	行 政 主 事	李 重 宰	1986.12.31	
南北對話事務局	6 級 相 當	宋 基 華	1986.12.31	
統一硏修所	行 政 主 事	魏 周 良	1986.12.31	
南北對話事務局	行 政 主 事	柳 日 燁	1986.12.31	
統一硏修院	行 政 主 事	朴 正 勳	1987.12.31	
統一硏修院	行 政 主 事	李 學 容	1987.12.31	
統一硏修院	行 政 主 事	金 寧 振	1987.12.31	
總　務　課	行 政 主 事	全 東 根	1987.12.31	
總　務　課	行 政 主 事	邊 萬 根	1987.12.31	
總　務　課	行 政 主 事	金 明 永	1988.12.31	
調査硏究室	行 政 主 事	徐 相 德	1988.12.31	
資料管理局	司　　書	朴 東 春	1988.12.31	
統一硏修院	行 政 主 事	奇 永 昌	1988.12.31	
南北對話事務局	6 級 相 當	陳 準 南	1988.12.31	
情報分析室	行政事務官	尹 用 範	1989.12.30	
南北對話事務局	行 政 主 事	曺 圭 鳳	1989.12.30	
情報分析室	司 書 主 事	金 明 子	1989.12.30	
總　務　課	行 政 主 事	金 基 先	1990.12.16	
統一硏修院	行 政 主 事	尹 在 薰	1990.12.26	
情報分析室	6 級 相 當	南 在 卓	1990.12.26	
統一政策室	行 政 主 事	梁 映 燦	1991.12.31	
敎育弘報局	行 政 主 事	金 銅 培	1991.12.31	
南北對話事務局	技　能　職	李 秉 九	1991.12.31	
總　務　課	行 政 主 事	申 載 彪	1992.12.31	
情報分析室	6 級 相 當	金 泰 元	1992.12.31	
南北對話事務局	技　能　職	金 奉 基	1992.12.31	
統一硏修院	技　能　職	丁 世 鎭	1992.12.31	
總　務　課	行 政 主 事	千 昌 基	1993. 6.30	
交流協力局	行 政 主 事	尹 勝 日	1993. 6.30	
統一硏修院	行 政 主 事	林 哉 鎭	1993. 6.30	

所 屬	職 級	姓 名	年 度	備 考
企劃管理室	行政主事	崔士圭	1993.12.15	
統一硏修院	技能職	李福振	1993.12.15	
南北會談事務局	技能職	鄭成得	1993.12.15	
監査擔當官室	行政主事	林鍾三	1994. 6.30	
統一政策室	行政主事	全炯仁	1994. 6.30	
南北會談事務局	技能職	崔佑燮	1994. 6.30	
統一硏修院	技能職	崔海九	1994.12.15	
次官室	技能職	全昇龍	1994.12.15	
南北會談事務局	行政主事	金德龍	1994.12.15	
總務課	技能職	全弘基	1995. 6.30	
交流協力局	行政主事	金錫圭	1995. 6.30	
南北會談事務局	6級相當	金昌顯	1995. 6.30	
交流協力局	行政主事	河泰萬	1995.12.30	
南北會談事務局	6級相當	趙文柱	1995.12.30	
統一硏修院	技能職	白道煥	1995.12.30	
南北會談事務局	6級相當	崔炳燮	1996. 6.29	
統一硏修院	看護主事	金晶美	1996. 6.29	
總務課	行政主事	黃秉一	1996. 6.29	
情報分析室	司書主事	宋承燮	1996.12.19	
輕水爐企劃團	行政主事	賈相鉉	1996.12.19	
南北會談事務局	技能職	權完奎	1996.12.19	
總務課	技能職	鄭光石	1997. 6.30	
情報分析室	6級相當	宋基營	1997. 6.30	
企劃管理室	行政主事	郭漢根	1997. 6.30	
企劃管理室	行政主事	金吉浩	1997.12.31	
統一政策室	行政主事	全蘭慶	1997.12.31	
南北會談事務局	技能職	李揆成	1997.12.31	

所　　屬	職　級	姓　名	年　度	備　考
人道支援局	行 政 主 事	金 昌 模	1998. 6.30	
情報分析室	技　能　職	金 珍 姬	1998. 6.30	
統一敎育院	技　能　職	鄭 東 淳	1998. 6.30	
總　務　課	技　能　職	權 鎭 鎬	1998.12.31	
交流協力局	行 政 主 事	梁 成 伊	1998.12.31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事務局	行 政 主 事	李 世 鐘	1998.12.31	

3. 외국 훈장

(褒賞日字順)

所屬 및 職位	姓　名	褒章 種類	年　度	授 與 國
國土統一院長官	金 永 善	慶星勳章 1等級	1971. 2.22	中華民國
國土統一院長官	金 永 善	大韓國十字勳章 (1等報國勳章)	1972. 6. 2	獨逸聯邦共和國

4. 외국인사 포상

(褒賞日字順)

所屬 및 職位	姓　　名	褒賞 種類	年　度	授 與 國
中華民國 光復大陸設計委員會 秘書官	郭　驥	1等修交勳章	1970. 8. 4	大韓民國
西獨 內獨關係省 事務次官	군터벳첼	修交勳章興仁章	1971. 5. 4	〃
西獨 內獨關係省 政務局長	한스유르겐 쉬어바움	修交勳章崇禮章	1972. 5.29	〃
西獨 內獨關係省 長官	에곤 프랑케	修交勳章光化章	1972. 9.13	〃
西獨 內獨關係省 長官7	하인리히 빈델렌	修交勳章光化章	1983.11.28	〃

Ⅳ. 남북관계 주요일지

1943

o 12. 1 카이로선언
  - 한국국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고 적당한 시기에 한국이 해방되고 독립하게 될 것을 결의

1945

o 7.26 포츠담선언
  - 카이로선언의 제조항 재확인

o 12.27 모스크바 협정
  - 전한국임시정부의 수립
  - 전한국임시정부수립을 돕기 위하여 미·소양군사령부의 대표로서 공동위원회를 구성
  - 공동위원회는 전한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한국의 완전 독립을 목적으로 한 미·소·영·중 4개국의 5개년을 기한으로 하는 신탁통치 협정을 작성

1947

o 9.17 미국, 유엔 총회에 한국문제제출

o 11.14 유엔 제2차 총회 결의(美·濠·中·比 공동제출)
  - 한국국민의 시급하고 정당한 독립요구를 인정하고 선거의 공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을 구성
  - 동위원단의 감시하에 비밀투표에 의하여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

1948

o 2.26 유엔 소총회, 한국내 접근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결의

o 3.25 북한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전조선 제정 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제의
  - 유엔결의 및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 반대

o 4.30 북한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성명 발표

- 외국군대의 즉각적인 철수
- 전조선정치회의 소집 및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 통일적 입법기관 선거
- 남한 단독선거 전면 반대

o 6.12 제헌국회 결의
- 북한의 인구수에 비례한 의석 약 1/3을 공석으로 남겨두고, 북한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합류하기를 호소

o 7.17 이승만 국회의장, 헌법공포 기념사
- 북한은 유엔결의에 따라 자유총선거를 실시, 선출된 대표를 국회를 보낼 것을 요청

o 8.15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
- 대한민국 정부는 전한반도에 걸쳐 주권을 갖는 유일한 합법정부

o 9.10 김일성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한 정강
- 국토완정과 민족통일의 필수적 선행조건이 되는 미·소 양국군대의 동시 철수에 관한 소련의 제의 실현노력 다짐

o 12.12 유엔 제3차회의, 대한민국이 합법정부임을 선언
-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에서 유일합법정부임을 선언
- 유엔 한국위원단을 설치할 것을 결의(가48, 부6, 기권1, 결석3)

1950

o 10. 7 유엔 제5차 총회의 통한(統韓) 결의
- 대한민국정부가 한국내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제3차 총회의 선언을 상기

1953

o 11.25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공보처 발표)
- 북한만이 단독선거로 국회의 잔여석을 채우는 것이 원칙이나 북한주민이 희망한다면 전한국총선거를 받아들일 용의(휴전후 나온 한국정부의 최초의 통일방안)

1954

o 4.27 북한대표 남일의 제네바 회담에서의 한국통일에 관한 제의
- 남북주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기초위에서 통일정부를 형성할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

- 전조선위원회 조직

o 5.22 제네바회의에서 변영태 외무부장관 제의
- 통일독립된 한국정부수립을 위해 유엔 결의에 의거, 유엔감시하 자유총선거 실시
- 북한에서 한국헌법절차에 의거, 자유선거 실시

o 6.15 북한외상, 남일의 제네바 회담에서의 수정안
- 관계 각국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비례원칙에 입각한 감시하에 남북에서 전외국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토록 해당국가에 권고

o 7.30 이승만 대통령 방미시 아이젠하워 미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 나타난 통일방안
- 우리는 유엔 헌장 및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통일민주독립한국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행동하려는 우리의 의도를 재확인

o 10. 2 제3대국회, 통일방안에 대한 결의
- 유엔감시하에 북한전역에서 전공산군이 철퇴한 후 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주권을 확충

o 10.30 북한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8차 회의에서 채택된 호소문
- 남북의 각정당·사회단체 및 각계각층의 대표자 연석회의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의 공동회의 소집

1955

o 2. 2 조국중립화위원회(김삼규), 중립화 통일방안 발표
- 통일한국은 국제적 동의에 의해 중립화
- 통일된 중립한국은 강대국의 국제적 보장에 의하여 정치적 독립과 영토적 보전 준수

1956

o 11.10 진보당 창당대회에서의 통일방안
- 통일, 독립된 민주적 한국의 국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자유선거를 시행
- 선거를 준비하고 실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북조선당국에서 각각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는 전한국위원회를 설치

1957

o 9.10 국회결의 통일방향

- 중공군 철수, 유엔감시하의 남북지역 총선실시, 한국의 유엔가입

o 9.2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 회의에서 행한 김일성 연설
  - 한반도 외국군대 철거, 남북의 병력을 각각 10만으로 축소할 것을 제의
  - 남북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하여 남북의 대표를 참가시키는 유관국가들의 국제회의를 소집
  -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전국적인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남북을 통일

1958

o 2. 5 북한의「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제안」
  - 한반도에서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의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킬 것
  - 일체의 외국군대가 철거한 후, 일정한 기간내에 중립국 감시하에 전국의 자유선거 실시

1959

o 10.2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6차 회의에서의 남일(부수상)의 연설
  - 일체의 외국군대가 철거한 후 전조선의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
  - 자유선거 실시문제를 포함한 평화통일에 관한 제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의 국회, 정부 또는 정당, 사회단체대표로 구성되는 상설위원회를 조직

1960

o 2.16 신민당의 외교정책안에 나타난 통일방안
  - 남북통일은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를 계속 추진
  - 통일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총리하에 통일부 또는 통일국을 설치하고 대공선전강화, 언론인 교류·시찰, 구호양곡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o 7.26 민주당의 7.29 선거시 국방·외교정책의 쇄신에 나타난 통일방안
  - 유엔감시하에 남북을 통한 자유선거로서 평화통일을 도모
  - 선거이전 남북연합위원회 구성(안) 반대, 통일전 남북교류문제 거부
  - 통일될 한국은 민주주의와 민권자유를 보유하는 국가

o 8.14 북한 김일성의 8.15 경축대회에서의 연설에 언급된 통일방안
  -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는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

-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의 연방제를 제의

o 8.24 정일형 외무부장관의 7개 외교정책설명중의 통일방안
- 유엔결의를 존중하며 한국전역에서 유엔감시하의 자유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의 통일을 이룩

o 10. 3 김용중 재미 한국문제연구소장의 한국중립화안 제안

o 10.22 미국 맨스필드 상원의원의 제안
- 1955년 오스트리아를 중립화하였던 바와 같은 토대위에서 한국통일문제를 해결할 가능성 검토

o 11.11 인도 메논 주 유엔 대표의 언명
- 유엔 테두리를 떠난 중립국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할 예정

o 11.11 유엔 제15차 총회에 제출한 북한의 각서
- 유엔감시하의 총선거에 반대하고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이 제출한 남북연방제를 재확인

1961

o 5. 9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결성후 성명 발표
- 남북협상, 남북간의 경제·문화교류, 인사왕래, 서신교류 등 실천주장
- 만일 남한이 아직은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수락할 수 없다면 과도적 정책으로 연방제를 실시하거나 경제위원회를 조직

o 5.16 「5.16 혁명공약」에 나타난 통일방안
-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의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
- 국토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

o 11.15 박정희 대통령권한대행 및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공동성명에 나타난 통일방안
- 유엔 총회에 의하여 천명되고 재확인된 원칙에 따라 평화적 방법으로 한국의 자유통일을 추구

1963

o 5.15 민정당정강정책중에 나타난 통일방안
- 국력배양에 의한 국토통일

o 6. 4 자유민주당정강정책중에 나타난 통일방안

-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를 원칙

o 7.18 민주당정강정책중에 나타난 통일방안
- 승공을 위한 거국적 태세의 확립과 유엔을 위시한 외교강화에 의한 국토통일

o 9. 3 민주공화당 선거공약중에 나타난 통일방안
- 국토통일은 유엔의 정당한 감시하에 자유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총선거로 성취
-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승공태세를 완비
- 통일정책과 통일후의 시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토통일연구기구를 설치

o 9. 5 국민의 당 정강정책중에 나타난 통일방안
- 국토통일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하고 그 대책을 강구

1964

o 1. 김대중씨의 통일방안
-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 유엔 기타 적십자사의 엄중한 감시하에 남북한 서신왕래

o 1.14 민정당정책기조연설에서 나타난 통일방안
- 정부기구내에서 여야관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통일문제와 북한실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을 설치
- 자유민주주의 원칙하에서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유엔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따라 남북한을 통한 총선거에 의하여 달성

o 1.15 삼민회정책기조연설에서 언급된 통일방안
- 유엔감시하의 자유선거에 의한 국토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공적기관을 설치(삼민회는 민주당, 자유민주당, 국민의 당의 원내교섭단체임)

o 10.27 이만섭 의원외 45인, 남북가족면회소설치 제안(후에 동안을 철회)

1966

o 1.18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언급된 통일방안
- 우리의 지상명령은 바로 조국의 통일임.
  통일의 길이 조국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이 경제자립에 있음.
- 대유엔 정책에 있어서 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본정책에 추호의 변동도 없이 이를 추진할 것임.

o 1.21 민중당의 정책기조연설에서 언급된 통일방안

- 국회안에 통일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에 대한 우리의 부단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제의

o 10.17 외무부발표 통한백서
- 유엔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에 따라 남북 자유선거 실시

1967

o 1.21 민중당의 정책기조 연설에서 언급된 통일정책
- 통일정책 수립에 대한 범국민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본적인 통일방안을 수립
- 정부내에 통일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

o 2. 7 신민당 창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 및 기본정책
- 범국민적 통일기구 구성, 정부내에 전담부서 신설, 통일논의의 자유보장

o 2.27 국회 『통일백서』 채택
- 제60회 임시국회는 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가 작성한 『통일백서』를 채택하여 의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통일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자는 의사를 적극표시

1970

o 8.15 박정희 대통령, 「8.15평화통일구상」 선언
-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고 남북간에 가로 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을 용의 표명과 선의의 경쟁”을 제의

1971

o 8.12 한적 최두선 총재, 남북간의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o 9.20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 개최

o 9.22 남북적십자, 상설 회담연락사무소 설치 및 쌍방 연락사무소를 잇는 남북직통전화 개통

o 9.29 남북적십자 제2차 예비회담

o 10. 6 남북적십자 제3차 예비회담
- 남북적십자 본회담 개최장소 서울·평양으로 합의

o 10.13 남북적십자 제4차 예비회담

o 10.20 남북적십자 제5차 예비회담
o 10.27 남북적십자 제6차 예비회담
o 11. 3 남북적십자 제7차 예비회담
o 11.11 남북적십자 제8차 예비회담
o 11.19 남북적십자 제9차 예비회담
o 11.24 남북적십자 제10차 예비회담
o 12. 3 남북적십자 제11차 예비회담
o 12. 1 남북적십자 제12차 예비회담
o 12.17 남북적십자 제13차 예비회담

1972

o 1.10 남북적십자 제14차 예비회담
o 1.19 남북적십자 제15차 예비회담
o 1.28 남북적십자 제16차 예비회담
o 2. 3 남북적십자 제17차 예비회담
o 2.10 남북적십자 제18차 예비회담
o 2.27 남북적십자 제19차 예비회담
o 6.16 남북적십자 제20차 예비회담
o 7. 4「남북공동성명」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
o 7.10 남북적십자 제21차 예비회담
o 7.14 남북적십자 제22차 예비회담
o 7.19 남북적십자 제23차 예비회담
o 7.26 남북적십자 제24차 예비회담
o 8.11 남북적십자 제25차 예비회담(종결)
o 8.29~9. 2 남북적십자 제1차 본회담(평양)
  - “의제 5개항의 확인채택 및 7·4 공동성명 정신과 적십자원칙에 기초하여 이산가족의 고통을 풀어주고, 통일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
o 9.12~16 남북적십자 제2차 본회담(서울)
  - “의제해결에 민주주의 원칙과 자유로운 원칙, 남북공동성명 정신과 동포애 그리고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
o 10.12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1차회의(판문점 자유의 집)
o 10.23~26 남북적십자 제3차 본회담(평양)
o 11. 2~4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회의(평양)

- 서울측 대표, 김일성 면담

o 11.11 00:00시를 기해 대남·대북 방송중지, 휴전선 확성기 방송중지, 상호 전단살포 중지에 관한 합의 발효

o 11.11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평양측에 통일혁명당 방송중지 요구

o 11.22～24 남북적십자 제4차 본회담(서울)

-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 판문점 공동사업소 설치

o 11.30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3차회의(서울)

o 11.30～12.2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회의(서울)

- 평양측 대표, 박대통령 예방

1973

o 3.14～16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회의(평양)

o 3.20～3.23 남북적십자 제5차 본회담(평양)

o 5. 8～11 남북적십자 제6차 본회담(서울)

o 6.10 북한,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회의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휴전선상의 4개지역서 확성기에 의한 대남방송 일제히 재개

o 6.11 북한, 직통전화를 통해 상호 중상·비방중지를 재제의 서울측, 이를 접수

o 6.12～14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회의(서울)

o 6.23 박정희 대통령,「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o 6.23 김일성,「5대강령」발표

o 7. 5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통일혁명당방송 중지를 평양측에 재촉구

o 7.10～13 남북적십자 제7차 본회담(평양)
한적, 추석성묘단 교환방문을 제의, 북적 거부

o 8.28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공동위원회 김영주, 남북대화 일방적 중단선언

o 8.29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 8.28 김영주 성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동성명의 철회와 대화재개를 촉구하는 반박 성명 발표

o 12. 5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부위원장회의(10:00～12:30) : 서울측, 제2차 부위원장회의 일자를 12.12로 제의(판문점 판문각)

o 12.19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부위원장회의(판문점 자유의집)

1974

o 1.18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남북한의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 제의

- o 1.30 남북조절위 부위원장회의(제3차, 판문점 판문각)
- o 2.27 남북조절위 제4차 부위원장회의(판문점 자유의 집)
- o 3.27 남북조절위 제5차 부위원장회의(판문점 판문각)
  - 서해 어선사건문제와 조절위 확대개편문제 논의 반복
- o 4.24 남북조절위 제6차 부위원장회의(판문점 자유의 집)
  - 남북조절위원회 정상화문제와 어선사건문제 논의 반복
- o 6.28 남북조절위 제7차 부위원장회의(판문점 판문각)
  - 서울측 : 동해 공해상의 우리측 경비정 격침사건에 대한 엄중한 경고
  - 평양측 : 동해 경비정사건을 자위권 발동이라고 주장
- o 8.15 박정희 대통령 광복절 제29주년 경축사에서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제시
  ① 남북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② 남북대화 성실 진행
  ③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 실시
- o 8.15 8.15 대통령저격사건 발생
- o 9.21 남북조절위 제8차 부위원장회의(판문점 자유의 집)
- o 11.15 비무장지대 남방지역 지하에서 북측이 구축한 「땅굴」 발견(고랑포)

1975

- o 1. 8 남북조절위 제9차 부위원장회의(판문각)
- o 1.14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다음 사항의 수락을 촉구
  ①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
  ② 휴전협정 효력존속 전제하의 유엔군사령부 해체
  ③ 남북한 동시유엔 가입 또는 대한민국의 단독유엔 가입 불반대
  ④ 남북대화의 즉각 정상화
- o 3.14 남북조절위 제10차 부위원장회의(판문점 자유의 집)
- o 3.24 철원동북방 1.3km휴전선 비무장지대내 50m지하에서 제2의 남침땅굴발견
- o 7. 3 남북조절위 평양측 공동위원장 성명
  ① 6.23선언은 민족분열선언이고 대화파기선언
  ② 대한민국이 반공정책 견지하는 한 남북대화는 불필요
  ③ 현 한국정부는 교체되어야 함.
  ④「대민족회의」개최
- o 7. 4 박정희 대통령 7.4남북공동성명 발표 3주년에 즈음한 특별담화 발표

① 북한은 침략전쟁준비를 중지
② 북한은 일체의 대남간첩침략행위 및 국제사회에서 동족을 헐뜯는 민족자해 행위를 중지
③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의 운영 정상화

o 7. 9 남북조절위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 성명
① 남북조절위원회 제4차 평양회담 8월15일 이전 무조건 개최 촉구
② 조절위 확대·개편을 포함하여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재개되는 조절위원회에서 토의할 것을 제의

1976

o 5 .13 한국 외무부장관 성명
① 한반도문제에 관한 당사자간 대화 촉구
② 당사자 합의없는 해결방법(「미·북한 평화협정」주장 등)은 민족자결원칙에 위배됨을 지적
③ 북측의 휴전협정체제 와해기도 경고

o 5.25 북한, 휴전선(중부지역) 확성기방송 재개

o 7. 3 남북조절위 평양측,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과 연합성명 : 「대민족회의」개최 주장

o 8.15 박정희 대통령 8·15 경축사
- "남북대화 무조건 재개 및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 정상화" 촉구

o 8.18 북한, 판문점 도끼살인만행 자행

o 8.21 김일성, 8.18사건에 대한 「유감」표명메시지 유엔군사령관에 전달

o 8.30 북한,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간의 남·북직통전화의 신호호출에 응답치 않음으로써 직통전화의 운용을 중단

1977

o 1.12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 식량원조 제공용의 표명 및 불가침협정 체결 촉구

o 1.25 북한,「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

o 10.19 박정희 대통령, 프랑스 「르·몽드」지 주필과 회견을 통해 「평화통일 기본원칙 천명」
① 남북한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
② 상호 문호개방, 교류협력 실천

③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총선거

1978

- o 1.18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통일정책의 기본방침은 「선평화, 후통일」임을 천명하고 대화를 통한 교류확대와 문호개방 촉구
- o 6.23 박정희 대통령, 「6·23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 5주년 특별담화
  - 민간경제협력촉진 협의기구 구성을 북한측에 제의
- o 8.15 박정희 대통령, 광복절 제33주년 경축사
  - 남북대화의 무조건재개와 남북간의 경제협력촉진을 위한 우리측 노력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
- o 10.27 판문점에서 북한의 제3남침 땅굴 발견

1979

- o 1.19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남북한당국이 어떤 시기, 어떤 장소, 어떤 수준에서든 전체조건없이 만나 모든 분야의 문제에 관해 논의할 것"을 제의
- o 1.31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성명
- o 2. 1 10:00를 기해 북한전역에서 비방중상행위 중지
- o 2. 5 북한,「조국전선」 중앙위 서기국 성명
  - 남북조절위원회 대신,「민족통일준비위원회」발족 제의
- o 2.12 정부대변인 기자회견
  - 북한의「조국전선」을 책임있는 당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당국간 대화」를 요구하는 입장은 불변임을 강조
- o 2.20 북한 체육지도위 위원장 김유순, 탁구협회 회장 김득준 명의 서한
  - 남북한 탁구단일팀 구성문제 제의
- o 2.27 남북 탁구협회 회의(제1차)
- o 3. 5 남북 탁구협회 회의(제2차)
- o 3. 9 남북 탁구협회 회의(제3차)
- o 3.12 남북 탁구협회 회의(제4차)
- o 7. 1 한미공동성명 :「남·북·미국 3당국회의」 제의
- o 12.20 북한올림픽위, 대한체육회장에게 모스크바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해 80.1.17 회담을 가질 것을 방송으로 제의
- o 12.21 최규하 대통령 취임사

- “북한측에 남북조절위, 남북적십자회담, 책임있는 당국간회담, 3당국회의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

1980

- o 1. 11 남북조절위 서울측, 대한체육회장의 서한을 북측에 전달
  - 북측의 제의는 성과기대가 어려우며 남북 친선교환경기를 제의함
  - 금년 서울개최 국제경기에 북측의 참가를 환영함
  - 모스크바 올림픽후 전반적 체육교류문제를 위한 회담을 제의
- o 1.24 남북조절위 서울측,「남북 총리회담」제의
- o 2. 6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제1차 남북실무대표접촉(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o 2. 7 남북직통전화 재개통(10:08)
- o 2.19 제2차 남북실무대표 접촉(판문각)
- o 3. 4 제3차 남북실무대표 접촉(자유의 집)
- o 3.18 제4차 남북실무대표 접촉(판문각)
- o 4. 1 제5차 남북실무대표 접촉(자유의 집)
- o 4.18 제6차 남북실무대표 접촉(판문각)
- o 5. 6 제7차 남북실무대표 접촉(자유의 집)
- o 5.22 제8차 남북실무대표 접촉(판문각)
- o 6.19 한국측 판문점지역내 남북한 총리회담장 건물 준공
- o 6.24 제9차 남북실무대표 접촉(자유의 집)
- o 8.20 제10차 남북실무대표 접촉(판문각)
- o 9. 4 북한측, 9월4일 오후 5시부터 휴전선 11개 지역에서 확성기를 통한 대남비방방송 개시
- o 9.24 남북측 실무대표단, 성명을 통해 9월 26일 예정이던 제11차 실무대표접촉에 불참하겠다고 발표, 실무대표 접촉을 일방적으로 중단
- o 9.25 북한측 남북직통전화 운용 중단

1981

- o 1.12 전두환대통령,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
- o 1.14 이범석 국토통일원 장관 대북성명,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실현절차 협의를 위한 접촉제의
- o 1.19 북한 김일 명의 성명발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 제의 거부
- o 6.19 대한체육회장 성명,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것과 남북체육인 회담제의

o 11.16 문공부장관 대북제의, 고고학 자료 유물 교류 연구

1982

- o 1.22 전두환대통령,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제의
- o 1.26 북한 김일 명의 성명,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거부
- o 2. 1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
  - 20개 시범실천사업 제의
- o 2.10 북한측, 「남북정치인연합회의」 제의
- o 2.25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 남북한 고위대표회담 제의
- o 8.15 전두환대통령, 광복절 37주년 경축사
  -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 거주동포 자유왕래" 천명

1983

- o 1.18 전두환대통령, 정상회담의 4대 당면과제 제시
- o 1.18 북한, 「남북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제의
- o 2. 1 손재식 국토통일원장관,「남북한당국 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제의
- o 6. 1 전두환대통령, 서울 IPU총회 북한대표 참석제의

1984

- o 3.30 북한, 남북체육회담 제의
- o 4. 2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장, 남북체육회담 수락
- o 4. 9 제1차 남북체육회담
- o 4.30 제2차 남북체육회담
- o 5. 4 사마란치 IOC위원장, IOC중재하「로잔느」남북체육회담 개최 제의
- o 5.25 제3차 남북체육회담
- o 6. 2 북한,「로스엔젤레스」올림픽 불참 발표
- o 8.20 전두환대통령, 하계 기자회견 : 남북한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제의, 대북 기술·물자무상제공 용의 표명
- o 9. 8 북한, 대남수재물자 제공 제의
- o 9.14 한적총재, 수재물자제공 제의 수락 및 실무접촉 제의
- o 9.18 수재물자 인도·인수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 북한측이 수재물자를 수재민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고집하다가 일방

적으로 퇴장함으로써 유산

- o 9.18 한적총재, 9월중순 수재물자 완전 인도 촉구
- o 9.19 북한, 수재물자를 판문점, 인천항, 북평항을 통해 수송할 것임을 통보
- o 9.29 한적, 북적 수재물자 전달인원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각서 전달
- o 9.29~10.4 판문점, 인천항, 북평항에서 북적 수재물자 인도·인수
  - 쌀 5만석, 천 50만m, 시멘트 10만톤, 의약품 14종 등
- o 10.13 경제 4단체장, 남북경제회담 수락 촉구
- o 10.16 북한 부총리, 남북경제회담 개최제의 수락
- o 11.15 제1차 남북경제회담
- o 11.20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예비접촉

1985

- o 1. 9 전두환 대통령,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제의
- o 1. 9 북적 중앙위원장, 「'85 팀스피리트(T/S)」 훈련을 구실로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연기
- o 1. 9 북한 부총리, 「'85 T/S」훈련을 구실로 제2차 남북경제회담의 연기를 통보하고 남북 부총리 접촉 제의
- o 2. 1 사마란치 IOC위원장, 남북한 NOC에 IOC 주재하 남북 NOC간 회담개최(9.11-12, 로잔느)제의
- o 3.13 대한올림픽위원회, IOC위원장의 「로잔느」체육회담 제의에 동의
- o 4. 9 북한 최고인민회의, 남북국회회담 개최 제의
- o 4. 9 북한 최고인민회의(제7기 4차),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 채택
  - 남북 「국회회담」 개최 제의를 국회의장 및 3당 총재들에게 발송
- o 5.17 제2차 남북경제회담
- o 5.27~30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서울)
- o 6.20 제3차 남북경제회담
  - 「남북간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 추진과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기구 설치에 관한 합의서」채택키로 합의
- o 7. 6 북한, IOC주재하 「로잔느」남북체육회담 수락
- o 7.15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관련 제1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 o 7.19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관련 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 o 7.23 남북국회회담 제1차 예비접촉
- o 7.30 북한 부총리, 88 서울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주최 및 남북한 단일팀 출전주장
- o 8.22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관련 제3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 o 8.26～29 제9차 남북적십자 본회담(평양)
- o 9.18 제4차 남북경제회담
- o 9.20～23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서울·평양 동시교환 방문
  - 상봉가족 : 65가족 92명
- o 9.25 남북국회회담 제2차 예비접촉
- o 10. 8～9 IOC주재 제1차「로잔느」남북체육회담
  - 대표단 구성 : 남북한 대표 각 6명, IOC대표 6명
- o 11.20 제5차 남북경제회담
- o 12. 2～5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서울)
  - 제11차 회담 : 86.2.26(수) 평양에서 개최 합의

1986

- o 1. 1 김일성신년사, 최고위급 정치회담 개최 시사
- o 1. 8～9 제2차「로잔느」남북체육회담
- o 1.11 북한 외교부 성명 : '86.2.1부터 북한 전지역에서 군사훈련 중지용의 표명, 한국측의 상응한 조치 기대
- o 1.18 한미연합사,「'86 T/S 훈련」계획(86.2.10～4월중순) 발표
- o 1.20 북한측 회담대표단(경제·적십자·국회) 공동성명 :「'86 T/S」훈련을 이유로 모든 남북회담을 연기
- o 1.20 한국측 남북회담 대표단(국회·경제·적십자) 수석대표 합동성명
  - 예정된 남북회담 개최를 촉구
- o 4. 3 제1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 방위능력 향상을 위해「팀스피리트」훈련 계속실시
- o 4. 6 북한외교부 성명,「팀스피리트」훈련의 계속실시는 남북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선포
- o 5.13 북한 사노청위원장, 남북학생회담개최 용의 시사
- o 6.10～11 제3차「로잔느」남북체육회담
- o 6.21 북한 올림픽위원회 김득준 부위원장, 88올림픽 공동주최 요구 담화

- o 6.23 북한 정무원 성명, 한반도 비핵·평화지대 창설 협상제의
- o 6.24 이기백 국방부장관 대북서한
  - 기존의 남북대화 재개희망 및 군정위에서 제의한 바 있는 4대 신뢰구축방안 토의에 호응 기대,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호응 촉구
- o 10.21 북한 방송보도, 금강산 발전소 착공식 진행
- o 10.30 이규효 건설부장관 대북성명, 금강산 발전소 건설계획 중지 촉구
- o 11. 4 북한전력공업위원회 자원개발국장, 금강산 발전소 건설관련 담화
- o 11. 6 이기백 국방부장관 대북성명
  - 금강산댐 건설관련 군사전략적 자위조치 강구
- o 11.28 이규효 건설부장관, 대북서한 통해 남북수자원 당국회담 제의
- o 12.25 북한 전력공업위원회 부위원장 기자회견, 금강산발전소 건설내역 백서 발표
- o 12.30 김일성,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고위급 정치·군사 회담개최 시사

1987

- o 1.12 전두환대통령 국정연설 :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 호응촉구
- o 3.17 국무총리·국방부장관,「남북총리회담 개최」제의
- o 3.30 북한 정무원 총리, 총리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회담 제의
- o 4.24 북한정무원 대변인성명,남북대화 재개거부 및 남측에 책임전가
- o 5. 7 북한올림픽위원회 대변인성명, 88서울올림픽 공동주최 주장
- o 5. 7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팀스피리트」훈련 계속 실시 및 북한측 참관 초청
- o 7.23 북한 정부성명, 한반도에서의 단계별 군축실현을 위한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
- o 8. 3 한국 외무부,「남북한 외무장관회담 개최」제의
- o 8. 6 북한 외교부대변인,「남·북한·미국 3자 외무장관회담」제의

1988

- o 1. 1 김일성, 남북연석회의 소집제의
- o 1.12 북한올림픽위원회 성명, 88서울올림픽 불참선언
- o 1.15 이웅희 정부대변인 성명, KAL기 사건 사과 및 대화분위기 조성촉구
- o 1.19 박세직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기자회견을 통하여 서울올림픽에 대한 북

한 참가문제는 계속 문호를 개방한다고 표명

o 2.25 노태우 대통령 취임사
-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재결합을 위한 대화문호 개방

o 3. 1 노태우 대통령 3·1절 기념사, 서울 올림픽에 북한동포 참여환영 표명

o 3.29 서울대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김일성대학 청년학생들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하여 남북학생회담 제의

o 4. 4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 「서울대 총학생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남북학생회담에 찬동
- 판문점 개최 제의

o 4. 7 북한 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남한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하여 KNCC선언지지 및 연대투쟁 표명

o 4.21 노태우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협력시대 개막」 선언

o 5.27 김일성, 체코공산당총비서 환영연회 연설에서 남북간 쌍무적·다무적 접촉과 회담 및 서울올림픽 공동주최 주장

o 6. 9 이홍구 국토통일원장관 성명 : 남북고위당국자회담에서 학생교류문제 우선적 협의 용의 표명

o 6.10 최광수 외무부장관, 제3차 유엔 군축특별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군축 3단계접근방안 제시

o 6.10 남북학생회담 북측 대표단장 성명, 남북학생회담 실현투쟁 선동

o 7. 4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 남북학생교류의 성사 위해 쌍방 당국간 대화 촉구

o 7. 7 노태우 대통령,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에 관한 특별선언」 발표

o 7. 9 국회 제142회 임시국회 제20차 본회의에서 「서울올림픽대회 북한참가 촉구 결의문」 채택

o 7.11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7·7 특별선언」 비방

o 7.15 김영식 문교부장관, 방송보도로 남북학생교류 실현을 위한 남북교육당국회담 제의

o 7.16 최광수 외무부장관, 7·7특별선언 관련 외교시책 발표

o 7.19 최광수 외무부장관, 해외동포의 남북한 방문을 자유화하고 남북한방문 해외동포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남북한 관계당국회담 제의

o 7.21 북한최고인민회의 양형섭 상설회의 의장, “불가침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연석회의 개최” 제의

- o 8. 1 김재순 국회의장, 남북국회회담을 8월중에 성사시키기 위한 준비접촉 개최 제의
- o 8.15 노태우 대통령, 제4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정상회담 제의
- o 8.17 북한최고인민회의 양형섭 상설회의 의장,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일자 수락
- o 8.19 남북국회회담 제1차 준비접촉
- o 8.20 남북국회회담 제2차 준비접촉
- o 8.22 남북국회회담 제3차 준비접촉
- o 8.24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쌍방 수석 대표단 단독접촉
- o 8.26 남북국회회담 제4차 준비접촉
- o 9. 3 정한모 문공부장관, 북한 및 공산권 자료 대폭공개 결정 발표
- o 9. 8 김일성 「9·9절」 40주년 기념사, 전제조건하의 남북정상회담문제 언급
- o 10. 4 나웅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7·7특별선언」경제분야 후속조치 발표
- o 10.13 남북국회회담 제5차 준비접촉
- o 10.18 노태우 대통령, 유엔총회 본회의 연설,「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길」
  -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시 건설 제의
  - 남북정상회담 재제의
  - 「동북아 평화협의회의」제의
- o 11.17 남북국회회담 제6차 준비접촉
- o 12. 6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 슐츠 미국무장관에게 서한
  - 남북한, 미국 3자회담 제의
- o 12.21 북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유순,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 제의
- o 12.29 남북국회회담 제7차 준비접촉

1989

- o 1. 1 김일성, 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
- o 1.24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촉구
  - 4,346명의 이산가족찾기 의뢰인 명부 동봉
- o 2. 8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
- o 3. 2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
- o 3. 9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위한 제1차 남북체육회담

o 3.28 제2차 남북체육회담
o 3.31 통일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설치
o 5.30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손성필,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을 위한 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제의 대남서한
o 9.11 노태우대통령, 제147회 정기국회 연설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천명
o 9.27 제1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o 10. 3 북한, 남한 당국과 정당·단체들에 보내는 대남 공개서한에서 민족통일협상회의 소집 제의
o 10. 6 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o 10. 8 노태우대통령, 미국의회 양원합동회의 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촉구
o 10.16 제3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o 10.20 제3차 남북체육회담
o 10.25 남북국회회담 제8차 준비접촉
o 11. 8 제4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o 11.13 제5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o 11.15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4차 예비회담
o 11.16 제4차 남북체육회담
o 11.21 제6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o 11.24 제5차 남북체육회담
o 11.27 제7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o 12. 1 남북체육회담 제1차 실무대표 접촉
o 12. 4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수석대표 개별접촉
o 12. 6 남북체육회담 제2차 실무대표접촉
o 12.15 남북체육회담 제3차 실무대표접촉
o 12.20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5차 예비회담
o 12.22 제6차 남북체육회담

1990

o 1. 1 노태우대통령 신년사, 남북당국 특히 최고책임자간의 회담 제의
o 1. 1 김일성, 신년사에서 남북당국·정당수뇌들의 협상회의 소집 제의
o 1.10 남북체육회담 제4차 실무대표접촉
o 1.15 남북체육회담 제5차 실무대표접촉

- o 1.17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형섭, IPU총회 남북 단일대표단 구성・참가 제의
- o 1.18 제7차 남북체육회담
- o 1.19 김재순 국회의장, IPU총회 단일대표단 구성 불필요 및 남북국회회담 성사노력 촉구 성명
- o 1.22 남북체육회담 제6차 실무대표접촉
- o 1.23 남북회담 북측대표단, 당국・정당수뇌 협상회의 호응촉구 및 「콘크리트 장벽」철거 주장 연합성명
- o 1.24 남북국회회담 제10차 준비접촉
- o 1.29 제8차 남북체육회담
- o 1.31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6차 예비회담
- o 2. 1 강영훈 국무총리, 대북서한을 통해 남북 당국・정당수뇌급 협상회의의 비현실성 지적 및 남북정상회담 개최 호응 촉구
- o 2. 7 제9차 남북체육회담
- o 2. 8 남북회담 북측대표단,「팀스피리트」기간중 남북대화 중단 연합성명
- o 2.19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병수, 「콘크리트 장벽」참관단 초청제의 대남 전통
- o 2.21 국토통일원 대변인, 「콘크리트 장벽」관련 정치선전 행위 중지촉구 성명
- o 3. 1 노태우대통령 3.1절 기념사, 남북한 경제협력 즉각협의 촉구
- o 3. 3 국방부, 북한의 제4남침용 땅굴발견 발표
- o 3.22 북한 정부・정당대표 협의회, 남북 당국・정당수뇌 협상회의 호응촉구 및 「콘크리트 장벽」공동조사 위한 실무접촉제의 대남서한
- o 3.28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 한필성씨 노모 상봉 협조요청 대북서한(한필성씨 편지 동봉)
- o 4. 7 강영훈 국무총리, 「콘크리트 장벽」공동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의 조속개최를 촉구하는 대북서한 발송
- o 4.20「북적」이성호,「한적」총재에 전통문
  - 한필성씨와 그의 가족 평양방문 환영 및 편의 제공
- o 4.30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 한필성씨 귀환 보장 촉구「북적」이성호에 전통문
- o 5.17「한적」김상협 총재,「북적」이성호에 한필성씨 서한 전달, 평양방문의 원만한 성사 희망
- o 5.31 북한 중앙인민위 최고인민회의・정무원 연합회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채택

o 7. 5 「조평통」 남북한간 접촉과 왕래를 위한 기본 3개원칙 발표
①통일문제 해결과의 결부
②정당・단체・각 계층 인민들의 동등한 참여
③법률적・사회적 조건에 의한 제한 철폐

o 7. 6 남북고위급회담 제1차 실무대표접촉

o 7.12 남북고위급회담 제2차 실무대표접촉

o 7.17 북한 전금철,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무기연기 대남 전통문

o 7.20 노태우 대통령, 특별발표를 통해 「8・15 민족대교류」 실현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 대북 전통문

o 7.20 북한 「조평통」, 「민족대교류」 특별발표 관련 비난 성명

o 7.26 남북고위급회담 제8차 예비회담, 고위급회담 개최합의서 서명・교환

o 8. 7 「범민족대회」 제3차 평양예비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 「범민족대회」는 당초 계획대로 8월15일 판문점에서 거행
- 대회장소・의제・참가자격 등은 제1・2차 에비회의에서 합의한대로 확정

o 8.15 노태우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군비통제 등의 문제를 「고위급회담」에서 논의하자고 제의

o 8.16 북한, 대성산 유원지에서 범민족대회 참가자들의 연환모임 개최

o 8.16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임진각에서 90 통일염원 미사 개최

o 9. 4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서울 개최

o 9.18 북한, 「유엔가입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실무대표접촉」에서 유엔 남북한 단일의석 가입 공동신청 주장

o 9.18 북한 올림픽위원회 김유순 위원장, 제11차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서 91년 일본에서 열리는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와 92년 바로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올림픽에 남북단일팀 구성문제 협의 제의

o 10.14 「범민족통일음악회」참가 서울전통음악연주단, 판문점을 통해 입북

o 10.16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평양 개최

o 10.21 남북통일축구 북측대표단, 판문점을 통해 서울 도착

o 10.24 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 서울전통음악연주단, 판문점을 통해 귀경

o 11. 9 정부, 남북교류협력에관한시행규칙(총리령) 공포

o 11.12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11.19 베를린 남・북・해외동포 3자회담 대표 3명 파견 발표(이해학, 조용술, 조성우)

o 11.14 황병기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대표,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에 북한음악인 공식초청
o 11.14 정부,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가 제출한 베를린 3자회담 참석 위한 북한 주민접촉 신청불허
o 11.14 북한「문예총」대변인, 남한「예총」의 예술·문화교류 창구단일화 제의 거부 성명
o 11.20「범민족통일운동기구」결성 위한 베를린 3자회담
  - '91.8.15 서울 범민족대회 개최, 유엔 분리가입 반대편지 유엔 사무총장에게 발송 등 합의
o 12. 6 대법원, 북한주민의 대한민국국적취득허용법규 제정,「미수복 지구 거주자 및 공산국가 교포의 취적에 관한 예규」
o 12. 8 평양민족음악단, '90송년통일전통음악회 참가위해 판문점 통해 입경
o 12.11~14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서울)
o 12.13 평양민족음악단, 판문점 통해 평양 귀환

1991

o 1. 1 북한 김일성 신년사,「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소집 제의
o 1.30 주북경 한국무역대표부 설치
o 2.12 제4차 남북체육회담,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에 합의
o 3.25~5.9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o 5. 6~6.28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o 5.27 북한 외교부, 유엔가입결정 성명발표
o 7.30 북한 외교부, 한반도 비핵지대화 공동선언 채택 제의 성명발표
o 9. 7~12 외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평양「77그룹 아주그룹 각료회의」에 참석
o 9.17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o 10. 4~13 김일성, 중국 방문
o 10.22~25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평양)
  - 남북 기본합의서 명칭, 내용구성체계 등 합의
o 11. 8 노태우 대통령,「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o 11.25~29「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서울개최
o 12.10~13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서울)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o 12.16「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국무회의에서 의결

o 12.18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한 발표문」을 통해 "이시각 우리나라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

o 12.24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지지 및 김정일을 군최고사령관으로 추대

o 12.26 북한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승인

1992

o 1. 1 노태우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1992년을 한민족공동체 실현의 원년이 되도록 노력" 천명

o 1. 1 김일성 신년사 발표

o 1. 7 국방부,「'92 T/S훈련」 중단 발표

o 1.16~26 김우중 대우그룹회장 방북, 김일성 면담

o 1.23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국무회의에서 의결

o 1.30 북한,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 체결

o 1.30~2.1 제6차 일·북한 국교정상화 회담(북경)

o 2. 5 북한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승인

o 2.18~21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평양)

-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발효

o 4.1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김일성 주석에게 「대원수」 칭호 수여

o 5. 5~8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서울)

- 남북연락사무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 합의

o 5.10 북한 외교부 대변인, 남북핵사찰 관련 담화 발표

- 주한미군의 핵무기, 핵기지에 대한 전면 사찰을 주장

o 5.11~16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일행 북한 방문

o 5.13~15 제7차 일·북한 수교회담(북경)

- o 5.18 「군사」,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 구성 및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운영개시
- o 5.25~6.5 IAEA, 북한 핵에 대한 제1차 임시사찰 실시
- o 6. 1 북한적십자회, 이인모 송환 촉구 성명 발표
- o 6. 5 제1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 o 6.12 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 o 6.15~19 IAEA관리이사회 개최, 남북 상호핵사찰 실시 촉구
- o 6.16~17 미·러 정상, 「한반도 핵문제 관련 공동선언」발표(워싱턴)
  - 남북 상호핵사찰 이행 촉구
- o 6.16~17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남북회의(파리), 「한글 로마자 표기안」 합의
- o 6.25 북한 노동신문 사설, 6.25 42주년 맞아 대미관계개선 강조
- o 6.26 북한 외교부 대변인, 핵사찰 관련 성명
  - 주한미군의 핵무기·핵기지에 대한 전면 사찰을 주장
- o 7. 7~21 IAEA, 북한 핵에 대한 제2차 임시사찰
- o 7.10 IAEA-북한, 핵사찰 「보조약정서」 체결
- o 7.15 북한, 화폐교환 단행
- o 7.19~25 북한 김달현 부총리, 최각규 부총리 초청으로 서울 방문
  - 대우자동차, 포항제철 등 산업시찰
  - 대통령 면담(7.24)
- o 8.15 노태우 대통령, 제47회 광복절 경축사
  - 핵개발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발전기대 불가
  -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교환사업 불이행에 대한 유감표명 및 고향방문사업 정례화 촉구
- o 8.24 한·중 수교
  - 한국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중국 전기침 외교부장, 한·중사이에 대사급 국교 수립
- o 8.26 한국·러시아 기본조약 가서명
  - 노창희 외무부차관과 알랙산드르 파노프 주한 러시아대사 사이에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가서명
- o 8.31~9.12 IAEA, 북한 핵에 대한 제3차 임시사찰 실시
- o 9. 1~6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 토론회(평양)
- o 9.17~18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평양)

- 분야별 3개 부속합의서 채택·발효 및 화해 공동위원회 구성 합의

o 10. 6~9 남포 조사단 방북

o 10.14 북한, 대만에 무역사무소 개설

o 11. 3 북한, 화해·군사·경제·사회문화 공동위원장 연합성명

- 11월중 개최될 예정인 분야별 공동위원회 제1차회의 거부

o 11. 3~14 IAEA, 북한에 대한 제4차 임시핵사찰

o 12.1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4차회의 개최

- 연형묵 총리 경질, 후임에 강성산 임명

o 12.12 북한, 4개 공동위원장연합 대남전통문

-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거부

o 12.14~20 IAEA, 북한핵에 대한 제5차 임시사찰

o 12.17 핵통제공동위원회 제13차 회의

1993

o 1.26 남북연락사무소 손인교 소장 대북전통문

- T/S '93 야외 기동훈련 실시 통보 및 북한측 참관 초청

o 1.26~2.6 IAEA, 북한핵에 대한 제6차 임시사찰

o 2. 2 고위급회담 공로명 대변인, 북한측의 대화거부 관련 대북성명

- 동결상태에 빠진 남북 당국간 대화 즉각 정상화 촉구

o 2. 9 IAEA, 북한에 대해 특별핵사찰 수용촉구 서한 발송

o 2.15 손성필 주러시아 북한대사, 「IAEA 특별사찰」 거부의사 표명

o 2.16 IAEA, 북한 핵시설 특별사찰관련 성명 발표

- 북한이 제출한 핵시설 및 핵물질 재고에 관한 신고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

o 3.11 정부, 이인모 방북허용 관련 공식입장 발표

o 3.12 북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성명

o 3.12 정부 대변인, 북한 NPT 탈퇴 관련 성명 발표

- NPT탈퇴를 즉각 철회하고 남북상호사찰 조속 촉구

o 3.19 이인모 노인, 판문점 중감위회의실을 통해 방북

o 4. 7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 개막

-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및 4대 요구조건」 채택

o 5.25 강성산 북한 정무원총리 대남서한

- 최고당국자들이 임명하는 특사교환(5.31) 제의

- o 5.29 황인성 남북고위급회담 한국측 수석대표 대북전통문
  - 핵문제 해결 및 남북한 현안문제와 북한측이 새롭게 제기한 문제협의를 위한 대표접촉(6.5) 제의
- o 6. 2 미·북 제1단계 제1차 고위급회담(뉴욕)
  - 갈루치 미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
- o 6. 2 황인성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대북전통문
  - 핵문제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문제와 특사교환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 대표접촉(6.5) 제의
- o 6. 4 미·북한 제1단계 제2차 고위급회담
- o 6.10 미·북한 제1단계 제3차 고위급회담
- o 6.11 미·북한, 북한 NPT탈퇴보류 관련 공동성명 발표
- o 7. 6 김영삼 대통령, 제6기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3단계통일방안과 통일정책 3대기조」천명
- o 7.14 미·북한 제2단계 제1차 고위급회담(주 제네바 미대표부)
- o 7.16 미·북한 제2단계 제2차 고위급회담
- o 7.19 미·북한 제2단계 제3차 고위급회담
- o 8. 3~10 IAEA 북한핵 사찰단 방북
- o 8,15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북인간띠잇기 대회 개최(독립문-임진각)
- o 8.15 김영삼 대통령 제48주년 광복절 경축사
  - 북한에 핵무기 개발 의혹 해소 촉구
- o 8.26 IAEA, 북한과의 핵사찰 협상재개 공식 발표
  - 8.31~9.4까지 평양에서 협상재개 예정
- o 9.17~24 '93 세계한민족축전
- o 9.27~10.1 제37차 IAEA 총회 개최
  - 대북한 결의문 채택(10.1)
- o 10. 5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1차 실무대표접촉(판문점 통일각)
- o 10.15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2차 실무대표 접촉(판문점 평화의 집)
- o 10.24~25 동아시아경기대회 협의회 제7차 회의(평양)
  - 체육계 인사 등 6명 방북
- o 10.25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3차 실무대표 접촉(판문점 통일각)
- o 11. 1 제48차 유엔총회,핵사찰 수용촉구 대북결의안 채택
  - 찬성 140국, 반대 1국(북한), 기권 9국(중국, 쿠바 등)
- o 11. 7~8 일본의 전후 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평양)

-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인사 2명 방북

o 11. 8～10 두만강지역개발계획 제2차 산업・자원・환경분야 전문가회의(서울)
-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3명 참가
- 참가국 :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UNDP

o 11.11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발족
- 정계・법조계・종교계・언론계 인사 170여명으로 구성(이사장:박형규, 고문:김관석, 김명윤)

o 11.24～1994.1.4 미・북한 뉴욕실무접촉(7회) 개최

1994

o 1.14 미국・러시아 정상회담,「모스크바선언」 채택
- 북한의 국제핵사찰 수용 및 NPT가입국에 대해 NPT 무기한 연장 촉구

o 1.27～2.1 빌리 그레함 목사 방북
- 북한 핵 관련 클린턴 대통령의 구두메시지 전달
(귀환후 클린턴 대통령에게 김일성 메시지 전달)

o 2. 1 미상원, 북한 핵문제 관련 대북제재 촉구 결의안 채택

o 1. 7～2.15 IAEA - 북한, 사찰협상(7회) 개최
- 북한은 제7차 협상에서 영변 7개 사찰대상 시설에 대한 사찰 수용(2.15)

o 2.22～25 미・북 뉴욕실무접촉 개최
- '94.3.1「4개항 동시조치」 시행에 관한 합의문 발표 합의

o 2.23 IAEA 정기이사회, 북한 핵문제 토의 결과에 대한「의장요약」 발표
- 영변의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합의가 핵안전협정의 전면적 준수 등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단계에 불과
- '94.2.15 IAEA-북한간 사찰관련 합의에 대한 북한의 후속적 협조노력 촉구

o 2.25 김영삼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경제공동개발용의 표명

o 3. 3 한국 국방부,「94 T/S훈련」 조건부 중단 발표
- IAEA 사찰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남북특사 교환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아래 '94 T/S훈련 중단을 결정

o 3. 3～14 IAEA사찰단, 북한 7개 신고핵시설에 대한 사찰

o 3.17 외무부 대변인, IAEA 북한 핵사찰 관련 성명

- 미·북 3단계회담 개최이전에 북한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남북간 특사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재확인

o 3.21 IAEA 특별이사회, 북한 핵문제의 UN 안보리 회부 관련 대북결의안 채택
- 북한이 IAEA사찰단의 「필수적 활동」을 허용치 않음으로써 북한내 핵물질이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 장치에 전용되지 않았음을 검증하기 불가능해 졌다고 결론
- 동 특별이사회 결의를 UN안보리와 UN총회에 송부키로 결정

o 3.23 국회 외무통일위, 북한 핵사찰 수용 촉구 결의안 채택

o 3.24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 북한 핵사찰 결과 안보리 보고
- 사찰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6주후 재사찰 필요

o 3.24 카라신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8자회담」 제의 성명

o 3.25 정부, 러시아 「8자회담」 제의 거부

o 3.28 한·중 정상회담 개최(북경)

o 3.31 UN안보리, 북한 핵문제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 북한에 대해 IAEA사찰단이 '94.2.15. IAEA-북한간 합의한 사찰활동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남북대화의 재개를 촉구

o 4.11 북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관철을 위한 「정부·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 개최 및 「8.15 민족대회」 개최 제의 대남 편지 채택

o 4.15 정부, 「4.15 조치」 발표
- 특사교환 불추진 및 북한 벌목공 망명 허용 결정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입각한 남북상호사찰이 필수적

o 5. 3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군정위 일방 철수(4.28) 관련 성명
- 정전협정 제61항의 위반이며,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위배

o 5.17 IAEA 사찰단, 북핵 사찰 활동 시작(5.18~24)
-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추가사찰과 5MW원자로 연료봉 교체시작 여부 확인

o 5.24 북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설치 통보

o 5.30 UN안보리, 북한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 관련 「의장성명」 채택
- 연료 계측의 기술적 가능성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5MW원자로 연료봉 교체작업을 실시할 것

o 6.10 IAEA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 찬성28, 반대1(리비아), 기권4(중국, 인도, 레바논, 시리아)
o 6.13 북한 외교부 대변인, IAEA 탈퇴 성명
  -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 IAEA 탈퇴 결정 미국에 공식 통보
o 6.15 지미카터 미국 전대통령, 판문점 통해 방북(6.15～18)
o 6.16 김일성・카터 회담
  - 김일성, 핵개발 동결 용의 표명
o 6.17 김일성, 카터 2차회담
  - 김일성,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 경주
o 6.18 김영삼 대통령,「남북정상회담」개최 제의 수락
  - 카터 전달 김일성제의 즉각 수락
o 6.20 이영덕 국무총리,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제의 대북전통문
o 6.22 북한 강성산 총리, 예비접촉 제의 수락 대남전통문
o 6.28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개최(판문점 평화의 집)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채택('94.7.25～27, 평양개최)
o 7. 1 정상회담 실무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제1차 대표접촉(통일각)
o 7. 2 정상회담 실무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제2차 대표접촉(평화의 집)
o 7. 7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통신실무자접촉(평화의 집)
o 7. 8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경호실무자접촉(통일각)
o 7. 9 북한, 김일성 사망(7.8) 발표
o 7. 9 북한 제네바 대표부,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 연기 발표
o 7.11 북한, 김용순 통일위원장 남북정상회담 연기 통보
  - “우리측의 유고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연기”
o 7.18 이영덕 국무총리, 김일성 조문논쟁 관련 정부입장 발표
  - 김일성은 민족분단의 고착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비롯한 불행한 사건들의 책임자라는 역사적 평가가 이미 내려져 있음
o 8. 1 국제사면위, 북한 구금 정치범 55명 명단 공개
o 8. 5 미・북 3단계 고위급 회담 재개(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
o 8.15 김영삼 대통령 광복절 49주년 경축사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천명
o 9. 1 중국, 군정위 철수결정 통보
o 9.10 미・북 평양 전문가회담
  - 연락사무소 설치문제 논의

- o 9.13 북한, 6·25실종 미군 유해 14구 인도(판문점)
- o 9.16 북한 외교부 대변인, 특별 사찰 거부 기자회견
  -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고, 반공화국 압살 정책의 일환
- o 10.16 북한 김일성 사망 100일 중앙 추모회 거행(김정일 88일만에 공식 등장)
- o 10.21 미·북한, 제네바 기본합의서 발표
- o 11. 7 김영삼 대통령, 핵·경협 연계 해제 방침 표명
  - 기업인 방북허용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임
- o 11. 9 정부,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 o 11.10 조평통 대변인 담화 "남북경협안 거부"
- o 11.24 정부, 남북경협 후속조치 발표
  -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국내기업과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등 3개 지침을 확정·발표
- o 11.28 IAEA와 북한 원자력 총국, 북한의 핵동결 및 대미합의 이행확인 발표
- o 11.30 정부, 미군으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 o 12.10 정부, 남북 경협활성화조치에 따라 국내기업 방북 승인
  - 럭키금성, 삼성, 현대, 쌍용, 영신무역, 대동화학 등 6개 기업
- o 12.15 군정위 중국군 대표단, 판문점에서 완전 철수
- o 12.15 UN총회,「핵안전협정 이행 및 IAEA사찰 수용 촉구 대북결의안」채택
- o 12.16 국회, 남북한 거래는 민족내부 거래임을 명시한「WTO협정 이행 특별법안」통과

1995

- o 1. 1 김영삼 대통령 신년사
  -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함
- o 1. 1 북한 신년사 대신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게재
  - '위대한 당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새해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
- o 1.15 미국, 대체에너지 중유 5만톤(1차분) 북한에 제공
- o 1.23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발족
  - 통일관계장관회의 산하기구로서 대북경수로사업 지원 관련 실무전담
- o 1.30~2.4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미·북 전문가 회담(평양)
- o 2. 6 국제선명회, 30만톤의 양곡을 북한에 기증 예정 발표
- o 2. 6 한·미 외무장관,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합의(워싱턴)

"남북대화 재개를 연락사무소 개설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기로 함"

o 2. 6 북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김정일 생일(2.16)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발표

o 2.24 북한 외교부 대변인, 평화보장체계 수립문제 관련 담화

"조선반도에서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문제는 북·미 사이에 해결할 문제임"

o 2.25 북한,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사망 발표

o 2.25 국방부 대변인, 「'95 T/S훈련」 중단 발표

o 2.28 외무부 대변인, 북한의 평화보장체계 수립요구 관련 성명

"북한 주장은 법적·현실적 측면에서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우리의 지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타당성이 없음"

o 2.28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 북한 강요로 철수

o 3. 7 김영삼 대통령, 대북 곡물·원자재 제공 용의 천명(베를린)

"북한이 필요하고 원하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o 3. 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공식 발족

o 3.10 북한, 김대통령의 대북 물자지원 제의 거부

o 3.11 북한 외교부 대변인, 한국형 경수로 수용 거부 및 KEDO와의 협상거부 입장 표명

o 3.23~24

한·미 고위협의회(워싱턴)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 기종을 한국형으로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

o 4. 1 남북기독교인, 광복절 판문점 공동예배 합의

- 한국기독교협의회 오충일 회장, 조선기독교연맹 강영섭 위원장

o 4.10 미국, 북한과 직통전화 개설

o 4.28~29

북한, 평화를 위한 평양 국제체육 및 문화축전 개최

o 5. 3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 폐쇄 성명

"판문점 중감위 사무실과 휴게실, 오락실 완전 봉쇄"

o 5. 4 통일원 대변인, 북한의 중감위 사무실 폐쇄 관련 논평

"북측의 이번 조치는 현 정전협정을 무효화시키고 그들이 말하는 평화보장체계를 미·북간에 교섭해 보려는 의도"

o 5.11 NTP 연장회의, NTP조약 무기한 연장 결정

o 5.15 김영삼 대통령, 북한에 곡물·물자 제공 용의 표명(IPI 제44차 총회 개회식)

- o 5.17 국제언론인협회(IPI), 북한의 개방·언론자유 촉구 결의안 채택(제44차 연례총회)
- o 5.19~6.12 미·북 준고위급회담 개최(말레이지아 콸라룸푸르)
  - 하바드 미국무부차관보, 김계관 북외교부 부부장
- o 5.26 북한 리성록, 일본에 쌀공급을 공식 요청하면서 한국쌀도 전제조건이 없으면 받겠다는 의사 표명
- o 5.26 나웅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대북 곡물지원 제의
  "우리 정부는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 없이 북측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
- o 5.30 국방부,「제86호 우성호」북한에 의해 나포 발표
- o 6. 1 나웅배 통일부총리, 남북직교역 확대 추진 방침 표명
- o 6. 13 미·북 경수로 등 제네바합의 이행에 대한 합의 발표(콸라룸푸르)
  - 노형은 2개의 냉각유로를 가진 가압경수로형
  - 주계약자 및 노형은 KEDO가 결정
- o 6. 13 KEDO 제3차 집행 이사회 개최(서울)
  - 대북지원 원자로의 노형은 한국표준형 원자로 2기로, 참조발전소는 울진 3·4호기로 함.
  - 주계약자(한전) 내정
- o 6.17 대북 쌀 제공문제 관련 남북 차관급회담(북경)
  - 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 전금철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
- o 6.24 남북한, 대북 쌀 제공 계약서 합의(북경)
  - 대한무역진흥공사 박용도 사장, 조선 삼천리총회사 김봉익 총회장
- o 6.25 대북 쌀 제공 2천톤 선적「씨아펙스호」출항(동해항)
- o 6.29 정부, 북측의「씨아펙스호」인공기 게양사건 관련 북한 당국의 공식사과 없으면 쌀지원 중단 결정
- o 7. 1 북한 당국,「씨아펙스호」인공기 게양사건 관련 대남 공식사과
- o 7. 3 송영대 통일원차관, 대북 쌀지원 재개 발표
- o 7. 6 통일원, 기술자 방북 첫 승인 : (주)대우
- o 7. 9 안승운 목사 납북
- o 7.15~19 제2차 남북 당국간 북경회담
- o 8. 2 쌀 수송선「삼선비너스」호 선원, 청진항 사진촬영 사건 발생
- o 8. 9 통일원, 쌀 수송선 억류 관련 정부입장 발표
- o 8.12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 북의 쌀 수송선 억류관련 대북전문

"물의를 일으킨데 유감이며 선원전원과 선박의 조속 귀환 희망"

o 8.13 송영대 통일원 차관, 북의 억류 삼선시너스호 및 선원귀환 합의 발표
o 8.15 김영삼 대통령, 한반도 평화정착 기본원칙 제시(광복절 경축사)
o 8.22~28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방북
o 8.23 북한, 유엔에 수재긴급구호 요청
o 8.28 김영삼 대통령, 남북협력기금 확충 지시
o 9. 1 국제선명회, 북한에 현금 50만불, 식량 등 수재구호품 지원 결정
o 9. 4 유엔 인도적 지원국(DHA), 북한 50만명 이재민 발생 발표
o 9. 6 북한, 조총련 통해 일본에 수해지원 요청
o 9.11~12 KEDO, 북한 경수로 공급협정체결 관련 고위급회담(콸라룸푸르)
o 9.13~15 KEDO - 북한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관련 전문가 회담(콸라룸푸르)
o 9.21 통일원 장관, 기업인 대규모 방북 불허 방침 표명
o 9.22 IAEA, 대북 핵안전협정 이행촉구 결의안 채택
o 9.22 일본 외무성, 대북 수재 50만불 지원 발표
o 9.25~29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전문가 회담
o 9.26~10.1 제3차 남북 당국간 북경회담
o 9.28 공노명 외무장관, 북한 인권 보장 촉구「유엔총회 기조연설」
o 9.29 북한, 미국 민항기 영공통과 허용
o 11. 9 한국, UN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o 12.15 KEDO-북한, 경수로 공급협정 타결

1996

o 1.31 북한, 정당·사회 각계인사들간의 광범위한 접촉·대화 제의
o 2. 1 권오기 통일부총리, 이산가족 상봉 최우선 추진 천명
o 2.14 국방부, 「96 T/S 훈련」중지 발표
o 3. 1 김영삼 대통령, 남북대화 조속재개 촉구
o 3.20 KEDO-한국전력, 주계약자 합의서 서명(뉴욕)
o 4. 5~7 북한군, 판문점 공동구역내 무장병력 투입(3차례)
o 4. 6 김영삼대통령, 북한의 DMZ도발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o 4.16 한·미 정상회담 개최(제주도)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제의
o 4.20~21 미·북 미사일회담 제1차회의(베를린)
o 4. 29 (주)대우, 북한남포공단에 첫 합영공장설립 발표

- o 5. 7 북한 외교부 대변인, 미국에 대해 4자회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요구
- o 5.13 LG그룹, 대북임가공 컬러TV 첫 반입
- o 5.16 한적, 북한에 4차 구호품 식용유 18만ℓ 지원
- o 5.20 미국, 4자회담 관련 남·북·미 3자 접촉 대북제의
- o 5.21 KEDO-북한, 대북경수로 건설인력 영사보호의정서 타결
- o 6.11 권오기 통일부총리, 대북 300만달러 상당 식량지원 방침 발표
- o 6.12 권오기 통일부총리, 4자회담 호응 대북 촉구
- o 6.12 미국무부 대변인 대북 620만달러 식량지원 발표
- o 6.14 한적, 제5차 대북 수재민 지원계획(밀가루 572만톤) 발표
- o 6.14 KEDO-북한, 경수로 통신·통행의정서 합의
- o 6.17 유엔군축회의, 남·북한 동시가입 승인
- o 7.11 KEDO-북한, 경수로 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특권·면제」, 「통행」, 「통신」의정서 공식 서명
- o 7.19 한전에 대해 경수로사업 관련, 협력사업자 승인
- o 7.31 김영삼 대통령, 4자회담 수용시 대북 경제지원 협력 표명
- o 8. 5~7 한국어 언어학자 한·북·중 국제학술대회 개최(장춘)
- o 8.15 김영삼대통령, 4자회담 실천방향 구체화(8.15경축사)
- o 8.29 대우, 북한 남포공단에 직원 첫 상주
- o 9.13 남북, 북한영공 한국민항기에도 개방키로 합의
- o 9.18 북한 잠수함 이용 무장간첩 26명 동해상 침투
- o 9.19 국방부 대변인, "잠수함 침투사건을..... 대남도발행위로서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사항"으로 규정
- o 9.23 국회, 북한무장공비 침투사건 관련 대북결의안 채택
- o 9.23 북한 인민무력부, 담화 발표
  - 무장공비침투관련 정상훈련중 기관고장으로 표류, 잠수함·인원 송환 촉구
- o 10.21 김영삼대통령, 무장공비 침투시인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 대북 촉구
- o 10.21 TRADP 5개국 위원회 제2차회의 개막
- o 11.13 판문점「자유의 집」신축 착공식
- o 12. 9 탈북 김경호씨 일가 등 서울 도착
- o 12.13 통일원 대변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5주년 대북성명 발표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촉구
- o 12.17「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정, 통일원에 인도지원국 신설

o 12.18 북한 인권상황「전세계 최악」보고(미 인권단체「프리덤 하우스」연례평가보고서)
o 12.29 북한 외교부대변인, 잠수함 침투사건 사과성명 발표
o 12.30 유엔사·북한군간 군정위 비서장급 접촉 진행, 무장공비시신(유골) 24구 송환

1997

o 1. 8 KEDO-북한, 「부지인수」 및 「서비스이용 의정서」서명 발효
o 1.13「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공포
o 1.14 대만전력공사 총경리, 북한과 핵폐기물 매립계약 체결 언급
o 1.15 통일원 대변인, 북한·대만간 핵폐기물 매립 협정체결 중지 촉구
o 2.12 황장엽 노동당 비서, 주중대사관에 망명 요청
o 3. 5 4자회담 공동설명회 개최(뉴욕)
o 3. 6 「'97 T/S 훈련」 취소 발표
o 3.31 통일원, 대북지원 확대허용조치 발표
  - 민간단체 쌀지원 허용, 경제단체 참여 허용
o 4.16~21 4자회담 공동설명회 후속협의(뉴욕)
o 4.18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대북 식량지원 및 물류제공 절차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제의
o 5. 3~5 대북구호물자 지원절차 협의를 위한 제1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개최
o 5. 6 대한불교조계종, 조선불교도연맹측과 부처님 오신날 불교도 공동발원문 합의
o 5.13 유종하 외무장관, 북한의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 촉구
o 5.16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제의
o 5.17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수정 제의
o 5.23~26 대북구호물자 지원절차 협의를 위한 제2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개최(북경)
  -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
o 6. 1 북한 나진·선봉지대 경제개혁, 개방조치 시행
  - 외화와 바꾼 돈표 폐지, 환율조정 등
o 6. 23~ 7. 2 제3차 KEDO-북한 실무협상 개최(뉴욕)

- 출입절차 등 19개 분야 합의서 채택

o 6.24 김영삼대통령, DMZ 보존 남북한 협력제의

o 6.24 KEDO-북한,「채무불이행시 조치의정서」서명 발효

o 6.28~30 4자회담 관련 한·미·북 3자협의 개최(뉴욕)

- 4자회담 예비회담 개최 합의

o 7.1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발효·시행

o 7.23~25 대북구호물자 지원절차 협의를 위한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개최(북경)

- 남북적십자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 타결

o 7. 24 우편양해각서에 따른 우편서비스 개시

o 8. 1 통일원, 한국통신에 대해 경수로사업관련 통신협력 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o 8. 4 대북 경수로 관련 남북간 통신 개통

o 8. 5~7 4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 개최(뉴욕)

o 8.10 정부, 신포금호지구를 국내사업장으로 규정

o 8.14 통일원 대변인, 대북지원 식량투명성 의혹 관련 논평 발표

o 8.15 김영삼대통령,「한반도 평화정착 4대방향」등 제시(8·15 경축사)

o 8.19 신포금호지구 경수로 부지공사 착공식 개최

o 8.21「유엔인권소위」북한주민 출입국 자유 등 촉구 결의안 채택

o 8.23 통일원 대변인, 대북 추가지원(1천만달러) 발표

o 8.24 장승길 북한대사 망명

o 8.25 북한「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탈피서한 UN 사무총장에게 발송

o 9. 9 북한 주체 연호 사용시작

o 9. 9 미국적 민항기 최초로 북한 도착

o 9.18~19 4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 개최(뉴욕)

o 9.20 EU, KEDO 정식 가입

o 9.23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합의

o 10. 7~10 남북한 비행정보구역(FIR) 통과 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남북한 당사자 회의 개최(태국 방콕)

- 「대구-평양 항공교통 관제소간 관제통신망 구성·운영에 관한 양해각서」서명

o 10. 8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공식 추대

o 10.14 토지개발공사 등 5개사 협력사업자 승인
o 10.17 강릉침투 북한잠수함에서 구호식량 발견
o 10.27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남북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제의
o 10.29 유엔 인권위, 일반권고를 통해 북한의 B규약 탈퇴가 국제규약상 성립되지 않는다고 발표
o 11. 8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제4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개최 제의
o 11. 8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남북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제의
o 11.19 대구-평양 항로관제소(ACC)간 판문점경유 관제통신망(주회선)개설
o 11.21～22 4자회담 제3차 예비회담 개최(뉴욕)
o 11.24～25 KEDO 집행이사회 개최(뉴욕)
  - 경수로 예상사업비 51억8천만달러 확정 및 재원분담협상 개시
o 12. 9～10 제1차 4자회담 본회담 개최(제네바)
o 12.19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당선 기자회견, 남북정상회담 제의
o 12.23～25 대북구호물자 지원절차 협의를 위한 제4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개최(북경)
o 12.24 국군포로 양순용씨 탈북 귀환
o 12.2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착공(1999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

1998

o 1.20～24 KEDO-북한 고위전문가회의(북한 향산호텔)
o 2. 5～6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 개최(뉴욕)
o 2.15 북한 사회안전부, 이산가족 주소안내소 설치 발표
o 2.17 대구-평양 항로 관제소(ACC)간 관제통신 개통(보조회선)
  - ASIASAT Ⅱ 인공위성 이용 남북직접연결방식
o 2.18 북한, 정당·단체 연합회의 개최
o 2.19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남조선 정당 단체들에게 보내는 편지 전달 관련 연락관 접촉 제의
o 2.19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북측의 편지접수 수락
o 2.25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이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

야 함.

- 대북 3원칙제시(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적극 추진)
- 정상회담 용의 표명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 제의

o 3. 1 김대중 대통령, 3·1절 기념사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특사교환 재촉구
-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실현 촉구

o 3. 9 정부, WFP를 통한 옥수수기준 5만톤 식량지원 발표

o 3.10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대북지원 관련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제의

o 3.11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개최 제의 관련 수정 제의

o 3.13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수락 통보

o 3.14 제2차 4자회담 준비회의 개최(제네바)

o 3.16~21 제2차 4자회담 본회담 개최(제네바)

o 3.18 정부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조치 발표
- 대북지원관련 방북, 이벤트성 모금행사, 언론·기업의 협찬,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지원 허용

o 3.19~20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뉴욕)

o 3.25~27 대북구호물자 지원절차 협의를 위한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개최(북경)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채택

o 4. 4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비료지원 요청 관련 남북 당국대표회담 제의

o 4. 6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북한의 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 제의 수락 및 수정 제의

o 4. 7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 장소 북경 고집

o 4. 8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남북당국대표회담 북경 개최 동의 및 대표단 명단 통보

o 4.10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남북당국대표회담 대표단 명단 통보

- o 4.11～17 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북경)
- o 4.23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통과 한국-미주 항로 이용개시
- o 4.23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 개최(뉴욕)
- o 4.30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발표・시행
  - 대기업・경제단체의 수시방북제도 확대
  - 승인을 요하는 품목 축소 및 생산설비 반출제한 완화
  - 투자업종・규모제한의 완화
- o 5. 2～12 리틀엔젤스 예술단, 평양 공연
- o 6. 1～2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뉴욕)
- o 6.15 북한, 8・15 대축전 관련 대남 편지 전달을 위한 연락관 접촉 제의
- o 6.15 8.15 대축전 관련 북측 편지 접수
- o 6.16 정주영 현대명예회장, 한우 500두 대북지원(판문점 경유)
- o 6.22 강인덕 통일부장관, 8・15경축행사 관련 실무접촉 제의
- o 6.22 합동참모본부, 북한 잠수정 1척 동해안에서 예인 발표
- o 6.23 판문점 장성급 회담
- o 6.28～29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브랏셀)
- o 6.30 판문점 장성급 회담
- o 7. 9 자유의 집 준공
- o 7.12 묵호에서 북한 무장간첩 시신 발견
- o 7.15 국가안전보장회의, 의결서 통해 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시인・사과, 재발방지 등 촉구
- o 7.27～28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뉴욕, 가서명)
- o 7.29 통일부, 남북기본합의서 유효입장 재확인 발표
- o 8.15 김대중 대통령, 8・15 경축사
  - 대북정책 3대원칙 견지
  - 모든 경제협력 지원 권장
  - 분야별 공동위원회 가동 촉구
  - 장・차관급의 「남북상설대화기구」 창설 제안
  - 대통령 특사 평양 파견 용의
- o 8.18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설립
- o 8.20 북한 조평통, 8・15 경축사 대북제안에 대해 공개질문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거부
- o 8.31 일본, 북한의 로켓 발사사건에 대응하여 「재원분담결의안」 동의 유보

- o 9. 1 고령 이산가족 방북절차를 신고제로 전환
- o 9. 3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결성
- o 9. 3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뉴욕)
- o 9. 5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 개막
- o 9. 7 「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 협력사업 승인
- o 9.10 미·북, 제네바합의 이행 관련 합의
  - 중유공급 9월 하반기 재개, 연말까지 공급 완료
  - 연변 폐연료봉의 봉인작업 재개
- o 9.10 대구 비행정보구역(FIR) 통과 일본-북한간 직항로 운영 개시
- o 9.18 정부, 한적을 통한 민간단체 개별 지원 허용
- o 9.20 북한 평양방송, 정주영 지원 한우 폐사 관련 한국정부의 의도적 불순물 투여 주장
- o 9.30 국군포로 장무환씨 귀환
- o 10.16 북한, 정주영 지원 한우 폐사 관련 현대측에 아·태평화위 서기장 명의 해명문건 통보
- o 10.21~10.24 제3차 4자회담 본회담 개최(제네바)
- o 10.27 정주영 현대명예회장, 기탁2차분 한우 501두 대북지원
- o 10.31~11. 7 윤이상 통일음악회, 평양 개최
- o 11. 9 KEDO집행이사회(뉴욕)
  - 재원분담결의안 채택
- o 11.17 금강산 관광지원을 위한 남북간 통신망 개통(6회선)
- o 11.18 현대 금강산 관광선 첫 출항
- o 12. 1 제198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대북결의안 채택
  -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촉구
  - 북한의 핵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사찰수용 촉구 결의안
- o 12.13 통일부 대변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7주년 관련 논평 발표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촉구
- o 12.14 국회결의안 대북서한 발송
  -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 촉구
- o 12.18 이산가족정보통합센타 설치
  - 이북5도위원회, 한적간 연결망 구축

Ⅴ. 남북간 주요 합의문건

1. 7·4 남북공동성명

2.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3.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4.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5.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6.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7.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8.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9.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10.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1.「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2.「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3.「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4.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

1. 7·4 남북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1972년 7월 4일

2.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쌍방은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남북조절위원회는 1972년 7월 4일부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추진하고 남북 사이의 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며, 각 분야에서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 합의된 조국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합의된 조국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나.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 사이의 광범위한 정치적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다. 남북 사이의 경제·문화적 및 사회적 교류와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의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라.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마. 대외활동에서 남북이 공동보조를 취하며 단일민족으로서 민족적 긍지를 선양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3. 남북조절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남북조절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간사위원 1명,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수는 필요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다. 공동위원장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으로 한다. 부위원장과 간사위원 및 위원은 장관(相) 또는 차관(副相)급으로 하되, 사전협의를 거쳐 각각 쌍방 공동위원장이 임명한다.
   나. 남북조절위원회 안에 간사회의를 둔다. 간사회의는 쌍방 공동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남북조절위원회의 휴회 기간에 제기되는 제반문제 등을 협의, 결정하고,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간사회의는 쌍방 간사위원과 각각 간사 2명으로 구성한다.
   다. 남북조절위원회 안에 정치·군사·외교·경제·문화분과위원회를 둔

다.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조절위원회 사업이 진척되는데 따라 설치하며, 그 기능과 구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규정한다.

라. 남북조절위원회는 공동사무국을 판문점에 둔다. 공동사무국장은 쌍방이 각각 1명씩 임명하며, 그 밑에 필요한 수의 인원을 둔다.

4. 남북조절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남북조절위원회는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판문점에서도 할 수 있다.

나.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는 2~3개월에 1차, 간사회의는 1개월에 1차 진행하며,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 남북조절위원회는 공개회의 또는 비공개회의로 한다.

라.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와 간사회의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수의 전문인원들과 공동사무국 요원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마. 남북조절위원회의 최종합의는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합의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동시에 발표한다.

바.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세칙은 따로 규정한다.

5.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1972년 11월 4일

남 북 조 절 위 원 회
서 울 측 공 동 위 원 장
이 후 락 부 장

남 북 조 절 위 원 회
평 양 측 공 동 위 원 장
김 영 주 부 장 을
대 리 하 는 박 성 철

3.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북화해

제 1 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 8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북불가침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 11 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 12 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 13 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 14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남북 교류·협력

제 15 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 16 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 17 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 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 19 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 20 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 21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 22 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 23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4 장 수정 및 발효

제 24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25 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4.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5.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각 분과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 한다.

② 쌍방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③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2 조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각 분과위원회는「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해당부문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문의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 3 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평화의 집」과 북측지역「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협의 결과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쌍방이 합의하여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을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2월 19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6.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이하 '핵통제공동위원회'라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핵통제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그중 1~2명은 현역군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차관(부부장)급으로 한다.

② 쌍방은 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③ 핵통제공동위원회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2 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 문제를 토의한데 따라 부속문건들을 채택·처리하는 문제와 기타 관련 사항

②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교환에 관한 사항

③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④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의 선정, 사찰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⑤ 핵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에 관한 사항

⑥ 핵사찰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⑦「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행과 사찰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제 3 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③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⑤ 핵통제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핵통제공동위원회 합의사항은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3월 18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7.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사이의 불가침을 이행·보장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이하 '군사공동위원회'라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군사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 이상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

③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2 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다.

②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필요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천한다.

③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실천한다.

④ 위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감독한다.

제 3 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 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에서의 합의문건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키는 경우 그것을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8.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2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사항을 협의·실천한다.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 3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⑥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들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 총리 연형묵**

9.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북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 함)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측은 「남측연락사무소」라고 하고 북측은 「북측연락사무소」라고 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연락사무소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설치한다.

제 3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에서 각각 소장 1명, 부소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연락관들로 구성한다.

② 연락사무소 소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③ 연락사무소 소장, 부소장, 연락관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앞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연락사무소 안에 필요한 부서들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연락업무를 수행한다. 의뢰에 따르는 연락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③ 남북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

④ 쌍방 연락사무소 사이에 필요한 수의 전화선을 가설하고 운용한다.

제 5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쌍방은 필요에 따라 연락과 접촉을 가진다.

②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수시로 진행한다.

③ 자기측 지역을 왕래하는 상대측의 연락사무소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변

안전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④ 연락사무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운영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명절을 비롯하여 각기 제정한 공휴일은 일방의 통지에 따라 휴무일로 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10.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제1장 남북화해」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③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률실무협의회, 비방·중상중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따로 작성한다.

제 2 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라 함)를 이행한다.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록 또는 세부적인 합의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각 실무협의회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 3 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

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 있다.

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⑥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위원장이 각기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합의문건은 쌍방 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한 합의문건은 쌍방 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 총리 연형묵**

11.「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체제(제도)인정·존중

제 1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존중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결한다.

제 2 장 내부문제 불간섭

제 5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비방·중상 중지

제 8 조 남과 북은 언론·삐라 및 그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 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파괴·전복 행위금지

제 15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 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비호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에로의 전환

제 18 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

제 19 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 20 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 6 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 21 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 22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조치를 강구한다.

제 23 조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 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대표부) 사이의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 24 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

제 7 장 이행기구

제 25 조 남과 북은「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제 26 조「남북화해공동위원회」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중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제 8 장 수정 및 발효

제 27 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28 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북측이 제기한「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

민족을 대표하여 유일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남과 북은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는 조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12.「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무력 불사용

제 1 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 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 3 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수단들을 공격, 모의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 2 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

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제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 4 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 12 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 13 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제 14 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각기 5명씩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 15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 5 장 협의·이행기구

제 16 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 17 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 6 장 수정 및 발효

제 18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19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13.「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경제교류·협력

제 1 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④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⑦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⑧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

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 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②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 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한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⑤ 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⑧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⑤ 남과 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제1장 경제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

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2 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 9 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및 출 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 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 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

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11 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 12 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 13 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 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14 조 이 합의서「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3 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 15 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③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4장 수정·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14.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

남과 북은 1994년 6월 28일 부총리급 예비접촉에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에 따라 1994년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표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실무절차 문제에 합의하였다.

1. 대표단 구성과 규모
   ① 남측 대표단 수행원은 100명으로 한다.
   ② 남측 대표단 취재기자는 80명으로 한다.

2. 회담형식
   ① 회담은 쌍방 정상 사이에 단독회담으로 한다.
   ② 회담에는 쌍방에서 각각 보좌요원 2~3명과 기록요원 1명이 배석한다.

3. 체류일정
   ① 남측 대표단의 북측지역 체류기간은 2박 3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②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구체적인 체류일정을 방문 15일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남측에 통지하며, 쌍방이 협의하여 이를 확정한다.

4. 실무자접촉 및 선발대 파견
   ① 쌍방은 경호, 의전, 통신, 보도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기 17명이 참가하는 실무자접촉을 7월 13일부터 7월 16일(3박 4일)까지 평양에서 가진다. 이에 앞서 경호문제와 관련하여 쌍방 각기 3명이 참가하는 실무자접촉을 7월 8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통신문제와 관련하여 쌍방 각기 3명이 참가하는 실무자접촉을 7월 7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진다.
   ② 남측은 25명으로 구성되는 선발대를 대표단 방문 3일전에 북측 지역에 파견한다. 선발대는 정상방문이 끝날 때까지 체류한다.
   ③ 남측의 실무자접촉 및 선발대의 체류일정은 북측지역 도착 직후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5. 왕래절차

① 남측은 정상일행의 명단을 방문 7일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실무자접촉 및 선발대의 경우에는 명단을 방문 4일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명단에는 성명, 성별, 직위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먼저 직통전화로 통지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문서로 전달한다.

② 남측 대표단의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하며 대표단은 북측지역에서 북측의 자동차를 이용한다.

6. 편의보장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및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②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북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③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북측지역 체류기간중 1일 2회 행낭운반을 보장한다.

7. 신변안전보장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총리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남측에 넘겨준다.

②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8. 수행원, 기자의 표지 및 증명서

① 쌍방은 자기측 수행원들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③ 남측 수행원과 기자는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휴대한다.

9. 회담장 표지 및 시설

①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② 회담장에는 회담에 필요한 시설외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③ 북측은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서 남측이 연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제공한다.

10. 회담기록

쌍방은 회담기록을 속기, 녹음 등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11. 회담보도

① 회담보도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공동보도문을 작성 발표할 수 있다.

② 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비와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텔레비젼 영상송출을 위한 전송로 및 위성중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12. 취재활동

① 북측은 남측 기자들의 체류기간중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②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13. 기타 실무절차 문제

① 남측 대표단은 북측지역 체류기간 이미 가설된 서울과 평양 사이의 직통전화선을 이용한다.

② 그 밖에 제기되는 실무절차 문제는 남북고위급회담 관례에 따른다.

14.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4년 7월 2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부 총 리 급 예 비 회 담
남 측 대 표 윤 여 준

북남최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부 총 리 급 예 비 회 담
북 측 대 표 백 남 준

Ⅵ. 통일부 허가법인

<통일촉진분야 : 30개> ('99.2.4 현재)

단 체 명	주 소	허가일자	연락처
민족통일협의회 (의장 송영대)	서울 강동구 천호동 308, 5층 134-020 (서양빌딩 5층)	(사단법인) 1981. 4.22	476-8191-4 476-8197F
민족문화통일회 (회장: 차국찬)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5-12 134-030 (경성빌딩 702호)	(〃) 1981. 5.27	476-5841 476-5824F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현경대)	서울 은평구 갈현동 321-89 122-050 (세림빌딩 3층)	(〃) 1983. 3.26	358-0612~3 384-1924F
민주통일촉진회 (회장: 강명희)	대구 수성구 만촌1동 1417 706-021	(〃) 1984. 9.21	(053) 752-5911
한민족세계선교통일 교육원 (이사장:조준상)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8-1 472-810	(〃) 1987.12.15	(0346) 65-9600 792-7924-6 792-9177-9
통일기념사업회 (회장: 김동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150-010 (전경련회관 14층)	(〃) 1988.11. 1	786-0530-2 786-0533F
21세기 통일준비운동본부 (이사장: 허태유)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2 (윈드스톤호피스텔 1711호) 137-130	(〃) 1989. 3.17	578-9381-2 578-9383F
민족통일복음화운동 본부(이사장:김규병)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8-24 137-060 믿음교회내	(〃) 1990.10. 8	584-0341 525-6733F
한민족통일여성협회 (회장: 김신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0-5 137-070 (삼신빌딩 210호)	(〃) 1991. 6.19	521-5511 538-0906F
세계한민족평화통일 협의회(회장:김광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6 150-010 (라이프콤비빌딩 509호)	(〃) 1991. 6.27	785-0345 785-0346F

단 체 명	주 소	허가일자	연락처
민족통일불교협의회 (의장:김태완)	충남 천안시 성정2동 647-6 330-172	(사단법인) 1993.11.3	(0417) 578-4747 576-4455F
민족통일에스라운동 협의회(이사장:조동진)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월문리 445-910 110-1, 바울의 집	(〃) 1995.10.12	(0339) 353-1301 52-5234
한민족통일촉진협회 (회장:양순임)	서울 마포구 동교동 204-36 121-200 (차일드라인빌딩102호)	(〃) 1996. 3.15	333-0153 333-2407F
한사랑민족통일진흥원 (이사장:김학옥)	서울 서초구 양재동 70-6 137-130 (두범빌딩 2층)	(재단법인) 1997. 3.27	572-1982 572-5218F
21세기통일봉사단 (단장:송 자)	서울 중구 서소문동 34 100-110 (한화빌딩 301호)	(사단법인) 1997. 6. 7	753-3082-3 753-3084F
통일건국민족회 (공동대표:최치영 ,권천문)	서울 종로구 낙원동 88-1 110-320 (양지빌딩 3층)	(〃) 1998.4.23	744-2007
국민정신중흥회 (회장:이명규)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5-1 121-120	(〃) 1998.6.18	322-8516 322-8517F
대한기독교자유연맹 (총재:박태남)	서울 성북구 동선동 3가 250 140-012	(〃) 1998.6.18	923-6481 924-6481
대한민국팔각회 (총재:이학천)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92-12 601-010 (팔각회관 5층)	(〃) 1998.6.18	(051)469-3687 (051)469-9878F
한민족운동지도 자연합회 (이사장:김형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 (라이프오피스텔 1008호) 150-010	(〃) 1998.6.18	783-1136
한국불교자유총연합회 (회장:이무웅)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번지 110-550	(〃) 1998.6.18	763-3109

단 체 명	주 소	허가일자	연락처
한국미래연구학회 (회장 : 신윤표)	대전 중구 중촌동 61-26 301-080	(사단법인) 1998. 8.19	(042)252-2199
한민족통일교육연구소 (이사장 : 윤상덕)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29-16 윤민빌딩 301호 140-131	(〃) 1998. 8.31	713-6179
한국청년지도자 연합회 (회장 : 이상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4 가든빌딩 708호 150-010	(〃) 1998. 9.10	780-8293-5 F780-8296
민족화해협력범국민 협의회 (상임의장 : 한광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4 150-010	(〃) 1998.10. 1	784-7007
평화와 통일을 위한 복지기금재단 (이사장 : 김우중)	서울 중구 명동2가 52-13 100-022	(재단법인) 1998.10. 1	250-2301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사장 : 이우정)	서울 중구 장충동1가 38-84 100-391	(사단법인) 1998.10. 1	264-8649
민족화합운동연합 (이사장 : 김병걸)	서울 중구 태평로1가 76-3 100-101	(〃) 1998.12. 2	725-5353
세계평화여성연합 (이사장 : 정대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1 140-013	(〃) 1999. 1. 6	749-1497
통일맞이 (대표 : 이재정)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회관 13층1호 110-470	(〃) 1999. 2. 4	762-8201

<학술 · 연구분야 : 17개>

단 체 명	주 소	허가일자	연락처
북한연구소 (이사장:김창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31-4 131-100	(사단법인) 1985. 3.22	248-2392 249-9571F
평화연구원 (이사장:방희)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100-094 (대한상공회의소빌딩1131)	(〃) 1987.12.21	777-4983
한국발전연구원 (회장:안무혁)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5 135-280 (상제리제센터 19층1호)	(재단법인) 1990.7.6	563-6961-2 563-6962F
한우리연구원 (이사장:신창민)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 156-756 경영대학 무역학과	(사단법인) 1990.12.5	817-5666
한민족통일연구중앙 협의회(회장:정성욱)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586 (한양A한가람상가지하8호) 430-065	(〃) 1991.2.11	(0343) 84-2781
통일시대연구소 (이사장:이종률)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07-15 137-064	(재단법인) 1991.8.13	534-3810-3 535-1767F
다물민족연구소 (이사장:박광순)	서울 서초구 양제동 5-21 137-130 (후룡빌딩 501호)	(사단법인) 1991.9.20	529-2511 529-2584F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이장희)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78-40 120-093	(〃) 1991.11.27	396-2590 396-2591F
세계한민족연합 (이사장:최민자)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1 (세계일보별관자원봉사센터) 140-013	(〃) 1992.4.7	790-8200 920-7131
한국청년정책연구소 (이사장:이경훈)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8-2 133-170	(재단법인) 1992.4.17	214-9426

단 체 명	주 소	허가일자	연락처
통일경제연구협회 (이사장:김기환)	서울 서초구 양재동 393-5 137-130	(사단법인) 1995.2.14	572-3796
백천통일시대연구원 (이사장:홍성률)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3 135-090 (조양빌딩 3층)	(재단법인) 1995.2.14	538-9411-3
한국사회문화연구원 (이사장:이장현)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1-19(2층) 121-210	(사단법인) 1995.2.14	323-4144 324-7644
한국사회통일연구원 (이사장:유도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664 411-310 (한더빌딩 207호)	(〃) 1997.2.27	(0344) 977-9530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변형윤)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121-750 (한겨레신문사내)	(재단법인) 1997.5.30	7100-195-6 706-6009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대표:박관용)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8 121-020 (동방빌딩 17층)	(사단법인) 1998.6.8	703-4311 703-4314F
북방연구소 (이사장:배명오)	서울 종로구 경운동 47-17 110-310 (건국빌딩2동 205호)	(〃) 1998.12.16	720-9969

〈교류협력분야 : 8개〉

단 체 명	주 소	허가일자	연락처
남북문화교류협회 (회장:이매영)	서울 은평구 응암1동 86-6(3층) 122-010	(사단법인) 1993.1.11	389-5016-7 384-7979
민족통일선교협회 (이사장:신현균)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1-16 137-063	(재단법인) 1993.2.12	521-0552 523-4231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김승균)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110-310 수운회관 1311호	(사단법인) 1993.8.20	732-8433-4 734-1648

단 체 명	주 소	허가일자	연락처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강만길)	서울 중구 정동 15-5 100-120 (정동빌딩 별관5층)	(사단법인) 1994.2.22	757-7386 757-7384F
한겨레평화통일협회 (이사장:장승학)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3-3 135-100 (평화빌딩 210호)	(〃) 1994.3.10	566-8168 567-2011
남북코리아미술교류협의회 (이사장:정주환)	서울 종로구 종로2가 75-7 110-122	(〃) 1998.5.26	733-4488 732-6389F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권근술)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121-020	(〃) 1998.8.11	706-6008
남북강원도문화교류재단 (이사장:강도원)	서울 중구 충무로5가 19-9 100-105	(〃) 1998.12.2	271-0594

〈인도지원분야 : 8개〉

단 체 명	주 소	허가일자	연락처
1천만 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위원장:조영식)	서울 중구 신당동 377-143 100-450 (진빌딩 301호)	(사단법인) 1982.12.23	232-5050 235-1411F
남북나눔 (이사장:김성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110-470 한국기독교회관 703호	(〃) 1994.1.14	745-5763 745-5765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총재:김연준)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40 100-102 (대한일보빌딩 704호)	(〃) 1994.12.29	773-6168-9 776-4733-5 776-9625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회장:강성모)	서울 중구 남산동 2가 23 100-042 (세기빌딩 401호)	(재단법인) 1997.8.13	777-3652 777-3656F

단 체 명	주 소	허가일자	연락처
북한동포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시민연합 (이사장:윤현)	서울 종로구 교북동 10-22 110-090 (심지빌딩 401호)	(사단법인) 1997.8.27	723-1672 894-1672
북한민주화촉진협의회 (대표이사:노학우)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5 (미씨2000오피스텔 1219호) 135-220	(〃) 1998.5.7	3463-3510 3462-2718F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사장:서영훈)	서울 중구 삼각동 39번지 100-200	(〃) 1998.5.22	734-7070
탈북자 동지회 (회장:김덕홍)	서울 노원구 월계동 동신APT 3동 203호 139-050	(〃) 1999.1.26	957-7345

Ⅶ. 통일동우회 · 상조회

1. 통일동우회

o 통일부를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근무중인 재직자들의 사기진작과 특히 장기 봉직후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직원과 타기관으로 옮긴 직원들의 구심역할을 위한 동우회 결성 필요성 제기

o 통일부 30주년을 계기로 통일동우회 발족을 목표로 우선 발족준비는 통일부가 하되, 정식 발족 후에는 명실공히 퇴직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운영비도 회원들의 회비나 후원비로 충당하며, 나아가서는 수익사업 발굴을 통해 재정적 자립방안도 모색할 예정

o 통일동우회는 퇴직자의 자긍심 제고와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상부상조는 물론 향후 통일후원세력화 하여 통일홍보요원으로도 활용할 계획

※ 1999년 2월 27일 창립총회 개최

2. 통일부상조회

통일부상조회는 직원 경조사시 상부상조를 통해 직원간 협동정신을 함양하고 직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여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995년 8월 25일 설립

통일부상조회 회칙

제정 1995. 8. 25
개정 1996. 7. 26
개정 1998. 4. 10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통일부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목적) 상조회는 통일부 직원의 경조사에 상부상조함으로써 협동정신을 앙양하고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회원자격) 상조회의 회원은 인사명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 된 자를 원칙으로 하되,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자라도 통일부에 장기간 계속 근무하는 자 등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2 장 회 의

제 4 조(임원회 구성) ① 상조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회를 구성한다.

1. 회장 1인(기획관리실장)
2. 부회장 1인(총무과장)
3. 당연직임원 3인(소속기관 각 서무과장)
4. 기관별 추천임원 9인
   - 각실·국별 1인(5인)
   - 소속기관 각 1인(3인)
   - 여직원 대표 1인
5. 간사 1인(총무과 서무담당)

② 기관별 추천임원은 각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소속직원중 적임자를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 조(감사) ① 상조회는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이 된다.

③ 감사는 상조회의 회계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임원회 기능) 임원회는 상조회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를 심의 의결하고 집행한다.

제 7 조(임원의 임무) 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상조회 사업을 총괄 지도하며 임원회를 운영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회장의 명에 의해 임원회를 소집하며, 임원 회의록의 기록 유지 및 기타 상조회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회비 출납계산 및 회비 결산보고 등을 수행한다.
4. 임원은 임원회의 소집 요구 및 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제 8 조(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1월 및 7월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소집은 회장명의로 한다.

제 9 조(임원회의 의사) ① 임원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임원회의에서 의결을 할 때에는 매 의안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결서에 서명한다.

④ 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일지로써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심의요구 절차) 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심의요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중요사항의 결정 등) ① 상조회에 관련된 사항중 전 회원에 관련되는 중요사항을 변경, 신설,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전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3 장 사 업

제 12 조(사업) 상조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비를 관리하고 아래 사업을 집행한다 .

1. 회원 본인의 사망시 조문
2. 배우자의 사망시 조문
3. 부모의 사망시 조문
4. 배우자 부모의 사망시 조문
5. 자녀의 사망시 조문
6. 본인의 결혼시 축하
7. 자녀의 결혼시 축하

제 13 조(사안별 상조금액) ① 사안별 상조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금 액
o 조위금	
- 조부모 사망	50만원
- 부모 사망	150만원
- 배우자부모 사망	100만원
- 자녀 사망	100만원
o 축의금	
- 본인 결혼	150만원
- 자녀 결혼	100만원

② 회비를 1년이상 불입후 10년까지 상조사안 미발생시 또는 상조사안 없이 퇴직(전출)시는 본인 불입 금액의 50%를「부부화목」지원비 등으로 지불하되 축의금 한도액(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결혼을 목적으로 퇴직하는 회원은 축의금에 한하여 회원으로 간주한다.

④ 5년이상 우리원에서 근무한 자로서 퇴직(전출)시 다음과 같이 기념품을 증정한다.

가. 5년이상 10년미만 근무자 : 행운의 열쇠 금5돈

나. 10년이상 근무자 : 행원의 열쇠 금10돈

제 14 조(회비) ① 상조회는 전회원의 월 기본급에서 직급별로 2.5~1%(3급이상<교수포함> : 2.5%, 4~5급 : 2%, 6~8급 : 1.5%, 기능직 : 1%)를 일괄 공제하여 은행예금으로 적립 운영한다.

② 본인 사망시는 월 기본급에서 직급별로 3~2%(3급이상<교수포함> : 3%, 4~5급 : 2.5%, 6급이하 : 2%)를 계기별로 갹출 상조하며, 배우자 사망시는 직급별로 2~1%(3급이상<교수포함> : 2%, 4~5급 : 1.5%, 6급이하 : 1%)를 계기별로 갹출 상조한다.

제 15 조(복지기금 인수운영) 상조회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복지기금(3,700만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며 경조사지원과 별도로 직원들에 저리대출 편의를 제공한다.

부 칙 <생 략>

Ⅷ. 기 관 연 혁

연 월 일	내 역
1968. 7.24	o 국토통일원신설등에관한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법률 제2041호) 공포
1969. 1.29	o 국토통일원직제(대통령령 제3754호) 제정
2.20	o 중앙청 제2별관에 임시사무소설치 개원준비 착수
3. 1	o 국토통일원 개원
5.12	o 국토통일자문위원회 설치(국토통일자문위원 36명 위촉)
1970. 4. 3	o 국토통일자문위원회를 「국토통일고문회의」로 변경
1972. 4.22	o 통일연수소직제(대통령령 제6158호) 제정
5. 1	o 통일연수소 개소
1975. 3.14	o 「평화통일연구소」 설립 운영(1981.1.8 해산)
1980. 10.20	o 남북대화사무국직제(대통령령 제10049호) 제정 및 안기부로부터 남북대화사무국 인수 개국
1981. 11. 2	o 정책기획실 폐지에 따라 정책업무를 남북대화사무국 정책연구부에 이관
1986. 10.18	o 북한관 개관(1997.2.1 폐지)
12.26	o 통일연수소를 통일연수원으로 개칭
1989. 5.22	o 북한자료센타 개설(광화문우체국 건물 6층)
7.24	o 통일정책실 신설(정책업무를 남북대화사무국에서 통일정책실에 이관)
1990. 5.10	o 통일원 기자실 설치(정부제1청사 5층)
8. 1	o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법률 제4239호), 남북협력기금법(법률 제4240호),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장관) 설치 운영 o 민족통일연구원법(법률 제4241호) 제정 시행
11.14	o 주독일 주재관 신설
12.27	o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개칭, 부총리부서로 격상 - 통일정책 관련 각부처 총괄·조정기능 부여

연 월 일	내 역
1991. 3.23	o 통일관계장관회의(의장:장관) 설치 운영
4. 9	o 민족통일연구원 개원
7. 1	o 교류협력국 신설
1992. 10.30	o 남북대화사무국을 남북회담사무국으로 개칭
1995. 1.23	o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발족
1996. 1.15	o 통일원 소식지「세종로4층」제1호 발간
6.29	o 주 미국·일본·중국 해외주재관 신설
11.13	o 판문점「자유의 집」착공
12.17	o 인도지원국 신설 및 통일연수원을 통일교육원으로 개편(교육홍보국 통합)
1997. 1.13	o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5259호) 제정 공포(1997.7.14 시행)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위원장:차관) 설치 운영
8.19	o KEDO 원전부지 정지공사 착공
12.30	o 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 착공(1999.6 준공예정)
1998. 2.28	o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일원이 통일부로 개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가 통일부 소속기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국)으로 축소 편입
6.30	o 판문점「자유의 집」준공
12.18	o '98년도 보안업무 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표창
12.22	o '98년도 민원행정서비스 최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표창
1999. 1.29	o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5733호)에 의거 민족통일연구원법 폐지 - 민족통일연구원이 통일연구원으로 개편, 국무총리실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
2. 5	o 통일교육지원법(법률 제5752호) 제정 공포(1999.8.6 시행)

Ⅸ. 청 사 연 혁

1. 본부

o 1969. 3. 1 : 한국반공연맹 건물을 일부 임차하여 개원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산5-1
- 규모 : 동편 4층, 250평
* 1975년까지 2,3,4,5층 968.4평으로 단계적 임차 확대

o 1977. 1. 31 : 남산의 구 KBS 사옥으로 이전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
- 규모 : 대지 1,932평, 건평 1,720평

o 1986. 2. 1 : 정부세종로청사로 이전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 규모 : 4층 및 2층, 5층 일부, 852평

2. 통일교육원

o 1972. 5. 1 : 한국반공연맹건물 일부 임차
- 규모 : 서편 5층 250평

o 1975. 5. 10 : 구 상공부 계량국 건물로 이전
-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25
- 규모 : 부지 1,624평, 건평 780평

o 1976. 12. 26 : 한국반공연맹건물로 이전
- 규모 : 서편 2,3,4,5층 1,283평

o 1991. 3. 2 : 청사신축 입주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번지
- 규모 : 부지 16,878평, 건평 5,394평(현재)

3. 남북회담사무국

o 1973. 9. : 중앙정보부에서 현청사 신축

o 1980. 10. 20 : 국토통일원에서 인수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산3-25
- 대지 : 12,032평(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소유)
- 건물
  ・사무실 : 613평, 3층 철근콘크리트
  ・남북회담장 : 804평, 3층 철근콘크리트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국

o 1981. 6. 1 :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현청사 신축

o 1981. 7. 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청사 인수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209
- 대지 : 1,987평
- 건물 394평, 지상 3층, 지하 1층 콘크리트